

2024

북한인권보고서

2024 Repor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2024

북한인권보고서

2024 Repor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발간사

올해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유엔은 ‘북한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국가론’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을 극도로 차단하며 사회 통제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수십 년간 연대해 왔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한·미·일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그리고 인권, 안보, 통일 사이의 연계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 정책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북한인권보고서』입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엘리 위젤은 “망각은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이끌지만, 기억은 우리를 구원한다.”고 전언했습니다. 기억은 변화를 이끌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열쇠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기억을 모아 기록한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 당국이 자행한 여러 인권 침해 실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코로나19에 따른 생명권 침해 사례를 공개하였으며, 정보 통제, 강제복송, 해외파견 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례를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 시민들께서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많은 분들께 작게나마 격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보고서 발간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4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며, 10년 전 발표된 북한인권보고서를 포괄적으로 갱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통일부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가 동 보고서의 핵심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금년 11월 개최될 유엔의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가 북한 당국이 인권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1세기의 한복판인 지금도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이 당장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아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북한인권, 그리고 통일 여건의 변화를 가져오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꺼내 증언해주신 북한이탈주민 여러분, 그리고 보고서 발간 과정에 고견을 보태주신 여러 정부 관계자, 전문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통일부 장관 **김영호**

발간개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23년, 「북한인권법」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최초 공개 발간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첫 번째 공개 보고서로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였을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2024.3.),² 2023 미국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2024.4.)³에 일부 내용이 수록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에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지속했고, 그 결과 기존 『북한인권보고서』에 추가로 조사된 인권 실태들을 더해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 2024년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이하 ‘COI’)가 최초의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지 1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4월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는 2014년 COI 보고서 이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업데이트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하는 목적은 먼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리는 데 있다. 나아가, 국내외 인권 관련 기관과 단체들에게 열악한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1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의해 북한의 1차 핵실험 및 기타 핵확산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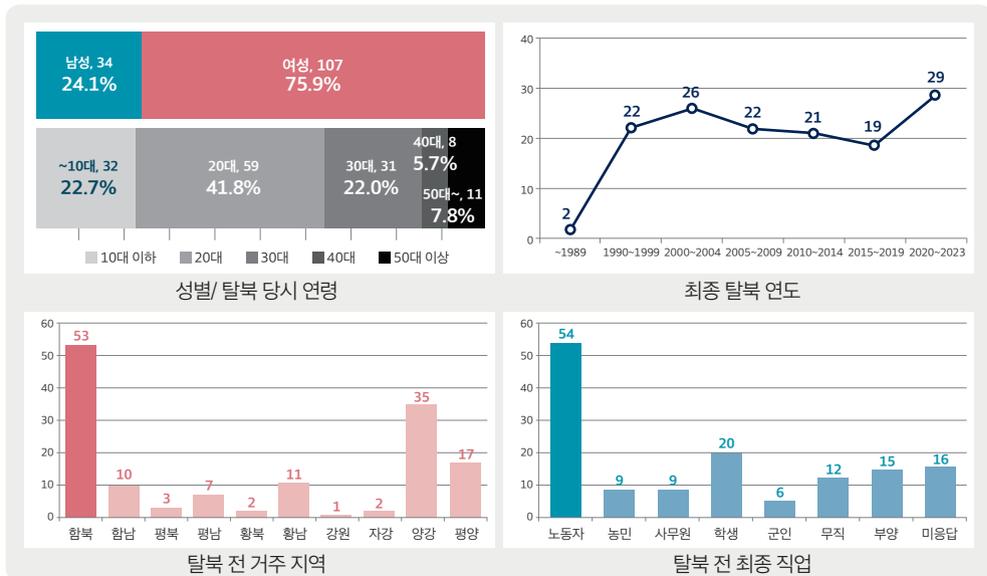
2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680(2023)』 (2024.3.7.)

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2023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3 Human Rights Report (2024.4.22.)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위와 같은 발간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발간 방향에 따라 작성했다. 첫째,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들의 증언을 가감 없이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가능한 한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에 탈북한 탈북민 증언을 많이 포함시키고자 했다. 셋째,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인권규범이 정하고 있는 분류기준에 따라 관련 증언들을 수록하고자 노력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등의 증언을 기초로 작성된다. 증언 기록은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관이 하나원을 방문하여 탈북민과 얼굴을 마주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을 담아낸 소중한 결과물이다.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지난해 보고서의 근간이 된 508명의 진술 자료에 2023년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더하여 만들었다. 코로나19 시기 북한의 ‘국경 통제’로 탈북민 수가 급감했고, 입국한 탈북민 중 다수가 중국, 러시아 등 제3국 체류 중 입국하여 최신 북한 내부 동향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23년을 기점으로 탈북민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해상을 통해 탈북한 사례가 있어 관련 증언들을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반영했다. 2023년 조사한 탈북민 141명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0-1 2023년 증언자 통계



* (조사 대상) 2023년 기록센터 조사 대상 탈북민 141명

『2024 북한인권보고서』의 주요 구성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장에서는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을 소개했다.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소통,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활동들과 유엔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담았다. 두 번째 장에서는 최근 부각된 북한인권의 관심 이슈별 인권 침해 상황을 수록했다. 북한 당국의 외부정보 접근 통제, 해외 탈북민 강제복송, 해외파견 노동자, 코로나19 등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정리했다. 세 번째 장에서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온 정치범수용소,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등 특별사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국제인권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기준으로 각 권리별 인권 침해 실태들을 기술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통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여성, 아동, 장애인 관련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 다뤘다.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난해 보고서와 다른 특징을 갖는다. 첫째, 김정은 시대 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한 주민통제 관련 법령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지난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른 공개처형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언을 담고 있다. 둘째, 지속적으로 자행되어온 강제복송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특히 북한 여성들이 겪는 여성권 침해 사례들을 다수 수록했다. 셋째, 국내외 언론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⁴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들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평양 등 다수 지역에서 보고된 종교에 대한 탄압과 북한 주민들의 일상화된 마약 사용 실태 관련 증언들도 더 풍부하게 수록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탈북민 대상 인권 침해 사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동 보고서는 탈북민들의 증언에 기반하여 작성했기 때문에, 중·북 접경지역에 편중된 출신 지역,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최근 사례

⁴ “회원국들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의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이 40여 개국에서 봉제, 건설, 의료, 정보기술(IT), 외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외화벌이 중에 있다. (According to a Member State, more than 100,000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orkers are still working overseas generating revenue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located in approximately 40 countries and working in a variety of areas, including sewing, construction, medicine, information technology and food service.)”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 2024.3.)

의 비중 축소 등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증언에는 직접경험, 목격, 득문(得聞)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탈북민 기억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기억의 소실·약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가 북한인권 실태 파악에 유용한 이유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교차비교가 가능한 수준으로 일관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 누적된 사례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상호검증을 통해 그 증언의 신빙성이 확인된다는 점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침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수집·기록하고 보존·관리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따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개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참혹한 고통을 해소하고 북한 주민들이 인류 보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러두기

1. 탈북민 고유번호 표기

- 보고서 본문과 인용문에 탈북민 증언자별 고유번호를 표기, 다만 증언자가 특정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증언자별 무작위로 부여된 '난수번호'(영문, 숫자 등 10자리) 사용

2. 북한 원문, 법령, 국제인권규범 인용

- 북한 원문은 가급적 그대로 인용, 다만 '두음법칙'과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 적용
- 북한 법령은 『북한법령집』(2022.10.) 인용, 국제인권규범은 외교부 최근 공식 번역본 인용

3. 맞춤법 적용

- 원칙적으로 현행 「한글맞춤법」 준용, 다만 '북한인권', '강제복송', '국제인권규범' 등 보고서에 기술된 주요 단어들은 의미 전달을 고려해 붙여 쓰기 적용

4. '대한민국' 표기

- 탈북민 증언 및 증언을 바탕으로 한 본문, 북한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남한'으로 표기, 국제사회 일원 등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국'을 사용

5. 북한 기관명 및 지명 표기

- 북한 기관명은 최근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재, 다만 증언 및 증언을 인용할 경우에는 진술 당시의 기관명을 그대로 사용
- 북한 지명도 가급적 그대로 사용, 다만 최근 지명이 변경된 곳은 과거 지명도 함께 표기
-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표기의 경우 직접 인용을 제외하고는 성명 표기로 대체

6. 나이, 금액의 표기

-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서술
- 금액 등 숫자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다만, 천·만 단위 이상은 해당 단위 사용

7. 화폐 단위 표기

- 미국 달러(USD), 중국 위안화(CNY), 러시아 루블화(RUB)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명 표기 없이 각각 '달러', '위안', '루블'로 표기
- 북한 원화(KPW)의 경우, 우리나라 원화(KRW)와의 구분을 위해 '북한 돈'이라고 표기
- 화폐 가치 환산이 필요한 경우, 증언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

8. 사진 등 시각화 자료 삽입

- '노동신문(=뉴스1)',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등 북한 주요 매체, 국내 전문가 및 북한 연구기관의 자료를 활용, 일부 자료는 위성지도(Google Earth) 활용 및 삽화 등으로 대체

9. 외부 감수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통일연구원 등 감수

⁵ 다만, 2019년 이전의 '노동신문' 자료 출처는 '노동신문(=연합뉴스)'

목차

발간사	2
발간개요	4
I. 북한인권 증진 정책·노력	15
1.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정책	16
2. 유엔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	33
II. 관심이슈	41
1. 정보 통제	42
2. 강제복송	67
3. 해외파견 노동자	93
4. 코로나19	120
III. 특별사안	131
1. 정치범수용소	132
2.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153
IV. 시민적·정치적 권리	167
1. 생명권	168
2.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179
3.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189
4. 피구금자의 권리	197
5.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	221
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33
7.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250
8.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268
9.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285
10.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293
11. 참정권	301
12. 평등권	309
V.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325
1. 식량권	326
2. 건강권	341
3. 근로권	368
4. 교육권	388
5. 사회보장권	404
VI. 취약계층	419
1. 여성	420
2. 아동	436
3. 장애인	463

그림 목차

그림 0 - 1	2023년 증언자 통계	5
그림 I - 1	북한인권 증진 관련 각종 협의체 가동	18
그림 I - 2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20
그림 I - 3	북한인권 관련 학술·문화행사	20
그림 I - 4	북한인권 증진 관련 주요국들과의 협력	22
그림 I - 5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노력	23
그림 I - 6	북한인권 조사 방법과 활용	25
그림 I - 7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활동	26
그림 I - 8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 등 위로	28
그림 I - 9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상징 ‘세송이물망초’	28
그림 II - 1	외국 영상물 시청 여부 (통일부)	43
그림 II - 2	외부정보 접촉 관련 영상장비	46
그림 II - 3	북한의 스마트폰	50
그림 II - 4	북송 관련 보위부 위치 (기록센터 조사 기준)	79
그림 II - 5	안전장비 없이 현장에 투입된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	104
그림 II - 6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숙소	106
그림 III - 1	‘구 북창 18호 관리소’ 부지의 ‘개천 14호 관리소’ 편입 (기록센터 조사 기준)	134
그림 III - 2	북한 정치범수용소 추정 위치 (기록센터 조사 기준)	136
그림 III - 3	개천 18호 관리소 (기록센터 조사 기준)	138
그림 III - 4	전시납북자와 전후납북자	155
그림 III - 5	탈북 후 귀환한 국군포로	158
그림 III - 6	북한 내 국군포로 거주 확인 지역 (기록센터 조사 기준)	159
그림 III - 7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속 남북한 주민들	162
그림 IV - 1	공개처형 추정 장소 위성사진 (기록센터 조사 기준)	175
그림 IV - 2	강제노동에 동원된 북한 주민들	186
그림 IV - 3	함경북도 무산군 보위부 구류장 (증언자 자필 진술 바탕 재구성)	200
그림 IV - 4	피구금자에 강요된 자세 (증언자 진술 바탕 재구성)	208
그림 IV - 5	평안남도 개천시 개천교화소 여성 수감시설 (증언자 진술 바탕 공간정보 재구성)	212
그림 IV - 6	이동·거주의 자유 관련 북한의 각종 증명서	223
그림 IV - 7	북한 매체의 입주 관련 보도	228
그림 IV - 8	중국-북한 국경 통문 및 철조망	232
그림 IV - 9	북한의 재판 장면 (북한 매체 보도 바탕 재구성)	237
그림 IV - 10	탈북민 가족에 대한 인민반 감시 (증언자 진술 바탕 재구성)	253

그림 IV - 11	북한 주민들의 당 생활총화 노트	256
그림 IV - 12	사상교육을 위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관련 물품	272
그림 IV - 13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참배	273
그림 IV - 14	북한의 주요 종교시설	277
그림 IV - 15	북한 매체에 등장한 북한 여성들의 복장	292
그림 IV - 16	관제 군중집회에 동원된 북한 주민들	299
그림 IV - 17	북한의 선거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	302
그림 IV - 18	북한의 선거 절차 (기록센터 조사 기준)	304
그림 IV - 19	북한의 선거 투표함 변화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	306
그림 IV - 20	평양과 지방의 모습	314
그림 IV - 21	북한으로 영주 귀국하는 재일동포	320
그림 V - 1	북한 식량 생산량·수요량 추이 (FAO)	328
그림 V - 2	북한의 식량 배급과 양곡판매소	334
그림 V - 3	북한의 산지 개간 사례	338
그림 V - 4	북한 주민의 의약품 구입 방법 변화 (통일부)	344
그림 V - 5	북한 유아 필수백신 예방접종	347
그림 V - 6	북한의 의료 전달 체계	353
그림 V - 7	북한의 마약, 아편과 병두	360
그림 V - 8	북한 주민의 물 사용 실태	365
그림 V - 9	북한의 노동자, 농장원들	377
그림 V - 10	북한 매체 속 돌격대원들	382
그림 V - 11	북한 매체 속 소학교 학생들	391
그림 V - 12	평양 학생과 지방 학생의 생활 격차	396
그림 V - 13	북한 학생들의 조선소년단 활동	402
그림 VI - 1	재북 시 남녀평등 인식 (통일부)	422
그림 VI - 2	북한 여성들의 일상	425
그림 VI - 3	북한의 어린이들	438
그림 VI - 4	북한 학생들의 농촌지원 활동	456
그림 VI - 5	새롭게 건설된 평양의 무연고 아동 보호·교육기관	460
그림 VI - 6	장애인 집단 거주 추정 지역 (기록센터 조사 기준)	467
그림 VI - 7	북한의 장애인 교육	471
그림 VI - 8	북한의 영예군인공장	473
그림 VI - 9	국내외 행사 속 북한 장애인들	476

표 목차

표 I - 1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체계	17
표 I - 2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개최 내역	19
표 I - 3	유엔의 북한인권결의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33
표 I - 4	COI 보고서 세부 내용: 북한 당국의 주요 인권 침해	35
표 I - 5	제78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2023.12.19.) 주요 내용	37
표 I - 6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2024.4.4.) 주요 내용	37
표 II - 1	외부정보 및 특정 분야의 단속을 위한 연합지휘부 종류 (기록센터 조사 기준)	49
표 II - 2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주요 내용	53
표 II - 3	증인 사례 중 반동사상 행위 예시 (기록센터 조사 기준)	55
표 II - 4	「청년교양보장법」 주요 내용	58
표 II - 5	「평양문화어보호법」 주요 내용	61
표 II - 6	강제복송 후 강제낙태 등 직접 경험 사례 (기록센터 조사 기준)	73
표 II - 7	복송자의 지역별 주요 이송 경로 (기록센터 조사 기준)	78
표 II - 8	탈북 동기 (기록센터 조사 기준)	87
표 II - 9	체류국가별 상납분 및 노동자 임금 (기록센터 조사 기준)	97
표 II - 10	파견 분야별 선발 절차 (기록센터 조사 기준)	118
표 II - 11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총격·총살 사례 (기록센터 조사 기준)	123
표 III - 1	「자유권규약」과 정치범수용소	132
표 III - 2	정치범수용소 현황 (기록센터 조사 기준)	133
표 III - 3	정치범수용소 개요 (기록센터 조사 기준)	135
표 III - 4	정치범수용소 규모에 대한 진술 (기록센터 조사 기준)	140
표 III - 5	정치범수용소 수용자 규모에 대한 진술 (기록센터 조사 기준)	142
표 III - 6	「자유권규약」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153
표 III - 7	전후납북자 현황	156
표 III - 8	북한 억류 우리 국민 현황	157
표 III - 9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	158
표 III - 10	생존 이산가족 출신 지역별 분류	161
표 IV - 1	「자유권규약」과 생명권	168
표 IV - 2	북한 「형법」상 사형 부과 범죄	172
표 IV - 3	「자유권규약」과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179
표 IV - 4	북한의 형벌 및 행정처벌 집행시설 (기록센터 조사 기준)	181
표 IV - 5	「자유권규약」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189
표 IV - 6	「자유권규약」과 피구금자의 권리	197

표 IV - 7	북한 구금시설의 종류 (기록센터 조사 기준)	199
표 IV - 8	북한 구금시설별 면회 및 물품 반입 가능 여부 (기록센터 조사 기준)	209
표 IV - 9	「자유권규약」과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	221
표 IV - 10	「자유권규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33
표 IV - 11	「자유권규약」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250
표 IV - 12	「자유권규약」과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268
표 IV - 13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주요 내용	271
표 IV - 14	「자유권규약」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285
표 IV - 15	「자유권규약」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293
표 IV - 16	당원이 아닌 북한 주민의 가입 조직	298
표 IV - 17	북한의 사회조직	298
표 IV - 18	「자유권규약」과 참정권	301
표 IV - 19	「자유권규약」과 평등권	309
표 IV - 20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유형별 차별 내용 (기록센터 조사 기준)	319
표 V - 1	「사회권규약」과 식량권	326
표 V - 2	「사회권규약」과 건강권	341
표 V - 3	마약 관련 북한 「형법」상 처벌	362
표 V - 4	「사회권규약」과 근로권	368
표 V - 5	「사회권규약」과 교육권	388
표 V - 6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	401
표 V - 7	「사회권규약」과 사회보장권	404
표 V - 8	사회보장 관련 북한의 법령	405
표 V - 9	재북 당시 연로연금 금액 (기록센터 조사 기준)	407
표 VI - 1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	420
표 VI - 2	임신한 여성 근로자 권리 확대 관련 북한의 법·제도	435
표 VI - 3	「아동권리협약」과 아동	436
표 VI - 4	북한의 무연고 아동 보호·교육 체계	459
표 VI - 5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463

|

북한인권 증진 정책·노력

1.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정책

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이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북한인권 증진'을 통일·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인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자국민 보호의 국가적 책무로 적극 인식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3년 9월에는 통일부에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국제사회와도 연대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2023.8.18.)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및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분단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2023년 3월에는 그동안 민간단체 차원에서 기념해 온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 국가기념일로 지정(매년 음력 8월 13일, 추석 전전(前前)날)했고, 정부 주관으로 '제 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9.27.)을 개최했다.

가. 정부 정책 수립·추진

(1)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야에서 폭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발표(2023.12.26.)했다. 동 계획은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북한 당국이 인권 친화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표 1-1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체계

비전	·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	
목표	·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 제고 · 북한 당국의 인권 친화적 정책 견인	
추진 방향	· 북한인권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 확산 · 자유권 및 사회권의 통합적 증진 추구 ·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상호보완적 협력체계 구축	
추진 과제	· 북한인권 실태 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 책임 규명 ·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북한인권 정책 추진기반 강화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실질적 개선 ·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 (출처) 통일부

(2)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고 2017년부터 하나원 입소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해 왔다.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들을 지속 수집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로서, 공개 발간은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 고발에 그치지 않고,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023년 3월에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 국문본을, 7월에는 동 보고서 영문 번역본을 공개 발간하고, 국내외 정부 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에 이를 배포했다.

(3) 「북한인권법」 이행 기반 마련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와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정책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위원장: 통일부 차관)를 세 차례 개최하고,¹ 북한인권 정책 추진현황 및 홍보방안, '북한인권 증진 중

1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2023년 4월, 8월, 2024년 1월 등 모두 3회 개최

합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목적으로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했다. 2023년 동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다섯 차례 개최하고, 『북한인권보고서』 홍보, '북한인권 상호대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그림 1-1 북한인권 증진 관련 각종 협의체 가동



* (출처) 통일부

(4)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핵심 허브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부지에 건립되는 동 센터는 북한인권 자료를 전시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국제사회 및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향후 센터에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참혹한 북한인권 실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대관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행사의 개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권 영화제, 오페라, 음악회, 사진전 등이 개최되면, 북한인권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 센터를 북한인권 뿐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적 인권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나. 북한인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

(1) '북한인권 상호대화' 개최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동 사안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시민사회, 학계, 탈북민 등의 견해를 듣고 토론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를 개최했다.

표 1-2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개최 내역

구분	개최일	주제
토론회	9.7.	재중 탈북민 복송 위기와 대응방안
	9.14.	국군포로, 납북·억류 국민 문제
	9.21.	북한인권 피해 구제와 북한 상대 소송 지원
	10.12.	북한인권조사기록, 정부-민간의 역할과 과제
	10.19.	북한인권 분야 탈북민들의 역할과 활동 증대 방안
	10.26.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근 여건과 증대 방안
	11.9.	북한인권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11.16.	인권-북핵 연계 포괄 접근방안
워크숍	11.30.	종합 토론회

* (출처) 통일부

(2)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실시

정부는 민간분야에서도 북한인권을 증진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2023년에는 총 18개 단체의 29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했다. 컨퍼런스·세미나·역량강화 워크숍 등 학술행사,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국제협력사업을 비롯하여, 북한인권 오페라 등 문화행사, 탈북 과정을 '방 탈출 게임'으로 구현한 체험 콘텐츠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됐다. 2024년에도 공모를 통해 19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2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북한인권 오페라 공연
(2023.7.25.)



북한인권 방 탈출 게임
(2023.11.7~11.19.)

* (출처) 통일부

(3) 학술·문화행사 개최

정부는 2023년 3월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4월에 ‘북한인권 조사기록의 의미 및 북한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국제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7월에는 외신 기자단 및 주한 외교단 등을 초청하여 동 보고서 발간 의미 및 내용을 설명하는 좌담회도 열었다. 또한,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전시하기도 했다. 북한인권 침해 사례와 실상, 국제사회의 노력을 담은 사진, 그림, 증언 등을 바탕으로 26개 패널을 제작하여 국내외 행사 등 다양한 계기 시에 활용했다.

9월에는 문화를 활용한 북한인권 인식 확산 계기 마련을 위해 ‘2023 북한인권 영화 다시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개막작 『리멤버 미』(원제: 『True North』)를 비롯하여 탈북 과정, 북한 내부 상황 등을 다룬 5편의 작품을 연이어 상영했다.

그림 1-3 북한인권 관련 학술·문화행사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계기 토론회
(2023.4.24.)



북한인권 영화 다시보기
(2023.9.13.)

* (출처) 통일부

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1) 주요국들과의 협력

정부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만큼, 북한인권 문제 역시 남북 간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적 이슈로 접근하고 있다. 국익을 증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급 외교에서도 북한인권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2023.4.26.)에서 양 정상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했다. 이후 「캠프 데이비드 정신」(2023.8.18.)에서 한·미·일 정상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한·캐나다 정상회담과 한·영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이하 ‘EU’) 등 각종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했다.

그밖에 미국, 영국 등 북한인권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갖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북한인권 관련 주요 인사인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북한인권특사, 데이비드 알톤(David Alton) 영국 상원의원 방한 시 북한인권 문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동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² 또한, 2023년 11월에는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하여 북한인권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다양한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다.

2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은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접견(2023.10.16./ 10.17./ 2024.2.15./ 2.21.)하여, 북한인권 관련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은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적 의원그룹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을 면담(2023.2.10./ 9.15./ 10.17.)하여 북한 주민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림 1-4 북한인권 증진 관련 주요국들과의 협력



* (출처) 대통령실

정부는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관련 브리핑 및 소통을 통해 우리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에 상주공관을 보유한 국가의 주한(駐韓)공관, 주한공관 중 북한을 경입하는 공관을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관련 국가들의 북한인권 문제와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³ 또한, 주한 외국공관, 유엔 인권서울사무소 등 국제기구, 국제 민간 단체 등을 초청하여 3회에 걸쳐 북한인권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⁴

한편, 정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가가 국제규범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여러 차례 진행된 북한인권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으며, 한중 외교장관회담(2023.11.),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2024.1.), 외교서한 등 주요 계기 시 관련국에도 이를 전달한 바 있다.

(2) 유엔과의 협력

정부는 2023년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와 제78차 유엔 총회, 2024년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 논의를 위해

³ 주한공관 대상 라운드테이블은 2023년 3월, 6월, 11월(2회) 등 모두 4회 개최

⁴ 주한공관, 국제기구·단체 초청 북한인권 관련 설명회는 2023년 10월, 12월, 2024년 2월 등 모두 3회 개최

열린 유엔 안보리의 비공개 회의와 공식 회의에도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지속 촉구해왔다.

이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2023년 9월 방한한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3) 국제 시민단체 및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국제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2023년 5월과 10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Human Rights Foundation) 등 국제 인권단체 주요 인사 방한 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북한인권 논의 활성화 및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2023년 9월에는 COI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포럼 ‘북한인권 실상과 증진방안’을, 12월에는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했다. 아울러 전직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의 활동도 지원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은 2023년 11월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해외 체류 탈북민의 강제복송은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림 1-5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노력



* (출처) 외교부, 통일부

(4)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활동 지원

정부는 2022년 7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여러 차례 면담하는 등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강력한 연대·지지 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 대표로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참석하여 북한인권 주요 문제에 대해 발언했으며, 각종 행사 참석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이외에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미국, 노르웨이, 영국 등 정부·의회 인사들을 만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내는 한편, 국내외 유력 언론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조명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네바, 뉴욕, 워싱턴 D.C. 등 북한인권 논의가 이루어지는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영국, 캐나다 등 유사 입장국의 학회, 포럼, 웨비나 등의 공개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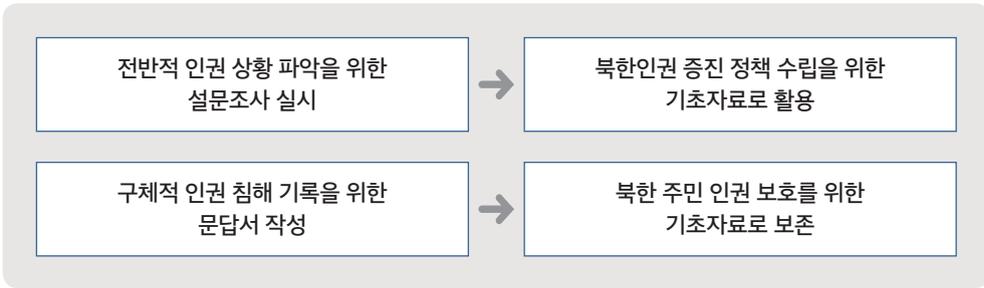
라.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활동

(1) 북한인권기록센터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 설립됐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령에 의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조사 원칙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하는 문답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문답서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그림 1-6 북한인권 조사 방법과 활용



북한인권 조사항목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 등 인권실태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조사항목 중 ‘자유권’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사회권’은 식량권, 건강권, 근로권, 교육권 등을 파악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의 인권과 관련된 실태도 조사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3,553명의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중 2,215건의 문답서를 작성했다. 문답서 등 조사기록 원본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하고 있다.

(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법」에 기반하여 2016년 10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개소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과거 서독이 동독의 인권 침해 범죄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위해 설치한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in Salzgitter)’를 모델로 설립되었으며,⁵ 과거와 현재의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증거화하여 책임규명 등 미래 정의 실현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기관이다.

⁵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는 1961년 11월 서독 니더작센주 법무부 브라운슈바이크 최고검찰청 내 산하 기관으로 설치되었으며, 존재 자체로 동독의 인권 침해를 억제하고 체제 범죄를 감시한 파수꾼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주된 임무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문답서 등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이관 받아 형사법적 관점에서 범죄구성요건 별로 침해 유형을 분석한 후 가해자 카드 등 인명카드를 작성해 보존·관리하는 것이다.⁶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3개월마다 이관 받은 자료는 분석을 완료한 후 영구 보존조치했다.⁷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23년 8월 정부과천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검사를 신규 배치해 북한인권 기록 관련 자료 분석을 위한 형사법적 전문성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국제형사재판에서의 증거법과 전환기 정의 관련 국제 사례 등에 대한 연구 및 관련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북한의 체제불법 청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민간단체 및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국제사회 전문가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대한민국 「형법」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을 기초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행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연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책임규명 자료를 수집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국내외 민간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1-7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활동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최초 이관 기록
(2017.4.)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부과천청사 이전 현판식
(2023.8.18.)

* (출처)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⁶ '가해자 카드'에는 가해자의 성명, 소속 등의 인적사항과 침해 사실, 적용 법조문, 반인도범죄 유형 등이 기재된다.

⁷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는 향후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 형사소추를 위한 증거자료, 피해자 보상 및 복권, 공무원 책임용 등을 위한 심사자료, 진실규명 등 사회통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마.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1)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정부 정책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가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에 관한 것이며,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 있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들은 고령화되고 남쪽에 있는 피해 가족들의 아픔은 더욱 깊어지고 있어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23년은 남북 관계를 넘어선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의지를 적극 표명한 한 해였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8.18.)에서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한·미·일 3국이 동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었다.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9.8.)했고,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 계기 성명을 발표(10.8.)했다.⁸ 2012년 이후 11년 만에 ‘납북자대책위원회’를 개최(11.14.)했으며, 납북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위로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소통과 지원사업도 지속해왔다. 이와 관련, 2023년에는 김건희 여사의 납북자 가족 면담(4.12.), 통일부 장관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장 및 가족 면담(8.3.),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 유가족 면담(9.11.) 등을 진행한 바 있다.

⁸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의 불법적, 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하며, 국제인권 규약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하루 속히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함.”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 계기 통일부 대변인 성명, 2023.10.8.)

그림 1-8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 등 위로



김건희 여사, 납북자 가족 면담
(2023.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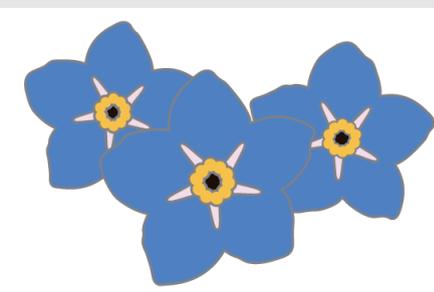


통일부 장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장 및 가족 면담
(202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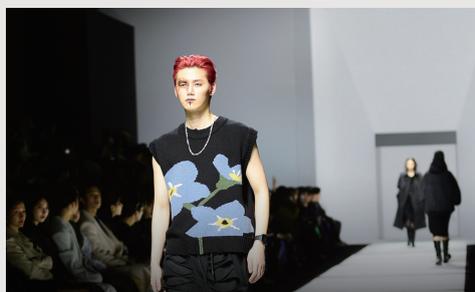
* (출처) 대통령실, 통일부

이와 함께,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상징 제작 사업을 추진해왔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잊히지 않을 권리’를 기억하고 송환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가진 ‘세송이물망초’를 상징 디자인으로 선정했다. ‘세송이물망초’의 각 송이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상징하며, 갇은 고초와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과 희망을 담고 있다. 2024년 3월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국무위원들과 함께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가슴에 달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전원을 가족과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며 강력한 송환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림 1-9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상징 ‘세송이물망초’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상징 ‘세송이물망초’



「2024 F/W 서울패션위크」 ‘세송이물망초’ 상징 공개
(2024.2.3.)

* (출처) 통일부

납북자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군인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전쟁 기간(1950.6.25.~1953.7.27.)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이들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해 2010년 3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동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 등 5개 부처의 장, 전문가 6명, 가족대표 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동 위원회는 전시납북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전시납북자 규모를 ‘10만 명 내외’로 추산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전시납북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과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 11월에는 6·25전쟁 납북 피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개관·운영하여, 납북 피해 가족들의 문제를 재조명하고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전후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전협정 체결(1953.7.27.)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총 3,835명이 납북되었으며, 이 중에서 3,319명이 귀환(3,310명 남한 송환, 9명 탈북 귀환)하여 현재 북한 내 전후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된다.

2007년 4월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전후납북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466건을 접수, 그 중 443건이 인정되어 피해위로금 등을 지급했다.

억류자

북한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3인까지 우리 국민 총 6인을 불법적으로 체포·억류하고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전개해 온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무기노동교화형’⁹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정부는 남북회담 등에서 억류자 석방 및 송환을 촉구했으나, 북한은 이들을 중범죄자라고 주장하며 관련 논의를 거부하고 국제기구 및 유관국을 통한 생사확인과 영사보호 요청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억류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억류의 피해는 우리나라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2015년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Hyeon Soo Lim) 목사를 체포하여 2년 반 동안이나 억류했으며 2017년에는 1년 5개월간 억류한 미국인 오토 워ம்ப이어(Otto Frederick Warmbier)를 식물인간 상태로 석방하여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 더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억류가 10년째 되는 올해, 국제적으로 억류자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2015년 6월 23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개소일에 맞춰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 재판 영상을 공개했다는 점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에 대한 반발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억류자 문제를 이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따라서 억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2023년 11월 통일부를 통해 아버지 최춘길(2014년 억류)의 억류 사실을 최초 인정한 최진영씨는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중에(2024.3.17.~3.20.)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여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의 생사확인 및 송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공조를 촉구했다. 이 기간 중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

⁹ ‘노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형벌’을 의미한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 말대사전(증보판)』 제1권, 2017. 1753쪽 참고)

별보고관을 면담했으며,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주관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고, 볼커 투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 앞으로 북한에 있는 억류자들이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가족들의 편지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리즈 트로셀(Liz Throssell)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북한이 억류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족들에게 제공하며 연락하는데 있어 부당한 제한을 없앨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은 “가족들에게도 또한 억류된 가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들이 겪는 비통과 슬픔은 고문과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통일부 장관은 2024년 3월 우리 억류자 송환을 위한 연대를 요청하는 서한을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적 의원 모임(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이하 ‘APPG-NK’)에 발송했다. 이에 APPG-NK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명시한 억류자 송환 촉구 대북 성명을 발표(3.26.)했다.¹⁰

국군포로

‘국군포로’는 우리나라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 포함)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 등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로 귀환하지 못한 사람을 뜻한다.

국군포로는 대표적으로 ‘6·25전쟁 국군포로’가 있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국군 실종자는 약 8만 2천 명으로 추정되나 포로교환을 통해 귀환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는 6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돌아온 ‘귀환 국군포로’도 있는데,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의 탈북 귀환 이후 총 80명에 달한다.

¹⁰ “APPG-NK는 탄압받고 박해받는 북한의 2,600만 명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자유의 가치를 증진하는데 오랫동안 노력해왔음. 우리는 억류자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결합될 수 있도록 이들을 즉각 풀어줄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함.” (APPG-NK 성명, 2024.3.26.)

(2)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는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정부는 2022년 9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데 이어 2023년 9월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사 등을 통해 북한 당국의 호응을 지속 촉구했지만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2023년 3월에는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아픔과 그리움, 함께 나누고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주제 아래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9.27.)을 개최했다. 또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3년 7월 북미 지역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해외이산가족 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이산가족 교류실태와 정책 인식 등에 대해 파악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교류기반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전 정보 보관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총 2만 7,794명의 유전자를 채취·검사했으며 고령 이산가족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 간 교환에 대비하고자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2만 6,080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해왔다.

2. 유엔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

가. 유엔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

유엔은 1990년대부터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왔다. 1995년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1997년 제49차 인권소위원회에서 최초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됐다.¹¹ 동 결의는 북한 내 임의 구금, 여행의 자유 제한, 탈법적 처형, 정치범수용소 등의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프랑스 등 EU의 주도로 북한인권결의가 최초로 상정되어,¹² 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유엔에서는 총회(2005년 이후, 하반기), 인권이사회(2008년 이후, 상반기)에서 현재까지 매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표 1-3 유엔의 북한인권결의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연도	유엔 인권위원회/이사회		유엔 총회	
	채택 방식	입장	채택 방식	입장
2003	투표	불참	—	—
2004	투표	기권	—	—
2005	투표	기권	투표	기권
2006	—	—	투표	찬성
2007	—	—	투표	기권
2008	투표	찬성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2009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2010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2011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2012	무투표	공동제안	무투표	공동제안
2013	무투표	공동제안	무투표	공동제안
2014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2015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투표	공동제안 및 찬성
2016	무투표	공동제안	무투표	공동제안

¹¹ Un Doc. E/CN.4/Sub.2/RES/1997/3 (1997)

¹² Un Doc. E/CN.4/RES/2003/10 (2003)

연도	유엔 인권위원회/이사회		유엔 총회	
	채택 방식	입장	채택 방식	입장
2017	무투표	공동제안	무투표	공동제안
2018	무투표	공동제안	무투표	공동제안
2019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2020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2021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2022	무투표	공동제안 불참	무투표	공동제안
2023	무투표	공동제안	무투표	공동제안
2024	무투표	공동제안		

* (출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23, 263쪽 참고

한편, 유엔은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2004년부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보고관은 상·하반기별로 북한인권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정례적으로 평가하는 UPR 제도를 통해 세 차례(2009.12./ 2014.5./ 2019.5.)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해 왔다.

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

1990년대부터 지속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은 북한 당국의 완강한 거부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인권 결의 채택,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 등의 조치에도 참혹한 북한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자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3년 3월 COI를 설립·운영하게 됐다. COI는 지속적인 북한인권 침해 상황을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북한 당국에 조사위원들의 제한 없는 방북 허용과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북한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았다.

COI는 1년 가까운 조사 끝에 2014년 2월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¹³ COI는 ‘북한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

¹³ UN Doc. A/HRC/25/63 (2014)

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인권 침해의 주요 가해자는 조선노동당의 핵심 기관, 국방위원회와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효과적인 통제 아래 활동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소, 재판소, 조선노동당의 관료들이다’라고 밝혔다. 동 보고서는 ①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② 차별 ③ 이동 및 거주 자유 침해 ④ 식량권 및 관련 생명권 침해 ⑤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수용소 ⑥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을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표 1-4 COI 보고서 세부 내용: 북한 당국의 주요 인권 침해

구분	주요 내용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조직화된 사회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및 언론·표현·정보·결사의 자유는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 · 수령에 대한 개인적 숭배에 이념적으로 도전하고, 국가의 통제 밖에서 사회적·정치적으로 조직 및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의 전파를 특히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차별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심각하게 계층화된 사회이다. · ‘성분’ 제도는 북한 주민 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다. ·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
이동 및 거주 자유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주민들은 국가에 의해 어디서 살고 일할 지를 강요당함으로써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그들의 주거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북한 내 다른 지역으로 여행조차도 할 수 없다. · 북한 당국은 일반 주민들이 해외로 여행하는 것을 사실상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이 자국을 떠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식량권 및 관련 생명권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식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성분’ 제도에 기초하여 식량에 대한 접근 및 배분에 차등을 둔다. · 기근이 최악으로 치달은 시기조차도 북한은 인도적 고려에 부합하지 않은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식량 구호를 방해했다. · 북한은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자국의 가용 자원을 허용하는 최대한 도로 동원할 의무를 저버렸다. 주로 무기 개발 및 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군사적 목적의 지출이 우선시됐다.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수용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경찰과 보안 요원들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폭력 및 처벌을 조직적으로 행사한다. · 중대한 정치범죄에 연루된 자들은 재판이나 사법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사라져버린다. 현재 8만 명에서 12만 명 사이의 정치범들이 아직까지 4개의 대규모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북한의 일반 감옥 체계에서도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가 정책에 따라 종종 심각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죄 혹은 기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개적 혹은 비밀리에 처형을 집행한다.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이래 북한은 국가의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타국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를 초래했다. · 북한 밖에 있는 가족 및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고자 하는 외국 정부들은 이들 피해자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한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받지 못했다. · 피해자들 거의 전원이 실종 상태로 남아있으며, 이들과 이들 가족에 대한 인권 침해는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① 절멸,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② 성폭행, 강제낙태 및 기타 성폭력 ③ 정치·종교·인종·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④ 주민의 강제이주, 강제실종 ⑤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반인도범죄’라고 결론내리고, 관련 사안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북한 당국에 ① 근본적인 정치적·제도적 개혁 실행 ② 정치범수용소 등 인권 침해 인정 ③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 보장 ④ 독립적 신문 및 기타 매체 설립 허용 ⑤ 공개적인 종교 활동 허용 ⑥ 차별 관행 종식 및 성 평등 보장 ⑦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재정의 우선순위 재조정 ⑧ 해외여행 금지 조치 폐지 ⑨ 납치·강제실종 피해자들의 가족 및 출신국에 생사·소재 관련 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다.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은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할 법적 권한이 있는 유엔 안보리에서도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다. 최근 유엔 북한인권결의

2023년 12월 제78차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전원 동의로 ‘북한인권결의’가 또다시 채택됐다.¹⁴ 이번에 채택된 결의 역시, 앞서 채택된 결의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들을 확인했다. 특히, 모든 당사국들이 탈북민 강제복송과 관련하여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 ‘고문방지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 당국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재검토하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결의는 북한인권 침해와 국제 평화·안보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즉, 북한 당국이 강제노동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통해 불법 무기 개발을 지속함에 따라,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비에 배정되었고 이로 인해 식량권·건강권 등 북한 주민 인권 보호에 실패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¹⁴ UN Doc. A/RES/78/218 (2023)

표 1-5 제78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2023.12.19.)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 및 인권 침해·유린에 대한 불처벌 관행에 우려 · COI 권고 이행 중요 · 북한이 제3주기 UPR 권고(총 262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독려 · 모든 일본인 및 한국인 납북자 즉시 귀환 등 납북자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청 · 주민의 복지 대신에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 ·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적 평화 및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통해 불법적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지속,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비에 배정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 · 아래 사안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민 강제복송 관련 고문방지협약상의 의무 준수 촉구 · 북한 당국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재검토하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

* 새롭게 추가된 내용

2024년 4월에는 EU 주도하에 우리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채택됐다.¹⁵ 동 결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업데이트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표 1-6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2024.4.4.)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I 권고 이행 중요성 강조 ·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 및 인권 침해·유린에 대한 불처벌 문화와 책임규명 부족에 깊은 우려 · 북한이 제3주기 UPR 권고(총 262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독려 · 일본과 한국의 모든 납북자의 즉각 송환 등 조속히 모든 납북자 관련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 · 주민의 복지 대신에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 ·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적 평화 및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통해 불법적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지속,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비에 배정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 · 북한이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포함한 관련 법 및 관행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앙의 자유와 표현·결사의 자유를 확보 · 인권최고대표가 제60차 인권이사회에서 COI 보고서가 발간된 2014년 이후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반영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공하고 COI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을 요구

* 새롭게 추가된 내용

¹⁵ UN Doc. A/HRC/RES/55/21 (2024)

또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더해 청년들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하는 「청년교양보장법」과 남한 말을 쓰면 6년 이상 징역형, 남한 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사상, 양심 및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와 표현·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약하는 북한 법률로 적시하고, 북한 당국에 이를 단순히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II

관심이슈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나 「청년교양보장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단속된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을 보기도 했고,

109상무가 82연합지휘부로 변경되어 단속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에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싹 쓸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처럼 말이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처벌하니 말입니다.”

1. 정보 통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구하고 받으며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¹ 이는 누구에게나 어떠한 정보든지 접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 즉, '정보에 대한 접근권(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COI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북한 주민들이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² 북한에서 유일한 정보제공자는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국영 매체'뿐이며, 북한 주민들이 허가 받지 않은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비롯한 외국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COI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외부정보 유입이 증가하자, 북한 당국이 정기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를 통해 정보 독점을 유지한다고 비판했다.³ 2023년 12월 19일, 19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는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와 검열을 '절대적 독점(absolute monopoly)'이라고 규정하는 내용과 함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의 시행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⁴ 또한 2024년 4월 4일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의 조직적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는 내용과 사상·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을 폐지하고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⁵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과 유포를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합지휘부'⁶ 등을 통해 정보 통제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법과 제도를 정

1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항

2 UNHRC,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ra (A/HRC/25/63), 2014, para. 29.

3 UN Doc. A/HRC/25/63, 2014, para. 30.

4 2023년 11월 15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리고 12월 1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0차 본회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가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5 유엔 인권이사회는 2024년 4월 4일 북한인권결의를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는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前身)인 인권위원회에서 시작되어 2024년까지 22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6 조선노동당, 검찰소, 국가안전보위성, 사회안전성,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등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구성된 특별 전담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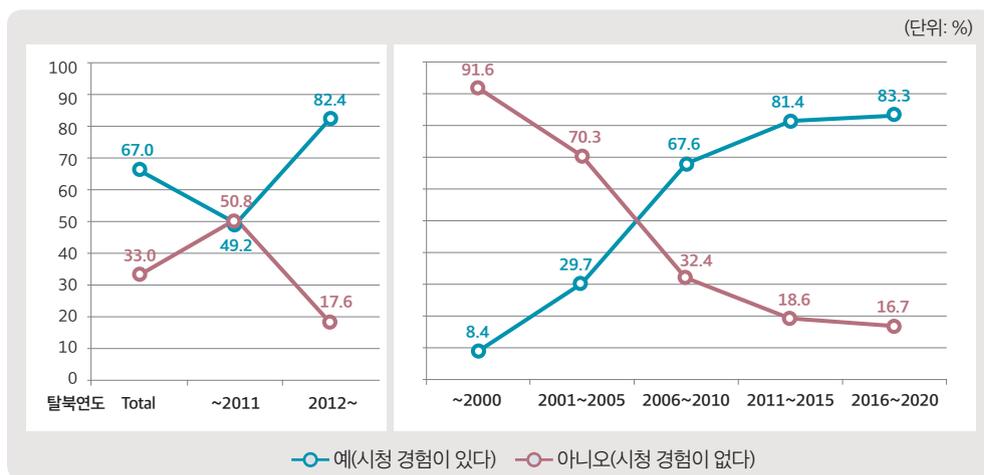
비하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왔다. 특히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2021년 「청년 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여 주민에 대한 외부정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가. 외부정보 접촉 확대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단속·처벌함으로써 주민들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휴대전화, 컴퓨터, 노트북 등이 확산되면서 외부정보 유입이 가속화되자 기존 방식으로의 통제는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북한은 새로운 방식으로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외국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외부정보 접촉 경로는 영화, 드라마, 음악, 도서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 영상물 시청 경험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일부의 탈북민 대상 조사 결과 북한에서 '외국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2015년 탈북한 경우에는 81.4%, 2016~2020년 탈북한 경우에는 83.3%로 나타났다.⁷

그림 II-1 외국 영상물 시청 여부 (통일부)



* (자료출처)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24. p.232 / 탈북연도 기준

로 주요 임무는 주민 생활에 대한 단속과 검열이다.

⁷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24. 232쪽 참고.

(1) 2010년 이전

초기 외부정보는 주로 1990년대 해외를 오가는 유학생, 해외노동자, 밀무역을 하는 장사꾼 등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고, 지인들을 통해 북한 내부로 확산됐다.⁸ 해외에 자주 오가는 사람들은 세관원에게 뇌물을 주고 외부정보를 들여올 수 있었고, 엄격한 검열을 받지 않는 고위층을 통해서 유입되기도 했다.⁹ 또한, 지리적으로 남한과 인접한 황해남도 주민들의 진술 중에는 남한에서 떠내려 오는 녹음기 등의 물품을 이용해 남한 노래 등을 접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1992년경 (아는 사람이) 황해남도 ○○군에서 물에 떠내려 오는 헬멧과 녹음기를 주워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헬멧에 쓰여 있는 ‘KOREA’ 글자는 페인트로 지우고, 녹음기 상표(‘메아리’)는 ‘삼일포’로 바꿨던지 해서 사용했습니다. 녹음기에는 남한 노래가 많이 있었는데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라는 가사가 기억납니다. 흥얼흥얼 부르는 것을 어디 노래냐고 안전원이 물어보는 것을 연변 노래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이 물건들은 남한에서 강을 통해 흘러보낸 물건을 바다 어귀에서 습득한 것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가스라이터, 청바지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품질이 좋았습니다. 상표를 떼고 중국 물건이라고 하고 사용했습니다. 같은 해에 □□시에 있는 동무(친구)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주파를 맞춰 영화도 보고, 송대관·나훈아가 부르는 노래, 광고 등도 접했습니다.”¹⁰

1990년대부터 해외에서 유입되기 시작한 남한 노래·드라마 등 외부정보는 2000년대까지 주로 CD형식의 저장매체를 통해 공유됐다. 이 시기에는 외부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처벌규정도 없어서 외부 노래나 영상 등을 어렵지 않게 접했고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었으며, 길거리에서 판매하기도 했다.¹¹ 2000년대 초반 동네잔치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남한 가요를 공개적으로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¹²

⁸ 00RIT62445, 8IUFR2462, JUZ0TT2380, L0K08K2228, YKDSNY2213, 3D5BLP1170

⁹ UY20Y52324

¹⁰ 00RIT62429

¹¹ 93VI9U2478

¹² 1BQ5TD2424, 5VRQH72482, 00RIT62460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외부정보의 공유 및 전파가 가속화됐다. 정보통신기기 조작에 능숙한 젊은 세대들은 남한 영화나 드라마 등을 서로 공유하며 외부정보를 전파했다. 특히 청소년 집단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공유됐는데, 실제로 중학교 재학 중 학교 친구들로부터 남한 드라마와 영화를 공유 받아 시청한 경험이 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었다.¹³ 청년층의 대다수가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었으며, 말투, 외모꾸미기, 은유적 표현 등을 통해서 남한 영상물을 보고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¹⁴

“아무래도 남한에서 제작한 드라마나 영화 등의 영상물을 보면 같은 민족이라 그런지 공감할 만한 내용이면서 동시에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물을 통해 남한의 발전된 문물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학생 같은 젊은 층에서 남한의 영상물을 많이 돌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영상물을 보고 노트북(노트북)이나 USB 등에 잘 숨겨놓으면 단속을 당하더라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즐겨 보고 있습니다.”¹⁵

(2) 2010년 이후

이처럼 젊은 세대 간 외부정보 공유가 활발해지고 정보통신기기도 고도화되면서 2010년 이후에는 정보공유 방식이 더욱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2012년 경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북한 내부에서 블루투스를 이용해 주변의 젊은 청년으로부터 외국 소셜 등 외부정보를 공유 받았다는 사례가 수집됐다.¹⁶ 또한 중·북 접경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중국 스마트폰으로 영상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외부정보를 접했다는 사례도 있었다.¹⁷ 아울러 주 저장매체가 소형 메모리(USB, SD카드 등)로 바뀌면서 대량의 정보를 더욱 수월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¹⁸ USB에 저장된 영상은 보통 노트텔(DVD

¹³ 5VRQH72482, DFFYXV2451, KNCI462328, 1CHLPG2211, FKJUWV0728, YNNL9N2323, V2FXOT0757

¹⁴ 1CHLPG2211, YKDSNY2213, 00RIT62460

¹⁵ ISO49X0409

¹⁶ Q0MV8C2262

¹⁷ YKDSNY2213, 2E54YT2145

¹⁸ YNNL9N2323, 1ND60Q2377, 1NR82V2372

플레이어)에 연결해서 시청했는데, 단속 후 노트북을 압수해 가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USB를 텔레비전에 바로 꽂아서 재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례들도 수집됐다.¹⁹

그림 II-2 외부정보 접촉 관련 영상장비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라디오, MP4

노트북과 복제된 한국 드라마 DVD

* (자료출처) 데일리INK, SBS

한편, 시기와 관계없이 황해남도, 평안남도, 강원도 등지에서는 남한 라디오 방송을 듣고, 남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송출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라디오 방송의 전파가 수신되는 것으로 보인다.²⁰ 실제로 2023년까지도 황해남도에서는 남한 드라마나 라디오 방송을 시청·청취할 수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²¹ 또한, 다수의 증언자들은 중·북 접경지역에서도 중국 방송의 전파를 잡아 시청하거나 청취했다고 했다.²²

남한과 인접한 지역의 경우 북한 당국이 장애전파를 쏘아 2008년경 이후부터 남한 방송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증언, 텔레비전에 시청 가능한 채널을 고정하도록 강제하여 외국 방송 시청을 금지했다는 증언 등이 수집됐다.²³ 다만, 채널 고정은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쉽게 해제할 수 있어 금지된 방송을 어렵지 않게 시청할 수

¹⁹ TGCAEV2403, DFFYXV2451, 93VI9U2478

²⁰ XHQ3062407, 00RIT62434, TGCAEV2403, TEIEJA2400, 00RIT62429, 00RIT62441, 1NR82V2465, XHQ3062395

²¹ TGCAEV2403

²² 8IUFR2422, R0D6PD2423, 1BQ5TD2424, R0D6PD2411, 00RIT62429, 00RIT62441, TEIEJA2448, 1NR82V2465, 00RIT62454, 8IUFR2453, 8IUFR2452, 93VI9U2478

²³ 텔레비전의 채널변경 버튼 일부를 납땜하거나 안에 종이를 끼워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이를 '통로를 고정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UY20Y52324, 00RIT62434, ZLEDL41338)

있었다고 한다.²⁴ 반면, 라디오 주파수는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없어 북한 당국은 개인이 아예 라디오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2023년까지도 황해남도에서 개인의 라디오 소지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라디오 방송은 제가 살던 곳(황해남도)의 특성상 잘 잡힙니다. 원래 텔레비전도 신호가 잡히지만, 집집마다 채널을 고정하여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라디오는 주파수를 잘 잡으면 방송이 잡히기 때문에 라디오 자체를 가정에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주민 중에는 라디오를 몰래 가지고 있으면서 방송을 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²⁵

나. 정보 통제 강화

북한 당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을 차단해왔다. 물리적인 통제와 함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단속 및 통제를 강화해왔으며, 이동통신의 발달로 주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디지털 검열을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정보 통제를 위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기도 했다.

(1) 전담조직 운영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단속을 실시해왔다. 북한 당국이 외부정보를 본격적으로 통제할 시기는 저장 매체가 소형화되고 공유나 유포가 용이해지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단속 조직은 당,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및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9연합지휘부’이다. 이들은 주로 외국 영상물이나 출판물·라디오·DVD 등에 대한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다. 북한 주민들은 109연합지휘부를 ‘109상무’, ‘109그룹’, ‘109소조’ 등으로도 부른다.²⁶

²⁴ 00RIT62434, ZLEDL41338

²⁵ TGCAEV2403

²⁶ 5VRQH72482, 00RIT62468, 1NR82V2442, TGCAEV2403, TEIEJA2400, 8WHPWX2397, MAV6AE2388, BW8MUL2358, 5Q8LRL2333

109연합지휘부가 외부정보 접촉을 단속할 때는 대부분 ‘수색결정서’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가택수색이나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증언에 따르면 외부정보 접촉에 대한 단속을 경험한 대다수가 수색결정서를 제시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단속은 수시로, 불시에 이루어졌다고 한다.²⁷ 단속 경위와 방식도 다양했다. 단속 대상은 남한 영화를 비롯하여, 미국·인도 영화 등이었고, 자막이 남한 어투라는 이유로 적발당한 경우도 있었다.²⁸ 다만, 단속의 주기나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외국인 인이 많은 나선시의 경우 109상무가 월 2회 가택수색을 하는 등 외부정보 접촉에 대한 검열이 매우 엄격하게 실시됐다고 한다.²⁹

“2022년 어느 날 109상무의 지도원이 집으로 찾아와 가택수색을 했습니다. 며칠 전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메모리를 주워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메모리에 남한 노래 300곡이 들어있었고, 지도원은 그 메모리를 가택수색 중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마련하여 단속 지도원에게 뇌물로 주었습니다. 남한 노래가 들어 있어 문제가 되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서라도 무마시켜야 했습니다.”³⁰

109상무 이외에도 외부정보 및 특정 분야의 단속을 위한 연합지휘부(상무, 그루빠, 소조 등)들이 새롭게 조직됐다. 현재는 주민들의 ‘반사회주의적’ 생활양식과 외부정보 접촉 등을 단속하기 위해 312상무, 620상무, 627상무, 82연합지휘부 등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조직의 각각의 활동 목적은 다소 다르지만 외부정보 단속, 특히 북한 주민들이 남한 정보를 접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단속과 검열을 실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³¹

²⁷ OORIT62445, 13PN7Y2325

²⁸ 13PN7Y2325, TGCAEV2403, UYSKRB2399, 2K3MCU1868

²⁹ OORIT62445

³⁰ UYSKRB2399

³¹ MNH2KG2026, C7OC571623, PNPVJ41087, I9IMQL0545, Z9XY7A0555, F9Q9R31787, TQSHE70026, P767JN1271, IERERO0394, LRINJ90590, BASLOU1798, XP1RFW1509, EA5LI51114, XRAX2R0506, IERERO0394, LRINJ90590, TGCAEV2403, TEIEJA2400

표 II-1 외부정보 및 특정 분야의 단속을 위한 연합지휘부 종류 (기록센터 조사 기준)

구분	결성 시기	단속 및 검열 내용	비고
82연합지휘부 ³²	2021년	· 불법영상물, 비공식 경제활동, 부정부패 등 전반적인 비(非)사회주의 활동 단속	기존 모든 상무 해체 후 재편성
620연합지휘부	2016년	· 불법영상물, 마약, 매춘, 미신 등 비사회주의 활동 단속	-
84연합지휘부	2015년	· 외부정보 유입, 밀수, 도강, 불법휴대폰 사용 단속	-
627연합지휘부	2014년	· 불법영상물, 마약, 매춘, 미신 등 비사회주의 활동 단속	-
312연합지휘부	2014년	· 직장이탈자 및 불량자 검열	-
보위성 812과	2013년	· 마약범죄, 불법영상물 단속	2019년 해체 후 재편성 추정
414연합지휘부	2010년	· 직장이탈자 및 불량자 검열	-
109연합지휘부	2004년	· 불법영상물, 마약, 매춘, 미신 등 비사회주의 활동 단속	2021년 해체 후 재편성 추정
927연합지휘부	1993년	· 직장이탈자 및 불량자 검열	-

(2) 휴대전화 검열

북한의 「이동통신법」(2020) 제5조는 이동통신 제공과 이용의 신속성, 정확성, 봉사성, 안전성, 문화성, 비밀보장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증언에 따르면, 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동통신 관련 원칙들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휴대전화의 기능이 다양해져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 재생,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휴대전화는 주요한 정보공유 매체이자 외부와의 효율적인 소통수단이 됐다. 북한 주민들은 휴대전화를 외부정보를 접하는데 이용할 뿐만 아니라 밀수출 등을 위해 외국 거주자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탈북 가족에게 송금을 받거나 안부를 전하는 등 주요한 소통의 수단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중·북 접경지역에서는 중국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과 채팅을 할 수 있었으며, 위챗(WeChat, 중국 모바일 메신저)으로 통화를 했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³³ 또한

³² 최근 109연합지휘부가 82연합지휘부로 개편됐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109상무는 안전부, 보위부, 검찰, 인민위원회 법무부 등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단속 근거가 되는 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등이 일률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되고, 2021년경 109상무가 82상무로 바뀌면서 단속과 처벌규정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한다. (ONW45H2402, UYSKRB2399, TGCAEV2403)

³³ FVPAU11968, YKDSNY2213

송금브로커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 전송이나 영상통화로 자금 이체 여부를 확인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최근 송금브로커가 돈 이관(이체) 등에 필요한 전화를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해서 돈 이관 후 확인도, 돈을 받았다는 편지를 써 사진으로 찍어 보냅니다. 이렇게 변한 이유는 감청을 피하기 위함이고, 또 젊은이들이 매체를 잘 다루기 때문입니다. 위챗을 이용하여 영상통화 할 경우 짧은 시간동안 얼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통화보다 효과적이고, 짧은 시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³⁴

북한 당국은 정보공유와 외부정보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 불시에,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를 검열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검열은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은 휴대전화에 ‘불순녹화물’이 저장되어 있는지, 비(非)사회주의 문자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루빠’가 학교, 길거리 등 장소를 불문하고 수시로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³⁵ 대학생들의 경우 대학 당위원회·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등에서 남한 노래·영화·음란물 등의 불순녹화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검열했다는 증언이 있었다.³⁶

그림 II-3 북한의 스마트폰



* (자료출처) KBS, 데일리NK

34 2E54YT2145

35 YNNL9N2323, 5VRQH72482, TPK8GF2281, P767JN1271, 5PC09H0150, 204G6G1011

36 E4MJ0I2167, YNNL9N2323, LXUIUC2307

휴대전화 검열은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증언자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또는 가택수색 중 휴대전화에 단속 대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지 검열을 받았다고 했다.³⁷ 또한 뇌물을 받아내려고 검열을 하기도 하는데, 지도원이 뇌물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만 골라서 검열을 실시하기도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차림새가 깔끔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검열하고 별일 아닌 것을 문제 삼아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이다.³⁸

한편, 북한 당국은 도·감청 실시, 미승인 어플리케이션 차단, 사용 이력 감시 등을 통해 주민의 정보접촉을 통제해왔다. 휴대전화 검열 방식이 재정비된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로 보이며, 2014년경에는 내장 메모리에 휴대전화 사용 내역 및 열람 기록을 저장하는 운영체계가 대대적으로 도입됐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저장된 열람 정보는 개인이 삭제할 수 없고, 통신사만 삭제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는 ‘열람이력’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4~2015년 7월경부터 (손전화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손전화(휴대전화)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지역의 체신소에 통신사 직원들이 나와서 손전화를 받아서 체계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런데, 근본 체계를 바꾼 것이 아니고 내장메모리에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열람기록이 생성되고, 그것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열람기록이 다 차면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통신사에 가야만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³⁹

북한 당국의 단속 방식이 고도화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검열을 피하는 방법 또한 점점 진화하고 있다. 2019년 북한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갱신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상시 업데이트를 지시했는데, 실제로는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 주민이 많았다고 한다. 당국이 업데이트를 했는지의 여부도 검열했지만,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조작해서 단속을 피했다는 것이

³⁷ 13PN7Y2325, U4G4Q32334, TPK8GF2281

³⁸ DFFYXV2451

³⁹ UY20Y52324

다. 또한, 파일 추적을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친구들에게 USB로 공유 받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파일 재생 이력이 남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한다.⁴⁰ 아울러 중·북 접경지역에서 중국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감청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안전한 통신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⁴¹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파견 노동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북한 당국의 담당 보위원을 통해 휴대전화 검열을 받는다. 이들에게는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만 가능한 2G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을 어기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기기를 압수당하고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⁴²

(3) 법률 통제

정보 저장매체의 종류와 공유 방법이 다양해지고,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북한 당국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2022년 개정하는 등 외부정보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면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 제한을 법제화했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많은 양의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유포했거나, 많은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열람하도록 조직·조장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4장 41조로 구성된 동 법률에는 법의 목적과 원칙 등 기본 사항, 반동사상문화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 대상, 반동사상문화 시청 및 유포 금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다.

⁴⁰ FVPAU11968

⁴¹ 2E54YT2145, YKDSNY2213, FVPAU11968

⁴² KQ9C5Q2261, CM8P8K0045

표 II-2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사명)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유포 행위를 막기 위한 투쟁을 벌여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함.
제3조	(반동사상문화배격의 기본원칙) 반동사상문화를 배격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임. 국가는 반동적인 출판 선전물을 유입·시청·유포하는 것과 같은 반사회주의적,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제압하고 견제하도록 함.
제7조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원칙) 반동사상문화를 유입·시청·유포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 엄한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함.
제27조	(괴뢰사상문화전파죄) 괴뢰(남한) 영화, 녹화물, 편집물, 도서, 그림, 사진 등을 시청·청취·보관한 자, 괴뢰 노래, 그림, 사진, 도안 등을 유입·유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함. 괴뢰 영화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유포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함.
제28조	(적대국 사상문화전파죄) 적대국 영화, 녹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시청·청취·보관한 자, 또는 적대국 노래, 그림, 사진, 도안 등을 유입·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함. 적대국 영화,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유포한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함. 많은 양의 적대국 영화,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유포했거나 많은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조장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함.
제32조	(괴뢰문화재현죄) 괴뢰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 창법(唱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괴뢰 서체로 인쇄물을 만든 자는 노동 단련형에 처함.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함.

일평생 당국으로부터 철저한 사상 통제를 받는 북한 주민들은 체제 보위에 어긋나는 사상을 가질 수 없고, 이를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다. 이색적인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접촉하게 되면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투·행동·의복·생활양식 등이 그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변화가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상 통제에 실패할 경우 주민들을 체제에 순응시킬 수 없고, 이는 곧 체제 보위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3조에도 ‘반동사상문화를 배격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 당국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뒤 주민들에게 이를 알

리기 위해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남한 드라마, 남한 말투와 옷차림 등을 사용하는 것 등을 배격하기 위한 법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강연 자료에서 이 법을 접한 적이 있는데 반동사상에 해당하는 행위 등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었다고 증언했다.⁴³ 또 다른 증언자에 따르면 인민반장이 자신의 집으로 인민반원들을 모두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조항을 쓰게 한 뒤, 이를 집으로 가져가 문에 붙여놓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2020년 12월 말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만들어지고, 뒤숭숭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보았기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진 후 시청을 자제하고 있을 때라 더 기억이 생생합니다. 인민반장이 자신의 집으로 인민반원들을 모두 모이게 한 후, 그곳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조항을 써서 자신의 집에 가져가 문에 붙여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용은) 괴뢰영사물을 보거나 유포시키면 최고 총살(사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⁴⁴

북한 주민들은 기업소, 인민반 등의 회의를 통해 제정된 법 조항을 하달 받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방송에서도 불순녹화물 유포, 남한 말 사용, 청바지 등의 옷차림, 정치적 발언 등의 이유로 적발되면 총살형, 노동교화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공개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온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김정은의 방침입니다. 자기 단위(기업소, 인민반 등)에서 회의를 열어 법 조항을 불러줍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지도 잘 모릅니다. 방송 같은 곳에서도 불순녹화물 유포, 괴뢰말 찌꺼기(남한 말), 괴뢰문화 옷차림(청바지 등), 정치적 발언 등 사유로 적발되어 총살형, 노동교화형 등에 처한다고 공개합니다.”⁴⁵

⁴³ TGCAEV2403

⁴⁴ SYKDH2214

⁴⁵ TEIJA2400

표 II-3 증언 사례 중 반동사상 행위 예시⁴⁶ (기록센터 조사 기준)

- 1)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행위
- 2) 신부가 결혼식에서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
- 3)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행위
- 4) 와인 잔에 와인을 마시는 행위
- 5) 여성이 장신구를 여러 개 하는 행위
- 6) 성(姓)을 '리(李)'가 아닌 '이'로 표기하는 것 등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실제로 외부정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모두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까지만 해도 가까운 지인들과는 외부정보를 공유하는 분위기였는데,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82연합지휘부가 외부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고, 근거법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⁴⁷ 법이 제정된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를 색출하기 위하여 가택수색 빈도가 잦아졌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전에는 1년에 2~3회 정도 가택수색을 했었다면, 2021년부터는 두 달에 세 번 꼴로, 더욱 엄격하게 가택수색을 실시했다는 것이다.⁴⁸

“2019년까지만 (외부정보를) 보고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만들어진 뒤 단속이 심해지면서 보지 않았습니다. (중략) 2019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여기가 공화국이 맞는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시의 친구 집에 가거나 하면 남한 영화를 누구나 보고 있었고, ‘거봐 다 더 재미있는 게 나한테 있어라고 말하면서 다른 파일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가 이런데 평양은 어떻겠나?’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나 「청년교양보장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단속된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을 보기도 했고, 109상무가 82연합지휘부로 변경되어 단속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중략) 김정은은 집권 이후에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싹 쓸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만들어서 사람들을 처벌하니 말입니다.”⁴⁹

⁴⁶ TGCAEV2403

⁴⁷ ONW4SH2402

⁴⁸ TEIEJA2400

⁴⁹ ONW4SH2402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시행 이후 코로나 기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가택수색 빈도가 매우 잦아졌습니다. (이전에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검사하는 정도였다면, (법 시행 이후에는) 두 달에 세 번 꼴로 가택수색을 들어와서는 구석구석 USB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방안을 싹 뒤졌습니다.”⁵⁰

2023년 기록센터 조사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으로 실제 공개처형이 집행되었다는 증인들이 수집됐다. 한 증언자는 2022년 황해남도에서 남한 노래·영화 시청 및 유포를 이유로 공개처형이 집행됐다고 진술했다. 이 증언자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된 이후 처벌이 더욱 엄중해져서 이전에는 남한 드라마·영화 등 외부정보를 시청했을 경우 노동교양처벌을 받았지만, 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시청하기만 해도 교화소에 가게 되었다고 한다.

“2022년 황해남도 ○○군의 광산에서 공개처형을 보았습니다. (처벌 대상자는) 농장원으로 나이는 22살입니다. 처형장에서 ○○군 재판소에서 나온 재판관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괴뢰놈들(남한)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되었다.’고 읊어줬습니다. 그런데 심문 과정에서 7명에게 유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중략) 김정일 때만 해도 시청하면 단련대를 갔습니다. 법 시행 이후로는 시청만 해도 교화소를 갑니다. 최초에 들어온 사람은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무조건 총살입니다. 유포를 한 사람은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이 당국을 겨냥한 내용이면 엄중하게 보고, 이색적인 출판물(성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의 일반적인 연속극 같은 경우 좀 경하게 보지만, 이것도 10년 이상 교화소를 갑니다.”⁵¹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을 이유로 공개처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3월과 4월에도 살인 등 강력범죄자와 함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들을 처형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50 TEIEJA2400

51 TEIEJA2400

“(공개처형을) 가장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2023년 2월경 ○○군 남새(채소)밭에서 공개처형입니다. 이외에도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으로 공개처형을 많이 합니다. 2023년 3월과 4월에도 공개처형했다고 들었습니다. 처형 대상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어긴 사람들과,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인한 대상자들입니다.”⁵²

「청년교양보장법」

북한 당국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에 이어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하며 청년들의 사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법을 제정하기 전부터 청년들의 외부정보 접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교양 성격의 처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에 대한 사상 통제 및 검열을 강화해 왔다. 이와 관련, 청년 포래집단을 중심으로 외부정보의 공유 및 전파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됐다.⁵³ 증언에 따르면 대학생이 컴퓨터 가방을 들고 길거리를 걸어가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 한 증언자는 사복을 입은 기관원이 불시에 ‘컴퓨터 등록증’⁵⁴을 요구했고, 별도의 장치를 통해 컴퓨터 내부 시스템을 확인했다고 했다.⁵⁵ 또 다른 증언자는 2017년 외부정보를 접한 청년이 사상투쟁의 대상이 됐고, 청년동맹은 그에 대해 교양처리를 결정했다고 했다.⁵⁶

북한 당국은 청년들이 외부정보를 체화(體化) 할 경우 사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은 외부정보를 흡수하는 속도가 빠르고 포래집단에서 정보를 쉽게 교류하거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청년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매체도 「청년교양보장법」에 대해 ‘사회주의 생활양식 확립을 위한 사

⁵² TEIEJA2400

⁵³ 00RIT62468, KJ7IFB2239, TPK8GF2281, DEJ6ST2342, XHQ3062395, FVPAU11968, K5ZJ5U1964, 7630R52099

⁵⁴ 컴퓨터 등록은 절차가 번거로워 개인에게 5~10달러를 주고 해당 기관에 맡기는데, 12×25cm 정도 크기의 종이에 컴퓨터 형태, 등록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등록증을 컴퓨터 바닥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고 한다. 등록증이 없는 컴퓨터를 소지했다가 단속에 걸릴 경우 20~25달러 정도의 뇌물을 줘야 이를 무마할 수 있다는 진술이 있었다. (5VRQH72482)

⁵⁵ 5VRQH72482

⁵⁶ 43Z03T0583

업에서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과 기관·기업소·단체·공민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청년교양보장법」의 요구를 어기는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라고 보도했다.⁵⁷ 실제로 이 법에서는 청년들이 반제국주의 의식으로 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식이 아닌 노래나 춤, 옷차림·몸단장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이런 행위를 한 청년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⁵⁸ 그리고 법을 어길 경우에는 정상(情狀)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명시하고 있다.⁵⁹

표 II-4 「청년교양보장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조	(청년교양보장법의 사명) 청년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청년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데 이바지 함.
제10조	(반제계급의식 무장) 청년들은 사회주의원칙을 지키고 제국주의 등에 반대하여 투쟁하며,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에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계급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함.
제39조	(외모단장) 청년은 민족의 미풍양속과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머리단장과 옷차림을 항상 단정하고 고상하게 하여야 함.
제41조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1.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강력 범죄행위 2. 성(性)불량행위, 음탕한 행위, 매음행위, 도박행위 3. 종교와 미신행위 4. 불순출판선전물을 유입, 제작, 복사, 보관, 유포, 시청하는 행위 5. 마약을 제조, 밀매, 보관, 사용하는 행위 6. 훔치기, 빼앗기, 속여가지기, 횡령행위를 비롯하여 국가 및 개인재산을 약취하는 행위 7. 구타, 폭행, 패싸움을 비롯한 사회공동생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8. 끼리끼리 몰려다니거나 패를 맺는(조직하는) 행위 9. 가정사정과 신병을 구실로 군사복무를 거부하거나 군사복무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조혼, 신체 검사와 생활 평정을 부당하게 받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도주하는 것과 같은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하거나 성실히 참가하지 않는 행위 10. 무직건달을 부리거나 조직생활에서 이탈되어 떠돌아다니는 행위 11. 우리나라 노래를 왜곡하여 부르거나 우리 식이 아닌 춤을 추는 행위 12.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말투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 13. 이혼, 조혼을 하거나 사실혼생활을 하는 행위 14.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옷차림과 몸단장, 결혼식을 하면서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흐려놓는 행위 15. 저속하고 몰상식하게 행동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 16. 그밖에 공화국법에 저촉되는 행위

57 조선중앙TV, 2022.2.5.

58 「청년교양보장법(2021)」 제41조~제44조

59 「청년교양보장법(2021)」 제45조

구분	주요 내용
제44조	(신고 또는 통보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청년들에서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이 나타나거나 청년교양보장 질서를 어기는 현상들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함.
제45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자와 개인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부과함.

*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 중 정보 통제 관련 항목

북한 당국은 이러한 새로운 법을 적용하여 젊은 층을 대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욱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증언에 따르면 청년들에 대한 단속은 청년동맹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년동맹이 직장 및 대학교에서 청년동맹원들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걷어가 검열 후 돌려준다고 한다.⁶⁰ 한편, 학생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외부정보에 대한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2020년 초 북한 당국은 학부모들에게 ‘자택에서 자녀들이 불순녹화물을 시청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일명 ‘비사회주의’ 현상인 영화나 드라마를 접한 사람들의 말투, 옷차림, 머리모양 등을 (주민들이) 따라하니 단속을 심하게 합니다. 또 당국에서 말하기로는 외부정보 유입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2020년 2월 말 또는 3월 초경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각서를 받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불순녹화물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당국은 주민들 사상이 나쁜 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알게 되어 힘들어지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입니다.”⁶¹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길거리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세우고 몸수색을 했습니다.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차림새나 외모가 북한말로 ‘불성실하게, 특색 있게’ 하고 다니는 경우 몸수색을 했습니다.”⁶²

⁶⁰ 5VRQH72482, ROD6PD2423

⁶¹ HNTCJ42201

⁶² TEIEJA2400

「평양문화어보호법」

북한은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 주민들의 언어사용을 통제함으로써 또 다른 방식으로 주민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기 전에도 주민들의 언어사용을 통제해 왔다. 2017년 휴대전화 검열 시 남한 말투, 기호 언어, ‘우리식’이 아닌 말과 말투 사용이 검열 대상이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⁶³ 2018년에도 불시에 휴대전화 단속을 실시했는데 남한식 어투를 사용한 기록은 검열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손전화기를 들고 걸어가면 단속원들이 와서 손전화기를 다 뒤져봅니다. 주소록도 단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 주소록에 ‘아빠’라고 쓰면 우리식이 아니라고 단속합니다. 아빠라는 말은 북한에서 안 쓰는 말이고 남한식입니다. 주소록에는 이름만 있어야지 그 앞에 ‘예명(별명)’을 붙여어도 안 됩니다. 선생님도 ‘쌤’이라고 쓰면 단속을 합니다.”⁶⁴

「평양문화어보호법」은 특히 ‘남한식 말투와 호칭’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다. 외부정보를 접촉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의 언어 사용을 법적으로 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 법령에서는 남한 말을 ‘괴뢰말’이라고 칭하면서, 남한 말·말투의 사용과 유포를 엄격하게 금지한다.⁶⁵ 남한 말은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된 ‘쓰레기말’이라고 정의하며 철저히 경계하고 혐오하고 있다.⁶⁶ 혈육관계가 아닌 사이에 ‘오빠’라고 부르는 것, 직무 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 것 등은 남한식 표현이며, 남한식 서체·

63 2ITQJ51282

64 4TYPAG0762

65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제5조 (괴뢰말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위한 전사회적인 투쟁원칙) 괴뢰말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제도의 운명, 우리 인민과 후대들의 사활이 걸린 심각한 정치투쟁, 계급투쟁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괴뢰말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전사회적으로 괴뢰말투를 흉내내고 따라하는데 대하여 배척하면서 서로 호상 간 최대로 경계하고 항상 각성하도록 한다.

제6조 (괴뢰말투를 퍼뜨리는 자들에 대한 법적처벌원칙) 국가는 괴뢰말투를 본 따거나 유포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괴뢰문화에 오염된 쓰레기로, 범죄자로 낙인하고 그가 누구이든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극형에 이르기까지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66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제2조 (정의) 2. 괴뢰말은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현지화되어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써 세상에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이다. (이하 생략)

역양 등을 사용하는 것은 노동교양처벌 또는 노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표 II-5 「평양문화어보호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조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사명)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남한 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를 배격하며, 사회주의적 언어생활 기풍을 확립하여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는 데 이바지 함.
제58조	(괴뢰말투사용죄) 남한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남한 말투 통보문(문자메시지), 전자우편물(이메일)을 주고받거나 남한 말 또는 남한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만든 자는 6년 이상 노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선고 가능
제59조	(괴뢰말투유포죄) 남한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었거나, 남한 말 또는 남한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 노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선고 가능
제60조	(벌금처벌)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0만~150만 원, 공민에게는 10만~15만 원의 벌금 부과 1. 일본어 등 비규범어로 가격표, 차림표, 안내표, 광고 등을 게시한 경우 2. 남한 말투 제거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 3. 자녀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바로 하지 않아 남한 말투를 따라하는 경우 4.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외래어로 말하거나 글을 썼을 경우 5. 새용어를 언어사정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여 언어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경우
제61조	(노동교양처벌) 제60조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비규범적인 언어요소의 사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처벌 선고 가능
제62조	(무보수노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과 같은 경우 책임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보수 노동처벌 선고 가능 1. 국경검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남한 말이 유입된 경우 2. 강하천, 바다 오물 취급·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남한 말이 유입될 가능성을 조성한 경우 3. 다른 나라 출판선전물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남한 말이 유입될 가능성을 조성한 경우 4. 인터넷 이용 감독·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남한 말이 유포된 경우 5. 남한 말을 없애기 위한 교양·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남한 말투가 사용·유포된 경우 6. 컴퓨터망 이용 통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남한 말로 된 가명(닉네임)을 쓰는 행위가 나타난 경우
제63조	(폐업처벌) 남한 말 또는 남한 서체로 표기된 물건을 진열, 판매, 은닉한 경우 폐업
제64조	(몰수처벌) 동 법령을 위반한 범죄 및 위법행위에 이용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돈·물건은 몰수

다. 처벌

북한 내 외부정보가 널리 퍼짐에 따라 북한 당국의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와의 강도 높은 투쟁’을 내세우면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외부정보를 접했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더 이상은 공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아울러 외부정보 통제에 대한 강연회 자료의 하달 횟수가 월 1회에서 2~3회로 늘어났고, 처벌 강도도 한층 높아졌다고 한다.⁶⁷ 특히 남한 영화나 가요 등의 정보를 접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1) 2017년 이전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남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왔다. 이는 외부정보 유입의 증가, 공유 방식의 변화와도 연관된다. 2000년대 중반 북한 주민들 사이에 외부정보 공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주민들의 말투, 생활양식, 옷차림에 변화가 나타나자 북한 당국은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고, 특히 남한식 말투, 어휘를 사용하는 것 등을 단속했다.⁶⁸ 한 증언자는 2015년경부터 ‘적국(남한)의 영화, 말투 등을 배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⁶⁹

단속과 처벌의 기틀이 마련되기 전, 즉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적발된다 해도 쉽게 사건을 무마할 수 있거나,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⁷⁰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외부정보 공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주민들의 말투, 생활양식, 옷차림 등에 변화가 나타나자 북한 당국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게 된다. 실제로 2014~2015년경에는 외부정보 접촉이나 저장 매체 소지로 단속에 걸릴 경우, 무마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00위안 안팎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⁷¹

⁶⁷ 1BQ5TD2412, 5VRQH72482

⁶⁸ 2ITQJ51282, 4TYPAG0762, 5VRQH72482, 00RIT62445, YKDSNY2213

⁶⁹ U47HAV2314

⁷⁰ 1BQ5TD2424, 93VI9U2478

⁷¹ DFM95V2357, ER4LK20082, NHVN9E0241, I35JRF0185, 5CFGOG1270

또한 2015년 양강도에서 중국 영화 CD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담배 1보루를 주고 해결했다는 사례,⁷² 미국 영화 1편이 단속에 걸려 50위안(약 8달러) 정도의 뇌물을 주어야 했던 사례 등이 수집됐다.⁷³

(2) 2017년 이후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특히 2017년부터 그 양상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⁷⁴ 한 증언자는 2017년부터 ‘비사회주의 현상을 없앨 데 대한 방침’이 지속적으로 내려와 외부정보의 영향을 받은 생활양식 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고 진술했다.⁷⁵ 또한 2019년 ‘공개폭로모임’에서 남한 드라마나 가요를 시청·청취한 20대 남녀 15명에게 1~3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다.⁷⁶ 또한 2018년 남한 드라마 파일을 지인에게 공유해 주었다가 단속에 걸려 노동교화형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증언,⁷⁷ 2019년 남한 드라마를 지인들에게 공유해 준 것이 적발되면서 노동교화형 4년이 선고되었다는 증언 등이 수집됐다.⁷⁸

“특히 2017년부터 ‘비사회주의 현상을 없앨 데 대한 방침’이 지속적으로 내려왔고, 의복 등 생활양식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여맹규찰대’도 조직되어, 여맹원들이 전보다 서양식을 많이 따라한다면 이를 하지 못하게 교양하고 단속했습니다. 외부정보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검열들도 점차 강해졌습니다. 담당 보위지도원도 수시로 검열한다며 집을 찾아왔는데 다 뇌물수수 목적이었고 이러한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⁷⁹

하지만 이렇게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 혐의로 단속에 걸렸더라도 뇌물로 사건을 무

⁷² NHVN9E0241

⁷³ VPAR1A1430

⁷⁴ FNC9SL0409, 4NBSJ30408

⁷⁵ 4BKDIP2254

⁷⁶ 2PBGNC1384

⁷⁷ HNTCJ42201

⁷⁸ 5COPUN1290

⁷⁹ 4BKDIP2254

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⁸⁰ 특히 2017년 이후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 등에 대한 방침이 여러 차례 하달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그와 비례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한 뇌물의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는 공통된 진술이 수집됐다.⁸¹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기 시작한 2017년경부터는 뇌물의 액수가 커졌고, 특히 한국이나 미국과 관련된 정보는 다른 국가의 정보보다 더 많은 뇌물을 써야 무마시킬 수 있었다.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2018~2019년 인도 영화는 1,000위안, 중국 영화는 600위안 정도의 뇌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⁸² 2017년 미국 영화를 소지하다가 적발된 경우 2,000위안, 2019년에는 5,000위안 정도가 필요했다는 진술이 수집됐다.⁸³

특히, 한국 관련 정보의 경우 기관원들이 요구하는 뇌물의 액수가 특히 컸다. 남한 노래의 경우 2018년에는 5,000위안, 남한 드라마·영화 등은 10,000위안 이상의 뇌물이 있어야 무마가 가능했다고 한다.⁸⁴ 또한, 2019년 남한 드라마 유포로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던 중 안전부 부장 등에 7,000위안을 상납하고 풀려났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같은 시기에 남한 영상물을 보다가 적발되어 10,000달러를 뇌물로 쓰고 사건을 무마할 수 있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⁸⁵ 최근 사례로는 2022년 단지 남한 노래가 담겨있는 메모리를 주웠다는 이유로 북한 돈 100만 원을 주고 무마했다는 증언이 있었다.⁸⁶ 뇌물의 액수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고 사례에 따라 다른 것은 단속 직후 그 자리에서 무마하느냐, 109상 무까지 동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이후 입막음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한다.⁸⁷ 그러나 점차 무마하기 위한 뇌물의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증언자들의 공통된 진술이었다.

⁸⁰ OORIT62460, YNNL9N2323, HOF4LU0739, PNPVJ41087, 7XXJ8I1937, RU1F6F2209, 10O58G2205, K5ZJ5U1964, 3AE12R1871, DBZIQP2152, TZURKG1073, 6DCJY01788

⁸¹ OORIT62434, 13PN7Y2325, TGCAEV2403, 2K3MCU1868, 0M5DQL1786, MNH2KG2026

⁸² SOONAT0744, TGCAEV2403

⁸³ MNH2KG2026, KYY0NW0800, 0M5DQL1786

⁸⁴ OWQVLA0773, 1BX4NN0758, AWQ1RI1386, HNTCJ42201, 1CHLPG2211, MNH2KG2026

⁸⁵ K5ZJ5U1964, YKDSNY2213

⁸⁶ UYSKRB2399

⁸⁷ SYKDH2214

“2019년 2월경 외사촌오빠가 남한 드라마 유포혐의로 체포되어 보안서에 구금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남한 드라마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사람이 단속되어 오빠가 유포자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보안서에서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외가 친척들이 7,000위안(당시 집 한 채 가격)을 보안서 서장을 포함해 여러 명에게 뇌물을 줘서 처벌 없이 석방되었습니다. 유포죄의 경우 그 죄악이 크기 때문에 큰돈이 들었습니다.”⁸⁸

(3) 기타

미성년자에 대한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에 대한 처벌도 점차 강화됐다. 미성년자의 경우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 사실이 발각되면 대부분 교양처분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들 앞에서 공개비판을 받거나 청년동맹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⁸⁹ 실제로 2014년 남한·미국 드라마를 시청하던 학생이 109연합지휘부의 단속에 적발되어 청년동맹에서 출맹(出盟) 당했고 군 입대 불허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⁹⁰ 2017년에는 친구에게 남한 드라마를 공유했다가 109연합지휘부에서 조사를 받고, 학교에 범죄사실이 통보되어 학생들 앞에서 공개비판을 받았으며, 그 결과 퇴학당했다는 사례도 있었다.⁹¹ 최근에는 외부정보를 접한 미성년자들에게 노동교화형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는 사례도 수집됐다.⁹² 한 증언자는 2015년부터 아동들이 ‘불순녹화물’을 많이 보기 시작하자 연합지휘부가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미성년자가 단속에 걸려 소년교양소에 수감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했다.⁹³ 아울러 2018년 함경북도 무산군에서는 고급중학교 학생 두 명이 남한 영화, 일본 영화,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소년교양소에 수감된 사례도 있었다.

⁸⁸ K5ZJ5U1964

⁸⁹ CW14HP2075, 3AE12R1871, X90TSD0888, PICFQL1154

⁹⁰ X90TSD0888

⁹¹ 18QU5P1660

⁹² P4ILM91470, OIHR9O0138

⁹³ V2FXOT0757

“2018년 8월 함경북도 무산군 고급중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남한, 일본 영화,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교화형 10년 이상을 받고 소년교화소에 갔습니다. 당시 중학생들을 소년회관에 모아놓고 109상무, 재판소,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학생 2명을 비판무대에 세워 공개재판을 하는 것을 목격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불순녹화물 시청을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교화형 10년 이상 선고한 경우는 그때가 처음이라고 공개재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⁹⁴

⁹⁴ P4ILM91470

2. 강제복송

탈북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혹은 자유를 얻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하지만, 중국에 정착하더라도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한다. 중국 등에 일정 기간 체류하다가 무사히 한국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체포되어 강제로 송환되는 경우도 있다.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제1항은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도 ‘고문 받을 위협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민들은 강제로 복송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23년 10월과 2024년 4월, 중국 내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복송되었다는 언론보도 이후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을 강제적으로 복송하는 행위는 「자유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로이 출국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제복송과 조사 과정에서 복송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기관원들이 가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으며, 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폭력과 강제낙태도 자행되고 있었다. 또한 이후에도 복송된 주민들은 ‘현지공개재판’⁹⁵을 통해 탈북한 이유를 비난받거나, 재탈북을 우려해 사생활을 감시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 당했다.

가. 복송 후 인권 침해

강제복송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유형으로는 고문과 가혹행위, 강제노동, 현지 공개재판, 차별과 감시 등이 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또

⁹⁵ 「형사소송법」(2021) 제282조 (현지공개재판의 조직)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 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와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이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다.

한 아동도 성인과 동일한 여건에서 조사하고 구금하는 등 다양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1) 고문·가혹행위

북한은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의 수사·예심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강제복송된 주민들에게 고문을 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송 중 구금되는 시설과 형사소송절차 중 구류·구속되는 시설에서 가혹행위나 폭행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국행 시도, 기독교 접촉, 남한 방송 시청·청취 등의 행위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은 더욱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 강제복송 경험이 있는 여성 증언자는 조사를 받을 때 ‘중국에서 교회를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 거짓이라며 자백을 강요받았고, 보위원에게 폭행당했다고 했다.⁹⁶ 다른 여성 증언자는 2009년 강제복송되어 보위부에서 열흘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기관원으로부터 매일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했다. 조사를 받던 중에 당황하여 중국말을 한다거나, 중국 체류 중 남한 방송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기관원들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2017년 복송되어) 온성군 보위부에서의 조사를 받을 때, 제가 이름, 나이, 등록 거주지 등을 모두 거짓으로 이야기 했고, 부모가 없는 고아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거짓말했기 때문에 저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서 매일 폭행을 당했습니다. (조사할 때 보위원은) 주먹으로 뺨이나 얼굴과 몸을 사정없이 때렸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습니다.”⁹⁷

또한, 기관원들은 복송자의 탈북 동기와 제3국에서의 생활을 조롱하며 일상에서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복송된 여성 증언자는 보위원이 “너희들은 나라를 배반하고 더러운 돈을 받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갔다. 나라를 배반한 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새끼들은 죽어야 한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진술했다.⁹⁸

⁹⁶ BPM8VY2125

⁹⁷ 226P8S0640

⁹⁸ L1AHMR0503

이와 함께 구금된 곳에서 고정자세, 반복 동작 등을 강요받았고, 폭행을 당하거나 단체 기합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⁹⁹ 2017년 강제북송된 여성 증언자는 집결소에서 계호원으로부터 주먹으로 수십 차례 가격 당했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 화장실에 갔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진술했다.¹⁰⁰ (‘IV-4. 피구금자의 권리’ 중 ‘가-(3) 피구금자에 대한 가혹 행위’ 참고)

(2) 여성 송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

강제북송된 여성들의 인권은 특히 열악했다. 구금·조사기관에서 기관원 등에 의한 성(性)적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무분별한 체강검사(자궁검사),¹⁰¹ 구금 중 성추행 및 성폭행, 성희롱, 강제낙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체강검사

북송된 여성들은 세관이나 보위부에서 알몸검사 또는 체강검사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에 따르면 체강검사는 북송자들이 숨긴 돈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2013년 강제북송 경험이 있는 여성 증언자는 보위부에서 여성 기관원으로부터 체강검사를 당했다고 진술했다.¹⁰² 2018년 강제로 북송되었다는 여성 증언자도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체강검사를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¹⁰³

“(2017년 강제북송되어 ○○ 비법월경집결소에서) 알몸검사와 체강수색을 당했습니다.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음이 힘들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¹⁰⁴

⁹⁹ ASQN3S2398, QBLB242355, 1BQ5TD2470, Q7JYS80578, RYSRZP1824, A9ZFAH1637

¹⁰⁰ Z4F5JE2331

¹⁰¹ 체강검사(體腔檢査, body cavity searches)는 동물의 체벽과 내장 사이에 있는 빈 곳(체강)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구금시설에 구금된 사람을 대상으로 항문 등을 육안이나 기계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¹⁰² JUZ0TT2362

¹⁰³ Z4F5JE2331

¹⁰⁴ PXKT6W0772

성폭력

복송 과정에서 기관원들은 여성 송환자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일삼았으며, 이는 기관에 상관없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복송된 여성 증언자는 평안북도 신의주 보위부 구류장의 계호원들에게 ‘중국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니까 좋았냐?’는 말을 들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2003년 송환된 여성 증언자는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의 조사 담당 보위원에게 ‘중국 남자, 북한 남자와의 성관계를 비교해 보라.’는 성희롱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¹⁰⁵ 2007년 복송된 여성 증언자는 자강도 ‘비법(불법) 월경자집결소’의 눈발에서 여성 수감자 모두가 탈의 상태로 포복 전진을 해야 했고, 이를 남자 경비대원들이 지켜보았다고 진술했다. 2009년 강제복송되어 함경북도 집결소에 들어간 여성 증언자는 기관원들이 여성 수감자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했다.¹⁰⁶ 또 다른 여성 증언자도 2013년경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결소에서 계호원들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고 진술했다.¹⁰⁷

복송된 수감자들에 대한 성폭행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에 따르면, 1998년 함경남도 안전국 집결소 소장은 그곳에 구금되어 있던 여성을 따로 불러 성폭행했다고 한다.¹⁰⁸ 또한 2008년에 복송된 한 여성 증언자는 거주지의 안전부에서 조사담당 안전원과 계호원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2013년 강제복송되어 신의주시 보위부에 구금되어 있던 여성 증언자는 보위부 비서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는 다른 수감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었다고 진술했다.¹⁰⁹

복송되어 구금된 여성들은 기관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 때문에 이를 문제 삼거나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복송되어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 구금된 여성 증언자는 성폭행을 하려던 계호원을 거부했다

¹⁰⁵ BPM8VY2125, W1133Z1503

¹⁰⁶ 2ZREY21430, YHH9BI0748

¹⁰⁷ CSPD370754

¹⁰⁸ OT95801352

¹⁰⁹ GOEII91237, QHDIXY0471

가 동료 구금자들과 함께 벌을 받았다고 했다.¹¹⁰ 2014년 강제복송된 뒤 거주지의 안전부에 구금되어 예심을 받던 여성 증언자는 계호원들이 상습적으로 수감자를 성추행해왔다는 사실을 예심원에게 말했다가 계호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수감자를 목격하기도 했다.¹¹¹

“(동료 수감자가) 새벽 1시경에 울면서 감방으로 들어와서는 저에게 ‘비서가 찾으니 남자 직원 탈의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동료 수감자를 성폭행하는 것) 때문에 추궁을 당할까 봐 무섭기도 하고 가기 싫었으나 그곳에서 비서가 부르는데 가지 않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가서 ‘본 것이 없다’고 다시 말하고 빌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남자 직원 탈의실)에서 저 역시(비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¹¹²

강제낙태

복송된 여성 가운데 중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경우에는 구금 중 강제낙태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강제적으로 낙태를 당한 곳도 안전부, 보위부, 집결소, 노동교양대 등 다양한 기관이었다. 강제낙태는 복송 임신부에 대해 이뤄진다는 점, 기관원의 인솔 하에 병원이나 구금시설 내 의료시설에서 이뤄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북한 당국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의료인으로부터 득문했거나 직접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진술들과도 일치한다. 2008년 함경북도 시·군 단위의 종합진료소에서 근무했던 증언자도 산부인과 의사(준의)로부터 ‘복송 여성들을 강제로 낙태 수술했다’는 경험담을 들었다고 진술했다.¹¹³ 2015년 전후로 함경북도의 시·군 단위 인민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던 여성 증언자 또한 당시 산부인과 의사와 동행하여 안전부에서 복송된 여성의 낙태수술을 했다고 진술했다.¹¹⁴

¹¹⁰ 226P8S0640

¹¹¹ 59MUOR0570

¹¹² QHDIXY0471

¹¹³ Q8799U0026

¹¹⁴ TB5CFI0524

강제낙태를 실제 경험한 사례도 수집됐다. 2008년 북송되어 자강도 만포시 소재의 비법월경자집결소에 구금되어 있던 증언자는 임신 4개월이었을 때 만포시의 인민병원에 가서 낙태수술을 받아야 했다. 당시 집결소 소장은 중국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낙태를 지시했다.¹¹⁵ 2009년 강제북송 당시 임신 3개월이었던 여성 증언자도 평안북도 비법월경자집결소 내에 설치된 산부인과에서 강제낙태를 당했는데, 무조건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¹¹⁶ 2010년 강제북송되어 거주지 분주소에서 조사를 받았던 여성 증언자도 임신 8개월이던 당시, 낙태를 하면 병보석으로 풀어주겠다는 회유와 협박으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¹¹⁷

“(저와 병원에 같이 간) 담당 보안원이 ‘아이를 지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의사가) 바로 배꼽 아래에 주사를 놓더니 24시간 후에 병원으로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분주소로 돌아가서 있다가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담당 보안원이 모두 알아서 했습니다. 확인서 같은 것에 의사가 서명을 했고, 같은 문서를 인민반장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제가 죽은 아이를 낳았고, 그 문서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 아이를 지웠다는 확인 장을 찍었습니다.”¹¹⁸

이외에 강제낙태를 목격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2002년 강제북송된 남성 증언자는 같이 북송된 여성 5명이 임신 상태였는데 모두 중국인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것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낙태를 당했다고 진술했다.¹¹⁹ 2003년 강제북송된 여성 증언자도 같이 북송된 여성이 임신 6개월 정도였을 때 함경북도 비법월경자집결소 인근 병원에서 강제낙태를 당하고 들어온 것을 목격했고, 자신이 기관원의 지시로 태아의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했다.¹²⁰ 2005년 탈북 후 북송되어 안전부에 수감되어 있던 중, 임신부가 강제낙태를

¹¹⁵ F0GD770601

¹¹⁶ J1V7AH0058

¹¹⁷ 9LODIZ0514

¹¹⁸ EXK39G0160

¹¹⁹ ABNTWD0293

¹²⁰ M9MJ8G0441

당한 것을 목격했다는 한 여성 증언자는 안전원으로부터 ‘중국 아이는 북한이 키워줄 수 없으며, 종자를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했다.¹²¹ 2016년 강제복송되어 양강도 비법월경자집결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여성 증언자는 임신한 상태로 복송된 여성이 인근 시(市) 인민병원 산부인과에서 강제낙태를 당하고 돌아온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¹²² 2017년 복송된 여성 증언자도 같이 복송된 여성이 평안북도 비법월경자집결소에 구금된 상태로 인근 병원에 가서 강제낙태를 당한 사실을 자신에게 말했다고 했다.¹²³

표 II-6 강제복송 후 강제낙태 등 직접 경험 사례 (기록센터 조사 기준)

연번	피해 시기	임신 개월 수	피해 장소	구금·지시 기관
1	1999년	5개월	함경북도 온성군 인근 인민병원	함경북도 온성군 노동교양대
2	1999년	7개월	자강도 강계시 산원(산부인과)	자강도 만포시 보위부
3	2001년	8개월	함경남도 산원	함경남도 함흥시 성천강구역 보위부
4	2001년	조산 후 살해	양강도 김형직군 인민병원	양강도 김형직군 안전부
5	2003년	7개월	평안북도 보위부 인근 병원	평안북도 보위부
6	2004년	9개월	평안북도 신의주시 인근 인민병원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결소
7	2005년	8개월	함경북도 회령시 산원	함경북도 회령시 노동교양대
8	2006년	3개월	평안북도 신의주시 인근 인민병원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결소
9	2007년	8개월	평안북도 신의주시 인근 인민병원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결소
10	2008년	4개월	자강도 만포시 인근 인민병원	자강도 만포시 집결소
11	2009년	3개월	평안북도 집결소 내 산부인과	평안북도 집결소
12	2010년	8개월	함경북도 청진시 제철병원	함경북도 청진시 안전부
13	2010년	5개월	양강도 혜산시 인민병원	양강도 혜산시 도 보안국
14	2010년	4개월	평안북도 신의주시 인근 인민병원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결소

더욱이 임신부들이 강제낙태를 당한 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07년 임신 8개월 상태로 강제복송된 여성 증언자는 평안북도 집결소에 구금되었다가 위생지도원의 인솔로 인근 병원에서 강제낙태를 당했고, 구금시설로 돌아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에 동원됐다고 했다.¹²⁴

¹²¹ 6NW0CC0535

¹²² 4G8QSH0924

¹²³ 8E4Q2W1478

¹²⁴ LJTQAS1561

(3) 강제복송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

강제복송된 아동의 처우도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북한은 강제복송된 미성년자에 대해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7조 (가)호는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호에서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¹²⁵

복송 과정에서 아동이 성인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거나 조사를 받고 체강검사를 당했으며, 법적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003년 강제복송된 여성 증언자는 14세 때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서 성인과 똑같이 체강검사를 받았고, 구금되어 있는 동안 성인과 분리 수용되지 않았으며 노동에도 동원됐다고 진술했다.¹²⁶ 또한 2019년 강제복송된 여성 증언자는 당시 13세였지만, 성인과 같은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었고, 당시 10세 아동도 성인과 함께 구금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¹²⁷

“(제가 13세 때) 같이 복송된 성인 여성 여러 명과 함께 한 공간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 여성들 모두 옷을 벗도록 했습니다. 옷을 벗도록 지시한 사람은 여성 보위원 2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소지품 검사를 먼저 한 다음 머리카락 속이나 항문, 질 내부를 검사했습니다. 여성 보위원은 의자를 하나 가져다 놓고는 1명씩 의자에 앉게 하거나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질 내부를 살피볼 때는 위생장갑을 끼지 않거나 손을 씻지도 않은 상태로 여러 사람을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원이 이렇게 여성의 질 내부나 항문까지 살피보는 것은 돈이나 금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기관원은 제게도 돈을 숨겼는지 물었고, 저는 없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¹²⁸

¹²⁵ 동 협약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한다.

¹²⁶ PQ59JJ2344

¹²⁷ OORIT62468

¹²⁸ PQ59JJ2344

예외적으로 복송된 미성년자를 분리하여 수용하고, 체강검사 등을 하지 않았던 경우도 일부 있었다. 1997년 강제복송 경험이 있는 증언자는 당시 자신의 나이를 16세라고 말해서 ‘927구호소’¹²⁹로 이송되었다고 했다.¹³⁰ 2015년 복송된 여성 증언자는 당시 11세 아동을 성인과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¹³¹

강제복송된 아동에 대한 처벌 기준은 명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처벌 대상의 연령과 스스로 탈북을 결정했는지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¹³² 한 여성 증언자는 가족과 다툼 후 탈북했지만, 2016년 15세 때 강제복송되어 ‘비법국경출입죄’(‘비법월경죄’, ‘국경비법출입죄’)¹³³로 1년 4개월의 노동교화형을 받았다고 했다.¹³⁴ 반면 어머니를 따라 탈북했다가 2003년~2005년 사이 두 번 강제복송되었음에도, 14세 아동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었다.¹³⁵

“2016년 복송 당시 여동생의 나이는 15세였습니다. 여동생은 복송된 후 비법국경출입죄를 이유로 교화형 1년 4개월을 받았습니니다. 14세 미만의 경우만 아동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하지 않고 그 이상은 교화형도 가능합니다. 북한에서 14세 이상은 성인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검찰과 지도원 등 법일군들이 이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여동생이 교화소를 출소하고 나서 겪은 일을 말해주었는데, 성인과 같은 감방에서 고정자세를 강요받았고 대소변도 허락을 받고 2시간마다 10분만 제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¹³⁶

129 ‘927구호소’는 직장이탈자 및 부랑자 등 소위 ‘꽃제비’를 단속하는 기관인 ‘927연합지휘부’에서 단속된 자들을 임시 수용하는 보호시설로 보인다. 복송된 후 거주 지역의 기관으로 이송되기 전 임시 수용시설로도 이용한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 (ZFT15G1121, BXWVLR0727, S2HYVY1296, DXQLXA2122, JV3LT02350)

130 JV3LT02350

131 8IURL2452

132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은 14세 미만의 미성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제48조(아동에 대한 형사책임추궁 및 사형금지) 14살에 이르지 못한 아동에게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 이상에 이른 아동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9조(사회적 교양처분의 적용) 14살 이상에 이른 아동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아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아동과 차별하지 않는다.

133 「형법」(2022) 제260조 (국경비법출입죄) 국경을 비법적으로 출입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경을 비법적으로 출입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134 HKT6IU1075

135 JUZ0TT2446

136 HKT6IU1075

(4) 현지공개재판과 사생활 감시

복송된 탈북민들은 공개재판이나 감시를 받으며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북한은 공개재판제도를 주민교양을 위한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와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이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하고 규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강제복송자의 경우 소위 ‘군증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해’ 현지공개재판이나 공개폭로모임 등을 통해 범죄 행위와 처벌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남성 증언자는 2012년에 강제복송되어 다니던 직장의 운동장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고 진술했다.¹³⁷ 또한 2016년에 강제복송된 남성 증언자는 거주하던 지역의 중학교 운동장에서 주민 150여 명이 보는 가운데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공개재판을 받았다고 했다.¹³⁸

“(도강 사실을 자수했다가 방면된 후 다시 체포되어) 첫 재판을 2015년 5월 11일에 받게 되었는데, ○○군 장마당 앞에서 저와 함께 탈북했던 다른 사람들까지 공개재판을 받았습니다. 장마당 앞에 책상 등을 가져다 놓고 판사, 검사, 참심원, 변호사가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관이 제가 지은 죄를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잘못을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제가 인정한다고 하자 저에게 교화소 6년 8개월을 선고한 뒤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¹³⁹

공개재판과 폭로의 대상이 되었던 강제복송자들은 대중 앞에서 비난을 받고 느껴야 했던 모멸감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한 증언자는 2011년 두 번째 강제복송되었다는 이유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개투쟁’을 당해야 했는데, 간첩을 잡은 것처럼 떠들썩하게 비판하는 것이 당황스러웠다고 진술했다.¹⁴⁰ 2015년 강제복송된 여성 증언자는 재판을 받기 전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공개폭로 모임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이를 방청하여 매우 힘들어 했다고 증언했다.¹⁴¹

¹³⁷ 9WSCLM1542

¹³⁸ M7EQE91399

¹³⁹ 7TUMOA1406

¹⁴⁰ 10KZQ70838

¹⁴¹ 1JU8U71993

도강과 탈북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아야 했으며, 차별을 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시자는 담당 안전원, 보위원, 통보원, 정보원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¹⁴² 또한 복송된 사람의 가족들까지 감시의 대상이 된 경우도 있었는데, 2017년 복송된 여성 증언자는 담당 보위원이 노골적으로 가족들의 동태를 파악하려고 했고, 불시에 집으로 찾아와 가족들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¹⁴³ 또한 비법월경죄로 교회소에 수감되었던 여성 증언자는 2018년 출소 후 지속적으로 감시를 당했다고 했다.

“2013년 강제복송되어 노동교화형 5년을 받고 2018년까지 전거리 교회소에 구금되었습니다. 출소 후 인민반장은 물론 담당 보안원, 구역 보안원이 감시했습니다. 당시 고모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담당 보안원과 구역 보안원이 찾아와서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비법월경에 대한 죄값은 이미 교회소에서 모두 치렀음에도 감시를 한다는 것이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¹⁴⁴

나. 강제복송 과정과 처벌

탈북민은 강제복송으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 탈북 후 중국에 체류하다가 체포된 탈북민들은 복송되면 고문 받을 위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복송됐다. 또한 탈북 시 인신매매 피해자였던 경우, 생계 위기 등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한 경우 등에도 북한 당국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1) 복송 과정

일반적인 복송 경로와 처벌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출국한 뒤 중국에 체류하다가 체포되면 중국의 치안담당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북한 세관(출입국담당 기관)으로 보내져 다시 국가보위성의 조사를 받는다. 그다음 북한으로 송환되어 이송된 지역의 보위부와 집결소 등에서 거주지 안전부 및 보위부의 조사를 받은 뒤, 형사소송 절차에 들어가거나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¹⁴² 67KL2N0678, 00RIT62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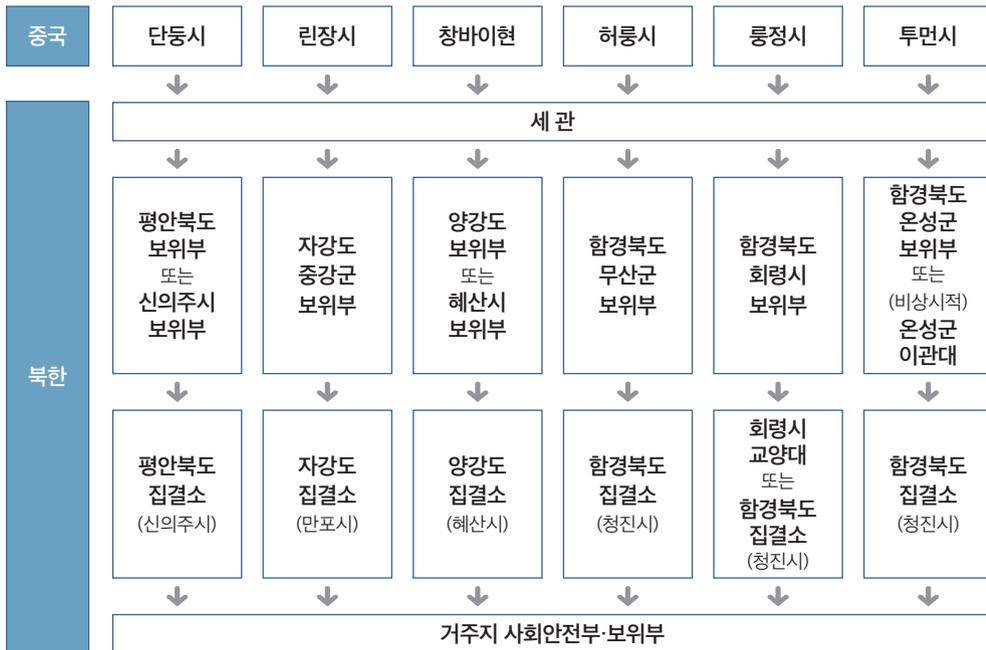
¹⁴³ V605EJ1969

¹⁴⁴ JUZ0TT2362

중국에서 체포된 이유는 주로 ‘주변의 신고’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도 한국행을 위해 이동하던 중 체포되기도 했고, 불심검문에 걸렸을 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탈북민이라는 신분이 들통 나기도 했다.¹⁴⁵ 드물게는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북송자는 세관에서 지역의 보위부로 옮겨져 조사를 받은 후 비법월경자집결소로 이송된다. 이때 비법월경자집결소가 멀다면 이관대¹⁴⁶에서 대기한다. 예를 들어 이송지가 온성군이라면 청진시의 집결소로 이송하기 위해 이관대에서 기다리게 하는데, 혜산시나 회령시, 신의주시 등은 집결소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관대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결소를 거친 뒤에는 송환자 등록 거주지의 사회안전부 또는 보위부로 이송되어 대기실이나 구류장 등에 구금된 상태로 중국 거주 기간과 탈북 횟수 등을 조사받은 다음, 형사소송절차에 들어갈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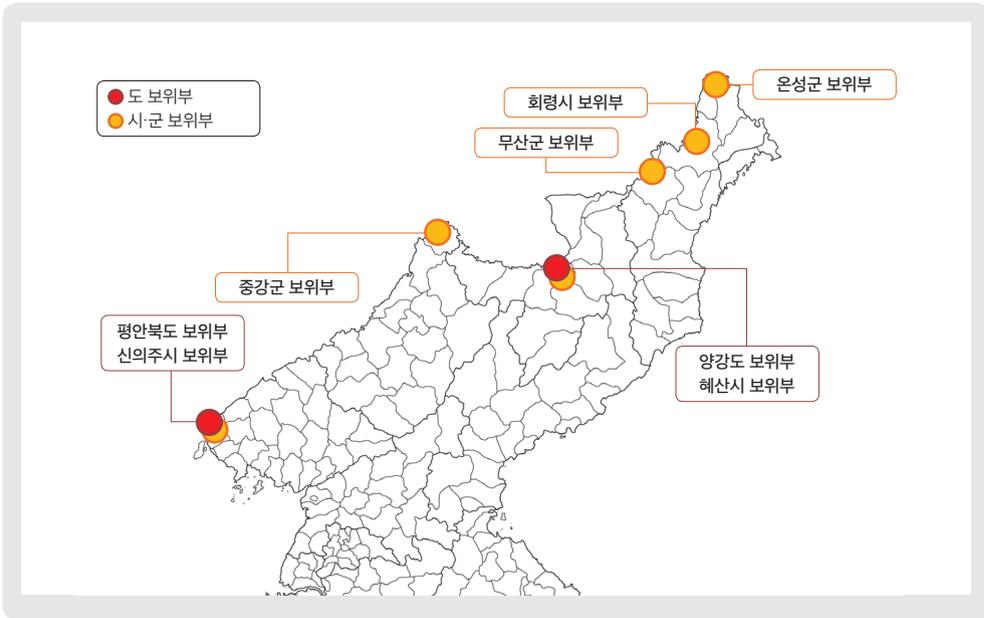
표 II-7 북송자의 지역별 주요 이송 경로 (기록센터 조사 기준)



145 6T5MFA1385, 2RBSIP0837

146 진술에 따르면 이관대는 세관이 설치된 지역의 보위부에서 조사를 마친 북송자를 집결소로 이송하기 전 일정 인원의 대상자가 될 때까지 임시 수감하는 시설로 함경북도 온성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NEHTDO0763)

그림 11-4 복송 관련 보위부 위치 (기록센터 조사 기준)



(2) 도강 및 탈북에 대한 처벌 규정과 처벌 수위의 변화

경제난으로 도강·탈북하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북한 당국은 「형법」에 처벌 규정을 마련했지만, 초반에는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형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이 급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처벌 수위가 낮았다가 점차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 것도 그 때문이다. 다만, 처벌과 관련한 별도의 지시나 방침이 있을 때는 규정과 다르게 처벌되기도 했다.

처벌 규정의 변화

도강이나 탈북을 이유로 강제복송된 주민들을 처벌하는 북한 법령의 변화는 탈북민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도강·탈북하는 주민이 늘어나자 1995년 개정된 「형법」에 불법으로 국경을 출입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 조항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형벌의 종류와 형량이 상황에 따라 변화했다.¹⁴⁷

147 도강 및 탈북 관련 「형법」 주요 개정 내용

1987년부터 북한은 형법에 ‘다른 나라 또는 적(敵)의 편으로 도망치는 행위’를 ‘조국반역죄’로 명칭했다. 이후 1995년에는 ‘비법적(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법」 개정을 통해, 2004년에는 도강·탈북 행위를 ‘비법국경출입죄’로 규정했고, 2008년에는 도강·탈북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강·탈북 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을 마련했으나, 이 시기에 도강·탈북한 주민의 수, 북송자의 수가 감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강·탈북의 동거나 중국 체류기간 등이 매우 다양해지자, 북한 당국은 강제송환자에 대한 행정처벌 등 형사처벌 이외의 대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04년 「행정처벌법」을 통해 도강·탈북한 주민은 물론 이에 도움을 준 기관원에 대해서도 처벌을 단행했다.¹⁴⁸ 또한 도강·탈북자에 대한

개정 연도	죄명(행위) 및 조항	형법 종류	형량	특징
1987	조국반역죄 (제47조)	· 노동교화형 · 사형, 재산몰수형	7년 이상	조국반역죄로 처벌
1995	조국반역죄 (제47조)	· 노동교화형 · 사형, 재산몰수형	7년 이상	무허가 월경자 처벌조항 신설 (조국반역죄와 분리)
	무허가 월경자 (제117조)	· 노동교화형	3년 이하	
1999	조국반역죄 (제47조)	· 노동교화형	5년 이상~10년 이하(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이상, 사형, 재산몰수형)	
	무허가 월경자 (제117조)	· 노동교화형	3년 이하	
2004	조국반역죄 (제47조)	· 노동교화형	5년 이상(정상이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사형, 재산몰수형)	처벌 다소 약화
	비법국경출입죄 (제233조)	· 노동단련형 · 노동교화형	2년 이하 3년 이하	
2008	조국반역죄 (제62조)	· 노동교화형	5년 이상(정상이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사형, 재산몰수형)	처벌 강화
	비법국경출입죄 (제233조)	· 노동단련형 · 노동교화형	2년 이하 5년 이하	
2012	조국반역죄 (제63조)	· 노동교화형	5년 이상(정상이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사형, 재산몰수형)	노동단련형 형량 축소(개정) 반영
	비법국경출입죄 (제221조)	· 노동단련형 · 노동교화형	1년 이하~5년 이하	
2015	조국반역죄 (제63조)	· 노동교화형	5년 이상 (정상이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사형, 재산몰수형)	
	비법국경출입죄 (제221조)	· 노동단련형 · 노동교화형	1년 이하~5년 이하	
2022	조국반역죄 (제63조)	· 노동교화형	5년 이상 (정상이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사형, 재산몰수형)	죄명 변경
	국경비법출입죄 (제260조)	· 노동단련형 ·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노동교화형 5년 이하	

148 도강 및 탈북 관련 「행정처벌법」 주요 개정 내용

개정연도	행위 및 조항	처벌 종류	처벌 기간	특징
2004	돈, 물품반출입질서 위반 (제156조)	노동교양처벌	3개월 이하	도강·탈북 관련 처벌조항 신설

교양처분, 즉 ‘처벌 없는 방면’ 조치를 줄였는데,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을 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처벌 수위의 변화

강제복송된 주민에 대한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조항의 신설·개정으로 변화했으며, 당국의 처벌 의지도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없이 국경을 오간 주민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된 초기에는 실제 형사처벌된 비율이 높지 않았지만, 2004년 「형법」 개정 및 「행정처벌법」 신설 이후에는 처벌받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도강·탈북자에 대한 처벌수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복송은 북한의 식량사정으로 도강과 탈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7년 전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복송된 주민들은 교양처분으로 조사만 받고 풀려나거나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거주지에 설치된 노동교양대 등에서 6개월 이하의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⁴⁹ 이러한 경향은 2004년 「형법」 개정 시까지 유지됐다. 1998년 강제복송된 남성 증언자는 거주지로 이송되었지만 ‘생활 곤란 탈북’임을 인정받아 교양처리로 석방됐고, 2002년 송환된 여성 증언자는 거주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노동교양대에 1개월 동안 수감되어 노동을 했다고 진술했다.¹⁵⁰ 또 2003년 강제복송된 남성 증언자는 온성군 보위부로부터 ‘탈북은 조국을 배신한 행위’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거주지로 이송된 후 구역의 노동교양대에 6개월 동안 구금된 것으로 일단락됐다고

개정연도	행위 및 조항	처벌 종류	처벌 기간	특징
2008	돈, 물품반출입질서 위반 (제156조)	노동교양처벌	3개월 이하	
2011	국경출입 및 반출입질서 위반 (제185조)	노동교양처벌	3개월 이하	
2021	국경비법출입행위 (제285조)	노동교양처벌	3개월 이하	위반 행위 세분화
	국경검사, 검열질서 위반 (제284조)	노동교양처벌	3개월 이하 또는 3개월 이상	

¹⁴⁹ 1999년 「형법」(제11조)은 1995년 「형법」(제11조)에서 규정한 ‘교양처분 가능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했다. 14살 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교양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1995년 「형법」 제11조) → 17살 이상의 자도 그 개준성(改換性, 반성)의 정도, 범죄의 엄중성 등에 비추어 교양처분에 의하여 교화될 수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소나 재판의 단계에서 교양처분을 할 수 있다. (1999년 「형법」 제11조)

¹⁵⁰ O4IGT00858, 24FIE70255

했다.¹⁵¹ 이런 처벌들과 연관된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 ‘먹고살기 위해 탈북한 자는 용서해 주라’는 김정일의 방침에 따라 비판서를 쓰고 교양처리됐다는 여성 증언자의 진술이 있었다.¹⁵² 이와 유사한 김정일의 지시는 2003년에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로 인해 2003년 강제북송된 여성 증언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¹⁵³

“1999년 탈북하여 한족 남성에게 시집을 가서 살았다가 2003년 공안에 체포되어 북송됐습니다. 신의주 보위부와 신의주 집결소를 거쳐 거주지인 함경북도 ○○○ ○○노동자구의 분주소로 이송됐고, 2시간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그곳에서 다시는 중국에 가지 않겠다는 서명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양조치된 것입니다.”¹⁵⁴

이와는 달리 강제북송 후 노동교화형과 같이 강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수집됐다. 탈북이 자주 일어나지 않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처벌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여러 혐의가 인정된 경우였다. 그 예로 자강도 출신 여성 증언자는 2002년 비법월경죄로 노동교화형 3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¹⁵⁵ 탈북 후 중국에서 2년 체류했다가 북송되어 노동교화형 1년형을 받은 또 다른 여성 증언자는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탈북 후 북송된 사례가 처음이라서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¹⁵⁶

2004년 이전에는 불법적인 국경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도 다수 있었다. 드물게는 예심과 재판을 거치지 않고 노동단련형¹⁵⁷이 이루어졌다는 진술도 있었는데 이는 노동단련형이라는 형벌이 만들어지기 전 시기로, 행정기관에 의해 결정된 처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 강제북송된 여성 증언자는 거주지의 도(道) 안전국에서 조사를 받고 노동단련형 1년에 처해졌지만,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¹⁵⁸ 2002년

¹⁵¹ FPP9K81507

¹⁵² ASQN3S2398

¹⁵³ 8ZJ0JT1438

¹⁵⁴ 5M57PJ1316

¹⁵⁵ M9MJ8G0441

¹⁵⁶ RBSIP0837

¹⁵⁷ ‘노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형벌’을 의미한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를 자들에게 적용하며, 형벌기간에는 국민의 기본권리가 보장된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1권, 2017. 1754쪽 참고)

¹⁵⁸ E277U01502

강제복송된 여성 증언자도 거주지에서 예심만 받고 노동교화형이 결정됐다고 진술했다.¹⁵⁹

불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한 행위에 대해 「형법」이 개정된 시기는 2004년이였다. 이 개정으로 형량이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형법」상의 죄명을 적용해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때부터 복송자에 대한 실행 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 북한 당국은 중국인 업자가 북한 주민을 중국으로 데려가 노동자로 고용하는 것에 대한 ‘항의각서’를 중국 정부에 보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강 후 중국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복송됐다는 진술이 있었다. 또한 이미 재판을 받은 한 여성은 ‘나라 망신을 시켰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화회관에서 사회안전부에 의해 공개적으로 체포되는 시연(試演)을 해야 했다.¹⁶⁰ 이는 생활고 때문에 중국에서 일을 하려고 도강한 사람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추정된다. 실제로 2005년 강제복송된 여성 증언자는 공개재판을 통해 노동단련형 1년을 받았고, 2006년 강제복송된 여성 증언자도 비법월경죄로 노동단련형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했다.¹⁶¹ 여러 차례 강제복송 경험이 있는 탈북민의 진술을 통해서도 처벌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1년과 2007년 두 차례 강제복송됐던 여성 증언자는 2001년 경고를 받고 방면됐지만, 2007년에는 3년의 노동교화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¹⁶² 다른 여성 증언자도 2002년에는 경고 후 방면되어 처벌받지 않았지만, 2007년에는 2년의 노동단련형을 받았다고 했다.¹⁶³

“2005년 생활고 때문에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2006년 강제복송됐습니다. 온성군 보위부와 회령시 집결소를 거쳐 거주지인 함경북도 ○○시로 이송되었고, 보안서 구류장에서 (구금된 상태로) 예심과 재판을 받은 뒤 비법월경죄로 노동단련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¹⁶⁴

2008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해 최고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된 후에는 실제로 강제복송 후 4~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눈에

¹⁵⁹ UGZQSQ1275

¹⁶⁰ FDH8VA0163

¹⁶¹ DOX9WK0419, JY92FO0799

¹⁶² XUIQ7S0518

¹⁶³ W4D93C1558

¹⁶⁴ AEPR431012

띄게 늘어났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다섯 차례 강제북송된 여성 증언자는 2003년 까지 세 번은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노동교화형이 확정됐다고 했다.¹⁶⁵ 증언에 따르면 중국에서 12년간 체류하다가 2010년 강제북송된 여성에게도 비법국경출입죄로 노동교화형 5년이 선고됐다.¹⁶⁶

2012년 이후에는 강제북송자 처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된 방침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에 따르면 '탈북 후 3개월 이상 중국 등에 체류한 사람들을 교화소로 보내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있었고, 2016년경에는 비법국경출입으로 다른 나라에 1개월 체류했을 경우 노동교화형 1년을 선고받았다는 진술도 있었다.¹⁶⁷ 2012년 탈북 후 중국에서 일을 하며 3개월가량 체류한 남성 증언자에 대해서는 노동교화형 1년이 결정됐고, 길을 잃어 중국으로 갔던 남성 증언자도 2012년 강제북송되어 노동교화형 3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¹⁶⁸

“1998년 인신매매선을 타고 중국으로 탈북해서 한족 중국 남성과 살았습니다. 2009년 공안복을 입은 남성 2명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더니 자신들은 경찰서에서 왔고 잠시 조사할 게 있으니 같이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반항하자 강제로 끌고 경찰서로 갔다가 (북송되어) 신의주 세관에서 신의주 (소재)도 보위부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제 거주지인 함경북도 ○○○보안서에서 예심을 받고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비법월경죄(비법국경출입죄)로 교화형 5년을 받았습니다.”¹⁶⁹

특히, 도강·탈북한 주민 중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민에 대해서는 수위 높은 처벌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한국으로 가려다가 발각된 여성 증언자는 같이 체포된 사람들과 함께 북송되면 한국행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뇌물을 주고 따로 이송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¹⁷⁰ 2011년 강제북송된 여성 증언자는 일가족이 신의주 보위부에서 한국행을 시도한 행적이 드러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¹⁷¹

¹⁶⁵ OVIJCV1431

¹⁶⁶ U9Q7G81516

¹⁶⁷ XFOPPI0869, 8IURL2452

¹⁶⁸ XFOPPI0869, LVAFIL0424

¹⁶⁹ J7TMW81434

¹⁷⁰ YF9YWN1165

¹⁷¹ WHG1L01336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

탈북 여성 중에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많았지만, 그 피해 사실이 복송 후 예심이나 재판에서 형벌을 낮추는데 참작되지 않았고 인신매매 피해자임에도 당국 차원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이 타의에 의한 것인지는 고려되지 않은 채 국경을 출입한 행위와 중국 체류기간 등이 형벌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2005년 강제복송된 여성 증언자는 인신매매를 당한 사실을 말했지만,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된 사실 때문에 노동교화형 2년을 받았다고 한다. 2006년 탈북한 뒤 2010년 강제복송된 또 다른 여성 증언자는 재판에서 중국에 납치되어 가게 되었고, 공안에 자수하여 송환됐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교화형 5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¹⁷² 2013년 강제복송되어 노동교화형 5년이 결정된 여성 증언자도 인신매매되어 탈북하게 됐다고 보위원에게 호소했지만, 오히려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제가 (재판을 받을 때) 인신매매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같이 인신매매된 친구)를 찾았지만, 복송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온성군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인신매매되었다고 호소했지만, 보위원이 이를 믿지 않아서 심한 폭행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제 형량(노동교화형 5년)이 왜 이렇게 높은 것인지 재판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은 법이 달라져서 탈북 후 하루를 중국에서 있었다 해도 노동교화형 5년이고, 10년을 중국에서 살아도 노동교화형 5년이라고 했습니다.”¹⁷³

뇌물을 이용한 처벌 수위 조절

2004년과 2008년 형법 개정 이후 비법국경출입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뇌물을 주고 형량을 낮추거나 형벌을 피한 사람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년 동안 중국에서 체류했던 여성 증언자는 2011년 강제복송되어 노동교화형 5년을 선고받았으나, 가족이 책임판사에게 뇌물을 주고 형량을 2년 6개월로 낮출 수 있었다고 했다.¹⁷⁴

¹⁷² 8IUFR2418, 5QJ9CE0679

¹⁷³ JUZ0TT2362

¹⁷⁴ OB3HZM1462

2012년 탈북하여 2014년 강제북송된 여성 증언자도 예심원에게 뇌물을 줘서 노동교화형 3년을 1년으로 낮췄다고 진술했다.¹⁷⁵ 처벌이 결정되어 이미 집행기관으로 이송됐지만 뇌물을 통해 방면됐다는 진술도 있었다. 북송으로 노동단련형 1년이 확정되었던 한 증언자는 뇌물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의료처분을 받았다고 했다.¹⁷⁶ 2017년 두 번째로 강제북송된 또 다른 여성 증언자는 비법월경자집결소의 소장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¹⁷⁷

다. 탈북 동기와 제3국에서의 생활

「자유권규약」 제12조 제2항¹⁷⁸ 출국의 자유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7호는 ‘한 국가의 영토를 떠날 수 있는 자유는 어떤 특정 목적이나 개인이 선택한 국외 거주 기간에 좌우되지 않으며,¹⁷⁹ 이 권리는 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획득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⁸⁰ 북한 주민들이 사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경우는 중국 국적을 가진 친척 방문 정도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마저도 여권을 발급받을 때 준비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며, 뇌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발급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북한 주민들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와 일반논평에서 지적한 ‘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획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1) 탈북 동기의 변화

국내 입국한 탈북민들의 주요 탈북 시기는 소위 ‘고난의 행군’¹⁸¹이라고 불리는 1990년대 중반부터로, 그 수가 이전에 비해 급증했다. 대부분 중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통해 주요 체류국과 시기별 탈북민의 수를 추산할 뿐이다.

¹⁷⁵ WNGXGW0373

¹⁷⁶ ROD6PD2439

¹⁷⁷ 67KL2N0678

¹⁷⁸ 「자유권규약」 제12조 제2항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느 나라에서도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다.

¹⁷⁹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27, 제12조 para.8

¹⁸⁰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27, 제12조 para.9

¹⁸¹ ‘고난의 행군’은 북한이 1990년대 체제 위기 상황을 1938년 겨울 항일유격대의 행군에 비유하여 사용하는 용어로 1996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제시됐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2. 42쪽 참고)

탈북한 북한 주민은 대부분 중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국경 대부분이 중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반면, 러시아와 인접한 나선특별시는 북한 내에서도 타 지역 주민이 드나들기 어렵다. 따라서 러시아 등 기타 국가에 체류했던 탈북민은 주로 파견 노동자로 해외에 나갔다가 현지에서 이탈한 북한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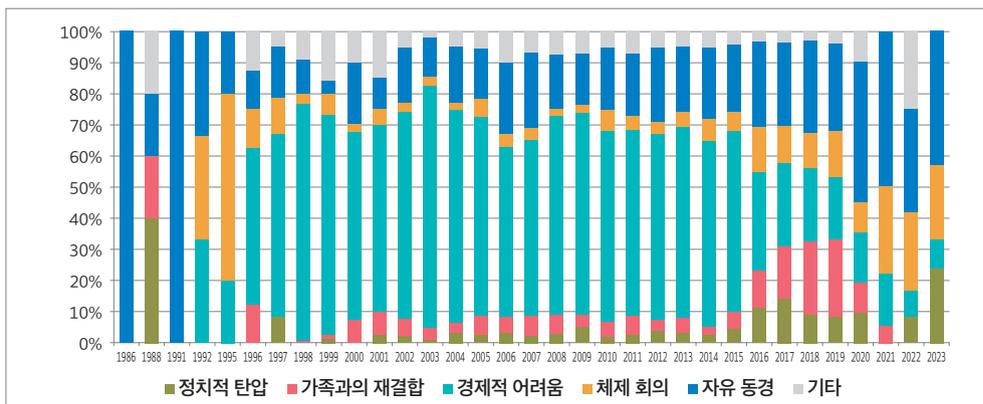
탈북 동기는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탈북 동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는 '경제적 이유 때문(65.2%)'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2016~2020년 기간에는 경제적 어려움(24.8%) 때문에 탈북했다는 응답은 상당히 감소하고, 정치적 탄압(10.7%), 체제 회의(13.0%), 자유 동경(28.6%), 가족과의 재결합(19.6%) 등이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특히 가족과의 재결합을 이유로 탈북한 주민은 이미 탈북하여 중국이나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먼저 탈북했던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나머지 가족의 탈북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 II-8 탈북 동기 (기록센터 조사 기준)

(단위: 명)

탈북 시기(년)	인원	탈북 동기					
		정치적 탄압	가족과의 재결합	경제적 어려움	체제 회의	자유 동경	기타
~2000	302	8	7	197	21	39	30
2001~2005	636	17	28	433	21	104	33
2006~2010	870	26	47	518	35	182	62
2011~2015	1,108	40	48	661	55	245	59
2016~2020	1,967	210	385	487	255	563	67
2021~2023	64	7	1	7	16	27	6

* 응답자 중복 선택



생계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는 형태의 탈북은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2010년경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세 차례 탈북한 여성 증언자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생필품 장사를 했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탈북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¹⁸² 이와 더불어 2009년 말 북한 당국에 의해 이루어진 ‘화폐개혁’도 주민들의 경제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됐다. 당시 북한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 구권과 신권을 100:1 비율로 교환한 바 있다. 이런 조치로 인해 그간 모은 돈이 휴지가 되는 일을 겪은 뒤 돈을 벌기 위해 2010년 도강했다는 여성 증언자와 돈의 가치가 하락하자 생활이 어려워져 2014년 탈북했다는 또 다른 여성 증언자의 진술이 수집되기도 했다.¹⁸³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된 화폐교환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07년부터 장마당에서 벌었던 돈의 가치가 90% 이상 낮아졌습니다. 힘들게 일하면서 노력으로 모은 돈이 순식간에 휴지조각으로 바뀌게 되자, 삶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 중국에서 돈을 벌어오려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¹⁸⁴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경제적인 이유’ 이외의 동기로 탈북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했다. ‘자유를 동경해서’, 혹은 ‘체제에 회의를 느껴서’ 탈북했다는 응답이 이 시기 이후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한국 문화를 비롯한 외부정보의 유입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2018년 탈북한 여성 증언자는 출신성분 문제로 불이익을 당했고, 남한 드라마 등을 시청한 후 대한민국에 호감이 생겨 도강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에 탈북한 가족은 북한체제가 주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등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다.¹⁸⁵

¹⁸² 6WS6I81214

¹⁸³ L0J07A0920, 9UC2BY1211

¹⁸⁴ 5IN4XA1880

¹⁸⁵ 4TYPAG0762, 1BX4NN0758

(2) 탈북 방법

탈북 방법도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브로커 없이도 탈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북한 당국이 국경 경비를 강화하면서 남녀 간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남성들은 주로 밀수 등 경험을 통해 강을 건너기 쉬운 곳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브로커나 도강꾼을 통하지 않고도 쉽게 탈북할 수 있었다. 반면 여성은 브로커 등을 통해 탈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는 인신매매 브로커를 통해 탈북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드물게는 납치되어 북한을 떠난 여성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는 사실 탈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의 이모가 2008년 봄에 탈북했는데, 브로커가 저를 찾아와 이모가 돈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로커는 강을 건너면 자기의 집이 있다면서 집에 가면 이모가 보낸 돈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브로커는 갑자기 저를 들쳐 업고 강을 건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도 저는 그곳이 어디인지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인신매매되어, (이후) 남한에 오기 직전까지 중국의 요녕성(遼寧省, 랴오닝성)에서 생활했습니다.”¹⁸⁶

실제로 2018년 한 남성 증언자는 밀수를 돕는 일을 했을 때 중국을 오가던 길로 탈북했다고 했고, 같은 해 탈북했던 한 여성 증언자는 돈을 벌기 위해 북한을 떠나왔지만 압록강을 건넌 뒤에야 자신이 인신매매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¹⁸⁷

“2003년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던 중 30대 초반 정도의 여성이 저에게 이런저런 말도 걸고, 제가 팔던 파배기를 많이 사주었습니다. 그 여성은 중국에서 한 달을 일하면 1,000위안은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중국에 가서 일을 하고 오지 않겠냐고 물기에 저는 고민하다가 그 말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저를 데리고 도강한 뒤 중국에 도착하자 브로커의 집에 저를 두고는 일자리를 구할 거라면서 가버렸습니다. 당시 그 여성은

¹⁸⁶ 100S8G2205

¹⁸⁷ D1114B1648

저를 6,000위안에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국 브로커는 저를 길림성에 거주하는 한족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1만 위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¹⁸⁸

(3) 중국에서의 생활

중국 내 탈북민들의 삶은 성별이나 연령, 탈북 방법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나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탈북한 여성들은 중국에 체류하면서 임노동(賃勞動) 또는 식당 일을 하기도 했는데 불법 체류자라는 점,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주로 단순 노무직에 종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탈북한 여성 증언자는 중국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고, 2007년 혼자의 힘으로 탈북한 남성 증언자 역시 중국인의 돼지농장, 양어장 등에서 일했다고 진술했다.¹⁸⁹ 또한, 2018년 탈북한 여성은 인신매매범에게 속아 중국인과 강제로 결혼할 뻔했지만,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¹⁹⁰

“2013년 들쭉을 따기 위해 중국 (지린성) 안도현(安圖縣, 안투현) 지역으로 탈북했습니다. 하지만 8월 말이다 보니 들쭉 철이 지나 용정시(龍井市, 룡징시)나 화룡시(和龍市, 허룽시)의 건설 현장에서 미장일 등을 했습니다. 이후 안도현 이도백하의 공·옥수수 수확 현장에서 일을 해주고 돈을 벌었고, 겨울에는 일감이 없어서 중국 조선족 지인 집에서 지냈습니다.”¹⁹¹

반면 브로커를 통해 탈북한 여성들은 인신매매되어 강제적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여성들은 유흥업소에 팔려가기도 했다. 강제결혼한 여성 상당수는 결혼한 후에도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거나 식당, 공장 등에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4년 탈북한 여성 증언자는 한족 남성과의 매매혼을 당한 후 인근 지

¹⁸⁸ 8IUFR2422

¹⁸⁹ 6LNEVB0551, 52MXNB1472

¹⁹⁰ 4XIK2K0784

¹⁹¹ QF22611971

역 도심의 식당에서 설거지 등의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고 진술했다.¹⁹² 2014년 탈북한 여성 증언자는 성매매 업소에 팔려 그곳에서 강제로 일해야 했다고 증언했다.¹⁹³

일상에서도 어려움은 많았다. 생활 터전이 주로 농촌 지역이었고 중국어를 전혀 몰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탈북민인 아내가 도망갈 것을 우려한 중국 가족들과의 갈등도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더해 불법체류 탈북민은 합법적 호구(戶口)¹⁹⁴ 취득이 불가능하여 생활에 제약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2003년 탈북해 한족 남성과 매매혼으로 결혼한 여성 증언자는 남편의 가족이 항상 자신을 무시했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해야 해서 힘들었다고 진술했다.¹⁹⁵ 2006년 탈북하여 중국 랴오닝성(遼寧省)에서 체류하던 여성 증언자는 호구가 없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동거남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했지만, 신고할 수 없었다고 했다.¹⁹⁶ 탈북 후 12년간 호구 없이 중국에서 체류한 여성 증언자는 북한으로 강제송환될까봐 항상 마음이 불안했고, 병원 진료도 받기 힘들었다고 증언했다.¹⁹⁷

이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인신매매 과정에서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2004년 인신매매범에게 속아서 탈북했던 여성 증언자는 중국인 남성에게 시집가기 전 조선족 브로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2018년 탈북한 여성 증언자도 한국으로 가기 위해 브로커의 집에서 대기하던 중 성폭행을 당했지만 신고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강제로 복송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¹⁹⁸

탈북민들은 중국 생활에 충분히 적응했다고 해도 신분이 발각될까 항상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았다. 한 여성 증언자는 탈북민의 이러한 두려움을 잘 아는 중국인들로부터 공안에 신고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¹⁹⁹ 또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중국에

¹⁹² VIC7TY0953

¹⁹³ MM9BJX0626

¹⁹⁴ ‘호구제도(戶口制度)’는 중국의 거주지 등록제도로 호구 장부인 호적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호구가 없다’ 또는 ‘신분이 없다’고 표현한다.

¹⁹⁵ 91S6MO1255

¹⁹⁶ 8IUFRL2453

¹⁹⁷ X1AH6J0893

¹⁹⁸ JUZ0TT2362, EO2TWG1095

¹⁹⁹ ZBJE6Z1518, 1BQ5TD2412

서 취업하긴 했지만, 탈북민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산업재해 보증을 들 수 없었다고 진술한 여성 증언자도 있었다.²⁰⁰ 최근에는 공안이 탈북 여성들에게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면 신변을 보호해 준다고 등록을 권유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그 진의는 알 수 없다고 다수가 진술했다.²⁰¹

“(2006년 탈북 후) 중국 한족 남성과 매매혼으로 동거하면서 양계장에서 7년을 일했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남한 식당에서 8개월간 일했습니다. 양계장과 식당에서 임금을 많이 받았지만, 신분증이 없어 불안감이 항상 있었습니다.”²⁰²

탈북 여성 중에는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와 가족을 위해 복송되었다가 다시 탈북하는 경우도 많았다. 1999년 탈북해서 중국에 체류하던 여성 증언자는 2003년 강제복송되었다가 교양처리로 풀려났지만 중국에 사는 아들, 동거남과 재결합하기 위해 다시 탈북했다고 했다. 또한 2003년 탈북 후 중국에서 딸을 출산했던 여성 증언자는 2007년 재탈북했으며, 2005년 복송되었던 여성 증언자도 같은 이유로 2010년 다시 탈북했다고 진술했다.²⁰³ (*다만, 해외파견 노동자를 제외한 일반 북한 주민이 탈북 후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생활했다는 진술은 수집되지 않았다.)

²⁰⁰ JUZOTT2362

²⁰¹ OORIT62445

²⁰² BVBION1426

²⁰³ WVI0GJ1665, Q9NIS31166, 6NW0CC0535

3. 해외파견 노동자

북한의 노동자 해외파견은 1960년대 후반, 북한 당국이 소련과 임업 협정²⁰⁴을 체결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록센터 수집 증언을 기준으로 한다면, 1990년 내 각 석탄공업부의 노동자 파견이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1990년대 초부터 러시아 벌목 노동자 파견이 본격 시작되었으며, 이후 러시아(舊. 소련)에만 국한되었던 파견 지역도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으로 확대됐다. 2010년을 전후해서는 동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으로까지 진출했다.

주요 파견 분야도 초기 벌목 및 석탄 채굴에서 건설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제조업, 서비스업, IT 분야는 물론 동상 제작이나 벽화 작업 등에도 노동자들을 파견했다.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건설업이 주를 이룬 반면, 아프리카 지역에는 소수의 건설 노동자와 의사를 주로 파견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제조업 노동자와 식당 종업원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유지보수 등 IT 분야에 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파견했다.²⁰⁵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 지급, 근로 시간, 근무 환경 등 전반적인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계획분 등 상납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일도, 휴식도 없이 계속되는 장시간 노동에도 임금을 거의 받지 못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는 북한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하지만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근로 조건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은 파견시기와 국가 등에 따라 달랐으나 북한 당국의

²⁰⁴ 「소련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간 러시아 영토 내에서의 벌목 및 목재종합가공협정」 체결 (1967.3.2. 모스크바)

²⁰⁵ LXUIUC2307, 271E382274

통제와 감시 속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일한 만큼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계약형태에 따라 보수지급 방식이나 근로시간 등이 달라졌는데, 북한이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 당국과 체류국 정부 간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초창기 형태이다. 두 번째는 북한 회사와 체류국 현지 회사 간 용역계약을 통해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식이며, 세 번째는 북한 회사가 체류국 현지에서 도급계약을 맺고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직접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세 번째 경우, 북한 회사 입장에서는 공사기간을 단축해야 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됐고, 임금산정 방법도 달라져 파견 노동자들의 인권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 임금 착취

시기별 변화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보수와 임금 지급 방식은 업종과 체류국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보수가 지급되었으나,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아야 하는 임금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

1990년대 러시아 임업·광업·농업 분야의 파견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 일부를 현지에서 받고, 북한의 가족은 외국상품판매점(‘재소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표’를 받았다.²⁰⁶ 이는 계약이 북한과 러시아 당국 간에 이루어졌고, 북한의 배급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에 파견됐던 증언자에 따르면 현지 사업소가 노동량을 분기별 또는 연 단위의 임금표로 정리해 북한의 임업총국에 통지하면, 노동자의 가족은 해당 금액만큼 북한의 외국상품판매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한다.²⁰⁷ 파견 경험이 있는 또 다른 증언자는 자신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없었고, 북한의 가족

²⁰⁶ ‘돈표’는 1979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조선무역은행에서 발행한 특수화폐로 북한 내 외화상점에서 판매하는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북한의 돈표 발행 현황과 의미」, Weekly KDB Report, 2021.12.20.)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주로 ‘돈표’라고 말하나, ‘예매돈’ 또는 ‘예매돈’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FDGN8N2165, OORIT62428)

²⁰⁷ OORIT62428, UDZ6KU2155

에게 250원 상당의 돈표가 지급됐다고 진술했다.²⁰⁸ 비슷한 시기 석탄총국에서 노동자로 파견된 증언자도 임금을 현물표로 받았고, 농업위원회에서 파견된 증언자와 건설노동자로 파견된 증언자 등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보수를 받았다고 했다.²⁰⁹ 그리고 이렇게 지급된 돈표로 가족들은 텔레비전이나 재봉기, 이불, 담배 등을 구매했다고 한다.²¹⁰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의 경제사정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외국상품판매점이 문을 닫자 주민들은 돈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증언자들은 1995년경부터 외국상품판매점에 상품이 없어 돈표와 교환하기가 힘들어졌으며, 러시아 파견자가 수천 명이나 되어서 교환 수요가 많았던 지역의 경우 사실상 외국상품판매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²¹¹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점차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지 화폐로 지급하도록 바뀌었지만,²¹² 임금을 받았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1995년에 파견됐던 한 증언자는 기업소 측이 2년 동안 일하면 1,500달러 정도를 줄 수 있다고 했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 임금을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²¹³ 2002년 파견됐던 증언자는 파견 초 1,200루블의 임금을 한 번 받았다고 했고,²¹⁴ 10년 동안 벌목현장에서 일한 증언자는 사업소가 국가상납금과 경영자금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²¹⁵ 또한, 중간관리자로 파견됐던 증언자도 노동자들에게 임금 액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²¹⁶

“(1995년부터 2년 넘게 러시아에 파견되어) 일한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매월 정산해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나 기업소(사업소)에서는 돈이 없다는 등 여러 가지 핑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²¹⁷

²⁰⁸ TL9FO32161

²⁰⁹ ZNOYFE1456, LOKO8K2228, ROD6PD2427

²¹⁰ UDZ6KU2155, FY872C2229, FDGN8N2165

²¹¹ FDGN8N2165, TL9FO32161

²¹² ZOWWJD2245

²¹³ JKFPMU0323

²¹⁴ X72S720280

²¹⁵ ZLJYSV1529

²¹⁶ C13HUG0242

²¹⁷ JKFPMU0323

해외파견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이유는 그 대부분을 북한 당국에 상납하거나 현지 북한 회사가 운영자금 등으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기록센터 조사에 특히 많이 수집된 건설노동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노동자들은 상납하는 액수가 실제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²¹⁸ 한 증언자는 벌어들인 금액의 10% 미만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국의 몫이었다고 진술했다.²¹⁹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국가계획분, 체류·운영비, 파견 여비 등을 먼저 차감했는데, 이렇게 정산된 돈조차도 매달 지급하는 회사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국가별 변화

사업소가 당국에 상납해야 하는 국가계획분과 노동자들에게 지불한 금액은 체류국가마다 또는 사업소 상황별로 달랐다. 특히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은 국가계획분 이외에 당국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상납해야 할 때도 있었다. 예를 들어 2003년 파견됐던 증언자는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소대별로 사향을 한 통씩 상납하라는 사업소의 지시를 받고 6명의 노동자가 각각 500루블씩 부담했다고 진술했다.²²⁰ 2006년 러시아에 파견됐던 증언자도 사업소로부터 세포단위(소대)로 사향을 할당받았다고 했다.²²¹ 이와 함께 2010년을 전후로 러시아나 몽골에서는 노동자들이 정해진 작업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금이 삭감되어 보수를 거의 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²²²

“(2017년 러시아에 파견되어 일할 때) 규정된 급여는 없었으며, 국가계획분을 우선 제하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때마다, 개인마다 달랐습니다. 비생산노력(일반 노동자 이외의 구성원)은 정액제로 1년에 4,000~4,500달러를 받습니다. 비생산노력에 해당하는 직위는 사장, 당비서, 재정, 통역, 노동안전, 보위, 운전기사, 후방경리, 식당, 의사 등이었습니다. 생산노력(일반노동자)의 경우 임금에서 이것저것을 제하고 나면 마이너스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임금이 마이너스가 되면 다음 임금

²¹⁸ 파견 노동자의 임금 일부가 북한이 구소련 시절에 진 부채의 일부를 상환하는데 사용됐다는 연구도 있다. 이영형,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현황 및 그 역할 분석」, 『국제정치연구』 10, 2007, 69쪽

²¹⁹ UDZ2HR2160

²²⁰ X72S720280

²²¹ BVPE3D1429

²²² 8CWCD32231

에서 추가적으로 제했습니다. 국가계획본은 연간 7,500달러였고, 당비는 임금의 2%를 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²²³

표 II-9 체류국가별 상납분 및 노동자 임금 (기록센터 조사 기준)

파견 지역	상납금(월)		노동자 실지급 임금(월)
	총액	세부내역	
러시아	약 650달러	· 국가납부 200달러 · 회사운영비 등 450달러	50~150달러
몽골	약 300~670달러	· 12월~2월 300달러, 3월~11월 670달러 (평균 약 580달러) * 정부는 매일 약 40달러(매달 1,000달러 이상) 상납	143달러 * 계획 달성 시 지급, 미달성 시 삭감
중동	UAE	약 400달러 · 국가납부 200유로* * 국가계획본은 유로로 납부 · 회사운영비 100달러 · 노동자 식비/숙소임대비 100달러 · 당비(또는 직맹비) 5달러	100달러 * 관리자 240달러
	쿠웨이트	약 850달러 · 국가납부·회사운영·식비 등 750달러 · 총성자금 50달러 · 국가대상건설사업 지원비 50달러	100달러
유럽	약 900달러	· 현지 회사는 계약서상 파견 노동자 1인당 월 1,170달러 지급 · 이중 70~85%(900달러 내외)를 국가납부, 회사운영비 등으로 납부	150~300달러 * 2017년 이전 매달 지급 100~150달러 * 2017년 이후 2~3개월마다 지급
아프리카	약 420달러	· 상납금은 전체 소득의 80% 정도	200달러 * 부정기적 지급

몽골의 건설업 파견 노동자의 임금은 매달 다르게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북한 회사 측에 항의해서 200달러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금액을 낮춰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²²⁴

223 YNZICJ2226

224 2RGIXC1370, Q2EDBD0856

중동 지역에서는 현지 북한 회사가 인력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체류국의 회사가 노동자의 임금을 일괄로 지급하면 북한 회사는 노동자에게 고지만 할 뿐 실제로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²²⁵ 또 다른 증언자는 체류국 회사에서 노동자 개인 계좌에 임금을 입금했지만, 북한 회사가 모두 인출했기 때문에 자신의 급여가 정확하게 얼마였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진술했다.²²⁶ 또한 북한 회사가 임금의 20%만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가납부금, 회사경영비, 식비, 현지인 알선 수수료, 관리비, 당비 등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²²⁷

유럽·아프리카 등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0년 이후 유럽 지역에 파견됐던 증언자는 회사가 2~3개월에 한 번씩 1인당 150~300달러 정도를 주다가 2017년 체류국 세금이 인상됐다는 명분으로 100~150달러 정도만 지급했다고 진술했다.²²⁸ 비슷한 시기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됐던 증언자는 월 200달러를 부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며, 국가계획분은 1인당 연 5,000달러, 즉 전체 소득의 80%로 정해져 있었다고 진술했다.²²⁹

한편, 노동자들에게 강요되는 과도한 상납금과 착취 수준의 임금은 노동자들의 반발을 야기하기도 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했던 노동자는 국가계획분, 충성자금, 현지 회사 운영비 등으로 받는 금액이 적고, 이에 대한 정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8년에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했다.²³⁰

의료·IT 분야

의료업이나 IT 분야 노동자들도 월 200달러 내외의 임금을 받고, 대부분은 국가계획분 등으로 상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체류국의 병원에 고용되거나 개원을 했는데, 체류국 병원에 고용된 경우는 국가계획분을 제하고 200~300달러 정도를 월급으로 수령

²²⁵ FXFIZ81251

²²⁶ OHUMNM0240

²²⁷ EIU6381596

²²⁸ BJ25941541

²²⁹ 5KJESK2235

²³⁰ 32CICV2337

했으며,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언어소통 문제, 현지 경제상황 때문에 국가계획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²³¹ IT 분야 노동자로 파견되어 매달 100달러를 받았다는 증언자는 회사 측이 국가계획분(1인당 월 1,500달러 정도, 전체의 40%)과 체류국 회사 수수료(10%), 생활비·회사운영비 등(40%)을 제외한 10%만 노동자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했다.²³² 증언에 따르면, 의류제조 등의 분야에 파견됐던 노동자도 건설 노동자와 비슷하게 매달 100~200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²³³

“(회사에서) 임금 금액은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고 2019년 1년간 아파트 골조작업에 동원되어 집체노동을 할 때는 한 번도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월 말 러시아 회사가 약 5만~10만 루블의 돈을 북한 회사에 지급하며 당월 국가계획분, 숙식비, (유학비자로 인한) 교육비, 당비 등을 차감한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재정총화도 없었고 임금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2020년 1월에 직장총화에서 1인당 50만 루블의 빛이 있다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²³⁴

국가계획분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노동자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러시아 지역은 파견기관과 지역에 따라 국가계획분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2005년 전후, 노동자 1명 당 매달 상납하는 국가계획분이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늘었으며, 2008년에는 800달러에 이르기도 했다고 한다.²³⁵ 또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됐던 한 증언자는 2018년 무렵부터 상납금이 계속 높아져 매달 1,000달러 이상을 상납해야 했다고 진술했다.²³⁶

이처럼 과도한 국가계획분을 부담하고 낮은 임금을 받게 된 노동자들 중 일부는 소위 ‘청부’²³⁷를 했다. 러시아에서는 직장장이나 보위원 등에게 매달 뇌물을 제공하는 조건

²³¹ CVQIN52013, RQU50U2001, O7ADWS2158

²³² 271E382274

²³³ 1QUJHM2199

²³⁴ KQ9C5Q2261

²³⁵ 5OR5F62241, G8OHOV1495, J69FHD2164

²³⁶ KJCA6X2009

²³⁷ ‘청부(請負)’는 ‘주로 토목, 건축 같은 일을 도급으로 맡는 일’을 의미한다.(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3권, 2017. 910쪽 참고)

으로 별도의 일을 하는 ‘청부노동자’가 있었고, 일부 회사는 작업반 단위로 ‘청부반’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중동 지역에 파견된 노동자들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청부를 나갈 수 있었고, 조(組)를 이루어서 가정집 수리 등 소규모 작업을 했다고 한다.²³⁸

“(2018년 러시아에서) 일반 노동자의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한 달에 1천 루블(16달러 정도)을 받았고, 1년에 한 번씩 연간 계획총화로 1만~3만 루블(170~500달러) 정도를 주었습니다. 받은 돈이 부족하다 보니 저는 청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회사 관리성원들은 매달 200달러씩 지급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청부를 하면서 월평균 8만~9만 루블을 벌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계획분으로 월 4만 5천 루블(750달러)을 바쳤고, 이와 별도로 직장장에게 월 2천 루블, 보위원에게 월 2천~3천 루블을 바쳤습니다.”²³⁹

(2) 과도한 근로 시간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장시간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종과 계약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00년대 주요 파견업종인 건설업 분야는 임업·광업 분야와 다른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의 근로시간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근로시간이 늘어난 이유는 수익 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임업·광업 분야의 파견이 많았던 1990년대에는 주로 북한이 러시아 당국과의 계약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작업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지 않았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석탄총국에서 노동자로 파견됐던 증언자들은 8시간 근로 규정이 지켜졌다고 진술했다.²⁴⁰ 또한 임업총국에서 노동자로 파견됐던 증언자들은 벌목 운반의 경우 하루 2교대로 12시간 근무했고,²⁴¹ 벌채 노동자들은 일출과 일몰 시간에 따라 작업할 때가 많았다고 진술했다.²⁴²

진술에 따르면 ‘청부’일은 ‘소청부’라고도 부르며 파견된 국가에서 북한 회사에서 계약한 현장에 일을 하지 않고, 개인적 또는 소그룹으로 일거리를 구해 일하는 형태를 말한다. (3VZQ5S0861, O8GQ0X1910, ONGA8G1091, G8OHOV1495)

²³⁸ 3Z681Y1213

²³⁹ KBYOXE2010

²⁴⁰ ZNOYFE1456, T10KYP2242

²⁴¹ FDGN8N2165

²⁴² KG0U571554, USF8GY0835, C13HUG0242

“(러시아에서 일할 때) 도로중대는 오전 6시에 일어나는데 (벌목공은 5시에 일어나서 근무 동원되어) 7~8시까지 식사하고 9시부터 도로보수 작업을 시작해서 17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저녁은 19시 정도에 먹었고, 이후에는 자유 시간을 보냈는데 매주 수요일에는 북한 영화를 틀어줬습니다. 취침시간은 22시였습니다. 벌목공들은 보통 6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저녁 늦게까지는 작업하지 않았습니다.”²⁴³

하지만, 이 시기에도 노동자들이 휴일이나 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동차, 기중기 등 운전사들은 3년에 한 번, 한 달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일반 노동자들은 휴가를 갈 수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다.²⁴⁴ 휴가를 허가 받은 노동자는 북한으로 들어가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도록 했는데, 이는 여권 연장을 위한 조치였다고 진술한 증언자도 있었다.²⁴⁵

2000년 이후에는 대체로 노동시간이 과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도급 형태인 경우 회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다 보니 장시간 일을 시켰고, 휴일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실제로 러시아에 파견됐던 한 증언자는 2019년 당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경까지 매일 16~17시간 넘게 일했고, 휴일은 1년에 2일이 주어졌으며 2개월에 한 번씩 만나절만 쉴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²⁴⁶

“(2019년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아침 7시에 기상해서,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근무, 12시부터 13시 식사, 13시부터 22시까지 오후 근무를 합니다. 할당된 일감을 채우지 못하면 새벽 5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저녁에는 일이 끝나고 들어오는 대로 잤습니다. 토·일요일 상관없이 계속 일했습니다. 개인 휴식 시간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제공되었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잠을 잡니다.”²⁴⁷

²⁴³ UDZ6KU2155

²⁴⁴ FDGN8N2165

²⁴⁵ FDGN8N2165

²⁴⁶ KQ9C5Q2261

²⁴⁷ J69FHD2164

“오전 6시 기상, 1시간 식전작업, 조식 후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작업, 점심식사 후 13시부터 18시까지 오후작업, 저녁식사 후 19시부터 24시까지 야간작업입니다. 잠은 4시간 정도 잡니다. 저희 직장에서는 휴일이 없었는데, 1년에 쉬는 날이라고 해야 1월 1~2일, 노동절 하루 정도 쉽니다. 정 힘들 때는 하루 이틀 쉴 수 있지만, 휴식 때 하지 못한 일까지 해야 하거나 받을 돈에서 일수만큼 삭감하였습니다.”²⁴⁸

러시아 이외의 체류국가에서의 작업시간은 당국 또는 현지 회사의 근로감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몽골에 파견된 증언자는 보통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작업했지만 때에 따라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작업한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²⁴⁹ 쉴 수 있는 날은 설날, 김일성·김정일 생일, 몽골의 국가명절 1일로 1년에 총 4~5일에 불과했다고 한다.²⁵⁰ 중동 지역에 파견된 증언자는 금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근무했는데,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씩 일했다고 진술했다.²⁵¹

한편 휴일도 없는 장시간 노동으로 불만이 쌓인 노동자들은 단체행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2018년 몽골에서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의 작업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임금이 매우 적다.’는 내용의 한국 언론 보도를 접한 노동자들은 오후 6시까지만 작업하는 방식으로 항의했다고 한다.²⁵² 또한 2020년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은 장시간의 노동과 미지급된 임금에 불만을 갖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서 일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²⁵³

나. 근로 환경

(1) 위험한 작업환경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파

²⁴⁸ 1BOIH12246

²⁴⁹ Q2EDBD0856

²⁵⁰ 2RGIXC1370

²⁵¹ 3Z681Y1213, 3VZQ5S0861, KPLPU31295

²⁵² Q2EDBD0856

²⁵³ KQ9C5Q2261

악했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설 분야 노동자들에게 안전장비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대 중반에 벌목노동자로 파견됐던 증언자는 겨울철 방한복이나 안전화도 착용하지 못한 채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²⁵⁴ 중간 관리자로 파견됐던 또 다른 증언자도 근무기간 중 노동자들에게 안전화나 작업복 등은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다.²⁵⁵

안전교육이나 안전 관리감독도 파견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에서는 현지 북한 회사의 노동안전지도원이 하루 정도 교육을 하고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²⁵⁶ 벌목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난 이유 중 하나도 이처럼 안전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증언자들은 벌채한 나무를 산 아래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차량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고, 벌채 과정에서 다친 노동자도 있었다고 진술했다.²⁵⁷ 또한, 작업 중 노동자가 다치면 사업소에 파견된 북한 의사에게 치료를 받지만, 의료장비나 의약품 등이 부족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다.²⁵⁸

“(1997년 벌목노동자로 러시아에 파견되어) 처음 들어가서 작업복 한 벌 준 것으로 3년을 보냈고, 이외에 따로 안전장비를 제공받지는 못했습니다. 차량이 고장 나면 한 차에 배정된 근무인원 2명이 직접 수리해야 했습니다. 차량 안전 점검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계속 돌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 점검은 없었고, 차량이 자주 고장 났습니다.”²⁵⁹

²⁵⁴ WCDC3E0584

²⁵⁵ C13HUG0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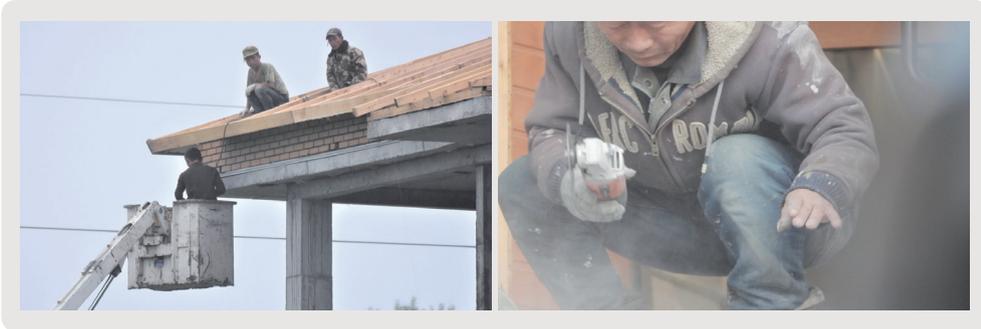
²⁵⁶ FDGN8N2165, USF8GY0835

²⁵⁷ TSNCRP0367, BVPE3D1429, FDGN8N2165, ZOWWJD2245

²⁵⁸ ZOWWJD2245

²⁵⁹ FDGN8N2165

그림 II-5 안전장비 없이 현장에 투입된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



* (자료출처) 강동완 동아대 교수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 안전장비 부족은 2000년대 이후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전장비의 경우 원청업체가 그 비용을 지급 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에게는 대부분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았고, 안전장비 제공 여부도 사업장에 따라 편차가 컸다. 한 증언자는 회사 측이 안전모, 안전띠, 안전화를 제공했지만, 장갑, 작업복 등 일부는 임금에서 공제했다고 진술했다.²⁶⁰ 몽골 파견 경험이 있는 증언자는 계약상 북한 회사가 안전장비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가 직접 구매해야 했으며 안전교육과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²⁶¹

반면 유럽 및 중동 지역에서는 안전교육이나 관리감독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지 회사가 안전장비를 제공해도 당 간부나 지배인들이 이를 되팔아 착복하는 경우가 중동 지역에서도 있었다고 한다.²⁶²

“(2018년 쿠웨이트에 파견되었을 당시 현지회사로부터) 노동보호 안전도구가 지급되면 지배인 등 현장에 나와 있는 당 간부들이 되팔아 착복을 하므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공급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²⁶³

²⁶⁰ 1BOIH12246

²⁶¹ Q2EDBD0856

²⁶² OHUMNM0240, 0D4XYG1294, 3Z681Y1213

²⁶³ 3Z681Y1213

(2) 열악한 생활환경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생활환경 역시 전반적으로 열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숙소나 식사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더욱 열악했다. 1990년대 임업 분야에 파견됐던 노동자들은 주로 목조주택이나 ‘빵통’이라고 불리는 이동식 숙소를 이용했는데, 숙소 규모에 비해 인원이 많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진술이었다. 이와 관련, 약 2m×7m 크기의 이동식 목조주택에서 5~6명 정도가 생활했고, 약 10m×6m 정도의 목조주택에서 소대 전체인 10명이 함께 지냈다는 증언이 각각 있었다.²⁶⁴

“옛날에 북한 노동자들이 지어 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트루목집(진흙바닥 위에 통나무로 조립, 길이 약 10m, 폭 6m)에 1소대 10여명이 생활했습니다. 별도의 세면시설은 없어서 외부 강물에서 씻었고, 기업소 건물에서 주말에 운영하는 목욕탕을 가끔 이용했습니다. 겨울에는 세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²⁶⁵

주요 파견업종이 건설업으로 변화한 2000년 이후에도 러시아에서의 생활환경은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대부분 노동자들은 건설현장 안에 마련된 임시숙소(컨테이너)를 사용했으며, 일부는 건설현장 인근의 숙소를 임차해서 살았다. 또한, 청부노동자들은 공사 중인 건물의 지하 등에서 지내기도 했다고 한다.²⁶⁶ 2010년 이후 중동 지역의 일부 국가에서도 러시아의 경우처럼 노동자들은 컨테이너나 임대주택에서 생활했는데, 비좁고 청결하지 않았으며 에어컨이 잘 가동되지 않아 큰 불편을 느꼈다고 했다.²⁶⁷ 또한, 유럽 지역에 파견된 증언자는 단독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했으나, 비좁았다고 증언했다.²⁶⁸

²⁶⁴ XH60NH1530, JKFPMU0323

²⁶⁵ JKFPMU0323

²⁶⁶ EJRHJ2244, J69FHD2164, IBOIH12246

²⁶⁷ 3Z681Y1213

²⁶⁸ BJ25941541

“2019년 (러시아에) 파견된 40명가량이 건설현장 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했습니다.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6개월 동안 한 번도 못 씻었고, 한 달에 한 번 세수할 정도였습니다. 식수는 수질이 나빠 건설현장 내 건설용수를 끓여서 사용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작업현장 내 빈방에서 생활했는데, 먼지가 가득했고 물도 나오지 않아 씻지도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²⁶⁹

그림 II-6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숙소



* (자료출처) 강동완 동아대 교수

다. 감시와 통제

(1) 감시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한 감시나 통제는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위원은 정보원을 활용해 감시하거나 노동자들의 숙소와 소지품을 수시로 검열했다. 보통 현지 북한 회사 한 곳에 보위원 한 명을 파견하는데, 이들은 노동자들이 현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외부정보와 접촉하는 것을 통제하는 업무를 맡았다. 감시는 보위원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작업반별로 정보원을 두고 노동자의 세부 동향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창기 러시아 해외파견기관인 임업성은 임업총국 1·2연합기업소 산하의 각 사업소에 보위원을 여러 명 파견했으며, 이 보위원들은 중대나 소대별로 노동자들을 직접 감시하는 정보원(‘스파이’)을 두고 있었다. 이와 관련, 한 증언자는 청부 일을 하던 중 ‘남한에

²⁶⁹ KQ9C5Q2261

나 같까?’라고 농담한 것을 정보원이 듣고 보위원에게 밀고해 노동자가 송환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²⁷⁰ 1990년대 초 파견됐던 증언자는 휴가를 받아 귀국했다가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초급당위원회 조직비서에게 한탄했다가 감시를 당했다고 한다.²⁷¹ 또한,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작업반이나 직장 단위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작업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보위원이 정보원을 두고 있었으며, 개별적으로 일을 하는 청부노동자 사이에도 정보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보원은 노동자들의 특이사항이나 규정위반 사항 등을 보위원에게 수시로 보고하는데, 주로 외국인 접촉, 단독 행동, 스마트폰 소지 등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였다.

“(2017년 러시아에서) 보위지도원과 직장장의 관계가 좋으면 5~6개월마다 소지품 검열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직장장을 믿지 못하고 불시에 검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노동자들이 모르게 일 나간 다음에 보위지도원이 직장장을 호출하여 검사를 시작합니다. 보위지도원은 대개 노동자 중에 스파이(정보원)를 심어놓고 스파이로부터 받은 보고를 근거로 대상자를 정해놓고 검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²⁷²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서신을 검열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졌다. 한 증언자는 보위원이 북한으로 들어갈 때 노동자들의 가족에게 전달할 편지를 가져갔는데, 내용을 검열하기 때문에 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했다고 진술했다.²⁷³ 또한 노동자가 편지를 사업소 우편통에 넣으면 연합기업소가 이를 수거한 뒤, 보위원의 검열을 마쳐야 편지가 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²⁷⁴

노동자들의 소지품 검열도 수시로 진행됐다. 1990년대에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지만 2010년을 전후로 노동자들이 개인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되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했는지를 수시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소지품 검열이 바뀌었다고 한다. 한 증

²⁷⁰ USF8GY0835

²⁷¹ BSQXYF2224

²⁷² 5W2TE10975

²⁷³ UDZ6KU2155

²⁷⁴ TL9FO32161

언자는 생활총화²⁷⁵ 때 불시에 소지품 검열을 받았고, 다른 증언자는 노동자들을 모두 내 보낸 상태에서 보위원이 단독으로 소지품을 검열해 불만이 많았다고 진술했다.²⁷⁶ 의사와 같이 개별로 활동하는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 증언자는 보위원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편지와 컴퓨터 등을 모두 꺼내 검열을 했다고 진술했다.²⁷⁷ 검열에서 발각된 사람은 대개 뇌물로 무마했지만, 그 대가로 정보원을 해야 하기도 했다. 본국으로 송환되면 다시 파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위원이 검열 단속을 빌미로 정보원을 하도록 요구할 경우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²⁷⁸

(2) 통제

여권 관리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는 여권 회수, 외출 금지, 외부정보 접촉 금지, 휴대전화·스마트폰 제한 및 금지, 생활총화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은 북한 회사가 일괄 관리하는데, 일반 노동자 대부분은 파견지에서 입국심사가 끝나는 대로 여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여권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대외 활동이 필요한 사장, 직장장, 통역, 보위원 등의 관리자뿐이었다.

“(1994년, 2014년 파견됐을 때) 대표가 모든 노동자들의 여권을 관리했습니다. 여권이 없기 때문에 외출이 힘들었고, 여권 미소지로 러시아 경찰에 체포되어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²⁷⁹

2000년대 이후 러시아 지역에 건설업 중심의 파견이 이루어졌고, 파견자 중 개별적으로 청부를 하는 노동자가 많아졌지만, 여권을 본인이 관리하는 노동자들은 거의 없었

²⁷⁵ ‘생활총화’는 북한 주민들이 자기가 소속된 당이나 기관, 근로단체에서 매주, 매월, 매분기, 연별로 각자의 업무와 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모임을 말한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2. 492쪽 참고)

²⁷⁶ KBYOXE2010, KM99R62163, 5W2TE10975, 1BOIH12246

²⁷⁷ CVQIN52013

²⁷⁸ TWCVOL2227, CUKQSL2289

²⁷⁹ BVPE3D1429

다. ‘꼬삐(copy)’라고 부르는 여권·비자·노동허가증의 복사본을 지급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회사가 관리하는 건설현장의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²⁸⁰ 러시아 이외의 다른 국가에 파견됐던 노동자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몽골이나 중동 지역에서도 노동자의 여권과 거주증 등은 회사가 보관했다.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된 의사도 여권을 대사관에서 관리했고, 현지 거주증을 소지하도록 하거나 복사본만 받았다. 이와 관련, 건설노동자로 파견됐던 한 증언자는 회사가 여권과 거주증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 동료가 현지 경찰에게 단속된 후 추방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²⁸¹

외출 및 현지인 접촉 통제

한편 노동자들은 외출도 제한을 받았는데, 단독으로는 숙소와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 자유롭게 오갈 수 없었으며 현지인과의 접촉도 엄격하게 통제당하고 있었다. 1993년 러시아에 벌목노동자로 파견됐던 증언자는 작업장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인근의 마을에 가는 정도만 허락됐다고 한다.²⁸²

반면 건설현장은 주로 도시에 위치해 있다 보니 노동자들의 외출이나 외부인 접촉 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러시아에 건설노동자로 파견됐던 증언자는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가까운 상점에 갈 수는 있었지만, 한 시간 이상 나가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²⁸³ 군 복무 중 파견된 증언자도 2019년까지 회사가 외출을 허용하지 않아 가까운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갈 때에도 허락을 받고 2인 이상 동행해야 했다고 진술했다.²⁸⁴ 의사의 경우 거주지 인근으로 외출하는 데는 제한이 덜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단장과 보위에 보고해야 했다고 한다.²⁸⁵ 또한, 2018년 현지 이탈자가 발생했

²⁸⁰ YNZ1CJ2226, 1BOIH12246

²⁸¹ O7ADWS2158, 32CICV2337

²⁸² UDZ6KU2155, USF8GY0835, WCDC3E0584

²⁸³ 338CPJ1396

²⁸⁴ KJCA6X2009

²⁸⁵ Z63J852157, O7ADWS2158, RQU50U2001

던 곳에서는 노동자의 외출이 전면 금지되기도 했다.²⁸⁶

외부정보 접촉 통제

외부정보에 대한 접촉 통제도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접촉 방법이 고도화되면서 통제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기를 노동자가 소지하는 것이 어려웠던 1990년대에는 보위원이나 정보원을 통한 감시만으로도 통제할 수 있었고, 파견 전 ‘남한 사람 접촉 금지’ 정도만 교육할 만큼 통제가 심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개별 숙소에는 텔레비전이 없고, 기업소 공용공간에 설치된 텔레비전으로는 북한 방송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현지 방송 시청을 통제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1995년 러시아에 파견됐던 증언자는 숙소에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현지의 방송을 접할 수 없었고, 2000년에 파견됐던 증언자도 당시 휴대전화는 물론 소속된 소대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도 없었다고 진술했다.²⁸⁷ 또 다른 증언자는 현지 방송을 몰래 청취할 수는 있었으며, 발각되더라도 처벌받는 사람은 드물었다고 한다.²⁸⁸

물론 당시에도 남한이나 미국 관련 정보를 접촉하는 것은 매우 강하게 통제하고 있었으며, 그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제복송되고 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90년대 중반 벌목노동자들이 작업 중 한국어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다가 송환된 것을 들었다는 증언자가 있었다.²⁸⁹ 또한 1997년 파견 중 미국 영화를 소지하고 이를 동료에게 빌려줬다가 발각되어 조사를 받은 후, 사업소 지배인에게 지속적으로 송환 협박을 받았다는 증언자도 있었다.²⁹⁰ 다른 증언자는 2006년 개인적으로 구매한 텔레비전으로 남한 드라마와 미국 영화를 동료들과 함께 시청했다가 ‘주동분자’로 처벌받고 송환됐다고 진술했다.²⁹¹

이어 2010년경에는 인터넷 접속이 용이해지고 외부정보를 접하기 쉬운 개별 청부작

²⁸⁶ 2QJLD11284

²⁸⁷ Z0WWJD2245, XH60NH1530

²⁸⁸ O1748A0834

²⁸⁹ 5T1BAM1849

²⁹⁰ FDGN8N2165

²⁹¹ ROD6PD2427

업 등이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외부정보 접촉 통제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러시아에 체류했던 증언자는 음란물 동영상이 저장된 CD를 다량 소지했다가 적발된 노동자가 한 달간 비판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²⁹² 또한 출판·영상물 등이 저장된 CD나 USB 등이 북한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파견기간이 종료된 노동자나 휴가 등으로 일시 귀국하는 노동자에 대해 검열을 하기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²⁹³

휴대전화 통제

휴대전화에 대한 검열과 통제는 통신기기의 보급이 활발해지고 다수의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하면서 이루어졌다. 휴대전화 소지가 드물었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청부노동자들이 보위원에게 자발적으로 연락하지 않는 한 이들을 통제할 수 없었는데,²⁹⁴ 휴대전화가 대중화된 후에는 자신의 위치 등을 매일 보고 해야 하는 청부노동자들과 관리자들에게만 휴대전화가 허용됐다. 이어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이후에도 관리자, 청부노동자 모두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2G 핸드폰'만 사용할 수 있었다. 휴대전화 검열과 통제는 노동자들이 인터넷으로 외부정보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이 2G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까지 강하게 통제하지는 않았지만 스마트폰과 '한국산 제품'은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²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소지한 노동자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현지 중고시장이나 이주노동자에게 구입했으며,²⁹⁶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 접속해 남한 드라마·영화·뉴스 등과 탈북민이 운영하는 채널 등을 주로 시청했다는 증언이 있었다.²⁹⁷ 이 때문에 일반 노동자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가 검열에서 발각되면 남한 영상물을 본 것으로 간주했다고 한다.²⁹⁸

²⁹² 016VUD1398

²⁹³ BJ25941541, 016VUD1398

²⁹⁴ FY872C2229, ZLJYSV1529

²⁹⁵ 2RGXC1370

²⁹⁶ 1BOIH12246

²⁹⁷ UY2OY52324

²⁹⁸ 1BOIH12246

스마트폰을 통해 외부정보에 접촉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자 보위원의 검열 방식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원은 업무상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접속 기록을 수시로 검열 받았고, 청부노동자들도 매주 생활총화 때 보위원에게 2G 핸드폰을 확인받았는데 이 때문에 검열용 휴대전화를 따로 가지고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다.²⁹⁹

다만,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단속되어도 대부분 뇌물로 무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파견된 증언자는 단속에 두 번 걸려 기기를 압수당한 뒤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또 다른 증언자는 단속으로 인해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다고 증언했다.³⁰⁰ 드물기는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외부정보를 접촉한 것이 확인된 노동자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일도 있었다. 2018년 파견됐던 증언자는 스마트폰으로 남한 드라마·영화, 남한 사람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을 시청한 동료가 강제복송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손전화기(휴대전화)로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보위부에 적발되어 강제송환되는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나중에 그 동료가 처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³⁰¹

“(2018년 러시아에서) 원칙적으로 스마트폰 소지는 금지였지만 노동자들은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중고를 사서 사용했는데, 전화 통화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인터넷을 하기 위함입니다. 보위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와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에 노동자들의 숙소를 검열했습니다. 보위원에게 스마트폰을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일단 인터넷 검색 내역이나 통화내역 등을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잡습니다. 확인되면 보위원이 송환할지 말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데, 회사의 사장, 당비서와 협의하에 진행합니다. 그런데 송환이 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서 직장장이 (먼저) 뇌물을 주고 무마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³⁰²

²⁹⁹ CUKQSL2289, SWNH4K1399

³⁰⁰ KQ9C5Q2261, CM8P8K0045

³⁰¹ Z63J852157

³⁰² 1BOIH12246

생활총화

생활총화는 파견 현장의 상황에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진 시간만큼만 일하는 작업장에서는 규정대로 생활총화를 실시했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지만, 장시간 일하거나 휴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생활총화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 석탄공업부에서 파견된 노동자들은 북한에서처럼 생활총화를 실시했는데, 이곳은 노동시간 등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었다.³⁰³ 또한 중간관리자로 파견된 증언자들도 북한에서와 같이 생활총화를 매주 했고 강연회 등의 ‘사상교육’을 한 달에 2~3번 실시했으며, 명절을 이용해 정치학습이나 강연회 등을 진행했다고 증언했다.³⁰⁴ 하지만 파견기간 중 생활총화를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했다는 증언자도 많았다. 한 증언자는 별목노동자들이 산지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고, 일감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총화를 규정대로 잘 운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³⁰⁵

2010년 무렵부터는 생활총화를 실시하는 요일이나 방법이 다양화됐는데 이는 해외 파견 직종이 건설업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파견인원이 늘어났고, 각 파견지별 상황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동의 경우 지역 특성상 노동자들이 쉬는 금요일에 생활총화를 진행했으며, 의사 등 개별 활동 파견자 중 원거리 거주자는 월 1회만 참여하는 것도 허용됐다.³⁰⁶ 또한 매주 대사관에서 나오는 학습제강(교육 지도안)을 활용해 직장장이 10분 정도 설명하는 형식으로 월 1회 정도만 실시했다는 진술도 있었는데,³⁰⁷ ‘노동자들의 충성은 국가계획분을 납부하는 것’이기에 생활총화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그 시간에 노동을 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³⁰⁸ 아울러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는 생활총화를 중단하는 대신 매달 1회 대사관이 배부하는 학습자료를 보위원이 나누어주었다고 한다.³⁰⁹

³⁰³ ZNOYFE1456, FY872C2229

³⁰⁴ C13HUG0242, UDZ2HR2160, ROD6PD2427

³⁰⁵ WCDC3E0584

³⁰⁶ CVQIN52013

³⁰⁷ 8CWCD32231

³⁰⁸ 1BOIH12246

³⁰⁹ KQ9C5Q2261

“(2021년까지 러시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를 실시했습니다. 회사에는 노동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당원이었습니다. 당원이 아닌 3명은 일이 워낙 바쁘니 기록만 남기는 형태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관리성원 당원은 자기들끼리, 노동자 당원은 직장장의 책임 하에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활총화도 문건만 작성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잠을 5시간밖에 못 자니 생활총화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³¹⁰

라.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었지만 북한 당국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파견을 지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된 유엔 결의 제 2375호(2017.9.11.)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 허가 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된 유엔 결의 제2397호(2017.12.22.)³¹¹에서는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금지’도 대북제재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파견되어 있는 해외노동자들도 복귀해야 했고(2019.12월, 채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신규로 해외노동자를 파견할 수 없었지만, 북한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러시아와 중국 등에 여전히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광이나 유학 목적으로 위장해 파견자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도 회피 방법 중 하나다.³¹² 중국에 파견됐던 한 증언자에 따르면 제재 이전에는 공무원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제재 이후에는 관광비자로 출국한 뒤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의 접경지역으로 돌아와 세관에서 출입국 확인을 받고 다시 중국으로 복귀했다고 한다.³¹³ 러시아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복귀해 유학(교육)비자로 변경한 후 다시 출국했

³¹⁰ CUKQSL2289

³¹¹ UN Doc. S/RES/2397(2017), para. 8; 회원국은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에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환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³¹² EHDCIT2297, 8CWCD32231, CUKQSL2289, 32CICV2337, EIU6381596

³¹³ 1QUJHM2199, 9F06UX2305

는데, 이 경우 일반노동자는 자신이 서류상 소속된 대학을 알지도 못했다고 한다.³¹⁴ 또한 대북제재 이후 러시아에 관광비자로 들어가 청부를 하면서 3개월에 한 번씩 북한에 입국했다가 나오기를 반복했다는 진술도 있었다.³¹⁵ 중동 지역에서는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현지인을 회사 사장으로 채용하고, 회사는 하도급 공사를 맡아 운영했다는 진술이 있었다.³¹⁶ 아울러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북한이 직접 상대국과 인력파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북한의 기관과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 중국 회사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받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기도 했다고 한다.

“2022년까지 ○○에 있는 중국 ○○건설회사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중국 건설회사는 북한 ○○시 무역관리국과 계약체결을 했고 그 내용을 당국에 승인 받으면 해외파견을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시 유엔 대북제재로 국가 대 국가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시 무역관리국과 중국 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³¹⁷

일부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상황으로 불법체류 상태로 노동을 해야 했다. 실제로 대북제재조치 직전 러시아 파견 노동자 중 대북제재 때문에 거주 허가가 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로 청부를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³¹⁸ 또한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북한 당국이 국경을 봉쇄하자, 노동자들은 파견이 종료됐어도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고 이로 인해 일부는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야 했다. 2019년에 아프리카에 파견된 한 증언자는 대북제재로 해외노동자의 비자가 연장되지 않아 불법체류 하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출국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2021년 체류국 이민청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출석하도록 한 뒤 보호소에 구금한 상태로 취조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³¹⁹ 당시 체류국 이민청은 코로나19로 인

314 3Z681Y1213

315 HLYRUJ2290

316 EIU6381596

317 32CICV2337

318 UY2OY52324

319 5KJESK2235

해 파견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귀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인당 850달러 상당의 돈을 지불하도록 한 후 최대 2개월까지 임시거주허가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고 한다. 몽골에서도 2019년 6월 비자가 만료된 후 연장되지 않아 노동자 1인당 하루 1만 투그릭(약 3달러)의 벌금을 내면서 지내야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³²⁰ 그리고 2023년 8월 북한 당국이 국경봉쇄를 해제한 후에야 러시아 지역에 파견됐던 노동자들의 복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³²¹

“(2019년 파견됐을 때) 노동허가증 없이 교육비자로 노동을 하다가 러시아 경찰이 건설현장에 정기적으로 검열을 나오면 보통 뇌물을 주고 단속을 피합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 노동자 4명이 노동허가증 미소지로 노동하다 단속됐고, 이민국에 넘겨져 조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북한 국경이 봉쇄되어 추방되지는 않았고 대신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2019년 이전에 파견되어 노동비자를 소지한 노동자들만 돌아갔는데, 전부는 아니고 약 70% 정도만 철수했습니다. 나머지는 2019년 이후 파견된 자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계속 건설 활동을 했습니다.”³²²

마. 선발 조건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할 노동자를 선발할 때는 현지를 이탈하거나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현지 이탈 가능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형제자매가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파견 대상자 본인이 미혼인 경우 또는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없을 경우는 파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친인척 중 정치범수용소 수용자가 있거나 형제 중 해외 체류자가 있어도 파견되지 못했다. 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는, 일반 노동자의 경우 대학 졸업자이거나 특수군부대 복무자도 제외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파견자들을 보면, 임업 분야 위주였던 1990년대에는 노동당원이 다수였고, 2010년 전후 주요 파견업종이 건설업으로 바뀌면서 위의 기본적인 결격사유 외에 미장자격을 비롯한 실무능력 보유 여부가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³²⁰ 2RGIXC1370

³²¹ 5VRQH72482

³²² KQ9C5Q2261

다만, 이러한 선발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중간관리자의 경우 파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자격을 상당 부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역원은 ‘기혼으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지 않고, ‘부모가 생존해 있는 27세 미만’의 미혼자도 한 차례 파견을 나갈 수 있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증언이 있었다.³²³ 이에 더해, 통역원으로 선발되려면 대학 성적이 우수하고 외국문종합출판사의 해외파견 외국어시험 담당 부서가 시행하는 필기·구술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또한 2010년 이후에는 의료 분야 파견자도 업무능력이 선발 조건에 포함됐던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경우 병원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당원이 된 지 3년이 넘어야 했다고 한다. 아울러 선발 후에도 2~6개월간 영어강습을 받은 다음 회화능력 평가에서 합격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³²⁴

“(2015년 러시아 파견 당시) 가족 중에 월남자가 있거나 정치범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토대에서 걸려 제외됐고, 가정불화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가족 중에서 특수기관인 중앙당, 군수공장, 군(軍)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거나 본인이 특수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파견에서 제외됐습니다. 주간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간부로만 파견 보내고 노동자로는 파견 보내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한 사람만 갈 수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통역의 경우 총각이어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³²⁵

바. 선발 절차

파견 노동자 선발은 선발 시기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추천 및 서류심사, 신원조회, 신체검사, 면담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1990년대 임업노동자 등은 중앙의 임업총국 등에서 전국 단위로 인원을 배정해 선발했는데, 추천된 노동자에 대해 신원조회와 직장 내 평가 등의 서류심사를 거치고, 신체검사를 진행한 후 ‘담화’(면접)를 통해 선정했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³²⁶

³²³ EHDC1T2297

³²⁴ RQU50U2001, CVQIN52013, Z63J852157, ULIF611577

³²⁵ J69FHD2164

³²⁶ U9QUH40316, JKFPMU0323, ZNOYFE1456

건설노동자는 주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의 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이하 ‘양성사업소’)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파견 대상이 됐다. 이외에 중앙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노동자를 파견하거나 군 복무 중인 병사를 별도로 선발·파견하기도 했다.³²⁷ 선발 절차는 중간관리자(직장장 등) 파견의 경우 양성사업소 간부과의 지도원, 간부과장 이외에 조직비서와 당비서의 면담이 추가되고, 중앙당 면담 때는 8과(해외파견자 담당 부서) 지도원과 과장의 면담을 거쳐 중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비준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의사의 선발 절차는 소속과 파견주관기관에 따라 달랐다. 소속 병원의 관할 지역 도·시당의 면담으로 시작해서, 중앙당과 당내 파견주관기관 관할부서, 해외파견자 담당 부서인 8과, 보위부 등의 면담을 거친다. 또한 식당 봉사원(종업원)의 경우, 평양의 전문학교인 대외봉사학원 졸업자 중에 뽑거나 추천을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 II-10 파견 분야별 선발 절차 (기록센터 조사 기준)

파견분야	선발 절차
임업 노동자	임업총국 → 전국 시·군행정위원회(할당인원 통보) → 해당기업소 선발인원 고지 → 기업소(초급, 부문) 당비서 추천 → 신원조회 및 직장 내 평가서 상신 → 신체검사 → 시·군당 및 도당위원회 지도원 면담 → 중앙당 면담(선택적)
건설노동자 (대외건설지도국 양성사업소 소속)	간부과(지도원) 추천 → 간부와 신원조회, 보증인 확인, 직장의 보위원 평정서 제출 → 사업소 간부와 지도원·간부과장 면담 → 지도국에 서류제출 → 지도국 간부부 지도원, 부장, 조직비서, 책임비서 면담 → 중앙당 8과 면담(*관리자 한정)
의사	병원 관할 지역 도·시당 면담 → 중앙당 파견관할부서/ 8과 면담
식당 종업원	식당 상급기관 면담 → 소속 조직(청년동맹 등) 평가서 제출 → 신원조회

이처럼 해외파견 노동자의 추천·선발 기준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일반주민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선발 조건도 까다로웠기 때문에 인맥이나 뇌물 등을 활용해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임업 분야 등 초창기 파견 때는 뇌물보다 기업소 당비서와의 친분이나 친인척의 도움 등 인맥을 주로 이용했고, 상황에 따라 인맥이나

³²⁷ V6PE6V2232, 8CWCD32231

뇌물 없이도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²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뇌물이 일반화됐다. 특히 건설 분야의 경우 파견자 추천 권한을 담당 부서의 지도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건설지도국 산하의 양성사업소 노동자가 심사를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뇌물을 줘야 했다고 한다. 실제로 2019년 러시아에 건설노동자로 파견된 한 증언자는 양성사업소 소장에게 150달러, 당위원장에게 250달러, 담당 보위원에게 70달러를 뇌물로 상납했다고 한다.³²⁹ 의사도 원칙적으로는 공고를 통해 파견자를 선발하도록 되어있지만, 파견주관기관에 뇌물을 주고 내정자로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³³⁰ 한 증언자는 선발 전 총 4,500달러의 뇌물을 줬고, 면담이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300~500달러를 더 상납했다고 한다.³³¹ 2017년부터 통역원으로 근무했던 증언자도 소속 사업소 간부과의 지도원과 대외건설지도국 간부부, 중앙당 간부부의 지도원 등 서류나 자격 심사 등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총 1,500달러의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다.³³²

“(2017년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될 때) 통역으로 외국에 파견되는 다른 사람들은 500~1,000달러를 주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견 시 뇌물은 직종,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견국가(체류국가)에서 얼마나 벌 수 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후방총국에서 파견되는 의사들의 경우 5,000달러 이상을 주고 나간다고 들었습니다.”³³³

³²⁸ O1748A0834, 5T1BAM1849

³²⁹ KQ9C5Q2261

³³⁰ B305WN2002, RQU50U2001, CVQIN52013

³³¹ B305WN2002, RQU50U2001

³³² EIU6381596

³³³ 8B5CA02248

4. 코로나19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된 가운데 북한 당국은 이 바이러스가 북한 내에 유입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다가 2022년 5월에서야 환자 발생을 공식 인정했고, 그 해 8월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상황 초기인 2020년 1월 북한 당국은 기존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고, 2020년 8월 22일 「비상방역법」을 채택한 후 이를 세 차례 개정하면서 국경을 봉쇄하고 통제를 강화했다.

가. 방역조치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자 국경과 해안을 봉쇄했다. ‘북부국경, 해안지대, 최전연(전방의 맨 앞 기지) 일대 1km 구간을 완충지대로 설치함에 대하여’라는 포고문³³⁴을 통해 완충지대를 설정했고, 해안선에서 일정 거리까지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³³⁵ 또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 인접 지역의 경우 두만강을 수원지로 하는 수돗물의 공급을 모두 중단시켰다.³³⁶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동 제한이나 방역, 격리조치도 시행됐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거주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했으며, 관혼상제 행사에는 40인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³³⁷ 이와 더불어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각 세대를 방문하여 체온을 확인한 뒤 이를 게시하도록 하는 등 생활 방역과 공공시설 방역을 강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독약은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기도 했다.³³⁸ 또한 ‘씨비차’(영리 목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 등의 탑승 인원을 제한하고, 승객의 체온을 측정한 뒤 소독을 실시했으며, 지역 간 이동 시에는 각 방역초소에

³³⁴ ‘포고(布告)’는 일반에게 널리 알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을 뜻하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내리는 지시 등을 알릴 때에 ‘포고’라는 용어를 사용함.

³³⁵ UBWCTO2335, OTP8Z62291, ONW4SH2402

³³⁶ HNTCJ42201

³³⁷ HNTCJ42201, RQU50U2001

³³⁸ ONW4SH2402

서 소독하도록 했다.³³⁹

코로나19 상황 초기에는 감염 의심자나 확진자를 특정 장소에 격리했지만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자가 격리 조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생활을 하는 인민군들에 게도 전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소지품 등 소독, 집합금지,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³⁴⁰

“작년(2020년) 3월경 텔레비전에서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0년 8월경부터 인민반장이 주민들에게 야외에 다닐 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습니다. 마스크는 장마당에서 구입해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2020년 9월경부터 진료소 의사들이 매일 집집마다 찾아와서 전자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고 이를 기록해갔습니다. 버스를 탈 때, 상점에 들어갈 때, 장마당 입구에서도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제를 뿌린 뒤에야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인민반장은 주민들에게 가족을 제외하고 3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고, 결혼식이나 환갑 등 관혼상제의 경우에는 참석 인원이 40명을 넘어서는 안되며 2시간 이상 함께 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³⁴¹

주민들에 대한 예방 백신 접종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22년 6월부터 5개월 사이 특정 지역에 한하여 세 차례 실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전선 인접 지역의 진료소에서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을 실시했는데,³⁴² 당시 의료진은 주민들에게 “백신의 가격은 소 한 마리 값이며, ‘원수님’(김정은)의 배려로 가능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있었다.³⁴³

한편 북한은 백신을 대신하여 경구용 예방약을 개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2021년 가을경 북한 당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경구용 예방약

³³⁹ 7IAFLD2191

³⁴⁰ OTP8Z62291

³⁴¹ 7IAFLD2191

³⁴² 5VRQH72406

³⁴³ XHQ3O62407, UYSKRB2399, 5VRQH72406

을 가지고 일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지만, 예방약을 투약한 주민 일부가 부작용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중단되었다고 한다.³⁴⁴

주민 전체에 대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이 커졌고, 이로 인해 민간요법이 크게 유행했다. 진술에 따르면, 주민들은 평양 지역에서 버드나무와 측백나무 달인 물을 마시면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산과 들로 나무를 구하러 다녔다. 그러나 이런 민간요법을 따랐던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뒤늦게 북한 당국이 이를 금지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⁴⁵

나. 주민통제

북한 당국은 「비상방역법」과 비상방역조치 아래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을 통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20년 8월경부터 국경과 해안선에 대한 봉쇄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에 따르면 2020년 8월 ‘전군이 코로나19를 철저히 막기 위한 국경, 해안, 전역을 완전히 봉쇄할 데 대하여’라는 포고문을 통해 모든 군부대에 비상방역조치가 하달되었다고 한다. 포고문에는 ‘코로나19를 저지하기 위해 전군이 모든 일을 멈추고 당장 국경지역으로 이동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실제로 기존의 국경 경비에 인민군이 추가로 배치됐다. 이는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2021년 제8차 당 대회를 보위하라는 방침 등이 지속적으로 시달되었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인해 국경 봉쇄는 더욱 강화됐다.³⁴⁶ 그 결과 주민들이 빨래를 하던 곳도 출입이 통제되었으며, 봉쇄 후 철조망에 전류가 흐르게 됐다. 봉쇄구역에 진입하면 발각 즉시 사살하라는 방침도 내려졌다. 이에 따라 경비대원이 70m 간격으로 한 명씩 배치되었으며, 평소에는 국경경비대원에게 공포탄 2발과 실탄 3발이 지급되었으나, 이 시기에는 실탄 60발이 지급되었다고 한다.³⁴⁷

³⁴⁴ ONW4SH2402

³⁴⁵ ONW4SH2402

³⁴⁶ OTP8Z62291, UBWCTO2335

³⁴⁷ OTP8Z62291

“국경 봉쇄조치 이후 2층 높이 초소에서 망원경으로 감시하고, 국경지역 70m 마다 한 명씩 60발을 장전한 채 경비를 셉습니다. 철조망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다 보니, 국경을 넘어 탈북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아무도 (봉쇄지역에 진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2020년 가을 국경경비 군인이 근무 중, 복면을 쓴 채로 중국에서 북한 봉쇄구역으로 들어오려는 자를 사살하여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³⁴⁸

국경 봉쇄 방침 위반자를 발견 즉시 총격했다는 경우와 사형에 처했다는 사례도 아래와 같이 수집됐다.

표 II-11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총격·총살 사례³⁴⁹ (기록센터 조사 기준)

시기	지역	피해자	내용
2020	양강도	국경경비대원	밀수자 청탁으로 중국에 갔다 온 것이 발각되어 재판 없이 사형
2020	양강도	주민	탈북하기 위해 완충지역에 들어간 주민을 즉시 사살
2021	자강도	국경경비대원들	중국과 밀무역을 하다가 밝혀져 사형

방역조치를 위반한 주민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이루어졌다. 방역조치에 훼방을 놓는 경우 지위에 상관없이 용서하지 말라는 취지의 방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⁵⁰ 마스크의 착용이 의무화된 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는 주민을 단속하거나 기업소 등이 방역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³⁵¹ 일반 주민에 대한 단속은 주로 여맹규찰대, 대학생규찰대 등에서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심화되면서 전문적 단속기관인 ‘코로나 상무’가 조직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진술에 따르면 코로나 상무는 인민위원회 및 시·군당위원회 등 소속 기관원 5~6명 정도로 구성됐다.³⁵² 이들의 업무는 방역교육, 소독상황 검열 등이었으며 지역과 지역을 오가는 버스의 소독검열을 담당하기도

³⁴⁸ OTP8Z62291

³⁴⁹ UBWCTO2335

³⁵⁰ TGCAEV2403

³⁵¹ J960TT2200

³⁵² HNNTCJ42201, J960TT2200

했다. 실제로 2020년 상반기 중 코로나 상무의 검열에 단속된 기업소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있었다.³⁵³ 한 증언자는 2021년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목격했는데, ‘야생짐승을 먹지 말라.’는 지시를 어긴 주민들이 노동교양처벌을 받은 사례였다.³⁵⁴ 또한 2021년 비상방역위원회가 평안북도 지역에 설치한 초소에서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고 도주하던 차량이 사망사고를 내자 그 주민을 사형에 처한 사례가 있었다.³⁵⁵ 같은 해 2월에는 격리된 주민들이 목욕탕에 가는 것을 허락한 지방 방역지휘부 기관원이 「비상방역법」 위반으로 사형되기도 했다.

“2021년 2월 18일 ○○도 자동차 군관학교 운동장에서 ○○군 당 조직비서와 인민위원장 등 (남성 간부) 2명이 「비상방역법」 위반행위로 재판 없이 공개총살 되었습니다. 비상방역조치 위반으로 격리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주민들이 목욕하게 해달라고 항의하자 이들을 은덕원(목욕탕)에 집단 목욕을 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도 보위부 반탐부장이 처형대상자 가족들을 정리하는 (가족들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후열사업을 하러 ○○군에 내려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코로나 변이가 확산된 2021년 이후부터는 방역위반행위는 반동행위로 여겨졌습니다.”³⁵⁶

북한 당국은 방역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를 주민들에게 적극 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에 중·북 접경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한다는 가짜 약을 만들다가 적발되어 재판 없이 처형되었는데, 이후 북한 당국은 주민교양을 위해 처형 사실에 대해 선전했다고 한다.³⁵⁷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 사이에 각종 유언비어도 떠돌았다. 나무를 달인 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 혁명전적지 조경 나무껍질을 벗겨 간 주민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다는 소문, 식용달팽이를 비싼 가격에 중국에 수출할 수

353 HNTCJ42201

354 TEIEJA2400

355 UBWCTO2335

356 UBWCTO2335

357 UBWCTO2335

있다는 소문 등이었다.³⁵⁸ 이에 방역사령부(비상방역지휘부)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입단속을 시키며 유언비어를 만들어내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었다.³⁵⁹ 또한 ‘말반동’으로 강제실종되었던 사례도 수집됐는데, 진술에 따르면 한 농장원이 당 대회 학습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가 가족 전체가 실종되었고, 다른 노동자는 북한 당국이 공산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실종되었다고 한다.³⁶⁰

“코로나 기간 중 ○○군 협동농장의 작업반장이 강냉이 영양단지 파종 현장에서 당 대회 내용을 가지고 학습하라는 지시에 대해 ‘아, 당 대회도 너무 많이 하니깐 몇 차, 몇 기인지 아리까리하니(아리송하니) 이런 것 좀 안 하면 좋겠어. 이런 거 한다고 뭐 개선되는 게 있어? 암송하러니 할 때마다 머리 아프지.’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가족 전체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³⁶¹

다. 북한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는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집합금지, 이동제한, 국경 및 해안선 봉쇄 등으로 주민들은 사적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받았다. 한 증언자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로 3~4명도 모일 수 없었고, 거주지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장마당에서의 장사나 마을을 옮겨 다니며 하는 장사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같은 조치는 2021년 중반까지 이루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주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었고, 장마당도 폐쇄되었다가 2021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제한조치가 완화되어 장사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했다.³⁶² 또한 코로나19 직후 건설현장에서의 작업도 일절 금지되었고, 조업 활동도 마찬가지로 출항은 물론 어획을 하거나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할 수 없었으며 민물고기조차 잡을 수 없었다.³⁶³ 해안 지역에서 잠수부로 일했던 한 증언자도 해안 봉쇄로 인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고

³⁵⁸ TEIEJA2400, ONW4SH2402

³⁵⁹ ONW4SH2402

³⁶⁰ ONW4SH2402

³⁶¹ ONW4SH2402

³⁶² UYSKRB2399

³⁶³ HNTCJ42201, ONW4SH2402

했다.³⁶⁴ 다만 양강도 등에 거주했던 또 다른 증언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가 엄격하지 않아 이동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않았고 마스크도 형식적으로 착용했다고 진술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³⁶⁵

한편, 국경 봉쇄로 중국인들과 함께 운영하던 기업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합영기업소 운영에 참여했던 중국인이 출국해야 했고, 기업소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들여오지 못하게 되어 완제품을 중국 등으로 보내는 일에도 차질이 있었다.³⁶⁶ 이 때문에 기업소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합영기업소에서 근무했던 증언자는 2020년 자신이 일하던 공장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원자재를 북한으로 들여오지 못하거나 완제품을 중국으로 보내지 못해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중국과의 교류를 모두 막아버리니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일공(중국에서 원료를 들여온 다음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중국으로 내보내는 일)’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마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조업 금지, 건축 금지 등으로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매우 어렵게 되어 ‘하루 세 끼니를 다 먹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³⁶⁷

국경 봉쇄조치는 생활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필수 의약품은 물론 수입 생필품, 특히 공산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함경북도에 거주했던 주민은 해열진통제 가격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1정당 300원~500원에서 5,000원으로 10배 이상 오른 것을 목격했다.³⁶⁸ 또한 생필품 중 하나인 ‘맛내기’(조미료)는 국경 봉쇄 이전에 1kg당 10,000원 정도였다가 20만 원으로 20배가량 폭등했으며 대두유는

³⁶⁴ SYYKDH2214

³⁶⁵ 5Q8LRL2333

³⁶⁶ HNTCJ42201

³⁶⁷ HNTCJ42201

³⁶⁸ HNTCJ42201

1kg당 1만 원에서 55,000원가량으로, ‘사탕가루’(설탕)는 1kg당 5,500원에서 40,000원 정도로 가격이 상승했다.³⁶⁹ 다만 쌀 등의 곡물 가격은 코로나19 상황 초반에 가격이 올랐다가 이후 비교적 안정되었다는 진술이 공통적이었다. 한 증언자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에 쌀의 가격은 1kg당 5,300~5,500원이었고 옥수수과 국수는 1kg당 3,000~3,500원, 밀가루는 1kg당 10,000원 정도를 유지했으며, 계란이나 닭고기 등도 코로나19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³⁷⁰

이외에도 미국 달러 등의 환율도 상당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초기에는 달러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이전에 1달러가 북한 돈 약 8,500원이었지만, 방역조치 이후 6,500~5,500원까지 하락했다가 2022년 이후에는 10,000원까지 상승했다는 진술이 있었다.³⁷¹ 위안화도 일부 변동이 있었는데 양강도와 함경북도에서는 2019년 100위안을 환전하기 위해 12만 원이 필요했지만, 코로나19 이후 11만 원 정도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진술이 있었다.³⁷²

한편 국경 봉쇄 등 비상방역체제가 장기화되어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주민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민심이 흉흉해졌다. 이에 절도와 강도, 사기사건 등이 증가했는데, 한 증언자는 수출 불가 품목이었던 식용달팽이를 수출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마리당 수십만 원씩 주고 구매한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았다고 진술했다.³⁷³ 또한 해외노동자 파견기관의 기관원을 사칭해 해외파견자로 선발해 주겠다고 돈을 가로채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³⁷⁴ 이처럼 주민들의 생활은 힘들어졌으나, 북한 당국은 조직생활을 강화시키는 한편, 정권의 권위를 높이는 공사 등을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³⁶⁹ UYSKRB2399

³⁷⁰ 7IAFLD2191, TGCAEV2403

³⁷¹ 7IAFLD2191, TGCAEV2403

³⁷² HNTCJ42201

³⁷³ UYSKRB2399, ONW4SH2402

³⁷⁴ ONW4SH2402

“코로나 기간 중에 전국의 혁명사상연구소에 난방시설을 만드느라 주민들이 힘들었습니다. 2021년 2월 즈음 법 기관을 시찰하던 김정은이 혁명사상연구소에 들어갔다 김일성·김정일 사진이 걸려 있는 곳이 난방이 안 되는 것을 보고는 ‘우리 선대 수령님들을 냉방에 모셨다.’고 하며 관련자를 문책했습니다. 이후에는 단위별로 혁명사상연구소의 난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그 공사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³⁷⁵

III

특별사안

“당시 요덕군 소재 15호 관리소 혁명화생들은 모두 남자였고, 간부들이 많았습니다.
혁명화생들에게는 할당량이 주어졌고 그 할당량을 다 채울 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일의 강도가 엄청 세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1. 정치범수용소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데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하며, 정치적인 이유로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에서도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아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III-1 「자유권규약」과 정치범수용소

「자유권규약」		정치범수용소 (관련 목차)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공통 정치범수용소

하지만, 북한 당국은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체제에 반하는 인사들을 격리하기 위해 ‘관리소’라고 부르는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중대한 정치적 잘못을 저지른 경우,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갇힌다고 언급한 바 있다.²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법령에 의한 공식적인 구금시설이 아니며, 철저한 보안 속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용시설은 정식 명칭 없이, ‘○○호 관리소’나 ‘○○호’ 등 고유의 식별 번호로 구분되었으며, 수용된 주민들은 수용 이후 사면 여부에 따라 ‘이주민’, 또는 ‘해제민’ 등으로 불렸다.³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탈북 이전에도 인지하고 있었다. 정치

1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2.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이하 생략)

2 UN Doc. A/HRC/25/CRP.1 (2014), para. 729.

3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수용 후 사면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주민’이라 하고, 이주민이 사면되면 ‘해제민’으로 불렸다.

범수용소 수용 대상은 소위 ‘간첩 행위’, ‘반역 행위’ 등을 한 사람과 그 가족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수감 이유나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북한 당국은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에 정치범수용소를 설치하고, 체제에 반하는 인사들과 그 가족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범수용소 수용자들은 정치적인 이유 또는 처벌 대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용되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주민들은 광산이나 농장 등에 배치되어 가혹한 노동을 해야 했으며, 수용소 내부에서 공개처형과 비밀처형도 이루어지고 있는 등 자의적인 생명 박탈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가. 정치범수용소 현황

(1) 수용소 운영

기록센터 조사로 파악된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는 모두 10곳이다.⁴ 수집된 시설의 위치는 함경북도 4곳, 함경남도 3곳, 평안남도 2곳, 자강도 1곳이었다. 이중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시설은 4곳으로 평안남도 2곳(개천시 14호·18호 관리소), 함경북도 2곳(명간군 16호 관리소, 청진시 25호 관리소)이다.⁵

표 III-2 정치범수용소 현황 (기록센터 조사 기준)

구분	정치범수용소(위치, 폐쇄시기)
운영	14호(평남 개천), 16호(함북 명간), 18호(평남 개천), 25호(함북 청진)
폐쇄	12호(함북 온성, 1985년경), 15호(함남 요덕, 2019년경), 17호(함남 덕성, 1983년경), 21호(함남 단천, 2001년경), 22호(함북 회령, 2012년경), 24호(자강 동신, 미상)

* 18호 관리소는 당초 평안남도 북창군에 있었으나, 2006년경 평안남도 개천시로 이전 (이전하기 전의 관리소 명칭은 구(舊) 북창 18호 관리소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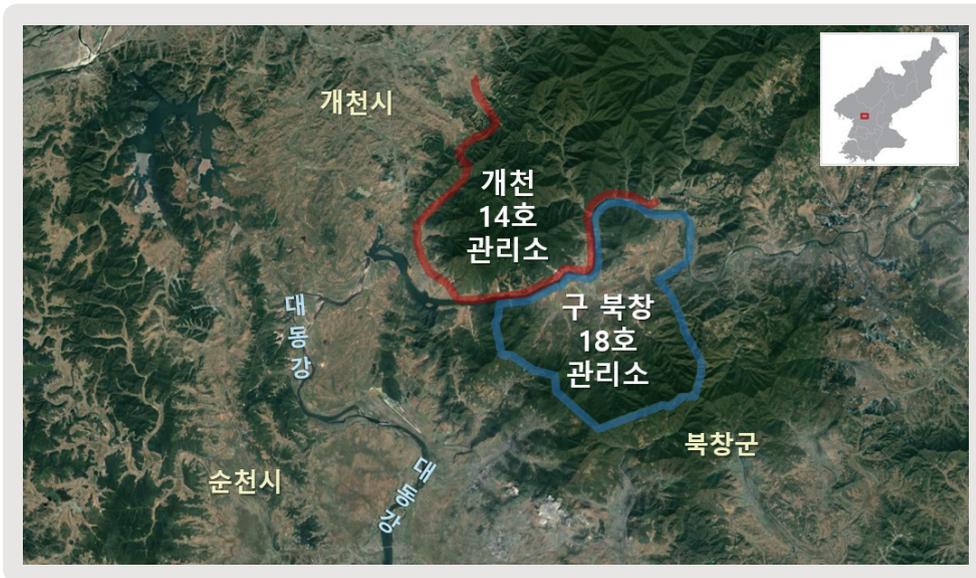
정치범수용소 중 일부는 위치, 규모 등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호 관리소는 당초 평안남도 북창군에 위치하고 있었고, 대동강 지류를 경계로 개천 14호 관리

4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에 기술한 ‘자강도 농출리 관리소’는 정치범수용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정치범수용소 현황(기존 11곳)에서 제외했다.

5 당초 일부 폐쇄된 것으로 보았던 ‘요덕 15호 관리소’는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 모두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와 마주보고 있었다. 하지만 2006년 18호 관리소가 개천시 일대로 이주하면서 상당수의 해제민을 제외한 일부 인원만 새로운 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개천 14호 관리소는 처형된 장성택 관련자들을 2014년 수용할 목적으로, 이전하고 남아있던 구(舊) 북창 18호 관리소 부지를 편입시켰다는 진술이 있었다.⁶ 즉, 개천 14호 관리소는 시설 및 수용인원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4호의 확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진술은 수집되지 않았다. 한편, 함경남도 요덕군의 15호 관리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수용 규모를 일부 축소했다는 진술이 있었고,⁷ 현재는 폐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Ⅲ-1 ‘구 북창 18호 관리소’ 부지의 ‘개천 14호 관리소’ 편입 (기록센터 조사 기준)



*(사진출처) 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m/web/>)

2010년대 초반 이후 상당수의 수용소가 이미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성 12호 관리소는 1985년경, 덕성 17호 관리소는 1983년경, 단천 21호 관리소는 2001년경, 회령 22호 관리소는 2012년경에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폐쇄 지시가 있었다거나,

⁶ E4MJ0I2167

이와 관련하여 UN Doc. A/HRC/25/CRP.1 (2014), para. 739: 진술에서는 “18호 정치범수용소는 2006년 평안남도 북창의 시설이 폐쇄되기 전까지 점차 규모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18호 정치범수용소가 있던 자리에는 단기 노동구금시설이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⁷ XHZHYK0096

근무하던 기관원이 탈북하여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국제사회에 증언했기 때문이라는 진술이 있었지만, 정확한 폐쇄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폐쇄된 수용소 구역에는 해제민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주하여 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온성 12호 관리소의 경우 폐쇄 후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이나 수용소 기관원으로 일했던 사람 등을 이주시켰다는 진술이 있었다.⁸ 기존 이주민들은 다른 시설로 이송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회령 22호 관리소의 수용자들은 2012년경 수용소 폐쇄 후 명간 16호 관리소로 이송했고, 대신 함경북도 명간군(당시 화성군)의 농장원들을 이주시켰다는 진술이 있었다.⁹ 단천 21호 관리소도 폐쇄 이후 해제민이 살거나, 일반 주민을 이주시켰다고 한다.¹⁰ 다만, 자강도 동신군의 24호 관리소는 폐쇄된 것으로 보이나, 관련된 진술은 없었다.

표 III- 3 정치범수용소 개요 (기록센터 조사 기준)

구분	12호 관리소 (동포 관리소)	14호 관리소	15호 관리소 (요덕 관리소)	16호 관리소 (명간 관리소)	17호 관리소
위치	함북 온성군 창평리	평남 개천시	함남 요덕군 입석리	함북 명간군 (舊 화성군)	함남 덕성군
운영 기관	국가보위성 9국	국가보위성	국가보위성 또는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특징	· 1985년경 폐쇄 · 시설 폐쇄 후 원산 지역 주민 이주	· 정치범만 수용 · 2014년경 확장 (舊 18호 관리소 부지)	· 2019년경 폐쇄 · 연좌제 적용	· 일반 주민 대상 생산물품 판매 · 연좌제 적용 · 舊 명칭 '화성 관리소'	· 1983년경 폐쇄 · 연좌제 적용
구분	18호 관리소	21호 관리소	22호 관리소	24호 관리소	25호 관리소 (수성 관리소)
위치	평남 개천시	함남 단천시 검덕지구	함북 회령시 사울리·낙생리· 굴산리	자강 동신군 수전리·금석리	함북 청진시 송평구역 수성동
운영 기관	사회안전성	사회안전성 교화국	국가보위성	국가보위성	국가보위성
특징	· 완전통제구역 및 혁명화구역 운영 · 연좌제 적용	· 2001년경 폐쇄 · 연좌제 적용	· 2012년경 폐쇄 · 관리원 탈북으로 폐쇄 · 폐쇄 후 명간군 지역 주민 이주 · 연좌제 적용	· 미상시점 폐쇄	· 교화소 형태 · 정치범만 수용 · 해제(만기출소) · 면회 불가 · 자전거 생산

* 현재 운영 중인 정치범수용소

* 구 18호 관리소는 평남 북창군 봉창리에 위치하였으며, 사회안전성이 운영한 것으로 파악(2006년 폐쇄 후 평남 개천시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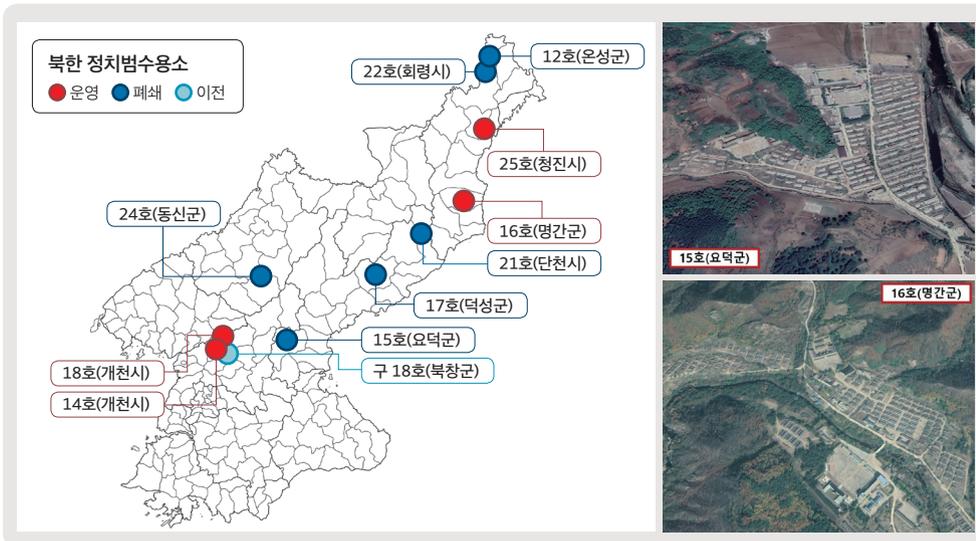
8 3BKBFW1632, RRH58L0444

9 9KQ9NA0790

10 MYPEZ81177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주민들은 사면 여부에 따라 호칭과 권리의 수준이 달랐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용된 후 사면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주민’이라고 하고, 이주민이 사면되면 ‘해제민’으로 불렸다. 해제민은 수용소 밖으로 외출이 가능하고, 공민증이 발급되는 등 일반 주민과 큰 차이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민증 주소지에 ‘관리소’라는 명칭이 기재되는 등 일반 주민과는 구분했다는 진술도 있었다.¹¹ 수용소에서 근무하는 기관원들은 ‘관리성원’이라고 부르는데, 일부 수용소 관리성원과 가족은 해제민과의 구분을 위해 자신들을 ‘대내’라고 부르다고 했다.¹²

그림 Ⅲ-2 북한 정치범수용소 추정 위치 (기록센터 조사 기준)



* (사진출처) 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m/web/>)

정치범수용소 내부는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구분됐다. 완전통제구역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구역으로 수용소 내에서도 기관원 이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며, 혁명화구역은 수용소 내에 존재하는 ‘혁명화 처벌’¹³ 이행 장소를 말한다. 수용소의 일부 구역을 완전통제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하지만, 수용소 전체가 완전통제구역인 경우가 대

11 SQJ2G1499

12 E4MJ0I2167, SQJ2G1499, 50MCF02132

13 ‘혁명화’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혁명 의식을 고취하는 징벌을 통칭하는 것으로 진술에 따르면 ‘혁명화 처벌’은 1년부터 3년까지라고 하며, 처벌은 국가보위성에서 결정한다. (XHZHYK0096)

부분이었다. 현재 운영 중인 정치범수용소 중 혁명화구역 없이 전체를 완전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곳은 개천 14호, 명간 16호, 청진 25호 관리소이고, 혁명화구역도 같이 운영하는 곳은 개천 18호 관리소인 것으로 보인다. 요덕 15호 관리소의 경우 2005년 경까지는 혁명화구역을 운영했으나, 이후 폐쇄한 것으로 보인다.¹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이주민의 범위는 수용소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는데, 크게 정치범 본인만 수용되는 경우와 가족까지 동반 수용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개천 14호 관리소는 정치범 본인만을 수용하며, 요덕 15호 관리소는 가족들도 함께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가족을 동반 수용했던 회령 22호 관리소가 폐쇄 후 명간 16호 관리소로 옮겼다는 것으로 보아, 명간 16호 관리소도 가족까지 수용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⁶ 개천 18호 관리소의 완전통제구역은 가족까지 수용한 반면, 혁명화구역은 처벌대상자만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¹⁷ 다만, 청진 25호 관리소는 정치범 본인만 수용된다는 증언이 있었다.¹⁸

또한, 정치범수용소는 마을 형태와 교화소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네 곳 중에서는 청진 25호 관리소만 교화소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마을 형태 수용소는 거주지, 농장이나 공장 등 직장, 병원과 학교, 노동교양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일반 지역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반면, 교화소 형태인 청진 25호 관리소는 숙소와 작업장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교화소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¹⁴ 이와 관련하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C)는 2014년 즈음 (요덕 15호 관리소의) 시설이 상당히 파괴되었고 이후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HRNC "North Korea Imagery Analysis of Camp 15 "Yodok" Closure of the "Revolutionizing Zone", 20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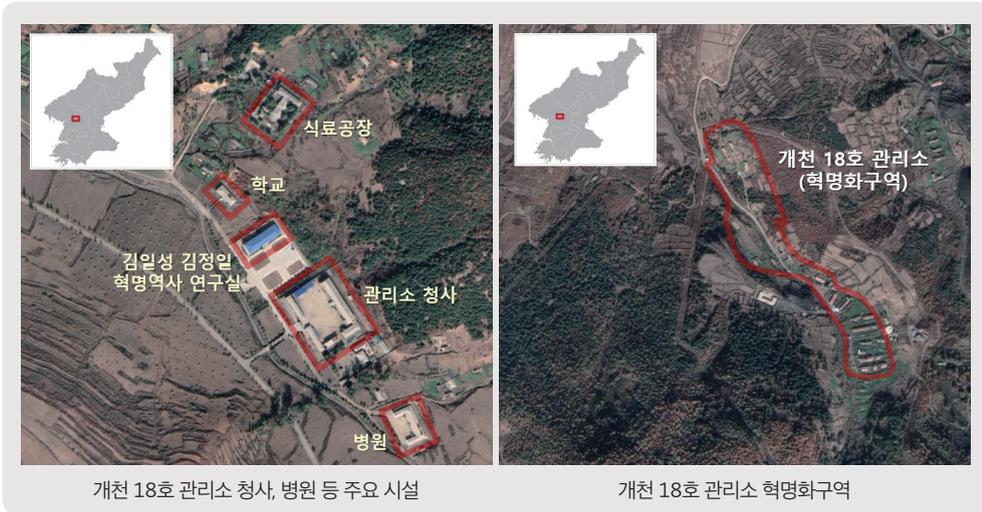
¹⁵ E4MJ0I12167

¹⁶ 3BKBFW1632

¹⁷ 7CRICZ2168

¹⁸ FVJRJJ0567

그림 Ⅲ-3 개천 18호 관리소 (기록센터 조사 기준)



* (사진출처) 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m/web/>)

정치범수용소는 1970년대를 전후로 시설의 수와 규모가 확대되었고, 가족까지 수용하기 위해 마을형태의 모습이 된 것으로 보인다. 평안남도 북창군에 있었던 구 18호 관리소는 정치범 가족을 수용하기 위해 1960년대 중반 이후 조성되었으며, 같은 이유로 온성 12호, 회령 22호, 덕성 17호 관리소 등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요덕 15호와 덕성 17호 관리소는 1970년대 중반 대규모의 주민이 수용되었으며, 함흥시 등에서 수백 명의 가족 단위 주민들이 한꺼번에 요덕 15호 관리소에 수용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¹⁹ 덕성 17호 관리소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이주민이 수용되었다가, 1980년대 초중반 관리소 폐쇄를 앞두고 북창군의 구 18호 관리소로 대거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정치범수용소 운영 기관은 국가보위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회안전성이 운영하는 관리소가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 복수의 증언자들은 평안남도 북창군 봉창리에 있었던 구 북창 18호 관리소는 경비와 처형을 보안원들이 담당하는 등 사회안전성이 관할했다고 했다.²¹ 폐쇄된 단천 21호 관리소도 사회안전성 산하 교화국에서 관리했다고 하며, 요

¹⁹ EHA0D70898

²⁰ SOQJ2G1499, E4MJ0I2167

²¹ E4MJ0I2167, 7CRICZ2168, 50MCF02132

18호 관리소의 주소가 '평안남도 북창군 봉창리 사회안전부 2918군부대'였다는 증언도 있다. (SOQJ2G1499)

덕 15호와 덕성 17호 관리소도 사회안전성에서 관할했다는 진술이 수집됐다.²²

(2) 수용소 규모

교화소 형태로 운영되는 수용소를 제외한 다른 정치범수용소의 규모는 여러 개의 '리(里)'나 '노동자구'²³를 합친 정도로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운영 중인 수용소 중 청진 25호 관리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범수용소들은 깊은 산악 지역에 넓은 규모로 형성되어 있었다. 명간 16호 관리소의 경우에는 함경북도 명간군(화성군)부터 인군군(郡) 지역에 걸쳐 형성되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²⁴ 구 북창 18호 관리소는 평안남도 북창군 득장노동자구와 봉창리를 합쳐서 조성했다가 1995년경 득장노동자구를 일반 지역으로 개방하고, 봉창리만 수용소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봉창리 지역으로 축소된 이후에도 협동농장의 작업반이 13개였으며, 각 작업반에서 담당하는 토지도 일반 농장보다 넓었다는 진술이 있었다.²⁵ 개천 18호 관리소도 2006년 평안남도 개천시로 이전하면서 규모가 줄었지만, 자전거로 40분 정도 걸릴 정도의 크기였다고 했다.²⁶ 다만, 교화소와 유사하게 운영된 청진 25호 관리소는 비교적 규모가 작았는데,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수용소 안쪽에는 몇 개 동의 건물과 운동장이 있었다고 한다. 함경북도 출신인 한 증언자는 25호 관리소는 '수성 교화소'로 불렸으며, 교화소 담장 근처에 교화소에 근무하는 보위원 가족들이 살았다고 진술했다.²⁷

폐쇄된 정치범수용소들도 마찬가지로 넓은 지역을 관할했다. 요덕 15호 관리소 규모와 관련하여 한 증언자는 함경남도 요덕군 입석리 전체가 관리소에 해당되었다고 했다.²⁸ 다른 증언자도 관리소의 혁명화구역 초입부터 주요 생활시설이 있는 곳까지 도보로 30

²² KOXTLT0825

²³ '노동자구(勞動者區)'는 '주민이 주로 노동자로 구성된 행정구역의 맨 아래단위'를 의미한다.(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1권, 2017. 1756쪽 참고)

²⁴ 9KQ9NA0790

²⁵ E4MJ0I2167, 7CRICZ2168, 5OMCF02132

²⁶ 7CRICZ2168

²⁷ 3GOW940723

²⁸ YOAJIH1515

분 정도나 소요되었다고 진술했다.²⁹ 덕성 17호 관리소는 함경남도 덕성군의 7개 이상의 '리'가 해당되었다고 하며, 수용소 관리동과 이주민의 거주 지역이 4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³⁰ 단천 21호 관리소도 수용소 거주 구역에서 작업구역인 광산까지 걸어서 2시간 이상 걸렸으며, 7개의 초소를 지나야 관리소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³¹ 함경북도 길주군, 양강도 운흥군, 함경남도 허천군 등 3개 군을 경계로 하는 매우 넓은 지역이라는 증언이 수집됐다. 입구에서 기관원 거주지까지 7개의 초소를 지나야 했고, 도보 이동이 불가능했다는 진술도 있었다.³² 회령 22호 관리소도 최소 4개 이상의 '리'가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기관원의 자녀와 이주민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달랐는데, 두 학교 간 거리가 차량으로 20분 정도였다고 했다.

“관리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이주민이라고 하는데 이주민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보위부원은 아니고 보위부원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달리 관리소 내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와 이주민 학교 사이의 거리는 버스로 20분을 가야 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관리소를 벗어나 사회에 나갈 때에는 굴산리, 낙생리, 사을리를 거쳐서 나가야 합니다.”³³

표 III- 4 정치범수용소 규모에 대한 진술 (기록센터 조사 기준)

구분	정치범수용소 규모에 대한 진술
운영	14호 관리소 (개천) · 관련 진술 미수집
	16호 관리소 (명간) · 함경북도 명간군(舊 화성군)으로부터 다른 지역에 걸쳐 형성
	18호 관리소 (개천) · (舊) 협동농장의 작업반은 13개, 각 작업반별 담당 토지는 일반 농장 대비 큰 규모 · (現) 수용소 구역은 자전거로 40분 정도 거리
	25호 관리소 (청진) · 교화소 형태로 운영 · 수용소 내 몇 개 동의 건물 및 운동장 보유

29 XHZHYK0096

30 SOQJ2G1499

31 KOXTLT0825

32 KOXTLT0825

33 3BKBFW1632

구분	정치범수용소 규모에 대한 진술
폐쇄	12호 관리소 (온성) · 관련 진술 미수집
	15호 관리소 (요덕) · 완전통제구역은 한 개의 리(里) 전체가 해당 · 혁명화구역은 초입부터 생활시설까지 도보 30분 정도 소요
	17호 관리소 (덕성) · 함경남도 덕성군 7개 이상의 리(里)가 해당 · 관리동과 이주민 거주 지역 간 4km 정도 거리
	21호 관리소 (단천) · 함북 길주군, 양강 운흥군, 함남 허천군 등 3개 군(郡)을 경계 · 거주 구역에서 작업장까지 도보 2시간 이상 소요
	22호 관리소 (회령) · 4개 이상의 리(里)가 합쳐진 규모 · 수용소 내 학교 간 차량으로 20분 정도 거리
	24호 관리소 (동신) · 관련 진술 미수집

증언을 통해 정치범수용소 수용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비교적 상세하게 추정할 수 있는 수용소는 개천 18호 관리소뿐이었고, 요덕 15호, 회령 22호 관리소는 추정만 가능할 정도였다. 구 북창 18호 관리소는 2006년 이전하기 전까지 약 6천 세대, 약 3만 명의 주민이 거주했다고 한다. 구 북창 18호 관리소는 오랜 기간에 걸쳐 대부분의 이주민이 사면되어 해제민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개천 18호 관리소로는 수용 대상인 이주민 200세대와 기관원 등 일반 주민(해제민 포함) 600세대 정도만 이전했다는 진술이 있었다.³⁴ 한 증언자는 이후에도 완전통제구역 내 이주민에 대한 사면이 지속되어 2015년 이후에는 100세대 미만만 이주민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³⁵ 회령 22호 관리소는 폐쇄 전 수용된 주민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으나, 기관원 240세대가 거주하고, 8개의 중학교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1개 학교에만 기관원 자녀가 다녔다고 했다.³⁶ 요덕 15호 관리소는 특정시기 혁명화구역 수용 인원에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었다. 증언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300명 정도가 수감되었다가 이후 입소자를 줄이는 형식으로 수감자를 줄여 2000년대 중반 무렵에는 절반

³⁴ E4MJ0I2167

³⁵ 7CRICZ2168

³⁶ 3BKBFW1632

정도인 150명가량으로 감소했다고 한다.³⁷

표 III-5 정치범수용소 수용자 규모에 대한 진술 (기록센터 조사 기준)

구분		정치범수용소 규모에 대한 주요 진술
폐쇄	15호 관리소 혁명화구역 (요덕)	· (2000년대 초반) 300명 정도 수감 · (2000년대 중반) 150명 정도로 감소
	구 18호 관리소* (북창)	· (2006년) 이전 당시 이주민 200세대, 기관원 및 해제민 600세대 · (2015년 폐쇄 이후) 이주민 100세대 미만만 잔류 추정
	22호 관리소 (회령)	· (2012년 폐쇄 전) 기관원 240세대 거주, 8개 중학교 설치 (1개 교만 기관원 자녀 재학)

* 구 18호 관리소의 경우 1980년대 총인원이 3만 명(대내민 약 5천, 이주민 약 2만, 해제민 약 5천) 정도였다는 진술도 존재³⁸

나. 수용 사유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주민은 ‘정치범’ 당사자와 그 가족으로, 수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증언들이 수집됐다. 북한 당국이 ‘정치범’으로 분류한 대표적인 것으로 ‘성분’ 문제가 있다. 성분 문제로 수용된 주민들은 수용 사유도 알지 못한 채 대를 이어 수용소에서 일생을 보내야 했다. 이외에도 ‘말반동’ 등 최고지도자 권위 훼손 문제, 간첩 행위, 종교 활동, 북한 내 권력다툼, 기관원의 횡령 등 비위와 관련된 문제, 탈북 후 한국 행 시도, 인신매매나 남한 거주자 통화 등 남한 관련 문제 등이 정치범으로 수용되는 이유가 됐다.

출신성분으로 인해 수용되는 경우는 북한 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토대’ 때문이었다. 부모나 조부모가 일제강점기 자산계급이었다는 이유, 6·25전쟁 당시 국군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가야 했다. 기관원 가족으로서 1980년대 초까지 정치범수용소에서 거주했다는 증언자는 주된 수용 사유는 조부모 및 부모의 토대로 알고 있다고 했다.³⁹ 특히, 조부모 등의 성분을 이유로 수용된 경우에는 부모나 자신이 왜 수용되었는지

³⁷ XHZHYK0096, 9HMR2Y0469

³⁸ SOQJ2G1499

³⁹ 3BKBFW1632, E4MJ0I2167

명확히 알지 못하기도 했으며, 대부분 막연하게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당시의 일 때문으로만 알고 있었다.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서 태어나 자란 한 증언자는 부모님이 미혼 시기 관리소에 들어와 관리소 안에서 가정을 꾸렸다고 진술했다.

“친가 쪽은 할아버지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고, 해방 당시 중국에서 차를 가지고 왔는데 자산계급으로 찍혔다고 합니다. 1972년 토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관리소에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외가 쪽은 외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황해도 재령에서 의원을 했고 해방 직후 황해도 도병원장을 했는데, 왜정 때 자산계급이었다는 점, 형제들이 남한에서 군부·경찰 등 법 계통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1972년 계급투쟁 당시 출당·철직을 당했습니다. 고민 끝에 비법 월경을 시도하던 중 체포되어 외할아버지는 7년간 교화생활을 하고 가족들은 관리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문건에는 관리소에 수용된 이유에 대해서 적혀있지 않았습니다.”⁴⁰

말반동이나 김일성·김정일 등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 수용 사유가 되기도 했다. 유일 사상체계에 대한 유선방송의 보도가 시끄럽다며 스피커를 뜯어, 그에 대한 처벌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됐다는 진술이 있었다.⁴¹ 또한, 북한 정권이나 3대 세습에 대해 비판하여 수용된 사례, 초상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수용된 사례, 복송된 재일교포가 체제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수용된 사례 등도 있었다.⁴²

“아버지가 함경남도 ○○군 ○○기계공장 직맹위원장을 하셨는데 거기 연구실에 있던 김일성 초상화 밑에 돌맹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초상화는 깨끗하게 모셔야 하는데 돌맹이가 있다는 것은 정치적인 혐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공장 초급당 부비서와 사이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혐의를 받고 보위부로 끌려갔고 우리가족은 요덕 15호 관리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몇 달 뒤에 아버지가 요덕 15호 관리소에 와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왔을 때는 거의 사람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1975년 당시 종파분자에 대한 숙청이 많이 있었습니다.”⁴³

⁴⁰ E4MJ0I2167

⁴¹ RWZWCR1613

⁴² 8BE3O21828, YOAJIH1515, B305WN2002

⁴³ YOAJIH1515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로 수용된 경우도 있었다.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하던 사람이 남한 사람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수용되거나, 군관이나 일반 주민이 북한에서 발간된 신문과 잡지 등을 중국에 넘겼다는 이유로 수용된 사례가 있었다.⁴⁴ 한 증언자는 2015년경 북한에서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일을 하던 어머니가 인신매매와 남한 국정원의 스파이를 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잡혀간 이후 관리소로 이송되었다고 증언했다.⁴⁵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용된 경우도 수집됐다. 탈북 후 중국 체류 중 기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용된 사례, 북한에서 이웃을 상대로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하거나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용된 사례 등이 있었다.⁴⁶ 양강도 출신의 한 증언자는 밀수를 하다가 기독교를 접하게 된 여성이 선교 활동을 하다 적발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했다.

“양강도 혜산시에 살던 ○○○(40대 중반 여성)은 전문 밀수꾼으로 중국 전화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거래를 하는 중국 대방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웃에게 기독교 선교를 하다 들리게 되었고, 이후 가택수색을 하였는데 성경책 등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선교활동이 발각된 것이 2010년 여름 즈음이었습니다.”⁴⁷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탈북 후 남한에 입국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탈북 시도 또는 이와 관련된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기도 했다. 탈북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경우와 탈북 후 남한에 입국한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탈북을 돕다가 체포된 경우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됐다.⁴⁸

북한 당국이 개인의 비위나 주요 정치적 사건을 이유로 처벌을 내렸다는 증언도 있었다. 한 증언자는 김일성 별장 건설 책임자였던 큰아버지가 건설자재 중 깨진 대리석 조

⁴⁴ 8FN28F1333, JMT8SC1804, 1ZCVGZ2215, POI5E82146

⁴⁵ UE4ZKV1640

⁴⁶ JE8FX90947, 4PWM3A1067, BLO4W00639

⁴⁷ 4PWM3A1067

⁴⁸ 33ACL50988, JQYD690967, H6QLNW2100, XTDWPE1659

각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정치범으로 조사를 받고 수용되었다고 진술했다.⁴⁹ 다른 증언자는 인민보안성 간부였던 외삼촌이 원유 횡령 등의 혐의로 끌려가 재판도 없이 중대한 경제사범으로 관리소에 수용되었다고 했다.⁵⁰ 이 밖에도 북한 내 주요 정치적 사건인 ‘심화조 사건’⁵¹이나 ‘프론제 군사아카데미 사건’⁵²으로 수용소에 수용된 사례도 있었다.⁵³

정치범수용소에는 처벌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아버지가 일제강점기 경찰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수용된 사례가 있었고, 6·25전쟁 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아버지 때문에 가족 모두가 수용되었다는 진술도 있었다.⁵⁴ 말반동으로 처벌받아 가족 모두가 수용된 경우와 탈북한 가족이 남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수용된 사례도 수집됐다.⁵⁵ 최근에는 정치범의 가족에 대해 ‘이중처벌’ 하지 않는다는 진술도 있었지만,⁵⁶ 사안의 경중 또는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직계혈족 및 방계혈족까지도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구 북창 18호 관리소 출신 증언자는 1996~1997년 ‘심화조 사건’ 관련자와 그 가족 수백 세대가 수용된 적이 있으며, 2006년 관리소가 이전한 이후에도 2014년 초 장성택 숙청 관련자와 그 가족들을 수용했다고 진술했다.

“관리소가 개천시로 이전한 2006년 8월까지 18호 관리소에 살았습니다. 2013년까지 같은 곳에 살았지만 더 이상 관리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월경 장성택 사건 연루자 등을 수용하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봉창리에 거주하던 5,800세대를 전국 각지의 농장

49 NVWSXU0945

50 ONA6HF0737

51 서관희(당 중앙위원회 농업 담당비서)가 비료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체포되면서 시작되었고, 김정일은 서관희가 미국 간첩으로 포섭되었다는 혐의를 추가시켰다. 이후 김정일은 사회안전성에 ‘심화조’라는 것을 만들어 당, 군, 내각 안의 고위직 김일성 측근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심화조 구성원에 의한 횡포가 심해지자 국가안전보위부와 무력부 보위사령부가 사회안전성 심화조의 권력남용을 김정일에 보고하여, 심화조 해산 및 지휘성원(간부)들을 소탕하고 전국의 안전원 6천여 명을 처벌했다.

52 북한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소련 모스크바 소재의 ‘프론제군사대학’에 약 250여명을 유학시켰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북한 당국은 군사유학생들을 북한의 각 군사대학으로 철수시켰다. 이들은 각자 북한 내 다른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공개적으로 자주 모였고, 부패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방식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로 합의를 한다. 당시 인민 무력부 보위국에서 이를 감지하고 1993년 2월부터 1998년까지 군사유학생 출신 80%이상이 처형됐다.

53 E4MJ0I2167, 8RWAVD1508

54 AZLN4W1646, E4MJ0I2167

55 B305WN2002, Y1TCM60183

56 8M0JQD0047

과 광산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도 봉창리 인근 북창군 용산리 농장으로 강제이주 되었습니다.”⁵⁷

정치범수용소 수용 시 재판 여부는 수용 이유 및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간첩 혐의, 탈북, 인신매매 등 일부 사례에서는 재판을 받고 나서 수용된다는 진술이 있었다.⁵⁸ 하지만, 토대나 출신성분 때문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재판 등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절차나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보위부 등 기관에 의해 누군가 체포되거나 실종되면, 가족들은 정치범으로 지목되어 수감되었다고 짐작했고, 추후에 기관원을 통해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⁵⁹ 정치범의 가족 또한, 재판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수용이 결정되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체포된 후 수용소로 바로 이송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 사라진다는 진술도 있었다.⁶⁰ 하루아침에 가족이 모두 행방불명되더라도 체포 이유와 수용소 위치 등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올케 언니의 친아버지는 반일 운동을 선도했고, 김일성을 도와 국가건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당시에는 평양의 한 군사대학교 교원이었습니다. 1990년경 어느 날 올케 언니의 친정 부모님과 막내 남동생이 함께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올케 언니의 가족이 행방불명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주변사람들은 그 가족들이 모두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다고 추측했습니다. 일가족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조건 정치범수용소에 갔다는 의미입니다. 올케 언니가 그 이후 가족들의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⁶¹

⁵⁷ E4MJ012167

⁵⁸ J91XSP1155, BU0CLL0151, PO15E82146

⁵⁹ M4IWA31544, TIDG5J0872, HGZ2P01235

⁶⁰ KU40BB2115, FJ391D2148, CW14HP2075

⁶¹ M4IWA31544

다. 수용자 처우

정치범수용소 내 수용자들의 처우를 엿볼 수 있는 내부 생활 관련 진술은 일부 수용소에서만 수집되었는데, 수용소별로 수용된 구역과 사면 여부에 따라 다른 처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언에 따르면 수용자 처우는 마을 형태인지 교화소 형태인지에 따라, 완전통제구역인지 혁명화구역인지에 따라, 이주민인지 해제민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수용소 내부에서는 처형과 강제노동이 행해졌고, 수용자와 가족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차별받으며 살아가야 했다.

(1) 처형과 강제노동

정치범수용소 안에서는 수용소 탈출 시도 등의 이유로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서는 매년 1~2회의 공개처형이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 탈출하다가 체포된 경우였으며, 안전부 예심 후 평양에서 내려온 사회안전성 기관원의 공개재판 후 처형을 집행했다.⁶² 단천 21호 관리소에서는 이주민 남녀가 수용소 안에서 교제했다는 이유로 총살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당시 외부 기관원들이 처형을 집행했으며 사전에 재판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⁶³ 요덕 15호 관리소 혁명화 구역에서는 혁명화(강제노역, 사상교육 등 처벌) 교육 중이던 수감자들이 이유도 모르고 끌려갔다가 사망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수용소 내 비밀처형은 주로 저녁시간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총성을 통해 비공개 처형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했다고 한다. 처형된 시신은 수용소 내부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북창군 18호 관리소 안에서 공개처형을 목격했습니다. 주로 남성 1~2명을 처벌했고 죄명은 ‘도주’였습니다. 공개처형이 있는 날에는 평균 2~3천 명의 군중이 동원됩니다. 사전 공개재판 후 총살 또는 교수형을 집행했습니다. 총살은 보안서 경비대원 세 명이 각 세 발씩 쏘았고 교수형은 트럭을 이용했습니다. 처형이 끝나면 시신을 가마니에 싸서 11반 농장마을이 있는 산속 골짜기에 묻는다고 합니다.”⁶⁴

⁶² E4MJ0I2167

⁶³ N36KGZ0461

⁶⁴ E4MJ0I2167

“무슨 이유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지프차가 들어와 혁명화(교육)생을 족쇄에 채워 잡아갑니다. 제가 관리소 혁명화구역 내 병원에 있을 때 보위원에 의해 환자가 그렇게 잡혀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게 잡혀가서 구류장에서 일주일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구류장에서 죽기 직전에 병원으로 보내 병원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송된 사람들이 다섯 명 있었는데 병원에 온 후 1~2일 있다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외상 흔적이 없어 원인은 모르겠습니다.”⁶⁵

북한 당국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주민들을 대부분 광산이나 농장에 배치했으며, 강도 높은 노동을 부과했다. 진술에 따르면, 개천 18호 관리소의 완전통제구역 내 이주민은 모두 탄광에서 일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소 지도원의 가족으로 구 북창 18호 관리소 거주 경험이 있다는 한 증언자는 수용된 주민들은 농사일은 시키지 않고 탄광에서 일을 시켰다고 진술했다.⁶⁶ 지상근무나 발파 등의 업무는 해제민이 되어야 가능했으며, 갯안에서 작업하는 ‘굴진공(掘進工)’은 이주민이 담당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정치범수용소의 탄광은 3교대로 운영되어 갯안에 들어간 사람은 10시간 가까이 나올 수 없었다고 한다.⁶⁷ 농장에 배치된 이주민은 농장원만 가능했고, 해제민은 분조장이나 탈곡장의 경비 등을 할 수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다.⁶⁸ 요덕 15호 관리소 혁명화구역에서는 현장 작업은 주로 남성 수용자들에게 부과되었으며, 이들은 건설현장의 작업이나 농사짓기 등에 동원됐다. 이들에게는 매일 작업 할당량이 있었으며, 작업 강도 또한 매우 높았다.

“당시 요덕군 소재 15호 관리소 혁명화구역 병원에 배치되어 일했습니다. 15호 관리소 혁명화생들은 모두 남자였고, 간부들이 많았습니다. 혁명화생들에게는 할당량이 주어졌고 그 할당량을 다 채울 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일의 강도가 엄청 세고 힘들다고 했습니다.”⁶⁹

⁶⁵ XHZHYK0096

⁶⁶ AOXJP61777

⁶⁷ SOQJ2G1499

⁶⁸ E4MJ0I2167

⁶⁹ XHZHYK0096

(2) 주거 및 생활환경

정치범수용소 내부 주거 환경은 대부분 열악했으며, 수용소 주민들은 결혼 등 가정 생활에 당국의 통제를 받기도 했다. 수용소 주민의 주택은 단층 건물에 2~4세대가 거주 하는 형태로 주민들은 이를 ‘하모니카집’이라고 불렀다. 하모니카집은 나무로 기본 틀을 짜고 그 위에 흙을 덧발라 만든 집으로 비만 오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⁷⁰ 단천 21호 관리소 기관원 가족으로 한 달 정도 관리소에 살았던 한 증언자는 이주민들의 집은 땅을 어느 정도 판 상태에서 나무와 짚, 흙 등을 이용하여 만든 움막집 형태로 몸을 웅크 리고 기어서 출입해야 하는 형태였다고 했다.⁷¹

주민들의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한받았다는 진술과 일반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했다는 진술 등 다양한 증언이 있었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일하는 시간을 달리했고, 모범수에 대한 소위 ‘표창결혼’만 가능하다는 진술이 있었다. 회령 22호 관리소의 경우 이주민 간 표창결혼이 있어도 남녀 간 일하는 구역을 분리했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고 했다.⁷² 반면, 정치범수용소 주민들도 결혼이 가능했지만 이주민과 결혼한 해제민은 다시 이주민으로 된다는 진술이 있었다.⁷³ 수용소 주민들의 출산이 가능했다는 증언들도 수집됐다. 구 북창 18호 관리소의 경우 관리소에서 나서 자란 주민이 많았다는 진술이 있었고, 시아버지의 토대 때문에 수용된 부부가 관리소에서 자녀를 출산한 사례도 있었다.⁷⁴

“회령 22호 관리소의 경우, 이주민 사이에 ‘표창결혼’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남녀 간 만남을 막기 위해 남자와 여자가 일하는 구역을 분리했습니다. 여성적인 매력을 없애기 위해 여자들은 모두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남자들은 모두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⁷⁵

⁷⁰ E4MJ0I2167

⁷¹ N36KGZ0461

⁷² 3BKBFW1632

⁷³ UYYAWM0821

⁷⁴ 50MCF02132, YFLRV72225

⁷⁵ 3BKBFW1632

“제가 태어난 곳은 평안남도 북창군 봉창리 소재 18호 관리소입니다. 아버지는 관리소 내부의 봉창농장 농장원이었고, 어머니는 관리소 내 탁아소 보육원이었습니다. 관리소 수용 시기나 이유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부모님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수용되었다고 들었습니다.”⁷⁶

정치범수용소의 식량 배급 상황은 고난의 행군 시기였던 1990년대 중반 이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언에 따르면 1980년대 초 덕성 17호 관리소에서는 한 달에 감자, 명태식해(食醢), 옥수수, 국수 등을 배급받아 세 끼를 다 먹었고, 아사자는 없었다고 했다.⁷⁷ 2000년대 초 요덕 15호 관리소의 경우에는 1년에 물엿 1~2회, 매키니마다 콩기름, 명절에는 돼지고기와 계란을 약간 지급받았으나, 1년에 6~7명 정도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병원에는 환자에게 식사로 쌀·옥수수(7:3)가 섞인 밥, 콩기름을 넣은 나물절임, 시래깃국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있었다.⁷⁸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서도 1990년대부터 배급량이 줄었고,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배급이 끊겼다는 진술이 수집됐다.⁷⁹ 하지만, 일정량의 식량이 지속적으로 배급되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다른 증언자는 18호 관리소가 2006년 북창군에 소재하고 있을 때까지 탄광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과 같은 양이 나왔고, 극심한 경제난 당시에도 한 달에 5일분 정도는 지급되어 아예 나오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18호 관리소가 북창군 봉창리에 있을 때는 해제민들이 사는 일반구역, 혁명화 대상자들이 사는 혁명화구역, 추방된 이주민들이 사는 이주민 구역의 구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한 마을에 각자 개인 땅집에서 각각의 가족들이 섞여 사는 것입니다. 먹고사는 것은 크게 고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도 배급이 끊이지 않았으며, 배급만으로 충분치 않아서 돼지, 토끼를 키우고 소토지 경작을 하여 먹고 살았습니다.”⁸⁰

⁷⁶ SOMCF02132

⁷⁷ SOQJ2G1499

⁷⁸ XHZHYK0096

⁷⁹ SOQJ2G1499

⁸⁰ 7CRICZ2168

(3) 보건의료와 교육

정치범수용소 안의 보건의료와 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했으며, 이주민의 경우 시설 이용 제한 등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수용소에는 병원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거나 의약품이 충분히 공급받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 진료 등 의료서비스도 기관원과 그 가족들만이 주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진술이 많았다. 요덕 15호 관리소 혁명화구역 병원의 경우 2005년을 전후로 군의(軍醫) 1명과 수용자인 의사 및 보조자(간호원) 각 1명이 있었고, 간단한 치료가 가능한 약간의 병상만을 갖추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⁸¹ 증언에 따르면 의약품은 매달 한 번씩 공급되었는데, 공급되는 약 중에는 유엔에서 지원한 약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약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어서 소금물을 희석하여 소독약을 만들어 사용해야 했고, 완전통제구역 내에서 제조한 링거(포도당, 증류수)는 부작용이 많았다. 결핵환자는 격리했지만, 투약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반면, 2019년경 개천 18호 관리소는 의약품 공급도 비교적 잘되었으며, 기관원과 수용자들이 병원을 공동으로 이용했다는 진술도 있었다.⁸²

“2000년대 초 ○○관리소 혁명화구역 내 병원에 배치되어 일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점심이 끝나면, 경비원들이 각 중대와 외래소에서 아픈 혁명화생들을 데리고 병원에 옵니다. 영양실조로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특히 설사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데라미짚’이라는 약이 효과가 좋았는데, 그 양이 적었습니다. 이외에는 약초 등으로 만든 ‘동약(東藥, 한약)’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마이신, 페니실린 등 항생제가 한 달에 20인분 분량만 공급되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반창고나 소독 연고도 없을 뿐 아니라, 항생제 주사를 맞지 못해 작은 염증에도 굶아서 종기가 생긴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 마취약이 거의 공급되지 않아 마취도 없이 칼로 찌서 고름을 빼고 나서, 소금물에 담가두었던 거즈로 소독했습니다. 소독약도 공급되지 않아 10% 소금물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그 소금도 제가 만들었습니다.”⁸³

⁸¹ XHZHYK0096

⁸² 7CRICZ2168, E4MJ0I2167

⁸³ XHZHYK0096

마을 형태 수용소 내부에는 대부분 학교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교육 내용은 해제 여부 등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언을 통해 요덕 15호 관리소는 2곳, 구 북창 18호 관리소는 4~5곳, 북창 18호 관리소는 1곳, 단천 21호 관리소는 4곳, 회령 22호 관리소는 8곳의 학교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이주민의 자녀와 기관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달랐으며, 교육 내용도 상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 자녀들은 학교가 멀다는 이유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주민 중학교 학생에 대한 ‘노력동원’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⁸⁴

일부 관리소 해제민 자녀의 경우 기관원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닐 수는 있었지만, 약간의 제약 사항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는 수용소 내 학교의 교육 내용은 대부분 동일했으며 기관원 자녀와 해제민 자녀가 함께 다닐 수 있었다고 했다.⁸⁵ 다만, 교육 과정에서 다른 점은 이주민 자녀들은 외부로 나가는 야영과 견학에서 제외되었고, 실탄 사격연습을 해야 하는 ‘붉은청년근위대’(고급중학교 군사조직) 훈련에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⁸⁶ 해제민 출신의 한 증언자는 교육 방식에는 차별이 없었지만 아이들 사이에도 서로가 다르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진술했다.

“18호 관리소 혁명화구역에서 태어나 해제민으로 자랐습니다. 18호 관리소 내부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네 곳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보안원 등 관리소 직원 자녀와 해제민 자녀가 함께 교육 받았습니다. 교육 방식에 있어서 둘을 구분하는 차별정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이들끼리 다투게 되면 직원의 자녀들이 수감자 자녀에게 ‘해제민 자식 주제에…’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여서 해제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⁸⁷

84 3BKBFW1632

85 50MCF02132

86 E4MJ02167

87 50MCF02132

2.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자유권규약」 제17조는 ‘가정’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23조는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⁸⁸ 자유권위원회도 일반논평 제19호를 통해 ‘가족결합권’에 대해 국가는 정치, 경제적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 국내 차원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가족의 화합이나 재결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⁸⁹ 또한, 「자유권규약」 제2조와 제26조에서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출신, 출생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118조는 적대행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로를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III-6 「자유권규약」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자유권규약」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관련 목차)
제2조	제1항	<p>공동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p>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	
제26조		

⁸⁸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7(1); Article 23(1).

⁸⁹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19, Article 23: The family, para. 1.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들과 억류자들, 6·25전쟁 이후 붙잡혀 송환되지 못한 국군포로⁹⁰들 그리고 분단을 이유로 헤어지게 된 이산가족들은 「자유권규약」이 명시하고 있는 ‘가족결합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납치·체포 이후 형벌을 받고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은 「비엔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까지도 침해당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남한 출신이거나 남한에 연고가 있는 주민의 경우 별도로 분류하여 감시와 차별을 가해왔다. 북한에서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이라는 사실은 ‘출신성분’으로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과 자녀들의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차별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가. 납북자(拉北者)

‘납북자’는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어 북한에 억류·거주하게 된 사람으로서 6·25전쟁 중 납북자(전시납북자)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전후납북자)가 포함된다.⁹¹ 전시납북자 규모는 조사 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약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신고·접수된 납북피해 사건 5,505건을 심사하여 4,777명을 전시납북자로 결정했다. 전후납북자는 총 3,835명이며, 그중 3,319명이 귀환했다. 귀환자 중 3,310명은 북한이 송환했으며, 9명은 탈북하여 귀환했다. 2024년 3월 말 현재 북한에 억류된 전후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된다.⁹²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전쟁 중 동원 납북된 ‘의용군’을 전쟁 초기부터 북한군 후퇴기 사이에 납북된 유형의 하나로 보고 있다. 전시동원 납북자는 6·25전쟁 중 북한

⁹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국군포로’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⁹¹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하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⁹² 통일부, 『2023 통일백서』, 2023. 56쪽 참고.

의 전시동원계획에 따라 강제로 동원된 남한 주민을 말한다.⁹³ 동원 납북된 대상은 의용군(인민군 부대의 보충인력), 노무자(노무 동원에 동원되어 전선이나 후방 지역에서 노무활동을 하던 노무자), 의료 인력(동원된 의사, 간호사, 간호학생 등), 기능직 인력(동원된 기술직, 기능직), 노동자(‘서울시민 전출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으로 이주된 사람) 등이다.⁹⁴

그림 III-4 전시납북자와 전후납북자



* (자료출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左), 납북자가족모임

전시납북자와 가족들은 거주지, 직업선택, 상급학교 진학 등 생활 전반에서 차별, 감시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었다. 전쟁 당시 의용군으로서 참여했던 경우에는 남한출신, 6·25전쟁 참전 경험 등의 공통점 때문에 국군포로와의 구별이 쉽지 않았다. 한 증언자는 북한에서 할아버지를 의용군 출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해서야 국군포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⁹⁵ 의용군의 자녀 및 이들을 목격한 증언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전시납북자는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평양시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탄광이나 광산에서 노동자로 일했다. 특정 지역에 배치되는 국군포로와 마찬가지로 ‘무리배치’되기도 했다. 반면, 광산의 선전비서나 영예군인 공장의 노동자로 일한 경우도 있었으며, 통일 이후 직위를 명시한 ‘파견장’을 받거나, 양복을 만들 옷감 등 ‘특별선물’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⁹⁶

⁹³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2017. 43쪽 참고.

⁹⁴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2017. 116~117쪽 참고.

⁹⁵ 2ITQJ51282

⁹⁶ YAGZQ01220, MF6QLT0846

“탈북 전 양강도 보천군에 살았습니다. 앞집에 사는 김○○ 할아버지는 남한(경기도) 출신으로, (6·25)전쟁 때 북으로 왔다고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천식료공장 지배인으로 오랫동안 일하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주변에서 칭송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한 출신자들은 당일군 등 정치일군은 될 수 없었고, 경제일군은 될 수 있었습니다. 능력에 비해 간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⁹⁷

전후납북자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대다수는 동해안 및 서해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나포된 어업종사자들이었다. 2024년 3월말 현재 미송환 전후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전후납북자 중 97%가 어부·선원이었으며, 그 밖에 민간 항공기 탑승 중 공중 납치된 승객, 군인, 해안경비대원, 휴가 중이던 청소년과 시민, 해외에서 납치된 국민 등이 있었다. 납북자들은 피랍 및 강제역류 과정에서 자유의 박탈, 가족결합권의 침해, 차별과 감시 등의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납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전후납북자에 대한 진술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이 아니고, 납북자 신상도 특정되지 않아 탈북민들의 증언만으로는 보다 상세한 인권 침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III-7 전후납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어부·선원	대한항공 (KAL) 납치	군인·경찰	기타		
					국내	해외	
피랍자	3,835	3,729	50	30	6	20	
귀환자	송환자	3,310	3,263	39	-	-	8
	귀환납북자	9	9	-	-	-	-
미귀환자	516	457	11	30	6	12	

* (자료출처) 통일부

나. 억류자

‘억류자’는 우리 국민으로서 중·북 접경지역 등에서 북한 당국에 납치·체포되어 비법 국경출입죄,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 등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북한 내 구금시설에 억류·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북한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우리 국적을 획득한 탈북민 3명까지 총 6명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I-8 북한 억류 우리 국민 현황

성명	억류시기	재판일	적용범죄	형벌
김정욱	2013. 10.	2014. 5. 30.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무기노동교화형
김국기	2014. 10.	2015. 6. 23.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파괴암해죄, 비법국경출입죄	
최춘길	2014. 12.	2015. 6. 23.		
○○○ (탈북민)	2016. 5.	불명확	불명확	불명확
○○○ (탈북민)	2016. 3.			
○○○ (탈북민)	2016. 3.			

* (자료출처) 통일부

북한 당국은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도와오던 선교사 등 우리 국민들을 중범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억류하고 있으나, 생사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억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

다. 국군포로

6·25전쟁 중 포로가 되어, 강제로 억류된 국군포로들은 북한 당국의 통제하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철저한 감시와 차별의 대상이 됐다. 국군포로들은 탄광, 농장 등에 배치되어 힘든 노역을 담당해야 했으며, 본인은 물론 가족에 대한 각종 인권 침해와 제약 사항들을 감수해야 했다. 다만, 국군포로에 대한 탈북민들의 진술은 많지 않았다. 이들을 직접 목격하거나 상세한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는 직계가족이나 이웃주민, 직장동료 정도에 불과했다.

그림 Ⅲ-5 탈북 후 귀환한 국군포로



* (자료출처) 연합뉴스

전체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대부분이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군과 공산군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을 전후해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교환했다. 당시 유엔군 측은 국군 실종자의 수를 약 8만 2천 명으로 추정했으나,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했다. 실종된 국군의 상당수는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강제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의 귀환 이후 현재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귀환했고, 정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와 탈북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2010년 말 기준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귀환 국군포로가 없어, 현재 생존자 현황 파악은 제한적이다.

표 Ⅲ-9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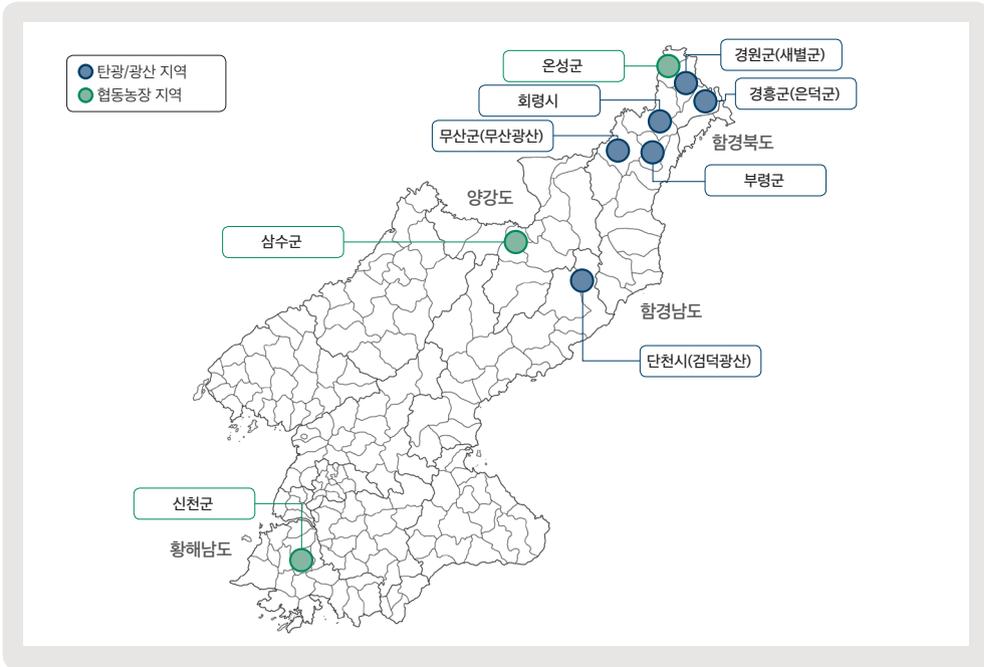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계	1994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귀환자	80	1	1	4	2	9	6	6	5	14	11	7	4	6	3	1

* (자료출처) 국방부

북한 내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은 특정 지역에서 주로 목격됐다. 기록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군포로들의 거주 지역은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황해남도 등으로 나타났다. 함경북도는 회령시, 무산군, 온성군, 경원군(새별군), 경흥군(은덕군), 부령군 등 주로 산간과 농촌 지역의 탄광, 광산, 협동농장이 많은 곳이었다. 함경남도는 검덕광산이 속해있는 단천시 검덕노동자구였으며, 양강도는 삼수군, 황해남도는 신천군 등으로 모두 농촌 지역이었다.

그림 III-6 북한 내 국군포로 거주 확인 지역 (기록센터 조사 기준)



북한 당국은 국군포로들을 별도로 관리했으며, 감시와 통제를 위해 여러 제약들을 두었다. 남한출신 주민들과 그 가족 모두가 감시·통제의 대상이었지만, 진술에 따르면 특히 국군포로들은 속칭 '43호'⁹⁸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외할아버지가 국군포로였다는 한 증언자는 남한의 가족들이 북한에 남겨진 국군포로를 탈북시키는 사례가 많았던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는 43호 대상에 대한 보위부 감시가 더욱 심했다고 했다.⁹⁹ 다른 증언자도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경우에는 여행이나 이동 허가를 받았더라도 거주지 담당 보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감시와 차별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군포로는 경제일군은 괜찮은데 당적으로 입당하거나 ‘당일군’으로 등용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시내 여행증을 떼자고 하면 제한 받아서 시내에 다니지를 못했습니다.”¹⁰⁰

⁹⁸ ‘43호’는 북한 내에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를 지칭하는 용어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북한 당국이 이들의 관리를 목적으로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여 분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⁹⁹ AAH9GT0036

¹⁰⁰ 7WEDA71436

국군포로들은 대부분 탄광이나 농장에서 일했으며, 다른 주민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강제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함경북도 무산군, 경원군(새별군)과 함경남도 단천시에서 국군포로 수십 명이 무리배치되어 일했다는 진술이 있었다.¹⁰¹ 무산군에는 철광석 산지인 무산광산, 경원군은 유연탄을 캐는 고건원구탄광 등이 있고, 단천시는 한반도 최대의 납·아연 매장량을 자랑하는 검덕광산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국군포로들은 강도 높은 노역을 해야 했다. 이외에도 회령시, 부령군의 탄광, 온성군과 삼수군의 협동농장, 단천시 검덕광산 내 과수농장 등 국군포로들이 배치된 직장은 주민들이 가기를 꺼리는 힘든 곳들이었다. 국군포로들은 이곳 안에서도 막장 안에 들어가 석탄과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공’이나 ‘채탄공’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동생의 시아버지가 남한 출신으로 6·25전쟁 때 괴뢰군(국군) 포로병이었다고 합니다. 전쟁 때 포로가 되어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광산으로 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포로들이 무리로 배치되었는데 1970년대 남한에 보내달라고 폭동이 일어나서 관련자들은 처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광산에 배치되어 힘든 일을 했지만, 여동생의 남편은 아버지가 포로병이라는 토대 때문에 입당도 못하고 발전을 하지 못해 고심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¹⁰²

국군포로와 가족들은 거주지, 상급학교 진학, 직업 선택, 입당, 승진, 군 입대 등 생활 전반에서 차별 받아야 했으며, 탈북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 됐다. 우수한 학업성적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였던 아버지의 출신성분 때문에 대학 입학에 필요한 추천을 받지 못했고, 진학이 무산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¹⁰³ 국군포로 자녀는 아버지의 직업을 대물림 받는 경우가 많아, 주로 탄광이나 농장에서 일해야 했다.¹⁰⁴ 국군포로 자녀들은 군 입대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입당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는 노동당 입당을 위해 스스로 농장원이 되는 ‘농촌 자원진출’을 했음에도, 아버지가 국군포로라는 이유로 입당하지 못했다고 했다.¹⁰⁵ 다만,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¹⁰¹ AAH9GT0036, P66T5S0498, 8NO7YU0029, PUC6YT0954, T3T9AH1250

¹⁰² T3T9AH1250

¹⁰³ 8NO7YU0029, 7WEDA71436

¹⁰⁴ BP9NQ11831, 5C62M41830

¹⁰⁵ OQBG8K1835, R78AG60462

군 입대자 감소로, 국군포로 자녀들도 입대가 가능해졌다는 진술도 수집됐다.¹⁰⁶

“함경북도 무산군 상창리에서 같은 마을에 살던 국군포로 가족을 보았습니다. 그 집 딸이 저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국군포로는 고향이 남한이라 했고 의족을 하고 다녔습니다. 자식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등 상급학교 추천을 받지 못합니다. 그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는데, 아버지가 국군포로라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¹⁰⁷

라. 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 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를 말한다.¹⁰⁸ 이산의 원인은 해방 이후 38선 확정에 따른 남북 왕래 차단, 북한의 공산화 과정에서 월남, 6·25전쟁 기간 월남·월북 및 납치, 인민의용군 징집, 정전협정 체결 이후 미귀환, 일본에서의 복송, 납북 등 다양하다. 북한 입장에서의 이산가족은 남한으로 내려간 ‘월남자 가족’과 남한에서 올라간 ‘월북자 및 그 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 내 이산가족 규모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없으나,¹⁰⁹ 북한의 이산가족들도 납북자·국군포로와 마찬가지로 남한에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입당, 승진 등에 차별과 한계가 있었다.

표 III-10 생존 이산가족 출신 지역별 분류

구분	계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경기	강원	기타
인원수(명)	38,491	7,777	4,025	2,277	3,491	1,156	1,209	576	17,980
비율(%)	100.0	20.2	10.5	5.9	9.1	3.0	3.1	1.5	46.7

* (자료출처) 통일부(2024.4.30. 기준)

¹⁰⁶ 8NO7YU0029

¹⁰⁷ 7WEDA71436

¹⁰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¹⁰⁹ 정부의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총 134,005명이다. 그중 95,514명이 사망하여 현재 생존자는 38,491명이며, 생존자의 85.1%는 70세 이상의 고령이다. (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시스템(<https://reunion.unikorea.go.kr>) 남북이산가족 교류현황 참고)

그림 Ⅲ-7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속 남북한 주민들



北 시누이와 南 올케
(제19차/ 2014.2.20.)

南 아내와 北 남편
(제20차/ 2015.10.22.)

南 어머니와 北 아들
(제21차/ 2018.8.20.)

* (자료출처) 공동취재단(제19차 2014.2.20.~2.25./ 제20차 2015.10.20.~10.26./ 제21차 2018.8.20.~8.26.)

(1) 월남자(越南者) 가족

북한 당국은 월남자 가족을 ‘복잡한 군중’¹¹⁰으로 분류하여 관리했고 차별을 가했다. 월남자는 말 그대로 북한에서 38선 또는 휴전선(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뜻한다.¹¹¹ 6·25전쟁 당시 인민군으로 참전하여 행방불명 또는 전사(戰死) 처리되었다가 북한 당국에 의해 남한 또는 제3국 거주가 확인된 경우, 피신 또는 임시거주 등의 이유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가 있다. 월남자 가족들에게는 대학 진학, 입대, 입당 등 사회적 지위 획득 과정에서 차별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이 모든 월남자 가족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인민군으로 참전했던 월남자의 가족은 입당까지는 가능했으나, 주요 지위를 획득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할아버지가 인민군으로 참전했다는 증언자는 이전까지는 차별이 심했지만 1990년경부터 월남자 가족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행정일군’ 정도는 가능했지만, ‘당일군’,¹¹² ‘법일군’(안전원, 보위원, 검사 등) 등이 될 수 없었다고 했다.¹¹³ 인민군으로 참전한 큰아버지가 포로가 되어 돌아오지 못했다는 다른 증언자도 그로 인해 ‘보위대학’ 진학 보류 등 형제들의 ‘사회

¹¹⁰ 북한 주민들은 성분에 따라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 등 소위 ‘3대 계층’으로 나뉘며, 그 아래 40여개 부류, 그리고 별도의 성분으로 구분된다.(IV-12-(1) 가. 성분에 의한 사회계층 구분 참고)

¹¹¹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¹¹² ‘당일군(黨-)’은 ‘당사업에 기본혁명과업으로 삼고 있는 정치일군’을 의미한다.(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1권, 2017. 1319쪽 참고)

¹¹³ P3RFM51542

적 발전'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¹¹⁴ 또한, 인민군 전사자로 처리된 삼촌이 외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군관학교에서 강제로 제대하게 되는 등 증언자의 형제들이 불이익을 받고 간부가 되지 못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아버지의 동생인 삼촌이 6·25전쟁 시기 참전하여 사망한 것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가족이 전사했다는 확인증인 ‘전사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경 재외동포의 고향방문행사에 삼촌이 참여하여 방북하면서 삼촌이 전사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삼촌은 전쟁 시기 남하하였고 이후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 국적으로 방북한 것이었습니다. 이산가족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 오빠 중 한명은 군관학교를 다니다가 제대되었고, 다른 형제들은 간부로 등용되지 못했습니다.”¹¹⁵

반면, 인민군이 아닌 일반 주민의 신분으로 전시 월남한 가족의 경우에는 입당 자체가 불가능했고 대학 진학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했다. 할아버지가 6·25전쟁 당시 남한으로 내려간 월남자 가족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당이 불가능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월남한 큰아버지 때문에 자녀가 군 입대와 입당을 하지 못했다는 증언도 있었다.¹¹⁶ 한 증언자는 월남자인 할아버지 때문에 북한 유수의 대학인 김책공대 등에 추천을 받고도 입학시험에서 탈락했다고 진술했다.

“군사복무 중이던 2003년 8월 김책공대에 추천을 받았고, 2004년에는 평양 영화대학에 추천을 받고 입학시험을 보았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두 번 모두 탈락했습니다. 과거 부대 대령서기(인사담당)로 있던 2000년경, 부대에서 관리하는 제 문건을 보았던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문건에는 할아버지 7형제 중에서 할아버지 등 3형제가 월남하였다고 적혀있었습니다.”¹¹⁷

¹¹⁴ Y0BKN51365

¹¹⁵ M4IWA31544

¹¹⁶ 3BIZT71455, P3RFM51542

¹¹⁷ 102MHI2012

(2) 월북자(越北者)와 그 가족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간 월북자와 그 가족들도 월남자 가족과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에서 출신성분을 이유로 차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월북자와 그 가족들을 ‘의거입북자’로 구분했으며, ‘복잡한 군중’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었다.¹¹⁸ 이들은 특정 대학 진학 및 군 관련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당일군’이 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 증언자는 자녀가 북한 최고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 추천을 받고 시험에도 합격했지만 부모님이 6·25전쟁 당시 월북했다는 이유로 입학이 거부되었다고 진술했다.¹¹⁹ 다른 증언자도 외할아버지가 남한에서 넘어온 월북자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당일군’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외할아버지가 남한(강원도) 출신입니다. 남한에 가족이 있으면 3대까지 당일군, 법일군, 간부를 할 수 없습니다. 친할아버지도 전쟁 시기 군사복무를 하지 않고 장사를 했다는 이유로 토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대학에서 농업과 관련한 전공을 했고 농장에 배치되었는데 교육을 받은 것에 비해 간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¹²⁰

한편, 월북자의 가족들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한 이후 감시와 차별을 당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월북자였다는 한 증언자는 상봉행사를 통해 그간 소식을 모르고 지냈던 고모를 만났는데 행사 이후 보안원들이 수시로 감시를 했고 오빠도 재직 중이던 군 부대 전기사업소에서 해임되었다고 했다.¹²¹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금강산 면회소에서 남한의 가족을 만나고 나서 전에는 없었던 감시와 차별이 생겨났고, 남한의 친척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¹²² 월북한 아버지가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중요 직위에 오를 수 없었다는 진술도 수집됐다.

¹¹⁸ 5ASSH90002, 00RIT62460/ 북한 사회안전부출판사, 『주민등록사업참고서』, 1993, 149~153쪽

¹¹⁹ OT95801352

¹²⁰ QWVNRL2135

¹²¹ YPMQUF0816

¹²² LI6JB0820

“아버지 고향이 경상남도 울산면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고모들 손에 자랐고 할아버지를 따라 월북한 이후에도 항상 고모들과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양강도 위원회 부위원장을 했고, 양강도 당위원회 근로비서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토대 요해(了解, 점검) 과정에서 남한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¹²³

¹²³ JZNOY31599

IV

시민적·정치적 권리

“총살 당일 남녀 수감자 모두를 교화소 마당에 모이게 하였는데,
나가보니 정문 꼭대기에 사람 목에 밧줄을 묶어서 매달아 놓았습니다.
수감자들에게 미리 준비해 놓은 돌무지에서 돌을 시체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수감자가 하나씩 던진 돌이 돌무덤이 되었습니다.”

1. 생명권

‘생명권’은 모든 인권의 기본이며 생명권의 보장은 다른 권리들에 우선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실제적 권리들의 규정에 앞서 제3조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도 제6조에서 생명권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1항은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며 생명권의 법률적 보장을 강조했다. 또한, 제2항 이하에서는 ‘사형의 선고 및 집행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최근 있었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같은 국가의 공공비상사태 선포 상황에서도 예외가 허용되지 않을 만큼 침해할 수 없는 중요한 권리이다. (제4조 제2항)

표 IV-1 「자유권규약」과 생명권

「자유권규약」			생명권 (관련 목차)
제6조	제1항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가 자의적 생명 박탈 마 구금시설에서의 사망
	제2항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사형은 범행 당시에 시행 중이며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법률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선고한 최종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나 광범위한 사형 적용
	제5항	사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선고되지 않으며,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 집행되지 않는다.	라 아동·임신부에 대한 사형
	제6항	이 조의 어떤 내용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해 원용될 수 없다.	공동 생명권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공개처형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생명 박탈이 자행되고 있다. 또한, ‘가장 중한 범죄’가 아님에도 사형이 적용되고 있으며, 아동 및 임신부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당국의 방치 속에 열악한 구금시설 안에서 피구금자가 사망하는 일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모두 ‘생명권’ 보장을 규정한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가. 자의적 생명 박탈

‘자의적 생명 박탈’의 금지는 인간의 생명을 합리적,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빼앗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자의적 생명 박탈의 금지’에 관하여 ‘자의적’이라는 개념은 정당성, 적법 절차, 비례성 등의 요인을 결여한 것으로 ‘불법적’이라는 개념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한다.¹ 이에 따라 초법적 처형뿐만 아니라, 당사국 국내법이 허용하는 생명 박탈의 경우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적 사형 집행 시 ‘고문 및 비인도적 처벌금지’ 등 「자유권규약」상의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자의적 생명 박탈에 해당할 수 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에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월경자(越境者)에 대한 총격, 방역 등을 이유로 한 즉결처형,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금시설 안에서의 사형 집행 및 비밀처형이 벌어지고 있었다.

중·북 접경지역에서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명을 박탈하는 사례들이 수집됐다. 국경경비대원의 탈북 주민 사살을 직접 목격했거나, 탈북 주민을 사살한 경험이 있는 국경경비대원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세 번 경고한 후에도 서지(멈추지) 않으면 사살하라.’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경경비대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진술도 있었다.² 한 증언자는 2019년경 중·북 접경지역에서 밀수현장에 동원된 ‘씨비꾼’(짐꾼)이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도강을 시도하다가 보위원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³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접경지역에서의 자의적 처형이 증가한 것

¹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6, Article 6: right to life, paras. 11-12.

² PB5P7P1302

³ UPBU3Q2089

으로 나타났다. ‘국경 봉쇄구역에 출입하는 자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 즉시 사살한다.’는 방침이 하달되었고, 이 방침에 따라 봉쇄구역에 출입한 사람이 국경경비대원에 의해 실제로 사살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양강도 출신의 한 증언자는 2020년 탈북을 위해 봉쇄 구역에 진입한 사람이 사살된 사례와 2021년 밀수를 위해 봉쇄구역에 진입한 군인이 사살된 사례를 군관과 주민들로부터 들었다고 했다.⁴

‘노동교화소’(이하 ‘교화소’)⁵ 등 구금시설 안에서도 사법 절차 없는 처형 등 자의적인 생명 박탈이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흥교화소에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도주 중 검거된 수형자에 대한 처형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었으며,⁶ 전거리교화소 등 그 밖의 교화소에서도 도주하다 검거된 수형자 처형 사례가 여러 차례 수집됐다. 처형은 대부분 교화소 소장 주도하에 총살로 집행되었고, 처형 전 재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처형 이유에 대한 낭독이 있었다고 했다.⁷ 한 증언자는 교화소 소장이 수형자 전원을 교화소 앞마당에 집합시켜 “도주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고 하면서 처형 장면을 강제로 보게 했다고 진술했다.⁸

“(2016년경) 총살 당일 남녀 수감자 모두를 교화소 마당에 모이게 하였는데, 나가보니 정문 꼭 대기에 사람 목에 밧줄을 묶어서 매달아 놓았습니다. 폭행이 심했는데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고……수감자들이 모두 모이자 정문에 매달아 둔 수감자에게 총을 세 발 쏘았습니다. 그러고는 시체를 땅에 내려놓고 교화소 수감자들에게 미리 준비해 놓은 돌무지에서 돌을 하나씩 들고 시체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수감자가 하나씩 던진 돌이 돌무덤이 되었습니다.”⁹

일부 구금시설의 경우 피구금자 대상 ‘비밀처형’이나 영아 살해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한 증언자는 보위부의 ‘구금소’에 구금되면 대다수가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되거

4 UBWCTO2335

5 ‘교화소(敎化所)’는 ‘노동교화형을 받은 자들을 가두고 교양개조하는 국가기관. 그러한 시설 또는 장소를 의미한다. (북한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제2권, 1995. 620쪽 참고)

6 1JU8U71993

7 MOMR3Y0542

8 SPN4BG1900

9 TZURKG1073

나 비밀리에 처형되었는데, 2013년에는 성매매를 이유로 구금된 여성이, 2014년에는 동성애를 이유로 구금된 남성이 비밀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구금소 기관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다.¹⁰ 영아 살해는 모두 중국에서 임신한 채로 강제송환된 피구금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14년경 구금소 기관원이 임신 8개월 상태로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여성을 분만유도제를 통해 출산하게 한 뒤 아기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진술이 있었다.¹¹

나. 광범위한 사형 적용

생명형인 사형은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한 최종적이며 예외적인 조치이나, 북한에서는 사형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에 따르면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당사국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과 「자유권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법률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부과할 수 있다(제6조 제2항). 자유권위원회는 국가원수 모독 등 그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 자체가 「자유권규약」에 위반되므로, 사형이 부과될 수 없다고 했다.¹² 또한, 사형이 아주 예외적인 조치일 수 있도록 ‘가장 중한 범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마약 관련 범죄, 경제 범죄, 재산 범죄, 정치 범죄 등은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¹³ 하지만, 북한에서는 「자유권규약」상 사형이 적용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부과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법령을 통해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형법」은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를 추가했고, 「형법 부칙」을 통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해서도 일부 위법행위에 대한 사형 부과를 가능케 했다. 2022년 5월 개정된 현행 「형법」에는 ‘비법(불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가 분리되어 각각 규정되어 있고, ‘공화국의 존엄모독

¹⁰ P3RFM51542

¹¹ KRDAUX0428

¹²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6, Article 6: right to life, para. 36.

¹³ *Ibid.*, para. 35.

죄'가 추가되는 등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가 총 11개로 늘어났다.¹⁴

표 IV-2 북한 「형법」상 사형 부과 범죄

「형법」 조항	죄명	
반국가범죄	제61조	국가전복행위죄
	제62조	테로죄
	제63조	조국반역죄 ¹⁵
	제64조	공화국의 존엄모독죄
	제65조	파괴, 암해죄
	제69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반민족범죄	제70조	민족반역죄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234조	아편비법채취죄
	제235조	마약비법제조죄
	제237조	마약밀수, 거래죄
인신을 침해한 범죄	제305조	중살인죄

북한 법령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 부칙(일반범죄)」에서는 「형법」상 일부 일반범죄에 대하여 ‘극히 무거운’, ‘특히 무거운’과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⁶ 「형법 부칙(일반범죄)」 제11조(예외적으로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서도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改愼性)¹⁷이 없는 경우’에도 사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형의 광범위한 적용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⁸

¹⁴ 「형법」(2022) 제35조, 제36조.

¹⁵ 「형법」(2022) 제63조 (조국반역죄) 조국반역행위를 한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¹⁶ 2010년 개정된 「형법 부칙(일반범죄)」상 사형 대상 범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무기·탄약·전투기술기재·군사시설 고의적 파손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약취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강도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폐위조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유색금속 밀수·밀매죄,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 도주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 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강도죄, 예외적으로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¹⁷ ‘개준(改愼)’은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로 먹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1권, 2017. 847쪽 참고)

¹⁸ 「형법 부칙(일반범죄)」(2010) 제11조 예외적으로 무기노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또한, 최근 제정한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마약범죄방지법」, 「평양문화어보호법」에도 사형을 규정하여 광범위한 사형 적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2020년 제정한 「비상방역법」에서는 비상방역기간을 ‘전시(戰時)’로 간주하고(제8조), 비상방역사업 관련 명령·지시 등의 집행을 어겼거나(제65조), 국경·해상 등의 봉쇄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제68조) 최대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에는 이를 개정하여 봉쇄구역 불법출입, 검열사업 방해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법정형에 사형을 추가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¹⁹ 또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도 ‘적대국 사상문화전파죄’(제28조), ‘성(性) 녹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제29조) 등에 대하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1년 제정한 「마약범죄방지법」도 사형 조항을 두고 있다. 아편 불법 채취(제23조), 마약 불법 제조(제24조), 마약 밀수·거래(제28조), 마약범죄 관련 압수·몰수 재산의 불법 처분(제39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3년 제정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괴뢰말투(남한 말투) 사용’을 범죄로 정하고 있으며, ‘괴뢰말투사용죄’(제58조), ‘괴뢰말투유포죄’(제59조)의 정상(情狀)이 무거운 경우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서는 살인뿐만 아니라 종교·미신행위, 마약밀수·거래, 남한 영상물 시청·유포, 음란물 유포, 성매매 등 「자유권규약」상 사형을 적용할 수 없는 범죄들에 대해서도 사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성경 소지를 비롯하여 종교행위를 이유로 사형을 집행한 사례와 외부정보 유포와 관련하여 사형에 처한 사례가 있었다. 한 증언자는 2019년 평양시에서 비밀리에 지하교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한 단체가 일망타진되어 운영자 5명은 공개처형되고 나머지 단원들은 관리소나 교화소로 이송됐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했다.²⁰

19 「비상방역법」(2021) 제73조(비상방역사업방해죄)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정당한 요구에 반항하면서 구타, 폭행하였거나 검열, 감독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거나 격폐된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였거나 격리된 대상을 밖으로 불러내었거나 격리된 대상이 격리장소로 사람을 불러들였거나 비법적으로 사냥을 하였거나 국가적인 봉쇄구역에 비법출입하는 것 등을 비롯하여 비상방역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비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하였거나 승인 없이 수입물자를 끌어들였거나 밀수행위를 하였거나 밀수품을 유포시켰거나 비상방역사업 방해 행위를 목인조장, 조직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1항, 2항의 행위로 비상방역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비상방역사업 방해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20 P3RFM51542

“여자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농촌 출신 18세~25세 여성들,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사는 생계유지하기 힘든 여성들을 모집하였고, 주차장에서 ‘말뚝’(브로커)들이 남자들을 상대로 대기 숙박 할 사람을 모집해서 데려가서 처음에는 술상을 봐주고, 원하는 여자 나이를 말하면 그 여자를 연결시켜 주어 성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공개처형에 앞서 공개재판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에서 성매매를 조성한 죄 등으로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사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16명의 계호원들이 나와서 계호원 한 명당 세 발씩 총을 쏘서 다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죽었습니다.”²¹

아울러 북한 당국이 ‘적대국 사상문화’로 규정한 남한이나 미국의 영상물과 관련된 행위로 공개처형된 사례도 수집됐다. 한 증언자는 2022년 겨울 황해도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을 목격했는데, 당시 사형수 중 한 명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즉 외부정보 접촉·유포 등과 관련된 일로 사형을 당했다고 했다.²² 공개처형의 경우, 2023년 황해남도 지역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해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이 많았다는 진술도 있었다.²³

다. 공개처형

국제인권규범들은 사형 집행 시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을 사형 집행 현장에 동원하고 있었다. 자유권위원회는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자유권규약」 제7조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있다.²⁴ 따라서, ‘가장 중한 범죄’를 이유로 권한 있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되었다고 해도 그 집행을 공개하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7조에서 금지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에 속한다. 아울러, 주민들이 공개적인 사형 집행장에 강제로 동원되는 것 역시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취급을 당했다는 면에서 「자유권규약」 제7조의 위반에 해당된다.

²¹ 1J9VEU1801

²² ONW4SH2402

²³ TEIEJA2400

²⁴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0, Article 7: Prohibition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ara. 6.

북한에서 공개 사형 집행이 있었다는 증언은 2023년까지 매년 수집됐다. 사형 집행은 주로 장마당, 강·하천변, 운동장과 같이 접근성이 높은 공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양강도 혜산시 연봉동 비행장, 함경남도 함흥시 평수장마당,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천변 등이 지역별로 자주 이용되는 처형 장소였다.²⁵ 주민(아동 포함)들은 학교, 기업소, 인민반 등 소속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사형 집행 현장에 집단 동원됐다. 2018년에 직접 사형 집행을 목격했다는 증언자는 당시 참관한 주민이 1,000명이 넘었고, 대부분 공장, 기업소 등에서 조직적으로 동원되었으며 본인도 '인민반'²⁶에서 동원되었다고 했다.²⁷ 또한, 다른 증언자는 인민반에서 주민들에게 사형 집행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고 참여를 강요했으며,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동원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했다.²⁸

그림 IV-1 공개처형 추정 장소 위성사진 (기록센터 조사 기준)



함흥시 공개처형 추정 장소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구역 호령천변)

청진시 공개처형 추정 장소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수성천변)

* (사진출처) 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m/web/>)

공개 사형 집행은 사회안전기관²⁹에서 주관했으며, 대상자의 신상과 죄명을 공개한 후 총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공개된 장소에서 주민들을 모아두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

²⁵ MIFROV1026, E03F1T0790, LHB9941636

²⁶ '인민반'은 북한의 행정조직에서 가장 작은 단위이다. 우리의 통·반과 같은 말단 행정조직으로 전업주부나 은퇴한 직장인들이 주로 소속된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2. 617쪽 참고)
최말단 행정단위이자 주민감시 조직으로, 내각이 정한 세대수를 기준으로 인민위원회에 의해 조직되고('주민행정부' 제9조), 미거주자, 직장이탈자를 비롯하여 의심되는 자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군중신고법' 제10조)

²⁷ MNH2KG2026, G2EEXE1947

²⁸ N47MDZ1549

²⁹ '사회안전기관(사회안전성, 사회안전부, 인민보안성, 인민보안부)'은 치안 유지를 주 임무로 하는 국가기구로서 우리의 경찰청에 준한다. 국무위원회 직속으로 국가보위성, 국방성과 함께 북한 3대 체제 보위기구 중 하나로 꼽힌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2. 399쪽 참고)

린 집행대상자를 기둥에 묶은 후 머리, 가슴, 다리 부분에 총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죄의 경중에 따라 사형 집행 인원 등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초에 ○○장마당에 갔다가 공개처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가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저 멀리 높은 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1명이었고 여성을 죽이고 현금 등을 가져간 강도살인죄였습니다. (공개처형 전) 재판이라기 보다는 보안원이 무슨 내용의 죄명으로 공개처형을 한다는 내용을 마이크에 대고 전체가 들을 수 있게 말하였습니다. (집행은) ○○보안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굴을 복면에 가렸고 손을 뒤로 묶은 채로 말뚝에 세워 목, 가슴, 발을 묶은 처형대상자를 보안원 5명이 나와 총으로 3발씩 쏘서 처형하였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총을 쏘는 보안원의 인원이 달라지는데 중한 범죄였기에 5명이 처형을 했고 상체가 알아볼 수 없게 터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민) 400~5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습니다. 시신은 백포(하안천)에 돌돌 말아 차에 실어갔습니다.”³⁰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처형 현장에 동원된 주민들의 충격도 컸다. 공개처형을 목격한 증언자 대다수가 처형 장면을 보고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한 증언자는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니까 너무 무서워서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면서, 처형대상자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고,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장면이 생각나서 괴롭다고 호소했다.³¹ 반면, 이러한 이유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사형장 동원에 일부러 빠졌다는 진술도 있었다.³²

라. 아동·임신부에 대한 사형

아동과 임신한 여성에 대한 사형 부과도 드물지만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권규약」 제6조 제5항은 18세 미만의 자가 저지른 범죄(범죄행위 발생시점 기준)에 대한 사형선고 및 임신부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도 「형법」에서 이

³⁰ TEIEJA2400

³¹ SOKAIT1086

³² MNH2KG2026

를 금하고 있지만,³³ 다수의 증언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과 임신부에 대한 사형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되었던 것을 목격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있었다. 한 증언자는 2018년에 함경북도 청진시 강변에서 미신 및 종교행위로 주민 2명이 공개처형되었는데, 처형된 사람 중 한 명이 18세 미만이었다고 진술했다.³⁴ 2015년 강원도 원산시에 있는 경기장에서 16~17세 청소년 6명이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었다.³⁵ 또한, 평양에서도 2014년경 인근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사형 당한 것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4년경 제가 고등중학교 6학년 때, 대동강 건너, 통일거리 쪽에 있는 고등중학교에서 비(非)사회주의 현상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강하게 처벌되었는데 5명 중 주동자 2~3명은 총살되었고 나머지는 교화소에 갔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³⁶

임신부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진술도 수집됐다. 증언에 따르면 2017년경 집에서 춤추는 여성의 동영상 시중에 유포되었는데, 영상에서 여성이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는 장면이 있었다. 그 여성은 이 동작이 문제가 되어 공개처형되었는데, 처형 당시 임신 6개월이었다고 했다.³⁷

마. 구금시설에서의 사망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생명 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구금시설에서의 피구금자 사망이

³³ 「형법」(2022) 제37조 (사형)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 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³⁴ APV7AZ1435

³⁵ KYS94N0794

³⁶ 5VRQH72482

³⁷ OWTG6L2284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권위원회는 당사국의 생명권 보호 의무는 자의적인 생명 박탈을 금지할 소극적 의무뿐 아니라 입법 및 기타 조치를 통해 생명권을 실현할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³⁸ 당사국의 적극적 의무는 국가가 개인을 체포하고 구금했을 때에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피구금자에게 음식이나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피구금자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당사국의 부작위로 피구금자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유권규약」 제6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된다.³⁹

열악한 구금환경은 피구금자들이 사망하는 주된 원인이 됐다. 한 증언자는 2020년 겨울, 양강도의 한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었던 가족이 동상에 걸렸음에도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진술했다.⁴⁰ 2018년경 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다는 증언자는 교화소 내 부실한 급식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린 피구금자가 사망한 것을 직접 보았다고 했다.⁴¹ 2019년 노동교양대에 수감 중이던 사람이 동료수감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있었다.⁴²

³⁸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6, Article 6: right to life, paras. 3-4.

³⁹ *Ibid.*, para. 25.

⁴⁰ 67MM9S2253

⁴¹ M7EQE91399

⁴² B3QZTR2047

2.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국제인권규범들은 노예제도와 함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4조는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고,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권규약」도 제8조에서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의 금지, 강제노동 부과 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표 IV-3 「자유권규약」과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자유권규약」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관련 목차)
제1항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공통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는다.	
	(a) 어느 누구도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제8조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 중노동을 수반하는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의 형의 선고에 따라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배제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가(2) 행정기관의 결정을 통한 노동처벌(행정처벌) 부과
	(c) 이 항의 목적상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i) (b)에서 언급되지 않은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으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구금으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ii) 생략) (iii) 공동체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 시에 부과되는 역무 (iv)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에 속하는 작업 또는 역무	가(1) 형 집행시설에서의 과도한 노동 부과
		나 사회조직을 통한 노동력 동원
제10조	제2항 (a) 미결수용자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형자와 분리되며,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지위에 적절한 별도의 대우를 받는다.	가(3) 임시수용시설에서의 노동 강제

그러나, 다양한 증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형 집행시설에서는 수감자에게 ‘교화’의 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동을 부과하고 있었다. 법원의 합법적 판결이 아닌 행정기관 결정으로 수감하여 노역에 동원했고, 형이 결정되지 않은 채 임시수용시설에 구금된 주민들에게 노동

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사회조직을 통한 상시적인 노력동원이 있었으며, 주민들에게는 육체적 또는 금전적 부담이 주어졌다.

가. 구금 상태에서의 강제 노동

(1) 형 집행시설(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에서의 과도한 노동 부과

수감자에 대한 노동 부과는 교화와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 집행 시설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라 하여도 과도한 노동의 부과는 금지되어 있다. 물론, 권한 있는 법원이 선고한 형벌에 따라 수감자에게 부과된 노동은 인정된다. 「자유권규약」도 제8조 제3항에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중노동 부과는 강제노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의 부과는 인간 존엄성 존중을 바탕으로 교정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⁴³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은 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을 자유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⁴⁴ 북한 「사회주의노동법」도 근로자의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⁴⁵

하지만, 형 집행시설에 수감된 북한 주민들에게는 과도한 노역이 부과됐다. 북한 「형법」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노동(징역)을 부과하는 형벌로서 ‘노동교화형⁴⁶’과 ‘노동단련형⁴⁷’을 두고 있다. 두 형벌은 ‘노동교화소’와 ‘노동단련대’에서 집행되는데, 상기 형 집행시설에서는 수감자들에게 보통 12시간 이상의 과도한 작업을 부과했다. 수감자에게 부과되는 노역은 작업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도 있었지만, 할당량을 완수해야 하

⁴³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0(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⁴⁴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97) ② 수형자는 노예상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Rule 102) ①수형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자유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적 기준과 관습을 참작하여 법률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정해진 작업시간은 주당 하루의 휴일과 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사회복귀 원조의 일부로서 요구되는 교육과 그 밖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는 것이어야 한다. (Rule 103) ①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수제도가 있어야 한다.

⁴⁵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16조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이하 생략)

⁴⁶ 「형법」(2022) 제38조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이하 생략)

⁴⁷ 「형법」(2022) 제39조 (노동단련형) 노동단련형은 범죄자를 노동단련대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이하 생략)

는 작업 형태가 많았다. 매일 정해진 계획을 완수하지 못한 수감자는 기관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벌을 받기도 했다.

“2018년까지 (함경남도) 함흥교화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금속 고리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식사 시간과 일일 총화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겨울에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여름에는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작업을 했는데, 매일 오후 5시에 일 총화를 했으며 그 날 일을 잘 못한 사람들은 교화소 담당 기관원이 죄수들의 신발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⁴⁸

표 IV-4 북한의 형벌 및 행정처벌 집행시설 (기록센터 조사 기준)

집행시설	명칭	기간	법적근거	운영기관	비고
노동교화소	무기 노동교화형	무기한	「형법」 (제38조)	사회안전성 (舊 인민보안성)	· 노동교화형은 사형, 노동단련형과 함께 '기본형벌'의 한 종류
	유기 노동교화형	1년~15년			
노동단련대	노동단련형	6개월~1년	「형법」 (제39조)		· 노동교화소 부속시설로도 설치
노동교양대	노동교양 처벌	5일~6개월	「행정처벌법」 (제18조)	인민위원회 (시·군·구역)	· 지역별 인민위원회는 물론 대규모 농장·직장에도 설치 · 노동교양처벌은 '행정처벌'*에 해당

* 법원의 판결에 의한 형벌이 아닌 행정기관(각급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 내각, 검찰기관, 재판기관, 인민보안기관, 중재기관, 검열감독기관, 자격수여기관)이 부과하는 형벌(「행정처벌법」 제344조)

교화소 수감자들은 열악하고 강압적인 환경 속에서 다양한 작업에 투입되어, 할당된 노동을 강요당했다. 수감자들은 해야 할 작업의 종류에 따라 농산반, 화목(火木)반, 피복반, 재화반, 가발반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광산이나 탄광에서의 작업도 있었다. 교화소 부업지(텃밭) 농사, 가축 사육, 딸감 마린, 군복·군화 제작, 속눈썹·가발·모자 제작, 탄광·광산에서의 갱내 채굴 작업, 건설, 목공 등 작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다. 수감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업했으며, 일일 작업 평가는 노동력을 투입한 시간이 아니라, 작업 할당량의 충족 여부가 기준이 됐다. 2018년경 수감되었던 증언자는 하루 할당량이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했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취침 시간을 줄여서라도 작

업해야 했다고 했다.⁴⁹ 수감자가 고열로 아프거나, 작업 중 다쳤더라도 계획량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계획량 미달성자는 기관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면회를 제한당하고, ‘면식(面食)⁵⁰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의 처벌을 받았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2017년경(전거리 교화소 수감자들은) 하루 과제계획이 있어서 아파서 고열이 40도가 되어도 그 과제를 다 완수해야 합니다. 잠도 못자고 과제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계획을 다 완수해서 맞은 적이 없지만 다른 수감생 중에는 계획을 못해서 선생님(보안원)에게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⁵¹

노동단련대 수감자도 매일 ‘실적총화’를 통해 개인별 작업을 평가받아야 했다. 노동단련대 수감 경험이 있는 증언자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매일 실적을 올리도록 강요당했고,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비판, 폭행, 처벌이 가해졌다고 했다.⁵²

(2) 행정기관의 결정을 통한 노동처벌(행정처벌) 부과

북한 법령은 재판에 의한 형벌 이외에도 행정기관의 결정을 통한 노동처벌(행정처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 「행정처벌법」은 처벌의 종류로 ‘무보수노동처벌’(제17조)과 ‘노동교양처벌’(제18조)을 두고 있으며,⁵³ 「인민보안단속법」은 법질서를 어긴 경우 ‘노동교양처벌’ 등을 줄 수 있다(제57조)고 규정하고 있다.⁵⁴ 이를 근거로 실제 많은 주민들이 각종 단속으로 행정처벌을 받고 구금되어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 이는 형벌로 중노동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권한 있는 법원의 선고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b)에 배치된다.

49 M7EQE91399

50 ‘면식(面食)’은 북한의 구금시설에 구금된 주민들이 가족 등을 통해 받은 외부 음식을 말한다.

51 SPN4BG1900

52 U61S652293

53 「행정처벌법」(2021) 제344조 (행정처벌기관) 행정처벌은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각, 검찰기관, 재판기관, 인민보안기관(사회안전기관), 중재기관, 검열감독기관, 자격수여기관이 준다. (이하 생략)

54 「인민보안단속법」(2007) 제57조 (행정적 처벌의 종류)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협의회는 법질서를 어긴 자료를 심의하고 노동교양,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중지, 몰수처벌을 주거나 교양처리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행정처벌의 하나인 ‘노동교양처벌’⁵⁵ 대상자들은 ‘노동교양대’⁵⁶에 수감되어 다양한 노동을 부여 받았다. 노동교양대 수감자들은 인근 지역 기업소에서의 노동, 건설현장 노동, 협동농장이나 부업지에서 농사짓기, 벽돌 만들기, 팻감 하기, 노동교양대 주방일 등 다양한 작업에 투입됐다. 한 증언자는 2019년 여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이동하다 적발되어 노동교양처벌을 받았고, 거주지 노동교양대에서 목장 건설에 동원되었다고 했다.⁵⁷ 탈북 후 강제송환되었다는 다른 증언자는 2017년 노동교양처벌이 결정되어 지역의 재판소 건설작업과 가축 사육에 동원되었다고 진술했다.⁵⁸ 노동교양대에 수감된 사람들은 처벌 기간 중 휴일 없이 매일 12~13시간 이상 노동에 동원되었으며, 작업 중 할당량 달성 미달을 이유로 폭행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9년 브로커가 잡혀서 중국에 있는 딸이 (돈을) 보냈다고 자백했고, 노동교양처분 3개월을 받았습시다. 아침 6시 반경에 일을 시작해서 깜깜해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석탄 상하차 일, 집 건설하는 일, 도로포장 일 등에 동원되었습니다. 배수로 파는 일을 할 때는 개인별 할당량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자의 경우 때리지 않았지만, 남자들은 많이 때렸습니다. (수감자 중) 1명을 반장으로 세우고 그 반장이 일을 제대로 안한다고 하면 사정없이 때렸습니다.”⁵⁹

또한, ‘노동교양처벌’은 법정 집행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임시수용시설인 ‘집결소’에 구금된 상태로 노동교양처벌을 받았다는 진술로 봤을 때, 당국이 처벌 장소를 노동교양대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임시수용시설(집결소)에서의 노동 강제

북한 당국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채, 임시수용시설에 구금된 주민들의 노

⁵⁵ 「행정처벌법」(2021) 제18조 (노동교양처벌) 노동교양처벌은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공민을 노동교양대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행정법적 제재이다. 노동교양처벌 기간은 5일 이상 6개월 이하이다.

⁵⁶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통상 ‘노동교양대’와 ‘노동단련대’를 구분하지 않고 ‘노동단련대’로 불렀다고 한다. (8IUFRL2452, 8IUFRL2437, 1ND60Q2408)

⁵⁷ U61S652293

⁵⁸ 52MXNB1472

⁵⁹ 1ND60Q2408

등을 강제하기도 했다. 「자유권규약」 제10조 제2항에서는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않은 피고인은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엔 피구금자 최저 기준규칙’도 미결수용자에게 작업의 의무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⁶⁰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한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노동 부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여행 질서 위반’으로 ‘여행자 집결소’에 구금되거나, 탈북 후 강제로 송환되어 거주지 이송 전 ‘비법(불법)월경자집결소’에 구금된 주민들에 대한 노동력 동원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강제송환자의 임시수용시설인 비법월경자집결소의 경우, 구금된 주민을 강제로 동원하는 일이 많았다.

임시수용시설인 ‘집결소’에 구금된 주민들은 집결소 내·외부 시설 공사 등 다양한 작업에 동원되고 있었다. 건물 증축 등 집결소 내부 공사 동원을 비롯하여, 인근 건설 현장이나 개인 주택 건설, 홍수 후 도로 정비, 시멘트 상하차 등의 작업에 동원되었다는 구금 경험자들의 진술이 있었다.⁶¹ 집결소 구금 당시 집결소 부업지나 인근 협동농장에서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증언으로 봤을 때 작업 종류나 장소는 특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집결소’에 구금된 주민들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신분이었음에도, 집결소 사정에 따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했다.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작업 시간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12시간 이상이었고, 휴일도 예외는 아니었다.⁶² 집결소 구금 경험이 있는 증언자들은 겨울철에는 집결소 대기 기간이 짧아지는 반면, 농번기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 기간에는 대기 기간이 길어졌다고 진술했다. 이는 비법월경자집결소에서 구금된 주민의 거주지 이송 요청 통보를 일부러 늦췄다는 진술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⁶³ 비법월경자집결소 구금자에게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집결소의 수익 때문이었다는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⁶⁴

⁶⁰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116).

⁶¹ 67KL2N0678, FJ2DB10682

⁶² 8E4Q2W1478

⁶³ PXXKT6W0772, NEHTD00763

⁶⁴ 67KL2N0678

“강제복송되어 (2019년 1월 초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소재 도 보안국 집결소로 가서 매일 일을 했는데, 일의 종류는 매일 바뀌었습니다. 퇴비 나르기, 나무 나르기, 철강재 나르기, 주변정리 등을 했습니다. 아침에 7시경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였습니다. 하루 세끼 강냉이 제분밥(옥수수 찌꺼기로 만든 밥) 100g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⁶⁵

나. 사회조직을 통한 노동력 동원

북한에서는 사회조직을 통한 강제노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사회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작업이나 의무(役務) 중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사회의 존립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요구되는 의무와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 등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사회조직을 통해 건설현장 등에 주민을 동원하는 것을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이나 아동까지도 동원 대상에 포함되는 점, 매주 며칠씩 상시적 또는 일정기간 숙식을 하며 동원한다는 점, 불참 시 비용 납부 등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를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사회조직을 통한 주민의 노동력 동원은 이미 일상화 되어있다. 전업주부로 구성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이하 ‘여맹’), 청년 근로단체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공장·기업소 노동자들이 소속된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맹’) 등이 주도적으로 주민을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조직인 거주지 ‘인민반’을 통해 주민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동원은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납부해야만 했다. 불참할 경우 대신 금전을 납부하는 행태는 모든 조직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회조직 중에서는 여맹을 통한 노력동원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 여성 증언자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여맹에서는 동맹원들을 일주일에 5회 이상, 거의 매일 동원했으며, 최근에는 대규모 건설현장에 수일씩(숙박 포함) 동원하기도 해서 ‘여

⁶⁵ 9G37IQ1611

맹돌격대'가 생겨났다고 했다.⁶⁶ 다른 여성 증언자는 동원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맹원의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했으며, 이들을 '여맹 수익금조(組)'라고 불렀다고 진술했다.⁶⁷ ('IV-10.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참고)

“2019년까지 여맹위원회에서 지시할 때마다 노력동원이 있었습니다. 내부동원은 집에서 잠깐 다니는 동원이고 외부동원은 식량을 싸서 외부로 나가서 며칠씩 동원되는 경우인데, 이것을 '여맹돌격대'라고 합니다. 철도, 도로 등 건설에 모두 주민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들인데, 동원이 일주일에 5번 정도, 거의 매일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동원은 개인별 사정은 봐주지도 않고 건강이 나빠도,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도 동원을 강제적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⁶⁸

청년동맹을 통해 우리의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 학생을 강제노동에 동원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학생들은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농촌동원' 이외에도 수시로 동원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동원은 의무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불참하려면 학생들이 또한 일정 금액을 학교에 납부해야 했다.⁶⁹

그림 IV-2 강제노동에 동원된 북한 주민들



시·군 원료기지에 동원된 여맹원들

평양 서포지구 건설에 동원된 청년들

'아리랑 공연' 연습에 동원된 학생들

* (자료출처) 노동신문(2024.4.18./ 2023.2.27.), 조선중앙통신(2011.6.28.)

주로 고급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동원되는 '집단체조'도 사회조직을 통한 노력동원에 속한다.⁷⁰ 대표적인 집단체조로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아리랑 공연'이 있다. 학생

⁶⁶ A84W651253

⁶⁷ 4618281547

⁶⁸ A84W651253

⁶⁹ SIYETUI914, X21B8H0457

⁷⁰ 271E382274, JOQUB82117, ROD6PD2461

들의 집단체조 연습은 4월부터 시작해,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0월 ‘노동당 창건 일’(10.10.) 공연을 끝으로 종료된다.⁷¹ 매년 ‘소년단 창립절’(6.6.)에 실시되는 집단체조 연습을 위해서도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동원됐다. 집단체조의 난도가 높아 연습 중 다치는 학생들이 많았고, 연습량이 많아 매우 힘들었다는 진술이 있었다.⁷² 집단체조에 불참하기 위해서는 역시 돈을 납부해야만 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었다. 한 증언자는 아리랑 공연 동원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100달러 정도를 내야 했다고 했다. 돈을 낸 학생은 학급 전체(35명)의 20%(7명) 정도였다고 했으며, 대부분 비용 부담이 어려워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⁷³

직업학교, 기능공학교, 대학교 재학생에게도 노력동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을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설, 철도 정비, 도시 정비를 위한 아파트 건설, 식료품 공장 신축 등 학교 소재지 주변의 크고 작은 건설현장에 동원했다.⁷⁴ 특히, 2017년부터 본격 시작된 삼지연 지역 건설 노동력을 인근 지역 대학생을 차출하여 동원했으며, 이들을 ‘대학생들격대’라고 불렀다고 했다.⁷⁵ 한 증언자는 대학 재학 중이던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주말마다 청년동맹에 의해 노동에 동원되었다고 진술했다. 동원된 학생들은 공장 건설, 농사, 페인트칠 등 다양한 일에 투입됐다. 동원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변 학생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문제가 될 수 있어 빠지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번 북한 돈 10,000원 정도를 납부해야 했다.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9년까지] 지역의 가까운 건설현장에 동원되었습니다. 동상 건설, 살림집 건설, 공장 건설 등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도로 정비나 철도 정비 등이 필요하면 학생들을 동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대군인 출신들은 삼지연 건설 등에 동원되었는데, 동원되는 지역으로 가서 일정기간 숙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남학생들을 의무적으로 뽑았습니다.”⁷⁶

71 JOQUB82117, 00RIT62477

72 5KJESK2235

73 JOQUB82117

74 SVIVF51264

75 ICHLPG2211

76 ICHLPG2211

대규모 도시 재정비 지역에서는 철거된 주택의 거주민들이 주택건설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했다. 입주 예정 세대에서 한 명씩은 공급받게 될 주택건설에 참여해야만 했으며, 이들을 '가족돌격대'라고 불렀다. 한 증언자는 세대별로 작업에 참여한 노동력을 매일 평가하여 입주할 아파트의 층수를 결정했다고 했다.⁷⁷ 당국이 건설현장에 나오는 것을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입주 가능 여부가 건설현장 참여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의무나 다름없었다는 진술도 있었다.⁷⁸ 이러한 경우에도 참여가 어려운 세대에서는 대신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했던 것으로 보인다.⁷⁹

⁷⁷ XX2N7E0796

⁷⁸ 8H9OLK0142

⁷⁹ OIHR9O0138

3.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신체의 자유’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며, ‘신체의 안전’은 심신에 대한 훼손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에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9조 역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인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표 IV-5 「자유권규약」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자유권규약」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관련 목차)	
제9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근거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가 자의적·불법적 체포·억류 다 강제실종
	제2항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 이유를 고지 받으며, 자신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고지 받는다.	나(1) 체포 이유와 피의 사실 미통고
	제3항	범죄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 행사 권한을 부여받은 그 밖의 공무원에게 신속히 회부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을 구금하는 것은 일반 원칙이 될 수 없으며, 그 밖의 모든 사법 절차 단계에서의 재판을 위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판결 집행을 위하여 출석할 것이라는 보증하에 석방될 수 있다.	나(2) 과도한 재판 전 구금기간
	제4항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구금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의 구금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나(3) 적부심사 및 피해보상 미비
	제5항	불법적인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집행 가능한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생체실험	

국제인권규범의 내용과 달리, 북한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무집행 과정에서의 구타 행위에 처벌을 명시한 「구타행위방지법」이 제정되기도 했으나,⁸⁰ 주민의 신체 자유와 안전에 대한 북한 당국의 권리 침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민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이 자행되고 있었으며, 체포 이유와 피의 사실 통고 없이 체포되는 경우도 많았다. 체포·구금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법적 보호·보상 절차는 매우 부족했으며,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구금하기도 했다.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뒤 행방불명되었던 사례나, 실험대상자의 동의 없이 의학실험이 이루어졌던 사례도 있었다.

가. 자의적·불법적 체포·억류

「자유권규약」은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와 억류를 금지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에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한 것을 이유로 체포·억류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라고 해석한다.⁸¹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은 또한,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근거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며 불법적인 체포·구금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는 당사국의 형사소송법상의 체포·구금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적인 체포·구금에 해당한다고 했다.⁸²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하거나 구금되어야 했다. 한 증언자는 2021년경 북한에서 생산하는 물건(공산품)이 하나도 없다면서 꾸밈을 했던 노동자가 실종되었다고 했

⁸⁰ 「구타행위방지법」(2021) 제22조 (구타행위방지사업을 무책임하게 한 감독통제기관 일군들에 대한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법기관, 감독통제기관 일군이 구타행위를 단속처리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받고도 조사 처리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직무집행과정에서 구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처벌을 준다. (이하 생략)

⁸¹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5, Article 9: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para. 17.

⁸²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5, Article 9: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paras. 22-23.

다.⁸³ 다른 증언자는 2019년 평양시에서 몰래 종교 활동을 하던 주민들이 체포되었다고 진술했다.⁸⁴

북한 주민들은 영장이 필요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증언자는 2019년경, 집으로 찾아온 안전원의 “조사할 것이 있으니 따라와라.”는 말만 듣고 영문도 모른 채 분주소로 연행되어, 구금된 채 조사받았다고 했다.⁸⁵ 2019년에 직장 앞에서 갑자기 체포되어, 보위부에 구금된 채 조사받았다는 진술도 있었다.

“직장 사무실 앞에서 보위지도원을 만났습니다. 보위지도원은 웃으면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보위지도원은 나오지 않았고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체포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2명의 사람이 내렸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이 사람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체포하자마자 바지 허대를 뽑고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차에 태웠는데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행되어 도착한 곳이 보위부 사무실이었습니다. 이곳에 구금되었습니다.”⁸⁶

나. 절차적 보장 미흡

(1) 체포 이유와 피의 사실 미통고

북한 주민들은 체포될 경우, 대부분 체포 이유와 피의 사실에 대해 통고(通告)받지 못한 채, 영장 없이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권규약」 제9조 제2항은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당할 때 체포 이유와 피의 사실을 신속하게 통고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증언자들은 북한의 수사기관이 별도의 통고 과정 없이 주민들을 체포했다고 진술했다. 2019년 자택에서 체포되었던 한 증언자는 체포 당시 체포 이유

⁸³ ONW4SH2402

⁸⁴ P3RFM51542

⁸⁵ JBTG6E2120

⁸⁶ 21HWHR1891

를 고지 받지 못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를 한 것이 체포 이유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⁸⁷ 보위원에 의한 강제연행 경험이 있는 증언자도 체포 당시, 이유와 피의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으며, 조사를 받던 중 탈북한 가족에게 돈을 받은 것이 체포 이유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⁸⁸

“(2018년경) 담당 보위지도원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지도원이) 저에게 다가와 전화할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손전화기(휴대전화)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주자 어디로 전화를 했고 5분 안에 보위부 오토바이 3대가 왔습니다. 저에게 알아볼 것이 있으니 오토바이에 타라고 했습니다. 그 중 한 대에 태워져 ○○시 보위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으려고 하자, 제게 욕설을 하며 ‘곱게 대할 때 빨리 타라.’고 했습니다.”⁸⁹

심지어, 피의자가 구류·구속된 후에도 사유와 장소를 피의자 가족에게 통보해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019년경 보위부에 구금된 적이 있는 증언자는 보위부에서 자신이 구금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⁹⁰ 다른 증언자도 2018년 남편이 체포되어 구류되어 있었지만, 체포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⁹¹

(2) 과도한 재판 전 구금기간

체포·억류 후 신속한 재판 회부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과 달리, 북한에서는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와 예심⁹²을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권규약」 제9조 제3항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형사피의자는 법관이나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⁸⁷ JBTG6E2120

⁸⁸ 21HWHR1891

⁸⁹ 5QHT3I1644

⁹⁰ SPN4BG1900

⁹¹ FKX6E1650

⁹² ‘예심(豫審)’은 법률용어로 ‘형사사건을 제기하고 그것을 재판에 넘길 때까지 과학적 근거를 수집, 검토, 평가하여 범죄와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소송행위’를 의미한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4권, 2017, 1547쪽 참고)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2021) 제144조에서는 ‘예심의 임무는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받거나 석방될 권리를 가지며,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2개월간의 예심 기간을 두고 있었으며, 복잡한 범죄사건의 경우 5개월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⁹³

북한 당국은 수사와 예심 단계에서 법정 최대 구류·구속기간을 초과하여 피해자를 구금하기도 했다. 2019년에 중국 휴대전화 사용 혐의로 사회안전부 예심을 받았던 증언자는 최대 구류·구속기간을 넘겨 6개월간 구금되었다고 했다.⁹⁴ 탈북브로커 혐의로 구금되었던 다른 증언자는 보위부 구류장에 9개월 동안 있어야 했다고 진술했다.⁹⁵

(3) 적부심사 및 피해보상 미비

「자유권규약」에서는 체포·억류의 적부심사 및 피해보상 청구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9조 제4항은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억류가 합법적이지 아닌 경우에는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한, 제9조 제5항에서는 “불법적인 체포나 억류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피해보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이를 보장하고 있지 않았으며, 북한 주민들도 관련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외적으로 공개된 북한 법령에는 체포·구속 이후 그 정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적부심사 청구 제도가 없었다. 또한, 「손해보상법」에서 손해보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수사·예심 또는 사법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은 피해보상의 대상이 아니었다.⁹⁶

⁹³ 「형사소송법」(2021) 제147조, 제148조.

⁹⁴ A9ZFAH1637

⁹⁵ SPN4BG1900

⁹⁶ 「손해보상법」(2020) 제8조 (법의 규제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이나 인신을 비법적으로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계약에 기초한 민사거래에서 발생한 손해의 보상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40조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의 기본요구)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을 침해하여 끼친 손해에 대하여 진다.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였거나 인격, 명예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도 손해보상책임을 진다.

“2014년 ○○리 보안소 조사실에 구금되어 진술을 강요받았습니다. 보안소장(안전원)이 말대꾸한다고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찼습니다. 그래서 맞은 부분이 붓고 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소 소장의 보복이 두려웠고, 북한에서는 보안소 등 법 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폭행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일로 문제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⁹⁷

다. 강제실종

국제인권규범에서는 ‘강제실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유엔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2조에 따르면 강제실종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⁹⁸ 자유권위원회도 강제실종이 「자유권규약」의 여러 조항들을 위반하는 악질적인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했다.⁹⁹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된 후 소식도 없이 실종된 경우를 직접 봤거나, 관련 내용을 들었다는 사례들이 다수 수집됐다. 강제실종된 사람들은 체제 비판 등 소위 ‘말반동’ 행위를 비롯하여, 종교행위, 간첩행위, 인신매매, 남한으로의 탈북 시도 등의 사유로 체포된 후 소식을 알 수 없었다.¹⁰⁰ 한 증언자는 2017년경 같은 마을 주민이 남한의 기독교 단체에서 보내준 돈을 받고, 주민선교를 했다는 혐의로 도 보위국에 의해 체포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진술했다. 다른 증언자는 2017년경 중국 휴대전화로 남한에 있는 형제들과 통화한 사실이 보위부 통신감청에 적발되어 체포된 사례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그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체포된 날짜를 사망일로 정하고 추모하고 있다고 했다. 증언자들은 강제실종 사례의 대다수 실종자들의 생사를 알지 못했으며,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추정했다.

⁹⁷ UQIHSE1520

⁹⁸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제2조.

⁹⁹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5, Article 9: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para. 17.

¹⁰⁰ IFSB441254, Y0BKN51365, 030NIJ1912

“2017년경 같은 마을에 살던 남성을 ○○도 보위부에서 체포해 갔습니다. (체포된 남성의) 아내에게 듣기로는, 남한의 기독교 단체에서 보내준 ‘검은돈’을 받고, 회령시 창태리에 기독교 근거지(선교할 주민을 교육시키는 곳)를 만들고, 주민선교를 했다는 혐의였다고 합니다. ○○시 사람 12명을 교육시켜 선교하도록 하다가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체포되었고, 10명은 혐의가 약해 노동단련형 및 노동교화형을 받았으며, 2명은 ‘관리소’에 수감된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¹⁰¹

라. 생체실험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본인의 자유로운 동의 아래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권규약」은 제7조 후문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이거나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위원회에 따르면 유효한 동의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학적이거나 또는 과학적 실험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¹⁰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당사자의 동의 없는 생체실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실험은 주로 ‘83호 병원’ 또는 ‘83호 관리소’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실험기관에 수용된 실험대상자는 대부분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거나 지적 장애인으로 생체실험에 대해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수용될 때도 실험대상자 자신의 동의는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 83호 병원에 수용되었다는 한 증언자는 83호 수용처분은 사회안전성의 재가를 받아 실험대상자의 거주지 안전부 감찰과에서 집행하며, 실험대상자 가족의 동의를 받는다고 진술했다.¹⁰³ 다른 증언자는 83호 수용처분에 대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겠다는 안전원의 협박에 가족의 83호 수용을 동의했다고 회고했다.¹⁰⁴

¹⁰¹ 5AEYZR1525

¹⁰²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0, Article 7: Prohibition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ara. 7.

¹⁰³ EJRHJ2244

¹⁰⁴ 80LP7J0745

“저희 매형은 군 복무 중에 광견병이 걸린 개에게 물려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49호 병원’(정신병원)에 입원을 2회 시켰지만, 입원 후 매번 도망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니 매형의 부모와 누나의 동의하에 ‘83호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중략) ‘83호 병원’에 보내지면 실험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3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망을 전제하고 보내는 것입니다.”¹⁰⁵

¹⁰⁵ EJRHLJ2244

4. 피구금자의 권리

‘피구금자의 권리’는 법과 권력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갖는 권리를 말한다. 「자유권규약」 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권위원회도 일반논평 제9호에서 동 조항이 ‘교도소뿐만 아니라 병원, 수용소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사람이 구금된 모든 기관에 대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¹⁰⁶

표 IV-6 「자유권규약」과 피구금자의 권리

「자유권규약」		피구금자의 권리 (관련 목차)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3) 피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 나 여성 피구금자 처우
제10조	제1항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는다.	공통 피구금자의 권리
	제2항 (a) 미결수용자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형자와 분리되며,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서의 지위에 적절한 별도의 대우를 받는다.	가 피구금자 처우 나 여성 피구금자 처우
	제3항 (b) 미성년 미결수용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가(5) 분리 수용 원칙 미준수
제3항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필수 목적으로 하는 대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적절한 대우가 부여된다.	

하지만, 북한의 구금시설은 수감 공간, 급식, 보건·위생 등 수감 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피구금자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더욱이 강제복송 여성에 대한 체강검사, 성폭력 등에 대한 다수의 진술이 수집되는 등 피구금자의 권리

¹⁰⁶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9, Article 10: Humane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para.1.

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피구금자 처우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이나, 열악한 구금 환경과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는 각종 기관에 구금된 주민들이 여전히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 피구금자 처우

자유권을 박탈당한 피구금자라고 해도 구금시설에서 건강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며 가혹행위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유엔 피구금자처우규칙」은 피구금자의 처우와 형 집행시설의 운영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성별, 연령, 범죄경력 등에 따른 피구금자의 분리, 취침공간과 위생설비 등 거주설비, 건강과 청결유지 등의 개인위생, 피구금자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은 물론 제한, 규율과 징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¹⁰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피구금자들은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대우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의 구금시설에서는 다수의 수감자들을 좁은 공간에 구금하고, 건강을 유지할 만큼의 급식을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세면용품이나 위생용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수감자에 대한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었다.

¹⁰⁷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1, Article 10: Humane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para. 5.

피구금자의 처우에 적용되는 관련 유엔 기준에는 ①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넬슨만델라규칙): 1957년 승인되었다가 2015년 유엔 총회 결의로 전면 개정되었음 ②모든 형태의 구금 또는 수감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The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1998) ③사법집행관을 위한 행동강령(the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1978) ④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로부터 재소자 및 피구금자의 보호 차원에서 의료진, 특히 내과의의 역할과 관련된 의료 윤리원칙(the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relevant to the Role of Health Personnel, particularly Physicians,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and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2) 등이 있다.

(1) 북한의 구금시설

북한은 사회안전성¹⁰⁸과 국가보위성¹⁰⁹ 산하에 구금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 내 구금시설은 크게 형사소송절차 등에 따라 임시로 구류·구속·억류되는 시설과 형벌 및 행정 처벌 집행시설로 나눌 수 있다. 구류·구속 및 억류 시설에는 대기실, 구류장, 집결소, 구금소 등이 있으며, 형벌 및 행정처벌 집행시설로는 교화소, 노동단련대, 노동교양대 등이 있다.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이외에도 각 지역 인민위원회에서는 노동교양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 조직인 ‘연합지휘부’(상무)가 운영하는 구금시설은 파악되지 않았다. (‘표 IV-4 북한의 형벌 및 행정처벌 집행시설’ 참고)

표 IV-7 북한 구금시설의 종류 (기록센터 조사 기준)

운영기관	집행시설	주요 특징
사회안전성	대기실	구류·구속 여부 확정 전 구금
	구류장	도 사회안전국 및 시·군 사회안전부에 설치된 시설로 범죄자(혐의자)를 구속한 상태로 수사·예심·재판하며 그 과정에서 구금
	여행자집결소	당국의 여행 허가 없이 이동하다가 단속된 주민을 구금
	비법월경자집결소	접경지역에 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탈북 시도, 송환된 주민을 구금
	노동단련대	「형법」상 ‘노동단련형’ 집행시설로 노동교화소 부속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
	노동교화소	「형법」상 ‘노동교화형’ 집행시설
국가보위성	집결소 ¹¹⁰	각 도 보위국 및 시·군 보위부에 설치된 구류장, 탈북 시도, 송환된 주민을 구금
	구금소	각 도 보위국 이상에서 운영하는 시설, 주로 정치적 범죄 혐의자 구금
인민위원회	노동교양대 ¹¹¹	「행정처벌법」상 ‘노동교양처벌’ 집행시설

* 형벌 및 행정처벌 집행시설

108 ‘사회안전성’은 현재 북한의 치안유지기관이다. 사회안전성은 변경 및 개칭을 거쳤는데, 변화는 다음과 같다.

사회안전성(1951) → 사회안전부(1972) → 사회안전성(1998) → 인민보안성(2000) → 인민보안부(2010) → 인민보안성(2016) → 사회안전성(2020)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2. 399~400쪽 참고)
이러한 이유로 탈북민들은 증언 시 사회안전성 산하 기관이나 기관원을 일컬을 때, 보안국(안전국), 보안서(안전부), 보안원(안전원) 등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109 ‘국가보위성’은 북한의 체제 보위·규율 기관이다. 국가보위성의 소속 및 명칭 등 변화는 다음과 같다.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1947.2.) → 내각 소속(~1951) → 사회안전성 편입(1951) → 내무성 이관(1952) → 사회안전성 소속(1962) → 국가정치보위부로 독립(정무원 산하, 1973) → 국가보위부(독립기구, 1983) → 국가안전보위부(1993) → 국가안전보위성(1996) → 국가안전보위부(2010) → 국가보위성(2016.6.)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2. 74~75쪽 참고)

110 탈북민들은 국가보위성 산하의 각 도 보위국 및 시·군 보위부에 설치되어 있는 구류장을 ‘집결소’로 부르고 있었는데, 이는 여행자집결소 또는 비법월경자집결소와는 다른 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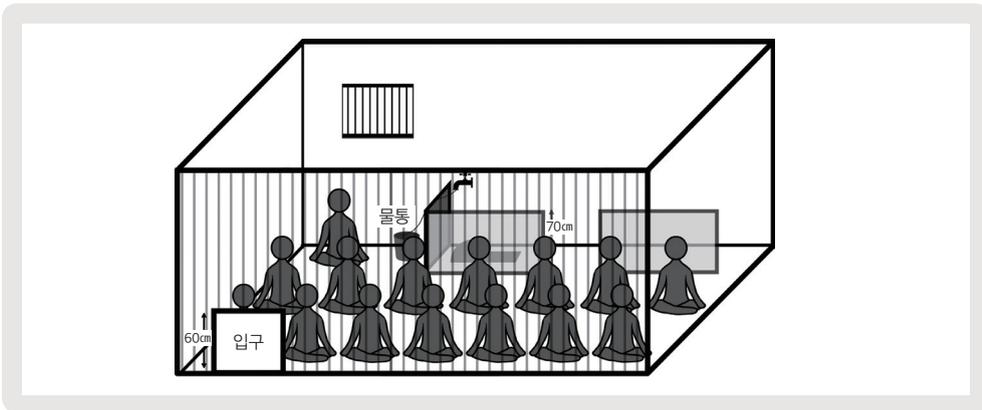
111 노동교양대는 지역(인민위원회)은 물론 비교적 규모가 큰 직장이나 농장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탈 주민들은 ‘노동교양대’와 ‘노동단련대’라는 명칭을 혼용하고 있었다.

(2) 열악한 구금 환경

과밀 인원 수용

북한 구금시설의 수감자 구금 공간은 기관별로 수용인원 등에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엔이 정한 최저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유엔 피구금자처우규칙」은 구금 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개인별 취침 공간에 대하여, 피구금자마다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하며, 공동침실이 사용되는 경우는 서로 ‘원만히’ 지낼 수 있는 수의 피구금자들을 한 곳에 수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¹¹² 하지만, 북한 구금시설의 수감자들은 대부분 좁은 곳에 여러 명이 구금되었으며, 약 6m×4m 크기의 수감 공간에 30명 정도가 구금되기도 했다.¹¹³ 한 증언자는 강제복송되어 구금되었을 당시, 대기실 한 칸에 50명까지 수용되었으며, 잠을 잘 때 제대로 누울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¹¹⁴ 다른 증언자는 구금실 바닥은 장판 같은 것이 깔리지 않은 시멘트 바닥이었으며, 난방이 되지 않아 여름철에는 습기가 차고, 겨울철에는 실외보다 구금실 안이 더 추웠다고 했다.¹¹⁵

그림 IV-3 함경북도 무산군 보위부 구류장¹¹⁶ (증언자 자필 진술 바탕 재구성)



112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12.) ①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과잉수용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 칸에 2명의 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공동침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피구금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설의 성격에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113 ZO70321252

114 O4P7100490

115 NJOZKK1881

116 AJ7W6H1609

부족한 양의 급식

북한의 구금시설에서는 충분한 음식과 식수가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역이나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유엔 피구금자처우규칙」에서 명시한 피구금자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양의 음식과 식수 공급이 지켜지지 않았다.¹¹⁷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 하루 세 번씩 제공했던 주식은 옥수수였다. 옥수수 알갱이를 통째로, 또는 잘게 부순 후 찐 것으로 증언자들은 이를 ‘강냉이밥’, ‘작살밥’ 등으로 불렀다고 했다.¹¹⁸ 반찬으로 염장한 무를 소량 제공하기도 했지만, 별도 반찬 없이 배추, 소금 등을 넣은 시래깃국만 제공된 경우가 많았다.¹¹⁹

최근 수감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지만, 주식은 여전히 옥수수였고, 옥수수에 두부콩이나 쌀 등을 섞어 조리된 것을 제공하는 정도였다. 한 증언자는 2019년경 시·군 단위 보위부 관할 구금시설에서 흰쌀밥, 콩나물, 인조고기 반찬 등이 제공되었고, 교화소에서는 영양부족 등으로 사망자가 늘어나자 영양 결핍 수감자를 대상으로 콩, 영양죽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했다.¹²⁰

“2019년 양강도 보위부 집결소에 구금되었습니다. 집결소에서 식사는 오전 7시, 오후 12시, 7시에 하였습니다. (식사는) 불린 강냉이(옥수수)를 찌서 주었고, 한 끼에 강냉이 250~300알 정도를 주었는데, (너무 적어) 제가 세어 보아서 수량을 알고 있습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적은 양입니다. (강냉이밥 이외에) 반찬은 없었고, 염장 시래깃국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구금되었던) 도 보위부 구금소에서는 먹는 것이 조금 나왔습니다. 강냉이에 메주콩을 섞어 주었고, 양도 집결소 때보다 많았고, 염장배추와 장국도 나왔습니다.”¹²¹

¹¹⁷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22.) ①당국은 모든 피구금자에게 통상의 식사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모든 피구금자는 필요할 때 언제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

¹¹⁸ P0SYMZ1223

¹¹⁹ 5QHT3I1644

¹²⁰ SPN4BG1900

¹²¹ 3G4XI42090

하지만, 피구금자들은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양과 질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증언에 따르면 피구금자들은 ‘면식’이라고 불렀던, 외부 반입 음식 없이는 건강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¹²²

열악한 위생

대부분의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는 물, 세면용품, 위생용품 등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시설에 따라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피구금자처우 규칙」은 피구금자에게 신체를 청결히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³ 특히 「유엔 여성 수용자 처우 및 여성 범죄자 비구금 처우 규칙」은 월경 중인 여성에 대해 필요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⁴ 하지만, 북한 구금시설의 위생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2019년 노동교양대에 수감경험이 있는 여성 증언자는 세면할 수 있는 물조차 공급되지 않아 구금기간 중 씻지 못했다고 진술했다.¹²⁵ 세면용품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부 기관에서 비누 정도만 제공했고, 제공된 용품도 같은 공간의 수감자들이 함께 사용해야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¹²⁶ 대기실이나 안전부 구류장의 구금자들은 세면도구 등 생활용품을 가족에게 받아서 사용해야 했으며, 그렇지 못한 기관의 수감자는 씻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2019년에 (양강도) 보천군 보안서 구류장에 50일 정도 구금되었습니다. 구류장 위생이 좋지 않다 보니 머릿니나 옴 같은 벌레들이 많았고, 목욕은 15일에 한 번 정도 구류장 안의 용변 보는 곳에서 하였는데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씻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비누, 치약, 칫솔 등은 개인이 자체적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¹²⁷

¹²² MQ4FLD1610

¹²³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18.)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강 및 청결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 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¹²⁴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the Bangkok Rules), (Rule 5.) 여성 수감자 수용시설에는 여성의 특정한 위생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요리에 관여하는 여성과 임신, 모유 수유, 월경 중인 여성, 특히 어린이와 여성의 개인적인 보살핌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위생수건과 정기적인 물 공급을 포함한다.

¹²⁵ JBTG6E2120

¹²⁶ SPN4BG1900

¹²⁷ NC68X61563

교화소 같은 장기 구금시설의 경우, 구류장 등 단기 구금시설보다는 나았지만 열악한 환경은 비슷했다. 주 1회 단체 목욕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비누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수감자가 비교적 자주 씻도록 했다거나, 이불이나 옷을 햇빛에 말릴 수 있도록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¹²⁸ 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증언자는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었고, 화장지는 지급되었으나 비누와 치약 등은 면회 없는 수감자에게만 지급되었다고 증언했다.¹²⁹ 하지만, 목욕이 가능하다해도 온수가 나오지 않아 한겨울에도 찬물로 씻어야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¹³⁰ 여성 피구금자의 경우, 필요시 남성 계호원을 통해 생리대를 지급받을 수는 있었으나, 지급량이 충분치는 않았다. 생리대 지급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부족할 경우 화장지나 천을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¹³¹ 구류장, 대기실 등 단기 구금시설은 취침공간에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원활하지 않은 급수 때문에 악취가 심했다는 진술이 많았다. 다만, 일부 교화소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악취가 감소했다는 진술도 있었다.¹³²

“2018년 11월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생리를 하는 기간에는 손을 들고 계호원에게 생리대를 요청하면 생리대를 하나씩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생리대를 요청하면 귀찮았는지 없다고 하면서 주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보안서 대기실에서는) 약 6m×4m 정도 크기의 방안에 30명이 함께 생활해서 매우 비좁았습니다. 방안에는 변기가 있었고, 잘 때 매우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¹³³

질 낮은 보건의료 서비스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피구금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피구금자처우규칙」은 피구금자에게

¹²⁸ NEHTD00763

¹²⁹ SPN4BG1900

¹³⁰ JUZ0TT2362

¹³¹ ZO70321252

¹³² 1JU8U71993, SPN4BG1900

¹³³ ZO70321252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피구금자는 사회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법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³⁴ 그러나, 북한에서는 작업 중 피구금자가 다치거나 기관원의 폭행 등으로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구류장 등 임시 수감시설의 상황이 좋지 못했다. 형 집행시설 이외의 수감시설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진술은 드물었다.¹³⁵ 한 증언자는 2019년 어머니가 시·군 안전부 구류장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구금 중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¹³⁶ 반면, 형 집행시설에는 의료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결핵 등 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³⁷ 교화소 내 환자 발생 시 군의(軍醫)가 환자를 치료했다는 진술과, 의료 인력이 없어 수감자 중 경력자를 차출하여 교화소 안에서 간호사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¹³⁸

“간호원 학교를 나와 ○○진료소에 배치되어 2000년까지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17년 국제통신 단속에 걸려 ○○교화소에 입소했는데 입소 두 달 후 위생원(간호사) 일을 했습니다. 수감자들의 체온, 혈압 등을 재고 군의에게 보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허약 환자들을 집중 관리하고 하루 이상 설사를 하면 경구 수액으로 수분 보충을 하며 치료했습니다. (교화소 간부인 과장이) 교화소 내 사망자가 생기면 독방에 처넣겠다고 협박했는데, 당시 정부에서 교화소 내 사망자(발생)를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¹³⁹

¹³⁴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25.) ②보건의료 서비스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그리고 충분한 수의 심리학 및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즉, 여러 전문영역에 걸친 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을 갖춘 치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¹³⁵ 1T6JQA2112, RNK8NS0391

¹³⁶ ZYBOX42067

¹³⁷ RCGQ5R0496, SPN4BG1900

¹³⁸ J21S1A1908, 1JU8U71993

¹³⁹ J21S1A1908

구금 중 사망자 처리

구금 중 사망자 처리 절차는 교화소와 다른 구금시설 간 차이가 있었다. 교화소의 경우 일단 인근에 매장하고, 사망자 가족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사망한 피구금자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시설 인근에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⁴⁰ 교화소에서 가족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이유는 수감자가 췌장을 찢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이라고 했다.¹⁴¹ 전거리교화소(함경북도 회령시 소재)에 2017년까지 수감되었던 경험자는 수감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남성수감자들이 교화소 인근 ‘불망산’이라는 곳에서 시신을 태웠고, 사망자의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아 면회를 와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¹⁴²

반면, 노동교양대 등 다른 구금시설에서는 피구금자 중 사망자가 발생하면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고 시신도 인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교양대에서 폭행으로 사망한 수감자의 시신과 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수감자 시신이 사망 이후 가족에게 인도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¹⁴³

“(2019년 탈북 시도 혐의로 체포된) 남편이 ○○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사망한 후 2일째 되는 날 보위부에서 며느리에게 연락해 시신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진술서를 받기 전에 사람이 사망했기에, 피의자가 아니어서 시신을 돌려주었다고 들었습니다.”¹⁴⁴

(3) 피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

국제인권규범들은 피구금자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고문’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자가 정보나 자백을 얻을 목적, 협박·강요할 목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¹⁴⁰ M7EQE91399

¹⁴¹ JUZ0TT2479

¹⁴² SPN4BG1900

¹⁴³ JBTG6E2120, POSYMZ1223

¹⁴⁴ POSYMZ1223

를 말한다.¹⁴⁵ 신문(訊問)절차 등과 같이 피구금자에 대한 위반행위가 행해지기 쉬운 상황에서는 「자유권규약」 제7조에 명시된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지키기 위한 당사국의 조치가 필요하다. 「유엔 피구금자처우규칙」도 어떠한 피구금자도 고문,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식에 따르더라도 고문 등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¹⁴⁶ 또한, 피구금자의 규율위반 행위 및 징벌의 종류 등은 법률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¹⁴⁷ 규율에 따른 징벌일지라도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은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⁴⁸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구금자 대상 신문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조사방식의 하나로 구타 또는 여러 형태의 고문들이 자행되고 있었다. 한 증언자는 2019년 109연합지휘부¹⁴⁹에서 조사 받을 당시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식이 허용되지 않아,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죄를 인정했다고 진술했다.¹⁵⁰ 다른 증언자도 2019년 외부정보가 담긴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가 109상무에 의해 체포되었고, 조사를 하던 안전원이 출처를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각목으로 머리를 수 십대 가격했다고 증언했다.¹⁵¹

¹⁴⁵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1.

¹⁴⁶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1.)

¹⁴⁷ *Ibid.*, (Rule 37.) 다음 각 호는 항상 법률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a) 규율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b) 부과할 징벌의 종류 및 그 기간 (c) 그 징벌권을 갖는 기관 (d) 독방격리수용, 격리, 분리, 특수 관리시설, 구금시설 등 다른 피구금자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 구금하는 형식. 이러한 방식이 규율에 따른 징벌로 행해지거나 질서 유지 및 보안을 위해 행해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든 강제적 분리구금 형식의 이용, 검토, 도입 및 폐지를 위한 지침제정 및 절차를 포함한다. (Rule. 39.) ① 어떠한 피구금자도 제37조에서 언급된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피구금자에 대한 징벌은 공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따라야 한다. 피구금자는 동일한 행동 또는 규율위반에 대해 이중으로 징벌 받지 않아야 한다. (이하 생략)

¹⁴⁸ *Ibid.*, (Rule 43.) ① 제한 또는 규율에 따른 징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과 다른 것은 아니며, 안 된다. (이하 생략)

¹⁴⁹ ‘109연합지휘부’는 ‘109상무’, ‘109그루빠’, ‘109소조’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주민들의 비(非)사회주의적 행위 단속을 위해 중앙당,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 5개 기관에서 인력을 차출하여 만든 합동 검열 조직을 말한다. 외부정보 접촉 및 확산 방식을 목적으로 외국 영상물이나 출판물, 라디오, DVD 등에 대한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¹⁵⁰ NC68X61563

¹⁵¹ 13PN7Y2325

“저를 각자(각목)로 때렸는데, 제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갑을 찬 상태로 손을 들어 각자를 막자, 지도원이 저를 수갑을 뒤로 채운 다음 팔을 의자 등받이에 묶은 후 각자로 머리를 내리셨습니다. 그와 같은 폭행이 조사 초반 5일 내내 있었습니다. ‘비행기(자세) 고문’도 당했는데, 비행기 고문은 벽을 마주보고 선 다음 허리를 숙여 뒤통수를 벽에 붙이고 그 상태에서 양 팔을 올려 손등을 벽에 붙이도록 하는 고문입니다. 비행기 고문 중 움직이면 각자로 사정없이 온몸을 구타했습니다. 비행기 고문 자세로 2시간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종아리 뒤에 각목을 끼우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양 다리 사이를 통과하는 각목을 발로 누르는 고문도 당했습니다.”¹⁵²

자백 강요 이외에도 여행자집결소, 노동교양대 등에서는 도망치려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폭행이 가해졌는데, 도주자 발생을 막기 위해 수감자 중 반장 등을 뽑아 감시하고 이들의 폭행을 승인하기도 했다. 2019년 노동교양대에 구금되었던 여성 증언자는 교양대 기관원이 수감자 중 반장을 뽑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수감자를 폭행 하도록 시킨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¹⁵³

한편, 구금시설 내에서는 ‘고정 자세’ 또는 ‘올방 자세’라고 불리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수감자는 양반다리를 한 상태에서 두 손은 양 무릎에 올려 놓고 움직이지 못하며, 수감자 간 대화는 금지된다. 수감자가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계호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수감자 전체가 벌을 받아야 했다.¹⁵⁴ 2019년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었던 증언자는 앉은 자세에서 움직이는 수감자가 있을 때 단체로 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¹⁵⁵

¹⁵² LNR47Z0656

¹⁵³ 1ND60Q2408

¹⁵⁴ C6MTJ12185

¹⁵⁵ NJGAO40397

그림 IV-4 피구금자에 강요된 자세 (증언자 진술 바탕 재구성)



“2019년 양강도 보위부 집결소에서는 실내화를 벗어 팔뚝을 때리거나 구둣발로 차기도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몸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때려도 걸으로는 맞은 표시가 나지 않게 때립니다. 주먹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습니다. 도 보위부 집결소에서 조사 중에 맞은 것보다는 집결소 구류장에서 계호원들에게 더 많이 맞았습니다. 집결소 구류장에서는 하루 종일 고정 자세로 앉아 양손을 무릎에 올리고 있어야 하고 움직일 수 없으며 옆 사람과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구류장 쇠창살 앞으로 불러내 주먹으로 머리나 몸통을 때리거나 쇠창살에 머리를 박게 했습니다. 계호원들은 자기를 기분에 따라 때렸고 정해진 이유도 없이 때렸습니다.”¹⁵⁶

(4) 면회와 서신 제한

북한에서는 피구금자에 대한 면회, 서신교환, 물품 반입에 제한이 있었으며, 구금시설에 따라 가능 여부가 상이했다. 「유엔 피구금자처우규칙」은 구금시설에 수감된 사람에게 일정 기간마다 서신 또는 이용 가능한 통신, 전자, 디지털 및 기타 수단과 접견을 통해 가족 또는 친구와의 의사소통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⁵⁷ 하지만, 북한 내 일부 구금시설의 경우 면회 및 물품 반입이 불가능했다. 특히,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구금시설의 경우에는 면회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부 구류장에 구금되어 예심과 재판을 받은 경험자는 4개월 동안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고, 분주소 대

¹⁵⁶ 3G4XI42090

¹⁵⁷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58.) ①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친구와의 의사소통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a) 서신 또는 이용 가능한 통신, 전자, 디지털 및 기타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 (b) 접견.

기실에 사흘 동안 구금된 증언자나, 도 보위부 구금소에 석 달 넘게 구금된 증언자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¹⁵⁸

“2019년 탈북과정에서 체포되어 ○○도 보위부 구금소에서 수사 받았습니다. 당시 구금과정에서 ‘올방 자세’라고 고정된 자세로 있어야 했습니다. 목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식사는 강냉이(옥수수) 100g에 메주콩 100알 정도 먹었습니다. 이 정도의 음식을 먹고 한 달이 지나니 손톱이 뒤집어졌습니다. 출소했을 때에는 거의 영양실조에 걸리기 일보직전이었습니다. (구금되었던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면회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¹⁵⁹

표 IV - 8 북한 구금시설별 면회 및 물품 반입 가능 여부 (기록센터 조사 기준)

운영기관	집행기관(구금시설)	면회 가능 여부	물품 반입 가능 여부
사회안전성	대기실	○	○
	구류장	×	×
	비법월경자집결소	○	○
	노동단련대	○	○
	노동교화소	○	○
국가보위성	집결소	×	×
	구금소	×	×
인민위원회	노동교양대	○	○

* □ 형벌 및 행정처벌 집행시설

노동교화소, 노동교양대 등 형벌 및 행정처벌 집행시설은 면회가 그나마 가능했으며, 뇌물이 있을 경우 잦은 면회도 가능했다. 2019년경 가족이 노동교양대에 구금되었을 때, 수감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으로 가서 면회했다는 진술이 있었다.¹⁶⁰ 교화소는 수감자 면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담당 기관원에게 현금이나 담배 등 뇌물을 주면 더 자주 면회나 면식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⁶¹ 노동단련대의 면회도 교화소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¹⁵⁸ J21S1A1908, O4P71O0490, N47MDZ1549, LHB9941636

¹⁵⁹ LHB9941636

¹⁶⁰ B3QZTR2047

¹⁶¹ B3QZTR2047, P3RFM51542

(5) 분리 수용 원칙 미준수

피구금자의 수용 관련, 국제인권규범들은 미결수와 기결수, 남성과 여성, 아동과 성인의 분리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은 제10조에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은 기결수와 격리되어야 하며,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어야 함을 명시했다.¹⁶²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은 성인과 격리의 미분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과 격리되어야 한다고 했다.¹⁶³ 이외에 「유엔 피구금자처우규칙」도 남성과 여성, 민사와 형사피구금자는 분리되어 수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⁶⁴

하지만, 북한의 구금시설에서는 분리 수용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미결수와 기결수, 미성년과 성인이 분리되어 수용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성별에 따른 구분이 지켜지지 않는 구금시설도 있었다. 2019년 노동교양대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증언자는 남녀 구분 없이 같은 공간에서 취침해야 했다고 진술했다.¹⁶⁵ 형이 확정된 기결수 중 잔여 형기가 짧은 경우 구류장에서 미결수와 함께 구금되어 있다가 출소했다는 사례가 있었고, 교화소로 이송되기 전의 기결수를 미결수와 함께 구류장에 수용했다는 진술도 있었다.¹⁶⁶ 성인과 미성년자는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동’에서 다루기로 한다. (‘VI-2. 아동’ 참고) 그밖에도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형 집행시설이 존재한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시설을 목격하거나 구금을 경험한 사례는 수집되지 않았다.¹⁶⁷

¹⁶²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0(2)(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Article. 10(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¹⁶³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37(c).

¹⁶⁴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11.)

¹⁶⁵ JBTG6E2120

¹⁶⁶ O4P7100490

¹⁶⁷ W15JXU0747, P4ILM91470

“2019년 행정처벌이 결정되었고, (거주지의) 노동교양대에 수감되었습니다. 노동교양대에서는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고, 남녀가 한 공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방에서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들이 생활했습니다. 남녀의 방을 구분하는 벽도 없었습니다.”¹⁶⁸

나. 여성 피구금자 처우

인권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해야 하며, 여성 피구금자의 처우는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 존중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8호에서 피구금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평등한 조건으로 보호되어야 함을 언급하면서, 당사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여성의 경우 여성 교도관에 의해서만 감시되는지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¹⁶⁹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81조도 “여자 피구금자는 여자 직원에 의해서만 보호되고 감독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유엔은 2010년 「여성 수용자 처우 및 여성 범죄자 비구금 처우 규칙」을 채택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여성에 대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¹⁷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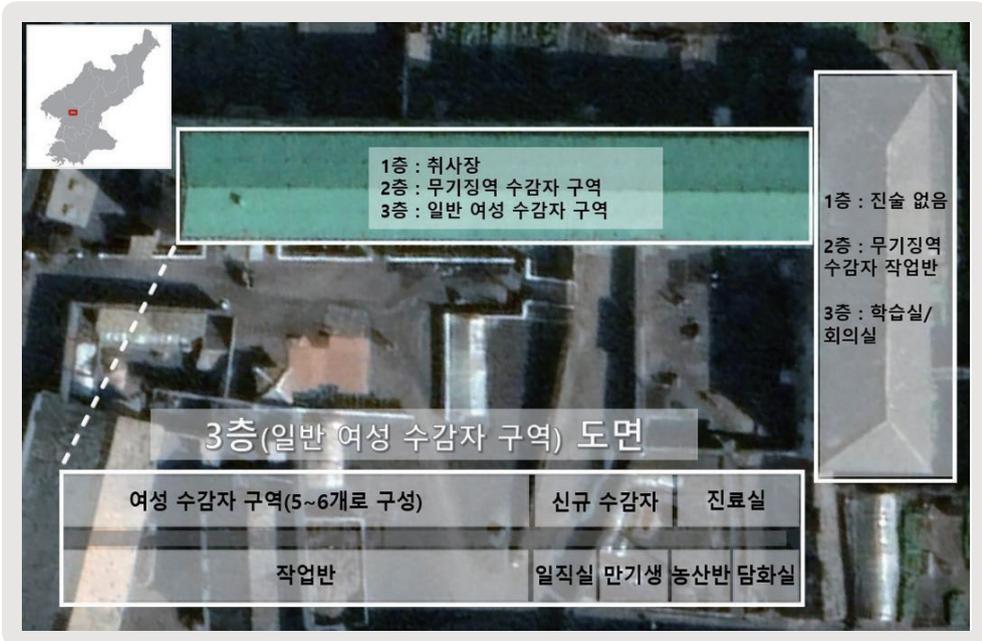
북한의 구금시설에 구금되는 여성들은 나체검사와 체강검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남성 기관원들에 의한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강제송환된 임신부의 경우 강제낙태를 종용당하기도 하는 등 여성 피구금자에 대한 권리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¹⁶⁸ JBTG6E2120

¹⁶⁹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8, Article 3: The equality of rights between men and women, para. 15.

¹⁷⁰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the Bangkok Rules)는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를 보완하여 여성 수용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성 수용자의 △건강(위생, 신체건강, 전염병 예방 등) 관리 △임신한 여성, 수유 중인 여성, 자녀동반 여성 수용자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림 IV - 5 평안남도 개천시 개천교화소 여성 수감시설 (증언자 진술 바탕 공간정보 재구성)



* (사진출처) 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m/web/>)

(1) 나체검사와 체강검사

여성 피구금자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검사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과 「유엔 여성 수용자 처우 및 여성 범죄자 비구금 처우 규칙」은 나체검사나 체강검사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며,¹⁷¹ 체강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⁷² 또, 만약 전신 탈의나 체강검사를 실시한다면,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실시해야 하고, 보건전문가 또는 의료전문가로부터 위생, 보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교육을 받은 동성(同姓)의 직원으로 검사자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⁷³

¹⁷¹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52.) ①나체수색과 체강검사와 같은 침해적 검사(intrusive searches)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교정당국은 침해적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개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침해적 검사는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교육을 받은 동성(同姓)의 직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¹⁷²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the Bangkok Rules) (Rule 20.) 침습(侵襲)적 신체검사(invasive searches)의 해로운 심리적 영향과 가능한 신체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스트립(strip) 검색과 침습적 신체검색을 대체할 수 있는 스캔과 같은 대체 선별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¹⁷³ United Nations Revised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Rule 52.) ②체강검사는 피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구금시설에서는 여성 피구금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검사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구금시설 입소 시 피구금자를 대상으로 단체로 옷을 모두 벗긴 채 신체 및 소지품을 검사하는 ‘검신’(일명 ‘알몸검사’)¹⁷⁴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탈북 후 송환된 여성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자궁검사’¹⁷⁵라고 불리는 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검사는 수감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체검사는 소지품 검사와 함께 의복 등에 있을 수 있는 위해도구를 찾아 제거하기 위함이며, 체강검사는 송환된 여성이 지니고 있을 금품 등을 찾아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 방법도 다양했는데, 대체적으로 먼저 옷가지 등을 검사한 후, 기관원이 여성의 질 내부를 살피거나 손으로 숨긴 것이 있는지 직접 확인한다. 더불어, 알몸 상태로 앉았다 일어나기를 수회에서 수십 회 반복하도록 하는, 일명 ‘뽀뽀’를 하도록 했다는 진술도 다수 있었다.¹⁷⁶

대부분의 경우, 나체·체강검사는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실시되었으며, 개별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여러 명을 동시에 실시했다. 보건·의료전문가로부터 위생, 보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실시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남성인 경우도 있었다. 2017년 강제송환 경험이 있는 증언자는 도 안전국 비법월경자집결소에서 강제송환된 여성 여러 명과 함께 알몸검사와 자궁검사를 한꺼번에 받았으며, 자궁검사는 직원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여러 명을 검사했다고 진술했다.¹⁷⁷ 도 안전국의 비법월경자집결소에 구금되었던 다른 증언자는 남성 계호원에게 자궁검사를 받았다고 했다.¹⁷⁸ 다만 일부시설에서 체강검사 시 산부인과 내진(內診) 기구를 사용한 사례, 소지품 검사와 혈액·전염병 검사를 실시한 사례 등이 드물게 수집됐다.¹⁷⁹

자의 보건의로 주책임자가 아닌 자로서 자격을 갖춘 보건전문가 또는 적어도 의료전문가로부터 위생, 보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교육을 받은 직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174 ‘알몸검사’는 피구금자를 탈의시킨 후 신체, 옷, 소지품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75 탈북민 진술에 의하면 ‘자궁검사’는 대개 탈북 후 강제송환되어 구금되는 경우 실시되는데, 구금되기 전 소지품 검사와 동반된다고 한다. 송환되는 여성들이 항문이나 질 안쪽에 숨긴 돈 등을 찾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176 PXKT6W0772, 9G37IQ1611, 5QHT3I1644

177 P3FD9U1286

178 P3FD9U1286

179 PXKT6W0772, 8E4Q2W1478

“2018년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 간 첫날에 여자 보위원이 ‘알몸검사’와 ‘자궁검사’를 했습니다. 여자 보위원이 손에 비닐을 감아 자궁에 손을 넣어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벌려 땀뿜기를 20번 시켰습니다. 알몸검사는 다 벗기고 가슴을 만져봤습니다. 제가 처음 겪는 일이었고,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¹⁸⁰

(2) 성폭력

북한 구금시설에서의 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폭력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구금시설에서의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은 시설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으며, 가해자 및 가해 장소 역시 다양했다. 구금을 경험한 여성 탈북민 중에는 구금시설의 계호원이나 기관원에 의해 반복적으로 성폭행이나,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경우도 있었다.¹⁸¹

“2017년 ○○시 구류장에 있을 때, 다른 감방에 ○○○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기관원들이 철창 안으로 손을 넣어서 그 여성의 몸을 만지고, 저녁이면 데리고 나가서 성폭행 한 후에 면식 같은 것을 넣어준다고 들었습니다.”¹⁸²

“2015년 양강도 혜산시 보안서 계호원 중 ○○○이라는 사람은 수감자 중 젊거나, 얼굴이 예쁜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자리를 감방의 앞쪽인 철창살 앞쪽으로 배치합니다. ○○○은 취침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수감자를 깨워놓고는 수감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손을 철창 안으로 넣고 수감자의 신체의 일부(주로 가슴)를 강제로 만지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 2016년 즈음 양강도 혜산시 보안서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을 당시 ○○○이 수감자를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¹⁸³

¹⁸⁰ 9G37/Q1611

¹⁸¹ QGJZGD0048

¹⁸² Z4F5JE2331

¹⁸³ 38WLD50542

구금시설에서의 성폭력은 대부분 가해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구금 상태의 여성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피해 여성들은 구금 기간 중 받을 수 있는 피해 등을 우려하여 수감시설에 알릴 수 없었다. 한 여성 증언자는 2015년 비법월경자집결소의 간부가 사무실에서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¹⁸⁴ 복송 경험이 있는 다른 증언자도 집결소장이 수감자를 따로 불러내 성폭행한 것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경우는 동일인이 동일기관에서 여러 수감자에 대하여 가해한 사례였다.

“2015년 복송되어 ○○시 보안서 집결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친하게 지내던 ○○○이 자신이 집결소장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저에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은 울면서 죽고 싶다고 하며, 소장이 저녁마다 자신을 불러서 성폭행을 가한다고 했습니다. ○○○은 일과 중 노동을 마치고 감방으로 돌아온 후 저녁마다 (집결소장 방으로) 불러나갔었고 돌아와서는 많이 울었습니다. 저녁에 수감자들을 감방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집결소장 밖에 없습니다. ○○○ 이외에 다른 수감자 몇 명도 ○○○처럼 불러나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¹⁸⁵

(3) 강제낙태

구금시설에 임신한 상태로 수감된 여성은 구금 중 강제적으로 낙태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낙태 대상은 대부분 탈북 후 강제송환된 여성이었고, 중국 체류 시 중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경우였다. 탈북과 강제송환이 증가하던 199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경우 강제적으로 낙태를 한 후 처벌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함경북도의 시·군 단위 종합진료소 근무 경험자 증언이나, 인민병원 간호사의 임신여성 낙태수술 등 관련 진술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¹⁸⁶ 강제낙태는 강제송환 과정 중 비법월경자집결소인 접경지역의 도 안전국이나 보위부 조사단계에서 주로 행해진다. 관련기관 근무자에 따르면 중국에서 임신한 상태로 강제송환되는 여성은 송환 직후 낙태를 실시한 뒤, 등록된 거주지로 이송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며 임신

¹⁸⁴ 6T5MFA1385

¹⁸⁵ TZURKG1073

¹⁸⁶ 8Z87U61305, Q8799U0026, TB5CFI0524

개월 수는 낙태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다.¹⁸⁷

낙태수술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부분 구금시설 인근 병원이었으며, 구금시설 소속 군의(軍醫)가 동행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 진술이 수집되었는데, 2014년 중국에서 송환된 여성 증언자는, 임신 8개월인 강제송환 여성 수감자가 낙태수술을 받고 돌아온 것을 목격했으며, 비법월경자집결소 군의가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서 수술을 받게 했다고 진술했다.¹⁸⁸ 임신 3개월 차의 임신부가 외부 병원에서 강제낙태 당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2017년 함께 복송되어 온 임신 3개월 차의 임신부가 있었습니다. 양강도 출신으로 탈북한지 1년이 안된 시기에 복송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임신 3개월 차였습니다. 외부 병원에서 낙태를 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석방된 이후 그 여성을 만나 당시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¹⁸⁹

(4) 임신부 체포와 구금

북한에서 일반 범죄의 경우 구금된 임신부에 대한 형 집행중지 등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여성 수용자 처우 및 여성 범죄자 비구금 처우 규칙」은 임신부와 부양할 자녀가 있는 여성은 비구금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⁹⁰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도 출산 전후 구류·구속 처분 및 형벌 집행을 중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¹⁹¹ 구금 경험이 있는 증언자는 안전부 구류장에 같이 수감된 임신부가 임신 7개월 이전에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로 수사와 예심을 받고 있다가, 구류·구속 금지사유인 임신 7개월이 되자 석방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¹⁹²

¹⁸⁷ VKSV8S0237

¹⁸⁸ WNGXGW0373

¹⁸⁹ 8E4Q2W1478

¹⁹⁰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the Bangkok Rules), (Rule 64.) 임신한 여성과 부양할 자녀가 있는 여성.

¹⁹¹ 「형사소송법」(2021) 제175조 (체포, 구류의 구속처분의 사유) 임신한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는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2021) 제427조 (형벌집행의 중지사유)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 집행을 중지한다.

¹⁹² KOXTLT0825

하지만, 강제복송 및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의 경우에는 임신부라도 관련 규정대로 형 집행정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도 보위국에서 임신 4개월의 아내를 체포한 후 구류·구속했고, 임신 7개월 정도가 되었을 무렵 담당 보위원으로부터 아내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북한에서 중국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을 도강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도 보위부 집결소에서 보위지도원들로 보이는 사람 5명이 집에 들이닥쳐 다짜고 짜 아내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도 보위부 집결소장과 보위지도원 4명이 아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온 뒤에 수색영장 같은 것도 없이 저희 집을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색을 마치고 집결소장이 저에게 “아내가 임신을 했느냐?”고 물었고, 당시 아내가 임신 4개월이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임신 중이 맞다.”라고 대답하였더니 “알았다.”고 하고 다시 아내를 태우고 집결소로 돌아갔습니다. 2015년 ○○군 보위부 지도원이 저희 집에 와서 알려주기를 아내가 관리소에 끌려갔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¹⁹³

다. 피구금자 처우 개선

구금 환경의 열악함과 피구금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는 구금 경험을 가진 증언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아직까지 북한 내 구금 환경이 현격하게 개선되고, 가혹행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와 시설 개선 등의 조치가 있었다. 이는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이 일부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구금자 처우를 개선하라는 당국의 방침이 하달되었고, 구금시설에서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경 구금시설 수감자 처우와 관련하여 ‘인권유린을 없앨 데에 대한 방침’이 자주 하달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하달된 방침의 내용은 ‘교화소 사망자와 허약자를 없애라.’, ‘과제나 계획을 못해도 처벌하지 말라.’, ‘구타·몰아주기(따돌림)를 하지 말라.’ 등이었다. 방침 하달 이후 교화소 안에서 영양이 부족

193 8M0JQD0047

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죽, 콩비지, 부식 등이 따로 지급되기도 했다고 한다.¹⁹⁴ 지역 보안서 구류장에 근무하는 계호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유린 금지 등의 내용을 교육을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함경북도 ○○군 보안서 구류장에서는) 통상 한 달에 한두 번, 방침이 내려올 때마다 예심과 비서나 예심과장이 계호원들을 불러 놓고 교양을 했습니다. 교양 내용은 ‘인권유린을 하지 마라’, ‘비계 급적인 행위를 하지 마라’, ‘면식·면회를 몰래 허용해 주지 마라’는 내용 등이었습니다.”¹⁹⁵

실제 구금시설의 환경이 개선되었다거나, 피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줄었다는 진술들이 수집됐다. 2016년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되어 여러 기관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여성 증언자는 당시 수감되었던 무산군 보위부 구금시설의 화장실 시설이 수세식 변기로 개선되어 악취가 나지 않았고, 새로 건설된 목욕탕에서 수감자들이 매일 씻을 수 있도록 권장했다고 진술했다.¹⁹⁶ 수감자에 대한 대우도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수감자들은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숙인채로 이동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정이 있었는데, 2017년 전후로는 머리만 살짝 숙이고 이동하도록 바뀌었으며, 조사 중 ‘족쇄’(수갑)도 채우지 않도록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¹⁹⁷

“북한 당국이 유엔의 권고를 받아 (목욕탕 신설 등) 수감시설 내 위생시설을 개선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군 보위부 외에도 무산군 보안서, 청진집결소, 신의주시 안전부, 노동단련대까지 모두 화장실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물을 내리는 변기가 들어와 있어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원들이 수감자들에게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통제했습니다. 모든 수감시설에서는 수감자들을 매일 씻도록 권고했고, 자유롭게 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누 등도 제공되었습니다.”¹⁹⁸

¹⁹⁴ SPN4BG1900

¹⁹⁵ 1T6JQA2112

¹⁹⁶ MQ4FLD1610

¹⁹⁷ SPN4BG1900

¹⁹⁸ MQ4FLD1610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폭행 등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수 증언자들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했다. 한 증언자는 2018년경 시 보위부에서 조사 말미에 “조사기간 중 인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¹⁹⁹ 다른 증언자는 2019년, 안전부나 보위부에서 조사할 때 폭행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²⁰⁰

드물었지만 인권 침해 가해자인 기관원에게 피구금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처벌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2019년경 노동교양대 수감자 중 다른 수감자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던 반장이 수감자 중 한 명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노동교양대 대장이 직위 해제되고 대기실에 구금된 일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²⁰¹ 또한, 이례적인 사례로 구역 보위부에서 면담 중 폭행을 당한 주민의 ‘신소’로 가해 보위원에 대한 검열이 있었고 중앙의 상급기관에서 피해자를 위로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²⁰²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도 가혹행위자 처벌 등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친하게 지내던 (구금소) 보위원이 있었는데 집에 와서는 ‘유엔에서 이번에 북한이 인권 때문에 많이 두드려 맞았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인권에 대해 조금 신경 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2017년 즈음 국가보위성에서 구금소 보위원들을 감찰했습니다. 국가보위성에서 나왔다는 사람들(남성 2명)이 구금소 구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금 당시 폭행 등을 당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면담 이후 폭행을 가했다는 진술이 나온 3명 정도의 구금소 보위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되고 보위부 내 공개비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²⁰³

구금시설 기관원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 대한 피구금자 인권 개선 선전도 진행됐다. 2015년경부터는 이전에 비해 구금시설 개선과 피구금자 처우에 대해 언급이 많아졌

¹⁹⁹ T9KKSL1913

²⁰⁰ 1T6JQA2112

²⁰¹ JBTG6E2120

²⁰² LE40891836

²⁰³ 2E54YT2145

고, 당국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 사이에서도 자주 회자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9년 탈북한 여성 증언자는 “(당국이) 피구금자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선의 법관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니 그러한 법관들이 있다면 신소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또한, 여맹 등의 강연회에서도 인권 중시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²⁰⁴ 하지만, 당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감자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이전에 비해 조금 개선된 것이라는 진술도 있었다.²⁰⁵

²⁰⁴ 3H8QNO1342

²⁰⁵ QYAK5N0310

5.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

자유롭게 이동하고 원하는 곳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3조에서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동과 거주에 대한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자유권규약」 제12조에서도 국내에서의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와 함께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사회주의헌법」 제75조에서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이동 및 거주에 대한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²⁰⁶

표 IV-9 「자유권규약」과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

「자유권규약」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 (관련 목차)
제12조	제1항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가 이동의 자유 제한 나 거주에 대한 자유 제한
	제2항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느 나라에서도 자유로이 출입국할 수 있다.	다 출입국의 제한
	제3항	위에 언급된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그 밖의 권리와 부합하는 제한을 제외하고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공통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
	제4항	어느 누구도 자국으로 입국할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	다 출입국의 제한

하지만, 실제로 북한 당국은 여행허가제도, 숙박등록제도, 거주지 제한, 강제추방, 국경 통제 등 각종 제도와 공권력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과 거주에 대한 자유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폐쇄성에 기반한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 주민들이 이동·거주에 대한 자유를 온전히 향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6 '이동 및 거주에 대한 자유' 관련 조항인 제75조는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시 추가됐다.

가. 이동의 자유 제한

북한 주민들은 북한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여행증명서’(이하 ‘여행증’) 발급, 숙박등록 등 제도를 통해 주민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개별법규를 통해 이를 단속하고 위반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제12조 제1항)한 「자유권규약」에 위배된다.

(1) 여행허가제도

여행증 발급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시·도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었고, 이동할 경우에도 ‘공민증’이라 불리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했다. 거주 시·도의 경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발급한 여행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했다. 「인민보안단속법」, 「행정처벌법」은 여행 질서 위반 행위의 단속과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 부과를 명기하고 있다.²⁰⁷ 당국의 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이동하다 적발된 주민들은 처벌 대상이 됐다.

합법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정보기관(국가보위성), 보안기관(사회안전성)의 심사를 거쳐 여행증을 받아야 했다. 여행증은 해당 지역의 보안서에서 발급했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상기 기관의 ‘2부(二部, Second Division)’에서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 근무자의 경우, 기업소 행정책임자와 기업소 담당 보위원, 안전원 등을 거쳐 2부에서 여행증을 발급했다. 일반주민의 경우에는 인민반장, 동사무소, 담당 보위원, 안전부를 거쳐야 여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²⁰⁸

²⁰⁷ 「인민보안단속법」(2007) 제30조 (여행질서, 걸어나는 질서위반행위) 인민보안기관은 여행질서, 걸어나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

「행정처벌법」(2021) 제299조 (여행질서 위반행위) 여행질서를 어긴 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²⁰⁸ GKONIC1394

그림 IV-6 이동·거주의 자유 관련 북한의 각종 증명서



* (자료출처) MBC(2015.8.), RFA(2019.5.), 데일리NK(2023.11.)

여행증 발급을 위해서는 통상 뇌물이 필요했고, 뇌물 공여가 일상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이를 합법적인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식절차를 통해 여행증을 발급받을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발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절차도 번거로웠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는 것이 주민들 사이에 당연시되고 있었다.²⁰⁹ 특히, 여행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2부 안전원에 대한 뇌물 제공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²¹⁰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행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열흘 이상이 소요되었지만, 돈이나 담배 등 뇌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도 가능했다는 진술이 있었다.²¹¹ 뇌물 공여를 합법적 발급비용으로 알고 있었다는 한 증언자는 2015년경 평양 방문을 위해 여행증을 발급받았는데, 100위안을 지급하면 즉시 발급되었고, 50위안을 지급하면 며칠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었다고 했다. 또한, 평양 이외 지역의 경우에는 10~20위안만 지불하면 여행증 발급이 가능했다고 진술했다.²¹²

북한 당국은 평양시, 나선시, 국경 및 전방 지역의 경우 여행증 발급을 더욱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 여행증의 경우 승인번호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²¹³ 일반 지역의 경우 2부 과장 책임으로 여행증 발급이 가능했으나, 평양시, 금호지구²¹⁴ 등 제한구역 방

²⁰⁹ SJ5D370990, JUZ0TT2380, MNH2KG2026

²¹⁰ I9IMQL0545, BOBIYN2133

²¹¹ MNH2KG2026, 8CWCD32231, L99N7A2142, BOBIYN2133

²¹² XTDWPE1659

²¹³ 과거 나진선봉 지역(現 나선시)은 사회안전부 2부가 아닌 보위부에서 여행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여행증 발급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일부 증언자들의 진술도 있다. (XTDWPE1659)

²¹⁴ ‘금호지구’는 現 ‘함경남도 금호군’으로, 북한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위해 1995년 함경

문을 위해서는 안전부장의 결재를 받아 제한구역 시·군에 문건을 보낸 후, 승인번호를 받아야 여행증 발급이 가능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한 증언자는 이런 이유로 제한구역의 경우, 요구하는 뇌물 비용도 일반 지역에 비해 더욱 컸다고 했다.²¹⁵

“2016년경 동(洞) 지도원들이나 2부 지도원을 찾아가 고급담배 한 갑을 주면 일반증명서를 떼 주었습니다. 일반증명서는 국경과 평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갈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평양 시내를 가려면 고급담배 한 보루를 뇌물로 주어야 했습니다.”²¹⁶

한편, 국경지역의 경우 이동하기 위해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동의 자유가 더욱 제한되기도 했다. 거주지 시·도 안에서 이동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민증만 소지하면 되었지만, 국경지역에서는 공민증 이외에 ‘외출확인증’도 필요했다. 외출확인증에는 인민반장의 확인도장과 동사무소장의 확인도장이 있어야 했고 방문 장소와 날짜, 용무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했다.²¹⁷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생업을 위해 다른 지역에 나가있던 사람들을 복귀시켰으며, 전염병 확산 차단을 이유로 거주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기도 했다.²¹⁸

여행증 단속

주요 구간 지역별 초소나 열차 등에서 당국의 여행증 소지 여부 단속이 있었으나, 주민들은 대부분 뇌물로 이를 무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이동 중 여행증 미소지로 적발되었을 때나, 단속을 앞두고 있을 때 모두 뇌물을 통한 해결

남도 신포시 일부 지역을 도(道) 직할 행정구역으로 분리하여 ‘금호지구’를 신설한 바 있다. 이후 경수로 건설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금호군으로 승격된 것으로 추정된다.

²¹⁵ I9IMQL0545

²¹⁶ 00RIT62460

²¹⁷ 2EQR9S2134

²¹⁸ UYSKRB2399, DGAE7C0806

이 가능했다.²¹⁹ 여행증 미소지로 적발되면 공민증을 압수당했지만, 뇌물을 주면 분주소에서 공민증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²²⁰ 한 증언자는 2018년 여행증 없이 평양에서 평안남도로 이동하던 중, 10호 초소에서 단속이 있었는데 검열 전 초소장에게 50달러를 주고 검문을 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²²¹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뇌물을 주고 여행증 없이 거주지 이외 지역을 오가며 장사를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 증언자는 50번 정도 단속에 적발되었으나, 초소 기관원이나 안전원에게 소지한 물건의 1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풀려났다고 했다.²²²

여행증 단속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북한 당국은 여행증 검사를 빌미로 주민들에 대한 몸수색, 소지품 검사 등을 했으며, 여행증 미소지나 다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체포나 구금을 하기도 했다.²²³ 한 증언자는 여행증 없이 이동 중 적발되었는데,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남한에 거주 중인 아버지 주소가 적힌 종이쪽지가 발견되어 구금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여행증 미소지 및 국경비법출입죄’를 이유로 노동교양처벌을 받았다고 했다.²²⁴

(2) 숙박등록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이동 통제는 여행을 출발할 때뿐만 아니라, 여행자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계속된다. 자택에 다른 사람을 숙박시키기 위해서는 인민반장과 담당 보안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²²⁵ 여행증을 발급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주민은 숙박등록 대상이 되며, 미등록 시에는 처벌 대상이 됐다.²²⁶ 뇌물 등을 통해 여행증 없이 해당 지역에 들어왔다고 해도 숙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인민반의 감시·신고와 안전원의 단

²¹⁹ 13PN7Y2325, 2E54YT2145, 87YFN32212, DFFYXV2475

²²⁰ E4MJ0I2167, 1NR82V2474

²²¹ JH41EW2327

²²² TEIEJA2400

²²³ MQ4FLD1610, 3GBYPH0381

²²⁴ LSOSUR0981

²²⁵ 「주민행정법」(2010) 제32조 (숙박질서) 주민은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을 숙박시키려 할 경우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²²⁶ 93VI9U2481

속을 통해 언제든지 체포되거나 처벌될 수 있었다.²²⁷

숙박등록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확인을 거쳐야 했다. 방문자가 도착지에서 묵을 숙소를 정하면, 숙소 인민반장의 집을 찾아가서 인민반장이 소지하고 있는 ‘숙박등록부’에 이름, 생년월일, 소속직장, 방문 목적 등을 적고, ‘분주소’(인민보안소) 담당 당직관에게 공인받아야 했다.²²⁸ 2023년까지 자택 방문자가 많아 숙박등록을 자주 경험했다는 증언자는 인민반장 서명, 담당 안전원 공민증 확인, 등록부 등록 등 매 단계마다 숙소 세대원이 방문자와 동행해야 했다고 진술했다.²²⁹

나. 거주자의 자유 제한

(1) 거주지 이전의 제한

북한 주민들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북한에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긴 처리기간을 거쳐야 했으며, 기관원이 뇌물상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북한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퇴거등록신청서’와 ‘거주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인민보안기관에 제출해야 한다.²³⁰ 이러한 거주지 이전 절차는 매우 복잡했으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이 담당자들을 찾아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³¹ 증언자들은 뇌물을 주지 않으면 해당기관에서 거주등록이나 퇴거등록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²³²

²²⁷ 1ND60Q2408, SF33KT2347, HTRWHQ1995

²²⁸ UBWCTO2335, 34AC2O1555, RI65MV1293, DFFYXV2451, ROD6PD2469, JUZO2TT2455

²²⁹ TGCAEV2403

²³⁰ 「공민등록법」(2015) 제4조 (공민의 거주등록) 공민은 살고 있는 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거주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 날(출생일), 난 곳(출생지), 사는 곳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4조 (퇴거등록)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공민은 퇴거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등록신청서를 거주 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내야 한다. 퇴거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 날, 난 곳, 사는 곳, 퇴거하여 가는 곳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²³¹ NEBFG20887

²³² NWIGN01911, WD1LN61349, WD1LN61349, N4NJLX1425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안소로 가서 ‘거주 퇴거 신청서’를 구입합니다. 장당 복한 돈으로 500원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민반장에게 찾아가 ‘다른 동으로 가겠다.’고 신고합니다. 그러면 인민반장이 도장을 찍어주고,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 공인명판’을 받고, 그 후 다시 보안소 내 담당 보안원 사무실로 찾아가 보안원에게 신고하고 보안원의 도장을 받은 후 담당 보위지도원을 찾아가 신고하고, 보위지도원의 도장을 받습니다. 그 후 이전할 곳의 보안소로 가서 도장들이 찍힌 신청서를 담당 보안원에게 제출합니다. 그 보안원이 신청서를 보관하고 주민등록 대장에 ‘아무개가 여기로 이전하러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보위지도원을 찾아가 ‘제가 지금 왔습니다.’라고 신고합니다. 인민반장이나 보안원, 보위원을 찾아 갔을 때 없는 경우가 있어 다시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²³³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국경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승인이 더욱 어려웠고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국경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몹시 어렵다고 했는데, 국경지역 출신이라 해도 한번 퇴거했다면 되돌아가는 것은 힘들었다. 다시 국경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 지역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담당 보안원에게 2,000~3,000달러의 뇌물을 주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다.²³⁴ 특정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해당기관의 승인 거부로 거주 등록에만 6개월 이상 걸렸다는 증언도 있었다.²³⁵

“2019년 직장이 있는 ○○군으로 거주지를 옮기려고 신청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원래 거주지였던 □□군 보안서 주민등록과를 찾아가 □□군에서 ○○군으로 거주지 이전 신청을 하였는데, ‘○○군은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평양에서 승인을 받은 문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계 기관의 기관원들에게 뇌물까지 주었으나, 거주지 이전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뇌물의 금액이 적어서 (승인)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²³⁶

²³³ NEBFG20887

²³⁴ 8GW6CX1527

²³⁵ LE40891836

²³⁶ 2ITQJ51282

다른 지역에서 평양시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은 특히 어려웠는데, 북한 당국은 평양 안에서도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누어 거주 자격을 제한하는 등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었다.²³⁷ 증언에 따르면 평양시 ‘입사증’(살림집 이용허가증) 취득을 위해서는 최대 13개의 확인 도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²³⁸ 또한, 평양시 거주대상인 지 여부와 중심지역 거주 가능 여부, 그리고 ‘1선도로’(주요간선도로) 주변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당국의 추가적인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했다.²³⁹ 돈으로 평양시내 주택의 입사증을 사지 못했다고 해도, 평양시민과 결혼을 하거나, 평양에서 활동하는 예술단, 주요 체육단에 소속되는 경우에는 평양 거주 가능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으로 평양에 들어오려면, 돈이 많으면 됩니다. 중앙당 8부와 인민보안성(現 사회안전성)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200㎡(건물의) 건설권을 30만 달러 정도에 파는데, 그것을 사면 국가에 돈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평양시 거주가 됩니다. 또 여성은 (평양 남자와) 결혼을 하여 거주할 수 있고, 운동을 잘해서 4.25체육단, 압록강체육단(인민보안성 소속)에 들어가는 경우 평양에 살 수 있습니다.”²⁴⁰

그림 IV-7 북한 매체의 입주 관련 보도



* (자료출처) 노동신문(2023.7.23./ 2022.4.14.)

237 실제로 북한 당국은 「평양시관리법」(2014)을 통해 ‘평양시의 영역은 수도의 행정권이 행사되는 지역으로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눈다.’(제7조), ‘지방에서 평양시에, 주변지역에서 중심지역에 거주하려는 공민은 해당 기관의 거주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1조)라고 규정함으로써 평양시에서의 거주 자유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238 YKDSNY2213

239 55IV3I2260, EJRHLJ2244, 1BOIH12246, HOZO5X1222, DEJ6ST2342

240 YKDSNY2213

(2) 강제추방

북한 주민들이 통상 ‘추방’이라고 부르는 ‘강제추방’은 처벌적 성격이 강한 조치로서, 당국에 의해 거주 지역에서 강제로 퇴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동 및 거주 자유에 대한 권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적 이전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다.”고 평가한 자유권위원회 해석에 배치된다.²⁴¹ 종합된 증언에 따르면, 강제추방은 남한 정보 접촉, 마약 밀매, 말반동, 탈북 시도, 정치적 이유 등을 이유로 2022년에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⁴² 강제추방은 당국이 대상자의 현 거주지 살림집 이용허가를 취소·박탈하고 강제추방하려는 지역에 주거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자는 물론 가족 모두가 함께 추방된다.

강제추방은 법질서 위반 책임을 가족구성원 전체에게 부과하는 연좌제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실상 거주 제한을 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식량권까지 위협하는 조치이다. 추방되는 곳이 대부분 탄광이나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추방 대상자 자녀들은 추방지에서 부모와 동일한 직장과 거주지를 대물림하여 배정받게 된다.²⁴³ 한 증언자는 2017년에 친구의 아버지가 장성택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친구가 대학에서 강제로 퇴학당하고 가족과 함께 강제추방되었다고 했다.²⁴⁴ 2018년경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109연합지휘부에 발각되어 노동교화형 3년을 받고 교화소로 수감된 마을 주민의 가족들이 농촌 지역으로 강제추방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진술도 있었다.²⁴⁵ 강제추방지는 척박한 농촌 지역인 경우가 많아, 추방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증언도 수집됐다.²⁴⁶

²⁴¹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7: Article 12 (Freedom of Movement).”, para. 7.

²⁴² TEIEJA2400, N4XFMT1979, 1J9VEU1801, ETRLM22255, P3RFM51542, OWTG6L2284, F1IZC41525, UL82VT1322, ZX8HAH0831, 7841ZMI314, KDRFCPO894, B94PPM0841

²⁴³ R0D6PD2463, 3E7GSG2222, APIKFX1885

²⁴⁴ DDL5221833

²⁴⁵ NW1GN01911

²⁴⁶ BOBIYN2133, S7UIML2223

다. 출입국의 제한

(1) 서류발급 제한

북한은 「자유권규약」 당사국으로서 주민 대상 여권 발급, 기간 연장 등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실제 북한에서 출입국 서류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다. 여권 등 출입국증명서²⁴⁷의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는 복잡했고, 제한사항이 많았으며,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었다. 또한, 신청자의 연령, 결혼 여부, 가족 관계 등이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조건이었다는 증언들도 있었다.²⁴⁸ 북한에서 이를 해결하고 합법적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적지 않은 뇌물이 필요했다.²⁴⁹

“여권 발급 기준은 성별 제한은 없는데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선(북한)에 가족이 있어야 하고 결혼해 자식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나이도 해당되지 않았지만 돈을 많이 써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민반장 등의 보증 수표(서명)를 받을 때마다 미화 50달러를 지급하였고, 시보위부 외사지도원에게 300달러, 도 보위부 외사지도원에게는 7,000달러를 지불했습니다.”²⁵⁰

일반적인 출입국뿐만 아니라, 해외(주로 중국) 거주 가족·친지 방문 목적으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추가 서류 제출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중국 거주 친척 방문을 위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거주지, 기업소, 당 조직 등 보증인들의 서명이 필요했다.²⁵¹ 2016년부터는 중국 측 요구로 중국에서 온 초청장과 초청편지, 중국 친척의 신분증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했다. 중국 친척 방문을 목적으로 여권을 받은 후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중국 방문이 잦은 양강도 주민의 경우에는 중국 친척 방문 목적의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²⁵² 중국 국적의 화교와

²⁴⁷ 「출입국법」(2013) 제2조 (정의) 3. 출입국증명서란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와 사증 같은 것을 말한다.

²⁴⁸ FHY7DN2059, 2YZE5I1994, 80X2651147, 4F6KHY1231, 80X2651147, SHS6WT0708

²⁴⁹ 2YZE5I1994, FHY7DN2059, IGBNJK0845, 55IV3I2260, 80X2651147, LOVCO90959, XYTY151917, 4F6KHY1231, WDO6N01082

²⁵⁰ TZURKG1073

²⁵¹ 거주지 인민반장·담당 안전원·담당 보위원, 기업소 지배인·당비서·담당 안전원, 그리고 시·군당 조직부 지도원, 시·군 안전부 담당 안전원, 시·군 보위부장의 서명 등이 필요했다. (80X2651147, RI65MV1293)

²⁵² 80X2651147, 2YZE5I1994, LOVCO90959, FHY7DN2059, 4F6KHY1231

결혼한 주민이 중국 방문 목적으로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적지 않은 뇌물이 필요했다. 이 경우, 당국의 국외 방문 횟수 제한으로 여권 유효기간(3~5년) 내에는 재방문이 어려웠다.²⁵³

(2) 국경 통제

북한 당국은 여권, 출입국증명서 발급을 통한 제도적 통제 이외에도 국경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국경 출입을 강력히 차단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출입국증명서 없이 국경을 넘는 것이 적발된 경우 ‘국경비법출입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²⁵⁴ 국경에는 철조망과 감시장비를 설치했고, 국경경비대원이 국경을 넘는 주민에게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기록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국경 통제는 점차 강화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과 생활고로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이 급증했고,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국경 통제가 보다 엄중해졌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국경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철조망에 전기가 흐르게 했으며, CCTV를 설치하는 등 통제를 강화했다.²⁵⁵ 2019년 국경경비대 근무 경험이 있는 증언자는 국경지역 잠복근무 당시 철조망을 따라 지상 10m까지 ‘폭죽’이 솟구칠 정도로 강력한 폭죽형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했다. 또한, 국경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철조망을 따라 못판과 유리조각이 깔려있었으며, 함정도 있었다고 진술했다.²⁵⁶ 국경경비대원이 도강(渡江) 시도 주민을 발견한 경우 총격을 가했고, 총격 과정에서 도강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다수의 진술이 수집됐다.²⁵⁷ 심지어, 중국으로 건너간 경우라도 국경경비대원이 중국까지 따라가 체포했다는 증언도 있었다.²⁵⁸

²⁵³ NXR5TP1105

²⁵⁴ 「형법」(2022) 제260조 (국경비법출입죄) 국경을 비법적으로 출입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경을 비법적으로 출입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²⁵⁵ DUZC621126, VT4QOR1433, N2XFFG1377, 2O4G6G1011, RF9VT21010, AV82RI0340, 0WQVLA0773, 710LYQ1388, 3Z6U6Q0410, 4NBSJ30408, Q71NPK0375, 1XB2XP0186, MOFW7W0379, 9GX68D1173

²⁵⁶ HGJC251956

²⁵⁷ 1SDL22137, UPBU3Q2089, TFHDP41618, 2EQR9S2134

²⁵⁸ 87YFN32212, CZEPGU2138, 1LB8GF1470, EN35871366

그림 IV-8 중국-북한 국경 통문 및 철조망



황금평 중-북 국경 통문 (평북 신도, 2018.6.)



중-북 국경 북측 통문 및 철조망 (자강 만포, 2017.11.)

* (자료출처) 통일부

하지만, 북한 내부의 열악한 환경과 부패에 따라 국경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 전기 부족으로 철조망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구간이 더 많았고, 설치된 되어있었지만 작동하지 않는 감시카메라가 많았다는 진술이 있었다.²⁵⁹ 다수 증언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속칭 국경경비대원의 ‘카바(도움)’를 받고 탈북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했다.²⁶⁰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북한 당국의 국경 통제는 더욱 강화됐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20년 1월 초까지만 해도 큰 어려움 없이 탈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⁶¹ 하지만 1월 중순 이후, 북한 당국은 방역을 위해 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고, 특히 접경지역을 봉쇄함으로써 출입국을 모두 차단했다. 군인들을 국경·해안·전연(전방, 남북접경지역) 지역에 추가로 배치하여 출입을 완전히 봉쇄하도록 했다. 군인들은 실탄을 장착하고 경계근무에 투입됐으며, 이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던 철조망 구간에도 고압 전류가 흘러 주민들의 국경출입을 차단했다.²⁶² (‘II-4. 코로나19’ 참고)

²⁵⁹ 2EQR9S2134, DBZIQP2152, 2M6K2I1904, P5VXUG1939, 7XXJ8I1937, 5D2YK90685, FNC9SL0409, MOFW7W0379, P20TIO1107

²⁶⁰ BX3AHU1909, 2EQR9S2134, DBZIQP2152, UPBU3Q2089, G826H31621, H904R61479, MLKH5C1222, P767JN1271, AWQ1RI1386, GAEBNF1170, AXNPOZ0474, 710LYQ1388, 1BX4NN0758, 9GX68D1173, 0BPBA22149, IGGGLG52071, 69WU5G2074

²⁶¹ 4NR0J62128

²⁶² OTP8Z62291

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은 정의를 실현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인권 보호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자유권규약」 제14조는 재판 앞에서의 평등 및 사법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서는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표 IV - 10 「자유권규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관련 목차)
제14조	제1항	<p>가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 침해</p> <p>나 당에 의한 법원 통제</p> <p>다 재판 공개의 자의적 결정</p>
	제2항	<p>라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p>
	제3항	<p>마 피고인 권리 보장 미흡</p>

「자유권규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관련 목차)
제14조	제5항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유죄판결 및 형의 선고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법률에 따라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항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고, 추후에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로 인해 오심이 있었음이 결정적으로 입증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사면을 받았을 경우, 유죄판결의 결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적시에 공개되지 않은 점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바 형식적 상소제도
		사 주장뿐만 형사보상청구권

그러나, 북한에서는 재판의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상소권 등 피고인의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형사보상청구권’ 등의 법규는 공개된 북한 법령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당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처벌을 받았더라도 추후 피해보상을 받을 방안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북한에서는 행정기관에서 형사적 성격의 제재인 ‘노동교양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유권규약」이 명시하고 있는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 「자유권규약」은 제14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형사상의 죄를 정할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해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행정처벌법」에서 행정처벌의 한 유형으로 ‘노동교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²⁶³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노동교양처벌은 실질적으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으로 사실상 징역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⁶⁴ 즉, 북한에서는 사회안전기관 등 행정기관이 법원의 재판 없이 징역형과 다름없는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법령으로 보

²⁶³ 「행정처벌법」(2021) 제18조 (노동교양처벌) 노동교양처벌은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공민을 노동교양대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행정법적 제재이다. 노동교양처벌 기간은 5일 이상 6개월 이하이다

²⁶⁴ U61S652293, 8IUFR.L2452, 1ND60Q2408, 69WU5G2074, 3LLZZ01970

장하고 있는 것이다.²⁶⁵

또한, 북한에서는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사건’ 등 특정 범죄 사안의 경우 형사재판 없이 피의자의 처벌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사건의 수사와 예심²⁶⁶은 보위기관이 관할하고, 그와 관련된 재판은 도(직할시) 재판소가 제1심 관할로 되어 있다.²⁶⁷ 그러나, 다수 증언에 따르면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의 혐의 또는 간첩 혐의를 받는 경우, 형사재판 없이 보위기관에서 수사와 처벌을 받고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⁸ 또한, 기관원이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보위기관에서 수사하고, 예심을 하고, 재판 없이 처벌을 결정한다는 증언도 수집됐다.²⁶⁹

“2017년 제 동생은 탈북을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체포되었고, 재판도 받지 못하고 군(郡) 보위부로 이송된 후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보위지도원이 아버지께 ‘아들이 함흥 오로 지방까지 간 것만 알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아들은 영원히 못 나오니 아들이 그저 없다고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정치범이 되어 함경남도 함흥시 오로 지방(現 영광동)에 있는 관리소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²⁷⁰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법원(재판소)의 재판 없이 형벌이 정해지기도 했다.²⁷¹ 비사회

²⁶⁵ 「행정처벌법」(2021) 제344조 (행정처벌기관) 행정처벌은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각, 검찰기관, 재판기관, 사회안전기관, 중재기관, 검열감독기관, 자격수여기관이 준다. 기관, 기업소, 단체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한 행정처벌을 줄 수 있다.

²⁶⁶ 북한의 형사재판 절차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으로 구별된다. 모든 형사사건은 예심을 거쳐 재판에 회부되는데, 피심자(피의자)에 대한 범죄 여부를 확정하고 사건 기소 혹은 기각의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절차를 ‘예심’이라고 부른다. 사실상 예심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단계이며, 국가보위성·사회안전성·보위사령부·검찰소·철도보위성·철도검찰소 등이 예심권을 갖는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44조에서는 ‘예심의 임무는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2021) 제144조; 국가인권위원회, 『한·영 북한인권용어집』, 2016. 42쪽, 44쪽 참고)

²⁶⁷ 「형사소송법」(2021) 제47조 (도 재판소 관할) 도(직할시) 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사형, 무기노동교화형을 규제하고 있는 법 조항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이하 생략)
제50조 (수사, 예심 관할) 보위기관의 수사원, 예심원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수사, 예심한다. (이하 생략)

²⁶⁸ RMB6NY1296, FOIJNT0766, 4PWM3A1067, Y1TCM60183, 1QA1UL0335

²⁶⁹ ULIF611577

²⁷⁰ RMB6NY1296

²⁷¹ ONA6HF0737

주의 문제로 620상무²⁷²에 적발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공개재판’을 개최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공개재판 시에는 재판관이나 검찰소에서 출석하지 않고 620상무의 보위부장이 판결문을 읽고 범죄자들의 처벌을 직접 집행합니다. 탈북 직전인 2017년 3월 초에 평안남도 순천시 제약공장 운동장에서 620상무가 집행한 공개재판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남한 드라마 시청, 빙두(마약) 생산 등을 이유로 20여 명의 피의자들이 공개재판을 받았습니다.”²⁷³

나. 당에 의한 법원 통제

‘재판의 독립성’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 중 하나로 「자유권규약」과 북한 법령 모두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은 제14조 제1항에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해 공정한 심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위원회도 법원의 독립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판사의 임기, 보수 등 판사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고 모든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판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²⁷⁴ 북한은 「사회주의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 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⁷⁵ 또한, 「사회주의헌법」에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시(구역·군)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를 명시하여 사법기관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공표하고 있다.²⁷⁶

그러나, 조선노동당의 영도가 최우선시되는 북한 체제 특성상 법원의 독립 및 판사의 독립성 보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북한 최고 법령인 「사회주의헌법」은 “모든 국가

²⁷² ‘620상무’는 마약, 미신, 불법영상품 등의 단속을 목적으로 조직된 합동 단속 기구를 말한다.

²⁷³ LRINJ90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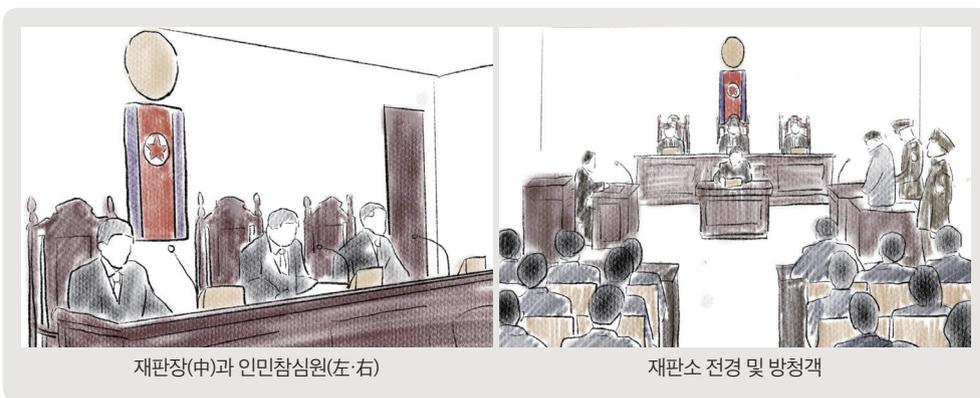
²⁷⁴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2, Article 14: Right to equality before courts and tribunals and to a fair trial, para. 19.

²⁷⁵ 「사회주의헌법」(2019) 제166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2021) 제268조 (재판활동의 독자성보장)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²⁷⁶ 「사회주의헌법」(2019) 제159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군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운영되며,²⁷⁷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이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⁷⁸ 재판소의 상급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²⁷⁹ 헌법상 당 우위 및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조선노동당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중앙재판소 등 사법기관 역시 노동당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 사법기관들의 자율적이며 중립적인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²⁸⁰

그림 IV-9 북한의 재판 장면 (북한 매체 보도 바탕 재구성)



재판장(中)과 인민참심원(左·右)

재판소 전경 및 방청객

* (자료출처) 조선중앙TV(2015.12.16.) 보도화면 참고

판사 등 재판의 판결을 결정할 수 있는 구성원들도 핵심 당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판결과 재판은 모두 조선노동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²⁸¹ 북한은 ‘인민참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인민참심원’은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인민대중’의 대표자로 판사와 함께 사실 인정에서 판결 채택까지 재판심리과정에 제기되

²⁷⁷ 『사회주의헌법』(2019)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²⁷⁸ 『사회주의헌법』(2019)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²⁷⁹ 『사회주의헌법』(2019)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²⁸⁰ 특히, 국가보위성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재판은 단심제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예컨대 장성택은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숙청이 결정된 지 나흘만인 2013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現 국가보위성)의 특별 군사재판에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행위’로 사형이 판결된 후 즉시 집행된 바 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23. 81쪽 참고)

²⁸¹ 북한의 판사는 인민회의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중앙재판소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고, 그 외 중앙재판소 판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하며,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 판사는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판사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고, 자신을 선거한 인민회의의 소환에 의해서만 해임된다. (『사회주의헌법』(2019) 제91조, 제116조 및 제140조; 『재판소구성법』(2011) 제4조, 제7조, 제8조; 『지방주권기관법』(2011) 제10조.)

는 모든 문제에 관여한다.²⁸²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에서는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의 다수가결로 판결이 채택된다.²⁸³ 인민참심원은 판사와 마찬가지로 각급 인민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되는데, 그 자격요건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북한에서는 검사가 재판에 참가하거나 재판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감시활동을 수행하며, 이는 재판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²⁸⁴ 북한 「검찰감시법」에 따르면 검사는 ‘국가의 정치적 보위자’로서 ‘국가기관의 결정, 명령, 지시 등의 충실한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²⁸⁵ 이는 검찰소와 검사를 재판소와 판사와 함께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그 서열에서 검찰소를 재판소보다 앞세우고 있는 「사회주의헌법」에서도 그 의도를 알 수 있다. 다수 증언자들도 재북(在北) 당시 판사보다 검사가 재판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소가 재판소를 감시하기 때문에 재판소에 큰 권력이 없습니다. 뇌물도 검사가 거의 다 받기 때문에 받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수사 검사가 고기를 뜯어먹고, 예심 검사가 뼈에 붙은 살을 발라 먹고, 재판소 판사가 뼈를 우려먹습니다.”²⁸⁶

다. 재판 공개의 자의적 결정

(1) 선전도구로 이용되는 현지공개재판

‘현지공개재판’은 재판소가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조직하는 재판으로 피고인과 일반 주민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282조에서는 현지공개재판을 조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면서, 그 목적에 대하여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개재판의 초점이

²⁸² 북한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2009, 603쪽.

²⁸³ 「사회주의헌법」(2019) 제163조; 「형사소송법」(2021) 제270조, 제339조; 「재판소구성법」(2011) 제9조, 제17조.

²⁸⁴ 「형사소송법」(2021) 제14조; 「검찰감시법」(2012) 제11조.

²⁸⁵ 「검찰감시법」(2012) 제7조, 제14조.

²⁸⁶ YF042L1533

소송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써가 아닌 주민 교양을 위한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것으로 「자유권규약」의 원칙에 위배된다.

현지공개재판은 범죄 발생지나 당사자의 거주지에서 조직되어, 그 지역 주민들을 재판에 동원하여 그들 앞에 개별 혐의를 일일이 나열하고 범죄자를 추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하며 규탄하고,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²⁸⁷ 재판소 주도로 현지공개재판을 받고, 곧바로 공개처형이 집행된 사례들도 수집됐다.²⁸⁸

“2019년 양강도 헤산시 헤산영화관에서 불법녹화물 시청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6명이 대상이었는데, 주모자 1명은 노동단련형 2년을 받아 소년교양소로 보내졌고, 나머지는 교양처리가 되었습니다. 두 달 뒤에는 미신행위자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습니다. 미신행위자(점쟁이)는 노동교화형 5년을 받았고 점을 봤던 주민들은 노동단련대 3~5개월을 갖습니다.”²⁸⁹

현지공개재판에서 다루어지는 혐의는 주로 불법(‘비법’) 월경, 미신행위, 불법 녹화물 시청 및 유포, 불법 휴대전화(‘손전화기’) 사용, 인신매매, 송금브로커 행위, 마약 투약, 강간, 살해 등이었다.²⁹⁰ 불법 월경 혐의로 공개재판을 받았던 한 증언자는 당시 공개재판에서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마약 관련 혐의까지 있는 것으로 발표해서 매우 억울했다고 진술했다.²⁹¹ 수집된 증언 중 최근 사례로는 2022년 황해남도 강령군 소재 소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여성 살해혐의 관련 현지공개재판이 있다.²⁹²

²⁸⁷ 2YZE5I1994, NNOOCB1888, 1ND60Q2408, A9ZFAH1637, BVPE3D1429, V97A6P1188, K2EUR21592, 4ACOW11614, D280Z70942

²⁸⁸ 1J9VEU1801, FHY7DN2059, NNOOCB1888

²⁸⁹ NNOOCB1888

²⁹⁰ 2YZE5I1994, NNOOCB1888, 5EXU5N2147, A9ZFAH1637, UBWCTO2335, BVPE3D1429, V97A6P1188, K2EUR21592, 4ACOW11614, D280Z70942, 4TYPAG0762, LRINJ90590, FHY7DN2059

²⁹¹ WHGIL01336

²⁹² TGCAEV2403

(2) 공개심리권 및 판결문 접근권 침해

‘공개재판 원칙’은 소송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인권, 더 나아가 사회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필수적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리를 위해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자유권규약」 제14조 제1항은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공개적인 심리를 제한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에 따르면 도덕·공공질서·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의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 재판이 제한될 수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재판 공개를 통한 피의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²⁹³ 실제 북한에서 공개재판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이 정한 범위에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⁴

북한에서는 현지공개재판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심리뿐만 아니라 판결의 선고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²⁹⁵ 2019년 인민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한 증언자는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변호사 등 재판 관계자만 참석한 채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했다. 가족들도 참관할 수 없었고 당시 판결의 선고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수집됐다.²⁹⁶ 재판을 경험했던 증언자 대부분은 공소장, 판결문 등의 소송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²⁹⁷ 판결의 공개는 판결문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때문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게조차 판결문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면 「자유권규약」 제14조 제1항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

²⁹³ 「사회주의헌법(2019)」 제164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²⁹⁴ 「사회주의헌법」(2019) 제164조; 「형사소송법」(2021) 제267조.

²⁹⁵ 5400YL0175, DDPXG61477, SPN4BG1900, O4P7100490, XJFCJG1927, 00RIT62440

²⁹⁶ NJOZKK1881

²⁹⁷ BHN1YB0488, 1BQ5TD2470, UM3CII2393, 3RNTQV2332, B77SVN2143, XJFCJG1927, NJOZKK1881, USBGZ10077, FW32EV0125, 7TUMOA1406

라.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피고인 및 피의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자유권규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국가기관은 유죄를 단언하는 공식 발표를 삼가야 하며,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재판 결과를 예단하지 않을 의무를 갖는다.²⁹⁸ 그러나 북한에서는 피의자의 처벌이 결정되기 전에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공개폭로모임을 실시하고, 선거권을 박탈했으며, 불구속 수사 및 재판도 지켜지지 않는 등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북한 당국이 주최하는 이른바 ‘공개폭로모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북한에서는 형사재판 전 피의자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세워 놓고 그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며, 군중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하는 공개폭로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공개폭로모임은 현지공개재판과 같이 선전도구 역할도 하고 있다.²⁹⁹ 동 모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북한 법령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증언에 따르면, 공개폭로모임은 보통 예심과정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예심을 받고 있는 피의자의 혐의 내용 및 처벌 예정 사항 등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³⁰⁰ 한 증언자는 2015년 경 양강도 소재 보안서 구류장에서 조사받을 당시, 여러 명의 수감자를 거주지 주민들 앞에 세워놓고 한 명씩 호명하며 불법 월경죄, 밀수죄 등의 죄명을 말한 뒤 피의자가 스스로 그 혐의를 인정한다고 소리 내어 말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공개폭로모임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매우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³⁰¹ 강제복송자의 처벌이 결정되기 전에 주민교양을 위하여 주민들 앞에서 강제복송 혐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비판하는 공개폭로모임을 실시해 강제복송자들을 망신당하도록 했다는 진술도 다

²⁹⁸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32, para. 30.

²⁹⁹ 「구타행위방지법」(2021) 제5조 (구타행위와의 전사회적, 전군중적투쟁원칙) 국가는 구타행위를 한 자들을 폭로 비판하는 공개투쟁, 종업원총회, 주민총회, 학생총회를 정상적으로 벌려 이를 계기로 주민들이 구타행위의 형태와 사회적 위험성, 해독적 후과에 대하여 잘 알고 구타행위와의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한다.

³⁰⁰ 10KZQ70838, TKVNN50543

³⁰¹ 1JU8U71993

수 수집됐다.³⁰²

“제가 두 번째 강제복송되었던 2010년, 거주지였던 ○○시에서는 두 차례나 복송된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간첩을 잡은 것처럼 대단하게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벌이 확정되기 전 예심을 받는 과정에서 ‘공개투쟁’을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 공개투쟁에서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예심을 받고 있는 사람의 범죄 내용 및 처벌 예정 사항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저에게 욕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³⁰³

또한, 북한에서는 유죄판결 전 선거권을 박탈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형법」 제40조에는 형벌의 일종으로 ‘선거권박탈형’에 대하여 노동교화형을 마친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는 선거권 박탈은 기본형벌집행이 끝난 다음 시·구역·군 인민위원회가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 증언자는 2019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당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부에서 교화형 대상자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했다.³⁰⁴

재판 과정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는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하며, 북한 「형사소송법」 제278조에서도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기타 범죄자임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공판 절차에 출석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받는 내내 피고인을 죄인 취급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도록 하고 수갑을 채웠던 사례들도 확인됐다.³⁰⁵ (IV-3.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참고)

³⁰² 93VI9U2368, R0D6PD2423, 10KZQ70838

³⁰³ 10KZQ70838

³⁰⁴ SPN4BG1900

³⁰⁵ ZVVZP42194

마. 피고인 권리 보장 미흡

(1) 변호권 침해

피고인 및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가진다. 「자유권규약」은 제14조 제3항에서 본인이 선택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와 이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 무료로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변호권’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법령도 변호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인 선임도 가능하다. 북한 「사회주의헌법」과 「형사소송법」,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³⁰⁶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예심원이 변호사위원회에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여 ‘피심자’(피의자)에게 ‘공선변호인(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준다.³⁰⁷ 공선변호인 선임 이후 사선(私選)변호인이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선변호인이 변호인이 된다.³⁰⁸

하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당사자로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는 수사와 예심 단계에서도 인정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피의자들은 해당 단계에서 외부와 연락이 단절된 채로 구금되어 있었다. 변호인 접견권은 수사와 예심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고, 주로 예심이 종결되고 검사가 기소장을 작성한 이후에나 받아들여졌다. 심지어, 재판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다가, 재판 심리 당일 재판소에서 변호인을 처음 만난 경우도 있었다.³⁰⁹

또한, 변호인을 선임했다 해도 변호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한 증언자는 변호인이 재판심리 전에 찾아와 사건 기록을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방식이 검사의 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³¹⁰ 피고인은 재판을 받을

³⁰⁶ 「사회주의헌법」(2019) 제164조; 「형사소송법」(2021) 제54조~제69조; 「변호사법」(1993) 제4조.

³⁰⁷ 「형사소송법」(2021) 제56조, 제59조, 제61조.

³⁰⁸ 「형사소송법」(2021) 제64조.

³⁰⁹ TKVNNS0543, UP6UKT0073, J21S1A1908, 1BQ5TD2470

³¹⁰ RNK8NS0391

때만 변호인을 만날 수 있었고, 재판에서 변호인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다수의 증언도 있었다.³¹¹ 심지어,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한편이었다는 증언들도 수집됐다.³¹² 또한, 「변호사법」이 변호사 활동의 법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에도,³¹³ 실제 변호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³¹⁴

한편, 사선변호인 선임 등 자신의 변호권 증진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변화 움직임도 나타났다. 사선변호인을 통해 상소한 결과, 감형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다.³¹⁵ 또한 법조계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증언자는 공선변호인에 비해 사선변호인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돈을 주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진술했다.

“국선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 속해 있고, 변호사협회에서 각 도·시·군 국선변호인을 임명합니다. 국선변호인은 대체로 검사, 판사와 같이 피소인(피고인)을 소추하는 목적인 반면, 사선변호인은 형량을 깎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사건을 뒤집어 무죄로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하면 법률전문가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2009년부터는 각 도당에서 운영하는 법률반을 졸업해도 법률전문가 자격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변호사를 할 수 있습니다.”³¹⁶

(2) 증인 소환 및 신문권 침해

피고인에게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소환하거나 신문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하나, 북한에서는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³¹¹ J21S1A1908, NJOZKK1881, V0BOHH2087, 1BQ5TD2470, DDPXG61477, SPN4BG1900, B77SVN2143, USBGZ10077, FW32EV0125, 00RIT62440, 7TUMOA1406, A9ZFAH1637, D280Z70942, 0KAGX80807, O4P7100490

³¹² HKT6IU1075, UP6UKT0073, M5UESD1925, 38WLD0542, 0KAGX80807, XJFCJG1927, 4NMFWA1467, 2PBGNC1384

³¹³ 「변호사법」(1993) 제2조, 제6조.

³¹⁴ SPN4BG1900, A9ZFAH1637, RNK8NS0391, 0KAGX80807, O4P7100490

³¹⁵ NNOOCB1888

³¹⁶ M5UESD1925

것으로 보인다. 「자유권규약」 제14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신문받도록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출석시키고 신문받도록 할 권리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를 심문할 것을 요구한 자가 먼저 심문하게 한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도 증인에게 물어볼 기회를 준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³¹⁷ 북한 「변호사법」에도 “변호인에게 증인과 대화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³¹⁸

그러나 실제 북한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증인을 소환하고 신문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형사재판을 경험한 대부분의 증언자들은 재판에 출석한 증인을 반대 신문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자신의 변론에 유리한 증인을 재판에 불러 신문할 수 없었다고 했다.³¹⁹ 한 증언자는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변론에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장(판사)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³²⁰ 증인 소환 및 신문 권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증언들도 있었다.³²¹ 심지어, 증인은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며, 피고인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역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 부르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다.³²²

“2016년경 양강도 혜산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소에서 선정해준 변호사가 있었습니까지만, 적극적인 변호는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변호사는 북한 당국의 하수인들입니다. 재판 전에는 변호사를 만나지 못했고, 재판이 끝난 후 변호사가 저를 찾아와 상소를 원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최후 진술 기회는 있었지만, 재판 중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³²³

³¹⁷ 「형사소송법」(2021) 제309조.

³¹⁸ 「변호사법」(1993) 제9조.

³¹⁹ OKAGX80807, D280Z70942, O4P7100490, 7TUMOA1406

³²⁰ NJOZKK1881

³²¹ 2PBGNC1384, B77SVN2143

³²² A8OKDC0392

³²³ 2PBGNC1384

(3) 진술거부권 침해

피고인 및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을 갖는다. 「자유권규약」 제14조 제3항은 진술거부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 「형사소송법」도 제37조에서 “강압, 유도의 방법으로 받은 범죄자의 말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범죄자의 말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의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3조에서도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진술거부권을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피고인·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고지와 관련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다. 형사절차에서 대부분의 피고인·피의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심지어, 형사소추 경험을 가진 증언자 대다수가 수사 및 예심과정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다.³²⁴ (‘IV-4. 피구금자의 권리’ 참고)

“예심과정에서는 예심원에게 부당하게 폭행을 많이 당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주범을 지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4인의 피의자 중 뇌물을 주지 못하고, 가장 힘이 약하고, 권력이 없는 저를 주범으로 지목하기 위해 폭행한 것입니다. 저는 마약사용 혐의만 받고 있었는데, 마약판매나 성희롱 등의 혐의를 추가적으로 씌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진술을 거부하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손바닥, 주먹으로 머리, 몸 등을 마구잡이로 폭행했습니다.”³²⁵

바. 형식적 상소제도

법원 판정에 이의가 있는 피고인은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자유권규약」은 제14조 제5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³²⁴ B77SVN2143, USBGZ10077, 7TUMOA1406, NNOOCB1888

³²⁵ 2PBGNC1384

상급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북한 법령도 「형사소송법」에 1심 재판소 판결·판정에 대한 피고인 등의 상소 가능 여부 및 상소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³²⁶

국제인권규범과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의 상소권 보장은 미흡했으며, 상소 제도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1심 재판을 받은 대다수 피고인이 재판 후 상소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고도 상소하지 않았다. 증언자들은 상소 시 꾀죄로 인한 가중처벌이 우려되었고, 상소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상소를 포기했다고 했다.³²⁷ 또 다른 증언자는 계호원이 상소권을 고지하면서 상소할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해 상소를 포기했다고 진술했다.³²⁸ 예심과에서 상소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여 할 수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다.³²⁹

“2015년 혜산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변호인의 발언 내용을 들으며 저 사람이 ‘변호인이 아니라 검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변호인 발언 뒤, 검사가 저의 죄를 열거합니다.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죄명은 ‘비법손전화 밀수’였고, 노동교화형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재판이 끝났고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계호원이 알려주었지만, 계호원은 상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형이 늘어날 것이니 안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³³⁰

“상소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상소하지 않았습니다. 상소하는 사람은 보통 상소하는 동안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바쳐서 형을 감경 받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괜히 상소를 했다가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상소)하지 않습니다.”³³¹

326 「형사소송법」(2021) 제354조 (상소, 항의제기) 제1심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항의할 수 있다.

제357조 (상소절차) 상소하려는 자는 판결서, 판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상소장을 제1심 재판소에 낸다. 그러나 노동단련형을 받은 자는 3일안으로 낸다. 제1심 재판소는 상소기간이 지나면 그날로 상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상급재판소에 보낸다.

327 VLFGOR0861, D280Z70942, 1JU8U71993, TKVNS0543, A8OKDC0392, 0KAGX80807, SPN4BG1900, 4NMFWA1467, 2PBGNC1384, B77SVN2143, NJOZKK1881, USBGZ10077, FW32EV0125

328 38WLD50542

329 5400YL0175

330 38WLD50542

331 VLFGOR0861

심지어, 상소권을 아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아예 고지 받지 못해 상소를 해보지도 못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됐다.³³² 예심원이 재판받을 전 상소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는 증언도 있었다.³³³ 또한, 현지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그 즉시 사형이 집행되는 사례를 목격한 증언자들은 주민들 앞에서 피심자가 선고 즉시 처벌되었기 때문에 사형수는 상소권 자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³³⁴

상소권에 대해 고지 받고 실제로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경우 구금 시설 기관원에 의해 폭언을 듣거나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³³⁵ 북한에 있을 당시 상소를 한 경험이 있는 증언자는 구금 상태에서 상소를 제기하자, 구류장의 계호원이 기합을 주거나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2015년 2월경 비법월경 혐의로 구금되어 3개월 후 ○○군 장마당 앞에서 공개재판을 통해 교화형 6년 8개월을 받았습니다. 재판 이후 공소장, 판결문 등 소송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상소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고 상소했습니다. 상소를 하자 예심과장이 계호원들을 시켜 앉았다 일어섰다 800회를 시킨다든지, 하루 종일 세워놓고 규정공부를 시키거나 밤에 잠을 잘 때 코를 골았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고 세워놓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2심 재판 결과 5년 3개월로 감형되었고, 이후 다시 상소하자 재판은 없었지만 평양에 있는 상급기관까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동교화형 1년 3개월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³³⁶

이 밖에도, 뇌물 제공 여부가 상소 인용에 영향을 주는 등 상소제도와 상소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대표적으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권을 행사했는데도, 상급재판소에서 허락하지 않아 2심 재판 없이 1심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³³⁷ 상소기간에

³³² M21Z660599, M9MJ8G0441, U61S652293, 1BQ5TD2470, XJFCJG1927

³³³ 33APH11125

³³⁴ ROD6PD2469, OTP8Z62291, YD9Z4Z1038

³³⁵ KOXTLT0825

³³⁶ 7TUMOA1406

³³⁷ A9ZFAH1637

상소하여 감형된 사례도 일부 수집되었으나, 이는 뇌물을 제공하거나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였다. 한 증언자는 2011년경 가족이 인민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상소했고 2심에서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았다고 했다.³³⁸

사. 주장뿐만인 형사보상청구권

북한에서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자유권 규약」 제14조 제6항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에 의하여 오심(誤審)이었음이 입증되어,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판결 이후 오심이 증명되었다 해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북한은 과거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형사보상규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³³⁹ 그러나 대외적으로 공개된 북한 법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실제 보상을 받았다는 증언도 없었다.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살다가 오심이 입증되어 사면된 사례는 수집되었으나, 오심에 따른 보상은 없었다고 했다. 한 증언자는 가족이 2002년 미성년자를 다치게 했다는 누명을 쓰고 유죄판결을 받아 교화소에 수감되었는데, 4년 후 진범이 체포되어 석방되었지만 형사보상을 청구할 방안조차 없었다고 증언했다. 당연히 오심이나 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

“저희 남편이 미성년자를 다치게 한 죄로 ○○교화소에 수감되었는데, 4년 후 진범이 체포되어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심이 입증되었음에도)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³⁴⁰

³³⁸ NNOOCB1888

³³⁹ UN Doc. CCPR/C/PRK/2000/2 (2000), para. 17(d); UN Doc. HRI/CORE/PRK/2016 (2016), para. 52.

³⁴⁰ 6PXT8W2210

7.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는 개인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으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17조에서도 사생활 등을 간섭·비난받지 않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표 IV - 11 「자유권규약」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관련 목차)
제17조	제1항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그의 명예와 평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공통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제2항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주민행정법」³⁴¹, 「인민보안단속법」³⁴², 「행정처벌법」³⁴³, 「군중신고법」³⁴⁴ 등은 주민 감시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가택수색’, ‘숙박 검열’의 근거 법령이 된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하여, 청년들의 사생활 규제를 법제화하기도 했다.³⁴⁵ 기록센터 조사 결과, 정보원을 활용한 주민 감시, 불법 가택수색, 휴대전화 검열·감청, 서신·복장 검열 등 북한 당국의 다양한 사생활 침해 실태가 드러났다.

³⁴¹ 「주민행정법」(2010) 제32조, 제33조.

³⁴² 「인민보안단속법」(2007) 제8조~제53조.

³⁴³ 「행정처벌법」(2021) 제248조.

³⁴⁴ 「군중신고법」(2019) 제10조, 제15조.

³⁴⁵ 2021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하여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과 청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법 위반 시 신고·통보의무를 주민들에게 부과하였으며, 법을 어겼을 경우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청년들의 사생활 규제를 법제화했다. (「청년교양보장법」(2021) 제41조~제45조.)

가. 일상생활에서의 감시와 통제

북한 주민들은 소년단을 시작으로 당국의 통제를 받는 각각의 사회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소속되어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는 소속 조직에서는 물론, 거주지 단위의 ‘인민반’³⁴⁶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감시·통제 범위는 공적 생활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생활영역까지 포함된다.

(1) 인민반을 통한 감시와 통제

‘인민반’은 북한의 최말단 행정조직이자, 대표적인 주민 사생활 감시·통제 제도이다. 인민반은 국가사회생활의 기층단위로서 거주 등록된 모든 북한 주민들은 인민반에 소속된다.³⁴⁷ 일반적으로 한 개의 인민반은 20~40세대로 구성되며, 소속 주민들의 생활지도, 사상 동향 파악, 외부 방문자 감시 등을 수행한다. 인민반에는 인민반장·부반장, 세대주 반장, 위생반장, 선동원, 담당 지도원(안전원 및 보위원) 등을 두고 관할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주변 이웃들을 탐문하여, 생활 전반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주민 감시를 수행한다.³⁴⁸ 보통 인민반장은 불시 가정방문을 통해 사상, 생활, 위생상태, 외부 방문자 유무 등을 검열하며, 생활총화 및 회의를 통해 상부의 지시를 전달하고 하달 받은 과제를 부여하기도 한다.

북한 당국은 인민반 구성원 중에 국가보위기관과 사회안전기관의 지시를 받아,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보고하는 인원을 두어 감시토록 했다. 이들은 감시업무 수행의 공개 여부에 따라, ‘정보원’(비공개)과 ‘통보원’(공개)으로 구분됐다.

‘정보원’은 신분을 감춘 채 주민 사생활 동향을 비밀리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346 ‘인민반’은 북한의 행정조직에서 가장 작은 단위이다. 우리의 동, 반과 같은 말단 행정조직으로 전업 주부나 은퇴한 직장인들이 주로 소속된다. 원래 20~30가구로 구성했으나 아파트 건설 등 도시의 인구 밀집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1994년 이후 20~40가구로 조직되고 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2. 617쪽 참고)

347 『주민행정법』(2010) 제9조 (인민반의 조직) 인민반은 국가사회생활의 기층단위이며 주민생활의 거점이다. (이하 생략)

348 인민반장과 부반장은 인민반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인민반장은 인민반 전체 주민의 동태 감시를 맡는다. 세대주(世代主) 반장은 당에서 직접 임명하며, 남편들만 별도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데, 남편들만을 상대로 회의, 인원 동원, 강연 등을 주최하기도 하고 선거 행사 때 인민반 통제와 퇴근 후 동태까지 파악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위생반장은 인민반의 환경책임자이고 선동원은 반원들의 사상교양을 담당하며 인민반의 당원들로 구성된 당분조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담당 지도원(보안원, 보위원)은 사회안전성과 국가보위성에서 배치한 감시원이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3. 151쪽 참고)

이들은 비밀정보원 교육을 받고, 서약서를 작성한 뒤 한 달에 한 두 번씩 소속 인민반 주민들의 발언 내용과 경제수준 등 동향 감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했다.³⁴⁹ 주민들은 비밀리에 활동하는 정보원을 ‘스파이’라고 불렀다. 과거 보위부 스파이 활동을 했던 증언자는, 주변인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뒤, 인민반원들의 동향과 발언 등을 정리하여 담당 보위지도원에게 보고하는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³⁵⁰ 생계를 위해 가족 모두 며칠간 집을 비우고 다른 지역에 다녀왔는데, 스파이들이 이를 담당 보위지도원에게 보고하여 보위지도원이 가족들의 행적에 대하여 캐물었다는 사례도 있었다.³⁵¹ 신분을 감추고 주민 감시를 수행하는 스파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반면, ‘통보원’은 존재와 활동이 공개적이었고, 정보원과 마찬가지로 인민반 주민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했다. 주민들은 누가 통보원인지 알고 있었으며, 통보원들은 부여된 과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위부 또는 안전부 지도원에게 주 1회 보고했다.³⁵² 통보원들은 탈북민 가족의 동태, 수입 대비 지출, 사회에 대한 주민 불만, 교화소 출소자 동향, 밀수품 판매 가정, 장사 품목, 간부 가정의 생활 형편 및 동향, 마약 매매, 외래자 숙박 현황 등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³⁵³ 주민들에 대한 이러한 사생활 감시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⁵⁴ 북한 당국은 최근 인민반장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민반 조직운영법」을 제정(2023.12.)한 것으로 알려졌다.³⁵⁵ 인민반을 통솔하며 반원들을 감시하는 인민반장의 책임감과 역할을 높여 주민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³⁴⁹ NG38BK1579, 7841ZM1314, 00RIT62428, OTP8Z62291, NCUJ0N2029, Y6DQPY2036, NW1GN01911, 7841ZM1314

³⁵⁰ 4BKDIP2254, ROD6PD2469

³⁵¹ 93VI9U2478

³⁵² 5RBN922141, UEDAZK2098, TWUF1J2041, UPBU3Q2089, MUYOR1598, 5IQ6F10357

³⁵³ QIJF8N1482, BLO4W00639, 1CHLPG2211, 87YFN32212, 1ZPFDX2126, RRQUMC2097, IHJITN1832, UEDAZK2098, TWUF1J2041, UEDAZK2098, NW1GN01911, NNOOCB1888, JMT8SC1804, BLO4W00639, 3KGFDFW0615, AXJ8B40179, UEDAZK2098, JA7WH70775, VPARIA1430, OM89TF1209

³⁵⁴ TEIEJA2400

³⁵⁵ 조선신보(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2024.4.8.

“통보원은 외래자 숙박 현황, 장사꾼 상품 현황, 주민들 (사이의) 유언비어, 몰래 이사 가려고 준비하는 집, 수입 대비 지출이 맞지 않는 집, 남한 알판(CD 형태의 DVD)과 노래를 보는 집, 개인 소(牛)를 가지고 있는 집, 밀수품을 파는 집, 약을 파는 집, 주민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 농촌동원 등 참여율, 경제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집, 미거주자와 무직자 현황, 근친결혼, 조혼, 마약매매 등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파악하여 구역 담당 보안원에게 보고합니다. 통보원은 명예직입니다. 보안원과 친분이 있다는 것이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³⁵⁶

탈북 경험자와 그의 가족들은 탈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더욱 엄격한 감시 대상으로 관리됐다. 가족 중 탈북민이 있는 경우, 보위부·안전부의 지시를 받은 인민반장과 감시원들은 남아있는 가족들의 감시를 위해 아침·저녁으로 집에 찾아와 가족구성원들의 소재를 파악했다는 다수의 사례가 수집됐다.³⁵⁷ 한 증언자는 본인이 노동단련대 수감 경험이 있고 탈북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2019년경 인민반원과 국경경비대원이 경비를 서며 밤새 본인을 감시했다고 증언했다.³⁵⁸ 특히, 탈북 후 강제송환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재탈북을 우려하여 더욱 엄격한 감시를 받기도 했다.³⁵⁹

그림 IV - 10 탈북민 가족에 대한 인민반 감시 (증언자 진술 바탕 재구성)



³⁵⁶ BLO4W00639

³⁵⁷ 8UNXG41926, 85A11O1844, AWQ1R1I386, 34AC2O1555, 7621650349, A84W651253, XRAX2R0506, VOBOHH208, FIIZC41525, NQ15CE0164, CMQBQA2140, JMT8SC1804, 4RIW840972, NNOOCB1888, IHJTN1832, VPAR1A1430, Y6DQPY2036, X90TSD0888, JUZ0TT2455, 1ZPFDX2126

³⁵⁸ 1ND60Q2408

³⁵⁹ 8IUFRL2452

“딸이 탈북했던 2017년 이후 이웃들로부터 감시를 받았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저희 집에 낯선 사람이 방문했을 때, 저희 집 창고 문짝에 귀를 대고 듣다가 들킨 적이 세 번 있습니다. 인민반장은 며칠에 한 번씩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희 가족의 동태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2018년 어느 날에는 아들만 집에 남겨놓고 저희 부부가 집을 비운 적이 있었는데, 이 때 저희 부부가 중국으로 도망쳤다고 누군가 신고를 해 동 담담 보위지도원이 집으로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³⁶⁰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전에는 탈북한 가족이 있는 세대에 대한 감시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는 행방불명자 가족에 대한 감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가족 탈북 이후 보위부 통보원, 보위부 스파이, 인민반장, 주변 이웃들에 의해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생활해야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³⁶¹

한편, 탈북 관련자 이외에도 국군포로, 북송재일동포 및 남한 출신자, 화교, 전과자 등은 특별관리 대상으로서 북한 당국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동향까지도 집중 감시했다.³⁶² 국군포로와 가족들은 주로 탄광에 배치되어 탄광노동자로 생활했고,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보위지도원에게 사전에 신고를 해야 했다.³⁶³ 한 국군포로 가족은 2016년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이후, 미거주자 및 방랑자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312상무’로부터 상시적으로 감시받았다.³⁶⁴ 남한 출신자와 그 가족들도 집중 감시 대상이었다. 남한 출신 부모님이 일본에서 살다가 1960년경 귀북했다는 증언자는, 부모님 출신지를 이유로 2017년까지 가족 전체가 동향파악 대상이 되었다고 했다.³⁶⁵

군대와 해외에서도 동료 간 서로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사생활 감시가 이루어졌다. 군사복무 중 동료 군인을 감시하는 ‘정보원’ 일을 했다는 증언자는, 보위원이 정한 부대 내부 정보원을 통해 부대원들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감시체계가 운영된다고 진술했다.³⁶⁶ 해

³⁶⁰ V0BOHH2087

³⁶¹ IHJTN1832

³⁶² G2FEHO0105, 00RIT62434, R78AG60462, 15KFB01268, R7542X1383, LHB9941636, YKDSNY2213, BNPVOT1347

³⁶³ R78AG60462

³⁶⁴ 15KFB01268

³⁶⁵ R7542X1383

³⁶⁶ HGJC251956

외 유학생과 해외파견 노동자들도 북한에서와 다름없이 감시당하고 있었다. 해외에서도 외부정보 접촉 여부에 대해 보위원 등으로부터 감시당하거나, 동료끼리 서로 감시하는 ‘호상감시’가 실시되었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³⁶⁷

“(러시아 유학 당시) 유학생들은 보위원이 감시하고 있었으며, ‘호상감시’라고 해서 유학생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021년경 인터넷으로 한국 정보를 접한 것을 들켰는데, 친한 친구가 알게 되었고 보위원에게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보위원이 알게 되었고, 이후 방을 바꾸어 (유학생) 책임자와 같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³⁶⁸

(2) 생활총화의 강제

또 다른 주민 사생활 감시제도로 ‘생활총화’ 제도가 있다. 북한 당국은 생활총화를 강제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게 하고, 서로를 비판하게 함으로써 상호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생활총화는 각자의 업무와 공·사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모임으로, 학교, 직장, 군대, 인민반, 각종 근로단체 등 북한의 모든 조직에서 시행된다. 각 사회조직은 소속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주 1회 생활총화를 실시하며, 나아가 월별, 분기별, 연도별 생활총화도 실시한다.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은 생활총화에 불참할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생활총화에는 무조건 참여해야 했다.³⁶⁹

“생활총화는 주 1회 참석했고, 학습회, 강연회는 2주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에 모여 인원점검을 하면서 방침, 교시 전달 같은 것이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청년동맹 비서가 생활총화를 주관하고 보위원에게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국비유학생은 무조건 가야 했습니다. 아파도 무조건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³⁷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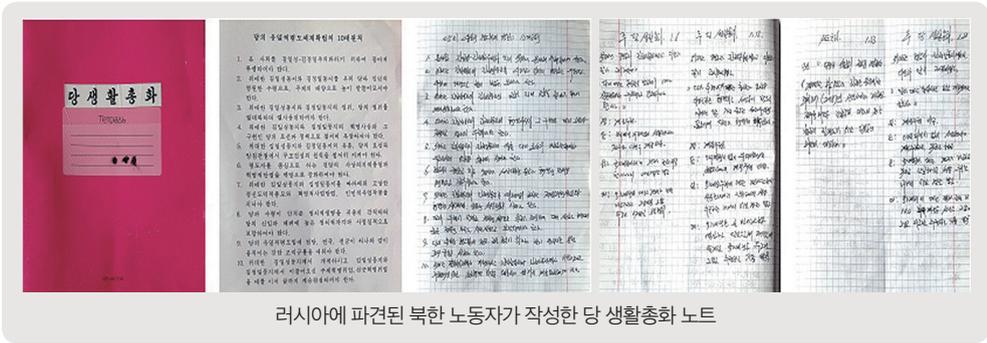
³⁶⁷ CUKQSL2289, 5VRQH72482, 5VRQH72482

³⁶⁸ V0BOHH2087

³⁶⁹ KNCI462328, 1CHLPG2211, YKDSNY2213, 4BKD1P2254, 93V19U2478, 5VRQH72482, 1NR82V2465, 1BQ5TD2464, R0D6PD2461, 8IUFRLL2462, MAV6AE2472, DFFYXV2473, 93V19U2476, 0ORIT62477

³⁷⁰ KJ7IFB2239

그림 IV - 11 북한 주민들의 당 생활총화 노트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작성한 당 생활총화 노트

* (자료출처) 강동완 동아대 교수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생활총화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1990년대까지는 매주 생활총화가 있었고 모든 주민들이 빠짐없이 참여했던 반면,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부터는 지역에 따라 다소 형식화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³⁷¹ 사적 경제활동의 증가 등으로 직장 출근 인원이 줄어들면서, 생활총화 참석률도 자연스럽게 낮아졌다. 주민들은 당국의 검열을 우려해 수첩에 형식적으로 기록만 남겨 놓았다. 한 증언자는 2019년까지 매주 1회 생활총화에 참여했는데, ‘8.3 근로자’³⁷²로 출근을 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자아비판 내용을 노트에 기재하는 식으로 생활총화 참석을 대체했다고 했다.³⁷³ 직장에 수익금을 내고 실제 출근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증가로 일반노동자들은 생활총화에 참여하지 않고 주로 간부들이 참여했다는 증언도 있었다.³⁷⁴

뇌물을 주고 생활총화에 불참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증언자는 2018년 여맹위원장에게 1년에 300위안의 뇌물을 주고 각종 동원과 생활총화에 참석해야 할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했다.³⁷⁵ 또 다른 증언자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끄는 소대장 등에게 한 달에 30달러 정도를 주고 생활총화 및 각종 동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진술했다.³⁷⁶

371 1NR82V2465, 1BQ5TD2456, 8IUFRL2452, 93V19U2481, 1NR82V2474, ZDPTM41630

372 ‘8.3근로자’는 노동이 「헌법」에 명시된 의무인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소속된 직장에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출근을 면제받고, 장마당에서 장사 등 부업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2. 810쪽 참고)

373 R7KY7W2329

374 46I8281547, 1NR82V2372

375 OORIT62460

376 YNNL9N2323, 5VRQH72482

원칙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생활총화가 과거에 비해 형식화된 것은 사실이나, 해외파견 노동자나 유학생을 포함한 전 주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집단주의적 사회의 균열로 위기가 있었지만, 생활총화는 조직 생활 속에서 살아야 하는 북한 주민을 움아매는 중요한 감시 기제로 여전히 유효하다.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마다 직장의 책임자, 세포비서 등이 주도하는 생활총화를 실시했고, 외부에서 ‘청부’ 활동을 하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전원 참석해야 했다.³⁷⁷ 유학생도 20명 중 청년동맹 비서를 한 명 뽑았고, 청년동맹 비서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생활총화를 진행한 후 보위원에게 총화 내용을 보고해야 했다.³⁷⁸ 해외에서는 특히, 유학생들이 해이해지면 변질된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에 특히 압박이 심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로 유학생 생활총화가 중단되었다가, 2023년부터 다시 생활총화를 하고 있다는 진술도 수집됐다.³⁷⁹

“2023년 유학생 20명 중 청년동맹 비서 한 명을 뽑았고, 비서가 주관하여 매주 목요일에 유학생들이 모여 생활총화를 진행했습니다. 유학생들 중 조금이라도 해이해지면 해외에 나가서 변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³⁸⁰

(3) 숙박 검열을 통한 통제

북한 당국은 이동 통제 수단인 ‘숙박 검열’을 통해서도 주민들의 사생활을 단속하고 있었으며, 기관원들은 뇌물수수를 위해 이를 악용하기도 했다. 숙박 검열은 숙박 등록을 하지 않은 외부인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담당 안전원이 인민반장과 함께 불시 가정 방문하여 ‘숙박 등록부’ 미등록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³⁸¹ 하지만, 북한 당국은 숙박 검열을 이유로 사적 공간인 집안을 단속하여, 방침에 어긋나는 영상물 시청을 통제하고, 무허가 전자제품을 압수했으며, 매춘을 단속하거나, 개인 식량을 수탈

³⁷⁷ 102MHI2012

³⁷⁸ KJ7IFB2239, 5VRQH72482

³⁷⁹ YNNL9N2323

³⁸⁰ 5VRQH72482

³⁸¹ OTP8Z6229, TPK8GF2281, KQ9C5Q2261, 4BKDIP2254, TGCAEV2403, XHQ3062407, 1BQ5TD2458, 8IUFRL2453

하기도 했다.³⁸² 2015년 평양시에서는 한 달에 평균 1~2회 정도 109연합지휘부 등에 의해 숙박검열을 받았는데, 외부인에 대한 검열뿐만 아니라 남한 영화나 노래 등 외부정보 접촉 여부도 수색했다고 한다.³⁸³ 다만, 숙박 검열에서 적발되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뇌물을 주고 무마할 수 있었다. 적발이 되면 담배는 기본으로 주어야 했고, 법적 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품이 필요했다.³⁸⁴

평양이나 접경지역, 해안지역 등은 다양한 이유로 숙박 검열을 보다 자주 시행하고 있었다. 평양에서는 정권보위 및 정치행사 지원 차원에서 숙박 검열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명절이나 각종 선거 전, 김정은 참석 행사나 김일성광장에서의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사전 숙박 검열을 실시했다. 검열이 시작되면 보안원들이 집안으로 들어와 외부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집안에 무기 같은 것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했다.³⁸⁵ 접경지역에서는 불법 월경자 단속을 목적으로도 숙박 검열이 비교적 자주 있었다.³⁸⁶ 해안 지역의 경우, 물때에 맞추어 숙박 검열을 실시했는데, 주로 조수(潮水)가 낮은 시기에 조업을 위해 외부인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추어 검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진술이 있었다.³⁸⁷

“제가 사는 곳이 국경지역이라 비법월경자 단속을 위한 (숙박)검열이 1년에 네 번 정도 시행되었고, 특별경비주간(설날 전, 애도 기간 등)과 밀수철인 여름에는 검열이 강화되어 그 빈도가 늘었습니다.”³⁸⁸

³⁸² L99N7A2142, V6PE6V2232, XHQ3O62407, KJ7IFB2239, CTT2DS1379, TEIEJA2400, 0M5DQL1786, KYYONW0800, 0F51EN1966, CW14HP2075, 18QU5P1660

³⁸³ DFM95V2357, 8WHPWX2397, BW8MUL2358, CUKQSL2289

³⁸⁴ 1NR82V2372

³⁸⁵ YNNL9N2323, BW8MUL2358

³⁸⁶ 4BKD1P2254, 34AC2O1555, 7PKPD00352, U6HOSV2270, 1NR82V2372, 00RIT62454

³⁸⁷ TGCAEV2403

³⁸⁸ 4BKD1P2254

나. 불법 가택수색

‘가택수색’은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의 과정 중 하나로, 수색결정서를 제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가택수색을 금지하고 있다.³⁸⁹ 「인민보안단속법」도 가택수색 등 단속 시 단속자의 신분과 단속 이유를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³⁹⁰ 「형사소송법」도 형사사건 관련 수색, 압수 시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³⁹¹

하지만 법령과는 달리, 북한에서 단속자가 신분증이나 수색결정서·압수결정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³⁹² 특히 접경지역에서는 밀수, 외부인 숙박 등의 단속을 목적으로 불시 가택수색이 자주 실시되었는데, 가택수색은 보통 수색결정서를 제시하지 않고 이루어졌다.³⁹³ 다만, 인민반장과 친분이 있는 경우 사전에 검열에 대한 예고를 받을 수 있어 단속에 대비할 수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다.³⁹⁴

“2017년 12월경 양강도 혜산시 친구의 집에서 다른 친구와 함께 남한 영화를 보던 중 집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라고 했고, 문을 열어주었더니 109상무 3명이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친구는 그 상황에 놀라서 메모리를 바닥에 떨어뜨

389 「사회주의헌법」(2019)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390 「인민보안단속법」(2007) 제42조 (법질서를 어긴 자에 대한 단속방법) 인민보안원은 법질서를 어긴 자를 단속할 경우 자기 신분을 밝히고 단속 이유를 알려준 다음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법질서를 어긴 행위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과 문서를 보거나 필요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2021) 제213조 (수색, 압수의 승인) 수색, 압수는 검사의 승인 밑에 한다. 수색, 압수하려는 예심원은 수색, 압수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391 예외적으로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자를 체포·수색·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를 「형사소송법」(2021) 제139조에서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2021) 제139조(검사의 승인 없이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사유)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 발견되었을 경우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3. 범죄혐의자 몸 또는 거처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4. 범죄혐의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하거나 뒤쫓기고 있을 경우
5. 범죄혐의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392 3RNTQV2332, U4G4Q32334, 13PN7Y2325

393 JUZ0TT2455, 0FS1EN1966, 4BKD1P2254, NGBQ341169, ROD6PD2461, 00RIT62454

394 YNNL9N2323, DFM95V2357

러 발로 밟았는데 상무가 그 메모리를 발견하면서 현장을 수색했습니다. 영장은 없었습니다. 원래 109상무가 가택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하고 인민반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영장 없이, 그리고 인민반장이 없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³⁹⁵

한편, 드문 경우였지만, 범죄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기 전 수색 결정서가 제시되기도 했다. 사전에 수색결정서가 제시된 경우는 불법 송금 증개, 불순녹화물³⁹⁶ 유포, 불법 휴대전화(‘비법 손전화기’) 사용, 밀수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한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였다.³⁹⁷ 한 증언자는 밀수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 보위지도원 등이 영장을 제시하면서 가택수색을 실시했고, 가택수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³⁹⁸

다. 통신 검열

북한은 「체신법」 등 법령을 통해 전기통신, 우편통신 등 체신활동의 비밀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³⁹⁹ 그러나, 북한 당국은 휴대전화 검열, 통신 감청, 서신에 대한 검열을 통해 개개인의 생활을 감시하고 있으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1) 휴대전화 검열

북한에서는 불특정 기관이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시에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손전화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길거리, 학교, 가택 등에서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수시로 검열을 받아야 했다. 이는 북한이 「이동통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배치되는 행위이다.⁴⁰⁰

³⁹⁵ MR8IJF0531

³⁹⁶ ‘불순녹화물(不純錄畫物)’은 ‘정치사상적으로나 문화도덕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내용이 들어있는 녹화물(동영상)’을 의미한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2권, 2017. 897쪽 참고)

³⁹⁷ A9ZFAH1637, TZURKG1073, 4TYPAG0762, OOHQ4P1811, 80PADX1866, RWZWCR1613, 3RNTQV2332, 19Z9TY0938, PORU2K0763, W940750050, OORIT62460

³⁹⁸ IBLC50956

³⁹⁹ 「체신법」(2021) 제8조 (신속성, 정확성, 비밀의 보장원칙) 국가는 체신활동에서 신속성, 정확성, 비밀을 보장하며 봉사성과 문화성을 높이도록 한다.

⁴⁰⁰ 「이동통신법」(2020) 제8조 (이동통신봉사 및 이용원칙) 국가는 이동통신봉사와 이용에서 신속성, 정확성, 봉사성, 안전

휴대전화 검열은 가택수색이나 옷차림 단속 등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불순녹화물 사용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검열의 주된 대상이 됐다. 외부정보를 단속하는 ‘109연합지휘부’가 가택수색을 하면서 손전화 검열까지 실시했다는 증언이 있었다.⁴⁰¹ 옷차림·무직자 등 비사회주의 현상을 단속하는 ‘82연합지휘부’가 머리카락이 길다는 이유로 검열을 시작하여 검열 도중 바지 주머니에 있는 손전화기도 검열했다는 진술도 있었다.⁴⁰² 역시 비사회주의 현상을 단속하는 ‘비사회주의 그루빠’도 불순녹화물 저장 여부, 비사회주의 문자 내용 등을 단속하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손전화 검열을 실시하고 있었다.⁴⁰³ 청년동맹 지도원은 길거리에서 통화를 하는 청년들의 손전화를 불시에 검열했으며, 대학의 당조직이나 청년동맹 등에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남한 노래, 영화, 음란물 등의 불순녹화물 저장 여부 확인을 위한 검열을 실시했다.⁴⁰⁴

“2019년 10월경 길거리에서 보안원이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 동영상이나 노래가 있는지 검열을 하였습니다. 보안원들은 길거리에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 수시로 검열을 했습니다. 검열에서 외국 동영상 등이 적발되면 조사도 며칠을 받아야 하고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뇌물을 주어야 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검열에 걸릴 만한 것들을 휴대전화에 두지 않았습니다.”⁴⁰⁵

휴대전화 검열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뇌물이나 인맥 동원이 필요했다. 한 증언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이 문제가 되면 전화기를 압수했는데, 보통 북한 돈 10~20만 원을 주면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⁴⁰⁶ 일부 단속원들은 뇌물을 받을 목적으로 단

성, 문화성, 비밀보장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⁴⁰¹ 13PN7Y2325, U4G4Q32334

⁴⁰² 코로나19 기간 중 ‘109상무(109연합지휘부)’가 ‘82상무(82연합지휘부)’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진술들이 수집됐다. (UYSKRB2399, ONW4SH2402, TGCAEV2403) ‘82상무’의 역할, 권한, 구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⁴⁰³ TPK8GF2281, P767JN1271

⁴⁰⁴ E4MJ0I2167, YNNL9N2323

⁴⁰⁵ TPK8GF2281

⁴⁰⁶ TGCAEV2403

속하기도 했으며,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단속한다는 진술도 있었다.⁴⁰⁷

최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으로 단속 및 처벌은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들의 사상이완 차단을 위해, 사회주의 생활양식 확립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청년교양보장법」은 검열기관의 교양과 통제를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⁴⁰⁸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괴뢰말투’(남한 말투)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2023년 1월 채택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휴대전화를 통한 ‘통보문’(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에서 남한 말투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⁴⁰⁹ 동 법률은 남한 말투 확산을 막기 위한 전사회적 투쟁과 강력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당국의 휴대전화 단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II-1. 정보 통제’, ‘IV-9.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참고)

한편, 해외 유학생, 해외파견 노동자들도 담당 보위원 등 현지 관리자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을 철저히 통제받았다. 해외에서는 인터넷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나 문자만 가능한 휴대전화만 소지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발각되어 기기를 압수당하고 벌금을 내야 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⁴¹⁰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통화나 문자만 가능한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했다. 일반 노동자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열에서 발각되면 남한 영상물을 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 것이 발각될 경우 강제송환되기도 했다.⁴¹¹

(2) 감청

북한 당국은 전기통신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법령(「체신법」 제8조)과 달리 전파탐지기, 감청기계 등을 통해 주민들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밀수나 송금 등에는 주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국의 통화 내용 감청은 대부분 중국

⁴⁰⁷ TEIEJA2400

⁴⁰⁸ 「청년교양보장법」(2021) 제43조 (검열감독통제기관의 임무)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검열감독통제기관은 청년들 속에서 범죄 및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청년교양보장정형을 정상적으로 요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⁴⁰⁹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제25조 (손전화기, 컴퓨터망을 통한 괴뢰말투 유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손전화기, 컴퓨터망으로 괴뢰말투로 된 통보문과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⁴¹⁰ KQ9C5Q2261, CM8P8K0045

⁴¹¹ IBOIH12246, Z63J852157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형법」은 외국과의 불법 국제통신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⁴¹²

북한 당국의 감청 방식은 정보통신과 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변화했으며, 특히 2015년 이후에는 이동 가능한 감청기계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감청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말까지는 '체신소'(우체국)에서 지역 내·외 전화를 연결해주었고,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유료전화기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체신소는 주민들의 전화 연결을 지원해주면서 수시로 감청을 실시했다.⁴¹³ 하지만, 이후 북한 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증가하고, 중·북 접경지역에서 밀수·송금 등을 위한 중국 휴대전화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체신소에서의 통신 감청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이동식 통신 감청방식을 모색하게 되었고, 2015년경부터 감청이 강화되었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 한 증언자는 2014년경 중국 또는 남한에 있는 사람과의 통화를 단속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었고, 국가보위성에서 감청기계가 달린 커다란 차를 타고 다니며 감청을 실시했다고 했다.⁴¹⁴ 2015년 이후, 불법 국제통화에 대한 감청이 강화되었고 '포고(布告)'를 통해 집중 감청을 실시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렸다는 증언도 있었다. 증언자들은 집중 감청 기간에는 감청 차량이, 평상시에는 기계를 소지한 감청 전문 기관원이 감청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이나 남한에 살고 있는 가족과 통화를 하다가 보위부 감청조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⁴¹⁵

특히, 중·북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국가보위성 15국에서 국제 통신을 제한하기 위해 전파차단 및 감청을 실시한다. 압록강과 두만강 반경 2km이내에서는 전파 차단으로 북한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아 유선전화를 이용해야 했는데, 통화 도중 상대방의 목소리가 울리며 메아리처럼 반복되면 도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⁴¹⁶ 중·북 접경지역 감청 시설 목격 사례도 수집됐다. 한 증언자는 2016년경 함경북도

⁴¹² 「형법」(2022) 제261조 (비법적인 국제통신죄) 비법적으로 국제통신을 한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국제통신을 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⁴¹³ 7BIVB30566

⁴¹⁴ A1VD8L0761

⁴¹⁵ X90TSD0888, A1VD8L0761, MIFROV1026

⁴¹⁶ MNH2KG2026

온성군 미산리 소재 단층건물(약 40㎡ 정도)에 감청이 가능한 전파탐지 시설이 설치된 것을 보았다고 했다.⁴¹⁷

“2016년까지 밀수를 하면서 보위부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중국 손전화기든 남한 손전화기든 쓰면 무조건 통신에 잡힌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밀수 통화는 해산에 워낙에 많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밀수가 아닌 남한과 통신하는 것들을 직접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과 통신할 때는 가명이나 암호를 써야 하지) 절대 실명을 쓰거나 만나는 장소를 명확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 도청되어 잡히기 때문입니다.”⁴¹⁸

(3) 서신 검열

‘서신의 비밀 보장’을 명시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서신을 검열하고 있었다.⁴¹⁹ 체신소(우체국)에서는 우편물이 지역별로 구분되어 발송되기 전에 보위원이 서신을 검열했다. 체신소에 상주하는 보위원은 등기·군사·국제우편물 등의 내용 검열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우편물은 수신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⁴²⁰ 이를 목격했던 증언자는 이러한 사실을 비밀로 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했다.

“2008년까지 함경북도 ○○군 체신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체신소 내에 보위부 지도원 사무실이 따로 있었는데, 우연히 그 사무실에 들렀다가 보위부 지도원들이 국내외로 오가는 모든 편지를 열어 보는 것을 보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원래 보위지도원 사무실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데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친분이 있었던 보위지도원 사무실에 갔다가 편지들을 검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보위지도원은 당황하며 못 본 것으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적신 수건으로 편지 봉투의 풀로 붙인 부분을 살살 문지른 후 얇은 면도칼로 열어본 표시가 나지 않도록 열어서 편지를 검열하고 있었습니다.”⁴²¹

⁴¹⁷ PORU2K0763

⁴¹⁸ OORIT62460

⁴¹⁹ 『체신법』(2021) 제23조 (우편통신업무의 정규화, 우편용품의 규격화, 표준화) 체신기관, 기업소는 우편통신업무를 정규화하며 우편통신의 정확성과 문화성, 서신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편용품은 규격화, 표준화하여야 한다.

⁴²⁰ ZPQ6VC0309, 1M00XQ0157, 7BIVB30566

⁴²¹ 7BIVB30566

해외 거주자와 북한 주민 간 서신 왕래도 검열 대상이 됐다. 북한에서 외국으로 편지를 보낼 경우에는 보위부 검열을 거쳐 발송되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렸으며, 외국에서 편지를 받는 경우에도 현지 보위부 검열을 받고 나서야 받아볼 수 있었다.⁴²² 1995년 해외 노동자로 파견된 경험이 있다는 한 증언자는 휴가차 북한에 방문했을 때 가족이 보낸 편지를 서신 검열로 인해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당시 북한에 있었던 가족들은 배급이 중단된 북한의 식량상황 등에 대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지만 증언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서신 왕래가 단절되었다고 진술했다.⁴²³ 또 다른 증언자는 해외에서 가족으로부터 받은 편지의 옆면이 찢어져 있어 서신 검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때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혐오감을 느껴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증언했다.⁴²⁴

라. 기타 검열

북한 당국은 숙박 검열, 가택수색, 통신 검열 이외에도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검열, 초상휘장⁴²⁵ 검열, 복장 검열, 전기 검열 등 각종 명목으로 주민들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다. 초상화 검열은 조직별로 각 거주지에서 실시되며, 초상화의 위치나 초상화 주변의 청결·관리 상태 등을 검사한다.⁴²⁶ 또한, 전기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에서는 미등록 가전제품이나 전력 소모가 많은 전기제품 사용을 단속하기 위한 전기 검열도 실시한다.⁴²⁷

“초상휘장 부착과 비사회주의의 복장 단속은 외출 시마다 검열 받았고, 초상화 검열은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1~2회 정도 받습니다. 초상화 검열은 주로 당비서와 인민반장이 집에 와서 방에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들을 먼저 없이 잘 관리하는지 검사합니다. 청년동맹 깃발 휘장과 초상휘장

⁴²² TJH9G50525, UYYAWM0821

⁴²³ BSQXYF2224

⁴²⁴ BW290A1394

⁴²⁵ ‘초상휘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초상화가 담긴 배지로 북한 주민은 반드시 왼쪽가슴 위에 초상휘장을 달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한·영 북한인권용어집』, 2016, 233쪽;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3권, 2017. 938쪽 참고)

⁴²⁶ R0D6PD2360, 51IH842267, FH87SC2243 S02DOL2356, R0D6PD2469, 4BKD1P2254, JUZ0TT2459

⁴²⁷ REUFYK2396, XHQ3O62395, REUFYK2389, 1ND60Q2377, R0D6PD2386, FJ391D2148, X90TSD0888

은 외출 때마다 외출복 겹옷에 항상 부착해야 합니다. 길가에서 규찰대들이 검사합니다. 또한, 몸에 붙는 옷, 청바지 등을 입으면 비사회주의 복장이라고 해서 규찰대들이 그 자리에서 벗으라고 한 후 가위로 자릅니다.”⁴²⁸

특히, 2017년경부터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비사회주의 현상을 없애기 위한 방침’이 지속적으로 하달되었고, 복장 등 생활양식 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⁴²⁹ 서양식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등은 주된 검열 대상이었으며, 반바지, 청바지, 나팔바지, 선글라스, 민소매 옷 등도 비사회주의적이라며 단속 범주에 들었다. 여성의 경우, 바지 착용, 긴 머리, 짧은 치마, 귀걸이 착용 등은 자본주의 양식이라는 이유로 금지되기도 했다.⁴³⁰ 성형수술도 검열과 단속, 비판의 대상이었는데,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사상투쟁의 대상으로 비판 무대에 세웠다는 증언이 있었다.⁴³¹

“강연을 위해 만든 영상 자료에서 결혼식 장면을 보았습니다. 영상 속 해설하는 사람은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고 가는 것도 ‘괴뢰식’(남한식)이고, 여성이 귀걸이나 팔찌 등 장신구를 여러 개 하는 것,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은 것이나, 선글라스 착용한 모습, 와인 잔으로 술을 마시는 모습 등도 모두 ‘반동’이라고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처벌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결혼식에 나온 사람들이 머리를 삭발하고 죄인처럼 서있었기 때문입니다.”⁴³²

북한 주민들은 해외에 나가서도 생활양식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받았다. 해외 유학생들은 복장이 단정한지 여부, 초상휘장을 항상 부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담당 보위원 등으로부터 검열 받았다고 했다.⁴³³

⁴²⁸ JUZ0TT2459

⁴²⁹ 4BKD1P2254

⁴³⁰ 51IH842267, JSEFPE2271, 8IUFR2462

⁴³¹ 1CHLPG2211

⁴³² TGCAEV2403

⁴³³ YNNL9N2323, KJ7IFB2239

“2019년까지 러시아에서 국비유학생으로 유학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 인원 점검을 했고 스마트폰 사용, 복장 등을 통제했습니다. 항상 셔츠를 단정하게 입고, 초상휘장을 가슴에 달고 다닐 것을 강요했습니다. 규칙을 어길 경우, 비판서를 쓰고 처벌이 부과되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복송도 있다고 들었습니다.”⁴³⁴

북한은 최근 주민들, 특히 청년층의 생활양식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 당국은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제정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양식 검열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사상교양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에 대한 남한 문화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북한 청년들은 그동안 청년동맹 지도원에게 복장, 언어예법, 도덕 등에 대한 검열을 받아왔으나, 동 법령 제정에 따라 보다 강한 사생활 통제를 받게 됐다.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과 행정적·형사적 처벌 근거들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청년들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다 강하게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⁴³⁵

⁴³⁴ YF042L1533

⁴³⁵ 「청년교양보장법」(2021) 제41조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청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4. 우리식이 아닌 이색적인 옷차림과 몸단장, 결혼식을 하면서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흐려놓는 행위 (이하 생략)
제45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8.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는 내심(內心)의 자유로서 자신의 사상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8조에서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표명하고 있고, 「자유권규약」도 제18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는 본인이 원하는 종교·신념을 가지거나 이를 받아들일 자유, 그리고 이를 표명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한다. 북한의 경우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종교와 관련해서는 「사회주의헌법」 제68조에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³⁶

표 IV - 12 「자유권규약」과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유권규약」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관련 목차)
제18조	제1항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p>
	제2항	
	제3항	
	제4항	

⁴³⁶ 「사회주의헌법」(2019)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규정과 달리 북한 주민들은 일생에 걸쳐 ‘김일성-김정일주의’ 사상과 반(反)종교 교육을 무조건적으로 주입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당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미신행위까지도 단속함으로써 주민들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가. 사상·양심의 자유 제한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⁴³⁷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천명하고, 이외의 사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과 「노동당규약」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통치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이자,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있다.⁴³⁸ 또한, 북한은 주민들을 일상적으로 규율하는 최고 지침인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을 통해서도 김일성-김정일주의 외에는 어떤 다른 사상도 용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⁴³⁹

(1) 사상 주입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사상 주입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진다.⁴⁴⁰ 유년기에는 음악, 미술, 체육활동의 형태로 사상교육이 시작되며, 학교에서는 김일성·김정일 어린시절, 혁명역사 등 교과과목을 통해 우상화교육이 이루어진다. 학교 졸업 후에도 군대, 직장 등 조직생활을 통해 학습회나 강연회의 형식으로 사상교육은 계속된다. 한 증언자

⁴³⁷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북한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념인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계승한다는 취지하에 2012년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제시한 사상이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후계 구축기간이 짧아 정치적 정통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리더십 구축을 위한 이념적 기반이 되었고, 당규약에서 ‘노동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되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2. 134쪽 참고)

⁴³⁸ 「사회주의헌법」(2019)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조선노동당규약」(2021) (서문)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이하 생략)

⁴³⁹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하기 위해 1974년 4월 14일 (김일성 생일 전날) 발표한 10개조의 원칙이다. ‘10대 원칙’은 북한 주민들을 일상적으로 규율하는 최고의 규범으로 ‘서문’과 10개조의 원칙, 부연설명, 각 원칙에 따른 추가 해설 등을 포함해 총 10개 원칙 60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김정은 권력 세습 정당화 일환으로 2013년 6월 현 명칭으로 개칭하면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모두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으로 바꾸었다. (국가인권위원회, 『한·영 북한인권용어집』, 2016. 74~75쪽; 『북한지식사전』, 2022. 588~589쪽 참고)

⁴⁴⁰ 51IH842267, VSK8HW0250, 2O4G6G1011, 4XIK2K0784, SO2DOL2356

는 매일 직장에 출근하여 30분가량 사상학습과 충성노래를 부르며 일과를 시작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생활총화, 토요일 저녁에는 ‘10대 원칙’ 등을 학습했다고 진술했다.

“2019년까지 ○○사업소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요일에 관계없이 매일 출근하였습니다. 7시 30분까지 출근하여 19시에서 20시경 퇴근합니다. 출근하면 매일 30분가량 독보(당의 방침이나 신문에 게재된 사상·모범사례 학습)를 하고 ‘우리의 당기’, ‘일편단심’ 등 당에 대한 충성노래를 부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18~20시)에는 생활총화를 했고 토요일 저녁(18~20시)에는 ‘10대 원칙’, 청년동맹원 임무, 비사회주의의 근절투쟁 등을 학습했습니다.”⁴⁴¹

북한 주민들은 수령유일지배체제의 근간이 되는 ‘10대 원칙’에 대해 강도 높은 교육을 받았고 ‘10대 원칙’의 범주 안에서 통제된 삶을 살아야 했다. ‘10대 원칙’은 김정은 유일독재를 뒷받침하는 통치규범으로 작동하면서 주민들을 억압했다. 김씨 일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10대 원칙’은 정치·사상적인 불만을 억누르는 데 활용되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상교육, 초상휘장, 초상화 검열 등의 근거가 됐다. 북한 주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10대 원칙’을 습득해야 했으며, ‘10대 원칙’에 철저히 순응하는 삶을 살도록 교육받았다.

“북한에서 준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이나 지침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입니다.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10대 원칙’을 항상 머리에 새겨 학교에서나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나 이 원칙대로 행동하며 살라고 말입니다. ‘10대 원칙’을 어기고 행동하면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는다고 담임 선생님이 수차례 강조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다보면 세뇌당해서 감히 ‘10대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⁴⁴²

441 204G6G1011

442 4XIK2K0784

표 IV - 13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원칙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2원칙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제3원칙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제4원칙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제5원칙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유훈, 당의 노선과 방침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6원칙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제7원칙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 작풍을 지녀야 한다.
제8원칙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제9원칙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전군,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제10원칙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이끌어 오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북한 당국은 사상교육 이외에도 초상휘장 착용 의무화, 초상화 검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사상을 강제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공공시설과 가정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야 하며, 주민들은 겉옷에 이들의 초상휘장을 부착하고 다녀야 했다.⁴⁴³

“고급중학교 1학년 즉 15세에 청년동맹에 가입하는데, 그때부터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15세부터 계속 초상배지를 달아야합니다. 김일성·김정일 초상배지를 ‘단다.’고 표현해서는 안 되고 ‘모신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초상배지는 학교 및 회사에 출석할 때마다 검열 받았고, 길거리에서도 규찰대에게 받았습시다. 군대에서도 아침마다 검열합니다.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초상배지 부착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단속에 걸리는 사람은 잘 없습시다.”⁴⁴⁴

⁴⁴³ NMGONU0690, 51IH842267, JUZOTT2435, REUFYK2389, 58H8N12317, KQ9C5Q2261, 4BKD1P2254, ABRHGQ2257, ROD6PD2469, JUZOTT2459, 1NR82V2465, 00RIT62477, 8IUFRLL2453

⁴⁴⁴ OTP8Z62291

특히, 각 가정에 걸려있는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는 ‘모신다’고 표현할 정도로 극진히 관리해야 했다. 다수의 증언자들은 초상화는 ‘정성함’이라고 불리는 상자에서 벨벳으로 된 자수가 놓인 수건을 꺼내 아침마다 닦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이를 ‘정성사업’이라고 불렀다고 했다.⁴⁴⁵ 화재가 나면 사람보다 초상화를 먼저 챙겨야 하며, 만약 초상화가 불에 타게 되면 보위부에서 범죄조사를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⁴⁴⁶ 한 증언자는 초상화 검열은 주로 가정별 숙박검열 시 진행했는데, 단속원이 흰 장갑을 끼고 초상화 액자를 훑은 후 먼지 유무를 확인했다고 했다.⁴⁴⁷ 검열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초상화 관리에 소홀한 주민은 명부에 이름이 적히고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어 비판받거나 처벌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었다.⁴⁴⁸

그림 IV - 12 사상교육을 위한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관련 물품



* (자료출처) 조선중앙통신(2014.10.19.), 노동신문(2016.10.5.), 데일리NK(2018.12.3.)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절대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사진이나 동상을 촬영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었다. 카메라나 휴대폰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사진이 조금이라도 찍혀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됐다. 또한, 북한 체제를 칭송하는 탑이나 조형물은 사진으로 찍어도 되지만 글씨가 잘려서는 안 되며, 사람이 작게 나오더라도 조형물은 전체적으로 찍혀있어야 했다.⁴⁴⁹ 한 증언자는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자칫 초상

⁴⁴⁵ S02DOL2356, FH87SC2243, 51IH842267, BERYD80822, 4BKD1P2254, JUZOTT2459, ROD6PD2469, A6RSEV2353, OTP8Z62291

⁴⁴⁶ AZLN4W1646

⁴⁴⁷ ROD6PD2360, 51IH842267, FH87SC2243, ABRHGQ2257, DEJ6ST2342

⁴⁴⁸ FH87SC2243

⁴⁴⁹ OORIT62434

화가 찍히게 되면 혁명화 교육 등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진 촬영은 잘 하지 않는다고 했다.⁴⁵⁰ 다른 증언자는 자녀들이 2022년 집에서 놓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의 액자 모서리가 찍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단속에서 문제가 되어 전화기를 압수당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다.⁴⁵¹

그림 IV - 13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참배



김일성 탄생일 만수대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

김일성 사망일 만수대 김일성·김정일 동상 헌화·참배

* (자료출처) 노동신문(2023.4.16 / 2023.7.9.)

또한, 북한 당국은 각 기관과 지역 곳곳에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의 사상교육을 강제했다. 각급 기관, 기업소, 학교에는 김일성·김정일 주의 연구실, 각 시·도에는 혁명사적관과 김일성·김정일 동상이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은 연구실·혁명사적관·동상에서 청소, 헌화, 참배, 경비 및 관리 비용 납부 등의 방식으로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해 보일 것을 강요받았다.⁴⁵²

해외파견 노동자들에게도 현지교육을 통한 사상 주입이 이루어졌다. 사상교육을 게을리 하거나 불참할 경우에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한 증언자는 학습강연회에서 배운 내용을 받아 적는 학습장을 검사받았으며, 제대로 필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 비서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⁴⁵³ 해외 유학생의 경우에도 사상교육과 통제가 있었다. 정기적으로 ‘김정은 업적 선전자료’ 등의 사상교육을

⁴⁵⁰ E4MJ0I2167

⁴⁵¹ TGCAEV2403

⁴⁵² ROD6PD2411, 8IUFR2417, REUFYK2389, AL2DIA1438, X2IB8H0457, JUZOTT2435, XWLLIS2413, 5D2YK90685, KNCI462328, AA1AMX0433, NQCJLO0769, 00RIT62468

⁴⁵³ FH87SC2243

받아야 했으며, 상시 초상휘장 패용 등의 규칙을 적용받았다는 증언이 있었다.⁴⁵⁴

“유학시절, 주 1회 생활총화에 참석했고, 학습회·강연회는 2주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인원 점검을 하면서 방침, 교시 전달 같은 것이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원 점검 시에는 스마트폰 사용, 복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유학생은 항상 셔츠를 단정하게 입고, 초상휘장을 가슴에 달고 다닐 것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남한 드라마나 노래는 접하지 말 것, 항상 긴장하며 생활할 것, 연애의 감정을 갖지 말 것, 사람을 쉽게 믿지 말 것 등의 규칙을 교육받았습니다.”⁴⁵⁵

(2) 사상 통제

북한에서는 공식 사상으로 천명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외에는 어떠한 사상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반국가선전·선동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상범죄를 규정하고 있다.⁴⁵⁶ ‘10대 원칙’에서도 “우리당의 혁명사상,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하여 시비중상하거나 반대하는 반당적인 행위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화묵과⁴⁵⁷하지 말아야 하며, 부르주아사상, 사대주의사상 등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를 반대하고 날카롭게 투쟁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리성과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⁴⁵⁸

실제로 북한은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사상이 해이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와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반(反)김일성-김정일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인민반 및 근로단체에 보위부 정보원(‘스파이’)을 심어 두고 주민들의 사상 동향을 염탐하거나, 주민들이 서로를 감시토록 했다.⁴⁵⁹ 또한, ‘비사회주의 그루빠’ 등을 조직하여 체제와 사상에 어긋나는 소위 ‘반혁명적인’ 행위들을 단속하고 처벌했다. 증언자들은 북한

⁴⁵⁴ YNNL9N2323, KJ71FB2239, 5VRQH72482

⁴⁵⁵ KJ71FB2239

⁴⁵⁶ 「형법」(2021) 제66조 (반국가선전, 선동죄) 반국가적 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⁴⁵⁷ ‘용화묵과’는 ‘옳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무원칙하게 타협하며 그대로 넘겨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4권, 2017. 1332쪽 참고)

⁴⁵⁸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2021) 제4조 제8항.

⁴⁵⁹ 4BKD1P2254, ROD6PD2469

당국이 ‘반혁명적’이라고 규정한 남한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시청 또는 소지하다 당국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에서부터 사형에 이르는 처벌이 선고되었다고 했다.⁴⁶⁰

“2012년까지는 친구끼리 USB로 공유해서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쉽게 봤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김정은 정권 이후 비사회주의와의 강도 높은 투쟁을 했기 때문에 외부정보를 봤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자료를 공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중국 자료에 비해 한국, 미국, 일본 자료에 대한 처벌이 훨씬 셉습니다. 2013년 (단속) 시범기에 걸리면 완전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⁴⁶¹

해외파견 노동자나 유학생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사상 검열’을 통과해야 했으며, 현지에 가서도 지속적인 사상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 보위부 스파이 등이 사상 동향을 감시한 후 당국에 보고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2017년 국비유학생 선발 시험에 응시했던 한 증언자는 선발을 앞두고 대학 학생간부부에서 김일성 혁명역사·혁명활동, 김정숙 혁명역사, 김정일 혁명역사·혁명활동, 김정은 혁명활동 등 사상검열 시험을 보았다고 했다.⁴⁶² 해외파견 경험이 있는 증언자는 파견 중 문답식 학습경연에서 사상검열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점수가 나쁠 경우에는 재파견 선발 시 추천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진술했다.⁴⁶³

나. 종교행위 단속·처벌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북한 주민이 자유의지에 따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신앙의 자유를 명기한 「사회주의헌법」 제68조에도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

⁴⁶⁰ 5VRQH72482, QK0K9S0279, HNTCJ42201

⁴⁶¹ 5VRQH72482

⁴⁶² YNNL9N2323

⁴⁶³ FH87SC2243

는 데 이용할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청년들의 사상 단속 강화를 위해 2021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은 제41조에서 청년은 ‘종교와 미신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⁶⁴

(1) 형식으로만 존재하는 종교의 자유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는 명문상의 규정으로만 인정되며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았다. 평양에는 칠골교회와 봉수교회가 있고, 묘향산과 금강산 등지에는 사찰이 있으며, 1945년 발족된 조선불교도연맹을 비롯하여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카톨릭교회’,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의 종교별 단체들이 있고 이들의 협의체인 ‘조선종교인협의회’도 존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승려 등 종교인과 일정 규모의 교인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시설은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선전용 시설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종교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평양시에 교회와 성당이 있기는 하나, 눈속임 시설로 외국인들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고, 북한 주민은 출입할 수 없는 금지된 곳이라고 진술했다.⁴⁶⁵ 또 다른 증언자는 칠골교회가 집에서 잘 보였는데,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 문이 열리거나 운영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⁴⁶⁶ 학창시절 칠보산에 있는 사찰로 현장 견학을 간 경험이 있다는 한 증언자는 그 사찰은 개방되어 있는 관광지였고, 시주함에는 외국돈이 수북하게 담겨있었다고 증언했다.⁴⁶⁷ 대다수 증언자들은 재북 당시 종교가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종교시설이나 종교 활동을 접해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⁴⁶⁸

⁴⁶⁴ 「청년교양보장법」(2021) 제41조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청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강력범죄행위
2. 성 불량행위, 음탕한 행위, 매음행위, 도박행위
3. 종교와 미신행위 (이하 생략)

⁴⁶⁵ S7UIML2223

⁴⁶⁶ K3ZFIL1819

⁴⁶⁷ NJK11K1156

⁴⁶⁸ IFSB441254, 8IUFRLL2452, ASQN3S2398, LYHUAW2322, 00RIT62440, H4WM1J2315, TPK8GF2281, FH87SC2243, T1OKYP2242, G1YH940147, 5QG11E2237, 1CHLPG2211, DXQLXA2122, 83MDMT1244

“미신행위는 위험하고 김일성 수령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평양시 모란봉구역에서 거주했는데, 교회 등 종교시설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본 적도 없습니다. 북한에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⁴⁶⁹

그림 IV - 14 북한의 주요 종교시설



금강산 신계사(강원 고성)
(2003년 재건축)



봉수교회(평양)
(1988년 건립, 2008년 재건축)



장충성당(평양)
(1988년 건립)

* (자료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연합뉴스, 통일뉴스

(2) 반(反)종교 교육

북한 당국은 학교·기업소·법기관·군대 등 각종 조직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反)종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⁴⁷⁰ 특히, 기독교, 선교사, 성경책이 반종교 교육의 주요 대상으로, 교육기관에서는 선교사를 나쁘게 묘사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반종교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학교나 중학교 재학 중에 ‘선교사가 자신이 버린 사과를 주워 먹은 아이의 이마에 염산(또는 만년필)으로 도적놈이라고 새겼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됐다.⁴⁷¹

이러한 교육은 대학에 가서도 계속되었으며, 물론 종교를 접할 기회가 많은 해외 유학생도 정기적으로 반종교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한 증언자는 대학에서는 월 1회, 유학기간 중에는 2주에 한 번은 반종교 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북한 당국은 해외 유학생들이 선

⁴⁶⁹ TPK8GF2281

⁴⁷⁰ JUZ0TT2380, 00RIT62440, AWQ1RI1386, YNNL9N2323, 1ND60Q2377, A6RSEV2353, JUZ0TT2459, 8IUFR2453, ROD6PD2469, 93VI9U2478

⁴⁷¹ 8IUFR2414, V6PE6V2232, 8WHPWX2397, JUZ0TT2459, 8IUFR2453, ROD6PD2469, 93VI9U2478, GGEEKL2236, DXQLXA2122

교사들의 포교 활동에 회유되거나, 종교를 통해 사상이 변질될 것을 경계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종교 교육은 중학교, 대학교(2016~2018년)는 물론, 유학시절(2018~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1910~1920년대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마당에 떨어진 사과를 주워 먹은 아이의 이마에 뽕족한 만년필로 ‘도적’이라고 새겼다는 이야기는 북한에서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탕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찾아가는 아이들을 인체(생체)실험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나쁘게 설명하는 이야기는 학교에서 소년단 지도원이 했습니다. 대학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반종교 교육을 들었고 유학 시기에도 2주에 한 번은 ‘선교사들의 포섭을 경계하라, ‘한시도 각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⁴⁷²

북한 당국의 반종교 교육은 학교 교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조직생활에서도 계속됐다. 인민반 강연 등을 통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반동분자’라며 이들을 보면 신고하라고 교육했다. 직장에서도 성경책, 종교 활동 등 타 지역 적발 사례를 보여주면서 ‘종교는 사람을 망가뜨린다.’, ‘종교를 믿으면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종교는 생각을 마비시킨다.’는 내용의 영상물을 활용하여 반종교 교육을 실시했다.⁴⁷³ 한 증언자는 계급교양관에서 ‘종교는 침략자들이 북한에 가져온 것으로 그들이 성경도 가져왔다.’는 내용의 반종교 교육을 받았는데, ‘기독교인들은 제국주의적 침략의 앞잡이이므로 반민족적·반혁명적 적대계층’이라는 것이 골자였다고 했다.⁴⁷⁴

이처럼 북한 주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강제적으로 반종교 교육을 받았으며, 자연스럽게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다. 실제로 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반동분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경책을 사상을 변질시키는 책으로 알고 있었다.⁴⁷⁵ 한 증언자는 ‘종교는 허황된 것이고 거짓’이며, ‘선교사는 악한

⁴⁷² YNNL9N2323

⁴⁷³ 1ND60Q2377

⁴⁷⁴ 8CWCD32231

⁴⁷⁵ AWQ1RI1386

자'라고 세뇌 당했기 때문에, 감히 종교에 관심을 가질 생각도 하지 못했고 '선교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지금도 무섭다고 했다.⁴⁷⁶

“2010년경 주민들을 모아 놓고 교양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 때 틀어준 선전물을 통해 처음 성경책과 예배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북한 선전물에서는 계급이 나쁜 사람들 특히 지주들 자식들이 지하에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자기네 나라님을 별도로 세우고 새로운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반동조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성경책에는 미신에 관한 것이 적혀있어 이것을 읽게되면 사상이 변질되니 이런 책을 보게 되면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반역자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재북 당시, 북한 주민들은 성경책이 북한 제도에 대해 안 좋게 적어놓은 책이며, 이를 소지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⁴⁷⁷

반종교 교육은 이 밖에도, 종교행위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은 종교행위로 인한 공개처형 집행 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처형장에 모인 주민들에게 처형 이유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처형했다. 죄명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수령님을 믿지 않는 반동분자'라며 수령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선동했다는 증언이 있었다.⁴⁷⁸

“1994년경 함경북도 ○○군 공설운동장에서 인민반에서 동원되어 공개처형을 봤습니다. 당시 인민반, 기관, 기업소를 대상으로 모두 참석하라는 동원령이 있었고 5~6천명이 있었습니다. 처형 전에 공개재판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마이크로 범죄 사실을 낭독해줬는데 죄명은 반역죄였고 범죄 사실은 성경책을 소지하고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형 대상자가 중국을 왕래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택에서 성경을 읽었고 보위부 스파이 신고로 보위부 단속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처형 이후 그 가족들은 강제실종되었고 그 집 재산들은 몰수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소리만 해도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수령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믿거나 모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⁴⁷⁹

⁴⁷⁶ V6PE6V2232

⁴⁷⁷ AWQ1RI1386

⁴⁷⁸ R0D6PD2469

⁴⁷⁹ R0D6PD2469

이처럼 북한은 반종교 교육과 처벌을 통해 주민들의 종교생활을 차단하고 있으며, 종교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에 관련된 사례가 많았다. 북한이 기독교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의 적극적인 선교활동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북지원 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중국 등 제3국에서 기독교 기반 선교단체를 접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최근까지도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서 기독교 단체들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⁴⁸⁰ 아울러, 세습통치의 기반이 되는 ‘유일사상체제’가 기독교 교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미국·유럽 등 서방 세계의 종교라는 점, 해방 전 북한 지역에 기독교 교세가 상당했던 점 등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는 러시아에서 인터넷을 접하게 되면서 북한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면서 기독교의 십계명과 ‘10대 원칙’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⁴⁸¹

(3) 종교행위 처벌

북한은 종교행위를 국가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보고 종교행위를 한 주민들을 처벌하고 있었다. 북한 당국은 기독교 관련 행위를 반국가적 범죄로 취급했으며, 국가보위기관에서 이를 담당했다. 실제로 북한에서 종교행위를 하다 적발된 주민들은 사형,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다.⁴⁸² 2017년 함경북도에서는 남한의 기독교 단체에서 보내준 ‘검은돈’을 받고 선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마을주민 12명이 보위부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두 명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고 나머지는 노동교화형 등을 선고 받았다고 했다.⁴⁸³ 2019년 평양시에서는 비밀리에 교회를 운영하던 기독교 집단이 보위부에 발각된 사례가 있었다. 5명은 공개처형되었고, 7명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으며, 30명은 노동교화형을 받았고, 가족 등 관련자 50여명은 강제추방

⁴⁸⁰ 93VI9U2478, 1JU8U71993, 80PADX1866, J2TWU71606, 9G37IQ1611, QIJF8N1482, 5KICI71423, T9FTW01483, 9BHNXT1391, NKZT071387, AWQ1RI1386, XX2N7E0796, NHHK8A0337

⁴⁸¹ S7UIML2223

⁴⁸² XWLLIS2413, TEIEJA2400, JUZOTT2380, 1LYGUU1634, 4PWM3A1067, APB6940304, BLO4W00639, 1BQ5TD2456

⁴⁸³ 5AEYZR1525

되었다고 했다.⁴⁸⁴

강제송환 이후 보위부 조사 과정에서도 종교행위 여부에 대한 추궁과 처벌이 이루어졌다.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기독교 단체와 접촉했거나, 소지품에서 성경 등이 발각되는 경우 가중 처벌되었다는 공통된 증언이 있었다.⁴⁸⁵ 한 증언자는 강제송환되어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동료 수감자가 성경책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독방에 수감되었으며, 총살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⁴⁸⁶ 최근 사례로는 2022년 황해남도 사례가 수집됐다. 한 증언자는 가택수색을 받던 중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되어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들었다고 했다.

“2022년 12월경 황해남도 ○○군 ○○읍에 사는 주민이 가택수색을 받았는데, 그 집에서 성경책 몇 권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교회시설이 없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몰래 모여 기도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주민의) 자세한 인적사항은 모르지만 교화형 15년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⁴⁸⁷

한편, 북한 당국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종교행위를 이어나갔다는 진술도 수집됐다. 한 증언자는 탈북 전까지 저장매체 등을 활용하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증언했다.

“저희 친정식구들은 성경책을 처음 접한 2009~2010년경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이면 온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과 같은 형식은 지킬 수 없었지만 기도를 하고 USB에 저장되어 중국에서 넘어온 목사님 설교말씀을 이어폰으로 듣고 찬송가도 따라 불렀습니다. 중국에서 밀수 일을 하는 형부를 통해 성경책과 USB를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성경책 두 권은 적발될 것이 두려워 모두 태웠습니다.”⁴⁸⁸

⁴⁸⁴ P3RFM51542

⁴⁸⁵ XWLLIS2413, 93VI9U2481, ORN6G61491, OTB3TR0817, 1LYGUU1634, 1BQ5TD2456, 8IUFRLL2361, 67MM9S2253

⁴⁸⁶ 1BQ5TD2456

⁴⁸⁷ TEIEJA2400

⁴⁸⁸ JBTG6E2120

다. 미신행위 단속·처벌

북한은 미신행위를 비사회주의적 행위라는 이유로 범죄로 규정하고, 「형법」, 「행정 처벌법」 등을 근거로 이를 처벌하고 있다.⁴⁸⁹ 북한 당국은 미신행위 확산을 막기 위해 단속과 함께 처벌 규정도 강화하고 있다. 2015년 이후 「형법」 개정을 통해 ‘미신행위죄’의 최고 형량을 기존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서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으로 늘린 바 있다. 최근 탈북한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미신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 이외의 사상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미신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있다. 주민 대상 강연회 등 각종 교육을 통해 미신행위 관련 처벌사례를 소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는 다수 증언이 있었다.⁴⁹⁰ 하지만,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교육 및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에는 미신이 만연해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미신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戊戌年)이 ‘미친개의 해’라는 미신을 믿고 출산을 회피하자 이를 비판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등 미신 타파를 위한 당국의 교육이 있었지만, 이미 생활 곳곳에 미신이 퍼져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2018년도 강연에서는 사람들이 2018년도를 ‘미친개의 해’라서 아이를 많이 안 낳고 낙태를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미신을 믿지 말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장려했습니다. 믿지 말라고 교육은 하지만 사실 북한 사회에 미신을 믿는 것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병원에 진료를 하러 가도 상문풀이(喪門풀이, 상사로 인해 생긴 부정을 푸는 의식)부터 하고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미신을 많이 믿으니 북한 당국에서 2023년도부터는 미신 단속을 더욱 엄격하게 합니다. 결혼식 같은 것을 손 없는 날로 잡아도 그것도 미신으로 단속된다고 합니다.”⁴⁹¹

⁴⁸⁹ 「형법」(2022) 제291조 (미신행위죄) 미신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미신행위를 하였거나 미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행정처벌법」(2021) 제305조 (미신행위) 미신행위를 한 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⁴⁹⁰ BW8MUL2358, 13PN7Y2325, 1NR82V2465

⁴⁹¹ 5VRQH72406

과거에는 미신행위가 발각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뇌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무속인 등 미신행위자가 단속에서 적발되면 행정처벌의 하나인 노동교양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⁹² 미신행위에 참여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적발되더라도 경고만 받았을 뿐 법적 처벌은 없었으며, 구금된 경우에도 뇌물이 통했다. 한 증언자는 2015년경까지만 해도 미신행위를 한 무속인이 보안서에서 구금조사를 받고, 뇌물을 주고 풀려났다고 했다.⁴⁹³

“2015년경 양강도 ○○시 ○○마을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는데, 보안서에서 점을 보는 척 속이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점쟁이를 잡았다고 합니다. 구금된 점쟁이는 보안서에서 나오기 위해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모아서 뇌물을 먹이고 겨우 나왔다고 들었습니다.”⁴⁹⁴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체제 유지와 주민통제를 목적으로 ‘비사회주의 투쟁’을 내세워 미신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다. 인민반, 여맹 등 조직과 단체를 통해 ‘미신행위를 한 자는 모두 색출해 처벌하라.’, ‘미신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총살까지 할 수 있다.’ 등의 포고령과 각종 방침을 내리며 미신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방침을 지속적으로 전파했다.⁴⁹⁵ 특히, 2018년에는 ‘619방침’을 하달하고 미신행위 단속 조직인 ‘619그루뻐’를 결성하는 등 미신행위 척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평양시 ○○동 가내반 여맹초급단체 위원장을 했는데, 매달 국가에서 내려오는 방침이 주로 ‘비사회주의 현상 뿌리 뽑자, 미신행위 뿌리 뽑자’였습니다. 그러면 방침에 따라 결성된 ‘그루뻐’(조직)가 인민반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중 2018년 8월 초에 행해진 미신행위 단속은 평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 방침이 내려왔는데 이 방침을 ‘6월19일 방침’이라고 했고, 이 방침에 따라 미신행위 단속을 위해 619그루뻐가 결성되었습니다. 평양시에서만 50명가량이 색출되었습니다.”⁴⁹⁶

⁴⁹² JUZ0TT2380, K4HHNQ2264, JUZ0TT2459, 1NR82V2465

⁴⁹³ 00RIT62460

⁴⁹⁴ G2EEXE1947

⁴⁹⁵ NL8VTI1440, 83MMDMT1244, AWQ1RI1386, J46UK71442, K2EUR21592, 5VRQH72482

⁴⁹⁶ 83MMDMT1244

북한 당국은 '619그루빠'를 조직하여 각 지역별로 미신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고, 강화된 형량에 따라 관련 행위자들을 처벌했다. 실제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평안북도, 함경북도에서 미신행위로 단속된 무속인을 공개처형했다는 공통된 사례들이 수집됐다.⁴⁹⁷ 또한, 같은 시기에 평양시, 양강도 혜산시, 함경남도 함흥시, 자강도 중강군에서도 무속인을 처벌했으며, 교화형 및 사형까지 선고했다는 사례들이 있었다.⁴⁹⁸ 증언자들은 김정은 방침 이후 과거와 달리 점을 보러 간 주민들도 노동교양처분 등으로 처벌했으며, 단순히 고사를 지내는 것까지도 처벌했다고 진술했다.⁴⁹⁹ 이러한 미신행위에 대한 단속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⁵⁰⁰

“미신행위로 이렇게 총살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미신행위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는데, 본보기로 총살까지 한 것 같습니다. 2018년 여름경 지인 중에 도 검찰소 검사가 있었는데, 검사 1명당 미신행위자 3명을 과제로 받았다고 말하면서, 주변에 미신행위자가 있으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⁵⁰¹

⁴⁹⁷ ULIF611577, T9KSL1913, APV7AZ1435, G2EEXE1947

⁴⁹⁸ NL8VT11440, J46UK71442, 1ND60Q2408, 83MDMT1244, K2EUR21592

⁴⁹⁹ TEIEJA2400, 83MDMT1244, 5VRQH72482, 93VI9U2476

⁵⁰⁰ 5VRQH72406, TGCAEV2403, TGCAEV2403

⁵⁰¹ G2EEXE1947

9.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견해나 사상을 구두 발언과 출판 등 다양한 수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19조에서도 모든 사람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구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타인의 권리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 필요한 경우에만 동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표 IV - 14 「자유권규약」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유권규약」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관련 목차)
제19조	제1항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구하고 받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3항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규정되고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의 존중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공중도덕의 보호
		공통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개인의 의견 표명, 언어·기호·그림·사진의 사용 등 모든 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 대상 및 수준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에는 위반 시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있어, 향후 북한 당국이 보다 노골적으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

북한에서 실질적인 언론·출판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으며, 북한 당국은 언론·출판의 목적을 체제 유지에 두고, 언론 매체와 출판물을 정권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

한은 「사회주의헌법」 제67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지만, 「출판법」에서는 그 목적을 ‘혁명적 출판 전통에 기초한 사회주의위업의 고수·발전’으로 제한하고 있다.⁵⁰² 「방송법」에도 제3조에 ‘방송사업에서의 주체성 확립 원칙’을 명기해두기도 했다.⁵⁰³

북한에도 언론 매체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매체는 당국의 보도지침만을 따라야 하며, 자유로운 취재 활동은 보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권을 찬양하고 주민을 계도하며 체제를 강화하는 선전도구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에서 방송업무 일체를 계획·총괄하는 기관인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북한 내각 소속으로 방송과 규제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⁵⁰⁴ 동 위원회는 당 정책 선전 등 방송내용을 정하여 각 지역 방송위원회에 하달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기자들은 당국의 지시하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거나 주민들이 풍요롭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만을 기사화할 수 있다. 재북 당시 언론과 출판 관련 업무를 경험했던 한 증언자는 지역별 방송위원회의 검토와 편집을 거쳤기 때문에 하달된 보도지침에 맞게 기사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했다.

“2001년경 양강도 방송위원회에는 시·군 방송위원회에 내려가 있는 기자들까지 합하여 8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양강도에서 열린 중요한 행사나 양강도 주민들의 생활상 등을 취재하여 방송위원회로 보내면 취재집필 담당 부위원장 산하에서 기사를 검토한 후, 편집 담당 부위원장 산하에서 기사를 편집합니다. 기자들은 모두 보도지침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민들이 풍요롭게 생활하는 모습들만을 기사로 작성하게 됩니다.”⁵⁰⁵

502 「사회주의헌법」(2019)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출판법」(1999)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판사업은 혁명적 출판 전통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위업을 고수 발전시키는데 복무한다. 국가는 출판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출판물의 정치사상성, 대중성, 진실성을 보장하여 인민들의 사상문화생활을 건전하고 풍부하게 하도록 한다.

503 「방송법」(2015) 제3조 (방송사업에서의 주체성 확립 원칙) 방송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 방송의 성격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방송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방송사업을 주체성의 원칙으로 우리 식대로 해나가도록 한다.

504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23. 312쪽 참고.

505 IXUEEP0470

나. 언어 사용 제한

(1) ‘말반동’ 단속·처벌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의견 표명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말반동’이다. 말반동이란 최고지도자나 노동당 및 북한 정치체제에 대하여 말 또는 행동으로 비난하는 행위 또는 비난을 표현한 사람을 뜻한다.⁵⁰⁶ 최고지도자 및 가족을 비판하거나, 북한 체제를 남한과 비교하는 것은 물론, 북한 당국을 원망하는 발언까지도 말반동에 해당된다. 말반동은 일상의 대화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주변사람, 통보원, 정보원 등 주변인들의 신고를 근거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일상 속 발언까지 통제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평소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증언자들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 항상 말조심해야 했으며,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다.⁵⁰⁷

“2008년 여름부터 ‘태양상’(김정일 모자이크 벽화)을 다시 만드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동원되었던 군당 간부가 돈이 많이 드는 태양상 사업에 불만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표한 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투덜거리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화근이 되어 밤에 살던 가족 모두가 실종되었고, 군 복무 중이던 간부의 아들 2명도 같이 실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중학교 앞에 있던 간부의 집도 하루사이 허물어진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간부의 집은 허물어지기 전까지 양강도 ○○군에서 손꼽히는 크고 멋진 집이었습니다.”⁵⁰⁸

북한 당국은 특히 최고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범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었으며, 이는 여러 증언들을 통해 확인됐다. 대부분의 경우 말반동 혐의는 발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처벌 대상이 됐다. 한 증언자는 김정은 자녀에 대한 유언 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발언자를 포함한 일가족이 강제추방 당했다고 진술했다.

⁵⁰⁶ 국가인권위원회, 『한·영 북한인권용어집』, 2016. 145쪽 참고.

⁵⁰⁷ 1BX4NN0758, NQCJLO0769

⁵⁰⁸ NQCJLO0769

“초급중학교 재학 시절인 2014년경 옆 반 친구 친형이 김정은에 대해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그 집 가족이 다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3태자를 낳았다. 연개소문도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들 때문에 망한 것처럼 김정은도 그 아들 셋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로 옆 반 친구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그 집안 전체가 강제추방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⁵⁰⁹

2018년에는 사적인 자리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 평가한 도당 간부가 가족과 함께 체포된 이후 행방불명된 사례도 있었다.⁵¹⁰ 도당 간부를 신고한 사람은 주변사람들이었다. 같은 시기 함경남도에서는 노부부가 염소 한 마리를 훔쳐간 군인들에게 ‘남한의 괴뢰 군보다 못한 놈들’이라고 발언했다가, 발언 다음날 체포되어 정치범으로서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증언이 있었다.⁵¹¹

“2021년 황해남도에서 한 농장원이 ‘당대회를 해도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농사짓는 것은 같고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 농장원의 말을 들은 사람이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농장원은 어느 날 그냥 사라졌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⁵¹²

말반동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내역은 문건에 등재되며, 가족과 후손까지 특별 관리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¹³ 한 증언자는 2014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문건을 보게 되었는데, 문건에서 과거 할아버지가 말반동으로 정치범수용소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자신의 개인문건에 할아버지가 1970년대에 ‘반호반동선전’⁵¹⁴으로 처벌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했다.⁵¹⁵

⁵⁰⁹ DFM95V2357

⁵¹⁰ RUIF6F2209

⁵¹¹ 72ZY6C2044

⁵¹² TGCAEV2403

⁵¹³ 9BP73G0224, KRV1AU2326, BLO4W00639, 030NIJ1912

⁵¹⁴ 국가보위성에서는 김일성·김정일 등 최고지도자를 비난하는 사건을 ‘반호사건’이라고 불렀다. (NJOZKK1881)

⁵¹⁵ KRV1AU2326

북한 당국은 구술 이외에 비판적인 벽서나 벽화도 말반동으로 강력히 처벌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었다. 2016년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는 김정일과 김정은을 비방하는 낙서가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북한 당국은 황해북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1년 반에 걸친 자필검사를 통해 범인들을 찾아냈고, 공개처형시켰다고 한다.

“2016년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여자 3명이 공개처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리원시 ○○동 종합장마당 화장실 벽과 ○○동 군수동원총국 앞길에 있는 바위에 김정일, 김정은을 비방하는 낙서가 있었는데, 그 낙서사건으로 황해북도 사람 전체를 자필검사해서 1년 반 정도 후 낙서한 사람을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처형에 앞서 (평양 국가보위부 주관으로) 공개재판이 있었는데, ‘낙서사건으로 인한 특대형 사건이므로 형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⁵¹⁶

(2) 북한식 언어 강제

북한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형식까지도 강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남한식(‘괴뢰식’) 말투를 검열하기 위하여 수시로 휴대전화 단속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부에 실명이 아닌 별명으로 저장을 하거나, ‘~님’, ‘~쌤’, ‘아빠’라고 저장하면 남한식 표현이라는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 됐다. 증언자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당국의 주요 검열 대상이었으며, ‘~했어요.’ ‘빨리 와!’ 같은 말투는 남한식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⁵¹⁷

“2017년 109상무에게 손전화기(휴대전화) 검열을 받았습니다. ‘~했어요.’ 같은 남한 말투, 기호로 표시하는 언어, 사회주의 생활방식에 맞지 않는 것, 우리식이 아닌 말과 말투 등은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⁵¹⁸

⁵¹⁶ 1J9VEU1801

⁵¹⁷ 2ITQJ51282, 4TYPAG0762

⁵¹⁸ 2ITQJ51282

다. 기타 표현의 자유 제한

(1) 비(非)사회주의적 예술표현 제한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예술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그림, 사진, 영화 등 모든 예술적 표현과 내용은 감시와 검열, 통제의 대상이다.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이야기는 사상이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데, 그에 반해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일상적이고 사실적이며 현실적인 내용이어서 더욱 재미있게 느껴졌다고 한다.⁵¹⁹ 한 증언자는 남한 작품은 북한의 것과는 달리 당성이나 정치성이 없고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여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고 진술했다.⁵²⁰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도 단속 대상으로,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사진만 소지할 수 있다. 외국 사진은 비사회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증언자들은 청바지 사진, 각종 광고 사진, 케이크 사진, 외국 호텔 사진, 하트 사진, 옷을 입은 짐승 그림, 낮 시간에 별이 떠 있는 그림, 외국어가 기재된 문구 등은 이질적이라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되었다고 했다.⁵²¹ 북한 주민들이 소지할 수 있는 그림은 ‘김일성화(花)’, ‘김정일화(花)’⁵²²를 비롯한 북한 그림에 한정된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8년 초 함경북도 회령시 ○○동에서 청년동맹, 노동 상무 등 단속원들에게 손전화기(휴대전화) 단속을 당했습니다. 오락(게임)도 조선(북한) 것만 해야 하고 김일성화, 김정일화 등 조선 그림만 있어야 합니다. 케이크, 장미꽃, 외국 호텔, 영어가 있는 그림 등은 외국식이라고 단속을 합니다. 손전화 안에 책(e-book)도 국가에서 보라고 한 책 이외의 책을 다 단속했습니다.”⁵²³

⁵¹⁹ ETRLM22255

⁵²⁰ ZLEDL41338

⁵²¹ 2ITQJ51282, 4TYPAG0762

⁵²² ‘김일성화(花)’는 1965년 김일성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수카르노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열대화초이며, ‘김정일화(花)’는 베고니아 품종으로 1988년 일본 식물학자가 김정일에게 헌정한 꽃이다.

⁵²³ 4TYPAG0762

“2017년 손전화기 검열을 받았는데, 이때 영어가 적혀 있는 곰 그림이 단속되었습니다. 곰 그림은 구입할 때부터 전화기에 깔려있던 그림입니다. 곰 그림은 외국 그림이고 우리나라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기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단속된 것입니다. 또한 청바지 입은 그림(사진), 승용차·비행기·배 광고 그림, 외국 글자가 들어간 그림, 낮 시간인데 별이 떠 있는 그림, 운동모자 쓴 그림,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영화나 체육경기를 손전화기로 녹화해서 보는 것, 짐승에 옷 입힌 그림 등은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⁵²⁴

(2) 북한식 복장 강제

북한 당국은 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옷차림이나 두발, 장신구 착용 등도 규제하고 있다. 개인은 옷차림을 통해 자아와 가치관을 표현하기도 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이나 사고가 규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 매체들은 주민들에게 계절 특성에 맞는 옷차림을 권장하면서 옷차림과 몸단장은 사상·정신상태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선전한다.⁵²⁵ 증언자들은 당국의 이러한 규제에는 주민들의 사회주의적 사고와 정체성을 강화하고자하는 목적이 담겨있다고 진술했다.

“2014년 이후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인민생활에 대한 통제가 심해져 주민 대부분이 통제된 생활에 대한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서양식 날라리풍 옷이나 머리모양을 금지하고 있으며 초상화 단속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맹규찰대, 대학생규찰대, 학생규찰대가 단속합니다.”⁵²⁶

⁵²⁴ 2ITQJ51282

⁵²⁵ “(김정일은) 일찍이 사람들의 옷차림과 몸단장은 단순한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사상정신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이며 단정한 외모는 사람들의 인품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정서와 풍치를 돈구어준다고 가르쳐 주었다. 시대와 계절적 특성에 맞게 옷차림을 잘하는 것은 사회에 아름다운 생활문화와 건전한 생활기풍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노동신문, 2023.7.9. 6면 참고)

⁵²⁶ I9IMQL0545

그림 IV - 15 북한 매체에 등장한 북한 여성들의 복장



* (자료출처) 노동신문(2021.8.27 / 2022.8.18 / 2023.3.6.)

이러한 규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다수 증언에 따르면 일상 속에서의 비사회주의 단속은 이를 목적으로 조직된 연합지휘부, 규찰대, 청년동맹 등에 의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⁵²⁷ 증언자들은 긴 머리, 염색, 네일아트 등은 단속 대상이었으며, 영어가 쓰여 있는 점퍼나 스키니진, 나팔바지, 점무늬 바지 등의 착용은 모두 비사회주의적인 것으로 허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해진 복장 규칙을 따르지 않는 주민들은 단속과 비판의 대상이 됐다.⁵²⁸ 한 여성 증언자는 과거에는 여자라면 바지를 입어서는 안 되며 항상 치마와 윗도리를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 했다고 했다.⁵²⁹ 다른 여성 증언자도 대학시절 청년동맹에서 복장 단속을 엄격히 했다고 회고했다.

“대학시절 교원대학 안에 청년동맹이 있었는데, 매일 청년동맹 위원들이 대학생의 옷차림을 단속합니다. 대학생도 교복을 입어야 하는데 자체로 구입해야 합니다. 여자 교복은 재킷, 치마, 바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력동원 등을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특히 오전에는 치마를 입어야 해서 바지를 입으면 청년동맹에게 단속됩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을 해도 단속되고, 귀 밑 2cm 단발머리만 허용되고 그 외 머리스타일도 단속됩니다.”⁵³⁰

⁵²⁷ VVDQ8Q1516, AWQ1RI1386, 1BX4NN0758, TYRIR50941

⁵²⁸ 8WHPWX2397, REUFYK2389, MNH2KG2026, VVDQ8Q1516, AWQ1RI1386, WBR3851008

⁵²⁹ DFFYXV2475

⁵³⁰ TYRIR50941

10.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로 언론, 출판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0조에서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를 가질 권리를 가지며 어떤 결사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21조도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했다.⁵³¹ 또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⁵³²

표 IV - 15 「자유권규약」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유권규약」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관련 목차)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공중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하며 법률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p style="text-align: center;">공통</p> <p style="text-align: center;">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p>
제22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제2항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공중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하며 법률에 규정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22조 제3항	이 조의 어떤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1948년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그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침해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⁵³¹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21.

⁵³² *Ibid.*, Article 22.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북한 법령은 모순된 입장을 보인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했다.⁵³³ 그러나 「형법」에서는 ‘집단적 소동죄’⁵³⁴, ‘정치협잡죄’⁵³⁵ 등 집회결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벌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는 반대로 법령을 통해 당국이 허용하지 않은 집회와 시위를 막고,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원하지 않는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없었다. 북한에서는 당국이 주최한 관제집회나 군중동원 행사 이외의 집회나 자유의지에 따른 결사는 허락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단체를 조직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1)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들은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증언자들은 재북 당시 참가했던 모든 집회들이 체제를 홍보하고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당국 주도의 군중시위였다고 회고했다. 정권수립일(9.9절) 등 관제집회에 동원된 사례, 북한 당국에 대한 충성심 고취 목적의 군중시위에 나가야 했던 사례 등이 수집됐다.⁵³⁶ 또한, 김정은 방침이 내려와 궐기대회를 했고, 남한에서 뿌린 ‘삐라(전단)’에 대한 반대 시위를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⁵³⁷ 북한 당국은 조선중앙TV를 통해 남한의 시위 장면을 보여주면서, “사회

⁵³³ 「사회주의헌법」(2019) 제67조.

⁵³⁴ 「형법」(2022) 제245조 (집단적 소동죄)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무기 또는 흉기를 이용하여 집단적 소동을 일으켰거나 집단적 소동을 일으키는 과정에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⁵³⁵ 「형법」(2022) 제246조 (정치협잡죄) 정치협잡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 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극히 엄중한 정치협잡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⁵³⁶ LXUIUC2307, TMJBDT2280

⁵³⁷ YNNL9N2323

가 썩었기 때문에 인민들이 시위를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⁵³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사회주의헌법」의 내용과 달리, 북한에서 개인의 의사 또는 이익에 따라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집단행위를 집단적인 저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에서 자유의지에 의한 결사는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2016년경 평양 소재의 여러 대학 학생들이 모여 ‘잉글리시 클래스’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당국에서 해체시켰다는 진술이 있었다.⁵³⁹ 또한, 근로경험이 있는 증언자들은 직장에서 근로조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외 없이 “아니었다.”고 응답했다.⁵⁴⁰ 대부분의 증언자들은 조합을 결성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2) 참여하지 않을 권리 침해

북한 당국은 관제집회나 군중동원 행사에 주민들을 동원했고,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국 주도의 군중동원 행사는 대부분 정치적인 성격으로, 체제선전 및 내부결속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김일성·김정일 생일(4.15./2.16.) 및 사망일(7.8./12.17.), 군대 창건일(2.8./4.25.), 정권수립일(9.9.), 노동당 창건일(10.10.) 등 소위 ‘명절’에는 반드시 대규모 군중동원 행사가 열렸다. 뿐만 아니라, 집단체조, 꺾기대회, 각종 선거, 가창대⁵⁴¹ 활동 등에도 주민들을 동원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 학년이나 특정 기업소를 지정하여 행사에 차출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정치행사를 준비하며 김일성·김정일의 동상에 꽃을 바치고, 기념탑을 청소하며, 길거리에서 선거를 독려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했다.⁵⁴²

⁵³⁸ FZ9ZSL0429

⁵³⁹ YNNL9N2323

⁵⁴⁰ 00RIT62445, 2G5GFH2345, Q6VZNC2339, 32CICV2337, U4G4Q32334, 5Q8LRL2333, 3RNTQV2332, UY2OY52324, R7KY7W2329, 13PN7Y2325, K6JGAA2321, KNCI462328, LYHUAW2322, 58H8N12317, TI7RBZ2320, QOP5852319, JQYD690967, 5QG11E2237, VT6HR92171, WEBX8G1034, 8WHPWX2382

⁵⁴¹ ‘가창대(歌唱隊)’는 ‘(주로 청소년 학생들로 조직된) 선전과 선동을 목적으로 노래 부르며 거리를 행진하는 대오’를 의미한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1권, 2017. 80쪽 참고)

⁵⁴² 93VI9U2481, MAV6AE2472, DFFYXV2473

관제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의무였으며,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주민들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다면 집회와 동원에 반드시 참석해야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동원에 불참했다면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당국의 비판은 물론 조직 내 다른 구성원들의 비난과 따돌림을 피할 수 없었다.⁵⁴³ 일부 주민들은 동원명단에서 빠지기 위해 돈을 납부하기도 했다.⁵⁴⁴

“김정은이 참여하는 행사를 ‘1호 행사’라고 해서 공화국 창건일(9.9.) 등에 김일성광장 앞에서 군중 시위에도 동원된 적이 있었고, ‘태양절’(김일성 생일, 4.15.)이나 ‘김일성 서거일’(7.8.)에 ‘태양궁전(김일성·김정일 시신 보관)’에 참배하기도 합니다. 김일성·김정일 생일이나 사망일에는 동상에 가서 꽃다발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특정 학년을 지정하여 해당되는 학년 전체가 동원되거나, 특정 회사가 지정되면 그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이 동원되는 식이었습니다. 불참할 경우 비판받기 때문에 불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⁵⁴⁵

지역별 차이는 있었지만, 북한 주민들은 연간 10회 내외의 관제집회에 동원됐다. 대규모 행사가 많았던 평양 지역에서는 특히 군중동원 빈도가 높았다. 평양 출신의 한 증언자는 횡불행사, 군중시위, 열병식 행사 등 1년에 약 10회 행사에 동원되었으며, 학생들이 참여하는 횡불행사의 경우 6개월 정도의 별도 훈련을 받아야 했다고 진술했다.⁵⁴⁶ 한 대학생은 2018년 기준 평양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정치행사에 참여해야 했다고 증언했다.⁵⁴⁷ 충성심 고취와 사상 결집을 위한 집회가 연간 10회 정도 개최되었으며, 매번 마지 못해 참가해야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⁵⁴³ LXUIUC2307, 00RIT62477, YNNL9N2323

⁵⁴⁴ 1BQ5TD2424,

⁵⁴⁵ LXUIUC2307

⁵⁴⁶ 5VRQH72482

⁵⁴⁷ YNNL9N2323

“2017년경 (평양에서) 1년에 10회 정도 당에 충성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지키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목적으로 관제집회에 동원되었습니다. 준비물로 통일된 복장을 입었습니다. 행사 목적에 맞게 도구를 들고 구호도 제창하고 함성도 지르고 했지만, 집회에 참가할 때면 마지못해 참석해서 끌려가는 코 낀 송아지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⁵⁴⁸

지방에서도 연간 5~10회의 군중동원 행사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김정일의 생일·사망일, 노동당 창건일 등 각종 계기 시 주민 참여를 강제했다. 2019년 양강도에 거주했던 증언자는 혜산시 예술극장 앞의 광장에서 진행되는 신년사 꺾기모임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에 동원되었다고 했다. 김일성·김정일 생일, 7월의 김일성 사망 애도기간, 12월의 김정일 사망 애도기간 등의 동원 행사에 참석했고, 최근에는 탈북민들을 타도하는 ‘꺾기대회’에도 동원되었다고 진술했다.⁵⁴⁹ 최근 증언으로는 2023년까지 1년에 총 10회 정도 정치행사에 참여해야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 증언자는 특히, 김일성 사망일에는 다 함께 모여 ‘인민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등 김일성 생전 활동을 담은 영상물을 시청했다고 했다.⁵⁵⁰

나. 조직생활 강제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강제로 부과된 조직생활을 해야만 했다. 집단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7세부터 퇴직 시까지 가정과 사회, 직장에서 조직생활이 강제되고 있었다. 증언자들은 재북 당시 예외 없이 조직에 소속되어야 했으며, 소속된 조직에서 의무 이행을 강요받았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⁵⁴⁸ TMJBTD2280

⁵⁴⁹ 1ND60Q2408

⁵⁵⁰ XHQ3O62407

표 IV - 16 당원이 아닌 북한 주민의 가입 조직

성별		7세~16세		17세~30세		30세 이상	
男	→	조선소년단	→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	(일반 노동자)	조선직업총동맹
						(농장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女	→					(일반 노동자)	조선직업총동맹
							(농장원)
		(전업주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북한 주민들은 생애주기별로 사회조직에 가입해야 했다. 당원이 아닌 주민은 연령, 직업, 성별에 따라 소년단(‘조선소년단’), 청년동맹(‘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직맹(‘조선직업총동맹’), 농근맹(‘조선농업근로자동맹’),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등 노동당의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사회단체에 가입했다.⁵⁵¹ 조직생활은 소학교 2학년인 7세에 청소년 조직인 소년단 가입으로 시작되며,⁵⁵² 고급중학교 졸업 이후에는 청년동맹에 가입했다. 청년동맹 기간 중 노동당원이 되면 청년동맹원에서 해제되었지만, 당원이 아닌 주민들은 직업과 결혼 유무 등에 따라 각각의 조직에 소속됐다.

표 IV - 17 북한의 사회조직

조직 명칭 (약칭)	가입 대상	주요 내용
조선소년단 (소년단)	7세부터 16세까지 학생 (소학교 2학년~ 고급중학교 3학년)	·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 관리하는 청소년 조직 · 북한 조직생활의 출발이 되는 단체로 다양한 행사에 동원(붉은색 머플러)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청년동맹)	17세부터 30세까지 당원이 아닌 모든 청년과 학생	· 북한의 모든 청년과 학생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 는 북한 최대 조선노동당 외곽단체 · 조선소년단에 대한 지도권한 보유
조선직업총동맹 (직맹, 직총)	30세 이상 노동자 및 사무원	· 남녀 노동자(공장·기업소·탄광·광산 등) 및 사무원이 가입하는 조선노동당 외곽단체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농근맹)	농업 종사자	· 농업 종사자들로 조직된 조선노동당 외곽단체 · 농민층에 대한 당 노선과 사상교양 규율·통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여맹)	전업주부 (기혼여성)	·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를 가입 대상으로 하 는 조선노동당 외곽단체

북한 주민의 사회단체 가입과 자격 박탈은 개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노

551 8WHPWX2410, JUZ0TT2459

552 OORIT62468

동당에 입당하지 못한 30세 이상의 주민들은 직맹 또는 농근맹에 가입됐고, 기혼여성 중 전업주부는 여맹에 가입됐다. 이는 직장 배치나 ‘결혼등록’(혼인신고) 등의 행정절차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는 불가능했다.⁵⁵³

“여맹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여맹원들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아서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입절차는 따로 없고, 결혼한 여성은 자동으로 여맹원이 되기 때문에 저도 1991년 결혼등록을 하면서 여맹원이 된 것입니다.”⁵⁵⁴

북한 주민들은 소속 조직에서 조직생활을 하며, 강제된 의무와 과제를 이행해야 했다. 주민들에게는 소속 조직별로 각종 지원물품 납부, 노력동원, 강연회와 학습 참여 등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과됐다. 청년동맹은 학교 차원의 각종 납부물품이나 ‘꼬마계획’⁵⁵⁵을 맡고 있어서 소속 학생들에게 토끼가죽, 파철, 파고무, 파지, 파알루미늄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동맹원들은 각종 강연회와, 무보수 노력동원 등에 동원되기도 했다. 탈퇴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무조건 참여해야 했으며, 불참이 여러 번 누적되면 공개비판을 받게 됐다.⁵⁵⁶

그림 IV-16 관제 군중집회에 동원된 북한 주민들



* (자료출처) 조선중앙통신(2023.6.25.), 노동신문(2021.2.20.)

553 ROD6PD2386, 8WHPWX2382, KQ9C5Q2261, A84W651253, 1NR82V2465, 8IUFLR2453, ROD6PD2469, 1NR82V2457

554 A84W651253

555 ‘꼬마계획’은 ‘소년단원들이 좋은일하기 운동의 목표를 내걸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운 계획’을 의미한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4권, 2017. 488쪽 참고)

556 YNNL9N2323

조직에서 부과한 과제와 의무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 전업주부인 여맹원들에게는 매년 토끼가죽, 작업용 장갑, 말린 산나물, 기름이 나오는 작물 등의 과업이 부과됐다. 필요시 현물과 현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기도 했다. 대규모 건설이 진행 중인 지역의 여맹원들은 수일씩 건설현장에 동원되었기에 노력동원은 여맹원에게 큰 부담이었다. 각종 동원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여맹원의 경우에는 '수익금조(組)'로 편성되어 매달 또는 매년 1회 정해진 금액을 단체에 납부하기도 했다.⁵⁵⁷

조직 활동 불참자 및 과업 미수행자에 대한 처벌과 조직원 간 연대책임은 의무 이행 강요 수단으로 활용됐다. 직맹원들에게는 지원물품 납부, 노력동원, 강연회와 학습 참여 등의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불이행 시 책임비서들이 보위원 등에게 보고했고 처벌이 내려졌다.⁵⁵⁸ 또한, 조직원으로서 부과된 과제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른 조직원이 그 사람의 몫까지 부담하는 등 피해를 입기도 했다.⁵⁵⁹

이외에도 행정조직인 인민반을 통해서도 조직생활을 강제하고 의무를 부과했다.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인민반원들은 지나치게 자주, 높은 강도의 노력동원을 강요당했다.⁵⁶⁰ 인민반 동원 또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온 가족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노력동원에 대신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⁵⁶¹

⁵⁵⁷ OORIT62434, FJ391D2148

⁵⁵⁸ 1BQ5TD2458

⁵⁵⁹ 5VRQH72482

⁵⁶⁰ 1NR82V2474, 1NR82V2457

⁵⁶¹ Z4F5JE2331, 8IUFR2437

11. 참정권

‘참정권’은 시민이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제도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1조에서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민의 의사는 정부 권위의 기초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25조에서도 모든 시민은 어떤 차별이나 제한 없이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에 의한 정치참여 권리를 가지며, 차별이나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⁶²

표 IV - 18 「자유권규약」과 참정권

	「자유권규약」	참정권 (관련 목차)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언급된 어떠한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않으며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공통 참정권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가 선거 참여 및 찬성투표 강제
	(b)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하고 정기적인 선거에서 투표하고 피선되는 것	나 직접·비밀선거의 원칙 위반
	(c) 일반적인 평등한 조건 하에 자국의 공직에 취임하는 것	다 피선거권의 제한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해 법령을 통해 주민의 민주적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⁵⁶³ 하지만, 실제 북한 당국은 주민의 선거 참여 및 찬성투표를 강제해왔고, 선거 원칙도 위반하고 있었다.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했으며, 피선거권도 제한받고 있었다. 북한에서의 선거는 유권자가 정치적 대리인을 선

⁵⁶²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25.

⁵⁶³ 「사회주의헌법」(2019)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6조 군(郡)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출하는 절차가 아니었으며, 당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선전하고, 당국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형식적 수단에 불과했다.

가. 선거 참여 및 찬성투표 강제

투표는 외부의 직·간접적인 압력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소극적인 자유, 즉 기권할 자유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5호에서 독립된 선거기관이 선거절차를 마련하여 감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거가 이행되도록 해야 하며, 투표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보장하는 법률체제 내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⁶⁴

하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들이 선거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탈북민들은 재북 당시 선거를 ‘공민이라면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의무’로 인식했다고 증언했다. 선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북한에는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며, 무조건 참여해야 했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다.⁵⁶⁵ 증언자들은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 참여과정에서 불참하거나 누락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꽃제비’(노숙자)까지도 모두 선거에 참여해야 했다고 진술했다.⁵⁶⁶

그림 IV - 17 북한의 선거 (도·시·군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



* (자료출처) 노동신문(2023.11.17.左/ 2023.11.27.)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2023.8.)에서 개정된 ‘대의원 선거법’ 적용, 찬성(녹색), 반대(적색) 선거함 등장

⁵⁶⁴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5, Article 25: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and the right to vote, para. 19~20.

⁵⁶⁵ SYKDH2214, C6MTJ12185

⁵⁶⁶ 7CRICZ2168, NGBQ341169, 67MM9S2253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선거 참여 및 찬성투표를 강제했다. 북한의 선거는 항상 100% 가까운 선거 참여율을 자랑한다.⁵⁶⁷ 하지만 이는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강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북한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의 투표를 위해 선거위원회 위원이 ‘이동 선거함’을 가지고 세대를 방문하여 투표하도록 조치했다.⁵⁶⁸ 주민들은 개인이 아닌 인민반별로 ‘선거장’(투표소)으로 이동해야 했으며, 인민반장은 선거인 명부를 통해 인민반 주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했다.⁵⁶⁹ 투표를 위해서는 공민증이 필요했는데, 공민증이 없는 주민은 안전부에서 선거당일 임시공민증을 발급해주었다.⁵⁷⁰ 또한, ‘선거 선전’ 활동을 통해 선거에서의 반대투표, 기권, 선거파괴 선동 등을 사전에 차단했으며,⁵⁷¹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창대를 활용하기도 했다. 중학생들로 조직된 가창대는 선거 독려뿐만 아니라 ‘모두 다 선거어로…찬성투표’, ‘선거에 한 사람 같이 백 프로 찬성투표 합시다.’ 등의 구호를 통해 주민들에게 찬성투표를 종용했다.⁵⁷²

“2019년 7월 함경북도 ○○시에서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선거 3일 전 즈음 인민반장이 각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선거 인원수를 파악합니다. 저는 공민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현장에서 임시공민증을 받고 투표했습니다. 선거장까지는 인민반별로 같이 이동합니다. 투표장 입구 벽에는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라는 구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투표소 인근에는 초·중·고급 중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가창대가 길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합니다. 과거 두 번의 가창대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단축하고 일과 중 활동합니다. 선거 10일 전부터 ‘선거의 노래’를 주로 부르고 ‘모두 다 선거어로…찬성투표’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⁵⁷³

567 최근 북한 주요 선거 참여율(북한 발표 기준) : ①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대의원 선거(2019.3.) 99.99%, ②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2019.7.) 99.98%, ③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2023.11.) 99.63%

568 TMJBDT2280, NGBQ341169

569 31ZJ9K2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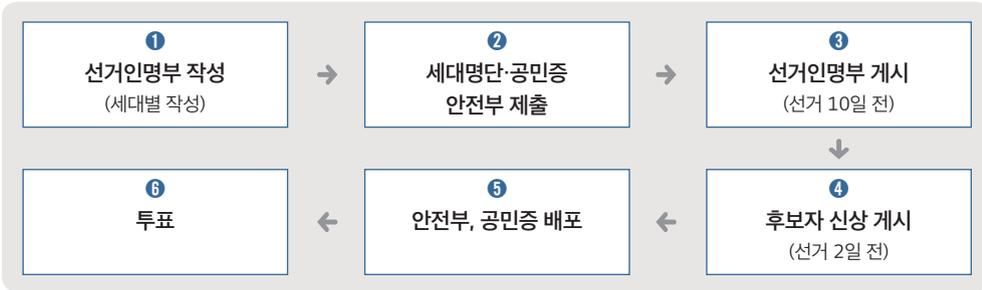
570 EL2PVO2035

571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53조 (선거선전의 금지사항) 선거선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금지한다.
1. 반대투표, 기권, 선거파괴를 선동하는 것
2. 개별적후보자를 비방하는 것
3. 선거위원회의 승인 없이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는 것
4. 선거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은 선전조직을 내오는 것

572 1JU8U71993, S1YETU1914

573 S1YETU1914

그림 IV - 18 북한의 선거 절차 (기록센터 조사 기준)



북한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 북한의 선거에는 별도의 기표 절차가 없었으며, 사실상 반대투표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100%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선거까지는 선거장 안에서 선거위원회 위원의 공민증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배부 받고 투표실에서 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났다. 또한, 유권자들은 자신이 투표하는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고 후보자가 한 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관심도 없었다.

“2019년 3월 양강도 ○○군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북한에서) 선거 불참은 가능하지 않고 장애인이나 환자들도 이동 선거함에 투표하게 됩니다. 반대투표 방법을 몰랐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응당 찬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장에 가면 후보자 사진과 약력이 써 붙여져 있는데 언제 공고하는지는 모르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습니다. 후보자는 1명이었는데, 선거당일 하루 피떡 보니까 누가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⁵⁷⁴

대부분의 증언자들은 반대투표한 사람을 목격하거나 들어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반대투표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증언자들은 공통적으로 반대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⁵⁷⁵ 반대투표 시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없었고, 오히려 처벌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반대투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⁵⁷⁶

⁵⁷⁴ 1JU8U71993

⁵⁷⁵ UYSKRB2399, TGCAEV2403, XHQ3062395

⁵⁷⁶ 7CRICZ2168

“2019년 3월경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가 있었고,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불참은) 당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반동’으로 처분 받습니다. 인민반장은 책임진 인민반원을 선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그냥 찬성투표하여 투표함에 넣기만 하였습니다. 반대투표나 기권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필기구는 없고, 투표용지만 받아서 투표함에 넣으면 끝납니다.”⁵⁷⁷

북한 당국은 선거를 주민통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선거인명부를 통해 실질적 인구조사가 가능했고, 타 지역으로의 이동 및 탈북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⁵⁷⁸ 인민반장은 명부 작성을 통한 주민들의 주소지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들에게 선거 전 이동 자제를 요청했다.⁵⁷⁹ 선거 당일 이동이 필요한 주민은 이동 사유와 행선지를 선거위원회에 알리고 ‘이동 선거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이동 선거증은 거주지 선거구에서 행선지의 선거구에 문서를 보내는 형식으로 작성했고, 선거증을 발급받은 주민은 거주지 명부에서 제명했다.⁵⁸⁰

한편, 최근 북한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제도에 일부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진술은 수집되지 않았으나,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일부 변화 동향이 확인됐다.⁵⁸¹ 2023년 8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대의원 선거법」을 개정하여 예비선거, 찬반 투표함 설치 등을 적용했다. 개정된 선거법 적용 이후 100%와 다름없던 북한 주민들의 투표 참가율이 소폭 낮아졌다. 북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는 2023년 11월 진행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선거자(유권자)의 99.63%가 투표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선거장에 가기 어려운 주민들은 이동투표함을 통해 투표했으나, 해

⁵⁷⁷ TMJBDT2280

⁵⁷⁸ SYKDH2214, 4618281547

⁵⁷⁹ 4618281547

⁵⁸⁰ 31ZJ9K2121,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33조, 제34조

⁵⁸¹ 2023년 8월 개정된 「대의원선거법」의 주요 변화내용은 첫째, 찬성과 반대 2개의 투표함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투표용지(제64조)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었다. 둘째, 한 개의 선거구에 등록 가능한 대의원 후보자를 1명으로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개정 전 ‘선거구’에 등록될 대의원 후보자수를 제한하지 않는다.(제42조)는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경쟁선거의 가능성을 법적 차원에서도 배제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박서화, 『북한 「대의원선거법」의 수정·보충과 그 함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4.1. 참고)

외 근무 등 부재자들은 참가하지 못했다고 했다.⁵⁸² 항상 100%를 자랑하던 찬성률도 감소했다. 북한 매체들은 도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 찬성률은 99.91%, 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 찬성률은 99.87%였으며, 반대표가 각각 0.09%, 0.13%가 나왔다고 전했다.⁵⁸³

그림 IV - 19 북한의 선거 투표함 변화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



(과거) 백색 단독 투표함

(현재) 찬성, 반대 2개의 투표함

* (자료출처) 노동신문(2019.7.22./ 2023.11.27.)

나. 직접·비밀선거의 원칙 위반

직접·비밀투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필수조건이나, 북한에서는 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25조는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도 시민에 의한 직접 참여의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 어떠한 비합리적인 제한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투표권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나 폭력에 대한 위협, 강요, 유도 또는 조작적인 간섭이 없어야 하고, 부재자 투표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비밀 투표의 요건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표권자는 어떻게 투표했는지 밝히도록 하려는 강제 또는 압박과 투표 절차에 대한 불법적이거나 임의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다.⁵⁸⁴

⁵⁸² 노동신문, 2023.11.27. 3면.

⁵⁸³ 조선중앙통신, 2023.11.28.

⁵⁸⁴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5, Article 25: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and the right to vote, para. 6, para. 19, para. 20

하지만,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규범들이 명시한 선거의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었다.

먼저, 북한에서는 직접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선거법에서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선거자(유권자)가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자기 의사에 맞게 투표할 수 있다’고 하여 대리투표를 인정하고 있었다.⁵⁸⁵ 한 증언자는 부모님이 앞을 보지 못해 투표실에 같이 들어가 대신 투표했다고 진술했다.⁵⁸⁶ 또 다른 증언자는 투표 당일 다른 지역에 있게 되어 투표가 불가능했었는데, 거주지의 리(里) 사무장이 대리투표 해주었다고 증언했다.⁵⁸⁷

중요한 선거 원칙 중 하나인 비밀선거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다른 주민이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볼 수 있었다는 다수의 진술이 있었다. 반대할 경우에만 후보자 이름에 선을 그어야 하는 선거법 개정 이전 북한의 투표방법은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했다. 찬반 여부에 따라 투표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한 증언자는 2019년 3월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중 인민반장이 투표실 출입구에서 주민들이 반대 표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⁵⁸⁸ 이동 선거함을 이용하여 투표한 경험이 있던 증언자들도 선거관리위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투표했기 때문에 반대 표시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⁵⁸⁹

다. 피선거권의 제한

피선거권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법률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에서는 선출직 출마에 대한 제한사항은 합리적이

⁵⁸⁵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67조 (이동투표) 중병, 연로, 신체장애 같은 사정으로 선거자가 선거장에 나올 수 없을 경우에는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이 선거표와 봉인된 이동투표함을 가지고 가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선거자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자기 의사에 맞게 투표하도록 할 수 있다.

⁵⁸⁶ WTNUL21649

⁵⁸⁷ 14SNZT0548

⁵⁸⁸ TN4PA91260

⁵⁸⁹ 8GMC4X1273, 1JU8U71993

어야 하고,⁵⁹⁰ 이를 법률로 정해야 하며⁵⁹¹ 선출직 출마를 비합리적인 이유로 차별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⁵⁹² 북한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법」에서도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직접 추천하거나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⁹³

“선거 후보는 당과 조국 인민 앞에 가장 성실하고 인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주민이나 단체가 대의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⁵⁹⁴

그러나 실제 북한의 선거에서는 후보자 추천은 일반주민이 할 수 없으며, 당에서 추천한 사람만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언자들은 시·군 당위원회에서 당원 여부, 나이, 출신성분 등 조건을 따져, 시·군 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로 추천했으며, 후보로 결정된 사람은 무조건 당선되었다고 했다.⁵⁹⁵

“대의원 후보는 시·군 당위원회에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는데, 당시 여성 대의원의 경우 나이, 노동자 계급, 시급(市級) 기관 소속자, 당원 등의 조건을 보고 추천하여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의원 사업부가 시·군 인민위원회에 있는데, 대의원의 조건을 마련하여 공표하면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기업소 등에서 뽑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당원 여부이고, 직업여성 여부를 보았습니다. 대의원 후보로 추천받게 되면 무조건 당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⁵⁹⁶

⁵⁹⁰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5, Article 25: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and the right to vote, paras. 15~18.

⁵⁹¹ *Ibid.*, para. 15.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 거주, 또는 출신과 같은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요구 조건에 의해, 또는 정치적 파벌 관계에 의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입후보함으로써 인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선출직에 출마할 권리와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투표권을 가진 이들이 후보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⁵⁹² *Ibid.*, paras. 17~18.

⁵⁹³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법」(2020) 제35조 (대의원후보자의 추천권자)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는 선거자들이 직접 추천하거나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추천한다. 추천자는 추천한 대의원후보자를 구 선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⁵⁹⁴ TMJBDT2280

⁵⁹⁵ R23IR10041, TMJBDT2280

⁵⁹⁶ R23IR10041

12. 평등권

‘평등권’은 누구나 갖는 불가침적 인권이며,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기본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7조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의 평등과 어떠한 차별도 없는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사람도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해서도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26조에서도 모든 사람의 법 앞의 평등과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위해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해서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IV - 19 「자유권규약」과 평등권

	「자유권규약」	평등권 (관련 목차)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공통 평등권

하지만, 북한 당국은 모든 주민을 ‘성분’⁵⁹⁷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성분이 좋지 못한 주민들은 이를 이유로 거주지, 대학입학, 직업 등에 있어서 평생 동안 차별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사회에서 성분에 따른 차별은 개인에게는 불가항력적이며,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영구적인 차별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신분제적 성격이 강한 성분과 계층에 따른 차별에 무감각했다. 북한 주민들은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성분이라는 기준에 따라 개인의 삶이 좌우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⁵⁹⁷ ‘성분(成分)’은 사회계급적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람들의 사회적 구분, 곧 사람들의 사상상 구성성분으로서 어떤 계급의 사상상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떤 계급의 사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출신과 직업, 사회생활의 경위에 의하여 사회성원을 사회적 부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2권, 2017. 1357쪽 참고)

가. 성분에 의한 사회계층 구분

북한 당국은 성분을 바탕으로 층위를 나누어 주민을 구분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성분'은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으로 구성된다. 출신성분은 계급적 토대, 즉 본인이 출생하여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부모의 '사회정치생활 경위'⁵⁹⁸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성분은 본인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업 및 사회 계급적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을 말한다.⁵⁹⁹

북한 주민들은 성분에 따라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 등 소위 '3대 계층'⁶⁰⁰으로 나뉘며, 그 아래 수십 개의 부류, 그리고 별도의 성분으로 구분된다.⁶⁰¹ 북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분은 여전히 북한 주민의 일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차별의 근거로 작용한다.⁶⁰²

성분과 계층은 '주민대장'⁶⁰³에 기재되는 사항이나,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출신성분이나 사회성분만 인지하고 있을 뿐 당국이 파악하여 기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지 못했다. 우리의 호적과 비슷한 성격의 주민대장은 통상 열람이 불가능한 문서로, 대상자 본인도 열람할 수 없었다.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성분과 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 채 주민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주민대장 열람은 지역 관할 사회안전성, 도·시당 간부부와 보위부 그리고 주민 성분을 파악해야 하는 주요기관 인사 담당자만 가능했다. 출신성분 즉 계급적 토대가 간부 등용 등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598 '사회정치생활 경위'는 본인이 학교에 입학하고 사회적 직업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생활한 경위를 말한다. (사법정책연구원,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2017. 120쪽)

599 사법정책연구원,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2017. 113쪽, 120쪽

600 『조선대백과사전』, 『김일성전집』에 의하면 '기본군중(기본계급)'은 혁명운동에서 기본 동력을 이루는 계급으로 노동자와 농민으로 구성되며, 혁명가, 전쟁참여자, 혁명가의 자녀(유자녀), 제대군인 등이 이 계급에 포함된다. '복잡한 군중'은 가정주위 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남한 출신, 귀국동포 등도 이에 해당한다. '적대계급잔여분자'는 사회주의혁명 이후 청산되어 남게 되는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로 기술하고 있다. (북한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3·11·16, 1996./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전집』 45, 2002.)

601 사법정책연구원,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2017. 122-123쪽.

602 UYYAWM0821

603 '주민대장'은 주민 실정 파악을 목적으로 시·군 사회안전부의 공민등록과에서 작성한다. 진술에 따르면 주민대장은 세대별 문서로 세대주 및 배우자를 중심으로 작성된다. 세대주 및 배우자의 출생일자·장소, 부모, 직장 이동 내역, 계급적 토대, 가정환경, 최근 행적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며, 부모의 출생 및 행적 등도 포함된다. 기타 세대구성원 및 친척(사촌까지)에 대한 내용은 세대주와의 관계, 출생일자, 거주지, 가족관계, 학력, 직업변동, 최근동향(처벌 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된다. (GKON1C1394)

북한 주민들이 주민대장에 기재된 성분과 계층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직장 이동, 거주지 이전, 결혼·이혼 등록 등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시 분주소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수정이 가능했지만 계급적 토대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수정할 수 없었다. 간혹, 성분에 의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 이를 수정하려는 주민들이 있었으나, 불법 수정은 매우 어려운 까다로운 일이었으며, 매년 연말경 ‘주민대장 실사’라는 검열이 있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했다.

북한 당국은 주민대장을 통해 주민들의 성분과 계층을 관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감시와 차별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증언에 따르면, 행방불명된 세대원이 있는 경우, 국군포로 등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방불명된 가족 및 세대원은 탈북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관리했다.

“주민대장 중 ‘기타내용’에는 최근 행적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직장 이동, 비법으로 인한 처벌 등 매우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최근 동향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대장은 따로 표시를 합니다. 개별 관리 대장은 주로 행방불명된 세대인데, 행방불명되는 경우는 주로 탈북이라고 간주하여, 주민대장 오른쪽 위에 검은색 동그란 표식 도장을 찍습니다. 또 세대 전체가 아니라 세대구성원 중 일부가 행방불명된 경우는 주민대장의 세대구성원 페이지에 표식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⁶⁰⁴

나. 성분에 의한 차별 실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성분과 계층에 따라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2014년 COI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성분’은 출생부터 모든 주민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주거, 직업, 식량 접근권, 의료, 교육 및 기타서비스의 결정은 ‘성분’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⁶⁰⁵ 또한, 성분을 기준으로 당, 군대, 대학 등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성분이 좋지 않으면 채굴(탄광, 광산) 또는 농사일에 배

⁶⁰⁴ GKONIC1394

⁶⁰⁵ UN Doc. A/HRC/25/CRP.1 (2014), para. 271.

치되고, 그 자손들은 고등교육에서 배제된다고 언급했다.⁶⁰⁶ 범죄에 대한 처벌을 고려할 때도 성분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이며, 성분이 좋지 않을 경우 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⁶⁰⁷ 북한 당국은 출신성분을 이유로 거주지 결정, 대학 진학, 직업의 선택 및 승진 등에서 차별을 가했다. 북한 주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평등한 기회를 누릴 권리를 제한받고 있었으며, 다양한 증언들을 통해 이러한 실상이 드러났다.

(1) 거주 및 지역 차별

북한에서는 성분에 따라 거주지가 결정되며, 북한 주민들은 평양시와 지방, 도시와 농촌 등 거주지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 북한에서 거주지는 사실상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배정’의 대상이다. 통상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거주지에서 살게 되며, 이후 직장 배치 또는 결혼 등 큰 전환점이 있어야 거주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조부모 및 부모의 사회성분이 곧 자신의 출신성분이 되기 때문에, 조부모와 부모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가 거주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⁶⁰⁸

성분에 의해 거주지가 결정된다는 것은 개인이 노력해도 변화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1990년대 ‘410호 방침’이 있다.⁶⁰⁹ 410호 방침은 농장원의 자녀가 장성하여 노동자가 되었어도 다시 농촌으로 돌려보내거나, 부모 중 한 명만 농장원이라도 농촌으로 돌려보내라는 방침이다. 이는 성분에 의해 거주지가 결정되는 것을 더욱 강화시키는 조치였으며, 동 방침에 따라 최근까지도 농장원 출신은 여전히 농장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¹⁰

강제이주도 계층에 따른 거주 차별에 해당한다. 진술에 의하면 형벌을 받은 사람과

⁶⁰⁶ *Ibid.*, para. 277.

⁶⁰⁷ UN Doc. A/HRC/25/CRP.1 (2014), para. 280.

⁶⁰⁸ 진술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조부모나 부모가 농장원으로 농촌에 거주하거나 광산노동자로 광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녀의 거주지도 농촌이나 광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조부모나 부모가 평양시의 기업소 등에서 일했다면 그 자녀도 평양시에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DDFYXV2365, ROD6PD2463, OORIT62454)

⁶⁰⁹ 진술에 따르면 ‘410호 방침’은 1995년 4월 10일 김정일이 내린 방침으로 성분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인다. 부부 중 한쪽이 농장원 출신이면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모두 농장원이 되는 방침이라고 한다. 평양에서 410호는 평양시를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누어 거주지, 직장 배치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을 말한다. (DEJ6ST2342, K6JGAA2321, 55IV3I2260, 8B5CA02248)

⁶¹⁰ 54EJUS0741, 2EQR9S2134, S8KWFS1065, Y3OVXV1474, 20SZIG1070

그 가족들은 3대 계층 중 ‘복잡한 군중’에 속하게 되며 도심 지역이나 특정 지역(평양시, 양강도 삼지연시 등)에 거주하지 못하고 강제로 이주해야 한다. 한 증언자는 당초 평양시에서 거주했으나, 노동교화형을 마치고 출소했을 때 가족들이 이미 평안북도 지역으로 추방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⁶¹¹ 다른 여성 증언자도 노동단련형을 마치고 출소하니, 양강도 삼지연시는 김정일 고향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살 수 없다며 강제이주 조치될 상황이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친인척의 집에 숨었다고 진술했다.⁶¹²

한편, 북한에서는 평양과 지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차별하고 있다. 북한은 평양을 ‘혁명의 수도’라고 부르며 주체(사상)의 성지로 규정하고 있다.⁶¹³ 북한 당국은 평양의 도시건설, 주민거주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1998년 「평양시관리법」을 제정하여 이를 법제화하기도 했다. 평양을 다른 지역과 엄격히 구분하면서, 평양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평양시민증’을 소지한 주민은 여행증명서 없이도 접경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 이동이 가능하며, 평양시 출입 시에도 간소한 절차만 거치면 된다.⁶¹⁴ 또한, 평양시민들은 최근까지도 일부 국가배급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국가배급이 대체적으로 없어진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이다.⁶¹⁵ 이 밖에도 평양시민들은 평양시 소재 중앙병원과 특수·전문병원 등 의료시설 접근이 용이하여 의료서비스 활용 면에서도 지방거주 주민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 평양시민에 대한 차별적 혜택 부여는 평양시민증 위·변조 발급을 유발했으며, 북한 당국은 단속과 교체발급으로 이를 차단하고 있다.⁶¹⁶

611 P3RFM51542

612 ZBJE6Z1518

613 「평양시관리법」(2014) 제1조 (평양시관리법의 사명) 평양은 주체의 성지이고 조선인민의 심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관리법은 평양시를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로 더 잘 꾸려 주민들에게 조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보다 편리한 생활조건, 노동조건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614 평양시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곳의 ‘10호 초소’에서는 평양시민과 지방거주 주민의 검문 차이가 매우 크다. 이동 중 검문 초소의 수시 검문에서도 평양시민의 경우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지만 할 뿐, 짐이나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는다. (YKDSNY2213)

615 LXUIUC2307

616 평양과 지방의 격차에 따라 안전원 등에게 뇌물을 주고 위조된 평양시민증을 발급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증을 위조 발급받아 살 수 있는 곳은 평양시의 중심지역이 아닌 만경대구역 등 주변지역이다. 이들은 인민반장, 담당 안전원 및 담당 보위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주며 단속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평양시민증의 위조나 변조 등이 많아지면서 북한 당국은 수도방어와 보안 등을 이유로 수년에 한 번씩 평양시민증을 교체발급하기도 한다. (YKDSNY2213)

그림 IV - 20 평양과 지방의 모습



평양시 중구역 경루동 다락식 주택구(2022.4.)



평안북도 삭주군 신평리 주택(2018.6.)

* (자료출처) 노동신문(2022.4.3), 통일부

평양시 안에서도 거주 구역에 따른 차별이 존재했다. 1995년 하달된 ‘410호 방침’에 따라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중심지역에 있는 직장에 배치 받지 못했으며, 중심 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이 제한됐다. 또한, 식량공급, 대중교통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았다. 이후 2014년 개정된 「평양시관리법」에는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해 두고 경계를 내각에서 정하도록 했다.⁶¹⁷

“평양사람들은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직장 배치 및 배급 등의 차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410호에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중심지역은 중·모란봉·대동강·서성구역 등이 속하고, 주변 지역은 용성·형제산·대성구역 일부 등입니다. 주변지역에 산다면 중심지역의 직장에 배치 받지 못 하며, 중심과 주변은 공급되는 것도 조금은 다릅니다. 지방주민이 평양시민증을 발급 받으려면 평 양에 거주해야만 가능하며, 비거주자는 절대 받지 못합니다. 지방주민이 평양으로 올라오는 경우 는 쉽지 않습니다. 간혹 여자의 경우 평양 남자와 결혼하면 평양 거주가 가능하고, 지방출신으로 평양에서 군관으로 근무할 경우 그 가족들이 모두 평양에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⁶¹⁸

⁶¹⁷ 「평양시관리법」(2014) 제7조 (평양시영역의 구분) 평양시의 영역은 수도의 행정권이 행사되는 지역으로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눈다. 중심지역에는 만수대를 중심으로 하여 정한 지역이, 주변지역에는 보호지대와 위성도시, 농촌지 역이 속한다.

제8조 (중심지역, 보호지대, 위성도시의 설정) 중심지역의 경계, 보호지대의 너비, 위성도시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 다. 내각은 중심지역과 보호지대가 정리되는데 맞게 중심지역의 경계를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시켜야 한다.

⁶¹⁸ HOZO5X1222

(2) 대학 진학에서의 차별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출신성분이 개인의 능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은 ‘추천제’인 북한의 대학 입학 절차와 연관이 있다.⁶¹⁹ 북한에서는 대학 입학 최종시험 응시자격을 추천 받은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의 시험 성적보다는 추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출신성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 증언자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다가 추천권자인 인민위원회 교육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어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했다.⁶²⁰ 다른 증언자는 할아버지가 남한 출신이었기 때문에 두 명의 손자가 모두 대학 입학을 위한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⁶²¹

“2018년 의학대학에 진학하고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지원이 시작되기 전, ○○시 교육과장과 면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교육과장은 저에게 ‘어머니가 행방불명이라 너와 같은 아이는 대학에 가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장은 수험생들을 대학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합니다.”⁶²²

세대 군인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도, 성분과 계층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를 마친 군인에게 주어지는 대학 추천 자격은 별도 시험 없이 군(軍) 당국과 인민위원회의 추천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성분·계층·부류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된다. 중학교 졸업 직후 군에 입대하여 평양에서 군 복무를 마친 한 여성 증언자는 평양 소재 대학에 입학 추천을 받았지만, 농장원 자녀라는 이유로 추천이 취소되었다고 했다.⁶²³ 농

⁶¹⁹ 북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3단계를 거치게 된다. 먼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시험성적에 따라 시·군 단위에서 각 학생들의 순위가 결정된다. 대학별 추천인원은 지역마다 정해져 있어, 각 시군의 인민위원회 교육부에서는 시험성적뿐 아니라 성분까지 고려하여 대학 추천 명단을 만든다. 이후 추천받은 학생이 해당 대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에 따라 최종 당락이 결정된다.

⁶²⁰ P4ILM91470, 9PQ5571540

⁶²¹ D280Z70942

⁶²² 9PQ5571540

⁶²³ 1CHLPG2211

장원 자녀의 경우, 졸업 후 농장에 배치가 예정된 농업전문학교와 같은 곳으로 추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제보위집단’ 진입과 관련된 대학 입학 을 위해서도 출신성분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북한에서 소위 ‘당일군’, ‘법일군’으로 불리는 당 및 핵심기관의 간부를 양성하는 평양 소재 대학이나 정치대학 등 주요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출신성분이 좋아야 했다. 반면,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주요대학 입학이 불가능했다.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평양 소재 주요 대학과 달리 직장 배치 및 이후 안정적 수입 보장 등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학하기가 쉬웠고 뇌물을 주면 추천 받을 수 있었다.⁶²⁴ 지방 의학대학을 준비하던 한 여성 증언자는 대학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추천권을 가진 인민위원회 교육과장에게 1만 위안 이상의 뇌물을 주어야 했다고 진술했다.⁶²⁵

“북한에서는 대학에 가려면 입학 추천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대학폰트’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학교별로 할당합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 지역 학교에는 이 ‘대학폰트’가 적게 할당되거나 아예 할당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입학에는 학생의 능력보다 부모의 출신성분, 직업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학폰트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 사업(뇌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폰트를 받아 희망대학에 지원을 해도 그 대학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⁶²⁶

(3) 직장에서의 차별

성분과 계층에 의한 차별은 직장 배치, 이직, 승진 등 직장생활에서도 나타났다. 북한 주민들은 고급중학교 졸업과 함께 성분과 계층에 따라 직업과 진로가 정해졌다. 직장에 들어갈 것인지,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군에 입대할 것인지가 개인의 능력이나 희망이 아닌 성분과 계층에 따라 결정됐다. 직장 배치는 인민위원회 노동부에서 결정하는데, 농장원과 광산 노동자의 자녀는 다른 직종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적었다. 농장원 자녀는 대학에 진학

⁶²⁴ SPN4BG1900, 2EQR9S2134

⁶²⁵ 9PQ5S71540

⁶²⁶ 2EQR9S2134

하더라도 농업대학이나 농업전문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졸업 후 결국 농장에 배치됐다. 광산기업소 노동자 자녀들도 결국 아버지가 일하던 광산에 배치됐다. 다만, 드문 경우였지만 농장원 자녀나 광산기업소 노동자의 자녀가 돈이나 인맥을 이용하여 다른 직장에 배치되었다는 진술도 있었다.⁶²⁷

“농장원 자녀는 농장원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군관에 대한 배려가 많기 때문에 군관에게 시집가는 농장원 자녀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태어난 여자들은 군관에게 시집 가려고 합니다. 딸들은 별로 관계 없지만, 아들은 보통 아버지가 다니던 곳에 배치됩니다. 특히, 탄광이나 농장은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만약 농장원 자녀인데 농업대학을 가게 되면 졸업 후에도 농장에 기술지도원 등으로 배치됩니다.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력이 월등해서 김책공대 같은 곳에 가든지 다른 부분으로 전공을 바꿔야 가능합니다.”⁶²⁸

“저는 남편과 결혼하여 농장원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농장원과 결혼하면 농장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농촌진출’에 걸린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농장원이려면 대학에 간다 해도 결국 농장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⁶²⁹

특히, 직업 선택 등에 있어서 남한 출신자 가족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 가족 중에 남한 출신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후손들은 당 간부는 물론 보위원, 안전원, 검사 등 ‘법일군’이나 행정 부문의 간부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보위원이 되기 위해 정치대학에 입학하려고 했던 남성 증언자는 할머니가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입학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⁶³⁰ 남한 출신 외할아버지를 둔 다른 증언자는 그 영향으로 성분이 좋지 못했고 아버지는 간부가 될 수 없었다고 했다.

⁶²⁷ SYYKDH2214, QWVNRL2135

⁶²⁸ EJRHLJ2244

⁶²⁹ XHQ3O62529

⁶³⁰ 1T6JQA2112

“저의 출신성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남한 출신입니다. 남한 쪽 강원도 출신이었다는 것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한에 가족이 있으면 3대까지 ‘당일군’, ‘법일군’을 할 수 없습니다. 친할아버지도 6·25전쟁 시기 군사복무를 하지 않고 장사를 했다는 이유로 토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교육을 받은 것에 비해 간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⁶³¹

성분과 계층에 따른 차별은 이직할 때에도 적용됐다. 1990년대 중반 시행된 ‘410호 방침’에 따라 노동자로 일하던 주민들은 아버지가 일하는 농장으로 강제이직되기도 했다.⁶³² 이후에도 성분과 계층은 이직 등에서 차별의 근거가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뇌물이나 인맥을 사용해야 했다. 한 증언자는 공장에 배치될 예정이었으나, 아버지의 지인에게 뇌물을 주고 공장에서 진료소로 이직했다고 했다.⁶³³ 다른 증언자는 삼촌의 인맥을 이용하여 이직했으며, 주변의 대부분이 원하는 직장에 배치받기 위해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 문서처리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했다.⁶³⁴

승진에서도 성분과 계층에 따른 차별이 있었다. ‘법일군’이 되었지만 재일동포 귀국 자라는 출신성분 때문에 관리자로 승진하지 못한 사례, 부모가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된 사례, 탈북민 가족이라는 이유로 승진이 무산된 사례 등이 수집됐다.⁶³⁵ 한 남성 증언자는 의용군으로 참전한 아버지가 남한 출신이었기 때문에 소속된 기관에서 승진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남성 증언자도 원래 승진 대상이었지만, 아내의 자매가 탈북했다는 이유로 승진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⁶³⁶

“외할아버지는 남한 출신으로 의용군으로 북한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식들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토대에 의한 차별이 있습니다. 2018년

⁶³¹ QWVNRL2135

⁶³² VVFE91656

⁶³³ OWTG6L2284

⁶³⁴ EO2TWG1095

⁶³⁵ D280Z70942

⁶³⁶ 271E382274, C63MQK1441

외삼촌이 지진관측소에 있으면서 승진하려고 했는데, 외할아버지 토대에 걸려 승진을 하지 못했습니다.”⁶³⁷

(4)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차별

탈북민의 가족은 3대 계층 중 ‘복잡한 군중’ 또는 ‘복잡한 계층’에 속하며, 일상생활 전반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탈북민의 가족을 ‘111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탈북민 가족들은 대학 입학 기회 박탈, 입당 배제, 직업 선택 및 군 입대 제한 등의 차별을 받고 있었으며, 각종 조사와 감시가 있을 때 처벌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뇌물을 바쳐야 했다. 때로는, 담당 보위원 및 안전원에 의해 금전을 갈취당하기도 했다.⁶³⁸

“저는 농기계 작업소와 (고향인 함경북도) ○○군 배선부에서 일을 하고 싶었으나, 탈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들어갈 수 없었고, 직장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이후 군(郡) 소속 ○○사업소 소장에게 뇌물을 주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3개월 만에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니다. 군 인민위원회에 항의했지만,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너 같은 탈북민 자식이 군당 사업소에서 일할 수 있느냐”면서 목살하였습니다.”⁶³⁹

표 IV - 20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유형별 차별 내용 (기록센터 조사 기준)

분야	차별 내용 ⁶⁴⁰
일상생활	주민, 안전원, 보위원 등의 노골적인 감시, 생활총화 등에서의 공개적 비판
대학진학	가족이 행방불명(탈북으로 간주)이라는 이유로 대학 입학시험 자격 박탈
직장생활	연쇄 탈북 시 직장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직장 측에서 배치 거절 가족이 탈북했다는 이유로 강직(降職)
군(軍)생활	군 복무* 중 가족의 탈북을 이유로 ‘가정환경제대(의가사제대) 강제 시행 * 북한에서는 군 복무 시 입당, 직장 배치 등 혜택 부여

⁶³⁷ D280Z70942

⁶³⁸ 9HL4KU1283

⁶³⁹ KHT3JH0692

⁶⁴⁰ N2PGQJ1963, 00RIT62445, TCQH4N1020, 9PQ5S71540, 3WAWSU1355, ZX8HAH0831

(5) 재일동포 귀국자 및 가족에 대한 차별

‘재일동포 귀국자’(이하 ‘귀국자’)와 그 자녀들은 일본에 거주하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사회생활에서는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귀국자는 ‘재일동포 복송사업’⁶⁴¹으로 북한에 집단 귀국한 재일동포 및 그 가족들을 말한다. 귀국자들은 북한의 선전과 달리 ‘째포’⁶⁴², ‘쪽바리’ 등으로 불리며 북한 사회에서 차별을 받았다.

그림 IV - 21 북한으로 영주 귀국하는 재일동포



* (자료출처) 국제적십자사(ICRC) Archives(1959.12.14./ 귀국 재일동포 제1진)

귀국자에 대한 표면적인 차별은 없었으나, 공평하지 못한 대접을 받았고 귀국자 안에서도 일부 특권층과 다수의 일반 귀국자 간에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증언자들은 일반적으로 귀국자와 가족들에게 군 입대, 입당 등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일군’, ‘법일군’으로 진출하는데 실질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했다. 친북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간부의 가족과 이들을 제외한 일반 귀국자 가족을 구분하여 다르게 대우했다는 진술도 있었다.⁶⁴³ 한 증언자는 조총련 간부의 가족은 당 조직이나 사회안전기관, 국가보위기관, 검찰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나, 일반 귀국자 가족의 경우에는 불가능했다고 했다.⁶⁴⁴ 또 다른 증언자는 재일동포였기 때문

⁶⁴¹ 1959년 8월, 북한과 일본 적십자사가 ‘캘커타 회의’에서 체결한 ‘재일교포 복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진행

⁶⁴² ‘째포’는 재일동포를 줄인 말로 이들을 비하하여 지칭하는 말을 의미한다.

⁶⁴³ UYYAWM0821

⁶⁴⁴ R7542X1383

에 사범대 진학이 불가능했고, ‘행정일군’으로 배치되는 것조차 거부당했다고 했다.⁶⁴⁵

“출신성분으로 인해 저나 형제들이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둘째누나가 선생님이 되고자 교원대학에 진학하려 하였으나, 충분히 성적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부모님이 남한 출신에 ‘짜포’라는 이유로 교원대학 진학이 거부되었습니다. 제 큰아들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 간부가 되기 위해) 군대를 군의대학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가지 못하고 일반 부대 위생지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저 역시 출신성분으로 인해 직장에서 직장장과 같은 간부자리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⁶⁴⁶

(6) 중국 연고자 및 가족에 대한 차별

중국 연고자의 경우에는 인민군 입대, 대학 진학 등은 가능했지만, 노동당 입당 및 보위부, 안전부, 검찰소 등 체제보위기관 근무는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연고자는 해방 전 동북 3성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 중 6·25전쟁 전후부터 1960년대 무렵까지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말한다. 북한 주민들은 이들을 ‘연고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북한의 사회계층 중에서 ‘복잡한 군중’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는 아들들의 입당이나 승진이 불가능했으며, 김정은 정권 이후 중국 연고자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졌다고 진술했다.

“저와 제 남편은 중국 태생으로 중국 요녕성(랴오닝성, 遼寧省) 단둥(단둥, 丹東)에서 살다가 1961년 북한으로 이주해 온 중국 연고자입니다. 북한에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들들 또한 중국 연고자가 되어서 북한에서는 입당을 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2012년 이후 김정은 정권부터는 중국 연고자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해져서 큰 아들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중국 연고자라는 신분을 주기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⁶⁴⁷

⁶⁴⁵ UYYAWM0821

⁶⁴⁶ GPF4EI0657

⁶⁴⁷ W7ZAI10674

한편, 북한 당국은 중국 연고자들의 중국 내 가족·친척 방문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이나 국경출입증(접경지역 주민 대상 발급) 허가에 오랜 시일이 걸릴 뿐 아니라 방문에 대해서도 제한 사항이 많았다.⁶⁴⁸ 이에 따라 중국 연고자들의 중국 방문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것은 중국 연고자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 요소가 됐다.⁶⁴⁹

⁶⁴⁸ 1XB2XP0186

⁶⁴⁹ 중국 연고자가 가족·친척 방문을 위해 국경출입증 또는 여권 발급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연로보장 가능 연령 이상(남성 60세, 여성 55세)인 사람으로 북한에 자녀가 있어야 했다. 가족 여러 명이 함께 방문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여러 가지였는데, 중국 친척이 초청한다는 편지와 초청장, 친척의 호구증(호적증명서), 신분증 등이 있어야 했다. 초청장에는 초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장 등 신상 관련 내용은 물론 방문 목적, 현지 체류비용 부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명까지 해야 했다. (80X2651147)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아버지는 기업소 노동자였지만 배급이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배급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부업지에서 농사를 해 자체적으로 음식을 마련해야 했고

어머니와 밀수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에서는 굶어죽습니다.”

1. 식량권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은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권규약」 제11조는 모든 사람이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개별적이거나 국제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식량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¹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도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기아로부터 해방되고 가능한 신속하게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adequate food)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²

표 V-1 「사회권규약」과 식량권

「사회권규약」		식량권 (관련 목차)
제11조	제1항	<div style="text-align: center;">공통 식량권</div>
	제2항	

¹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11(1).

²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2: The right to adequate food, para. 21.

북한에서는 우리와 달리 ‘의식주’를 ‘식의주’로 바꾸어 부른다. 그만큼 식량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 당국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다.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최고지도자들이 ‘쌀밥에 고깃국’을 목표로 내걸고 있을 정도로 식량 문제는 체제 유지와 직결된 문제이나,³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⁴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포전담당책임제’⁵ 시행 등 주민들의 생산의욕 증진을 통한 식량증산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비료·농약의 부족, 상납량의 증가, 중간관리자의 착복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유명무실해진 국가식량배급제는 특정 계층과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은 식량 확보를 위한 개별적 경제활동에 내몰리게 됐다. 북한 당국이 민생이 아닌 핵·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식량 문제는 악화되었고, 무기 개발이 초래한 제재는 북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북한 당국은 곡물 유통을 독점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주민들의 식량 확보를 보다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 만성적인 식량 부족

「사회권규약」은 식량 등 적당한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당국은 오랜 기간 주민들의 식량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이하 ‘FAO’)는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약 106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북한을 매년 ‘외부 식량지원 필요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FAO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약 489만 톤에 불과하며, 외부에서 들여오는 물량(약 20만 톤)을 감

3 “전체 인민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는 것은 수령님(김일성)과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평생 염원이며 이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조선혁명가들의 이상이고 투쟁목표입니다. 오늘 우리 당에 있어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임무는 없습니다.”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 참가자에게 보낸 김정은 서한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나가자’, 노동신문, 2019.3.9.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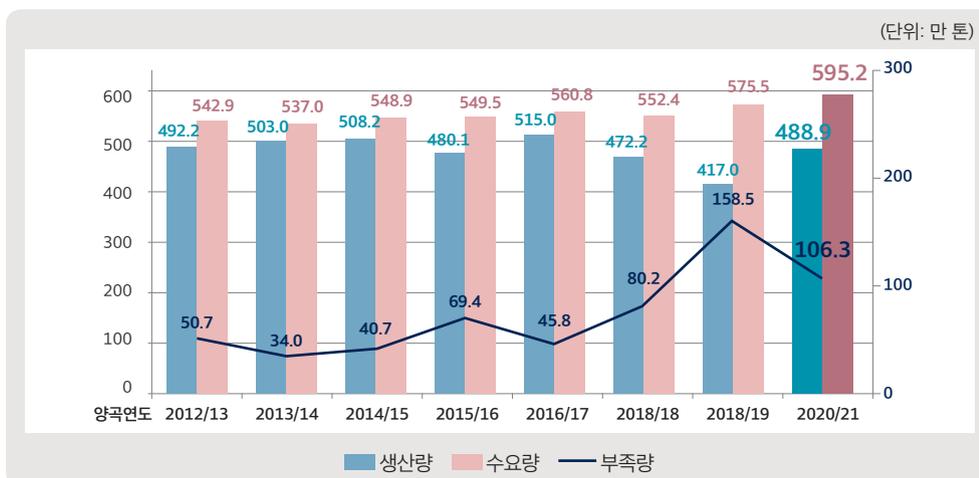
4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24. 160~170쪽 참고

5 ‘포전(圃田, 구획을 나눠놓은 경작지)담당책임제’는 협동농장의 말단 단위인 분조(分組)를 세분화해 4~5명의 인원으로 축소 한 가족단위 규모로 운영되는 영농방식을 말한다. 협동농장과 농장원에게 토지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식량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였으며, 2014년 5.30조치 이후 초과생산분의 60%(당국 40%)를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2. 830~834쪽 참고)

안한다 해도 수요량(약 595만 톤)에 비해 매년 약 86만 톤이 부족한 실정이다.⁶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이하 'OCHA')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의 원인을 불충분한 농업 생산과 토지·농기계·연료 부족, 열악한 기반 시설로 보았다.⁷

만성적인 공급 부족과 함께 북한 당국의 자의적인 식량 자원 분배도 북한 주민의 식량권을 침해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북한 주민들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AO는 2019~2021년 북한 인구의 41.6%가 영양부족 상태에 있다고 추정했다.⁸ 또한, FAO·UNICEF 등이 발표한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GHI)도 북한을 기아 상태가 '심각'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구의 45.5%(약 1,180만 명)가 영양부족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⁹

그림 V-1 북한 식량 생산량·수요량 추이 (FAO)



* (자료출처) FAO 북한 식량수급 전망(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미발표 연도 제외

⁶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20/21」 (November/October)

⁷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UN OCHA),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20.

⁸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Regional Overview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Asia and the Pacific-urban Food Security and Nutrition」 Bangkok, 2023

⁹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GHI)는 기아의 정도를 세계적, 지역적, 국가별로 종합적으로 측정·추적하기 위해 설계된 지수로, 기아 종식을 위한 국제협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아일랜드 NGO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 독일 NGO 세계기아원조(Welthungerhilfe) 등이 2006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FAO·IFAD·UNICEF·WFP·WHO 「2023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table A1.1.

이러한 만성적 식량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2012년부터 농업개혁 조치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했다.¹⁰ 포전담당책임제는 국가계획분을 제외한 초과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농민이 자율 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자율 농경제도’로서, 시행 초기에는 일부 농장에서 생산량이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료·농약 부족, 재배 작물의 결정권 부재, 현실성 없는 목표량 설정 등 구조적인 문제와 책임기관의 허위보고 등은 농장원 부담을 가중시켰고 식량 사정을 개선하지 못했다. 특히, 매년 목표 수확량의 무리한 인상으로 농장원의 수확물 납부를 증가시킨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¹¹ 농장원 출신 증언자들은 한 해 동안 일해서 분배받은 식량으로는 1년을 생활하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했다.¹² 심지어 실제 수확량보다 많은 국가계획 할당량 보충을 위해 공동포전에서 분배받은 곡식을 바쳐 보충하거나, 돼지·닭 등 가축을 키워 당국의 각종 공출에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¹³

“함경북도 회령시 ○○협동농장에서 농장원으로 있으면서 직접 포전을 맡았습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고, 농장원 개인당 600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하는 안 됩니다. 국가계획을 바치고 국가 현금 과제를 농작물로 바치면 개인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포전담당제 도입 전보다 배분되는 양이 더 적어졌습니다. 분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생활을 못하고 개인이 소토지(농사), 장사, 약초 캐기 등을 해서 먹고 삽니다.”¹⁴

실제 운영에 문제점이 많았음에도 중앙에 대한 허위보고로 인해 국가계획분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협동농장 근무 경험이 있는 증언자들은 인민위원회 등이 당국의 눈치를 보며 포전담당책임제의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생산량도 늘어 농장원들이 더 잘 살

¹⁰ ‘포전담당제’는 2002년 7.1조치 영향으로 시범 도입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되었다가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다시 강조되었으며, 2015년 「농장법」이 개정된 이후 법령에도 포전담당책임제가 추가되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2. 831쪽 참고)

¹¹ ZDPTM41630

¹² XXTKPX1915

¹³ UYYAWM0821, 07L3VK0328, 1XB2XP0186

¹⁴ XXTKPX1915

게 되었다고 거짓으로 보고해 국가계획분이 증가했다고 진술했다.¹⁵ 결국 포전담당책임제 하에서 목표 수확량을 터무니없이 높게 산정하는 문제는 농업 생산량의 실질적 증대 및 농업개혁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고, 이는 2022년 제정된 「허풍방지법」¹⁶ 조항에도 반영됐다.

“2012년경부터 ‘포전담당책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분조(分組) 밑에 조(組)를 두어 부부가 농장원 일 경우 그 부부의 가족들로 조원들을 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수확량의 절반을 준다는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나 비료사정이 좋지 않아 수확량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도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국가에 바치기로 처음 계획한 그 양만큼 국가가 가져갔습니다. 오히려 모자라면 개인적으로 사서 바쳐야 했습니다. 포전담당책임제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농장원에게 분배되는 식량이 늘어나지 않았고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¹⁷

한편, 이처럼 어려운 북한의 식량 상황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식량지원에 나섰으나, 지원된 식량은 주민들이 아닌 군(軍) 및 체제보위기관에 우선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여름 북한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식량 부족에 허덕이던 북한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이후 자연재해 등 각종 계기 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으나,¹⁸ 지원된 식량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분되지 못한 채, 군부대, 국가보위기관, 사회안전기관, 군수공장 등에 우선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지원 받은 식량의 분배 모니터링을 위해,¹⁹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시늉만 하는 경우도

¹⁵ MY7QIT0433, DDXNY61368

¹⁶ 「허풍방지법」(2022) 제12조~제20조에서는 농업 생산에서의 허풍방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포전담당제」하에서의 목표 수확량 산정과 관련된 조항은 제16조~제18조로 ‘농작물 예상 수확고 판정에서의 허풍방지’, ‘농업생산정형의 등록과 보고에서의 허풍방지’, ‘농업생산물 수매계획 수행에서의 허풍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4조~제45조는 허풍행위 관련 위반신고 접수 시 감독통제기관의 엄격한 조사 처리를 명하고 있으며, 제48조~제49조는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 등 처벌(제48조)과 형사적 책임(제49조)을 규정하고 있다.

¹⁷ ME0IY1523

¹⁸ 정부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사회는 1996년부터 2020년까지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했다. (대북지원정보시스템, <http://www.hairo.unikorea.go.kr> 참고)

¹⁹ 북한에서 식량 배분은 양정성(糧政省)에서 계획하는데, 도 인민위원회 양정국은 양정성으로부터 받은 배분계획을 토대로 시·군·구역 양정사업소를 거쳐 거주지 식량공급소로 분배한다. 식량 배급은 먼저 분배받지 못한 세대 등에 우선 공급

있었다. 한 증언자는 국제기구 등의 모니터링이 있을 때는 당국에서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하여 계획대로 분배했으나, 점검단이 돌아가면 전량 회수하여 일부만 지급했다고 했다.²⁰ 다른 증언자는 부두에 지원물자가 오면 당국에서 최우선적으로 군대나 특수기관이 식량을 지급받도록 했으며, 이때 일반 주민처럼 보이기 위해 군(軍) 변호관을 민간 변호판으로 위장하고 사복차림으로 부두에 갔다고 했다.²¹

“2015년 유엔(WFP) 등에서 쌀을 지원하였습니다. 만약 10톤이 지원되었다면 주민들에게 모두 갈 수 없습니다. 공급량을 국가에서 조절해서 먼저 군대를 주고 고아원이나 유치원 등에 식량이 조금 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외국인들이 감시하니 흉내는 내야 하니까 10톤 중 1톤 정도는 돌려 맞추기를 합니다. 보통은 외국인들이 쌀 창고에 1톤이 있는지 확인하지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까지 보지는 못합니다. 가끔은 실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시늉을 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²²

북한 당국의 이러한 정책에 따라, 일반 주민들이 외부 지원 식량을 배급으로 받아본 경우는 많지 않았다. 다만,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이 지원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은 다수 수집됐다. 한 증언자는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 사항을 기업소와 인민반에서 공지하여 알게 되었다고 했다.²³ 장마당에 돌아다니는 쌀 포대에 ‘대한민국’이나 ‘USA’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식량지원 사실을 알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반면,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성과로 포장하기도 했는데, 한 증언자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의 외교성적을 알리기 위한 강연회에서 중국이 쌀과 비료를 지원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하는 것이 원칙이다.

²⁰ XI3TXG1978

²¹ P3RFM51542

²² XHQ3062395

²³ LXUIUC2307, 4NPX212298, PMYYOW2258

“유엔, 중국에서 쌀이나 비료가 들어온다고 보도나 강연회에서 들었습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 성과의 일종으로 중국이 쌀과 비료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한의 지원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고 (2000년대 말) 소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이라고 쓰인 쌀포대를 보았습니다.”²⁴

나. 차별적 식량 배급

국가는 식량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적당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주어야 할 책무가 있으나, 북한 당국은 거주하는 지역과 집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 북한은 1950년대 이후 식량 배급제를 실시해왔으나,²⁵ 1990년대 경제난으로 1995년 말부터는 특정계층 이외의 일반 주민에 대한 식량 배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이후에는 경제관리 개선을 목적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²⁶가 실시되면서, 식량 배급은 사실상 ‘국가배급’과 ‘기업소배급’으로 이원화됐다. 소속 직장이 없는 미성년 자녀, 전업주부, 대학생이나 퇴직한 연로보장대상자 등은 국가배급 대상에 속했으나, 사실상 일반 주민에 대한 당국의 식량 배급은 없었다는 진술이 많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보위집단 및 평양시 등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국가배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배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소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기관이나 기업소에서 배급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배급소에 통보되어 국가 배급에서 제외되고 기업소에서 자체 배급하지 않는 경우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국가배급소에서 배급을 받게 되는데 그건 기업

24 LXUIUC2307

25 ‘배급제’는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품(식량)의 분배와 소비를 조절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품(식량)을 공급하는 제도로 북한은 주민들에게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배급제를 통해 공급했다. 북한은 1952년 3월 내각결정 제 56호로 식량 배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같은 해 5월부터 식량 배급제를 실시해 왔다. 본격적인 배급제는 1957년 11월 내각결정 102호가 채택된 이후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직장 경리부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식량 배급표’를 받아 매달 1~15일 사이에 정해진 날짜에 지정된 배급소에서 배급을 받았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2. 310쪽 참고)

26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2012년 12월 당시 박봉주 내각 상무주의 지휘하에 단행되었으며 ‘12.1경제관리개선조치’로도 부른다. 동 제도는 ‘경영권한을 현장에 확대 부여한 것’으로 계획 수립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생산품 및 수익의 처분에 대해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김정은 시대의 산업 분야 경제개혁조치이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2. 447쪽 참고)

소의 자체 배급을 할 능력이 없는 기업소들이 국가배급을 선택하고, 잘사는 기업소들은 기업소 자체 배급을 선택합니다. 세대주가 직장에 다닐 경우 세대주만 직장에서 배급을 받고 가족들은 국가 배급소에서 배급을 받습니다. 평양시와 자강도는 대체로 다 줬는데 다른 지역은 배급이 잘 안되고 배급제가 없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²⁷

국가배급 대상 중 노동당, 군대 등 체제보위집단은 비교적 원활하게 식량을 배급받았던 반면, 교원이나 의료인은 당국이 제공한 식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군·국가기관을 비롯하여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검찰소, 특수기관에 종사했던 증언자들은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국가배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2019년 군 복무 중이었던 남성 증언자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쌀밥이 제공되었고, 이외의 기간에는 쌀과 옥수수를 2:8 비율로 섞어 급식했으며, 병사 1인당 하루 식사량은 800g으로 장교와 사병의 차별이 없었고, 명절에는 떡, 돼지고기, 수산물 등이 배급되었다고 진술했다.²⁸ 2019년경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제대한 ‘영예군인’²⁹에게 매달 식량이 배급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었다.³⁰

하지만, 체제보위집단 안에서도 지역, 소속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배급 주기나 양이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증언자는 2020년 함경북도 소재 군부대에서 병사들에게 제공한 급식은 규정상 옥수수가루 800g, 소금, 된장이었지만, 실제로 제공된 것은 옥수수가루 100g, 국, 단무지가 전부였다고 했다.³¹ 부친이 중학교 교원이었던 다른 증언자는 2019년 아버지가 국가배급을 받았지만, 규정된 양의 70% 정도에 불과했다고 했다.³² 2019년경 양강도에서 유치원 교양원(보육교사)으로 근무했던 여성 증언자도 1년에 한 번, 감자 200kg과 옥수수 50kg만 받았을 뿐 다른 배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²⁷ 8B5CA02248

²⁸ HGJC251956

²⁹ ‘영예군인(榮譽軍人)’은 ‘군사복무기간 부상을 입고 제대되어 국가적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4권, 2017. 1109쪽 참고)

³⁰ 8B5CA02248

³¹ OTP8Z62291

³² OJ4A8E0883

“2019년까지 양강도 ○○군 유치원에서 교양원으로 근무하며 배급을 받았습니다. 배급은 1년에 한 번 가을에 지급하는데, 감자 200kg, 옥수수 50kg을 받았습니다. 배급은 유치원에서 원장과 경리원이 주었습니다. 그 배급을 가지고는 1년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군당, 보안서, 보위부, 검찰소, 재판소, 학교 교원, 청년동맹위원회, 의료부문에 배급을 주고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배급이 없었습니다.”³³

그림 V-2 북한의 식량 배급과 양곡판매소



식량을 배급받는 주민
(개성, 2007.)



생선을 배급받는 주민들
(평양, 2011.)



양곡판매소 직원들
(황북, 2022.)

* (자료출처) 통일부, 조선중앙통신(2011.12.23.), 노동신문(2023.1.25.)

동일 계열 종사자라도 기관별로 배급 주기와 양에서 차이가 있었다. 2018년 양강도 내 인민병원에서 근무한 남성 증언자는 매달 옥수수, 감자, 밀, 보리 등의 곡식을 15kg씩 받았다고 진술했다.³⁴ 반면, 2019년 양강도 지역의 진료소에서 근무한 남성 증언자는 근무기간 중 한 번도 배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양강도 ○○종합진료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진료소 전체 인원은 35~40여 명이었고, 실습의사는 저를 포함해 7명이 있었습니다. 진료소에서 배급이나 급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중국산 자동차(11인승)를 구입해서 이것으로 택시 영업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³⁵

33 53YQKD1785

34 CBIDGP0710

35 68JWC41434

국가배급은 평양과 지방 사이에 지급 주기, 양, 곡물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배급 체계가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했던 곳은 평양 지역으로, 평양 출신의 한 증언자는 마지막으로 평양을 방문한 2019년 가을까지는 규정대로 인민반 배급이 나왔다고 했다. 다만, 배급 일자가 2~3개월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쌀이 아닌 옥수수나 콩, 감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했다.³⁶ 반면, 양강도에 거주했던 여성 증언자는 매년 가을 세대당 감자 100kg 밖에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고, 양강도 출신 남성 증언자도 2020년까지 식량 배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³⁷ 다만, 최근 지방에서 배급표를 받았다는 진술이 수집됐다. 증언에 따르면, 인민반에서 1년에 2~3회 정도 배급표를 지급했으나, 무상 배급은 아니었으며 시세와 비슷한 돈을 지급해서 일정한 양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2022년 황해남도 ○○군) 인민반에서 1년에 2~3회 정도 배급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인민반에서 배급표를 받으면 양정배급소에서 돈을 주고 곡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 입쌀 5kg, 강냉이(옥수수) 5kg 정도의 배급표를 작성해주면, 배급소에서는 kg당 쌀 4,000원, 강냉이 2,500원 정도의 돈을 내야 했습니다.”³⁸

체제보위기관 등을 제외한 기관·기업소에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따라 독자적인 식량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속된 기관·기업소 상황에 따라 배급량, 주기, 곡식 종류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규정에 미치지 못하거나 식량 배급을 전혀 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2019년 평양시 소재 기업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매달 3~5일분 정도의 옥수수를 배급받았다고 진술했고, 2019년에 양강도 인민위원회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증언자는 30~40kg 정도 옥수수를 매년 지급받았다고 했다.³⁹ 반면, 2019년 평안남도 사업소에서 노동자로 근무했던 증언자는 근무기간 7년 동안 한 번도 배급

³⁶ YNNL9N2323

³⁷ VPARIA1430, 67MM9S2253

³⁸ TEIEJA2400

³⁹ TMJBDT2280, C63MQK1441

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⁴⁰ 차별적인 식량 배급과 당국의 무관심 속에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지역의 경우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했다는 증언이 수집되기도 했다.

“2021년 4월 22일 양강도 혜산시 역전 공원에서 30대 중반 남자가 아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삼지연 돌격대원이었는데, 역전 분주소 안전원이 시신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또한) 장사꾼들이 2021년 겨울에만 15명이 아사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⁴¹

외화벌이 기관이나 형편이 좋은 기업소의 경우에는 비교적 원활하게 식량 배급이 이루어졌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 2019년 평양시에서 외화벌이 기업소 운전원으로 일했던 증언자는 매일 쌀, 설탕, 기름, 야채, 돼지고기 등을 받았다고 했다.⁴² 평양의 외화벌이 기업소에서 접대원으로 근무한 여성 증언자도 2019년경 매달 15kg 정도의 쌀을 지급받았는데, 생활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양이었다고 진술했다.⁴³ 또한, 지방의 수산사업소에서 근무한 증언자도 매월 13.5kg의 식량을 배급받았으며, 곡식 종류는 옥수수, 현미, 쌀 등이었다고 했다.

“2022년, 황해남도 ○○수산사업소에 다녔습니다. 그곳은 중앙당 간부들이 먹는 수산 제품을 만드는 곳이어서 상황이 좀 나았는지 배급이 나왔습니다. 매달 규정대로 받았는데, 규정은 매달 13.5kg입니다. 나오는 곡식 종류는 옥수수, 현미, 입쌀, 찹쌀 등 그때그때 달랐습니다.”⁴⁴

한편, 일부 기관·기업소에서는 식량을 자체 생산하는 소위 ‘112호 토지’를 운영했으나, 주민들의 실질적인 식량 상황 개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호 토

40 U47HAV2314

41 UBWCTO2335

42 9F06UX2305

43 ATUMYS2304

44 XHQ3O62407

지는 기관·기업소가 지역 협동농장의 토지 일부를 임대하여 직접 경작하고, 생산물을 노동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임대한 토지가 척박하고, 경작에 필요한 비용 및 임대료 부담 문제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⁴⁵ 함경북도 내 사업소에서 근무한 증언자는 배급을 받는 대신 협동농장이 임대한 토지를 받아 경작했으나, 농사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토지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했으며, 생산량도 많지 않아 결국 반납했다고 진술했다.⁴⁶

“2018년 양강도 ○○역에서 화물노동자로 근무할 당시 식량 배급으로 1년에 감자 150kg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곡물 배급기준은 일일 직장노동자 700g 부양(가정주부) 400g 자녀 300g이었고, 배급표는 기준대로 나왔으나 실제 배급은 배급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직장 부서별로 배급표를 가지고 농장에 가서 식량을 구입해 와 직장에서 부서원들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배급되는 식량은 매우 부족하여 한 달 정도밖에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⁴⁷

다. 한계에 이른 배급제와 주민의 자급적 식량 확보 노력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식량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속과 직업에 따라 사적 경제활동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했다. 소토지 경작, 장마당 장사, 밀무역, 샅별이 등으로 식량을 확보하고 생계를 이어나갔다는 진술들이 수집됐다.

“양강도 ○○군에서 살았고 15세부터 짐꾼으로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업소 노동자였지만 배급이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배급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부업지에서 농사를 해 자체적으로 음식을 마련해야 했고 어머니와 밀수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에서는 굶어죽습니다.”⁴⁸

⁴⁵ XI3TXG1978

⁴⁶ OH7UDE0809

⁴⁷ JEVZ4X1261

⁴⁸ N4XFMT1979

협동농장에 소속된 농장원이나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소토지인 텃밭이나 개간지인 ‘꽤기밭’⁴⁹을 경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꽤기밭은 특히 텃밭이나 ‘부업밭’⁵⁰ 이외에 야산에서 화전(火田) 등을 일구어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불법행위로 「산림법」에 의한 단속 대상이다.⁵¹ 하지만 농장에서 분배하는 식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장원들은 개간지를 경작하고, 개간한 경작지를 매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염소나 돼지 등의 가축을 사육하기도 했으며, 산골 지역의 경우 약초나 나물을 채취하여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기도 했다. 양강도 지역 농장원 출신의 한 증언자는 2019년경 농장 주변의 산이나 벌판의 토지 3,000여 평을 개간하여, 오전에는 협동농장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소토지를 경작하며 식량을 마련했다고 했다.

“농장원들이 100% 다 소토지 경작을 했습니다. 산이나 벌판에 소토지를 일구어서 옥수수나 콩 등을 재배했습니다. 대략 1가족 당 최소 300평에서 최대 1정보(3,000평 정도)씩 소토지 경작을 합니다. 오전에는 협동농장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소토지에서 경작을 하게 됩니다. 협동농장 농지가 더 비옥하지만, 농장원들이 소토지 경작에 힘쓰기 때문에 (협동농장) 수확량이 적습니다. 소토지 경작물에 대해서는 (당국이) 회수하지 않지만 1년에 (북한 돈) 5,000원~10,000원 정도를 땅세 명목으로 걷어갔습니다.”⁵²

그림 V-3 북한의 산지 개간 사례



압록강변 산비탈에 조성된 꽤기밭(평북 삭주, 2018.6.)

* (자료출처) 통일부

49 ‘꽤기’는 ‘일정하게 경계를 지은 논밭의 한 구획’을 뜻하며, ‘꽤기밭’은 ‘매우 작은 밭’을 의미한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4권, 2017. 614쪽 참고)

북한에서 ‘꽤기밭’은 매우 작은 규모의 농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북한에서는 텃밭이나 농장·기관·기업소의 부업지 중에서 작은 규모의 것은 모두 꽤기밭이라 할 수 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2. 264쪽 참고)

50 ‘부업’은 ‘본업 밖의 일, 일정한 수입을 목적으로 집에서 하는 일’을 뜻하며, ‘부업밭’은 ‘부업으로 부치는 밭’을 의미한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2권, 2017. 833쪽 참고)

51 「산림법」(2021) 제49조, 제53조, 제65조.

52 BOBIYN2133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당국이 산림복구 정책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산지 개간 및 개간지 경작이 어려워졌다. 공통된 진술에 따르면 2012년 ‘국토관리총동원운동 열성자대회’를 계기로 당국이 산림조성과 보호에 나섰으며, 이로 인해 산지 개간에 대한 감시와 관리도 점차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증언자들은 과거에는 주민들의 개간지 경작에 대한 별도의 단속이 없었으며, 매년 만 원 정도를 세금처럼 납부했고,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산림복구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당국은 뚝배기 밭에 일정 간격으로 나무를 심도록 했고, 주민들은 나무순이나 묘목을 심었다가 뽑기를 반복하는 등 단속을 피하고 개간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했다.

“2015년 겨울부터 당의 방침에 따라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뚝배기 밭 4m에는 강냉이를 심고 1m에는 나무를 심을 곳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무 묘목이 세대에 내려온 것은 아니었고 자체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나무순을 심으라고 하였는데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줄어들고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게 됩니다. 이 방침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⁵³

한편, 상당수 노동자의 경우 소속 기업소에 출근하지 않는 대신 수익금을 납부하고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소에서 받는 배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장사, 서비스업, 밀무역, 샷별이 등에 나선 것이다. 2020년경 양강도 혜산시 인민위원회 산하기관 노동자였던 증언자는 직장에 돈을 내고 출근하지 않은 대신, 고졸중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교습을 하거나, 개인이 의뢰한 작업을 해주고 돈을 벌며 생활했다고 했다.⁵⁴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부들과 학생들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전업주부들은 장사, 밀무역, 샷별이 등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지 않고 부모의 장사를 돕기도 했다.⁵⁵ 한 증언자는 2019년경 아버지가 근무하

⁵³ Y05YNJ1861

⁵⁴ U4G4Q32334

⁵⁵ CDZJG02349

던 기업소에서 식량 배급이 나오지 않아,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음식 장사를 하여 생활했다고 진술했다.⁵⁶ 다른 여성 증언자는 장마당에서 수산물 장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했다.

“2019년 함경북도 청진시 ○○시장에서 수산물 장사를 했습니다. ‘마대 비용(자릿세)’으로 중국 돈 2,700위안(미화 약 400달러)을 주었습니다. 시장관리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장세로 복한 돈 36,000원(약 5달러)을 주어야 했고, 단속도 받아야 했지만, 장사를 하니 혼자서 살만한 정도는 됐고 한 달가량은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⁵⁷

주민들의 이러한 식량 자급 노력과는 반대로 최근 북한 당국은 곡물 유통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곡(곡물)판매소’를 운영하며 곡물 유통을 독점하는 등 식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동향이 수집됐다. 한 증언자는 2022년경부터 판매소를 설치했으며, 판매소에서 모든 곡물을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동 조치 이후 장마당에서 곡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전보다 강화되었다고 했다.

“○○군에는 2022년 즈음부터 장마당에서 쌀을 내놓고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군내에 몇 군데의 ‘양곡(곡물)판매소’를 만들어 놓고는 곡물은 무조건 그곳에서 거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곡물판매소는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것은 두 곳이었습니다. 2023년 저희가 (양곡판매소에서) 쌀을 살 때는 5,300원 정도였고, 팔 때는 5,000원 정도였습니다.”⁵⁸

⁵⁶ U47HAV2314

⁵⁷ K5ZJ5U1964

⁵⁸ UYSKRB2399

2. 건강권

‘건강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이며, 이는 성별, 사회적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사회권규약」에서는 건강권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 규약에 따르면 국가는 건강한 출산과 어린이의 성장, 환경·위생의 개선, 전염병 등의 예방과 치료·통제, 질병 발생 시 의료·간호 확보 여건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표 V-2 「사회권규약」과 건강권

「사회권규약」		건강권 (관련 목차)
제12조	제1항	<div style="text-align: center;">공동 건강권</div>
	제2항	

북한은 공식적으로 무상의료체계를 표방하고 있다. 「사회주의헌법」에 ‘전반적인 무상치료제’⁵⁹와 ‘의사담당구역제’⁶⁰, ‘예방의학제도’⁶¹를 명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국가의 건강증진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⁶² 그러나, 실제 북한의 의료기관은 의료설비나 기구, 의약품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59 ‘무상치료제’는 ‘인민들에게 나라에서 무료로 병의 예방과 치료를 해주는 선진적인 보건제도’를 의미한다. 북한은 ‘김일성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전반적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선전한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1권, 2017. 250쪽 참고)

60 ‘의사담당구역제’는 일정하게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의사 1명이 책임지게 하는 북한의 의료보건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1963년 처음 실시하였으며, 1993년에는 의사호(戶)담당제로 발전했다. (통일부 국립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2. 597쪽 참고)

61 ‘예방의학’은 ‘질병 발생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워 인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의학의 한 분과’를 의미한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4권, 2017. 1542쪽 참고)

62 「사회주의헌법」(2019) 제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 보장사업을 개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는 약제비, 사례비, 입원비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 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거주 지역, 출신성분, 경제력에 따라 차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으며, 북한 사회 전반에 사적(私的) 의료행위가 만연해 있었다. 주민들은 일상화된 마약 사용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마약 근절을 위한 당국 차원의 의식교육이나 중독자 치료 대책은 없었다. 심지어, 북한 주민들은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을 권리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가. 유명무실해진 무상치료제

‘국가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책임지는 무상치료제’는 북한이 선진적 보건제도라고 선전하고 있는 의료체계이나 근래에는 그 의미가 무색해졌다. 1990년대 중반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으며 국가배급제와 함께 무상치료제도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과 「의료법」, 「인민보건법」⁶³에서 ‘무상치료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현재 무상치료제도는 형식적인 것으로 변질되었으며, 일부 주민들에게만 제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북한 주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납부해야 했다. 다수 증언자들은 북한에 있을 당시 의료진에게 대가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다.⁶⁴ 1990년대까지만 해도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며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무상치료제가 사라졌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었다.⁶⁵ 1990년대 이후에는 무상치료제의 원칙과 달리,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에 대한 환

⁶³ 「인민보건법」(2012) 제9조 (무상치료의 권리)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의 혜택을 준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모든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무상치료의 내용) 무료의료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래치료환자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는 약은 모두 무료이다.
2.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같은 환자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는 무료이다.
3. 근로자들의 요양의료봉사는 무료이며 요양을 위한 왕복 여비는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4. 해산방조는 무료이다.
5. 건강검진, 건강상담, 예방접종 같은 예방의료봉사는 무료이다.

⁶⁴ JQYD690967, 87YFN32212, EJRHJ2244, YKDSNY2213, QWVNRL2135, KJ7IFB2239, 1J9VEU1801, EO2TWG1095, WTNUL21649, HIGN3D0888, 5QJ9CE0679

⁶⁵ 1NR2V2474, 5CB1UV1055

자들의 부담이 점차 늘어났다. 의료진에 대한 사례비나 입원기간 동안의 식사, 의약품 등은 환자가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⁶⁶ 한 증언자는 2018년경 당시 평양에서 일주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의료진에게 5,000~10,000원씩 현금으로 사례하거나 담배를 주었다고 했다.⁶⁷ 당국의 단속과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식사·의약품 비용 부담, 의료진에 대한 사례비 지급 등은 북한 사회에서 여전히 당연시되고 있다.⁶⁸

“2015년 양강도 ○○군(郡)병원 산과(産科)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받고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료를 보더라도 의사에게 대가로 담배 등을 주는 것은 아주 관례적이고, 수술을 할 때 필요한 약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수술 받은 지 3년 뒤인 2018년 검찰소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수술 이력에 대해 물어보면서 당시 약값을 본인이 감당했는지 물었습니다. 의사들이 공급된 약을 주민들에게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팔아서 돈벌이를 한 것에 대한 단속이라고 하였고, 이후 여러 명의 ○○군병원 의사들이 의사직에서 해임되고 단련대로 갔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⁶⁹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약국, 비공식 약국, 장마당 등지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구입해야 했으며, 입원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품 전반을 환자 개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했다. 무상공급과 유상공급이 공존하고 있었지만, 다수 증언자들은 의약품 유상구입 경험이 있었고 유상으로 구입한 의약품을 선호했다. 이러한 경향에는 북한 의료기관의 열악한 의약품 사정, 비공식 의약품의 효능 우수 및 가격 경쟁력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면 처방전대로 약국에서 별도의 약을 구입하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비공식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했다는 여러 증언들이 수집됐다.⁷⁰ 한 증언자는 2018년 평양에 거주할 때 주로 개인집에서 약을 구입했는데, 공식 약국보다 약값이

⁶⁶ JQYD690967, R7KY7W2329, DGAE7C0806, TGCAEV2403, NT9FPV0827

⁶⁷ YNNL9N2323

⁶⁸ C70C571623, RQU50U2001, G826H31621, 87YFN3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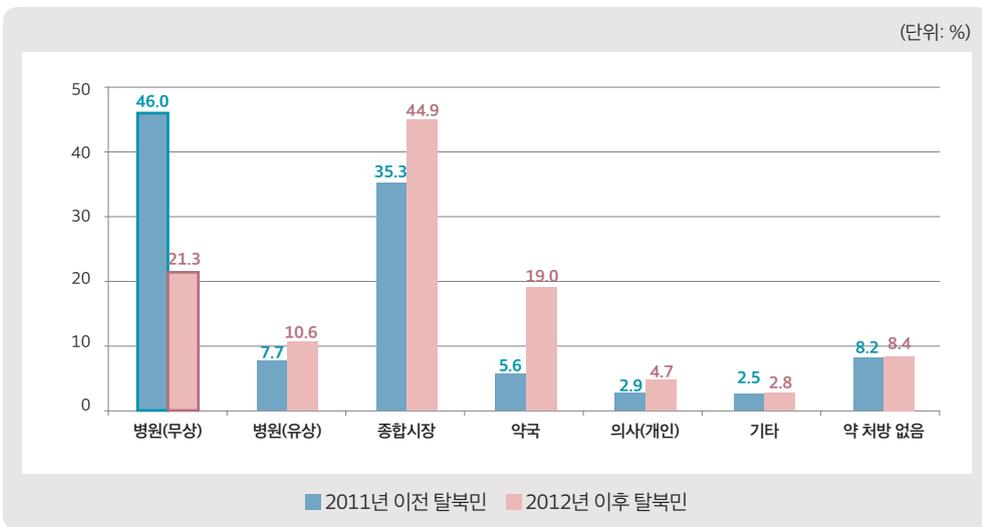
⁶⁹ G826H31621

⁷⁰ NHVN9E0241, 5VRQH72482, 00RIT62477, JUZ0TT2455, 8IUFRL2452, XHQ3062444, 1BQ5TD2438, 1BQ5TD2412, ROD6PD2423

더 저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⁷¹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약품에 대한 불신도 북한 주민들이 의약품을 스스로 구해야 하는 이유가 됐다.

“(함경남도) 고원군 군(郡) 병원에 약국이 있긴 하였는데,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주민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병원 약품은) 걸을 보면 곰팡이가 있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많답니다. 언니가 페니실린 같은 것을 구해주면 제가 스스로 엉덩이에 주사를 놓는 식이었습니다. 약은 병원이거나 약국에서 구하는 것보다 개인집에서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집은 필요하면 냉장고에 약을 보관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병원 것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⁷²

그림 V-4 북한 주민의 의약품 구입 방법 변화 (통일부)



* (자료출처)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24. p.185 / 복수 응답

한편, 북한 주민들의 의약품 무상공급은 김정은 집권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대상 ‘의약품 자가 공급’에 대한 통일부 조사에서 의약품의 병원(무상) 공급 비중은 김정은 집권 이전 46.0%에서 집권 이후 21.3%로 급감했다. 반면, 병원(유상), 중

71 YNNL9N2323

72 F6ES8K2204

합시장, 의사, 약국에서의 개인적 구입을 통한 유상구매는 51.5%에서 79.2%로 크게 증가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무상공급의 급감은 북한 무상치료제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⁷³ 북한 주민들의 비공식 약국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장마당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의 의약품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 증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약은 보통 개인 약국에서 삽니다. 면허를 소지해야 약국을 운영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상 자격증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외에 장마당에서 약을 사기도 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약국이 있지만 결국 알고 보면 개인이 국가에 돈을 주고 운영합니다.”⁷⁴

최근 들어 개인이 운영하는 비공식 약국에 대한 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진술들이 수집됐다. 최근 탈북한 탈북민들은, 이전에는 쉽게 약을 구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어려워졌다고 진술했다. 개인이 약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노동단련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한 증언자는 김정은 집권 이후 비공식 약국에 대한 단속이 전에 비해 심화되었다고 했다.⁷⁵ 다른 증언자도 이로 인해 2023년 3월경에는 인상된 약값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만 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진료 받은 것이 2023년 3월입니다. 대상포진에 걸려서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시다. 의료시설은 매우 낡았습시다. 원래 개인집에서 약을 주로 구입했는데, 코로나19 이후 병원에서만 약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약을 구매했습시다. 당시 두 종류의 약을 샀는데 약값은 1만 원 정도로 기억합니다.”⁷⁶

⁷³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24. 185쪽 참고

⁷⁴ DGAE7C0806

⁷⁵ 5VRQH72406, YNNL9N2323

⁷⁶ XHQ3062407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 등이 지원한 의약품 중 일부가 주민 무상 공급이 아닌, 판매용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구에서 지원한 의약품은 의약품관리소를 거쳐 병원으로 공급되는데, 그중 일부는 병원장의 승인 아래 빼돌려졌고, 주민들이 이를 장마당 등지에서 구입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⁷⁷ 한 증언자는 2017~2018년경 ‘유엔 보건기구’에서 환자들에게 약품이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에서 지원한 의약품 반출은 계속되었다고 했다.

“의약품관리소는 ○○도 ○○시 ○○동에 있고, 그곳에는 평양에서 공급해주는 약과 유엔약 등 약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의 약은 몽땅 간부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관리소장은 먹을 알(빼돌리는 약)이 너무 많아 1년에 한 번씩 검열을 하여 교체가 됩니다. 비싼 영양제, 항생제, 심장약, 녹용고 등 일반인이 돈을 주고 사려면 비싼 약들이 있습니다. 의약품관리소 약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차려지지(공급되지) 않습니다. (중략) 평양에서 도 의약품관리소에 약을 공급하고, 도 의약품관리소는 시·군 의약품관리소에 약을 공급합니다. 의약품관리소로 다수가 가고, 장마당으로 일부 빼돌려져 판매가 됩니다. (중략) 2017~2018년 ○○도 ○○시 ○○동에서 유엔 보건기구에서 실제로 유엔약이 환자들에게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⁷⁸

나. 무너진 예방의학시스템

「사회권규약」 제12조는 질병의 치료와 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사회주의헌법」과 「인민보건법」⁷⁹에서 ‘예방의학제도’를 ‘사회주의의학’의 근간이라고 소개하며, 예방을 통한 생명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의 보건정책은 치료보다는 발병 이전의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예방의학제도는 이를 집약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와 달리 북한의 예방의학체계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⁷⁷ OJ26QT0233, V97A6P1188, 55IV3I2260, YDBRT41568, QWVNRL2135

⁷⁸ V97A6P1188

⁷⁹ 「인민보건법」(2012) 제3조 (예방의학제도의 공고발전원칙) 사회주의의학에서는 기본은 예방의학이다. 국가는 인민보건 사업에서 사회주의의학의 원리를 구현한 예방의학제도를 공고발전시킨다.

(1) 예방접종 실태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의학의 기본은 예방의학’이며 ‘예방접종은 무료’라고 법령에 명시하고 있지만,⁸⁰ 실제로 규정과 같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북한 예방접종 체계를 구성하는 ‘유아 필수 예방접종’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일반 예방접종’ 모두에서 주민들이 접종 대가를 지불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

그림 V-5 북한 유아 필수백신 예방접종



* (자료출처) WHO 「Evaluation of the GAVI Health Systems Strengthening Support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9.3.)

먼저, 유아 필수 예방접종의 경우 대체적으로 무상 접종이 이루어졌으나, 모든 주민들에게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이나 쌀감을 가져가야 했다는 증언도 있었으며, 필수 예방접종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언자도 있었다.⁸¹ 언제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2023년 3월 진료소에 가서 손녀에게 예방접종을 맞춰주었습니다. 인민반에서 맞을 때가 되었고 말해주어서 그냥 데리고 가서 맞힌 것이었기 때문에 무슨 백신인지는 모릅니다. 유아 필수 예방접종은 무상입니다. 그 외에는 다 돈을 내야 합니다.”⁸²

⁸⁰ 「인민보건법」(2012) 제10조 (무상치료의 내용) 무료의료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건강검진, 건강상담, 예방접종 같은 예방의료봉사는 무료이다.

⁸¹ DTUY3F1449, T255EE2480, ROD6PD2466

⁸² 5VRQH72406

이러한 실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일반 예방접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전염병 차단을 위해 주민들에게 접종을 실시하고, 전염병 증상 및 예방법을 교육하는 ‘위생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에 대한 진술은 증언자마다 달랐다.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지만, 전염병 예방접종 등 별도의 예방 조치는 없었다는 상반된 진술도 수집됐다.⁸³

“군에 입대한 뒤 2017년까지 평양시 여명거리 건설에 동원되었습니다. 건설 일을 하던 중 ‘파라티푸스(급성 소화기 전염병)’로 군인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전염병이었지만) 같이 생활하던 군인들에게 예방접종은 없었고 저만 입원하였습니다.”⁸⁴

아울러, 원칙과는 달리 예방접종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한 증언자는 2019년 유학 중 잠시 귀국했을 때, 입국하자마자 공항의 무실에서 강제로 간염 예방 접종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내국인들만 접종 대상이었으며 개인적으로 접종비용을 부담해야 했다고 진술했다.⁸⁵

(2) 감염병 관리의 한계

북한에서는 당국의 주장과 달리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위생선전사업’과 감염병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병자(발병자)’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핵 등 감염병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결핵 환자들은 체계적인 관리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감염병 중에도 결핵은 발견과 치료, 그리고 완치까지 국가보건기관이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전파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열악한 의료시설과 부실한 환

⁸³ TGCAEV2403, 100S8G2205, 8CWCD32231, YX610J1638

⁸⁴ 8CWCD32231

⁸⁵ YNNL9N2323

자 관리체제로 인해 제대로 된 환자 관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⁸⁶ 군 복무 시 결핵 판정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하게 되었는데, 제대 이후에는 당국의 관리나 치료가 없었다는 증언이 있었다.⁸⁷ 또한, 재택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병원이나 당국 차원의 별도의 질병 관리는 없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남편이 양강도 헤산시 병원에서 잠복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핵환자들은 국가에서 약을 무료로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리 진료소에 가서 2개월간 결핵약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분을 받아왔지만, 진료소까지 거리가 있어서(도보 30분) 제가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남편은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진료소에서 (2개월) 이후 검진이나 치료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남편의 상태가 아주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료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다시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아편을 쓴 적도 있습니다.”⁸⁸

간염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도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전염력이 있는 B형간염과 관련하여 간염병동, 간염예방원 등의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간염 환자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염 환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약마저 개인 부담으로 구입해야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⁸⁹ (최근 북한 당국의 대표적인 감염병 관리 사례로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이 있다. ‘II-4. 코로나19’ 참고)

“양강도 헤산시 ○○동에 간염예방원(3층 건물)이 있습니다. 간염환자들만 입원해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입니다. 결핵약은 결핵 요양소 등을 통해 유엔 의약품이 지급되고 국가에서 무상으로 주지만, 간염약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결핵 환자, 간염 환자는 등록부가 있어서 약을 주고 환자 수 등을 관리합니다.”⁹⁰

⁸⁶ YKDSNY2213, 5EXU5N2147

⁸⁷ 6Q84A61977

⁸⁸ O2RMI10404

⁸⁹ 8CWCD32231, 55IV3I2260, IGB68K1596, V97A6P1188

⁹⁰ V97A6P1188

(3) 변질된 의사담당구역제

‘의사담당구역제’는 예방의학제도와 함께 북한의 핵심적인 보건정책이나,⁹¹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담당구역제는 ‘호(戶)담당의사제’라고도 하며, 진료소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 구역을 맡아, 주민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돌보면서 예방치료 사업을 하는 주민건강관리제도를 의미한다.⁹² 호담당의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생선전사업, 예방접종, 진단서 및 이송증 발급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³ 하지만, 낙후한 의료시설, 부족한 의약품, 의료진의 사적(私的) 경제활동으로 인한 부재 등에 따라 정상적인 예방과 치료가 불가능했다.

한편, 호담당의사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사적 경제활동을 이유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호담당의사들은 대개 사적으로 대가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거나, 택시 운전 등 다른 일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⁹⁴ 한 증언자는 호담당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집에서 심전도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고 했다.⁹⁵ 2019년 진료소 호담당의사로 근무했던 다른 증언자는 배급이나 급여가 없어서 11인승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택시영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진술했다.⁹⁶

반면, 진료소 치료는커녕 호담당의사를 만난 적도 없다는 증언들도 다수 수집됐다. 이러한 답변을 한 증언자들은 대부분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⁹⁷ 이는 ‘선진적 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탈북민 대상 ‘의사담당구역제 인지 여부’에 대한 통일부 조사 결과, 의사담

91 「인민보건법」(2012) 제28조 (의사담당구역제) 국가는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고 맡은 구역에 늘 나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사업을 하는 선진적 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를 공고발전시킨다.

92 북한의 동·리·(노동자)구에는 진료소가 세워져 있고 이를 중심으로 의사담당구역제가 운영된다. 의사담당구역제에 따라 호담당의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외래로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고, 담당구역에서 위생보건·예방접종·건강검진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진료소 소속의 의사 한 명이 대략 200~300명,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500명 내외의 주민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2. 598쪽 참고)

93 YX61OJ1638, 9DX9W90357, V97A6P1188, VZV8V11352, YNZ1CJ2226, 030VQT1021, QWVNR12135, VQJ71O1118, VQJ71O1118

94 5OR5F62241, 5QG11E2237

95 YOVOE51471

96 68JWC41434

97 DFFYXV2475, 0ORIT62454, T255EE2480, 1BQ5TD2438, ROD6PD2411, 1BQ5TD2424, REUFYK2391, 1NR82V2378, 4C6RDC2348, V941TT2313, FG7EKF2277

당구역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70.6%)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비율(29.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인지도는 북한이 오랜 기간 선전하고 자랑해온 북한 특유의 보건의료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의 제도적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⁹⁸

다. 열악한 의료서비스 및 의료 차별

기록센터 조사 결과, 북한의 의료장비와 시설은 매우 열악하며, 각 의료기관에 의료장비가 충분히 갖추어져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기관 접근성은 계층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평양과 지방 간 의료수준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1) 의료시설 낙후성 및 격차 심화

주요 의료시설이 집중된 평양과 그렇지 않은 지방 간 의료시설 수준은 차이가 컸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권층과 핵심계층이 사는 평양의 경우 옥류아동병원(2013년 개원), 류경구강병원(2013년 개원), 류경안과종합병원(2016년 개원) 등이 설립되는 등 김정은 집권 이후 의료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다. 준공이 지연되고 있지만, 김정은 지시로 건설 중인 평양종합병원도 평양-지방 간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 거주하던 2018년까지 계속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차로 20~30분 내외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평양 중구역에 있는 상급병원이다 보니 전기도 잘 들어오고 의료시설 상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응급 진료도 잘 받을 수 있었고 의료진 역량도 우수합니다. 진료를 받을 때 부모님께서 급이 낮은 의료진에게는 담배 한 갑 정도, 급이 높은 의료진에게는 돈을 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평양에는) 일반인은 못가는 간부만을 위한 병원 자체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적·인맥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차별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⁹⁹

⁹⁸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24. 182쪽 참고

⁹⁹ DFM95V2357

반면, 지방의 의료기관은 기본적인 의료시설이 부족했고 설비들도 대부분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언에 따르면 지방 의료기관에는 복부초음파기, X-ray, 위내시경, 심전도기 등 간단한 의료기기 정도만 구비되어 있을 뿐, CT, MRI 등의 기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도 매우 오래되어 고장이 잦았다는 증언도 있었다.¹⁰⁰ 한 증언자는 2017년 시급(市級) 병원인 함경북도 회령시 제1인민병원의 경우, 의약품과 의료도구가 부족해 치료에 필요한 약물, 솜 등을 입원환자가 스스로 준비해 가야 했다고 진술했다. 주사기, 거즈 천, 붕대 등의 일회용 의료비품도 재사용할 정도로 열악했으며, 구급차도 간부들이 전용했다고 진술했다.

“2017년까지 회령시 제1인민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의료 처치 시 위생상황이 형편없었습니다. 일회용 주사기뿐 아니라 거즈 천과 붕대까지 소독해서 재사용합니다. 비눗물에 씻은 뒤 1시간가량 삶고 건조해서 사용합니다. 소독을 위해 알코올을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구급차가 1대 있었는데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서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병원장이나 초급당 비서 등 병원 간부들이 회의 참석 등 개인적인 이유로 이용했습니다.”¹⁰¹

주민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진료소의 경우에는 간단한 응급처치 도구와 기본적인 의약품만 구비되어 있었다. 진료소에 구비되어 있었던 의료 도구는 청진기, 혈압계, 약솜, 붕대, 반창고, 일회용 주사기, 구급함 등이었고, 의약품으로는 감기약, 식염수, 소독약, 진정제, 종합비타민제가 전부였다는 증언이 있었다.¹⁰² 이마저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한 증언자는 2018년 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을 당시, 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한 뒤 2~3차례 재사용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¹⁰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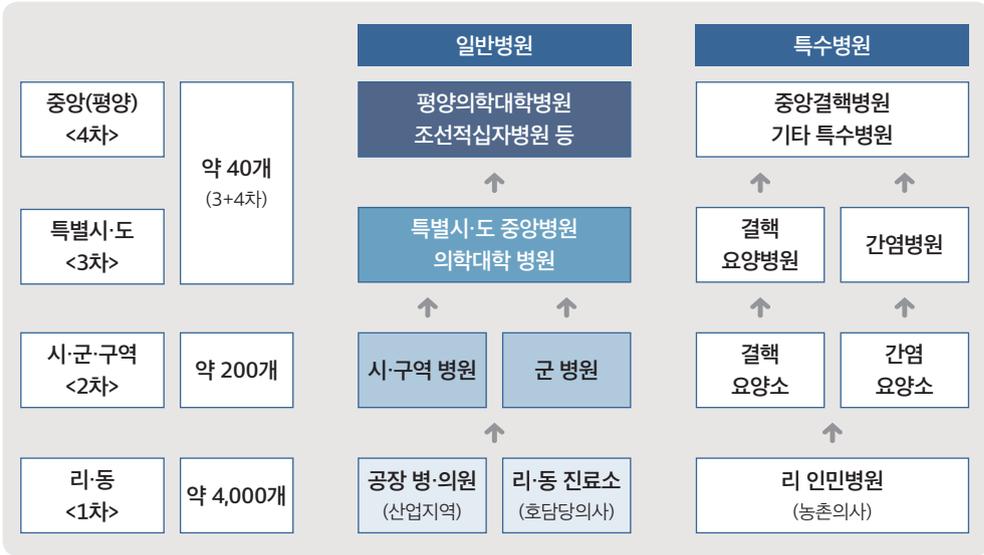
¹⁰⁰ DFM95V2357, RQU50U2001

¹⁰¹ YDBRT41568

¹⁰² 68JWC41434

¹⁰³ DTUY3F1449

그림 V-6 북한의 의료 전달 체계



* (자료출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신희영 외, 『통일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2017. 참고

북한의 열악한 전력상황도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평양이라 해도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정전 등 비정상적인 전력상황에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평양 선교구역에 거주한 증언자는 북한의 병원에서는 발동기나 태양열 전기판을 설치하여 정전 상황에 대비했다고 했다.¹⁰⁴ 지방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전기 공급으로 정상적인 의료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전기 부족으로 의약품을 냉장 보관하거나 의료장비를 가동하는 것이 어려웠고, 진찰할 때 태양광 충전이나, 심지어 초를 사용하여 조명을 밝히는 실정이라고 했다.¹⁰⁵

“2020년 초 양강도 혜산시 제1인민병원에서 진료 받았습니다. (전기·수도·난방·위생상황 등) 의료 시설의 상태는 형편없습니다. 전기는 안 들어옵니다. 혹시 수술할 때는 전기를 주겠지만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¹⁰⁶

104 YNNL9N2323

105 YDBRT41568, 3RNTQV2332

106 3RNTQV2332

(2) 차별적 의료 접근성

북한에서는 의료시설, 상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이용, 통상적인 진료 이용 등에 있어 지역과 성분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평양과 지방과의 현격한 의료 시설 차이는 개인마다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북한 주민들은 거주지와 성분, 경제력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에 차별을 받았다.

상급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서는 하급병원에서 ‘진단서’와 ‘파송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맥과 뇌물이 필요했다. 진단서와 파송증은 담당의사의 판단만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진료한 해당 부서의 회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발급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도 인민병원이나 평양의 중앙병원, 특수·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인맥과 뇌물을 동원해야 했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¹⁰⁷

“재북 시 함경남도 인민병원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도(道) 병원에 파송을 오려면 통상적으로는 진료소, 시·군 병원을 거쳐서 파송 오게 됩니다. 하지만, (파송증 없이) 그냥 오는 경우에도 뇌물을 바치면 치료해 줍니다. 의사들도 환자가 많아 뇌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꺼려하지 않습니다. 도 병원에서 치료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양 김만유병원, 적십자병원, 평양의학(대학)병원 등으로 파송시키게 됩니다. 파송할 때는 치료 내역이나 진단 결과 등을 작성한 ‘교환 병력서’를 환자 편으로 같이 보내게 됩니다.”¹⁰⁸

또한, 북한에는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 및 진료부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언에 따르면, 일정 계급 이상의 간부와 가족들을 위한 시설로 ‘진료과’가 있다고 한다.¹⁰⁹ 진료과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간부¹¹⁰, 김일성·김정일 접견자, 북한 입장에

¹⁰⁷ YNZ1CJ2226, YDBRT41568, NZTG8R0537

¹⁰⁸ RQU50U2001

¹⁰⁹ 13PN7Y2325, 31ZJ9K2121, RTDQ1Q1167, 8B5CA02248, YDBRT41568, O987B01536

¹¹⁰ ‘진료과’를 이용할 수 있는 간부는 도(道)의 비서나 부장급으로 도당 비서, 도 인민위원장, 도급 주요 기관장, 시·군당 비서급, 시·군 인민위원장을 말한다.

서 국가유공자라 할 수 있는 혁명열사¹¹¹, 애국열사¹¹² 및 그 가족들로 한정된다.¹¹³ 이들이 진료과를 이용할 때는 관련 예산이 모두 지원되어 입원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전액 무상이다. 또한 진료과 이용자가 상급병원으로 이송될 때에도 우선대상자로 처리된다. 이 밖에도 의약품 관리소에서 공급되는 약품 중 고가의 약품은 간부용이었으며, 병원 구급차마저도 환자 이송보다는 간부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¹¹⁴ 대표적인 특권층 전용병원으로 평양의 중앙당 간부와 그 가족들만 이용할 수 있는 ‘봉화진료소’가 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¹¹⁵

최근에는 인맥이나 뇌물을 이용하면, 상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차별을 야기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급병원에서의 진료는 이송증이나 진단서 발급 없이도 인맥과 돈으로 가능하고, 평양 전문병원에서의 진료 또한 돈만 있으면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었다. 2018년 평양에 거주한 증언자는 돈만 많이 줄 수 있다면, 좋은 의료기기를 사용한 치료를 받는 등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¹¹⁶

“2019년 4월과 9월 평양의 ‘류경안과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진료비용으로 (미화) 20달러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에게 개인적으로 납부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경우 일단 응급처치는 해주지만 이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¹¹⁷

¹¹¹ ‘혁명열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 바쳐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되었거나 빛나는 생애를 마친 투사를 의미한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4권, 2017. 131쪽 참고)

¹¹² ‘애국열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원수와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된 투사’를 의미한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4권, 2017. 1506쪽 참고)

¹¹³ 31ZJ9K2121, YNZ1CJ2226, 5OR5F62241, QWVNRL2135, WTNUL21649, DQSGDT0863

¹¹⁴ YDBRT41568, V97A6P1188, DQSGDT0863, NZTG8R0537

¹¹⁵ O987B01536, ZOWWJD2245, BW8MUL2358

¹¹⁶ YNNL9N2323

¹¹⁷ QWVNRL2135

라. 사적(私的) 의료행위 만연

북한 「형법」과 「행정처벌법」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¹¹⁸ 이때 불법의료행위에는 의료인의 비공식적 의료행위와 현직이 아닌 의료인 및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의료인이 공식적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행하는 사적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북한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사적 의료행위에 나서는 것은 당국이 지급하는 급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의료진들은 왕진을 자주 다니며, 환자들에게 받은 사례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¹¹⁹ 의사들은 물론 간호사들도 환자의 부탁을 받고, 왕진을 가서 주사를 놔주며 사적 의료행위를 통해 돈을 벌고 있었다.¹²⁰

북한 주민들은 공식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열악함을 이유로 병원보다 오히려 의료인 개인의 의학지식이나 의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공식 의료기관이 아닌 사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유명한 의료인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증언이 있었다.¹²¹

“병원은 가지 않았고, 전직 의료인에게 사적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보다 경험이 있는 전직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남한은 의료기기들이 많지만, 북한은 의료기기가 부족하여 개인의 의학지식이나 의술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고 용하기로 소문난 의사를 찾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¹²²

사적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는 의료인이 사적 의료행위를 하다가 약물 과다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

¹¹⁸ 「형법」(2022) 제222조 (비법의료죄) 비법적인 의료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비법적인 의료행위로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행정처벌법」(2021) 제214조 (비법의료행위) 비법의료행위를 한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처벌,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노동처벌, 노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¹¹⁹ JQYD690967, U4G4Q32334, 5Q8LRL2333, TEIEJA2400, 1CHLPG2211, QWVNRL2135, YDBRT41568

¹²⁰ O30VQT1021, YDBRT41568

¹²¹ NT9FPV0827, H6QLNW2100, O987B01536, 8CWCD32231

¹²² JQYD690967

었는데, 해당 의사는 사고 이후에도 별도 처벌 없이 사적 의료행위를 지속했다고 진술했다.¹²³

무속인이 점을 보면서 병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¹²⁴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무자격 상태로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하는 이른바 ‘목동의사’들이 많았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한 증언자는 정규교육을 받은 의사보다 오히려 한의학 치료를 하는 목동의사들의 실력이 나왔다고 진술했다.

“의사들의 사적 의료행위가 단속(적발)되면 처벌을 당연히 받지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목동의사’들입니다. 목동의사는 전문교육을 받지 않고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북한에는 의대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동의사들에 대한 단속도 있지만 단속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목동의사들은 주로 동의학(한의학)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목동의사에게 침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데 목동의사의 치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¹²⁵

마. 무분별한 마약 사용

북한 내 만연한 마약의 사용은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북한 사회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 당국은 「마약관리법」을 통해 마약의 생산, 공급, 보관, 이용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과 처벌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의약품의 부족, 잘못된 의료상식 등에 따라 마약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당국 차원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¹²³ 4NK2T91071

¹²⁴ XTDWPE1659

¹²⁵ 34AC201555

북한 당국은 「마약관리법」에서 국가계획하에 마약을 생산하며, 허가받은 의료기관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만이 마약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⁶ 마약 생산은 당국의 허가를 받은 기관·기업소·단체만 가능하고 개인의 생산은 금지된다(제8~9조). 또한, 제약기사, 약제사, 수의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생산할 수 있고(제17조), 의약품 및 수의약품 관련 기관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제21조). 일반주민들의 마약 보관과 밀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제58조).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마약 사용은 계속 확산되어왔으며, 당국 차원의 중독예방 교육이나 적절한 치료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일상화된 마약 사용 실태

북한 주민들은 마약을 의료대용품으로 인식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의료인들이 마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경우도 있었다. 북한의 가정에서는 마약을 상비약 차원에서 구비해 놓는 경우가 많았다.¹²⁷ 특히, 아편이나 ‘빙두’¹²⁸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됐다.¹²⁹ 주민들의 마약 사용 목적은 감기나 염증 치료에서부터 기관지, 축농증, 신경통, 뇌혈전, 허리통증, 장티푸스, 관절염, 통증, 통풍, 뇌졸중, 생식기 질환 치료 등 매우 다양했다.¹³⁰ 전직 의료인이 빙두를 처방하거나, 비공식 약국에서 마약을 일반 약품과 함께 판매하기도 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¹³¹ 2023년에도 해안 지방에서 잠수병 치료에 빙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언

¹²⁶ 「마약관리법」(2005) 제3조 (마약의 생산, 공급원칙) 마약의 생산과 공급은 마약관리의 선차적 공정이다. 국가는 치료와 교육,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마약을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도록 한다.

제41조 (병 치료에 마약의 이용) 공민은 의료기관의 병진단과 처방에 따라 병 치료에 마약을 이용할 수 있다. 마약의 이용은 의료예방기관에서 또는 그 기관의 입회 밑에 가정에서도 할 수 있다.

¹²⁷ R0D6PD2423, P5VXUG1939, 5QG11E2237, LIQM962136

¹²⁸ ‘빙두’는 흔히 ‘필로폰’이라고 불리는 마약의 한 종류인 ‘메트암페타민’이다. 극단적인 쾌락과 심각한 중독성, 부작용을 동반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조·판매·복용이 금지되어 있다. 빙두는 ‘얼음처럼 생긴 마약’이라는 의미인 빙독(冰毒)을 중국식으로 발음한 것이며, 북한에서는 ‘얼음’ 또는 ‘아이스’라고도 불린다.

¹²⁹ U4G4Q32334, 00RIT62460, RI853J1867, BASL0U1798, 34D0XH1158, NKZT071387, YDJC4S0027

¹³⁰ EA5LI51114, NHVN9E0241, 5OR5F62241, JOYD690967, YOBKN51365, 4XWTJ12249, 67MM9S2253, 511H842267, KNCI462328, S02DOL2356, DGAETC0806, YOBKN51365, 1ND60Q2408, VKSV8S0237, TGCAEV2403, 00RIT62460, RUIF6F2209, 18DQYU1382, XRAX2R0506, 59ZNIV1159, GTD1301923, 24CWW80155, 1CHLPG2211, YDJC4S0027, LHB9941636, DA992K1308, 3E7GSG2222, P3RFM51542, DQ8HZ20573, DIQ6CZ1310, RI853J1867, 6AGHRJ0812

¹³¹ U4G4Q32334, F6ES8K2204, RUIF6F2209, F6ES8K2204

이 수집되는 등 마약은 최근까지도 북한 주민들의 일상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황해남도에서는 급할 때 의약품 대신 ‘빙두’를 조금씩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잠수부들이 잠수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빙두를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쇼크가 왔을 때 빙두를 약간 사용하면 깨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¹³²

북한 사회에서 마약의 무분별한 사용은 성별, 연령, 계층에 상관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각성, 스트레스 해소, 사교, 호기심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¹³³ 빙두를 하면 각성효과로 인해 불면증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를 공부하는데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었다.¹³⁴ 또한, 친구나 부모가 마약을 사용할 때 연기를 간접적으로 흡입하여 중독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 사회에 마약이 널리 퍼지게 만든 근본 원인은 북한 당국의 수출용 마약 제조였으며, 북한 내 마약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북한산(産) ‘빙두’는 2000년대 중반부터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¹³⁵ 수출용 마약의 생산과 거래는 중앙당 39호실에서 전담했고, 제조된 마약은 중국 등으로 판매되었다고 한다.¹³⁶ 하지만, 2007년경 북한이 비밀리에 마약 생산기지로 운영하던 평양 근처 제약공장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졌고, 결국 북한 당국은 공개적으로 마약 생산시설을 폭파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기술자들을 함경남도 함흥 등지의 대학교수로 배치했다. 이러한 조치는 2010년대 초반부터 함흥을 중심으로 북한 각지에서 마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북한 내 마약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¹³² TGCAEV2403

¹³³ UYYAWM0821, VKSV8S0237, OJ26QT0233, DGAE7C0806, 5CB1UV1055, Q0MV8C2262, 5OR5F62241, 1BQ5TD2458, 1CHLPG2211

¹³⁴ BASL0U1798

¹³⁵ “2005년경 국가재정을 위해 마약을 제조하라는 김정일 지시가 내려와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평양에 소재한 장생합영회사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 (5CB1UV1055)

¹³⁶ YNZ1CJ2226

증가하게 된 원인이 됐다.¹³⁷ 증언자들은 최근에는 함흥에 있는 흥남제약공장에서 수출용 마약이 대량 생산되고 있으며, 가정집 또는 이동식 시설에서 국내 유통용 마약이 생산되고 있다고 진술했다.¹³⁸

“북한에서는 마약을 많이 합니다. 2017년 탈북하기 직전에는 ‘함흥에는 코 달린 사람은 얼음(빙두)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양귀비 재배도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많이 합니다. 저도 재배 했습니다. 단속(적발)이 되면 교화소에 가기도 하지만 사전에 간부들과 재배 후에 얼마 주겠다고 말을 해둡니다. 옥수수 밭에 한 줄은 옥수수를 심고 한 줄은 양귀비를 심고 이런 식으로 숨겨서 키웁니다. 제조한 아편은 보통 개인 거래로 팔아넘깁니다. 아편 1g에 쌀 10kg와 값이 같습니다. 진액 말린 것을 물에 타서 주사로 맞는데, 식중독 등 효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도시 젊은이들도 하는 추세로 북한사람들 80~90%는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¹³⁹

그림 V-7 북한의 마약, 아편과 빙두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 진액 채취

'빙두'라고 불리는 '메트암페타민'

함경남도 흥남제약공장 내부

* (자료출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연합뉴스 (右)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 수준은 상당히 낮았으며, 인식 개선과 치료를 위한 당국 차원의 노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마약으로 인한 각성 효과를 질병의 치료 효과로 오인하고 있었고, 중독 증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등 마약 사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¹⁴⁰ 오히려 한두

¹³⁷ OJ26QT0233, 6MVIBL0286, F6ES8K2204

¹³⁸ LHB9941636, UYYAWM0821, EA5LI51114, OORIT62445

¹³⁹ DGAE7C0806

¹⁴⁰ EA5LI51114, 6MVIBL0286, JOQUB82117, NJGAO40397, 18DQYU1382, 6AGHRJ0812

번 사용하는 마약은 ‘보약’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당국 차원의 마약 중독 예방이나 주민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¹⁴¹ 한 증언자는 2018년경 마약 중독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전문 치료기관이 아닌 결핵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¹⁴² 마약 사용 확산에 따라 중독자에 대한 치료 체계가 마련되어야 했지만, 마약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이나 전문 치료기관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¹⁴³

“2017년 당시 북한 주민들은 병에 걸려도 치료약을 구하기 어려워서 모든 병 치료에 아편이나 빙두를 사용했습니다. 주민들은 아편과 빙두를 많이 쓰면 극악이지만,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은 보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약의 해악성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은 전혀 없었고, (마약)중독자 치료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¹⁴⁴

(2) 마약에 대한 당국 차원의 대응

북한은 마약의 제조와 유통, 불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법령에 명시해 두었다. 북한 「마약관리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 이용과정에서 중독사고가 날 경우 인민보안기관, 의료예방기관, 수의방역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제46조)하고 있다. 북한 「형법」도 불법적인 아편 채취(제234조), 불법적인 마약 제조(제235조), 마약 밀수 및 거래(제237조)에 대해 강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와의 투쟁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제정된 「마약범죄방지법」도 마약의 불법 채취, 제조 및 거래, 마약범죄 관련 재산의 불법 처분 행위에 대하여 최대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⁴⁵

¹⁴¹ UYYAWM0821, EA5L151114, 59ZNIV1159, 713QFQ0395

¹⁴² OJ26QT0233

¹⁴³ BASL0U1798, LHB9941636, 6MVIBL0286, UYYAWM0821, XRAX2R0506, 713QFQ0395

¹⁴⁴ GTD13O1923

¹⁴⁵ 「마약범죄방지법」(2021) 제3장(제20조~제41조)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법적책임’을 규정하였다. 특히, 아편 비법(불법) 채취(제23조), 마약 비법 채취(제24조), 마약 밀수·거래(제28조), 마약범죄와 관련이 있는 압수, 몰수재산의 비법 처분(제39조) 등은 최대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표 V-3 마약 관련 북한 「형법」상 처벌

조항	죄명	처벌 대상 (주요내용)	처벌 내용
제233조	아편꽃 비법재배죄	· 아편꽃을 비법적으로 재배한 자 · 많은 양의 아편꽃을 비법적으로 재배한 경우	· 노동단련형 ·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34조	아편비법 채취죄	· 아편을 비법적으로 채취한 자 · 많은 양의 아편을 비법적으로 채취한 경우 · 특히 많은 양의 아편을 비법적으로 채취한 경우 · 극히 많은 양의 아편을 비법적으로 채취한 경우	·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제235조	마약비법 제조죄	· 마약을 비법적으로 제조한 자 · 많은 양의 마약을 비법적으로 제조한 경우 · 특히 많은 양의 마약을 비법적으로 제조한 경우 · 극히 많은 양의 마약을 비법적으로 제조한 경우	·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제236조	마약비법 보관죄	· 마약을 비법적으로 보관한 자 · 많은 양의 마약을 비법적으로 보관한 경우 · 정상이 무거운 경우	· 노동단련형 ·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제237조	마약밀수, 거래죄	· 마약을 밀수, 거래한 자 · 많은 양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 · 특히 많은 양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 · 극히 많은 양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	·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제238조	마약비법 사용죄	· 마약을 비법적으로 사용한 자 · 마약을 비법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엄중한 경우	· 노동단련형 ·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주민들의 마약 사용 문제가 심각해지자, 북한 당국은 2010년을 전후로 이를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폭로모임이나 사상투쟁에서 마약 사용에 대해 공개비판하거나, 심한 경우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에 대한 교화를 실시하기도 했다. 2010년 함경남도 함흥에서는 마약 제조업자 다섯 명이 공개처형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다.¹⁴⁶ 마약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했는데, 실제로 2014년, 2015년, 2016년, 2019년 공개폭로모임에서 마약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공개비판이 있

146 VKSV8S0237

었다는 증언들이 있었다.¹⁴⁷ 또한, 2014~2015년에는 평안북도, 양강도, 강원도 등지에서 마약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루어졌다는 사례도 수집됐다.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특히 이 시기에 양강도에서는 마약 밀매·유통으로 인한 공개처형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⁴⁸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마약을 사용하다 단속되더라도 뇌물로 무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증언자들은 실제로 북한에서 마약으로 인한 대부분의 사안은 뇌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며, 마약을 단속하는 기관원들은 마약 단속을 돈벌이 수단쯤으로 여겼다고 했다.¹⁴⁹ 심지어, 기관원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⁵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크게 제재하지 않고 있었다.¹⁵¹ 한 증언자는 주민들이 얼굴마비, 저혈압, 복통 등을 치료하기 위해 직접 아편을 재배하여 가정상비약으로 구비해놓고 필요시마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이처럼, 아편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다섯 포기 이하의 소규모로 재배하는 것 등은 당국이 처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⁵²

“당국에서 단속의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원들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마약관련 사범으로 공개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렇게 처벌되는 사람들은 일부입니다. 기관원들에게 뇌물로 미국 달러화를 주기도 하지만 빙두를 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돈보다 마약을 좋아하는 기관원들도 많습니다. 중독되는 약품이기 때문에 단속으로 근절한다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¹⁵³

¹⁴⁷ UBWCTO2335, 5VRQH72406, 1F0LEV2294, 59ZNIV1159, DA992K1308

¹⁴⁸ KYS94N0794, YD9Z4Z1038, IRI20T0980, OIEVIM1548, NMFS550238, U6HF300538

¹⁴⁹ LHB9941636, XRAX2R0506, 1CXFZI1876, WTNUL21649, 7KBVQ81381, RU1F6F2209

¹⁵⁰ 6AGHRJ0812

¹⁵¹ OTP8Z62291, KNCI462328, AMXQ5Y1532

¹⁵² KNCI462328, 1ND60Q2408, DGAE7C0806

¹⁵³ 6AGHRJ0812

바. 식수 공급의 후진성

북한 주민들은 생활용수는 물론이고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에 처해있다. 북한 당국은 「공중위생법」에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제공받을 권리와, 이에 대한 당국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¹⁵⁴ 하지만 증언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식수 상황은 열악했으며,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북한 당국의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⁵⁵

북한의 가정집 중 1/3에는 상수도 시설이 없었으며, 최근까지도 북한의 상수도 기반 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센터 조사 대상자 중, 가정에 상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3.7%에 달했다.¹⁵⁶ 탈북민 대상 ‘거주 주택의 식수 공급 유형’을 묻는 통일부 조사 결과에서도, 집안에 수도가 있다는 비율은 41.4%에 불과했으며, 30.8%가 아직 우물을 사용했다고 응답하는 등 깨끗한 식수를 공급 받아야 할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다.¹⁵⁷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마을 우물이나 개인 우물 등에서 물을 받아오거나 강물을 길어 와서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다.¹⁵⁸ 황해남도에 거주했던 한 증언자는 집 안에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2023년까지도 지하수를 끌어올려 식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황해남도 ○○군에 있던 저희 집은 단층집으로 수도관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집마다 지하수를 이용하였습니다. 전기를 이용한 펌프는 없었고 우물을 만들어 두레박으로 물을 길거나 사람의 힘으로 압력을 이용해 지하수를 뽑아내는 형태로 사용했습니다.”¹⁵⁹

¹⁵⁴ 「공중위생법」(2014) 제7조 (물의 수질기준보장) 물은 용도에 따라 먹는 물, 생활용 물 같은 것으로 나누며 그 수질기준을 보장한다. 수질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8조 (물 위생시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 물, 생활용 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물 위생시설을 갖추었거나 보수하였을 경우에는 위생방역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¹⁵⁵ 북한은 2021년 제출한 「VNR(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에서 ‘안전한 식수와 깨끗한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진전이 더딘 상황’이라고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수질 개선 문제와 충분한 물 공급 문제를 도전과제로 제시하면서 안전한 식수에 접근이 가능한 인구 비율은 60.9%이고, 지역별로는 도시 71.3%, 농촌 44.5%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¹⁵⁶ 2020년~2023년 기록센터 조사 대상 629명 중 212명이 집에 상수도관이 미설치 되어있었다고 응답

¹⁵⁷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24. 175~176쪽 참고

¹⁵⁸ 5VRQH72406, YX610J1638, 1CHLPG2211, S7UIML2223, 100S8G2205, 5QG11E2237, UOATQY0886

¹⁵⁹ TGCAEV2403

그림 V-8 북한 주민의 물 사용 실태



* (자료출처) UNICEF

집안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증언자들은 전기가 간헐적으로 공급되어 수도물을 하루 2~3시간 정도만 이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¹⁶⁰ 평양에 거주한 증언자는 2019년경 펌프장보다 지대가 높은 아파트의 고층에서는 물이 잘 나오지 않았고, 정해진 시간에만 물이 나와 양수장에서 물을 길어다 사용했다고 했다.¹⁶¹ 수도물 공급 관련 최근 사례로는 2023년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아파트 앞 우물을 파서 도르레로 물을 끌어올려 사용했다는 진술이 있었다.¹⁶² 최근 북한 당국이 전기 및 수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³

“수도물은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다반사이며 그 물이 깨끗하지도 않았습니다. 수도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새벽에 일찍 압록강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쓰곤 하였습니다. 수도물도 집마다 달랐는데, 수도관이 잘되어 있는 지역이면 자주 나오지만 저희 집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도물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놔야 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했습니다. 가호마다 물탱크 200L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보통 수도물을 받아놓은 것은 식수로 이용하고 빨래 등은 압록강에 나가서 하였습니다.”¹⁶⁴

¹⁶⁰ EJRHLJ2244, 8B5CA02248, FH87SC2243, KJ71FB2239, YNZ1CJ2226, 50R5F62241

¹⁶¹ YNNL9N2323

¹⁶² 5VRQH72406, N2XFFG1377

¹⁶³ TGCAEV2403

¹⁶⁴ UOATQY0886

대다수 증언자들은 수도로 공급되는 물도 깨끗하지 않았다고 했다. 2013년 평양시 대동강구역 상류 지역에 위치해있던 상수도관리국 산하 임흥수원지에서는 수도물 여과 과정에서 필요한 약품이 부족하여 수질관리 마지막 단계의 약품을 소금으로 대체했다고 한다.¹⁶⁵ 2017년경 양강도 전역에서 오염된 수도물로 인해 장티푸스가 발병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당시 예방을 위해 인민반장은 ‘물을 끓여 마십시다’라는 종이를 세대마다 붙여놓도록 지시했고, 오염의 원인인 수도물 공급소 물탱크 청소를 위해 가구당 10위안씩 모았다고 했다.¹⁶⁶ 다른 증언자도 2018년 양강도에서 깨끗하지 않은 수도물 때문에 장티푸스와 출혈열이 유행했고, 인민반에서 나누어 준 알약 형태의 소독약을 수도물에 타서 음용했다고 진술했다.¹⁶⁷ 2019년 함경북도에서는 노후 하수도관의 누수로 하수가 지하로 흘러들어가 물이 오염되었고, 그 물을 식수로 음용한 주민들이 집단 설사병에 걸린 사례가 있었다.¹⁶⁸

“주택에 전기가 공급되는 것이 하루 2~4시간 정도였고 전기가 공급되는 시간에 물을 탱크에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전기 때문에 수도물이 가지 못해 수도관 안에 고여 있으니 이물질이 발생하였고 (수도관 안에서) 미생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을 꼭 끓여서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 중에는 수도물 때문에 대장염에 걸린 경우도 보았습니다.”¹⁶⁹

개선되지 않는 수도물 공급 사정과 수질 문제로 최근 일부 주민들은 생수를 구입하여 식수로 이용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이 2016년부터 샘물(생수)공급소를 운영하면서, 북한 주민들도 식수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17년 장티푸스가 유행한 이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돈을 주고 샘물을 사먹게 된 것으로 보인다.¹⁷⁰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수질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검증필’ 도장이 찍힌 생수 구입이 증가했다는 증언도 있

¹⁶⁵ EJRHLJ2244

¹⁶⁶ UOATQY0886

¹⁶⁷ 3ICFLH1212, N2XFFG1377

¹⁶⁸ BNPVOT1347

¹⁶⁹ EJRHLJ2244

¹⁷⁰ TDNZXJ1480, CA7ZOA0437, P767JN1271

었다.¹⁷¹ 2019년까지 평양에 거주했던 증언자는 2017년경부터 식수로 생수를 사먹었고, 그 시기에 생수를 판매하는 가게도 증가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평양 지역에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며, 북한 내부 식수 공급에 대한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

“전에는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하다가, 2017년부터는 샘물(생수)을 사먹었습니다. 20L에 400원이 있습니다. 그 즈음부터 마시는 물은 샘물을 사먹어야 한다는 광고가 많이 나왔고, 2017년경부터 생수를 파는 가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¹⁷²

¹⁷¹ NEBFG20887

¹⁷² YNNL9N2323

3. 근로권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활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최소한의 휴식 보장을 통해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동일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24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사회권규약」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로의 권리(제6조),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제7조), 노동조합의 결성·가입 권리(제8조)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¹⁷³

표 V-4 「사회권규약」과 근로권

「사회권규약」		근로권 (관련 목차)
제6조	제1항	<div style="text-align: center;">공통 근로권</div>
	제2항	
제7조		<div style="text-align: center;">나 근로조건에 취약성</div>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에 보장 (ii)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¹⁷³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6~7.

「사회권규약」		근로권 (관련 목차)
제7조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나 근로조건의 취약성
	(c)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 휴일	나 근로조건의 취약성
제8조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다 노동3권의 제한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고용에 종사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대부분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휴가 사용은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근로환경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 당국이 대규모 건설공사에 주민을 강제로 동원하는 ‘돌격대’에서는 근로권은 물론 여러 가지 인권 침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사회권규약」은 국가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한 노동에 의한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¹⁷⁴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¹⁷⁴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6.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없었으며,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계획에 의해 제한됐다. 출신성분(토대)과 경제력(뇌물 공여) 등에 따라 진로가 정해졌으며, 당국이 정한 기관에 배치되어 노동의 의무를 다해야 했다. 직장에서 지급하는 비현실적인 급여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에 돈을 내고 출근하지 않을 권리를 획득하여 사적 경제활동에 나서야 했다.

(1) 직장 배치와 무리배치

북한 주민들은 본인의 의사와 능력에 관계없이 북한 당국의 결정에 따라 직장에 배치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은 노동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¹⁷⁵ 은퇴자(연로 보장), 전업주부(부양), 노동능력상실자 등을 제외한¹⁷⁶ 북한 주민들은 17세부터 은퇴하기 전까지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하여야 한다. 북한 당국은 노동 의무를 가진 주민들이 의무교육과정인 고급중학교¹⁷⁷를 졸업하면 직장에 배치한다. 인민위원회 담당 부서(노동국, 노동과)에서 고등중학교 졸업생 명단을 토대로 대학 진학자와 군 입대자를 제외한 인원을 직장에 배치한다. 대학 진학자와 군 입대자의 경우에도 졸업과 제대시기에 맞춰 연구지 인민위원회 노동 담당 부서에서 직장에 배치하고 있다.

직장 배치는 개인의 출신성분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 부모가 노동자면 자녀는 주로 기업소로 배치되고, 부모가 농장원이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부분 농장원으로 배치된다. 많은 증언자들이 특히, 농장원 자녀는 기업소 노동자가 될 수 없었다고 했다. 농장원으로 일했던 한 증언자는 이웃 농장원 가정에서 자녀를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 기업소와 관련된 고등중학교에 진학시켰으나, 결국 농장에 배치되었다고 했다.¹⁷⁸ 가족의 신상도 직장 배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는 핵

¹⁷⁵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4조 사회주의 하에서 공민은 노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동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 노동에 참가한다.

¹⁷⁶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15조, 제73조, 제74조 등에 따르면, 노동 의무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16세 미만의 아동, 노동 재해 및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영구적으로 상실한 자, 연로자(남 60세, 여 55세 이상)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동법 제31조는 (자녀가 있는) 여성근로자가 사회적 노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성이 결혼 후 출산·양육 등으로 사회적 노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¹⁷⁷ 북한의 학제는 2012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개편되었는데, 12년제로의 학제개편 이전에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를 통합하여 중학교 6년 과정으로 운영하였고(1972~2011년), 중학교 또는 고등중학교라고 칭하였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23. 320~321쪽 참고)

¹⁷⁸ 8IUFR1.2422

심부대 중 하나인 호위국에 선발되었으나 어머니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입대를 거부당했고, 오히려 돌격대에 배치되었다고 했다.¹⁷⁹

출신성분과 함께 인맥과 뇌물도 직장 배치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정 형편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했다. 북한 주민들은 원하는 근무지로의 배치 또는 기피하는 직장을 피하기 위해 인맥을 동원하거나 뇌물을 상납했다. 고급중학교 졸업 후 무직으로 지내던 한 증언자는 아버지의 지인 등 인맥을 이용하여 도 인민위원회 산하 사업소에 들어갔다고 했다.¹⁸⁰ 기술학교를 졸업한 다른 증언자는 졸업과 함께 피복공장에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기술학교 교장에게 뇌물을 주고 진료소에 배치되었다고 진술했다.¹⁸¹ 반대로 경제력이 넉넉지 않은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피대상 직장에 배치되어 어려운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북한 당국은 농장이나 광산 등 기피 지역에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는 ‘무리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로 고급중학교, 기능공학교 졸업자와 무연고 아동의 보호·교육시설인 중등학원 졸업생들이 무리배치 대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근무지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는 고급중학교 졸업생 중 입대하지 않는 사람을 기능공학교에 자동으로 입학시키고, 1년 과정 수료 후 삼지연군 건설 청년돌격대에 무리배치 했다고 진술했다.¹⁸² 의사 출신인 다른 증언자는 의학대학 졸업 직후 삼지연 건설로 돌격대원의 유입이 많았던 삼지연시 병원에 집단으로 배치되었다고 했다.¹⁸³ 중등학원 졸업생들이 매년 집단적으로 돌격대에 배치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었다.¹⁸⁴ 증언자들은 무리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리배치 명단’에서 빠져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인맥과 뇌물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¹⁷⁹ FI1ZC41525

¹⁸⁰ A49XIM0889

¹⁸¹ OWTG6L2284

¹⁸² N4XFMT1979

¹⁸³ NMD65O0832

¹⁸⁴ PWDEAD1982

“2018년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기업소에 무리배치 받았습니다. 그 기업소가 한심한 기업소여서 안 가려고 했더니 보위원, 안전원, 당비서, 청년비서, 노동지도원이 모두 집으로 찾아와서 무리배치에 따르지 않으면 단련대에 간다고 겁을 주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단련대에 가는 것은 무섭지 않았지만 하도 난리를 피워서 더러워서 간다는 마음으로 그냥 무리배치된 곳으로 갔습니다.”¹⁸⁵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출신성분이 가장 중요했으며, 인맥이나 뇌물이 있어야 가능했다. 일반 노동자가 뇌물 없이 이직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로, 한 증언자는 아버지 인맥을 통해 기업소에서 병원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이를 위해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제공해야 했다고 진술했다.¹⁸⁶ 시·군의 한 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던 노동자는 2020년 두 차례 이직했는데, 거주 시·군 안에서 이직할 때는 30만 원의 돈이 필요했지만, 다른 시·군 소재 사업소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300달러(북한 돈 140만 원 상당)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¹⁸⁷

(2) 무직, 결근 단속과 처벌

북한 주민은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직장에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됐다.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8호는 모든 사람은 고용에 종사할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노동을 자유롭게 선택·결정할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¹⁸⁸ 하지만 북한에서 무직과 무단결근은 모두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며, 「행정처벌법」에 따라 노동교양처벌을 받게 된다.¹⁸⁹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무직, 무단결근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했고, 적발될 경우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했다. 통상 거주지 및 직장에 상주하는 담당 안전원이 단속했지만, 무직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연합조직(‘상무’)도 있었다. 만약 주민이 무단으로 직장

¹⁸⁵ XHQ3062407

¹⁸⁶ Z3VAXR0446

¹⁸⁷ TEIEJA2400

¹⁸⁸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8: The right to work, para. 6.

¹⁸⁹ 「행정처벌법」(2021) 제119조 (무직건달 및 무단결근행위) 무직건달을 부렸거나 무단결근을 한 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인민반장 또는 기업소 경리가 담당 안전원 등에게 보고했고, 이를 토대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주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인맥과 뇌물을 이용하기도 했다.¹⁹⁰ 한 남성 증언자는 친척의 도움으로 배치된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세 차례의 무직 단속이 있었으나, 뇌물을 바쳐 처벌되지 않았다고 했다.¹⁹¹ 최근 북한 당국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단속에 적발된 무직자를 처벌하지 않는 대신 돌격대에 보내기도 했다. 양강도 출신의 한 남성 증언자는 2019년경 무직 단속에 적발되어 건설돌격대에 강제로 징집되었다고 진술했다.

“초급중학교를 졸업하고 무직으로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양강도 보천군 붉은청년근위대 야영소 노동자로 배치 받아 12월 한 달간 출근하였고, 2019년부터는 월 40위안을 수익금으로 바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무직으로 놀다가 보천군 청년동맹 단속에 걸려 한 달간 삼지연건설돌격대에 강제로 입대했고, 얼흘 만에 도망 나왔습니다.”¹⁹²

노동자들은 당국의 무직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속 기업소에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출근하지 않는 ‘8.3근로자’(‘수익금조’, ‘부업작업반’)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8.3근로자는 매달 수익금을 기업소 지배인, 당비서, 경리 등에게 납부하고 출근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별도의 등록절차나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았다.¹⁹³ 함경북도 출신의 한 증언자는 2019년 자신이 일하던 사업소 노동자 120명 중 40명 정도가 8.3근로자였다고 했다.¹⁹⁴ 시 인민병원 소속 의사였던 증언자는 2019년 무렵에는 전체 의료인 중 약 30% 정도가 8.3근로자로 편성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¹⁹⁵ 그런데 2018년경 8.3근로자를 제한하라는 당의 방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8.3근로자 현황, 수익금 납부 및 사적 경제활동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¹⁹⁶

¹⁹⁰ OFSIEN1966

¹⁹¹ FIIZC41525

¹⁹² GTD13O1923

¹⁹³ AWQ1RI1386

¹⁹⁴ 2MOY811346

¹⁹⁵ POI5E82146

¹⁹⁶ XCRUIS0885

“기업소에 돈을 내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8.3노동자(8.3근로자)’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1년에 1,000위안을 내고 협동농장의 8.3노동자로 근무했습니다. 돈을 내면 1년 내내 찾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8.3노동자 증빙을 위한 별도의 등록은 없고 실제로 돈을 납부하면 찾지 않습니다.”¹⁹⁷

(3) 생계유지를 위한 사적 경제활동

북한 노동자들은 1990년대 이후 공장·기업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배급제 등 경제시스템도 무너지자, 생계유지를 위해 일방적으로 배치된 직장을 벗어나 사적 경제활동에 나서야 했다. 이들은 자신의 희망이나 능력에 따라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고, 북한 당국에 의해 배치되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했다. 하지만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자 직장 생활을 병행하거나, 직장에 일정금액의 수익금을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도소매업, 서비스업, 사적 임금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돈을 벌었다. 한 증언자는 2019년 소속 직장에 수익금을 내고 개인적으로 뱃일을 했고, 다른 여성 증언자는 2018년 직장에 수익금을 내면서 ‘속도돈(고리대금업)’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서 생활했다고 진술했다.¹⁹⁸ 개인이 시·군당 위원회로부터 임야를 임대하여 잣이나 버섯 등을 채취했다는 진술도 수집됐다.¹⁹⁹ 또한, 직장에 수익금을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돼기밭에서 직접 식량을 채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8년 중반부터 탈북 직전인 2019년 10월까지 기업소에 수익금을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수익금은 월마다 북한 돈 7만 원을 내든지 해마다 미화 100달러를 내야합니다. (직장에 나가지 않는 대신) 돼기밭 2,000평을 개간하여 강냉이, 콩, 남새(채소) 등을 심었고, 여기서 나온 생산물로 식량을 보충하였습니다. 돼지 2마리, 닭 5마리도 키웠습니다.”²⁰⁰

¹⁹⁷ 1NR82V2372

¹⁹⁸ 00IAFO1948, 6LNEVB0551

¹⁹⁹ EL2PVO2035

²⁰⁰ BSAJ9E2030

나. 근로조건의 취약성

「사회권규약」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임금과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대가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급여는 근로자 및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²⁰¹ 사회권위원회도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에게 품위 있는 생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²⁰²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일한 만큼의 합당한 대가는 물론, 근로활동 중 휴식과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1) 비현실적이고 불명확한 임금 지급

북한은 모든 주민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주민들은 배치된 직장에서 노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임금 지급은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북한 주민들은 법령에 따라 의무만 받았을 뿐,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²⁰³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활비 등급제’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생활비’라는 개념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⁰⁴ 그러나, ‘생활비’ 또는 ‘노동 보수’라는 이름으로 지급된 급여로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한 달을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2009년 북한의 ‘5차 화폐개혁’으로 임금은 2002년 수준으로 조정된 반면, 물가는 폭등하여 이러한 현상은 보다 심화됐다.²⁰⁵

규정된 급여(생활비)에서 각종 지원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금을 제외하면 실제

²⁰¹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7.

²⁰² UN CESCR, General comment No. 23: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para. 18.

²⁰³ 북한에서 ‘노동 보수’는 소속 직장에서 직접 지급하는 생활비 외에 식량 배급, 주거, 교육, 보건서비스, 기타 사회복지 전반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북한 주민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라는 명목의 보수가 노동의 대가 전체를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²⁰⁴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37조 노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이며 노동에 의한 분배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생산력발전을 다그치는 힘 있는 수단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 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노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근로자들은 성별, 연령, 민족 별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 제38조 국가는 근로자들이 노동과정에서 소모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생활비등급제를 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

²⁰⁵ 북한은 1947년부터 2009년까지 다섯 차례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2009년의 화폐개혁은 현금을 100:1, 은행 저금은 10:1의 비율로 교환하였고, 이후 전반적 가격 수준을 2002년 7월 1일 수준으로 조정했다. 공장·기업소에서 받는 임금은 종전의 금액수준을 새 화폐로 지급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2. 866~869쪽 참고)

로 지급되는 금액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관·기업소 근무 경험이 있는 증언자들에 의하면 노동자가 본인의 생활비 등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양강도 출신의 한 증언자는 재북 당시 급여 수준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2019년의 경우 1년에 한 번, 한두 달 치의 급여를 받았는데, 담배 한 갑도 살 수 없는 북한 돈 2,800원이었다고 했다.²⁰⁶

직장에서 근무했음에도 보수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한 증언자는 시·군 인민위원회 소속 기관에서 10년이 넘게 근무하는 동안 보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²⁰⁷ 2019년 도시건설사업소에서 근무했던 증언자도 노동 보수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²⁰⁸

“2017년까지 양강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011년경 한 번 정도 북한 돈 1,000원 정도를 임금으로 받아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생활비라고 돈을 줬는데, 당시 빵 2개 값도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이후 2020년, □□사업소에서 관리원으로 근무할 때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²⁰⁹

반면, 기업소마다 보수 지급 수준이 다르고, 직장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기관·기업소에 비해 외화벌이 기업소, 합영회사 등에서 근무한 경우 보수가 훨씬 많았다. 특히, 이들 기관의 경우 일종의 성과급 제도인 ‘도급지불제’에 따라 기본생활비 이외의 별도 보수를 받기도 했다.²¹⁰ 인민위원회 산하 공장에서 회계원으로 근무한 한 여성 증언자는 2019년까지 매달 정액생활비 2,600원과 생산량에 따른 도급생활비 10,000원 등 12,000~13,000원가량을 받았다고 했다.²¹¹ 2019년 평양 소재 기업소에서 근무한 여성 증언자는 배급과 별도로

²⁰⁶ C63MQK1441

²⁰⁷ WDEAD1982

²⁰⁸ U47HAV2314

²⁰⁹ 67MM9S2253

²¹⁰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39조 노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비의 기본형태는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이며 생활비의 추가적 형태는 가급금제와 상금제이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이며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킬 수 있도록 생활비 지불형태를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²¹¹ CZEPGU2138

3개월에 북한 돈 10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했다.²¹² 2020년경 중·북 합영회사 소속 노동자로 근무한 다른 증언자는 보수는 성과만큼 받았는데, 숙련공의 경우 월 350위안(북한 돈 약 40만 원, 쌀 100kg 상당), 초보자도 170위안을 받았다고 했다.²¹³

그림 V-9 북한의 노동자, 농장원들



함남 성천강타일공장 여성 노동자들 평남 2.8직동청년탄광 탄광 노동자들 평북 용천군 장산협동농장 농장원들

* (자료출처) 노동신문(2021.8.27 / 2021.10.2 / 2022.1.13.)

김정은 집권 이후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 적용에 따라 임금이 현실화되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2016년까지 외화벌이 기관에서 근무한 증언자는 임금 현실화에 따라 100배 인상된 급여를 받았다고 했다. 규정대로였다면 한 달에 1,600원을 받아야 했지만, 2012년 이후 한 달에 16만 원 정도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했다.²¹⁴ 하지만 관련 증언이 많지 않았고 최근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증언도 있어, 모든 직장에서 적용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과도한 근로시간과 휴식 미보장

북한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소속 기업소의 가동 여부에 따라 달랐지만, 법령이 정한 규정보다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²¹⁵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경 도 무역관리국 소속 기업소 노동자로 근무할 당시, 7시 30분부터 20시까지 매일 10시간 넘

²¹² 9F06UX2305

²¹³ HNTCJ42201

²¹⁴ KNCI462328

²¹⁵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16조와 제62조는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제65조는 매년 14일 간의 정기휴가 및 보충휴가(직종에 따라 7~21일간)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 일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²¹⁶ 2019년 중·북 합영회사에서 근무한 증언자는 12시간 작업이 근무조건으로 7시부터 21시까지 일했으며, 휴일 없이 매일 출근했다고 했다.²¹⁷

북한은 노동자들의 휴가기간을 연간 14일에서 3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법령으로 정하고 있었지만,²¹⁸ 실제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함경남도에서 기계공장 노동자로 근무한 여성 증언자는 북한의 공식 휴일인 명절을 제외하면 휴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규정상 매주 목요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했지만, 실제로는 집안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했다. 주말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주말에 쉬지 못했다는 증언자도 있었으며, 휴가라는 개념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진술도 있었다.

“함경북도 ○○군 도로건설대에서 보수공사 노동자로 종사했습니다. 휴가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휴가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주말이라는 개념도 없어서 토요일, 일요일 모두 나갔습니다. 당 창건일 같은 명절에 한해서 휴식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김일성의 업적을 알리는 영화를 보여주어서 온전히 쉴 수 없었습니다.”²¹⁹

이와는 달리, 규정만큼 휴가를 사용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인민위원회 산하 공장 노동자로 근무한 증언자와 도 무역국 산하 광산노동자로 근무한 다른 증언자는 1년에 15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했다고 진술했다.²²⁰

(3)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환경

북한의 근로현장에서는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안전을 우선하는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 현장의 안전교육, 안전시설의 설치·보수, 안전장비 지급, 노동안전원 배치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2019년경 양강

²¹⁶ EL2PVO2035

²¹⁷ 6TENWW1929

²¹⁸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65조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 7일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

²¹⁹ H4WMIJ2315

²²⁰ CZEFGU2138, EL2PVO2035

도 삼지연 건설현장에서 근무했던 증언자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화를 비롯한 안전장비는 제공되지 않았고 별도의 안전교육도 없었다고 진술했다.²²¹

노동자 및 근로현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교육과 지도감독도 미흡했다. 안전감독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만 안전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 광산 노동자로 일했던 한 증언자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²²² 기계공으로 배치 받았다가 이직을 통해 어로공(어부)으로 일한 다른 증언자도 안전교육은 최초 기계공으로 입직할 때 한 번 받은 것이 유일하다고 진술했다.

“2015년까지 함경북도 ○○시 정보통신국에서 기계공으로 일했고, 이후에는 2019년까지 □□사업소 소속 어로공으로 일했습니다. 처음 입직할 때 딱 한 번 노동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은 (기계공만 받는 교육이 아닌) 정보통신국 모든 직원이 받는 공통교육입니다.”²²³

다. 노동3권의 제한

「사회권규약」 제8조는 모든 사람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맹’)이 있지만, 직맹은 노동당 전위기구로서 노동자에 대한 조직과 통제, 사상교양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법제에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북한 주민들은 노동3권을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기록센터가 조사한 탈북민들은 노동3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부족했고, 관련 진술도 수집되지 않았다. (‘IV-10.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참고)

²²¹ 93VI9U2476

²²² BSAJ9E2030

²²³ 13PN7Y2325

라. 근로인권 사각지대, 돌격대

북한 당국은 대규모 건설 작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돌격대’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다.²²⁴ 돌격대에게는 대부분 빠른 공정 진척을 목표로 강도 높은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열악한 근무환경 속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돌격대는 주로 각 지역 및 기업소 등에 할당하여 차출된 인원으로 구성되며, 장시간의 의무 이행을 위해 건설현장에 투입되지만, 안전교육은 물론 안전감독이나 안전장비의 제공은 없었다. 돌격대원에게는 입당, 대학입학 등 특전이 주어지기도 했지만, 열악한 상황 속 자발적 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돌격대원 중에는 근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도망가는 경우도 많았다.

(1) 강제적 동원

돌격대 동원은 자원입대와 강제동원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돌격대의 열악한 처우에 따라 자원입대는 줄고 강제동원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원입대 방식은 돌격대 근무 종료 후 부여되는 혜택을 얻기 위해 자원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동원 방식은 직장 배치 또는 소속된 조직에서 순번으로 강제차출되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 초까지는 군 입대가 쉽지 않은 여성이 입당을 목적으로 자원하기도 했으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대학 입학기회가 주어져 돌격대 입대를 선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격대에서 장기간 근무 하더라도 대입이나 입당 등의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돌격대원들의 열악한 처우가 드러나면서 자원입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주하거나 이탈하는 돌격대원들이 늘어나자, 북한 당국은 감시를 강화하거나 입당 등을 이유로 근무기간을 늘리기도 했다.

224 ‘돌격대’는 주로 건설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조직된 단위로 ‘청년돌격대’와 ‘속도전돌격대’ 등이 있다. 건설이나 각종 사업 수행 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2. 258쪽 참고)

‘돌격대’는 군대식으로 운영하면서 연대-대대-중대-소대 등의 명칭을 쓰고 있다. 중대와 대대는 인원규모에 따라서 단위만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돌격대의 규모는 지역이나 목적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전체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양강도 삼지연시 건설을 위한 ‘216사단’은 삼지연 건설 돌격대와 넓은 철길 돌격대 등으로 구성되었고, 2018~2019년경 10만 명 정도의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규모 돌격대도 많았는데, 지역의 도시재정비 등을 위해 조직된 돌격대는 150명 내외, 또는 몇 십 명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격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당시 30대 후반)은 입당할 생각으로 돌격대에 들어왔고, 5년 만에 입당하였지만, 입당했다는 이유로 돌격대를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은 돌격대 근무만 10년째 하고 있었으며, 돌격대 생활은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결혼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도망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 이를 막기 위해서 화장실까지 따라다니고, 작업 중에 도주자가 많아서 작업을 갈 때도 보조병이 있을 정도였습니다.”²²⁵

돌격대 강제동원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강제동원 유형으로는 처음부터 직장을 돌격대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고, 직장이나 인민반에서 순번에 따라 단기간 차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무직이나 여행증 미소지로 단속에 적발되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민반에서 단기간 차출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돌격대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특히, 인원이 적은 직장에서는 차출 순번이 빨리 돌아오거나, 대체 근무자가 없어 한 사람이 여러 번 동원되기도 했다. 인민보안성(현 사회안전성) 출신의 한 증언자는 5년 동안 모두 네 차례 돌격대에 강제동원되어, 2년 4개월간 일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인민보안성에 근무할 당시, 2014년 ○○○ 건설돌격대, 2016년 □□□ 건설돌격대, △△△ 건설돌격대, 2018년 ◇◇◇ 건설돌격대 등 네 차례 돌격대에 동원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돌격대들은 모두 순번에 따라 가게 된 것입니다.”²²⁶

북한 주민들은 차출에 따른 돌격대 근무를 피하기 위해 대리인을 고용하기도 했다. 직장이나 인민반의 돌격대 순번이 돌아온 경우 대리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에는 인민반의 이웃 등을 대신하여 근무하고 사례비 정도만 받았지만, 최근에는 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씨비꾼’이라는 이름으로 돌격대에 대리 입대하며, 비용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2017년 어부를 대신하여 월 100위안을 받고 돌격대에 들어갔다고 했으며, 또 다른 증언자는 2019년경 공장노동

²²⁵ IUI8Q90421

²²⁶ IT6JQA2112

자 두 명을 대신해 월 300위안을 받기로 하고 대리 근무했다고 했다.²²⁷ 돌격대 근무 순번에는 수익금을 내고 실제로는 직장에 근무하지 않는 노동자까지도 포함되어, 차출순번인 기간에는 수익금뿐 아니라 돌격대 대리 근무자의 고용비용까지 납부해야 했다고 한다.²²⁸

그림 V-10 북한 매체 속 돌격대원들



함경북도 지역 수해복구 현장으로 향하는 돌격대원들

황해북도 황주진등물길공사장의 돌격대원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나선시 여단의 남녀 돌격대원들

* (자료출처) 노동신문(2016.9.12./ 2021.6.29./ 2023.4.23.)

미성년자가 돌격대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막는 당국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조치는 없었다. 차출 대상인 돌격대 근무자를 대신하여 미성년자가 대리 신청해도 근무자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원했으며, 심지어 각종 단속 후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돌격대에 차출하기도 했다. 한 증언자는 만 14세였던 2017년경, 여행증명서 및 출생증명서 미소지를 이유로 청년동맹원의 단속에 적발되어 돌격대에 동원됐다.²²⁹ 돌격대 인원을 더 충원하라는 구역당 위원회의 지시 이행을 위해 구역 청년동맹원들이 장마당 노숙 아동을 단속하여 돌격대에 보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2019년 2월경 남포시 ○○구역당 위원회에서 삼지연 건설에 노력(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구역 청년동맹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15~17세 미성년자 17명을 단속하여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다음 날 삼지연 건설 지원물자를 싣고 올라가는 버스에 태워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²³⁰

²²⁷ PNPVJ41087, C70C571623

²²⁸ POI5E82146

²²⁹ PNPVJ41087

²³⁰ 1SDLL22137

(2) 과도한 근무시간

돌격대는 대규모 건설 임무를 맡아, 짧은 시간 안에 끝마쳐야 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매우 길었다. 돌격대는 주로 주택·아파트, 도로, 댐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담당했으나, 북한의 낮은 기계화 공정비율로 인해 돌격대원들은 인력만으로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는 돌격대원들은 나날이 증가했지만, 기한 내 완공을 위해서는 매일 설정된 작업량을 끝내야 했기 때문에 남은 돌격대원들은 잠을 줄여서라도 일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하달된 할당량 달성을 위해, 작업시간이 10시간을 넘기는 것은 보통이었고, 하루 15시간 이상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2019년 삼지연 건설돌격대 소속이었던 한 증언자는 5시부터 23시까지 일하고, 열흘 동안 밤을 새는 등 여러 차례 밤샘 작업에 동원되었다고 했다.²³¹ 2019년 원산갈마 건설돌격대에 동원되었던 증언자도 매일 오전 5시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으며, 때때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도 일하는 경우가 있는 등 수면시간이 매우 부족했다고 진술했다.²³²

“2018년 삼지연 살림집 건설에 동원되었습니다. 광산에서 순번에 의해 강제동원 되었는데, 모래 나르기 등을 했습니다. 조별로 하루에 완수해야 하는 작업이 정해져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 다른 조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잘 수 있었고 20분씩 하루 세끼 60분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19시간 정도를 일했습니다.”²³³

(3) 무보수 노동 강요

돌격대원의 급여 지급처는 원소속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랐으나, 돌격대원들은 대체로 무보수 노동을 강요받고 있었다. 돌격대원 중 파견자가 아닌 돌격대로 직장 배치가 된 경우는 보수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숙식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²³¹ GTD1301923

²³² 1T6JQA2112

²³³ 1ND60Q2377

기업소 등에서 순번으로 차출되어 파견된 경우에는 원래 소속된 직장에서 지급하던 임금이나 사례금을 주기도 했다. 중학교 졸업 직후 돌격대에 입대했다는 한 증언자는 3년 동안 단 한 번 급여를 받았으며, 금액은 1,200원이었다고 했다.²³⁴ 여행증 없이 이동하다 적발되어 돌격대에 동원된 다른 증언자는 학교 건설 현장에 동원되었지만 노동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지 못했다.²³⁵

이와는 달리 직장에서 차출된 경우에는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다. 직장에서 차출되어 돌격대에 동원된 증언자는 동원 기간 동안 원래 지급되던 쌀 10kg, 식용유 2kg, 세탁비누, 조미료 등을 받았다고 했고, 협동농장 농장원이던 다른 증언자는 돌격대에 들어갈 때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²³⁶

(4) 부실한 안전감독과 관리

돌격대원들은 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대규모 건설 작업을 수행했지만, 당국의 안전 감독과 관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종종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됐다. 당국 차원이 아닌 돌격대원 중 건설 분야 경험자가 안전교육과 감독을 했다는 증언이 많았다. 일부 돌격대에서는 담당 부서인 ‘감독과’에서 안전관리 등을 담당했지만, 이 경우에도 안전 교육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²³⁷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일반 대원보다는 관리 감독하는 간부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안전장비는 대개 안전모나 장갑 등 일부만 지급되었는데 실제 일을 하는 돌격대원들은 지급 받기가 쉽지 않았다.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개인이나 원 소속 기업소에서 부담하도록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²³⁸ 북한 당국의 형식적인 안전감독과 부족한 안전장비는 재해의 위험성을 키웠고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다.

²³⁴ PWDEAD1982

²³⁵ 1FOLEV2294

²³⁶ 97RFI90805, 1TYCN61586

²³⁷ 8H9OLK0142, GN6H1Z0507

²³⁸ GN6H1Z0507, 97RFI90805

“2018년 9월까지 양강도 혜산시 위연살림집 건설돌격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노동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개인이 가져오거나 각 기업소가 부담했습니다. 도당 위원회에서 안전감독을 했지만 부상자와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2017년 1월경 건설동 1층에서 여자 대원이 떨어져 허리를 다친 일이 있었고, 2018년에는 작업장 6층에서 콘크리트 혼합물을 실어 올라가는 기중기 줄이 끊어지면서 돌격대원이 기중기 바가지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²³⁹

(5) 열악한 근무환경

돌격대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와 숙소, 건강관리 등 근무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했다. 식사의 양과 질은 돌격대별로 차이가 컸으며, 간부와 일반 대원 간 격차도 증언들을 통해 확인됐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에서 근무한 증언자는 돌격대원의 식사는 보리밥, 된장(또는 소금), 미역국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로 한 달만 지나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진술했다.²⁴⁰ 삼지연시 건설돌격대에서 근무한 증언자는 군(郡) 단위의 대원들에게는 옥수수밥, 산나물, 미역국이 나왔지만, 도 단위 대원들에게는 쌀밥과 국, 고기, 나물 등이 제공되었다고 진술했다.²⁴¹ 일반 돌격대원과 사무원이나 관리자의 급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삼지연시 건설돌격대의 시·군 단위 일반대원의 식사로는 하루에 옥수수밥 600g, 염배추국, 젓갈, 인조고기 등이 제공된 반면, 당 간부는 한 끼에 노동자 30~40명의 식사비용을 모두 써버리기도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²⁴²

“돌격대에서는 보리밥 일곱 숟가락 정도를 주는데, 반찬은 소금 혹은 된장을 주었고, 간혹 미역국을 주는데 미역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나옵니다. 작업량은 많지만 식사량이 적어서 허약(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보통 들어오면 1개월 정도 버티다가 허약에 걸려서 귀가조치 되었습니다.”²⁴³

²³⁹ 97RFI90805

²⁴⁰ PNPVJ41087

²⁴¹ C70C571623

²⁴² 1SDL22137

²⁴³ PNPVJ41087

숙소환경은 대체로 열악했다는 것이 돌격대 경험이 있는 증언자들의 공통된 진술이었다. 대부분 건설 현장이었기 때문에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을 대원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했으며, 많은 인원이 공동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는 15명의 돌격대원이 공동으로 숙소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²⁴⁴ 다른 증언자는 소대원들이 한방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눕고 나면 남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매우 비좁았으며, 난방은 화목난로를 이용했다고 진술했다.²⁴⁵

돌격대에서 제공되는 열악한 식사와 강도 높은 노동으로 돌격대원들은 소위 ‘허약’이라는 영양부족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격대 내에서의 치료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나마 군의(軍醫)가 있는 돌격대에서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돌격대원이 개인적으로 구매해오는 주사약을 뇌주거나 찰과상 등을 치료해주는 정도에 불과했다.²⁴⁶

이와 같이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 장시간 강요된 강도 높은 노동은 돌격대원들을 이 탈하게 만들었다. 직장 내 순번에 의해 돌격대에 동원된 한 증언자는 계속되는 고된 노동과 부족한 수면시간, 열악한 급식 등으로 대부분의 대원들이 한두 달 일하다가 도망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밤에 12시~2시까지 일하고 취침을 해서 매일매일 수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열악한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식사도 옥수수밥 200g에 야채 반찬만 나오고 고기는 주지 않으니 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돌격대원들이 한두 달 일하다가 도망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저도 618건설돌격대 동원되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도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돌격대원 집을 모아서 한군데에 집체 보관하고, 그곳에는 돌격대 배치기간이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가게 합니다.”²⁴⁷

²⁴⁴ 1TYCN61586

²⁴⁵ TFHDP41618

²⁴⁶ PWDEAD1982, TFHDP41618

²⁴⁷ 1T6JQA2112

도주하다가 붙잡힌 돌격대원이 관리자 등에게 폭행당했다는 다수의 사례들도 수집됐다. 한 증언자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에서 도주를 시도하다가 초소에서 붙잡혀 복귀 후 대대장에게 폭행당했다고 했다.²⁴⁸ 다른 여성 증언자도 돌격대에서 도주하다 붙잡혀 돌격대장과 남성돌격대원에게 삽자루로 다리와 몸통 등을 수십 회 가격당했다고 진술했다.

“2017년 양강도 삼지연군 주택건설현장 돌격대에서 일하던 중 도망치다 잡혀서 폭행당했습니다. 폭행한 사람은 남자 두 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돌격대 소대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동료 돌격대원이었습니다. 동료 대원이 저를 붙잡았고 소대장이 삽자루로 다리와 몸통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폭행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서 상처가 회복되는데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상처에 대한 치료는 없었습니다.”²⁴⁹

²⁴⁸ PNPVJ41087

²⁴⁹ 3U0COF0984

4. 교육권

교육권은 모든 사람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로 아동은 물론 모든 연령층이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6조에서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선언하며, 교육은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모든 집단을 포용하며,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동 규약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초등 교육을 무상의무교육으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신념에 따라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표 V-5 「사회권규약」과 교육권

「사회권규약」		교육권 (관련 목차)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공동 교육권
제1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 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가 무상의무교육제도의 허상 나 교육 기회의 차별적 제공 다 열악한 교육여건

「사회권규약」		교육권 (관련 목차)
제13조	제3항	<p style="text-align: center;">라 체제보위 수단으로 변질된 교육</p>
	제4항	

북한은 「사회권규약」 당사국으로서 규약에 명시된 교육권을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73조에서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 정책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원법」, 「교육강령집행법」 등의 법령을 두고 있다. 북한의 교육 관련 법령들은 주로 2015년 이후 제·개정되었으며, 2020년에는 「원격교육법」, 2023년에는 「수재교육법」, 「교육후원법」이 제정됐다.

북한은 모든 주민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시행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시설 운영비를 포함한 제반의 비용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부과하는 경제 과업을 이행해야 했고,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생계유지도 책임져야 했다. 또한, 북한의 학생들은 출신성분이나 경제력에 따라 교육 기회에서 차별받고 있었으며, 지역·계층 간 제공되는 교육의 수준도 달랐다. 교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각종 부조리의 원인이 되었고, 부족한 인프라는 교육 환경의 후진성을 심화시켰다. 북한 당국은 교육을 체제보위와 이상화를 위한 사상 주입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군사교육을 강제하기도 했다.

가. 무상의무교육제도의 허상

북한은 헌법과 법령을 통해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국가가 보장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나, 북한 당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어지는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의무교육을 제도화했으며,²⁵⁰ 지난 2012년에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를 법제화했고, 「사회주의헌법」, 「교육법」, 「보통교육법」 등 법령을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다.²⁵¹ 또한, 북한은 교육기관 운영비용도 ‘국가 또는 단체의 예산’으로 보장하며, 교과서나 교육비품도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한다고 규정하는 등 법적으로 초·중등교육이 무상의무교육임을 명시하고 있다.²⁵² 하지만 이러한 법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학생들은 학교운영비용, 교과서 구입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으며, 각종 과제와 동원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이나 현물을 납부하도록 강제했으며, 학생들은 학습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학교운영비용, 소위 ‘꼬마계획’으로 대표되는 경제 과제를 부담해야 했다.

학교 수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교과서조차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다수 증언에 따르면 일부만 제공되어 여럿이 함께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경우에도 현 교과서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다.²⁵³ 학년을 마치면 교과서는 다음 학년 후배들에게 대물림되어 재활용했고, 새 교과서는 추가로 지급되지 않아 교과서가 항상 부족했다고 한다. 부족한 교과서 사정 때문에 주요 교과목 교과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우선 지급되기도 했다.²⁵⁴ ‘교과서요금’이라는 일정 금액을 내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²⁵⁵ 학교에서 받지 못한 교과서는 장마당에서 구입해야 했는데, 한 증언자는 장마당에서 교과서를 구입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비쌌다고 했다.²⁵⁶

²⁵⁰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23. 320~321쪽 참고.

²⁵¹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법령」을 공표함으로써 기존 11년제에서 12년제 의무교육으로 전환했다. 「사회주의헌법」(2019) 제45조, 제47조, 「교육법」(2015) 제16조.

²⁵² 「교육법」(2015) 제23조, 「보통교육법」(2015) 제16조, 「교육강령집행법」(2016) 제38조.

²⁵³ B5SCU31584, DFM95V2357, ROD6PD2411, REUFYK2389, ROD6PD2423, 1BQ5TD2424, 93VI9U2383, BGHI542085, 5VRQH72482, 93VI9U2478, JUZOTT2459, JUZOTT2455, OORIT62460, 1BQ5TD2464

²⁵⁴ BGHI542085, 1NR82V2442, B5SCU31584, JUZOTT2459, 5VRQH72482, 1BQ5TD2458, 93VI9U2478

²⁵⁵ VEEWX80198, DFM95V2357, 5VRQH72482

²⁵⁶ 8WHPWX2397, 1BQ5TD2424

견학 비용이나 교복 구입비 등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해야 했다. 견학의 경우에는 경제력이 있는 학생만이 참여할 수 있었고, 교복은 물려받아 입거나 국정가격 또는 시장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했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²⁵⁷ 교과 과정에 포함된 현장학습 참가를 이유로 학교에서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양강도 출신의 한 증언자는 초·중학교 시절이었던 2019년, 학교에서 평양 견학을 갔지만 개인 비용을 제외한 기본 참가비만 200위안(북한 돈 24만 원)으로, 비용이 부담되어 소수의 학생들만 참석했다고 진술했다.²⁵⁸

그림 V-11 북한 매체 속 소학교 학생들



교실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

평양의 소학교 입학식

새 학기를 맞은 소학교 학생들

* (자료출처) 노동신문(2022.4.2./ 2022.9.25.右)

또한, 북한에서는 학교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위 ‘꾸리기’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증언자들은 재북 당시 학교에서 ‘교장 실꾸리기’, ‘교실꾸리기’, ‘연구실꾸리기’, ‘컴퓨터실꾸리기’, ‘건물 도색작업’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현물이나 현금을 부과했다고 했다.²⁵⁹ 최근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이른바 ‘교실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학교꾸리기 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경리원으로 근무한 증언자는 교실 현대화를 위해 텔레비전, 노트북 컴퓨터, 태양광패널 등을 마련해야 했는데, 당국의 예산 지원이 전혀 없어, 학생들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²⁶⁰ 겨울철 난방비 부담 또한 대부분 학생

²⁵⁷ VEEWX80198, TMW8DT2181, DFM95V2357, KRV1AU2326, JQYD690967

²⁵⁸ ETRLM22255

²⁵⁹ IUKTX40230, 4NJV4R1405, 18QU5P1660, 2K3MCU1868, XXTKPX1915, JQYD690967, KRV1AU2326, DFM95V2357, 93VI9U2383, DFFYXV2451, 1NR82V2442, ROD6PD2411, VEEWX80198 93VI9U2478, JUZOTT2455, 0ORIT62460, 1BQ5TD2464, DEJ6ST2342, 5SVTLU1585, CUKQSL2289

²⁶⁰ BGHI542085

들의 몫이었다.²⁶¹ 평양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는데, 2014년경 책상·의자 도색 등 학교 현대화를 위해 학생 1인당 30달러씩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평양 대성구역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매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서 5,000원씩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초급중학교 3학년 때 책상·의자를 도색하거나,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백목칠판을 화이트보드로 바꾸는 등 학교를 현대적으로 꾸리는 사업이 진행되어, 30달러씩 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힘들어하였습니다.”²⁶²

아울러 북한 학생들에게는 ‘꼬마계획’으로 대표되는 경제 과제와 각종 지원금의 납부 의무가 부과되었고, 이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소학교부터 고급중학교까지 전 학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꼬마계획이 부과됐다.²⁶³ 북한 학생들은 주어진 꼬마계획에 따라 파철, 파지, 파비닐, 인분, 토끼가죽, 고사리, 고비(나물) 등의 현물을 제출해야 했고, 군부대·돌격대 지원, 각종 건설 공사를 위한 지원금도 납부해야 했다.²⁶⁴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의 한 증언자는 소학교 재학 중 토끼가죽 과제를 받았는데, 도시에서 살다보니 토끼가죽을 직접 마련할 수 없어 해당 금액을 학교에 납부했다고 했다.²⁶⁵ 토끼가죽 등 과제를 받은 학급 반장의 학부모가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에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다른 학부모로부터 개인당 할당된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²⁶⁶ 한 증언자는 일정량의 고사리를 제출해야 하는 과제도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채취를 위해 ‘고사리 방학’까지 주면서 과제를 부과했으며, 어린 학생들이 채취하기 어려운 양을 부과했기에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했다.²⁶⁷ 여러 증언자들은 각종 경제과제는 수시로 부과되었으며, 학생 혼자서 제출할 수 있는 양의 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²⁶¹ ROD6PD2411, JUZ0TT2455, IUCTX40230

²⁶² 9F06UX2305

²⁶³ TMW8DT2181, 1BQ5TD2424, 1BQ5TD2412, XXTKPX1915, ROD6PD2423, B5SCU31584 93VI9U2383, DFM95V2357, KRV1AU2326, 2K3MCU1868, VEEWX80198, 93VI9U2478, 1BQ5TD2464, DFFYXV2475, M7SJZX1839

²⁶⁴ 1NR82V2442, XWLLIS2413, IUCTX40230, CUKQSL2289

²⁶⁵ J54YER2352

²⁶⁶ AZLN4W1646

²⁶⁷ 93VI9U2478, 1BQ5TD2458

경우가 많았다고 회고했다.²⁶⁸

“학교에서 난방을 위해 땀감을 사야 하니 돈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학교운영비 명목인 듯 했고 제일 부담되었던 비용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꼬마과제’도 항상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파철과 토끼가죽을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²⁶⁹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과제 수행을 강제했고,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다수 증언자들은 교사가 꼬마계획 과제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처벌 또는 망신을 주거나, 집으로 돌려보내 가져오게 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²⁷⁰ 한 증언자는 담임교사가 학교에서 요구한 돈을 낼 때까지 매일 이름을 불러 일어서게 한 뒤, 학급 친구들 앞에서 언제까지 낼 거냐고 다그쳤고, 돈을 낼 때까지 교실 칠판에 적어둔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고 했다.²⁷¹ 난방비를 내지 못한 학생이 난로 근처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는 증언도 있었다.²⁷²

“학교 현대화에 필요한 비용을 내기도 하였고, 명절에는 교사에게 돈을 주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말에는 학교에서 컴퓨터실에 컴퓨터를 가져다 놓는다는 이유로 비용을 학생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학생당 5달러 정도씩 부담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는 졸업반이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할 일이 없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내고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더 열심히 할 것인데, 무상교육이라고는 하지만, 돈을 부담하니 더 차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내지 못하는 학생은 수업시간에 망신당하는 일이 아주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²⁷³

²⁶⁸ 8WHPWX2397, 93V19U2478, 1BQ5TD2458

²⁶⁹ 1NR82V2378

²⁷⁰ OTP8Z62291, KRVI1AU2326, 93V19U2383, ROD6PD2423, JUZ0TT2435, XXTKPX1915, 1BQ5TD2412, XWLLIS2413, 18QU5P1660, VEEWX80198, JUZ0TT2455, 2K3MCU1868, IUQTX40230

²⁷¹ 4NJV4R1405

²⁷² JUZ0TT2455

²⁷³ DEJ6ST2342

학교에서 부과하는 과제 및 납부 비용의 증가는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경제적 부담은 무상교육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기결석과 학업 중도포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여러 증언자들은 다양한 과제와 지원금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내가 하지 못한 만큼 다른 학생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²⁷⁴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과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²⁷⁵ 보통,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과 그 부모에게 같은 반 학생을 보내거나 담임교사가 직접 찾아가 출석을 권유할 뿐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⁷⁶ 심지어 학생이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미등교생’으로 처리해 명단에서 삭제한다는 증언도 있었다.²⁷⁷

“인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졸업 때까지 매주 한 번 이상 경제 과제로 토끼가죽, 파지, 파철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했고, 중학교 때부터는 겨울 화목비 등 학교운영비용도 제출해야 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에서 내라고 하는 것을 잘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인민학교와 중학교 선생님들이 ‘왜 다른 학생들은 다 가져왔는데 너만 안 가져왔느냐, 자격이 없으니 청소는 네가 다 해야 한다.’면서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줬고 불이익을 줬습니다. 또한, 계속 가져오라고 닦달하니까 아예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저도 경제적 부담으로 학교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²⁷⁸

나. 교육 기회의 차별적 제공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 내의 모든 사람이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²⁷⁹ 그러나 북한 학생들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²⁷⁴ JUZ0TT2435, 8WHPWX2397, OTP8Z62291, VEEWX80198

²⁷⁵ B5SCU31584, 2K3MCU1868, VEEWX80198

²⁷⁶ JQYD690967, VEEWX80198, A3DT2L1549

²⁷⁷ CW14HP2075

²⁷⁸ JUZ0TT2459

²⁷⁹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3, The Right to Education, para. 6.

받지 못했으며, 출신성분과 경제력이 이를 좌우했다. 실력이 아닌 출신성분에 따라 진학이나 대회 출전 여부가 정해졌고, 집안 형편과 사는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과 수준이 달라졌다.

(1) 성분에 따른 차별

북한에서는 대학 진학이나 의무교육과정에서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증언자는 출신성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²⁸⁰ 또 다른 증언자는 2018년에 의학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교육과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어머니가 행방불명이라 대학에 가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진학을 포기했다고 했다.²⁸¹ 중학교 졸업 후 농장원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일반 대학뿐만 아니라 공업전문학교에도 진학할 수 없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²⁸² 정치범수용소의 이주민 자녀들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정치범수용소에도 소학교와 중학교가 있었지만, 일반 학교와는 달리 학생들에게 책가방 대신 지게를 지고 출석하게 했으며,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²⁸³

성분에 따른 차별은 정규교육 과정 외에도 각종 선발 과정에도 존재했다. 한 증언자는 2018년에 학교 추천으로 ‘학생소년공전’(과외교양기관) 스키부에 선발되었으나, 체육종합지도원이 출신성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발명단에서 자신을 제외했다고 진술했다.²⁸⁴ 해외 유학생 선발 시에도 성분과 배경이 중요한 기준이 됐다. 해외 유학을 경험한 증언자에 따르면 해외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우선 집안 환경이 좋아야 하고 이혼 가정 자녀가 아니어야 하며, 가족 중 범죄자가 있거나 개인의 범죄이력이 없어야 했다.²⁸⁵

²⁸⁰ P4ILM91470

²⁸¹ 9PQ5S71540

²⁸² DFFYXV2365

²⁸³ 3BKBFW1632

²⁸⁴ SOKAIT1086

²⁸⁵ KJ7IFB2239, YNNL9N2323

“저희 언니가 출신성분 때문에 차별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니가 제대하기 전에 대학을 가려고 추천을 받았다가 농장원 자녀 출신이라는 이유로 추천이 취소되었습니다. 2018년에 제대를 앞두고 평양의 ○○상업대학 특설반에 추천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부대에서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부모가 농민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언니는) 그냥 제대하고 부모님이 소속된 농장에 배치 받았습다.”²⁸⁶

(2) 경제력에 따른 차별

북한에서는 경제력에 따른 학교생활에서의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차별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편이 어려워 경제 과제 등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차별받았다는 다수 증언이 수집됐다.²⁸⁷ 학교에 돈을 잘 내고 교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학생들은 ‘명예학생’으로 부르며 상장을 수여했고 각종 노력동원에서도 제외시켜주었다는 증언도 있었다.²⁸⁸ 한 증언자는 반장 등 학생 간부가 되려면 학급에 돈을 많이 내야 했고, 학생 간부와 일반 학생 간에 차별도 심하다고 했다.²⁸⁹ 이처럼 북한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대우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학교 및 당국 차원의 개선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림 V - 12 평양 학생과 지방 학생의 생활 격차



평양의 고등중학교 수업

평양제1중학교 교실

양강도 압록강변의 학생들

* (자료출처) 조선중앙통신, 강동완 동아대 교수 (右)

²⁸⁶ 1CHLPG2211

²⁸⁷ BERYD80822, O15I6J2346, DBZIQP2152, 1NR82V2465, OTP8Z62291, 2K3MCU1868

²⁸⁸ 2M6K2I1904, FZCYTK1540

²⁸⁹ DBZIQP2152

경제력에 따라 지역 간 교육 시설의 격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이 많은 지역의 학교는 학부모들의 도움으로 현대화 작업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의 교육시설은 낙후할 수밖에 없었다. 다수의 증언자들은 시설 면에서 도시학교와 시골학교 사이에 큰 격차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학교의 시설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했는데, 시골학교의 경우 이를 부담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 시설이 낙후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²⁹⁰

다. 열악한 교육여건

북한의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있었으며, 북한의 교원들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처우를 받고 있다. 사회권위원회에 따르면 당사국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육기관, 학교 내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 등 교육권 실현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제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²⁹¹ 또한 「사회권규약」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은 교육권 실현에 대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교원의 물질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교육 환경은 여전히 후진적이었고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1) 낙후한 교육시설

최근 북한은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교실 등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환경의 후진성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양을 제외한 지방의 교육시설은 매우 열악했다. 다수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현대화 사업’이 진행된 경우에도 양호 실이나 도서관, 식수시설 및 위생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²⁹² 한 증언자는 소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학생들의 돈을 걷어 학교 현대화 작업을 했는데, 화장실은 그대로 두어서 2019년에도 학교 건물 밖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했다.²⁹³ 같은 시기 양강도에서 학교에 다녔던 증언자도 학교에 수도시설이 없어 학교 밖에 있는 우물을 이용했다고 했다.

²⁹⁰ 93VI9U2383, 93VI9U2367, 2G5GFH2345, 1NR82V2457, IOOY2Z1546

²⁹¹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3, The Right to Education, 6.

²⁹² CLZ81Q0824, 2K3MCU1868, A3DT2L1549

²⁹³ 4ACOW11614

“2019년까지 양강도 김형직군 ○○고급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집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1시간 동안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점심에는 도시락을 싸가거나 돈을 가져가서 해결했습니다. 학교에 컴퓨터실이나 과학실험실은 없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도관은 없었고 우물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이용했습니다.”²⁹⁴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다는 증언은 많았지만, 전력 등 기반 시설 및 운영비용 부족으로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비교적 현대화 사업이 잘 진행된 학교에서도 실제 학생들은 개선된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다수 증언자들은 학생들의 돈을 걷어가서 학교에 컴퓨터실이 만들어졌지만, 전기 사정 등으로 실제 수업에 사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²⁹⁵

“소학교부터 현대화한다고 했고, 돈을 걷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실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주로 낮에 수업합니다. 저녁에 수업해야 하면 학생들에게 전지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학교건물은 낡았고 화장실은 외부에 재래식입니다. 책걸상은 해마다 새로 칠을 합니다.”²⁹⁶

(2) 교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북한은 교원에 대해 우대할 것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교원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북한 「교원법」 제5조는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에 교원 우대 및 교원 생활 보장을 명하고 있다.²⁹⁷ 하지만 실상은 이와 매우 달랐으며, 교원에 대한 합당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²⁹⁴ ETRLM22255

²⁹⁵ CLZ81Q0824, FZCYTK1540, 4ACOW11614, JUZOTT2459

²⁹⁶ 4ACOW11614

²⁹⁷ 「교원법」(2015) 제42조 (교원우대의 요구) 교원을 우대하는 것은 교원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공지와 영예를 가지고 교육사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조건이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교원을 우대하고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정도의 열악한 처우 속에 제대로 된 교육여건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복한 당국이 아닌 학부모들이 이를 채워주어야 했다. 교사의 임금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교사의 생활비 등을 부담해야 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됐다.²⁹⁸ 한 증언자는 당국이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식량 배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학부모에게 비공식적으로 수업료를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과외활동에 나서기도 했다고 진술했다.²⁹⁹

당국의 방치 속에 교원의 생계를 학부모들이 책임지는 구조가 점차 일반화,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학부모들도 자신들의 도움이 없으면 교원들이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교원들도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고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³⁰⁰ 소학교 교원으로 근무했던 증언자는 교원 대다수가 학부모 대표를 통해 비공식 수업료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잘사는 학부모에게 연락해 물질적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다고 했다.³⁰¹ 교원의 월급과 배급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보니, 학교에서 꼬마계획이나 학교운영비용을 요구할 때 금액을 좀 더 보태서 학부모에게 요구하는 교원도 있었다.

“교원 월급이 급수에 따라 매년 규정대로 지급되었지만, 그 금액으로는 쌀 500g 사기도 힘듭니다.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교원 1인당 6개월분의 감자를 배급해줍니다. 감자는 학생들이 농촌 지원으로 간 농장에서 제공됩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월급과 배급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합니다. 교원들은 생계를 학급반장, 분단위원장을 맡은 학생들의 부모에게 자체적으로 호소해서 돈을 받아 해결합니다.”³⁰²

일부 교사의 경우, 노골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챙기려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가 생계유지를 이유로 개인적으로 경작하는 텃밭에 학생들을 동원하여 농사일을

²⁹⁸ DFM95V2357, 1NR82V2442, XWLLIS2413, ROD6PD2469, 93V19U2478, 2YUED91276

²⁹⁹ REUFYK2389

³⁰⁰ AXNPOZ0474

³⁰¹ BGHI542085

³⁰² BGHI542085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³⁰³ 이처럼, 교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학생노력동원 문제가 만연하자 2019년에는 교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을 노력동원하지 말라는 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수집됐다.³⁰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 목표를 세운 학생들에게 쌀·기름 등 생필품을 요구하거나 고가의 현금을 받아내는 교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학생들이 교사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 대학가는 것에 목표를 세운 학생들은 교사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좋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낫지만, 안 좋은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대놓고 요구를 하는데, 쌀, 기름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한 집을 인테리어 한다고 자재비가 필요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요구를 학생한테 직접 얘기할 때도 있고, 부모들에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많이 요구할 때는 (교사) 본인 집 인테리어비로 한 번에 100달러까지 요구 받아 낸 적이 있습니다.”³⁰⁵

라. 체제보위 수단으로 변질된 교육

북한은 정치사상교육을 우선하는 등 교육을 체제보위와 이상화에 활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아동에 대한 군사교육까지 시행하고 있다. 「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은 인격 존엄성에 대한 의식 발전을 지향할 것을 비롯하여, 인권·자유의 존중, 자유사회의 참여, 민족·인종·종교 간 이해·관용·친선 증진 등을 교육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위원회도 특정 종교나 신념을 강제하는 공교육은 「사회권규약」에 규정된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았다.³⁰⁶

그러나 북한은 정치사상교육을 일반교육보다 앞세우고 있으며, 「보통교육법」 및 「교육강령시행법」 등 법령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³⁰⁷ 또한 정규교육과정에 군사훈련을 편성

³⁰³ 1NR82V2442, 93VI9U2383, KRVI AU2326, B5SCU31584, XXTKPX1915, FZCYTK1540, IUCTX40230

³⁰⁴ P4ILM91470

³⁰⁵ 5VRQH72482

³⁰⁶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3, The Right to Education, 28.

³⁰⁷ 「보통교육법」(2015) 제40조(정치사상교육, 일반지식교육, 체육, 예능교육) 보통교육기관은 학생들이 건전한 사상과 도덕, 다방면적이며 깊은 지식, 튼튼한 체력과 풍부한 정서를 지닐 수 있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일반과목에 대한 교육, 기초 과학기술 과목에 대한 교육, 외국어, 예능, 체육과목에 대한 교육을 윗게 결합시켜야 한다. 「교육강령시행법」(2016) 제8조(교육과정안작성의 요구 및 내용) 교육기관은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고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교육과정안을 현실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하여 학생들에게 이를 강제하고 있다.

(1) 이상화교육

북한의 교과과정은 사상 주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⁰⁸ 북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정숙(김일성 처) 중심의 정치사상 과목에 대해 배우게 된다. 소학교 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정숙의 ‘어린 시절’을, 초급중학교 때는 이른바 이들의 ‘혁명활동’을, 고급중학교에서는 이들의 ‘혁명역사’에 대하여 교육받아야 한다.³⁰⁹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정치사상 과목은 모든 교육과정에서 일반 과목보다 더욱 중요시되었으며, 출결 및 시험도 더욱 엄격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³¹⁰ 한 증언자는 정치사상 과목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의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도, 혁명역사 등 정치사상 시험 점수가 낮으면 최우등이 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³¹¹

표 V-6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

교과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 수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어린 시절	1	1	1	1	1	1	이상화교육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	1	1	1	1	1	1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어린 시절	1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어린 시절	1	1	1	1	1	1	
사회주의 도덕	1	1	1	1	1	1	일반교육
수학	4	5	5	5	5	5	
국어	7	7	7	7	7	7	
자연	1주	1주	2	2	2	2	
음악무용	2	2	2	2	2	2	
체육	2	2	2	2	2	2	
도화공작	2	2	2	2	2	2	
영어					2	2	
정보기술(컴퓨터)				1주	1주		

* (자료출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23. 331쪽(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 재구성) 참고.

* 북한의 교육과정은 주당 교수시간과 집중교수(주 단위로 표시)시간을 명시하고 있고, 위의 표에서 1주는 집중교수시간을 의미

308 ROD6PD2411, 93VI9U2383, DFFYXV2475, A3DT2L1549

309 DFM95V2357, TMW8DT2181, XXTKPX1915, 2K3MCU1868, 18QU5P1660, 8WHPWX2397, A3DT2L1549

310 1BQ5TD2412, 2K3MCU1868, 18QU5P1660

311 8CWCD32231

이 밖에도 북한의 학생들은 중요 정치행사에 집단적으로 동원되는 등 일상 속에서도 사상교육을 받아야 했다. 학생들은 일정 연령이 되면 조선소년단 및 청년동맹 등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수업시간 외에도 사상을 학습하고 실천해야 했다. 소학교 3학년이 되면 조선소년단에 입단하게 되고, 붉은 넥타이를 맨 채 수령에 대한 맹세를 하며, 평생에 걸친 조직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한 증언자는 소년단 활동을 했을 때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배지 등을 정중히 모시고 이를 철저히 보위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으며, 소년단·청년동맹 활동 시 3대 우상화를 찬양하는 노래를 배워 수시로 불러야 했다고 진술했다.³¹²

그림 V-13 북한 학생들의 조선소년단 활동



소년단 야영소 준공식
(평양, 2016.)

소년단 73주년 창립대회
(평양, 2019.)

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평양, 2022.)

* (자료출처) 조선중앙통신(2016.6.6./ 2019.6.7.), 노동신문(2022.2.12.)

(2) 교과과정에 편성된 학생 군사훈련

북한의 정규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군사훈련을 포함하고 있다.³¹³ 사회권위원회는 특정 종교나 신념에 대한 수업을 포함하는 공교육은 학부모 및 후견인의 희망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회권규약 제13조의 위반이라고 보았다.³¹⁴ 그러나 북한에서는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교육 과정에 포함된 군사훈련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³¹² 4XIK2K0784

³¹³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2000)에서는 당사국은 18세 미만의 군대 구성원이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자들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징집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북한은 이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³¹⁴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3, The Right to Education, para. 28.

북한은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 교과과정에 군사훈련을 편성하여 이를 강제하고 있다. 북한의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전투력을 갖춘 결사대 양성’이라는 목적에 따라, 북한의 예비전력 중 하나인 ‘붉은청년근위대’(고급중학교 군사조직)에 소속되어 기초 군사훈련을 소화해야 한다.³¹⁵ 붉은청년근위대 훈련 경험이 있는 증언자 진술을 종합하면, 동 훈련은 모든 고등중학교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야영소 입소 후 7~10일간 합숙훈련으로 진행된다. 무기 분해·조립·조준훈련, 방독면 착용한 채 달리기 등의 군사훈련이 진행되며, 특히 훈련 마지막 날에는 실탄을 세 발씩 쏘는 실탄 사격 훈련을 받아야 했다.³¹⁶

“중학교 5학년(현 고급중학교 2학년)이던, 2008년 7월에 붉은청년근위대에 갔습니다. 7박 8일 일정으로 (자강도) 전천군으로 갔습니다. 여름에는 적위대(현 ‘노농적위군’, 우리의 예비군)에서 사용하고 그 외로는 학생들이 사용합니다. 전문 군사훈련으로 대련훈련부터 시작해서, 무기분해법, 총 쏘는 법, 총에 대한 이론, 청소하는 법까지 군대나 가서 해야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교육과정입니다. 마지막 날에 실탄 세 발을 쏘았습니다.”³¹⁷

315 북한의 교육강령에는 교과 수업 이외에도 견학 1주, ‘붉은청년근위대’ 훈련 1주, 나무심기 3주, 생산노동 9주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23. 114쪽, 336쪽 참고)

316 X2IB8H0457, B5SCU31584, DL4ZFFQ2303, 1FND2R1476, XXTKPX1915, 2K3MCU1868, 18QU5P1660, DFFYXV2475

317 KRV1AU2326

5. 사회보장권

모든 사람은 실업,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25조에서는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등으로 인해 생계가 결핍된 경우 누구나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규약」 제9조에서는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라며 사회보장권을 명시하고 있다.

표 V-7 「사회권규약」과 사회보장권

「사회권규약」		사회보장권 (관련 목차)	
제9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공통 사회보장권	
제10조	제1항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의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성립된다.
	제2항		임산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 중의 근로 임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제3항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 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은 다양한 사회보장 법령을 마련해두고, 나름의 사회보장을 선전하고 있다. 법령을 통해 연로연금을 비롯하여 노동능력상실연금, 유가족연금, 보조금 등의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와 현실에는 차이가 있었다.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나름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

한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적절하게 작동되지 않았으며, 북한 주민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최근 기존 법령들을 통합하여 사회보장 기본법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새롭게 제정(2021. 3.)하고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을 제정(2020. 4.)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했다. 북한 당국은 사회보장법제 정비를 통해 과거 법령의 몇 가지 보조금 및 연금 지급 내용을 제외하기도 했다. 기록센터에서는 북한 법령상 여러 사회보장제도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로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유가족연금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사회보장 제도의 실상에 대해 조사했다.

표 V-8 사회보장 관련 북한의 법령

사회보장 범주	관련 법령	비고
사회보장 전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 기본법령, 최근 제정(2021.3.) · 기존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에 경노동, 공로자 특별 우대, 사회보장금 추가
건강관리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 「전염병예방법」 개정(2020.8.)
질병	「인민보건법」, 「의료법」, 「의약품관리법」	
고령(노인)	「연로자보호법」	
실업/ 산업재해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제정 (2020.4.) · 「노동보호법」 개정(2021.10.)
가족·아동/ 모성보호	「어린이교육교양법」, 「아동권리보장법」, 「여성권리보장법」	
장애	「장애자보호법」, 「장애자권리보장법」	
유족·고아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가. 허울뿐인 연금제도

(1) 연로연금

북한은 노동 연한을 경과하여 퇴직한 주민에게 연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된 연로연금은 노후 보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연로연금은 「연로자보호

법」 등에 따라 근속기간이 25년 이상인 자 중 남성 60세 또는 여성 55세 이상에게 동사무소에서 현금과 현물의 형태로 지급된다.³¹⁸ 하지만,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연로연금의 내용과 수준은 물가 및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 가사 등으로 법령상 근속노동연한 요건을 채우기 어려워 연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드물었다.³¹⁹

“연로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노동연한이 연속 2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당시 57세로 나이 조건이 되었지만 노동연한이 25년이 되지 않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녀자들의 경우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로보장금은 2019년 당시 북한 돈 700원으로, 쌀 1kg도 못 샀습니다.”³²⁰

북한 주민들이 연로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북한 돈 1,000원 내외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언에 따르면 연로연금은 2000년대 중반 이후 20여 년간 1,000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³²¹ 물가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연로연금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증언자들은 쌀 1kg 정도는 살 수 있었던 1990년대 초반과는 달리, 당국이 주는 연금이 생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³²² 현금 대신 현물로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쌀 600g 등 역시 소량에 불과했다.³²³ 연로연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다수 증언자들은 ‘사탕 한 알 정도 살 수 있는 정도였다’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었다고 답했다.

318 「연로자보호법」(2012) 제2조 (연로자의 나이, 보호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연로자는 남녀 60살 이상의 공민이다. 노동연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남자 60살, 여자 55살 이상의 공민은 이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14조 (연금, 보조금 보장) 연로자는 국가로부터 연로연금과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다.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은 연로자에게 정해진 연금, 보조금을 정확히 내주어야 한다. 연금, 보조금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노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74조 국가는 남자 60살, 여자 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 노동연한을 가진 경우에 연로연금을 준다.

319 L99N7A2142, XF42ZV0591

320 L99N7A2142

321 3RNTQV2332, UY2OY52324, BW8MUL2358, K6JGAA2321, HLYRUJ2290, 5U19X52263, R2PF4V0713, XF42ZV0591

322 R2PF4V0713

323 EJRHLJ2244

표 V-9 재북 당시 연로연금 금액 (기록센터 조사 기준)

(단위: 북한 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500											1500				
1000			1000												
									800		800		700~ 800		700~ 800
700															
500									500						

심지어 연로연금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연금 지급 주체인 관할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운영비용,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연금의 일부를 제하고 지급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증언자들은 북한에 있을 당시 지급되어야 할 연로연금금액이 밀려있거나, 아예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다.³²⁴

이처럼 현실과 맞지 않는 연로연금과 연금제도의 부실한 운영으로 법정 노동 연령을 넘긴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생계 걱정을 해야 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장사 또는 소토지 경작을 하거나, 가족의 부양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다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³²⁵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가 되어야 연로보장금을 줍니다. 주는 것도 기차게 작습니다. 늙은이들은 아들에게 부양으로 얹히는데 머느리 괄시 받고, 불쌍합니다. 젊은 여자들은 장사질 하고 힘들게라도 사는데, 힘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늙은이들은 정말 불쌍합니다.”³²⁶

³²⁴ 5Q8LRL2333, 3RNTQV2332, 00RIT62440

³²⁵ QBLB242355, 4C6RDC2348, DFM95V2357, BW8MUL2358, DFFYXV2365, ROD6PD2386, 1ND60Q2377, TEIEJA2400, ROD6PD2427, UY2OY52324, K6JGAA2321, 3RNTQV2332, YNZ1CJ2226, HLYRUJ2290, 5OR5F62241, 1ZCVGZ2215, K4HHNQ2264, L99N7A2142, 4NPX212298, R2PF4V0713, XF42ZV0591, 2L81UU1609, SHS6WT0708

³²⁶ L99N7A2142

(2) 노동능력상실연금

북한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노동능력상실연금'을 보장하고 있었으나, 이 또한 연로연금과 마찬가지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은 질병이나 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주민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³²⁷ 북한 주민들은 이를 두고 '사회보장을 받았다'고 불렀으며, 이를 생계유지에 활용했다. 합법적으로 노동의 의무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이 기간에 사적 경제활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능력상실 연금은 매우 적은 금액이었으며, 지급이 지연된 경우도 많았다. 한 증언자는 아버지가 하반신 마비로 인해 1999년부터 2011년까지 한 달에 3,000~4,000원 씩 노동능력상실 연금을 받았으나 12년 동안 동일한 금액이었고 자주 밀렸으며, 여러 가지 명목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³²⁸ 다른 증언자도 연금 금액에 물가 인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매우 소액이어서 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³²⁹

“아버지가 ‘사회보장’이셨습니다. 매달 북한 돈 3,000원 정도를 지급해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60세까지 북한 남자들은 기업소나 공장에 그 기업소나 공장이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나가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안 나가면 매달 8.3수익금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무직이어도 단련대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에 한 번 정기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 정말 아픈 것인지 아픈 상태가 나아진 것인지 국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³³⁰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아예 지급받지 못했다는 증언들도 다수 수집됐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적은 금액이라도 노동능력상실 연금을 받았으나, 이후 금액이 점점 줄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마저도 완전히 끊긴 곳도 있었다.³³¹ 한 증언자는 군 복무 중 부상을 당

³²⁷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73조 국가는 노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준다.

³²⁸ 1BQ5TD2458

³²⁹ SHS6WT0708, JQYD690967, 2XW8W01528, R0D6PD2427

³³⁰ V2FXOT0757

³³¹ MPTG4U1080, 6O2UUZ1587, V2FXOT0757, P5F78O1131, 4902BC0526, BW8MUL2358

해 제대한 후, 사회보장 대상자로 등록되었으나, 연금 등의 경제적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했다.³³² 근무 중 산업재해로 팔이 절단되어 사회보장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당국의 지원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며 생계를 해결했다는 증언도 있었다.³³³

반면, 실제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도 뇌물을 주어야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노동능력상실연금과 관련된 이러한 상황들은 북한에서 노동능력 상실자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와 실효적인 사회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손가락이 몇 개 없거나 발을 저는 등 장애가 있더라도 (배치된 직장에서) 일하는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병이 있다 해도 (병원)에 돈을 내기 전에는 같은 병이라도 진단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³³⁴

(3) 유가족연금

사망한 노동자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가족연금’의 경우에는 법령상에만 존재할 뿐 지급받았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북한은 「사회주의노동법」에서 노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하였을 때 ‘국가가 부양가족에게 유가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³⁵ 그러나, 최근까지도 당국으로부터 유가족연금을 받았다는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유가족연금 관련 최근 사례는 2012년 사례로, 돌격대에서 갱도가 무너지면서 남성 두 명이 사망했지만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었다고 했다.³³⁶ 다수 증언에 따르면, 이전의 노동자 사망 사례에서도 유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³³⁷

³³² 1ZD3201572

³³³ CVOP781260

³³⁴ 1NR82V2372

³³⁵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77조 국가는 노동재해, 질병, 부상 등의 원인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연금을 주며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맡아 키운다.

³³⁶ 2HVKPM0388

³³⁷ T10KYP2242, Q5RDF42251, 6PXT8W2210, 1AFWVV1139, ROY7EQ1080, AQPOKB0225, XTAWM22178, F6ES8K2204, XTA8SU1537, Z2FLAU0630, UTXEYM0779

작업 중 사망사고는 특히 협동농장, 돌격대, 탄광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북한 당국은 법령에 명시된 유가족연금을 보장하지 않았다. 함경남도의 한 협동농장에서는 탈곡 작업을 하던 농장원의 머리가 탈곡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유가족연금은 물론 보상과 지원이 없었다고 했다.³³⁸ 한 증언자는 평안북도 삭주군 소재의 공장에서 작업 중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에게 보상금 지급이 없었다고 진술했다.³³⁹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로 유가족에게 일부 지원금이 나온 경우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일회성이거나 기업소 차원의 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례로 당국에서 쌀 1kg 정도만을 살 수 있는 비용인 200원이 위로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례, 쌀 20kg가 제공되었다는 사례, 유가족에게 직장을 배정해주었다는 사례, 가전제품을 제공해주었다는 사례 등도 수집됐다. 하지만, 모두 일회성 보상이었으며, 유가족에 대한 연금형태의 지급은 없었다.³⁴⁰

군사복무 중 사망한 병사의 경우에도 유가족연금 지원은 없었다.³⁴¹ 사망한 병사의 유가족에게 ‘전사증’만 발송했을 뿐, 그 외 금전적인 보상 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⁴² 또한,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유가족에게 ‘훈련 중 사망하였다’고만 통보하고, 보상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³⁴³ 심지어 연금이나 보상은커녕 시신조차 인계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는데, 이는 군관(장교)과 사병 모두 마찬가지였다.³⁴⁴

“2015년경 군대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지침을 어기고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온 상급병사에게 정치지도원이 벌로, 5L짜리 술을 한꺼번에 마시도록 지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술을 마시다가 기도가 막혔는지 병사는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에게 사망 원인을 정확히 통보한

³³⁸ EORONA0141

³³⁹ ROY7EQ1080

³⁴⁰ Q5RDF42251, AQPOKB0225, T1OKYP2242, FH87SC2243, 8Z3PNK0541, ROY7EQ1080, IWKAT01409

³⁴¹ MLPOED0839

³⁴² E8T1N91517

³⁴³ 50MCF02132

³⁴⁴ BUC0WNI526, SPZ0A62151

것이 아니라 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시신은 인계되지 않았고 군대 내에 매장되었습니다. 유가족에게 보상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³⁴⁵

해외파견 노동자의 경우, 근무 중 사망하면 회사에서 유가족에게 부조금을 지급했지만, 역시 당국 차원의 지원이나 연금 보장은 없었다. 회사에서 지급한 부조금의 수준은 시기 및 회사 사정에 따라 달랐다. 2000년대 중반 러시아에서 별목노동자로 근무했던 한 증언자는 해외파견 노동자가 현지에서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애국열사증’을 주고, 현지 북한회사에서 2,000달러를 부조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다.³⁴⁶ 2010년대 초반에는 부조금 명목으로 2,000~4,000달러를 유가족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⁴⁷ 2016년 러시아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자 발생 시 현지 북한 회사(4,000~5,000 달러)와 해당직장의 노동자들(4,000달러)이 모여서 8,000~9,000달러 정도의 부조금을 유해와 함께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2017년까지 러시아 ○○건설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한 해에 7~8명의 노동자가 사망합니다. 제가 있던 5직장에서도 추락사고로 노동자가 죽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의 경우 사망 노동자 유족에게 8,000달러를 지급합니다. 회사가 4,000달러, 해당 직장에서 4,000달러를 부담합니다. 시신은 현지에서 화장해서 부조금과 함께 본국으로 송환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 차원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전혀 없습니다.”³⁴⁸

나. 지급되지 않는 보조금

(1) 일시적 노동능력상실보조금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

³⁴⁵ 50MCF02132

³⁴⁶ BVPE3D1429

³⁴⁷ NZ8IAT0878, 5OR5F62241

³⁴⁸ 5W2TE10975

하나, 북한 당국은 이를 법령에 명시해두고도 지급하지 않았다. 「사회주의노동법」은 6개월 미만의 노동능력상실 노동자에게 일시적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73조), 보조금 지급은 없었으며 일시적으로 노동의 의무만 면제받을 수 있었다. 병원에서 발급 받은 ‘감정서’(진단서) 제출을 통해 일시적 노동능력상실을 인정받으면,³⁴⁹ 원칙적으로는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거주지 지원 사업 등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³⁵⁰ 즉 재해, 질병,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잃게 된 북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사회보장 혜택은 노동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뿐이었다.

공장 노동자나 농장원은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이 높았으나, 작업 중 부상을 당하더라도 당국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보조금은 물론 치료비와 생계비 등 당국 차원의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다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³⁵¹ 농장원이었던 한 증언자는 임신 중 작업을 하다 유산되었으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³⁵² 심지어, 근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결근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치료를 받지 않고 부상을 방치했던 사례도 수집됐다.³⁵³ 산업재해를 겪었을 때 치료받았다는 증언이 있었으나, 이 경우에도 직장에서 치료비만을 부담했을 뿐 당국으로부터의 지원이나 보조금은 받지 못했다.

“2016년경 남포시 ○○공장에서 창고장으로 근무하면서 원료를 절단하는 기계에 오른손이 끼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치료비용은 공장에서 부담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노동능력상실연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노동능력상실연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³⁵⁴

³⁴⁹ ‘일시적 노동능력상실’을 인정받으려면 3개월에 한 번씩 감정서를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감정서는 병원의 검진결과를 토대로 병원의 각과 과장들과 법의감정 지도원이 협의하여 작성하게 되며, 감정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³⁵⁰ 5Q8LRL2333

³⁵¹ 67MM9S2253, 32CICV2337, 13PN7Y2325, BW8MUL2358, ATSBNB1148, CVOP781260, 17DJ3T1369, QT8EME0129, D280Z70942, 1AFWVV1139, SUSDBG1315, 9UVVS61410, GURQNU0362, OIU10D0101, BW8MUL2358

³⁵² HJ981F1307

³⁵³ HNXH101380

³⁵⁴ 32CICV2337

해외파견 노동자가 근무 중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별목현장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하여 두 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증언자는 회사 측의 기본적 치료만 있었을 뿐 당국 차원의 지원은 없었다고 했다. 회사 측 치료 또한 상처가 깊지 않도록 페니실린 주사를 놔주고 봉합수술을 해준 것이 전부였으며, 추가적인 치료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고 진술했다.³⁵⁵

(2) 다자녀양육보조금

북한은 「어린이보육교양법」³⁵⁶과 「여성권리보장법」³⁵⁷에서 세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에 대한 특별혜택 및 보조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최근 출산율이 낮아진 북한에서는 다자녀 여성을 우대하며 이를 선전하고 있다.³⁵⁸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급된 다자녀에 대한 양육보조금도 출산장려를 위해 마련된 정책의 하나로 보인다. 노동능력상실보조금과 달리, 다자녀양육보조금 지급 사례들이 일부 수집되기는 했으나,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양육보조금은 다른 연금이나 보조금과 달리 지급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역시 지급 주기가 일정치 않았고 보조금 수준 또한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낫째를 출산한 증언자는 당시 네 자녀 이상 출산 시 현물로 쌀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백미(白米)’라고 쓰여 있는 배급표를 받았음에도, 실제 쌀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³⁵⁹ 그 무렵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자녀 한 명당 200~300원씩의 보조금을 지급 한 것으로 보인다.³⁶⁰ 이후 보조금 액수는 조금씩 증가했다. 2005년경에는

³⁵⁵ TSNCRP0367

³⁵⁶ 「어린이보육교양법」(2013) 제21조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의 보호) 국가는 한 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에게는 유급으로 일정한 기간 산후휴가를 더 준다. 3명 이상의 쌍둥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일정한 기간 옷과 포단, 젖 제품 같은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보조금을 주며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의료인구를 따로 담당시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준다.

³⁵⁷ 「여성권리보장법」(2015) 제50조 (출산의 자유) 여성은 자녀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적으로 여성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을 장려한다. 삼태자, 다태자를 낳아 키우는 여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 의사를 두며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같은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돌린다.

³⁵⁸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 2.35명 → (2000년) 1.97명 → (2010년) 1.81명 → (2023년) 1.79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통계청 북한통계(KOSIS), 합계출산율 참고)

³⁵⁹ LVXJKW2259

³⁶⁰ IWKAT01409, VN6QYA0869, UODMTP1307

500원, 2010년대 중반부터는 5,000원씩 지급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다.³⁶¹ 하지만,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자들은 공통적으로 실제로는 다자녀 양육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 다자녀 가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아이 하나당 고졸중학교 졸업 전까지 북한 돈 5,000원을 매달 줍니다. 그래서 규정상은 매달 북한 돈 15,000원이 제공됩니다. 동사무소 소장이 지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지원되지 않았고 3개월에 한번 꼴로 지급되었는데, 밀린 지원금까지 45,000원이 제공되었습니다. 북한 돈 15,000원으로는 쌀 4kg도 못 삽니다. 보조금이 너무 적어서 세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맹에서 실시하는 노력동원에서 제외되는 것 말고는 다른 (다자녀) 혜택은 없었습니다.”³⁶²

다. 노인 복지의 문제점과 불평등

북한은 법령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부양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적절한 지원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북한 「사회주의노동법」³⁶³과 「연로자보호법」³⁶⁴에는 노동 능력을 상실한 노인,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들에 대한 무상 돌봄이 규정되어 있다. 북한 당국은 각 지역에 설치된 ‘양로원’을 중심으로 노인복지를 시행하고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에서는 선전과는 달리 시설은 여전히 낙후했고 당국의 제대로 된 지원도 없었으며, 평양과 나머지 지역 간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지역별 양로원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집권 초기, 애민(愛民) 행보를 강

³⁶¹ ISU41R1335

³⁶² DBZIQP2152

³⁶³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78조 국가는 노동능력을 잃은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을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준다.

³⁶⁴ 「연로자보호법」(2012) 제12조 (국가적 부양) 부양의무자가 없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을 받는 연로자는 국가가 부양한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연로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 부양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양비용은 부양의무자가 부담한다.

조하기 위해 애육원³⁶⁵, 육아원³⁶⁶ 등의 복지시설 개선에 나섰고, 이때 평양양로원을 비롯하여 양로원들도 건설하기 시작했다. 증언을 통해 평양시 승호구역(현 황해북도 승호군), 나선시, 자강도 자성군, 함경북도 청진시, 양강도 혜산시·삼수군 등 기존 시설에 더해 새로운 양로원들이 건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증언자는 김정은 지시로 평양 대동강구역에 ‘평양양로원’이 새로 건설되었고 2017년경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고 진술했다.³⁶⁷ 지방 주요도시의 양로원 건설을 목격했다는 증언들도 수집됐다. 2015년에는 함경북도 청진시 나남구역과 양강도 혜산시의 양로원 건설 소식이, 2018년에는 혜산시의 또 다른 지역에서의 4층 규모 양로원의 완공 사실이 다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³⁶⁸

“2017~2018년경 양강도 혜산시 (중심부인) 연봉1동의 큰 도로 바로 옆에 큰 양로원이 건설되었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잘 보이는 곳에 지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로원에 입소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노인의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돌 볼 사람이 없는 노인에 대한 당국의 노력도 없었습니다.”³⁶⁹

그러나 북한 당국의 선전 속에 평양과 각 도에 대대적으로 건설된 양로원의 실제 운영 상황은 열악했으며,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양과 달리 지방에 건립된 양로원은 겨울에 떨감이 없어 노인들이 직접 나무를 하러 다닐 정도로 운영 상황이 좋지 못했다. 양로원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원물품이 양로원에 전달된 경우도 있었다. 한 증언자는 2014~2015년경 유럽의 한 비정부기구에서 각 도 양로원의 상황과 수요를 조사한 후 양로원별로 해당 물품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³⁶⁵ ‘애육원’은 ‘보호자가 없는 유치원 나이의 어린이들을 알아서 키우고 교양하는 양육기관’을 의미한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4권, 2017. 1524쪽 참고)

³⁶⁶ ‘육아원’은 ‘돌보아줄 부모나 친척이 없는 어린이를 국가가 맡아 기르는 보육교양기관’을 의미한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4권, 2017. 1329쪽 참고)

³⁶⁷ DDL5221833

³⁶⁸ XHQ3062395, 13PN7Y2325, 5Q8LRL2333, 3RNTQV2332, DDL5221833, 1F0LEV2294, QCF3FE1928, YX610J1638, ROHC5C1856, PMYY0W2258, 00RIT62445

³⁶⁹ 5Q8LRL2333

“○○라는 유럽 비정부기구에서 각 도의 양로원들을 요해(了解, 실태 점검)하고, 각 기관에 부족한 물품들,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여 결정하고 지원합니다. 식량이 필요하면 식량을 가져다주고, 담요나 물품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줍니다. 다른 양로원과 달리 평양양로원은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 공로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은 도(道)마다 1개씩 양로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양로원의 상황은 형편없습니다.”³⁷⁰

한편, 북한 사회에 만연한 뇌물과 부정부패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돌봄 기회를 박탈하기도 했다. 북한 「연로자보호법」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연로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 부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⁷¹ 노인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조항이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수집됐다. 한 증언자는 부양할 가족이 없는 노인들 이외에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양로원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³⁷² 자녀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이유로 자녀가 인맥과 뇌물을 이용해 부모를 양로원에 입소하도록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들을 돌보는 시설이 양강도 삼수군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는 분이 노인돌봄시설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혜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자식으로 아들 한 명이 있었 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이 부양하기 귀찮으니까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사업한 것 같습니다. 정확 히는 모르지만 입소 조건이 굉장히 엄격해서 그 시설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³⁷³

³⁷⁰ XHQ306239

³⁷¹ 「연로자보호법」(2012) 제12조 (국가적 부양) 부양의무자가 없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을 받는 연로자는 국가가 부양한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연로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 부양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양비용은 부양의무자가 부담한다.

³⁷² ROHC5C1856

³⁷³ QCF3FE1928

VI

취약계층

“남성 상관에 의한 여군 성폭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간부 20여명이 입당 등 각종 이권들을 악용해서 여군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여군들이 거부하면 어렵고 고된 일을 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간부들의 성적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여성

모든 사람은 성별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여성의 권리도 ‘비차별’과 ‘동등한 권리 보장’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모든 인류 구성원에 대한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성별을 비롯하여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보장은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온 문제이다. 1979년 제34차 유엔 총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채택되어, 1981년 9월 발효됐다. 국제사회는 동 협약을 통해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혼인 및 가정생활에 관한 권리 등에 있어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북한은 지난 2001년 동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이후 협약 당사국으로서 2002년 협약 이행에 대한 제1차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2016년 제2·3·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표 VI - 1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관련 목차)
제2조	<p>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p> <p>(가)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p> <p>(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p> <p>(다) 남성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며 권한 있는 국내법정과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성을 여하한 차별 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확보할 것</p> <p>(라) 여성에 대한 여하한 차별 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며 공공 당국과 기관이 동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p> <p>(마)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 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p> <p>(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p> <p>(사)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 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p>	<p>가 여성에 대한 차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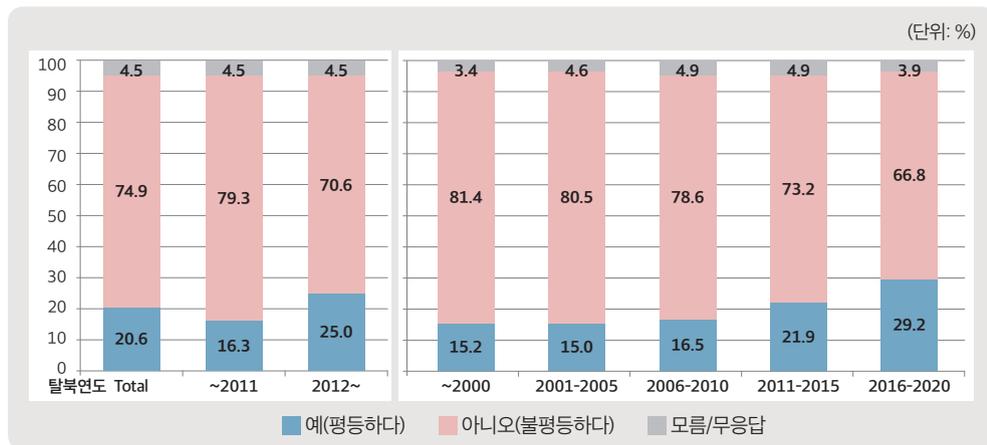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관련 목차)
제3조	당사국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여성에 대한 차별
제5조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 양식을 수정할 것 (나)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확보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제6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여성에 대한 폭력
제10조	당사국은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여성에 대한 차별
제11조	제1항 당사국은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항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다 또 다른 사각지대, 모성보호

북한에서 여성은 정권 수립과 전쟁, 전후 복구 과정을 겪으며, 사회주의 혁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존재로 높이 평가되었지만, 실제 북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남존여비(男尊女卑)의 고정관념 속에 북한 여성들은 남성의 보조자, 조력자로서의 희생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요받았다. 주민들의 의식 속에 북한 여성은 낮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졌고 이는 여성에 대한 일상화된 차별과 폭력으로 발현됐다. 제대로 된 모성보호나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부족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경제 위기를 맞아 대다수의 북한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해야 했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차별받기도 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정과 사회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북한 여성들의 다양한 증언들이 수집됐다.

가. 여성에 대한 차별

공식적으로는 남녀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사회는 매우 가부장적인 곳으로 북한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해 있다. 「사회주의헌법」¹과 「여성권리보장법」²에서는 남녀의 동등한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출산·육아 지원을 통한 여성의 사회 진출 보장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웠으며, 입당이나 승진, 직업 배치에서도 남성이 우선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 재북 시 남녀평등 인식 (통일부)



* (자료출처)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24. p.220 / 탈북 연도 기준

여성이 가정경제에 기여하게 되면서 점차 평등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까지 북한 사회에서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는 인식이 보다 지배적이다. 재북 당시 ‘남녀 평등 인식’을 묻는 통일부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4.9%가 ‘남녀 간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³ 기록센터의 조사에서도 여성 탈북민들이 재북 당시 여성으로서 겪었던 차별과 폭력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수집됐다.

1 「사회주의헌법」(2019) 제77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2 「여성권리보장법」(2015) 제2조 (남녀평등의 원칙)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여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한다.

3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24. 220쪽 참고.

(1) 가정에서의 여성 차별

북한 가정에서는 아직까지도 딸보다 아들을 우선시하고, 딸에게는 아들과 달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었다. 다수의 증언자들이 남존여비 사상에 기반한 여성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일상적으로 이를 경험했다고 진술했다.⁴ 한 증언자는 아버지, 오빠와는 겸상하지 못했으며, 아버지와 오빠는 쌀밥을 먹었지만 딸들은 남은 밥에 시래기를 섞어먹어야 했다고 진술했다.⁵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 기회를 제한받았다는 증언이 많았는데, 이러한 차별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 재북 당시 10대였던 한 여성 증언자는 재북 당시 가정에서 ‘여자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며 학교를 보내주지 않아 정규교육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고 했다.

“탈북 직전인 2016년까지도 집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사촌오빠와 다툼을 해도 가족들은 항상 제가 여자이고 어리니 잘못했다고 혼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여성을 더 밑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며 제가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도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⁷

“어릴 때부터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항상 차별과 폭행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저에 대한 차별과 폭행이 너무 지나쳐서 6살부터는 꼭 가족들과 떨어져 친할머니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저와 어머니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평소에는 딸이라는 이유로 함께 식탁에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습니다. 다른 집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⁸

이처럼, 북한 여성들은 가정에서 불평등과 차별 속에 살아가야 했으며 경제 위기를

⁴ TPK8GF2281, 51IH842267, 8WHPWX2410, FG7EKF2277, 7NH3QF2283, 93VI9U2368, S02DOL2356, 5OR5F62241, DDL5221833, KUUDW41200, V6PE6V2232, 5QG11E2237, 8IUFRLL2417, T255EE2480

⁵ R0D6PD2360

⁶ S02DOL2356

⁷ T255EE2480

⁸ T255EE2374

겪게 되면서 가사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까지 떠맡게 됐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장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성들은 직장에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것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들의 몫이 됐다. 다수 증언자들은 이때부터 여성들이 밀수, 장사, 소토지 경작 등의 사적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진술했다.⁹ 직업이 있는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을 포기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는 중학교 때 선생님도 생활이 어려워서 교사를 그만두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진술했다.¹⁰

일부 북한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밀수, 불법 장사, 마약 매매, 송금브로커 등을 수행했으며, 당국에 적발되어 처벌받기도 했다. 한 증언자는 아내가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남한 영화를 복사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진술했다.¹¹ 양강도, 함경북도 등 접경지역 거주 여성들은 밀수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지속적으로 당국의 감시를 받았으며 적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때로는 기관원이 밀수 사실을 약점 잡아 뇌물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었다.¹² 밀수로 적발된 여성들은 노동교양처분이나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등 처벌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감형을 위한 뇌물과 면식 제공을 위한 돈이 필요했다고 했다.¹³

“초급중학교 1학년 때인 2014년에 어머니가 밀수로 단속되어 교화형 1년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처벌을 감량하기 위한 뇌물과 면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학교에 나가지 않고 주변 산으로 화목(火木)을 하며 돈벌이를 했습니다.”¹⁴

⁹ 00RIT62445, TEIEJA2448, 1NR82V2442, 8IUFRLL2414, 1BQ5TD2412, 2G5GFH2345, MAV6AE2392, R7KY7W2329, ROD6PD2411, 4C6RDC2348, 1BQ5TD2424, 1BQ5TD2438, 5VRQH72482, 1NR82V2474, DFFYXV2475, 1NR82V2457, ROD6PD2466, 8IUFRLL2452, 1BQ5TD2470, 00RIT62477

¹⁰ Q6VZNC2339

¹¹ 5Q8LRL2333

¹² 1CHLPG2211, 0BPBA22149, ZYBOX42067

¹³ 2K3MCU1868, 6DCJY01788

¹⁴ 6DCJY01788

그림 VI-2 북한 여성들의 일상



강에서 빨래하는 여성들
(2019.1.)



짐을 나르는 여성
(2019.6.)



일하고 있는 여성들
(2018.11.)

* (자료출처) 강동완 동아대 교수

한편, 여성의 시장 활동 증가로 최근에는 남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통계와 증언들이 수집됐다. 가정주부들이 실질적인 경제주체로 활동하게 되면서 가정 내 여성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다. ‘여성의 시장 활동이 가정 내 여성 위상에 미친 영향’을 묻는 통일부 조사 결과 41.0%가 여성 위상이 다소 높아졌다고 대답했다. 남편과 위상이 동등해졌다거나(12.0%), 더 높아졌다(18.2%)는 응답을 합치면, 탈북민 10명 중 7명이 시장 활동에 따라 여성 지위가 상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밖에도, 과거 세대주인 남편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던 배급제가 작동하지 않자 자연스럽게 남편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평가도 있었다.¹⁵ 심지어, 최근에는 젊은 여성 사이에 ‘결혼등록’(혼인신고)을 회피하려 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결혼 전에는 가정에서 차별을 받고, 결혼 후에는 생계에 내몰리게 되면서, 법적 책임 없이 쉽게 헤어지기 위해 결혼등록 없이 동거만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어머니 세대에서는 결혼등록을 했고 한 번 결혼하면 그 배우자가 폭행을 해도 참았는데, 저희 세대(1995년생)에서는 결혼해도 결혼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살다가 폭행을 당하거나 하면 바로 가출하거나, 서로 싫어지면 갈라서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서는 이혼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¹⁶

¹⁵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2024. 221쪽 참고.

¹⁶ KUUDW41200

(2) 사회에서의 여성 차별

북한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여성은 ‘결혼을 하면 실적을 잘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적이 좋더라도 기회를 얻기 힘들었다. 한 여성 증언자는 대학에서 공부를 잘 한다고 해도 여성은 석·박사과정을 준비하는 수재반(秀才班)에 편성해주지 않았다면서 교육에서의 분명한 차별이 존재했다고 했다.¹⁷ 국비유학생 선발 시에도 여성은 변절하기 쉽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남성만을 선발 대상으로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러시아 대학에서는 매년 북한에서 일정 인원을 국가장학생으로 추천받아 입학시켰습니다. 북한에서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면 별도의 시험에 응시할 필요 없이 러시아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재혼을 했으면 그 자녀들이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가 범죄 경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남학생만 선발했습니다. 여자들은 유혹에 약하고 빨리 변절한다는 이유였습니다.”¹⁸

사회에 진출해서도 여성에 대한 무시와 차별은 계속됐다. 다수 증언을 통해 여성의 입당이나 승진이 남성에게 비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⁹ 직장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하는 일은 구분되어 있었다. 언제나 남성이 여성에게 우선시 되었으며, 남성의 일이 여성의 일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한 증언자는 북한의 뿌리 깊은 남녀차별 풍조에 대해, 북한 사회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50%’라고 생각할 만큼, 여성 차별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고 회고했다.²⁰

¹⁷ DDL5221833

¹⁸ KJ7IFB2239

¹⁹ OWTG6L2284, 8B5CA02248, K4HHNQ2264, 2G5GFH2345, JSEFPE2271, YNZ1CJ2226, 5OR5F62241, JQYD690967, S02DOL2356

²⁰ OWTG6L2284

나. 여성에 대한 폭력

(1) 가정사로 치부되는 가정폭력

북한 여성들은 가정폭력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북한 「여성권리 보장법」 제37조는 여성 인신의 불가침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6조는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행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 북한 「형법」도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없었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북한 사회의 인식은 보편적이지 못했다.

북한 사회에서 통상 가정폭력은 당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닌,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정도로 여겨진다.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원들도 대부분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가정폭력 원인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돌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증언자들은 이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대개의 경우 신고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다.²³ 오히려, 다수 증언자들은 가정폭력을 신고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인식했으며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진술했다.²⁴

“남편은 매일 같이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기만 하면 저를 때렸습니다. 집에서건 술을 먹고 돌아오는 마을 어디에서건 맞았습니다. 거의 매일 욕을 듣고 맞았는데 손으로 양 뺨을 때리기도 하였고 발로 제 배를 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망치, 도끼, 칼 등을 저를 향해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신고해도) 북한에서는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²⁵

²¹ 「여성권리보장법」(2015) 제37조 (인신의 불가침권) 여성은 인신의 불가침권을 가진다. 비법적으로 여성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 폭력 또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여성의 신체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 여성의 몸을 수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6조 (가정폭행의 금지) 가정에서는 여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폭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정폭행을 막기 위한 주민들과 종업원 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관할지역 또는 자기 소속 공민들의 가정에서 가정폭행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²² 「형법」(2022) 제296조 (학대갈시죄) 자기의 부양, 보호 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갈시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학대갈시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²³ 1NR82V2366, F4JAJX0874, 00RIT62460, ROD6PD2469, 8IUFRLL2452

²⁴ JUZ0TT2380, V6PE6V2232, 3L87MF2247, V6PE6V2232, ROD6PD2463, 1BQ5TD2424, DFFYXV2475

²⁵ ROD6PD2463

실사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당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여성 차별적인 관습과 관행 속에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았다.²⁶ 증언자들은 가정폭력과 가정불화의 원인을 여성에게 두는 사회의 왜곡된 인식에 따라, 피해 여성이 신고하는 경우 오히려 나쁜 여자라고 욕을 먹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했다.²⁷ 북한 당국도 가정폭력 문제에 관여하려 하지 않았다. 당국의 무관심 속에 여성들은 신고를 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결국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지속적인 폭력 속에 살아가야 했다. 한 증언자는 가정폭력의 법적 해결을 요청했으나, 사회안전원은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며, 처벌규정이 없어 사회안전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돌려보냈다고 했다.

“2014년 봄에 양강도 대흥단군 보안서 소속 분주소에 찾아가 한 번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때리니까 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범죄가 아니다. 그런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집안일이다. 집안에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북한에는 남자가 여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집이 많았습니다. 70~8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법에서 처리해주지 않으니 매일 여자들이 맞고 사는 것입니다. 보안원이 신고 건을 처리해 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막아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²⁸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한 여성 증언자는 담당 판사에게 뇌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다가 뇌물을 약속하자 바로 재판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²⁹ 또 다른 증언자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판사가 가정폭력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혼을 불허했고 14년 동안 네 번의 재판을 받은 끝에 겨우 이

²⁶ FG7EKF2277, 7YYWMA1442, JQYD690967, 737SCW2354, 100S8G2205, MPTG4U1080, 98PTYH1032

²⁷ 1NR82V2442, 98PTYH1032

²⁸ OR9IR41359

²⁹ M4IWA31544

혼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남편이 가정폭력이 심하여 재판소에 이혼신청을 하였는데, 약 14년 만에 네 번의 재판 끝에 겨우 이혼하였습니다. 남편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때리는 버릇이 있어 아이가 세 살 때부터 이혼을 하고자 하였는데, 판사는 재판을 할 때 남편에게 때리지 말라는 교양만 할 뿐 때리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혼을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신청하면 판사가 계속 이혼을 불허하여 계속 재신청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혼재판에서는 재판의 마지막에 판사가 저에게 남편의 손을 잡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오면 이혼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손을 잡고 운동장을 한 바퀴 뛰고 왔더니 손을 잡은 것은 정이 남아 있는 것이라며 이혼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재판에서는 남편의 가정폭력뿐 아니라 일을 하지도 않고 8.3조로 이름만 걸어놓고 그 수익금마저도 제가 매월 23만 원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혔고, 이 남자와 더 이상 살면 살 인사건이 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편도 그 당시에는 저희 언니가 탈북하여 남한에 갔다는 것을 알고 자기한테 해가 될까봐 이혼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된 것입니다.”³⁰

(2)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당국의 방관

여성을 낮추어 보는 북한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서도 드러났다. 북한에서 성폭력 문제는 당국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문제로 간주된다. 가정과 학교, 군대, 돌격대, 구급시설 등에서 성폭력이 종종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북한 사회의 문제의식은 매우 낮았다. 상급자의 위력·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많았는데, 대다수 피해자들은 추후에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³¹ 북한 당국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했고, 피해자의 신고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증언자들은 당국에서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었다고 했다.³²

³⁰ 28RB350984

³¹ 3E7GSG2222, 9PGAKS1560

³² 51IH842267, 1CHLPG2211, 93VI9U2478, EX9Y9O1501

특히, 가정 내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더욱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사촌오빠의 성폭행에 의한 임신으로 낙태수술까지 받았고, 그 사실을 가족 모두가 알게 되었으나 가정사라는 생각 때문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³³ 또한,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3~4번 낙태수술을 했던 증언자의 경우에도 주변인들까지 그 사실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었지만, 망신스럽다는 생각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³⁴

교육기관 내 성폭력 사례들도 수집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교사들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미성년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자행했다는 사례들이 수집됐다.³⁵ 한 증언자는 조카가 고등중학교 담임교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교육기관에 신고했으나, 좋은 배경을 가진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심지어 계속 교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2010년 여름경 함경북도 ○○시 □□고등중학교에서 여자 조카가 담임선생으로부터 학교 건물 내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학교 학생들 몇몇이 보았다고 들었고,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시(市) 교육과에도 신고를 하고 교장선생에게도 신고 했습니다. 시당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그렇게 제기를 하였음에도 담임선생은 집안이 좋았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시 양어장 지배인을 하였고 돈이 아주 많은 집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선생질을 하고 있고, 지금 장가까지 가서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니 억장이 무너집니다.”³⁶

주민들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해야 할 기관원이 오히려 성폭력을 가했다는 사례도 수집됐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 증언을 통해 보안원, 보위지도원, 군인 등이 지위나 권력 등을

33 IJ05SG1229

34 QWUYZ01376

35 UY20Y52324

36 TYUZ9N1484

내세워 성폭력을 가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⁷

군대나 직장 등에서는 남성 상관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록센터 조사 결과, 직장 내에서 간부나 상사로부터 입당, 승진 등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받는 경우가 흔치 않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⁸ 한 증언자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한 적이 있는데 완강히 거부하자 다음날 본인의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힘든 일을 하는 자리에 배정된 경험이 있다고 했다.³⁹

특히, 계급에 의한 위계질서가 보다 확고한 군대 내에서는 상급자 또는 동료 군인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자들은 본인에게 노동당 입당 등 각종 이권을 제공할 수 권한이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내세우며, 성폭력을 행사했다.⁴⁰ 상습적으로 여군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군대 내 성폭력 사례들이 수집됐다.⁴¹ 피해를 당한 여군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우려하여 대부분 성폭력을 당하고도 묵인했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나 가해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불명예제대를 당했다는 사례가 있었다.⁴²

“남성 상관에 의한 여군 성폭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간부 20여명이 노동당 입당 등 각종 이권들을 악용해서 여군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여군들이 거부하면 어렵고 고된 일을 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간부들의 성적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면 오히려 본인에게 피해가 올라봐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부들에 대한 처벌은 없었습니다.”⁴³

³⁷ 83CXAX1083, 9PGAKS1560, KCKTLI1818, 532FU10603

³⁸ N36KGZ0461, D6BHUW0483, XFGY150364

³⁹ 93VI9U2478

⁴⁰ VH2HH40535, 93VI9U2478, QWVNRL2135

⁴¹ XFGY150364

⁴² XFGY150364, G0XM331458

⁴³ D6BHUW0483

집단적 노력동원 조직인 '돌격대'⁴⁴ 내에서의 성폭행 사례들도 다수 수집됐다.⁴⁵ 한 증언자는 평양시에서 돌격대 소대장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게 되었고, 사단장이 이를 인지하고 낙태를 종용하기도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고 진술했다.⁴⁶ 역시 돌격대에서 정치지도원에게 성추행 당한 다른 증언자는 이를 책임자인 대대장에게 신고했지만 대대장은 오히려 '남자라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며 피해자에게 이해를 구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성폭력 가해자인 정치지도원은 이후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⁴⁷ 이 밖에도 동료 돌격대원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신고를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돌격대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다.⁴⁸

수감시설 내에서 관리자에 의한 수감자 성폭행과 성추행이 있었다는 다수의 증언들이 있었다. 여성 수감자들은 제한된 공간 속, 보다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남성 관리자들의 성폭력에 저항하기 어려웠다. (‘IV-4. 피구금자의 권리’ 참고)

다. 또 다른 사각지대, 모성 보호

북한 당국은 임신부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 보조금 지급 등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선전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법」을 통해서도 여성들에게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고, 임신하거나 수유할 영아가 있는 경우 야간 노동을 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⁴⁹ 그러나 모성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와 달리, 실제 북한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⁴⁴ '돌격대'는 주로 건설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조직된 단위로 '청년돌격대'와 '속도전청년돌격대' 등이 있다. 건설이나 각종 사업 수행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22. 257쪽 참고)

⁴⁵ DGAE7C0806, LIQM962136, LY12FA1162, VIA6CK0491, STODKE1129, GX2JHS0682

⁴⁶ IER57V1598

⁴⁷ 1BQ5TD2458

⁴⁸ ROD6PD2360

⁴⁹ 「사회주의노동법」(2015) 제59조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의 노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여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젖먹이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노동을 시킬 수 없다.

(1) 실효성 없는 임신부 지원 제도

북한은 임신부에 대한 무상의료 제공을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북한 여성의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당국의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여성권리보장법」⁵⁰과 「인민보건법」⁵¹은 출산을 위한 무상의료혜택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산전 검진은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하는 초음파 검진 정도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⁵²

출산 과정에서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이나, 북한의 가정 출산 비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년경 양강도 김형직군에서는 가정집에서 출산하던 산모가 출산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⁵³

병원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경우에도 법령과 달리 실질적인 무상의료제도의 혜택은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경 함경북도 청진시 소재 함경북도산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증언자는 입원 및 출산 비용은 무상이었으나, 조산원에게 감사 인사의 의미로 30위안을 주었다고 했다.⁵⁴ 2018년 양강도 대흥단군에서 출산한 다른 증언자는 진료소 조산원을 집으로 불러와 출산 시 도움을 받았고, 사례비로 북한 돈 30,000원을 주었다고 했다.⁵⁵

⁵⁰ 「여성권리보장법」(2015) 제51조 (임산부에 대한 보호) 여성이 해산을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과 치료기술을 제공하여 여성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임신기의 여성건강보호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

⁵¹ 「인민보건법」(2012) 제10조 (무상치료의 내용) 무료의료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해산방조는 무료이다.

⁵² RUIF6F2209, 02GG8N2268, 5QJ9CE0679, 8IUFRL2452, DFFYXV2475

⁵³ 1CHLPG2211

⁵⁴ 5QJ9CE0679

⁵⁵ TFYVMI0711

“2015년경 임신 중 호담당당사에게 간단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초음파 검사는 유료로 받아 보았습니다. 2016년 ○○도 산원에서 출산했습니다. 저는 자연분만을 했는데, 중국 돈으로 30위안을 주었습니다. 제왕절개는 150~200위안 정도 됩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무상의료이기 때문에 병원에 납부해야 하는 돈은 없습니다. 개별적인 인사의 의미로 조산원에게 30위안을 준 것입니다.”⁵⁶

(2) 법으로만 존재하는 산전·산후 보호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휴가도 법령으로만 존재했을 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경 함경남도 함흥시의 기계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했던 여성 증언자는 임신 9개월경 몸이 좋지 않았으나 휴가를 낼 수 없어 만삭의 몸으로 근무하던 도중 쓰러져 유산이 되었다고 했다.⁵⁷ 2008년경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농장원으로 일했던 다른 증언자도 임신 중 일을 하다가 쓰러져 결국 뱃속의 아이를 잃었다고 했다. 유산 당시 임신 5개월 차로 몸이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산전·산후 휴가는 출산 직전 막달에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⁵⁸

북한에서는 지속적인 법·제도 정비를 통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보조금 지급 등 실제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0년 「노동보호법」이 채택되면서 임산부는 출산휴가, 정기 및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15년 개정된 「사회주의노동법」과 「여성권리보장법」에 따라 기존의 산전 60일, 산후 90일이었던 휴가기간을 산전 60일, 산후 180일로 연장했다.⁵⁹ 또한, 2021년 새로 제정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서는 산전·산후 휴가기간 동안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산전·산후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록센터 조사결과,

⁵⁶ 5QJ9CE0679

⁵⁷ YE9TXG0391

⁵⁸ HJ981F1307

⁵⁹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으로서 2016년 제출한 제2·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서는 이 법을 채택함으로써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고 자평하였다.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30)

산전·산후 휴가를 받았다는 일부 사례가 있었으나⁶⁰, 산전·산후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증언은 전혀 수집되지 않았다.

표 VI - 2 임신한 여성 근로자 권리 확대 관련 북한의 법·제도

법령	조항	주요 내용	비고
「노동보호법」 (2021)	제40조	· (휴가의 보장)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정기휴가와 보충휴가 외에 산전산후휴가를 더 준다.	
「사회주의 노동법」 (2015)	제66조	· 여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연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180일 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	· 산후휴가기간 기존 90일 → 180일로 연장
「여성권리 보장법」 (2015)	제33조	·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국가적으로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정기 및 보충휴가 외에 근속연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180일 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준다.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여성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2021)	제19조	· (산전산후보조금) 산전산후휴가를 받은 여성근로자의 휴가기간에는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산전산후보조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최근 법 제정 (2021.3.)

I. 북한인권 증진 정책·노력

II. 관심어수

III. 특별사안

IV. 시민적·정치적 권리

V.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VI. 취약계층

60 ICHLPG2211

2. 아동

아동⁶¹ 인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은 1924년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의 필요성에 대해 규정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1959년 유엔이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89년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와 아동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됐다. 1990년 동 협약 발효로 아동은 성인의 보호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한편,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도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⁶²

표 VI - 3 「아동권리협약」과 아동

「아동권리협약」		아동 (관련 목차)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공통 아동
제19조	제1항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아동에 대한 폭력
	제2항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 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화·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항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라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처우
	제2항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제1항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다 아동 노동

61 북한에서의 아동에 대한 기준(16세 이하)은 국제적 기준(18세 미만)과 다르다. 북한에서는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점부터 성인으로 간주하여 17세인 자는 아동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보호와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보호를 위해 북한 당국에 「아동권리보장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62 「자유권규약」 제24조 제1항, 「사회권규약」 제10조 제3항

「아동권리협약」			아동 (관련 목차)
제32조	제2항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b)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c)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 수단의 규정	다 아동 노동
	제37조	(a)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b)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c)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가 아동에 대한 형사사법
제40조	제1항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북한은 1990년 9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고, 1996년 아동권리위원회에 제1차 이행보고서를 시작으로 2016년 제5차 이행보고서까지 제출했다. 2010년 「아동권리보장법」, 2011년 「보통교육법」을 제정했고,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에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를 발표(2017년 전면 시행)했다. 이후 옥류아동병원 설립(2013년)을 비롯한 보건의료시설 확충, 무연고 아동 보호·교육기관⁶³ 등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섰으며, 2014년에는 「아동권리협약」 부속조약인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2000년 제정)를 비준하기도 했다.

⁶³ 북한은 「아동권리보장법」(2014)을 통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을 육아원, 애육원, 학원(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국가 부담으로 양육할 것을 정하고 있다. (표 VI-4 북한의 고아 보육·교육 체계 참고)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의 이면에는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취약한 북한 아동의 인권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은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인권을 중시하며,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제도·환경 개선 등 여러 성과들을 대내외에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동에 대한 폭력, 강제노동, 성적 착취 등 아동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북한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 - 3 북한의 어린이들



* (자료출처) Unicef, UN, 조선중앙통신

가. 아동에 대한 형사사법

국제인권규범과 북한 법령은 모두 형사 및 사법 분야에서의 아동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제37조와 제40조에서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 이른바 ‘법에 저촉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도 「아동권리보장법」 제7조에서 아동이 특별한 사법 보호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에서 아동범죄 사건을 취급하고 처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⁶⁴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동에 대한 사형과 체포·구금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탈북 후 복송된 아동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들도 지속되고 있었다.

⁶⁴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7조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원칙) 아동은 사법분야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아동과 관련한 사건을 취급처리하는 데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다.
제47조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의 권리요구) 법기관은 아동범죄를 취급하는 경우 사건취급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에게 차려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형 집행

아동에 대한 사형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북한에서는 최근까지도 살인, 국가재산 횡령 등의 죄를 이유로 아동들을 공개처형하고 있었다. 「아동권리협약」 제37조(a)는 아동에 대한 사형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 「형법」 제37조에서도 범죄 당시 18세 미만의 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⁵ 또한,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제48조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고, 14세 이상 아동에 대하여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동이 공개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고 공개처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10대 학생들의 공개처형 장면을 목격 및 득문했다는 다수의 증언들이 수집됐다. 사형 선고 사유는 살인, 국가재산 횡령, 남한 영상물 시청 및 성폭행, 남한 영상물 시청 및 마약 사용, 미신 등이었으며, 사형 선고 당시의 나이는 보통 16세~17세였다.⁶⁶ 공개처형할 때는 먼저 죄명을 발표하고 총살로 처형을 집행했다.⁶⁷ 북한 당국은 학생들의 공개처형 소식을 주변 학교 교양회나 학습회를 통해 재차 언급하면서, 인근 학교 학생들의 교양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2014년경 고급중학교 6학년 때, 대동강 건너 통일거리 쪽에 있는 다른 고급중학교에서 비사회주의 현상(동급생 간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강하게 처벌되었는데 5명 중 주동자 2~3명은 총살되었고 나머지는 교화소에 갔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의 책임지도원 선생님들이 교양회나 학습회 때 학생들을 모아놓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이런 상황으로 처벌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⁶⁸

⁶⁵ 「형법」(2022) 제37조 (사형)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 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⁶⁶ APV7AZ1435, 8GW6CX1527, QJDVQ11492, 7841ZM1314, UBWCTO2335, KYS94N0794, 8IUFRLL2462, 5VRQH72482

⁶⁷ QJDVQ11492, 7841ZM1314, 8IUFRLL2462

⁶⁸ 5VRQH72482

이와 같은, 아동 대상 공개처형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례로는 2021년 평안남도 개천시에서 고급중학교 학생 다섯 명이 비밀리에 처형된 사건이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방문 수업하던 여교사를 남학생들이 성폭행한 사건으로, 학생들은 모두 처형되었다고 한다.⁶⁹

(2) 체포·구금

아동에 대한 체포와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하나, 북한 당국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아동권리협약」 제37조 제(b)호는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이 법률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 기간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유박탈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차 정기 보고서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조사는 해당 아동의 자택이나 관할 재판소에서 부모의 입회 아래 진행되기 때문에 보고 대상 기간(2008~2015년) 동안 아동을 구금하거나 감금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⁷⁰ 그러나 다수 증언을 통해 17세 미만 아동들이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대 학생들이 불순녹화물 소지 및 유포를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체포 과정이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했다. 다수 증언자들은 미성년자 체포·구금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이 자행되었다고 진술했다.⁷¹ 한 증언자는 체포 당시 16세에 불과했으나, 이후 조사와 예심, 재판까지 받았다고 했다.⁷² 15세에 체포되어 구금조사를 받고, 노동단련형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뇌물을 주고 석방되었다는 증언도 있었다.⁷³ 한편, ‘꽃제비’(노숙 아동)라는 이유로 구금시설에 억류된 사례도 있었다.⁷⁴

⁶⁹ UBWCTO2335

⁷⁰ UN Doc. CRC/C/PRK/5 (2016), para. 235.

⁷¹ DBZIQP2152, 2MMON11280, WB7W7J0084, NC68X61563

⁷² NC68X61563

⁷³ 2MMON11280

⁷⁴ JV3LT02350

“2000년 초겨울 경, 15살 때 제강소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 동(銅)을 가지고 나오다가 정문 초소에서 단속되어 노동교양대에 구금되었습니다. 교양대에서는 1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미성년자들도 교양대에 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양대에는 저처럼 제강소 물품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다가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⁷⁵

(3) 구금 아동에 대한 특별조치

아동의 미성숙한 상황을 고려하여 구금할 경우에는 성인과 분리하고 별도 처우를 해야 함에도, 북한에서는 아동의 분리수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아동권리협약」은 제 37조(c)에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 수용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가족과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규정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북한 법령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15세 이상의 아동이 구금될 경우에는 성인과 함께 수용되며, 성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 다수 증언자들은 구금 당시 아직 아동의 신분이었지만 성인과 함께 수용되어 고정 자세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⁷⁶

“열다섯 살 때 ○○도 보위부에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성인들과 함께 같은 호실에 구금되어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보통 20분 정도 조사받았는데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고정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점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움직이면 안 되고, 서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대소변을 볼 때에도 계호원의 허락을 받아 가야합니다. 조사 등을 위해 구류장 밖을 나갈 때는 손을 내밀면 계호원이 족쇄를 채우고 기어서 구류장 문을 엉덩이부터 뒤로 나간 뒤 고개를 숙인 채로 다녀야 했습니다. 구류장 내 규율을 어기면 계호원이 규율을 어긴 수감자를 폭행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배려나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⁷⁷

⁷⁵ JUZ0TT2362

⁷⁶ U61S652293, YHD82U0495

⁷⁷ YHD82U0495

반면, 14세 이하의 아동들의 경우에는 성인들과 분리 구금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증언자는 2017년경 중국에서 함께 강제송환되었던 14세, 12세 학생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인 피구금자들과 분리되어 구류장 내 주방창고에 구금되었다고 했다. 그 안에서 학생들은 고정 자세 없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⁷⁸

(4) 강제송환 아동에 대한 처우 및 처벌

탈북 후 강제로 복송된 아동들은 소위 ‘비법월경죄’(국경비법출입죄)라는 죄명으로, 대부분 성인들과 함께 구금되었으며 자궁검사, 강제낙태 등에서도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다. 북한은 「아동권리보장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통해 아동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회적 교양처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교양에 대한 책임은 부모, 기관, 단체 또는 거주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⁹ 그러나 북한에서는 탈북 후 강제송환된 미성년자들에게 성인과 같은 처우를 적용했으며, 실형을 선고했다는 여러 증언들이 있었다.⁸⁰

북한 당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인들과 동일한 검사와 처벌을 실시했다. 강제복송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인들과 동일하게 자궁검사를 실시했다는 다수의 증언들이 수집됐다.⁸¹

“(2001년 복송되어 보위부 입소과정에서) 알몸검사를 받았는데, 유난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략) 10세, 12세, 14세 정도의 미성년자들도 성인들과 똑같이 자궁검사를 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친모와 함께 있었는데, 친모가 생리도 아직 안한 아이라며 사정을 이야기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세와 12세의 미성년자들이 자궁검사를 받고 나서 자궁에서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⁸²

⁷⁸ YHD82U0495

⁷⁹ 「형사소송법」(2021) 제117조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양의 담당자)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양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거주하고 있는 리(읍, 구, 동)에서 책임진다. 미성인에 대하여서는 그의 부모도 책임진다.

⁸⁰ DN9W3F1192, LQ3SRX0399, YHD82U0495

⁸¹ PQ59JJ2344, ZLWSCX0696, KCKVGM1446, 5LE9WC1483, KM9SKS0766, J7TMW81434, COPUQB0931

⁸² WHUL950750

또한, 미성년자들을 성인과 격리하여 수감하지도 않았다. 한 증언자는 탈북 후 송환 되어 보안서 집결소에 구금되었는데, 부모 없이 탈북했다가 송환된 15세(남), 11세(남), 7세(여)의 삼남매도 성인들과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⁸³ 보안서 지도원 등 기관원으로부터 14세 이상은 성인으로 취급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자도 있었다.

“2016년 12월경 탈북했던 여동생이 복송되어 구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여 동생의 나이는 15세였습니다. 여동생은 복송된 이후 ‘비법국경출입죄’를 이유로 노동교화형 1년 4개월을 받았습니다. 14세 미만의 경우 아동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지만, 그 이상은 교화 형도 가능합니다. 북한에서 14세 이상은 성인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양강도 ○○군 보안서 감 찰과 지도원 등이 이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⁸⁴

드문 경우였지만, 복송된 미성년자에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교양처분을 내렸다는 증언도 있었다. 수차례 강제복송된 경험이 있는 증언자는 미성년자(16세)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여 927구호소로 이송되거나, 교양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했다고 했다. 당시에는 고 난의 행군 시기로 복송자가 매우 많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했다.⁸⁵ 또 다른 증언자는 12세(2003년)와 14세(2005년) 때 각각 복송을 당한 경험이 있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풀려났다고 증언 했다.⁸⁶

이 밖에도, 형사처벌 받은 미성년자 수용시설인 ‘소년교양소’⁸⁷ 관련 다수 증언들이 수 집됐다. 한 증언자는 2006년경 농촌동원 불참으로 소년교양소에서 하루 노동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복송된 것으로 보이는 아동들이 노동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⁸⁸ 2013년경 북

⁸³ DFFYXV2365

⁸⁴ HKT6IU1075

⁸⁵ JV3LT02350

⁸⁶ JUZ0TT2446

⁸⁷ 2000년대 이후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소년교양소’는 노동단련형 이상을 선고 받은 아동 대상의 형 집행시설 또는 미결 아동의 임시 수감시설로 추정된다.

⁸⁸ 93VI9U2368

송된 12세 아동이 소년교양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증언도 있었다.⁸⁹ 다른 증언자는 2019년에는 불법녹화물 시청을 이유로 고급중학교 학생 여섯 명을 공개재판 후 처벌했는데, 주모자는 교화형 2년을 선고 받고 소년교양소 수감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⁹⁰ 다만, 소년교양소 내 수감 아동에 대한 처우에 대한 진술은 수집되지 않았다.

나. 아동에 대한 폭력

북한 사회에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으나,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려 하지 않았다. 「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아동은 부모 등 양육자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학대, 구금시설 내에서의 폭행 및 잔혹 행위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동 협약 제34조에 따라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性的)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구금시설에서는 물론이고 북한의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은 비밀비재했다.

(1) 가정에서의 폭력

북한은 법령을 통해 가정폭력을 금지하며, 처벌 조항도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정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은 집안 문제라는 인식이 강했고, 북한의 법과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은 제43조에서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며,⁹¹ 북한 「형법」은 ‘어린이 보호·관리태만죄’(제294조)와 ‘학대팔시죄’(제296조)를 규정하여 보호자의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하고 있다.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동에게 훈육을 넘어선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정폭력이 발생하여도 신고하거나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⁸⁹ VMOXYL1543

⁹⁰ NNOCB1888

⁹¹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43조 (가정에서 처벌금지) 가정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 무관심, 욕설, 추궁, 구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⁹² 「형법」(2022) 제294조 (어린이보호, 관리태만죄) 어린이보호, 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어린이보호, 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6조 (학대팔시죄) 자기의 부양, 보호 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팔시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학대팔시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북한 당국의 개입과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폭력은 신고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아동 시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지만, 아동에 대한 폭력 행사를 부모의 훈육으로 보는 북한 내 인식 때문에 이를 범죄로 보고 신고하거나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⁹³ 한 여성 증언자는 술에 취한 아버지가 머리채를 손에 감아쥐고 벽에 머리를 박은 채, 각목이 부러질 때까지 온몸을 때렸다고 했다. 이런 식의 폭행이 수차례 있었고, 인민반장과 마을주민들도 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담당 안전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⁹⁴ 가정폭력은 신고하더라도 당국이 처벌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신고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등 당국의 대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었다.⁹⁵ 이 밖에도, 가해자가 부모였기 때문에 차마 신고할 수 없었던 증언도 있었다.⁹⁶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폭력적 성향이 있기는 했으나, 2005년경부터 심해지셨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매일 술을 드시고 오면 어머니와 항상 싸우셨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던졌습니다. 싸움을 말리러 나섰다가 아버지가 저를 밀쳐서 내동댕이쳐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정 분위기 자체가 심리적인 가정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저도 신고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⁹⁷

(2) 교육기관 등에서의 폭력

교사의 폭언이나 폭행은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아동에게 체벌 이상의 폭력을 가한 학교 교사를 신고해도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제26조는 교사가 아동의 인격을 무시·차별하거나, 욕설, 추궁, 모욕, 구타하는 것을

⁹³ 1BQ5TD2424, XWLLIS2413, QOP5852319

⁹⁴ 9BHNXT1391

⁹⁵ JUZ0TT2435, WJ6Z931020

⁹⁶ 8WHPWX2410

⁹⁷ 1BQ5TD2424

금지하고 있다.⁹⁸ 그러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여러 이유로 교사가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 등 학대를 가한 사례들이 있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수업 진행 및 각종 과업 이행을 내세워 아동을 강하게 체벌한 것으로 보인다.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경제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거나, 노력동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가했다는 다수 증언이 수집됐다.⁹⁹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칠판 지휘봉으로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렸다는 진술도 있었는데, 체벌을 너무 많이 하여 한 달에 지휘봉 4~5개가 부러질 정도였다고 한다.¹⁰⁰

“북한에서는 교사의 체벌이 전반적으로 심한 편입니다. 저는 2015년 경 초급중학교 재학 당시에 여자 교사로부터 심하게 체벌을 받았습니다. 교실에서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지시봉으로 종아리를 마구 때려서 지시봉이 꺾어지고 여섯 군데 정도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은 처음이었으며 꺾어진 지시봉도 변상했습니다.”¹⁰¹

초등학교·중등학교 등 무연고 아동 보호·교육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교사의 폭행이 존재했다. 증언자들은 노력동원을 나간 학생들이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거나, 학원 내 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 또는 선생님의 비위를 거스르거나, 도둑질을 했다는 등의 사유로 교사들이 아동을 심하게 때렸다고 했다.¹⁰²

하지만,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에 대하여 학부모가 항의를 해도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증언자들은 북한에서는 학교폭력으로 교사가 처벌 받는 일은 없다고 진술했다.¹⁰³ 오히려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교사가 보복성 처벌을 하는

⁹⁸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26조 (아동의 인격존중) 아동교육일군은 언제나 아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욕설, 추궁, 모욕, 구타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⁹⁹ O1516J2346, 8WHPWX2397, DBZIQP2152, SOKAIT1086, 6DCJY01788, 1NR82V2465

¹⁰⁰ 8QERTC2443

¹⁰¹ DFM95V2357

¹⁰² BNPVOT1347, 00IAFO1948, W20YSG0557

¹⁰³ JSEFPE2271, BERYD80822, 1NR82V2465

경우도 있었다.¹⁰⁴ 2019년까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한 증언자는 학부모들이 항의를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으며, 교사에 대한 별도의 조치나 학교 차원의 징계 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소학교 때부터 고급중학교 2학년, 학교를 중퇴할 때(2019년)까지 여러 차례 체벌을 받았습니다. 담임선생이 ‘교시봉’이나 각목으로 학생들을 때렸습니다. ‘숙제를 안 했다.’, ‘학교에 출석을 안 했다.’,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싸대기, 머리 때리기 등 손찌검도 많았습니다. 체벌에 대해 학부모들이 담임선생에게 항의를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체벌은 범죄가 아니라 훈계로써 생각하고 아이들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전학을 가서 모두 네 곳의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체벌 금지 관련 조치는 없었습니다.”¹⁰⁵

한편, 최근에는 학교에서의 폭력이 일부 개선되었다는 몇몇 증언들이 있었다. 학교 내 체벌 문제에 대해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고소하거나, 담임교사를 찾아와 항의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학교 내 체벌도 감소했다는 사례가 수집됐다.¹⁰⁶ 한 증언자는 초급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8년경 교사에게 종아리를 맞아 멍이 심하게 들었는데, 아버지가 선생님을 찾아가 항의하자 그 이후에는 선생님이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¹⁰⁷ 2017년경 무연고 아동 보호·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교원을 징계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9년까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초등학교는 국가에서 고아들을 돌봐주는 곳으로 8살부터 12살까지 들어와서 소학교 과정을 배우면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2017년경 시설 여성 교양원 □□□이 혐의로 3학년 남학생(당시 10살)의 등과 허리를 때렸습니다. 교무부장이 학생을 추궁해서 교양원이 뭘 시켰는데 늦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때린 것을 밝혀냈습니다. 초등학교 원장 선생님이 교양원을 초등학교 비관무대에 세워서 사람들이 세계 비판했습니다. 교양원은 이 사건 이후로 3개월 동안 정직을 당했습니다.”¹⁰⁸

¹⁰⁴ 00RIT62429

¹⁰⁵ DBZIQP2152

¹⁰⁶ P4ILM91470

¹⁰⁷ 2YUED91276

¹⁰⁸ BNPVOT1347

(3) 구금시설에서의 폭력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북한 「아동 권리보장법」이 사법기관은 아동 범죄 처리 과정에서 아동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배치된다.¹⁰⁹

구금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은 조사 및 구금 과정에서 관계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기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다수의 사례가 수집됐다. 보위부 구류장 수감 경험이 있는 증언자는 열다섯 살이었던 2017년경 복송되어 수감되었는데, 성인들과 함께 ‘고정 자세’(일과 중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를 강요받았다고 했다. 또한, 수감 기간 동안 계호원으로부터 구둑발로 수차례 폭행당했고, 대소변까지도 제한받았다고 증언했다.¹¹⁰ 남한 드라마·노래 관련 파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보안서 구류장에 구금되었던 증언자는 법적 미성년자 신분이었음에도 수감되어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불순녹화물 소지 혐의로 2019년 4~6월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생일(7월)이 지나야 성년(만17세)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저를 성인과 같이 취급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류장에서는 계호원들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계호원들은 ‘고정 자세’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때리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때리기도 했습니다. 폭행 방법도 여러 가지였는데, 철창 가까이 오도록 해서 폭행하기도 했지만, 손을 철창살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는 가죽 띠 같은 것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¹¹¹

(4) 성(性) 착취·학대

북한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 착취 및 성적 학대가 종종 발생했으나, 그에 대한 당국의 대처는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 성 착취의 가해자는 주로 교육기관의 교사

¹⁰⁹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51조 (사건취급처리에서 아동의 인격존중) 법기관은 아동범죄를 취급처리하는 과정에 아동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강제적 방법으로 아동에게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¹¹⁰ YHD82U0495

¹¹¹ BNPVOT1347

였으며,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오래지않아 교육현장에 복귀하기도 했다. 한 증언자는 무연고 아동 보호·교육기관인 중등학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중등학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하다가 발각되었고, 사건의 가해자는 ‘혁명화’를 가게 되었는데,¹¹² 가해자는 혁명화를 간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담임교사로 복귀했다고 한다.¹¹³

만 18세 미만 아동의 성매매를 목격했거나 득문했다는 사례들도 다수 수집됐다. 함경북도 출신의 한 증언자는 역전에 가면 성을 팔기 위한 미성년자들이 많았으며 북한 당국이 성 매수자뿐만 아니라 성매매 아동까지 모두 처벌했다고 진술했다.¹¹⁴ 최근에는 무직·결혼 여부 등 비사회주의 현상을 담당하는 ‘82연합상무’에서 아동 성매매를 단속하는데, 적발되더라도 뇌물을 주거나, 상무에게 성적 접대를 하면 무마해준다는 증언도 있었다.¹¹⁵ 다른 증언자도 중학교 재학 당시 동급생 친구 두 명이 양강도 혜산시 위연역 앞에서 소위 ‘밤꽃’¹¹⁶이라 불리는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에는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는 않았으며, ‘밤꽃’을 한 두 친구 모두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워 학교도 거의 다니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다고 했다.¹¹⁷

“역전 주변이나 주차장 주변에는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중학교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들도 화장을 변변하게 하고 주변을 서성거리면 남자들이 슬쩍 와서 돈을 주고 성을 산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은 ‘82연합상무’가 하는데 단속이 되더라도 뇌물을 고이면 가지 않거나 상무에게 몸을 팔면 눈을 감아준다고 들었습니다.”¹¹⁸

112 ‘혁명화’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징벌을 통칭하는 북한말이다. 보통 조직·직장 내에서 과오를 저지른 경우 ‘혁명화’를 거쳐 과오를 씻는다는 의미로 사용하며, 농촌·탄광 등지에 배치되어 생활하며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을 하는 징계의 일종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한·영 북한인권용어집』, 2016. 191쪽 참고)

113 00IAFO1948

114 DFFYXV2451

115 TEIEJA2400

116 ‘밤꽃’은 ‘밤에 꽃을 파는 여자’라는 뜻으로, 성매매 여성을 의미한다.

117 93VI9U2478

118 TEIEJA2400

또한, 탈북 과정에서 다수의 10대 여성들이 인신매매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방지 노력은 없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중국으로 가고자 했으나, ‘브로커’(중개인)에게 속아서 중국인에게 인신매매되어 매매혼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¹¹⁹ 보통 14세~16세의 나이의 소녀들을 18세로 속여 인신매매를 한 사례가 많았다.¹²⁰ 탈북 당시 13세의 나이로 한쪽에게 팔려가 매매혼을 당했다는 증언도 있었는데, 이때에도 브로커가 나이를 18세로 올려서 한쪽에게 팔았다고 했다.¹²¹ 도강 후 브로커가 한쪽에게 시집을 갈 것인지 술집 도우미를 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¹²² 도강과 인신매매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례도 있었다.¹²³ 자의와 무관하게 매매혼을 위해 인신매매되었고, 팔려간 곳에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있었다.¹²⁴ 이처럼 미성년자 시기, 인신매매, 매매혼, 성적 착취를 당했다는 다수의 진술이 수집되었지만, 증언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당국의 노력은 없었다고 진술했다.¹²⁵

“방랑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마당에서 우연히 알게 된 아주머니가 자기 공장에 가서 일하면 500원은 벌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당시 북한 직장에서는 한 달에 100원 정도밖에 벌지 못했기 때문에 500원은 벌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만 따라서 갔는데 알고 보니 그게 중국으로 국경을 넘어간 것 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 중국말을 하고 있기에, 그곳이 중국인 것을 알았고 당시에는 중국에 오면 장기매매 등이 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 16세에 인신매매되어 18세가 되던 해에 자식을 출산했습니다.”¹²⁶

¹¹⁹ MAV6AE2381, 1NR82V2378, 93VI9U2383, REUFYK2391, ROD6PD2411, 8IUFR2414, XHQ3O62444, 8QERTC2443, ROD6PD2466, JUZOTT2455, JUZOTT2467, JUZOTT2459

¹²⁰ ROD6PD2466, JUZOTT2455, JUZOTT2467, JUZOTT2459

¹²¹ PQ59JJ2344

¹²² ROD6PD2411

¹²³ 8IUFR2414

¹²⁴ REUFYK2391

¹²⁵ PQ59JJ2344, 93VI9U2383, ROD6PD2411, 8IUFR2414, XHQ3O62444, 8QERTC2443, ROD6PD2466, JUZOTT2455, JUZOTT2467, JUZOTT2459

¹²⁶ 8QERTC2443

(5) 정서적 폭력

북한에서는 공개처형 참관 강제 등 아동에 대한 당국 차원의 정서적 폭력이 자행되고 있었다. 기록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미성년자들에게 공개처형 장면을 지켜보도록 강요한 것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²⁷ 이는 북한이 소위 ‘주민 교양’을 목적으로 아동에 대하여 장기간 정서적인 폭력을 행사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년이 되기 전 학교나 인민반에서 동원되어 억지로 공개처형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됐다. 심지어, 학교에서 공개처형에 동원된 후 처형에 대한 소감문을 적어내야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¹²⁸

북한 당국은 미성년자들의 공개처형 참관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독려했으며, 미성년자 시기 공개처형을 목격한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 공개처형 현장에서는 미성년자의 현장 참석 제한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¹²⁹ 오히려 교양을 위해 미성년자들을 처형장 맨 앞자리에 앉게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¹³⁰ 증언자들은 공개처형 당시 현장의 분위기, 목격자의 규모, 처형 방식, 당시의 감정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도 여전히 무서운 기억이 생생한 공포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처형 장면이 꿈에서 계속 나타나는 등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징후를 보이기도 했다.¹³¹

“1980년경 일곱 살 때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읍 농장 채소밭에서 인민반장 지시로 부모님과 함께 공개처형 장면을 보았습니다. 무산군 사람들은 모두 보았습니다. 대단히 많았습니다. 공개처형된 사람들은 남자 세 명이었는데 모두 20대로 보였습니다. 오전에 집행된 처형이 끝난 후 저녁때까

¹²⁷ LVXJKW2259, KGLT6L2230, 93VI9U2481, 3E7GSG2222

¹²⁸ ROD6PD2461

¹²⁹ MAV6AE2392, 00RIT62441, ROD6PD2423, 00RIT62434, 93VI9U2478

¹³⁰ PNPVJ41087

¹³¹ 8IUFR2370, MAV6AE2392, ROD6PD2363, 8IUFR2361, ROD6PD2360, 1BQ5TD2364, DFFYXV2379, 00RIT62369, QOP5852319, UY2OY52324, 13PN7Y2325, Z4F5JE2331, U4G4Q32334, Q6VZNC2339, O1516J2346, 4C6RDC2348, QBLB242355, ROD6PD2386, 8IUFR2437, JUZ0TT2435, 00RIT62441, XHQ3O62444, TEIEJA2448, 8IUFR2422, ROD6PD2423, 4L9V4R1132, PNPVJ41087, 1NR82V2457, JUZ0TT2459, 00RIT62460, 8IUFR2453, ROD6PD2461, 93VI9U2481, 1NR82V2474, DFFYXV2473, 93VI9U2478, REUFYK2391, RPB0ZY2296

지 시신을 내리지 않고 처형 장소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시신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포를 느끼도록 시신을 오래 걸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¹³²

“20년 전인 2003년의 일로 저는 당시 열한 살이었습니다. 양강도 혜산시 송봉2동 강철공장 앞 농장 밭에서 남자 두 명이 공개처형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 있었습니다. ‘따당, ‘따당’ 하는 식으로 열두 발 정도의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터지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꼬꾸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죄를 지어 저렇게 죽는구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¹³³

다. 아동 노동

아동에 대한 노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아동권리협약」은 제32조에서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에게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도 「사회주의헌법」 제31조, 「사회주의노동법」 제15조, 「아동권리보장법」 제19조 등에서 16세 미만의 아동¹³⁴ 노동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과 「보통교육법」 등을 통해 아동을 노동에 동원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¹³⁵

이와 같은 법적 보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학생들은 학교 교육체계를 통해 노동을 강요받고 있었으며, 때로는 부모 등 성인들의 노동 의무를 대신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북한 아동들은 강도 높은 노동으로 힘들어했으며, 부조리와 차별 속에 고통 받고 있었다.

¹³² MAV6AE2392

¹³³ 93VI9U2481

¹³⁴ 한편, 북한 「보통교육법」(2015) 및 「아동권리보장법」(2014)에서는 17세 이상부터 노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정 간 충돌하고 있다.

¹³⁵ 「형법」(2022) 제110조, 「보통교육법」(2015) 제42조, 제52조, 제53조

(1) 학생 노력동원

북한의 학생들은 소학교 입학 이후 고급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노력동원’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노동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 2017년 북한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고급중학생부터 매 학년마다 3주간 농장, 공장 등을 방문하여 생산 노동을 경험한다고 언급하며, 교과과정에 있는 생산노동 이외에 아동 노동은 금지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¹³⁶ 그러나 기록센터 조사 결과, 북한의 주장과 달리 학생들은 교과과정에 따른 생산노동 이외에 방과 후 노동, 교사 등의 사적 지시에 의한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노력동원은 소학교에서부터 고급중학교까지 지속적으로 강제되었으며, 거주 지역과 학년에 따라 부과되는 노동의 종류와 양이 달라졌다. 동원 기간이나 횟수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북한 학생들은 보통 방과 후에 동원됐다.¹³⁷ 농촌 지역 학교의 경우에는 농번기인 봄과 가을에 학생들이 동원되어 학교 근처 농장에서 일해야 했다.¹³⁸ 농번기의 경우 한 달 정도 학교에서 수업을 아예 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¹³⁹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원 횟수나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노동 강도는 강해졌다.¹⁴⁰ 양강도 출신의 한 증언자는 고급중학교 2학년 때 북부 철길 건설현장에 2학년 전체 학생들이 동원되어 오전 수업을 받지 않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자갈 나르기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¹⁴¹ 수업을 하지 않고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산림복구 작업에 동원되었다는 증언도 있었다.¹⁴² 한 증언자는 소학교 1학년 때부터 매주 한 번씩 철길 보수에 동원되었는데, 인근학교의 소학교 학생들이 모여, 철길 보수 사업 일환으로 호미로 자갈을 철길에 모아놓는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¹⁴³ 양강도 출신의 다른 증언자는 자연관찰이라는 명목으로 학교 주변 농장에 나가서 가을철 벼 이삭을 줍는 일을 했는데, 학생들이 주운 벼 이삭

¹³⁶ UN Doc. CRC/C/PRK/Q/5/Add.1 (2017), paras. 42-43.

¹³⁷ O1516J2346

¹³⁸ KRV1AU2326

¹³⁹ SOKAIT1086

¹⁴⁰ 6DCJY01788

¹⁴¹ SOKAIT1086

¹⁴² DFM95V2357

¹⁴³ DEJ6ST2342

을 담임교사가 가져가는 일도 있었다고 증언했다.¹⁴⁴ 학생들은 학교의 노력동원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으며, 불참하거나 도망쳤을 경우에는 교사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인민학교(소학교) 2학년 때부터 방과 후 근처 농장에서 강냉이(옥수수), 고추 심기 등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강도와 빈도가 강해졌습니다. 중학교부터는 봄철과 가을철이 되면 오전 수업만 하고 근처 농장에서 농사일을 해야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부터는 ‘농촌지원활동’으로 일년에 두 번 정도 매년 20일간 협동농장에서 합숙하면서 농장원이라 똑같이 일해야 했습니다. 또한, 홍수로 철길 등 다리가 부서지면, 그 보수 작업에 인민학교 때부터 동원되어 자갈, 흙 나르기 작업 등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에) 출석했다면 노력동원에 무조건 참여해야 합니다. 아프다고 해도 진단서가 있지 않는 한 다 참석해야 합니다. 불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중에 도망치거나 불참할 경우에는 선생들이 나라에서 필요한 일인데 혼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불충하다고 하며 학생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사상적으로 문제아로 만드니까 차라리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¹⁴⁵

교육 당국이 이를 교과과정 중 일부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노력동원에 참여해야 했지만, 여기에도 부조리는 존재했다. 경제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뇌물을 주고 노력동원을 회피하고 있었다. 뇌물은 보통 담임교사에게 상납했으며, 뇌물을 내지 않고 사전 허락 없이 노력동원을 나가지 않을 경우 체벌을 당했다.¹⁴⁶ 평양 출신의 한 여성 증언자는 중학교 시절 봄가을마다 농촌동원이 있었는데 작업량에 따라 달랐지만, 대략 30달러 정도를 내면 동원에서 빠질 수 있었다고 했다.¹⁴⁷

이 밖에도 북한에서는 교사 개인에 의한 학생들의 노동력 동원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북한 당국은 교장 또는 교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부업지로 학생들을 동원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 측과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는 중학교 4~6학년 시기 일요일마다 담임교사의 소토지의 일을 도왔으며, 가끔은 평일에도 수업이 끝나면 소토지 노

¹⁴⁴ 2YUED91276

¹⁴⁵ JUZ0TT2459

¹⁴⁶ 6DCJY01788

¹⁴⁷ DEJ6ST2342

동에 동원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¹⁴⁸ 다른 증언자도 중학교 시절 6년 동안 담임교사의 부업지에서 일정시간 이상 농사일을 했다고 했다.

“초급중학교 1학년 때인 2013년부터 2019년 고급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담임선생의 부업지에 학급 학생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담임선생마다 다르긴 한데, 학생들에게 ‘자신의 부업지가 있는데, 도와줄래?’라는 식으로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은 응당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침 7시에 집에서 출발해 부업지에서 9시~12시까지 3시간가량 농사일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교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시키지 말라’는 방침이 돌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교사 부업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보니 교장이 교사들에게 이런 동원을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¹⁴⁹

(2) 농촌지원 활동 동원

우리의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북한의 고급중학생(11년제에서는 중학교 4학년 이상 고학년)들은 ‘농촌지원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일정기간 강도 높은 농사일에 동원되고 있었다. 농촌지원 활동은 학생들의 또 다른 의무인 ‘방과 후 노력동원’과는 별개로, 전체 학년 또는 몇 개 학급이 학교 근교나 원거리 농장으로 이동해야 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활동이 교과과정 중 일부이며 본질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¹⁵⁰ 하지만 농촌지원 활동의 노동 강도는 학생들이 수행하기에는 매우 힘든 것이었다. 학창시절 농촌지원 활동을 매우 고된 노동으로 인식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었다.

학생들은 파견된 농장에서 하루 8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농사일에 동원되었으며, 견디다 못해 종종 이탈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보통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 각 1개월씩 총 2개월 간 집을 떠나 농촌에서 숙식하며 현지 농장의 농사일을 도와야 했다. 농사일은 아침 6시부터 시작되었고, 저녁 7시경까지 계속 일해야 했다.¹⁵¹ 농촌지원 기간 동안 학생들

¹⁴⁸ KRV1AU2326

¹⁴⁹ P4ILM91470

¹⁵⁰ UN Doc. A/HRC/42/10(2019), para. 79.

¹⁵¹ 13PN7Y2325, R7KY7W2329, 4C6RDC2348

은 보통 농촌의 가정집에서 열 명 정도가 함께 숙식하며 생활하거나,¹⁵² 협동농장 농장원의 집에 들어가서 합숙생활을 해야 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모내기, 김매기, 감자 캐기 등의 작업에 투입되었고, 일이 많은 경우에는 주 7일 모두 일하기도 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는 하루에 끝내야 하는 작업 할당량이 주어졌고, 정해진 분량을 모두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쉴 틈이 없이 일해야 했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하루 10시간 노동을 해야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¹⁵³ 이처럼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중간에 도망치는 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⁵⁴ 실제로 한 증언자는 농촌지원을 갔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몰래 도망을 친 경험이 있다고 회고했다.¹⁵⁵

“국가 주도로 농촌지원 활동이 있었는데 고급중학교 1학년년부터 동원되었고, 기간은 20일이었습니다. 차로 2~3시간 떨어진 농장에서 숙박하면서 감자 캐기를 했습니다. 매일 휴일 없이 20일간 10시간 넘게 농사일을 해야 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개인별로 농지를 분배하는데 매일 여자는 50평, 남자는 70평이 주어졌고, 그 해당 평수에 있는 농지의 감자를 모두 캐야합니다. 그 양을 못 채우면 논밭에서 채울 때까지 학생들 모두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¹⁵⁶

그림 VI - 4 북한 학생들의 농촌지원 활동



목탄차를 타고 농촌지원 활동에 나선 학생들



옥수수 밭에 모인 학생들

* (자료출처) 강동완 동아대 교수

¹⁵² DFM95V2357

¹⁵³ MGAD6J1874, O9MNGG2207, Q6VZNC2339

¹⁵⁴ ETRLM22255, 1NR82V2457, JUZOTT2459, XWLLIS2413, 5VRQH72385, O1516J2346, QOP5852319, LXUIUC2307, ROD6PD2461, SOKAIT1086, MAV6AE2472, 93VI9U2481

¹⁵⁵ O1516J2346

¹⁵⁶ MGAD6J1874

동원된 학생들은 배정된 농장에서 다양한 노동에 동원되었으며, 과거에는 장기간 노동력을 착취당하기도 했다. 함경북도 출신의 한 여성 증언자는 중학교 시절 아편농장에 배치되어 아편 진액을 채취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학생들은 중독의 위험 속에서도 열심히 일했으며, 아편농장 이외에도 모내기철과 김매기철에 동원되는 등 1년에 6개월 이상 농사일에 동원되었다고 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부터 졸업(2001년)할 때까지 아편농장에 동원되었습니다. 양귀비 진액을 빼야 하는 철에 교사들이 학생들을 동원해 하루 종일 그 작업을 시켰습니다. 작업 동안 학생들이 냄새에 취해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어지러워 쓰러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교사들은 중독성이 있어 학생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누어주며 일을 시켰습니다. 사탕을 얻어먹기 위해 학생들은 중독의 위험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¹⁵⁷”

한편, 농촌지원 활동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대가를 납부하여 피할 수 있었다. 대상 학생이 몸이 매우 아프거나, 돈을 낼 경우 농촌 동원에서 빠질 수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¹⁵⁸ 몸이 아프거나 농촌지원을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학생들이 일하는 대신 돈을 납부하는 것을 ‘후방사업’이라고 불렀으며, 농촌지원을 나간 학생들의 식사비용 등으로 쓰였다고 했다.¹⁵⁹

“농촌지원의 경우, 동원에 빠지려면 그에 해당하는 돈을 학교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 외 동원의 경우, 빠지면 담임선생이 빠진 학생을 학급 앞에 세워놓고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다. 사상이 썩었다.’라며 욕을 하고, 처벌로 교실 청소를 혼자하게 했고, 때리기도 했습니다.”¹⁶⁰

¹⁵⁷ 51IH842267

¹⁵⁸ MGAD6J1874

¹⁵⁹ 13PN7Y2325, R7KY7W2329

¹⁶⁰ MGAD6J1874

(3) 기타 아동 노동

학교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가 아동 노동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수 증언자들은 아동들이 돌격대에 동원되어 발전소, 건설보수 작업 등에 투입되었으나, 아동을 동원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¹⁶¹ 오히려 인민반의 노력동원에 빠지면 벌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대신 나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한 여성 증언자는 어머니가 생계를 위하여 장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미성년자였지만 장녀로서 인민반 동원에 나가 건설 일을 했다고 했다.¹⁶² 다른 여성 증언자는 행방불명된 어머니를 대신하여 15세에 여맹돌격대에 참여했지만, 동원 기간이 종료되어 돌아가겠다고 하자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했다. 이후 7년간 돌격대에 간헐 일하다 도망쳐 나왔는데, 당시 돌격대에는 부모를 대신하여 참여한 미성년자들이 네 명 더 있었다고 했다.¹⁶³ 양강도 출신의 여성 증언자도 12세부터 수차례 인민반 작업에 동원되었다고 했다.

“2005년경부터였으니까 12세 나이부터 매년 수차례 동원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국가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서 인민반에 할당하면 인민반장이 그 작업을 하기 위해 주민들을 동원합니다. 일주일에 1~2번꼴로 동원되었고, 김매기, 철길 보수, 도랑 파기, 자갈 나르기, 뚝 쌓기, 퇴비 나르기, 나무 심기 등 다양한 작업을 했습니다. 김매기철에는 거의 매일 동원되었습니다. 인민반 작업에 나오는 16세 미만 아동들이 많았고 오히려 인민반장이 어머니 대신 제가 나오면 일을 열심히 한다고 더 좋아했습니다. 아동 노동에 대한 단속은 전혀 없었고 16세 미만의 아동들의 노동 동원이 비법인지 주민 대다수가 몰랐습니다.”¹⁶⁴

중등학교에서도 아동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 증언자는 학원 소속 학생들의 노력동원은 방학 중에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었으나, 3학년 때부터는 규정과 상관없이 일을 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학생들은 공부 시간은 거의 보장받지 못한 채, 땀감

¹⁶¹ QU3SFL2197, VKVJVN2084, MGAD6J1874, 11JSJ41106

¹⁶² Z4F5JE2331

¹⁶³ 8IUFR2437

¹⁶⁴ G1VW7H0944

구하기, 채소 심기, 산나물 채취, 약초 캐기 등에 투입됐다.¹⁶⁵

라.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처우

국가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보호와 지원 의무를 갖는다. 「아동권리협약」 제20조는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북한도 「아동권리보장법」을 통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은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정하고 있다.¹⁶⁶

김정은 집권 초기 무연고 아동 보호·교육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사업이 있었고, 실제 물리적 환경과 시설 지원 등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학교원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 자유롭게 진로를 정할 수 없었다. 개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로가 정해지거나 무리배치 되는 등 북한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까지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 - 4 북한의 무연고 아동 보호·교육 체계

기관 명칭	해당 연령	기관 개요	비고
육아원	4세 미만	유치원 취학 전 영유아 보육교양기관	-
애육원	4~5세	유치원 나이의 어린이 양육기관	취학전 교육
초등학교원	6~10세	소학교(우리의 초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초등교육
중학교원	11세~16세	초급/ 고급중학교(우리의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중등교육

북한 무연고 아동 보호·교육기관의 환경은 낙후되어 있었고 당국 차원의 지원도 부족했으나, 최근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014년 준공된 평양육아원

165 WK28JK0257

166 「아동권리보장법」(2014) 제31조 (돌볼 사람이 없는 아동의 양육)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은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

및 평양애육원을 시작으로 전국 무연고 아동 보호·교육기관의 시설 개선에 착수했다.¹⁶⁷ 시설 개선과 당국의 지원 확대는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의 경우에는 201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들이 새로 건설되고 지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¹⁶⁸ 운동장에 인공잔디가 깔리거나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뀌는 등 시설 개선과 관련된 증언이 많았고,¹⁶⁹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증언도 있었다.¹⁷⁰

“2019년까지 ○○초등학교에서 일했습니다. 초등학교는 국가에서 고아들을 돌봐주는 곳으로 8살부터 12살까지 들어와서 소학교 과정을 배우면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2017년에 고아시설이 김정은 방침에 의해 도(道)마다 새 건물로 꾸러졌습니다. 식사는 도루묵이 하루 세끼 보장되고, 세 가지 이상의 반찬을 주어야 합니다. 간식으로 우유나 두유, 빵, 과자, 사탕이 나옵니다. 이런 식재료를 국가에서 다 보장해줍니다. 반면,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훔치고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¹⁷¹

그림 VI - 5 새롭게 건설된 평양의 무연고 아동 보호·교육기관



평양육아원, 평양애육원
(2014.11.)



평양중등학교
(2016.7.)



평양초등학교
(2017.2.)

* (자료출처) 노동신문(2014.11.24./ 2016.7.3./ 2017.2.2.)

¹⁶⁷ 김정은 지시에 따라 평양육아원·애육원(2014.10.), 평양중등학교(2016.7.), 평양초등학교(2017.2.) 등 평양 지역의 무연고 아동 보호·교육기관 시설을 새로 건설하여 본보기로 삼았으며, 이후 특별시 및 원산, 평성, 청진, 해주, 사리원 등 각 도(道) 주요 도시(특히, 원산·평성·청진 등은 무연고 아동 보호·교육기관을 연결하여 건설, 종합단지조 조성)에 관련 시설을 순차적으로 신설했다.

¹⁶⁸ 3RNTQV2332, LXUIUC2307, 8B5CA02248, V6PE6V2232, KJ7IFB2239, 1CHLPG2211, YKDSNY2213, 00IAFO1948, ROHC5C1856, BNPVOT1347, 8CX10O0849, I5POPW0042, 1NXYYF1980

¹⁶⁹ 1CHLPG2211, RU1F6F2209, YN2CFN2198

¹⁷⁰ YN2CFN2198, BNPVOT1347, PMYOW2258

¹⁷¹ BNPVOT1347

하지만, 무연고 아동 보호·교육기관 출신 아동들은 진로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다. 북한 당국은 중등학원을 나온 학생들이 대학 진학 또는 희망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¹⁷²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다수 증언자들은 중등학원 졸업생 대다수가 돌격대에 강제배치 되거나 공장에 무리배치된다고 진술했다.¹⁷³ 중등학원 졸업과 동시에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군대에 보내고, 신장이 작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은 돌격대나 공장 노동자로 배치한다는 증언자들도 있었다.¹⁷⁴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의 소질이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퇴소 연령이 되면 학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158cm 이상이면 군대로 보내고 나머지는 집단적으로 돌격대에 배치됩니다. 제 오빠는 청년돌격대에 강제로 배치되었습니다. 간혹 방직공장 등에 무리배치도 되는데, 제가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¹⁷⁵

한편,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아동(일명 ‘꽃제비’)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보호시설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북한이 경제난을 겪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보호자가 없는 부랑 아동들이 급증하면서 북한 당국은 ‘꽃제비 상무’라고 불리는 단속기관을 조직했고, 단속된 아동들을 구호소, 방랑자 집결소 등의 시설에 수용했다.¹⁷⁶ 증언을 종합해보면 꽃제비들을 임시로 수용하는 구호소, 방랑자 집결소 등의 시설은 보호시설이라기보다 임시 수용시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용시설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부실했고, 수용환경이 열악한 데다 규율 또한 엄격했다.¹⁷⁷ ‘꽃제비’ 생활을 하던 시절 단속되어 구호소에 수용되었던 증언자들은 감옥처럼 간혀있거나, 강제 노동에 동원되기도 했으며, 열악한 환경과 강도 높은 노동으로 보호시설에서 도망치는

¹⁷²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65.

¹⁷³ KQ7XG61859, O9MNGG2207, I293Z82053, WK28JK0257, OORIT62477

¹⁷⁴ SFR10U2052, PWDEAD1982, HDFWE40182, RBRQN52182

¹⁷⁵ KQ7XG61859

¹⁷⁶ SFR10U2052

¹⁷⁷ DFFYXV2379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다.¹⁷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거주할 곳이 없어 3년 동안 꽃제비 생활을 했습니다. 꽃제비들이 가는 ‘구호 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굶어 죽습니다. 감금시킨 채로 강제노동을 시키면서도 음식은 거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¹⁷⁹

¹⁷⁸ 8IUFR2422, XWLLIS2413, 8QERTC2443, SF33KT2347

¹⁷⁹ 3OJGJM0850

3. 장애인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을 구체화하여 유엔 총회는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 2006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당사국에게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표 VI - 5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 (관련 목차)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공통 장애인	
제4조	제1항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	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차별
제9조	제1항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동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장애인 권리 실태
제20조	제1항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 '가.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차별'은 동 협약 제8조 (인식 제고), '나. 장애인 권리 실태'의 경우 제24조 (교육), 제25조 (건강), 제26조 (가할 및 재활), 제27조 (근로 및 고용),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등 규정 참고

북한 당국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의식하여, 2003년 제정한 「장애자보호법」을 통해 장애인 권리보장 원칙을 밝히고 있다.¹⁸⁰ 2013년에는 「장애인권리협

¹⁸⁰ 「장애자보호법」(2013) 제2조 (장애자의 정의, 장애자의 권리보장원칙) 장애자는 장기적인 신체상 결함과 주위환경의 요인들에 의하여 사회생활에 자립적으로 참가하는데 지장을 받는 공민이다. 장애에는 시력장애, 청력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능장애, 정신장애, 복합장애가 있다. 국가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사회정치적 권리와 자유, 이익을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

약]에 서명, 2016년 이를 비준하여 당사국이 됐다. 북한은 장애인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패럴림픽과 장애인 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에도 참가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선전하고 있다. 또한, 2023년 9월에는 장애인들의 분야별 권리 보장을 명시한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도 했다.¹⁸¹

하지만, 북한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예군인’(상이군인)¹⁸² 등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에 대한 북한 당국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보호와 지원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아울러,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이나, 특정 지역 내 집단 생활 등 장애를 가진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여러 사례들이 수집되기도 했다.

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차별

(1)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으나, 북한 당국은 이러한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은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할 의무가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장애에 근거한 법적 차별이나 사실상의 차별을 해소하며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비차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¹⁸³ 하지만,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¹⁸¹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등을 채택하였다.” (노동신문, 2023.9.28. 4면 참고)

¹⁸² ‘영예군인(榮譽軍人)’은 ‘군사복무기간 부상을 입고 제대하여 국가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4권, 2017. 1109쪽 참고)

¹⁸³ UN CESCR, General Comment No. 5,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as. 15-18.

“난쟁이(왜소증 장애인)들은 ‘난쟁이마을’에서 살아야 하고 다른 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난쟁이들은 ‘조선민족’으로 보지 않고 공민증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자손을 퍼트리지 못하게 다 거세를 했습니다.”¹⁸⁴

다수 증언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북한에서는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책 또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¹⁸⁵ 한 증언자는 장애인에게 보통 ‘불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북 시 대북전단을 통해 ‘장애인 복지’, ‘장애인 인권’이라는 표현을 처음 접했을 때 ‘이상했다’고 진술했다.¹⁸⁶ 또한,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들과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회피 대상이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2017년에도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30살 남자 두 명을 봤는데 형제였고 둘 다 병어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40대 부부가 병어리입니다. 북청 장마당 짐 보관집에 아들 두 명이 있었는데 둘 다 병어리였고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은 우리랑 다르니까 좀 피하는 것 같습니다.”¹⁸⁷

(2) 장애인에 대한 차별

북한의 장애인들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강한 제약을 받고 있었다. 기록센터 조사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당국에 의한 평양 내 장애인 거주 금지 제도가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¹⁸⁸ 다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1988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준비하면서 정책적으로 평양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모두 지방으

¹⁸⁴ 6DAPH11220

¹⁸⁵ YNZ1CJ2226

¹⁸⁶ 5OR5F62241

¹⁸⁷ BACCUX1175

¹⁸⁸ 1BQ5TD2431, YNZ1CJ2226, URQ3NC1379, OORIT62460

로 이주시켰던 것으로 보인다.¹⁸⁹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당국의 명령으로 평양에 살던 장애인들이 가족과 분리되어 지방에 사는 친척 집으로 이주했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¹⁹⁰ 장애인들의 평양 내 거주 제한은 201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되었는데, 평양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사동구역·은정구역 등 평양 외곽 지역이나 지방으로 강제이주 시켰다고 한다.¹⁹¹ 만약, 장애인이 혼자 평양을 떠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모두가 강제이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¹⁹²

“평양에서 태어나 해외로 출국하기 전인 2015년까지 낙랑구역에서 거주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적 정책이 있습니다. 특히 평양에서는 장애인을 추방시킵니다.”¹⁹³

장애인 거주지 제한에 대한 또 다른 사례로는 장애인 집단거주지인 ‘난쟁이(왜소증 장애인) 마을’과 ‘곱새(척추 장애인) 마을’을 들 수 있다. 북부 산간 오지인 양강도 김형직군·김정숙군·삼수군, 함경남도 덕성군에는 ‘난쟁이 마을’이 있었고,¹⁹⁴ 양강도 삼수군에는 ‘곱새 마을’이 있어 당국의 지시에 따라 척추 장애인들을 강제이주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¹⁹⁵ 집단거주지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외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고, 비장애인과 결혼의 자유를 제한 받으며,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제한 받았다. 장애인 집단 거주지는 보통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에 위치하는데, 비장애인들과의 교류를 차단하고, 외부 세계에 장애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¹⁸⁹ ROD6PD2427, HLYRUJ2290, ROD6PD2469

¹⁹⁰ OORIT62428, UY2OY52324, ROD6PD2427

¹⁹¹ 2G5GFH2345, FKJUWV0728

¹⁹² UY2OY52324, ROD6PD2427

¹⁹³ YNZICJ2226

¹⁹⁴ QGJZGD0048, 6MVIBL0286, 1CHLPG2211, OT95801352, 3E7GSG2222, KWNX7P0796, F7SR7A0771, 6DAPHI1220

¹⁹⁵ SOM57P0867

“난쟁이 마을이 (양강도) 김형직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주되어 온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난쟁이(왜소증 장애인)들을 배려하여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난쟁이가 또 나올까봐 거주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 장애인이 많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¹⁹⁶

반면, 최근에는 평양 주변 지역의 장애인 주택 건설, 장애인 거주 제한 해제 등 변화 움직임도 포착됐다. 2017년경 왜소증 장애인들이 거주할 주택을 건설하는 돌격대에 동원되었다는 경험 사례가 수집되었다.¹⁹⁷ 증언에 따르면 평양과 연접한 평안남도 평성시의 산 아래 밭이 있는 곳이었으며, 도면상 일반 주택에 비하여 집이 매우 낮았다고 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수집됐다. 과거에는 장애인들의 평양 거주를 제한했으나, 2020년경 장애인에 대한 평양 거주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이다.¹⁹⁸

그림 VI - 6 장애인 집단 거주 추정 지역 (기록센터 조사 기준)



* (사진출처) 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m/web/>)

강제불임수술 등 장애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왜소증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에 대한 다수의 사례가 수집됐다.¹⁹⁹

¹⁹⁶ 1CHLPG2211

¹⁹⁷ 93V19U2476

¹⁹⁸ DDL5221833

¹⁹⁹ ZFYRKW1930, P767JN1271, OT95801352, OH7UDE0809, 09FRZX1364, TEJTPQ1320, P767JN1271, SHS6WT0708, KRETDM0354, G1YH940147, 6MVIBL0286, 6DAPH11220, OORIT62460

뿐만 아니라 시·군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강제불임수술 대상이 될 소위 ‘난쟁이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²⁰⁰ 증언에 따르면 왜소증 장애인 대상 강제불임수술 사례는 1990년대부터 2017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이 북한 당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3년경 난쟁이가 일반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군 보안서에서 ‘너는 난쟁이이니까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2014년경 딸아이를 낳았답니다. 군 보안서 안전원 세 명이 출동하여, 그 난쟁이를 군 인민병원에 끌고 가서 강제로 불임수술을 실시했습니다.”²⁰¹

이 밖에도, 생체실험 대상화, 신생아 살해 등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들이 수집됐다. 한 증언자는 북한에서는 가족의 동의만 있다면 지적 장애인들을 생체실험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고 진술했다.²⁰² 장애를 안고 태어난 신생아를 병원과 가족이 상의하여 태어난 직후 죽였다는 사례도 있었다.

“2014년경 평양산원에서 장애가 있는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죽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기를 얹어놓고 있으면 숨을 쉬지 못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북한 당국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고 병원과 가족이 상의하여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²⁰³

심지어, 가족 동의 없이 생체실험 대상으로 장애인을 끌고 간 사례도 있었다. 1988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준비하면서 당국이 평양에 사는 장애인을 없애려고 했고, 그 일환으로 장애인들을 강제로 이동시켰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 당시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장애인을 인체 실험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가족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데리고 갔다고 한다.²⁰⁴ (*IV-3-라. 생체실험 참고)

²⁰⁰ P767JN1271

²⁰¹ KRETDM0354

²⁰² KJ7IFB2239

²⁰³ BW8MUL2358

²⁰⁴ ROD6PD2427

나. 장애인 권리 실태

(1)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와 제20조는 당사국들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목격했다는 사례는 수집되지 않았다. 재북 당시 시각장애인의 가족이었던 한 증언자는 북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상 가족의 도움이 있어야 이동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²⁰⁵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맹인 아파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설비나 시설은 없었고, 오히려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시설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항상 땅이 고르지 않았다고 했다.²⁰⁶

“(함경북도) 회령시에 맹인 아파트와 맹인 공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공장에도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 근처에 3층짜리 맹인 아파트가 있었고 중학교 동무가 살고 있어서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맹인 아파트였음에도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만 있었고 단칸방이 있습니다. 맹인들은 그 아파트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²⁰⁷

(2) 미흡한 치료 및 재활

북한 당국은 장애인 치료와 재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조선장애자보호연맹 등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장애인 치료·재활 관련 기구들을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생산된 교정기구들과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²⁰⁸ 수집된 사례 중에도 함경남도 함흥시에 휠체어, 의족,

²⁰⁵ 4C6RDC2348

²⁰⁶ 2G5GFH2345, 4C6RDC2348, EX9Y9O1501

²⁰⁷ 4C6RDC2348

²⁰⁸ “평양장원기술교류소에서는 새해 들어 여러 교정기구부분품들과 장애용품들을 자체의 원료, 자재로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류소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교정기구부분품들과 석고붕대, 장애용품들은 장애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조선장애자보호연맹 사이트 ‘희망’, 2023.2.3.)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장애인 1천 600여 명에게 계속 및 교정기구 이동수리, 휠체어·지팡이·안경 등 보조기구 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각 도 인민병원들에 안과 설비와 의료 소모품들을 보냈다.”(조선중앙통신, 2017.12.19.)

의수 등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교정기구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는 증언이 있었다.²⁰⁹

그러나 선전과 달리 북한 당국은 장애인들에게 치료와 재활을 위한 기구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는 장애인 전용 기구들은 무상 제공되지 않았으며, 돈을 주고 교정기구를 구매하는 것조차 장애인이 담당 진료소 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력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고 했다.²¹⁰ 다른 증언자들도 당국이 장애인에게 재활·의료기구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치료 지원을 한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했다.²¹¹ 심지어, 근무 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고 했다.²¹² 기록센터에서 수집한 사례 중에는 탄광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하여 다리가 절단된 가족이 무상으로 의족을 받았다는 진술이 유일했다.²¹³

한편, 나선시에서 장애인들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시설인 ‘장애인 요양소’를 목격했다는 사례가 수집됐다. 증언에 따르면 장애인 요양소는 장애인들의 회복·요양을 돕는 시설로 시에서 운영했으며, 병원은 아니었으나 병원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원칙적으로 장애인들만 입소가 가능했다고 한다.²¹⁴

(3) 교육

북한에도 각 지역별로 ‘농아학교’와 ‘맹인학교’ 등 장애인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양시를 비롯하여, 함경남도 함흥시·금야군, 함경북도 청진시·온성군·무산군, 황해북도 봉산읍, 강원도 원산시, 평안북도 운전군 등지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농아학교가 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또한, 평양시 강동군, 함경북도 경성군, 강원도 등지에는 맹인학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¹⁵ 농아학교는 소학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10년 교육과정으로, 수업은 ‘손말’(수화)로 진행된다고 한다. 그리고

²⁰⁹ SOM57P0867

²¹⁰ SOM57P0867

²¹¹ UAUGB22266, OJCPLC1523, 00RIT62429

²¹² 1BQ5TD2458

²¹³ 5CBIUV1055

²¹⁴ 43Z03T0583

²¹⁵ DFFYXV2451, 13PN7Y2325, 00RIT62440, BACCUX1175, NML5921207, RRH58L0444, YSG3LR0684, 34VXQZ1185

특수학교에는 기숙사가 있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입학하여 기숙 교육을 받을 수 있다.²¹⁶

“군사 복무 중이던 2013년경 평안북도 운전군에서 농아학교를 보았습니다. 일반 학교 정도의 크기였고 기숙사도 있었습니다. 학생 수는 30~50명 정도로 전국의 농아가 모이는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²¹⁷

“2005년부터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삼봉농아학교를 봤습니다. 지금도 학교는 있습니다. 농아학교는 병어리, 귀머거리, 반병어리들이 다니고 그곳에서 소학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배웁니다. 수업은 수화로 진행됩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 사는 학생도 이 학교로 와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학생 수는 다 합쳐서 스무 명 남짓이었습니다.”²¹⁸

그림 VI - 7 북한의 장애인 교육



* (자료출처)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2018.5.2./ 2023.4.2.)

하지만, 특수학교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교에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다. 일반 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되었거나,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특수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사례는 수집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에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이 없어 일반학교에 장애인 학생의 적(籍)만 걸어두고 졸업식 등의 행사에만 참석했다

²¹⁶ 13PN7Y2325, 4WV3391515, 34VXQZ1185

²¹⁷ 13PN7Y2325

²¹⁸ NML5921207

는 사례들이 수집됐다.²¹⁹

“언니가 말이 어눌하고 시력이 매우 안 좋아 장애가 있었지만, 일반학교에 같이 다녔습니다. 엄마가 그냥 학교에 적만 걸어놓고 수료식이 있을 때만 참석하곤 했습니다.”²²⁰

(4) 근로

북한 당국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특수직장을 별도로 구성하고, 장애 정도와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장애인을 배치했다. 장애인들이 배치되는 직장은 ‘경(輕)노동 직장’으로 불렸고, 경노동 직장은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사동구역, 평안북도 의주군, 강원도 원산시, 함경북도 청진시·운성군·연사군·무산군, 함경남도 단천시·길주군, 양강도 혜산시 등지에 경노동 직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른 업무를 부여 받았으며, 근무지 인근의 주택을 배정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노동 직장에서는 시계수리, 도장 및 가방 제작, 못 등 금속부속품 제작, 두부·국수·떡 등 식료품을 생산하는 일을 수행했으며, 보통 하루 6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²²¹ 또한, 함경북도 회령시, 함경남도 단천시, 평안북도 박천군 등에는 시각장애인들만 근무하는 ‘맹인공장’이 있다는 다수 증언이 있었다. 근무자들은 공장 근처 맹인아파트에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고, 잡화 생산이나 못을 제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²²²

장애인 직장 중 하나로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해 제대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예군인 공장’이 있다. 영예군인 공장은 평양시 사동구역·선교구역, 함경북도 청진시·회령시, 함경남도 함흥시, 양강도 혜산시·운흥군, 자강도 화평군 등 각 도의 주요 도시 및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영예군인 공장에서는 주로 플라스틱 용품, 비닐 등 합성수

²¹⁹ S02DOL2356, Y6IKAG1297

²²⁰ S02DOL2356

²²¹ QOP5852319, SF33KT2347, QBLB242355, S02DOL2356, 1BQ5TD2364, 1BQ5TD2431, Y6IKAG1297, IWKAT01409, VOB0HH2087

²²² ZHAI9N1304, 4C6RDC2348, 0VTKOU1000, NI0H020501, 28RB3S0984, UYYAWM0821, EX9Y9O1501, 8YGEL01287

지 제품을 비롯하여 악기, 학용품, 일용품 등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²³ 일부 증언자들은 실제 영예군인이 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영예군인이 아닌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 영예군인 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했다.²²⁴

그림 VI - 8 북한의 영예군인공장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장화 생산

평양 낙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식료품 포장재 생산

* (자료출처) 노동신문(2021.11.2./ 2014.1.18.)

반대로 장애인이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시계수리소에서 시계를 수리하는 일, 제철소에서 공장 입고 자재를 검수하는 일을 담당하거나, 일반 기업의 경비·기계공, 이발관의 이발사 등으로 배치되어 근무했다는 증언들이 있었다.²²⁵

“제가 근무하던 통신국에도 장애인 한 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는 다리 불구 장애인으로 기계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저와는 다른 작업반이었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휠체어, 의족 등은 모두 자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²²⁶

223 YNNL9N2323, 00RIT62369, ROD6PD2386, 2RFY180935, MF6QLT0846, X2BN9T0381, LJTQAS1561, FKJUWV0728

224 KQ9C5Q2261, KG0US71554, AR6YF60940

225 BW8MUL2358, 13PN7Y2325, JH41EW2327, Q5RDF42251

226 13PN7Y2325

(5) 생활지원 및 사회보장

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이나 사회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진술이 많았으나, 북한 당국이 장애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 사례들도 수집됐다. 한 증언자는 시각장애인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운동복, 신발 등을 지원해주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옷과 양말 등을 국정가격에 공급해주었으며, 쌀감도 지원해주었다고 진술했다.²²⁷ 장애인 가정에 매달 생선을 공급해주고, 농아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들에게 유엔에서 지원한 동복, 식량, 학용품 등을 나누어주었다는 증언도 있었다.²²⁸

한편, 국제사회의 장애인 지원 물품 배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장애인 단체 관련자와 가깝게 지내며 단체의 활동을 목격했던 한 증언자는 국제사회 지원 물품은 장애인 관련 단체(‘조선장애자보호연맹’)에서 관리하는데, 배분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지원 물품 제공은 주로 평양 거주 장애인에 한정되었으며, 양질의 지원 물품의 경우 단체 관계자들이 빼돌려 판매하기도 하는 등 비위에 따라 물품이 제대로 지원·배분되지 않았다고 했다.

“‘장애자협회’에서는 장애인 관련 일을 하는데, 국제사회 지원 물품을 분배하는 일도 그곳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원물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과 친분이 있어 지원 물품을 받아서 써본 적이 있습니다. 평양 지역 장애인들에게만 주지만, 그것을 빼돌려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니터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은 장애인이 아니며 당원입니다. 위원장에게 물품을 받았는데 질이 매우 좋았습니다.”²²⁹

(6) 문화·체육 생활

북한에서는 장애인들이 문화·체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누리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에 북한의 장애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²²⁷ ZHAI9N1304

²²⁸ SPN4BG1900

²²⁹ YKDSNY2213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³⁰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2012년 런던 하계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등 국제대회에 장애인 선수단을 출전시키고 있으며, 장애인 관련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²³¹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따라 북한 내에서도 장애인들이 문화·체육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증언들이 있으나, 평양에 거주하는 일부 장애인들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는 2011년경 평양 창광원(편의시설) 내 수영장에서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패럴림픽 참가를 위해 훈련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²³² 2017년 장애인협회에서 주최한 초청공연에 대한 증언도 있었다. 증언에 따르면, 공연 티켓은 5달러 정도에 판매되었으며, 장애인이 피아노를 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춤을 추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무대에 오른 장애인들은 일반 주민이 아닌 평양 상류층 자제로 보였다고 했다. 장애인 관련 증언 중 일반적인 경제수준의 장애인이나, 지방 거주 장애인의 문화·체육 생활에 대한 경험 사례나 목격 사례는 수집되지 않았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초청공연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청장을 받아서 갔지만, 평양 주민을 대상으로는 티켓 한 장에 5달러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맹인이 피아노를 치거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춤을 추는 등의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장애인을 본 적이 없었는데, 공연을 보면서 장애를 가졌지만 열정적으로 사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연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모두 있는 집 자식이라고 들었고, 신체조건상 부자집 자식이 맞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²³³

²³⁰ UN Doc. A/HRC/27/10 (2014), para. 62.

²³¹ 북한은 2010년부터 평양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를 기념하는 ‘장애자 연합모임(Joint Celebrations on the Occasions of the 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런던 하계 패럴림픽대회, 2013년 쿠알라룸푸르 아시아 장애인청소년 경기대회,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년 리우 데자네이루 하계패럴림픽대회,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등 장애인 관련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3. pp.412~417. 참고)

²³² YKDSNY2213

²³³ DEJ6ST2342

그림 VI-9 국내외 행사 속 북한 장애인들



* (자료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18.10.4.), 조선중앙통신(2019.6.2./ 2022.12.5.)

(7) 영예군인 지원

북한 당국이 그나마 일정한 체계하에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은 영예군인(상이군인)이라 할 수 있다. 영예군인들은 일반 장애인에 비해 당국의 지원이나 사회보장 측면에서 우대받고 있다는 증언들이 있었다.²³⁴ 다만, 영예군인들은 복무 당시 업무의 성격과 부상 정도에 따라 특류(特類),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었으며,²³⁵ 지원 혜택은 등급에 따라 상이했다.

특류 영예군인은 직업 선택이나 지원에 있어 비교적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었고, 정기배급, 약품, 생필품, 난방 등을 제공받았으며,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도당에 요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었다.²³⁶ 한 증언자는 영예군인의 가족으로서 당국이나 후원단체로부터 식량, 약품, 생필품, 난방 등을 부족함 없이 지원받았다고 진술했다.

“특류와 1급 영예군인은 집을 주고 정기적으로 배급을 줍니다. 약품관리소에서 약품을 명절마다 공급해주고, 명절마다 상업관리소에서 비누, 칫솔, 콩나물 1kg, 과자 한 봉지, 술 한 병, 양말, 세수수건 등을 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당에 신고하여 제기할 수 있고, 후원단체가 있어서 겨울에 화목이 필요하면 그곳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1년에 40일씩 함경북도 청진시 소재 도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입원시켜서 해주는데 이틀에 1번 토끼곰(토끼고기 곰탕)도 해주고, 혈장도

²³⁴ 8B5CA02248, 030VQT1021, 4902BC0526, VZV8V11352

²³⁵ ‘특류’는 특수부대 소속 또는 특수 업무 수행자인 경우이고, 이외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1~3급으로 분류한다.

²³⁶ FKKX6E1650, SV1VF51264

맞고, 종합적으로 검진을 하여 치료를 해줍니다.”²³⁷

북한 당국은 영예군인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영예군인에게 지급된 연금은 생활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 증언자는 2020년경 영예군인에게는 매월 1,700원의 연금이 나왔고, ‘태양절’(김일성 생일, 4.15.)마다 ‘보약대’ 명목으로 5,000원이 추가로 지급됐으나, 생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²³⁸ 다른 증언자도 영예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은 국정가격으로 차표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뿐이었다고 했다.²³⁹ 참전자 우대 방침에 따라 6·25전쟁 당시 부상을 입고 ‘감정(鑑定)제대’(의가사제대)를 했던 영예군인이 2000년 당시 매달 쌀 600g과 아주 적은 금액의 돈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²⁴⁰

한편, 영예군인 등록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들도 눈에 띄었다. 군사복무 중 당한 부상으로 제대하게 된 경우라고 해도 영예군인으로 등록하기 어려웠다는 진술이 있었다.²⁴¹ 영예군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군의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²⁴² 한 증언자는 군 복무 중 생긴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얻었지만, 영예군인으로 등록되지 못해 아무런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평안남도 양덕군에서 군사복무 중 산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를 돌에 부딪쳤습니다. 큰 외상은 없었지만 급성으로 한 번씩 참기 힘들 정도로 머리가 아픈 증상이 생겼습니다. 정상적인 군사복무를 할 수 없어 뇌 타박 후유증으로 감정제대한 것입니다.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지만, 당시에는 치료비나 보상금은 없었습니다. 치료비나 보상금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예군인은 심한 중상을 당해야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²⁴³

²³⁷ SV1VF51264

²³⁸ U61S652293

²³⁹ H904R61479

²⁴⁰ ROD6PD2427

²⁴¹ DA992K1308

²⁴² MLKH5C1222

²⁴³ JX4VIJ2218

이 밖에도 비장애인 여성과 영예군인을 강제로 결혼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영예군인들의 업적을 드높이고 칭송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당국 차원에서 비장애인 여성과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이를 ‘강제결혼’이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1990년대 초중반 사회적으로 영예군인을 우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당국의 지시로 영예군인과 결혼하는 비장애인 여성들이 많았다는 증언들이 있었다.²⁴⁴

“북한에서는 영예군인을 나라를 지키다가 ‘불구자’가 된 ‘애국자’라고 추켜세웁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영예군인과 결혼해 이 애국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선전합니다. 그래서 영예군인과 결혼한 여성에게는 남편을 잘 돌보며 희생할 것이 요구됩니다. 저도 21세 나이에 영예군인에게 시집가게 되었고 남편에게 희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영예군인들은 대체로 성격이 일그러진 사람들입니다. 군 복무 중에 장애인이 된 분풀이를 자신들의 부인에게 화풀이하는 경우가 많아 영예군인들의 아내들은 대체로 저의 경우처럼 남편에게 맞고 살아갑니다.”²⁴⁵

²⁴⁴ MAV6AE2392, 8IUFR2361, 8CWCD32231, F4JAJX0874, TUSZ2M2104

²⁴⁵ F4JAJX0874



2024 북한인권보고서

2024 Repor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발행일 2024년 6월
발행처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전화 02-2135-7059
팩스 02-2135-7063 [비매품]